

IN

Y

P

II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성윤숙

공동연구원

손병덕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손병덕 (충신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노재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생산적 측면도 있지만, 때론 인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곤 합니다. 특히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친화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려되는 사안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결합이 초래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입니다. 이미 선재하는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는 소위 멀티미디어로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매체에서 생산한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동,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적 정립에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자의 결합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러한 결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하여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 영상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결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고, 그러한 결합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정책사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시에 정책제언 역시 예방, 보호, 집행이라는 체계적 분류를 통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책분야의 핵심을 11가지 중점정책 과제로 선별하여 각각의 정책에 대해 제안배경과 내용, 추진절차 및 관련법 개정사항, 나아가 소요예산과 조달방법, 마지막으로 기대효과까지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모쪼록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새로운 가치정립과 자리매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모두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매개체로서 스마트폰의 결합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 영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그러한 결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여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와 스마트폰의 결합이 초래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적절한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대중매체로 하여금 책임과 신뢰에 기초한 방송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이용능력을 함양하고자 함이다.

방법론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정책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 영상물이 실제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스마트폰이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로 인해 왜곡된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을 확산 및 촉진시키며 확대 재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 영상물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성 상품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동시에 스마트폰 역시 그 건전성의 담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책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단계별(생산, 유통, 소비), 정책영역별(예방, 보호, 집행)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방향에서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Blessing-Family Project: 성 상품화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젝트,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매체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 상품화, 성의식, 성행동,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스마트폰 성매매, 성 상품화 예방 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 상품화의 구체적 모델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하여 그러한 영상물과의 접촉이 스마트폰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청소년에게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함. 따라서 연구의 핵심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지니는 문제점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와 스마트폰의 결합에 있음.
- 연구의 목적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가 스마트폰과 결합할 때 청소년의 성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함. 이를 위해 먼저 소위 앱세대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유형으로 접하는지,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매개체로서의 영향력에 대해 파악할 것임.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미치는 성의식과 성행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한계를 분석, 종합, 정리하고자 함.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수용자로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러한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성매매나 성인물 유포 등 청소년 스스로 성 상품화의 생산자 및 전달자가 되는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결과적으로 연구는 왜곡된 성의식이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유형의 새로운 문제점을 낳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동시에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한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는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교육홍보와 관련한 예방정책, 이용자보호·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보호정책, 그리고 감독단속, 공급자처벌을 중심으로 한 집행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총괄적 정책제언을 하는 한편 세 가지 정책분야의 핵심이 되는 것을 11가지 중점정책 과제를 선택하여 심층적인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먼저 문헌고찰로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및 영향에 관한 분석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수집과 더불어 관련 이론 등 다양한 학술연구를 고찰하고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국내외의 관련 법·정책 등에 관한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1~3학년) 4,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목적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부모 혹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할 때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의식이 성행동에 작용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그러한 영향관계에 스마트폰 이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였음. 성 상품화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하였음.
-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문제점, 성 상품화 유형 및 경로, 성 상품화 유입 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 상품화 피해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 학생청소년 3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및 대책에 관한 국내 및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국외의 법령 및 제도 등 정책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도출과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학계, 행정계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외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회, 워크숍,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국내외의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

- 한국의 경우 법과 제도는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중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신속한 사법적인 개입이 요구됨.
- 독일은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실질적이고 의지적인 관심이 청소년보호정책을 통해 드러남. 특히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넷과 청소년미디어 보호연방심사청을 연결하여 직접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달매체와 통신매체에 각각 하나씩의 공인인증된 자율규제기구를 둬으로써 청소년 성 상품화 등 청소년미디어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영국은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력적 시도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2006년 청소년 인터넷 안전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는 경찰, 인터넷산업체, 그리고 관련부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미국은 아이돌들의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 동작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유통,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관된 정책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고 있음.
- 일본은 다양한 법의 적용을 통해 상호보완을 지향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 보도 제도를 합법인 「기회제공형」으로 적용하여 선도와 지도를 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
- 중국은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인 〈중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중국미성년자보호법〉을 살펴봐도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법적 규정이 처벌중심이며 자율규제에 대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임.

2)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및 영향

-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과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성의식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빈도가 증가하여도 성행동이 완화되며, 청소년의 성의식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성행동으로 영향을 미침.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방과 공유가 확산됨과 동시에 성의식이 개방화되고, 부정적 성관련 행동들이 증가함.
-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 개방화를 통해 부정적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의식이 개방화될수록 부정적 성행동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완화하는 역할로 스마트폰 이용을 매개효과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는 최종 연구모형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음란채팅이 증대확산 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음란채팅 이용은 성 상품화를 확대·재생산 시키는 역할을 함.

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에 관한 탐색

-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음.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성 상품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동시에 청소년들의 의식 안에 성 상품화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음.

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결과, 비전은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시스템 구축’,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정책영역으로는 교육, 홍보를 중심으로 한 예방정책, 이용자보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보호정책, 그리고 감독, 단속, 공급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집행정책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음.

4. 정책제언

- Blessing-Family Project: 성 상품화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젝트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역기능 그리고 성 상품화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Blessing-Family Project, 즉 정부주도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통일된 교육, 효율적인 교육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인 프로젝트 방향은 1) 미디어교육과 성교육의 정규교과 신설과 담당 교사 양성 및 배치 2) 학부모 대상 Blessing-Family 교육 활성화, 그리고 3) 홍보로 구성될 것임.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의 심의기구를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도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담기구 신설 또는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1조(회의 및 운영) 및 대통령령,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는 등의 법령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의 통일성과 체계성 그리고 일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자율규제를 통상적 의미에서 이해할 때 정부는 그러한 규제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두고, 청소년보호법에서 드러나듯 사후에 위반여부를 검사하여 시정명령(45조)이나 과징금(54조) 또는 58조와 59조의 경우처럼 법적처벌을 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자율규제의 목적이 자율규제의 실제적

실천에 있다면 단지 사후감독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험적 현실이 있음. 따라서 개인의 자의성만이 아니라 자율규제로의 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가 필요함. 규제된 자율규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사전검열이 아닌 사전지도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실질적 이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사후규제보다 선규제를 통해 자율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칭)’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41조 2항을 개정하거나, 제41조의 3을 신설하여 자율규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보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선정하여 공인할 수 있음. 규제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율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매개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보호의 실질적 예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줌. 구체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을 줄여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결과적으로 유연성과 현실성을 우선하는 기업의 요구와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비행이 스마트폰을 통해 좀 더 용이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래와 같은 선도 방식으로는 비행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유도수사, 함정수사 등 가능한 수사방식을 법적 한계 내에서 동원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유인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선도 및 계도를 위한 비행 예방 차원의 수사목적으로 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첨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실시할 경우 사이버잠복 선도제도는 사이버 순찰의 존재와 실질적인 주의와 지도를 통해 스마트폰의 채팅앱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조건만남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매수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실정에서, PC 판매자는 물론 스마트폰 판매자에게도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처럼 스마트폰의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의무화와 설명의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계몽에 긍정적 기여

○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조건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포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적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물이 청소년 성의식과 성행동의 왜곡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예방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의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청소년에 유해한 선정적 뉴스의 생산을 지양하고 환경감시라는 언론고유의 기능을 지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방송, 영화, 신문, 도서, 광고, 게임, 음악, 통신, 공연 등 다양한 매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가 정부부처별, 심의기관별로 나뉘어져 행해지고 있음. 통합적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져 왔지만, 다양한 관련 법 정비의 어려움과 정부부처의 이견 등이 있음. 문제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망을 통한 집중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음. 다시 말해 매체와 서비스는 융합 또는 통합되어가고 있는 반면, 관리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중복심의와 심의의 불일치가 나타남. 수사권이 있는 CEOP(Child Exploitation & Online Protection Center)와 연계된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특히 성적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본 연구를 통해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인 영상물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한 확산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의 도구로 이용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함은 물론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 청소년의 성의식이나 성행동이 왜곡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예방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현재 방통위와 사이버수사대의 네트워킹의 문제로 신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신고방법도 복잡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임. 또한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만 하고 성매매사이트 신고시 패쇄 조치에 그칠 뿐 행정처벌을 할 수 없음. 나아가 방통위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접했을 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위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도 있음.

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상호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즉 신고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사이트 폐쇄와 함께 수사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필요적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성적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비효율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사이버 성매매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으나, 증거 확보의 곤란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형사책임을 피할 의도로 대부분 연합 사이트에 업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광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찰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음란채팅을 조장하는 채팅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법적 제재와 단속이 필요함.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은 랜덤채팅이 성매매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개연성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것임. 이를 위해 법적으로 본인인증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방안은 경제논리와 직결됨으로 실효성이 높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 이탈을 그 가능성에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2014. 12.10~12.11년 런던 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되는 세계 정상 회의(온라인 CSE 정상회의)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 56개국 대표, 24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적 공조체계가 시행되는 바 2015년의 제 1단계에는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 적발을 위한 보편적 분류 시스템 개발 및 2015년 여름까지 인터폴의 아동 납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가 공조하며, 인터넷기업과 NGO가 공조하여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인터넷 상의 아동의 성적 학대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발견 시 즉각 통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여행 또는 인터넷사용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제 2단계인 2016년도에는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DB 또는 국제 DB링크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원 확인 능력을 증대하고,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공동표준에 의해 색출하여 해시값 목록을 만든 후 해시값을 공유하도록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색출, 제거할 것임. 나아가 각국은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의 소지, 배포,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상에서 모든 아동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동영상)를 제거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피해자를 찾아내고 구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전 세계 법 집행 기관 간의 강화된 공조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문제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5
1. 성 상품화 개념 및 문제점	17
2. 청소년 성 상품화의 배경	22
3.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	24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26
5. 스마트폰과 청소년의 성 상품화	29
6. 청소년 성 상품화의 영향	34
III. 국내외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	39
1. 국내	41
2. 독일	65
3. 영국	82
4. 미국	101
5. 일본	111
6. 중국	141
IV.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영향 분석	149
1. 조사 개요	151
2. 조사 결과	163
3. 소결	293

V.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297
1. 조사 개요	299
2. 조사결과	305
3. 소결	360
VI.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363
1. 조사개요	365
2. 조사결과	370
3. 소결	397
VII.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401
1. 연구결과	403
2. 정책제언	413
참 고 문 헌	503
부 록	519
부록 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설문지 ...	521
부록 2.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심층면접 설문지	533
부록 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1차 조사 설문지	537
부록 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조사 설문지	543
부록 5.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심층면접 결과	549

표 목 차

[표 I -1] 설문조사 개요	11
[표 I -2] 질적 연구개요	12
[표 I -3] 자문회의 내용	13
[표 II -1] 성 상품화의 유형과 경로	19
[표 II -2]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정보획득	31
[표 II -3]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커뮤니케이션	31
[표 II -4]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여가활동	32
[표 II -5]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35
[표 II -6] 유해매체 이용 장소 비교	36
[표 II -7]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	38
[표 II -8]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8
[표 III -1]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42
[표 III -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노출 위험 전체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	43
[표 III -3] 세부 등급기준	46
[표 III -4] 월별 통신심의신청 민원 위반내용별 현황	48
[표 III -5] 월별 통신심이신청 민원 정보제공유형별 현황	48
[표 III -6]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정책	50
[표 III -7] 등급분류 세부기준	58
[표 III -8]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60
[표 III -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13.12.27)	62
[표 III -10] 청소년보호법 체계	69
[표 III -11] 영국의 아동포르노 소지, 제작, 유포 송치현황(2006-2012)	85
[표 III -12] 영국 인터넷 상 아동 성유인 경찰 적발 사례 (2004-2012)	86
[표 III -13] 영국 성범죄법 위반 사례 중 인터넷 이용 아동대상 성범죄 유인 범죄 기소 및 유죄건 수 (2006-2012)	87

[표 Ⅲ-14]	아동대상 성적 유인 사범에 대한 형량	90
[표 Ⅲ-15]	아동 외설 사진 소지, 제작, 유포,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	90
[표 Ⅲ-16]	영국 인터넷 안전위원회 인터넷 부모통제 실행 규약	91
[표 Ⅲ-17]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청소년 유해 성 상품화 이미지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92
[표 Ⅲ-18]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옥외광고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97
[표 Ⅲ-19]	일본의 복지사범의 법령별 송치건수	112
[표 Ⅲ-20]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113
[표 Ⅲ-21]	일본 만남사이트규제법 위반	114
[표 Ⅲ-22]	일본 아동매춘·아동포르노규제법 위반의 피해아동·청소년	114
[표 Ⅲ-23]	일본경찰청의 사이버 보도 추진 지침	125
[표 Ⅲ-24]	동경도·오사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127
[표 Ⅲ-25]	동경도·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129
[표 Ⅲ-26]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132
[표 Ⅲ-27]	만남사이트 규제법	133
[표 Ⅲ-28]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135
[표 Ⅲ-29]	일본의 소년경찰 자원봉사자의 구분과 활동 내용	137
[표 Ⅲ-30]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1-30호	138
[표 Ⅲ-31]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144
[표 Ⅲ-32]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	145
[표 Ⅲ-33]	인터넷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146
[표 Ⅲ-34]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 처리 방법	146
[표 Ⅳ-1]	모집단 지역별 학생수, 학교수 : 중학교	152
[표 Ⅳ-2]	모집단 지역별 학생수 : 고등학교	152
[표 Ⅳ-3]	모집단 지역별 학교수 : 고등학교	153

[표 IV-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4,344명)	154
[표 IV-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144명)	154
[표 IV-6] 조사완료 학생 수(4,356명)	156
[표 IV-7] 조사완료 학급 수(144개)	156
[표 IV-8] 사전조사 응답자 수	157
[표 IV-9] 설문조사 내용	161
[표 IV-10] 조사대상 특성	164
[표 IV-11]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165
[표 IV-12]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	168
[표 IV-13]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	170
[표 IV-14]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 +3순위)	172
[표 IV-15]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기타)	173
[표 IV-1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174
[표 IV-1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	177
[표 IV-18]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	179
[표 IV-19]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181
[표 IV-20]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83
[표 IV-2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185
[표 IV-22]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	187
[표 IV-2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189
[표 IV-2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191

[표 IV-25]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	193
[표 IV-2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
[표 IV-2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197
[표 IV-2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199
[표 IV-2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201
[표 IV-3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203
[표 IV-3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	205
[표 IV-32]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207
[표 IV-33]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09
[표 IV-34]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11
[표 IV-35]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13
[표 IV-36]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15
[표 IV-37]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217
[표 IV-3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219
[표 IV-39]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221
[표 IV-40]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223
[표 IV-41]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 안 된다	225
[표 IV-42]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7
[표 IV-43]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229

[표 IV-44]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231
[표 IV-45]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3
[표 IV-46]	스마트폰 이용 여부	235
[표 IV-47]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236
[표 IV-48]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238
[표 IV-49]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기타)	240
[표 IV-50]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 음란물 주로 접촉하는 경로	241
[표 IV-51]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 음란물 접촉 경로(기타)	243
[표 IV-52]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여부	244
[표 IV-53]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횟수	246
[표 IV-54]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공유 경로	247
[표 IV-55]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공유 경로(기타)	248
[표 IV-56]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여부	250
[표 IV-57]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횟수	251
[표 IV-58]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경로	252
[표 IV-59]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경로(기타)	254
[표 IV-60]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 경험 여부	255
[표 IV-61]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 경험 횟수	256
[표 IV-62]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야한 대화를 한 가장 큰 이유	257
[표 IV-63]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를 한 가장 큰 이유(기타)	259
[표 IV-64]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	259
[표 IV-65]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기타)	261
[표 IV-66]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송수신 여부	262
[표 IV-67]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송수신 횟수	263
[표 IV-68]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수신 시 주된 반응	264

[표 IV-69]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여부	266
[표 IV-70] 신뢰도 분석	272
[표 IV-71]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273
[표 IV-72]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274
[표 IV-73] 적합도 지수	275
[표 IV-74] 각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적합지수	276
[표 IV-75] 잠재요인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277
[표 IV-76] 전체 잠재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적합지수	278
[표 IV-77] 전체 잠재요인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279
[표 IV-78]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결과	280
[표 IV-79] 연구모형 적합성 평가	281
[표 IV-80] 연구가설 검정 결과	283
[표 IV-81] 연구가설 검정 결과	284
[표 IV-82] 각 모형별 비교	285
[표 IV-83] 각 모형별 검정결과 비교	286
[표 IV-84] 각 모형별 비교	287
[표 IV-85] 스마트폰 촬영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288
[표 IV-86] 스마트폰 공유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289
[표 IV-87] 음란채팅 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291
[표 IV-88] 유인메시지 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292
[표 V-1] 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300
[표 V-2] 심층 면접 질문 주요 내용	302
[표 V-3] 심층 면접조사 방법	304
[표 IV-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366
[표 IV-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367
[표 IV-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368

[표 IV-4]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한 상대적 동의하는 정도 가중치	382
[표 IV-5]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상대적 동의하는 정도 가중치	383
[표 IV-6]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85
[표 IV-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86
[표 IV-8]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이용자 보호)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89
[표 IV-9]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모니터링) 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93
[표 IV-10]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감독·단속) 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95
[표 IV-11]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공급자 처벌)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396
[표 VII-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추진과제	411
[표 VII-2] Blessing-Family Project 추진절차	418
[표 VII-3] Blessing-Family Project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19
[표 VII-4] 영국 인터넷 안전위원회 인터넷 부모통제 실행 규약	420
[표 VII-5]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청소년 유해 성 상품화 이미지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421
[표 VII-6]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관	423
[표 VII-7] 선정성·음란성에 관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424
[표 VII-8]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추진절차	428

[표 VII-9]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31
[표 VII-10]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추진절차	441
[표 VII-11]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44
[표 VII-12]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추진절차	451
[표 VII-13]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52
[표 VII-14] 일본경찰청의 사이버 보도 추진 지침	453
[표 VII-15]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추진절차	458
[표 VII-16]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60
[표 VII-17]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462
[표 VII-18]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절차	467
[표 VII-19]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68
[표 VII-20]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추진절차	471
[표 VII-21]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72
[표 VII-22]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추진절차	477
[표 VII-23]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78
[표 VII-24] 동경도·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478

[표 VII-25]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추진절차	482
[표 VII-26]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83
[표 VII-27]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추진절차	486
[표 VII-28]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87
[표 VII-29]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 정상 회의 선언문	489
[표 VII-30]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추진절차	493
[표 VII-3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49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모형	6
【그림 I-2】 연구절차	14
【그림 II-1】 인격과 성의 통합성	20
【그림 II-2】 인격과 성이미지의 통합성	21
【그림 II-3】 세계 스마트폰 사용 상위 15개국	29
【그림 II-4】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 이용	30
【그림 II-5】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이유(중복응답)	30
【그림 II-6】 TV 시청 중 동시 이용 행태	30
【그림 II-7】 스마트폰 이용 과몰입 관련 인식	32
【그림 III-1】 성범죄 동향	44
【그림 III-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45
【그림 III-3】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인터넷 모니터링 업무 절차도, 여성가족부. (2014)	57
【그림 III-4】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두 축	72
【그림 III-5】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활동구조	77
【그림 III-6】 FSM과 FSF	78
【그림 III-7】 FSM의 운영원리	80
【그림 III-8】 FSM의 활동	81
【그림 III-9】 CEOP 인터넷 주요 공조 사이트	95
【그림 III-10】 Parent port 웹사이트 http://www.parentport.org.uk	96
【그림 III-11】 청소년 비행의 사회환경 요인	115
【그림 III-12】 JK 리플레의 이미지	116
【그림 III-13】 중고 속옷 거래 사이트	118
【그림 III-14】 아동의 성을 상품으로 하는 신종영업의 문제점	120
【그림 III-15】 정부에게 바라는 아동의 성을 상품으로 하는 신종영업 대책	121
【그림 III-16】 사이버 보도(補導)의 구조	124

【그림 Ⅲ-17】 정부에 바라는 인터넷 유해정보 대책	131
【그림 Ⅲ-18】 미성년자의 인터넷에 대한 문제 인식	142
【그림 Ⅲ-19】 성별에 따른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 인식	143
【그림 Ⅳ-1】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	167
【그림 Ⅳ-2】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	169
【그림 Ⅳ-3】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	171
【그림 Ⅳ-4】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3순위) ...	173
【그림 Ⅳ-5】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176
【그림 Ⅳ-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인식 분포도)	178
【그림 Ⅳ-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성별 차이)	178
【그림 Ⅳ-8】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인식 분포도) ...	180
【그림 Ⅳ-9】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성별 차이)	180
【그림 Ⅳ-10】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인식 분포도) ...	182
【그림 Ⅳ-1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성별 차이) ...	182
【그림 Ⅳ-12】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184
【그림 Ⅳ-13】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184
【그림 Ⅳ-14】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186
【그림 Ⅳ-1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성별 차이)	186
【그림 Ⅳ-16】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인식 분포도)	188

【그림 IV-17】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성별 차이)	188
【그림 IV-1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인식 분포도)	190
【그림 IV-1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성별 차이)	190
【그림 IV-2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인식 분포도)	192
【그림 IV-21】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성별 차이)	192
【그림 IV-2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인식 분포도)	194
【그림 IV-2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성별 차이)	194
【그림 IV-2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196
【그림 IV-25】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196
【그림 IV-2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인식 분포도)	198
【그림 IV-2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성별 차이)	198
【그림 IV-2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200
【그림 IV-2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200

【그림 IV-3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인식 분포도)	202
【그림 IV-31】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성별 차이)	202
【그림 IV-3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204
【그림 IV-3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204
【그림 IV-34】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 만들어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206
【그림 IV-3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 만들어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206
【그림 IV-36】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인식 분포도)	208
【그림 IV-37】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성별 차이)	208
【그림 IV-38】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인식 분포도)	210
【그림 IV-39】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성별 차이)	210
【그림 IV-40】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	212
【그림 IV-41】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	212
【그림 IV-42】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	214

【그림 IV-43】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	214
【그림 IV-44】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인식 분포도)	216
【그림 IV-45】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성별 차이)	216
【그림 IV-46】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인식 분포도)	218
【그림 IV-47】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성별 차이)	218
【그림 IV-4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인식 분포도)	220
【그림 IV-49】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성별 차이)	220
【그림 IV-50】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인식 분포도)	222
【그림 IV-51】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성별 차이)	222
【그림 IV-52】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인식 분포도)	224
【그림 IV-53】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성별 차이)	224
【그림 IV-54】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인식 분포도)	226
【그림 IV-55】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성별 차이)	226
【그림 IV-56】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식 분포도)	228
【그림 IV-57】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성별 차이)	228
【그림 IV-58】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인식 분포도)	230

【그림 IV-81】 스마트폰 공유경험 없음	290
【그림 IV-82】 음란채팅경험 있음	291
【그림 IV-83】 음란채팅경험 없음	291
【그림 IV-84】 랜덤채팅 유인메시지 경험 있음	292
【그림 IV-85】 랜덤채팅 유인메시지 경험 없음	293
【그림 VII-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목표 및 정책영역	410
【그림 VII-2】 단계별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414
【그림 VII-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도	430
【그림 VII-4】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	438
【그림 VII-5】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운영모델	439
【그림 VII-6】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활동영역	440
【그림 VII-7】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법적 토대	442
【그림 VII-8】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민간자율규제기구의 관계망	444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적으로 성 상품화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상존해왔다. 특히 자본이 곧 권력이며, 소위 ‘몸값’이 곧 인격의 척도를 결정하다시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성 상품화는 더욱 그 규모와 방식이 다양해지며 또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 상품화의 문제와 달리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 성 상품화 중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가 핵심 정책 사안으로 취급되어 많은 연구를 통하여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TV, 뮤직비디오, 인터넷 나아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아이돌, K-POP 등 한류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와 맞물려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의 경우 그 유형과 경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접하는 기사는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를 특정 걸그룹의 노출이 지니는 심각성 정도로만 설명하는 정도이다. 셋째,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에는 수용자로서의 문제와 생산자로서의 문제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성 상품화의 경우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성 상품화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왜곡된 성의식과 성가치관이 형성된 청소년들이 다시 이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성세대가 야기한 성 상품화의 문제가 청소년들을 성 상품화의 피해자로 만들며 동시에 가해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이중적 악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되지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못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상업성, 여성차별적인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현실적인 정책의 제언과 실질적 정책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시대가 있다. 스마트 시대라는 용어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상적으로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시기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멀티미디어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심화된 N세대(Network Generation)나 앱세대(App Generation)가 주류를 이루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 즉 후기 정보화사회를 특징하는 용어이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Ubi-quitous', 즉 '어디에나 있는'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생활용품 안에 내장된 인공지능으로서의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핵심은 그물망과 같은 연결이며 이는 곧 N세대와 앱세대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정보와 기능을 앱을 통해 다운받고 스마트폰을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들을 통해 정보의 교환과 확산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을 초월한 콘텐츠의 수용과 거의 무제한적인 콘텐츠의 유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는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일례로 문화 경쟁력을 빙자한 선정적인 아이돌 그룹의 공연 등이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며 확산·재생산 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유해물이 대중매체를 통해 수용되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화의 소재가 됨과 동시에 급속히 확산된다. 또한 소수의 청소년이 성을 직접적으로 매매 하는 단계를 지나 간접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누드사진 판매, PC에서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 자신의 분비물이 묻은 속옷을 파는 행위, 키스와 포옹을 파는 행위, 몸매피팅모델 등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가치관으로 인한 성 상품화가 단순히 과거에 비해 양적 증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질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채 경제논리만을 고려하는 대중매체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기대되던 사이버 공간이 결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의식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의식에 기초한 대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니도록 만들고,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체의 성의식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성윤숙, 2010).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스마트폰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형식적 개념이다. 실제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 상품화’자체가 아니라 성 상품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영상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 상품화의 구체적 사례를 특정해서 그 사례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 상품화의 구체적 모델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하여 그러한 영상물과의 접촉이 스마트폰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청소년에게 미치는지 추적해봄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스마트폰과 결합했을 때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핵심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지니는 문제점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와 스마트폰의 결합에 있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은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의 구체적 모델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가 스마트폰과 결합할 때 청소년의 성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위 앱세대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유형으로 접하는지,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매개체로서의 영향력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그러한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를 경험할 경우 청소년의 성의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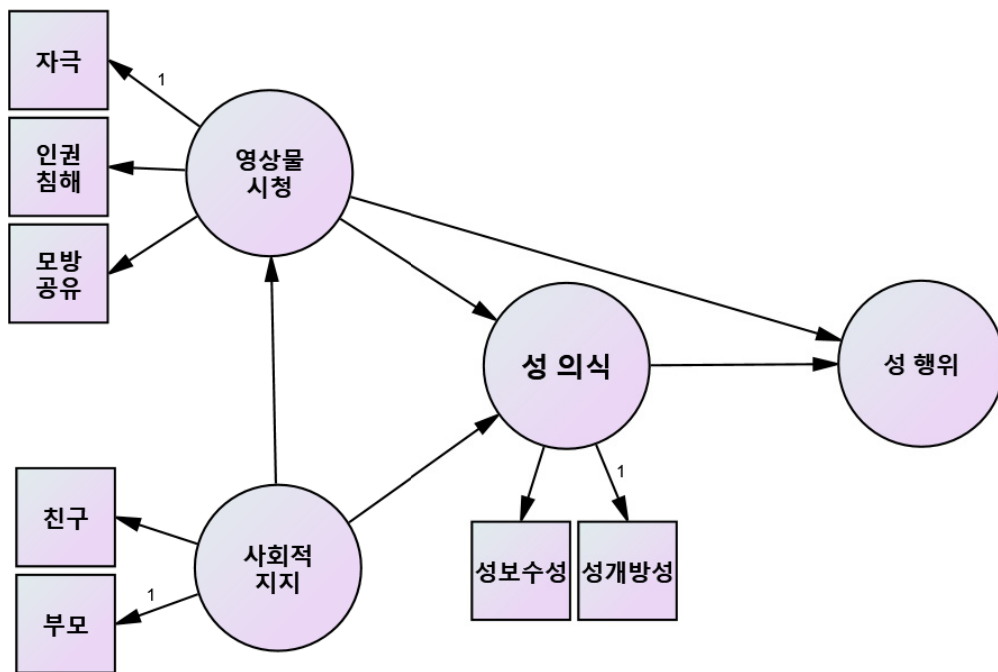
둘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한계를 분석, 종합, 정리한다. 성 상품화와 관련한 내용이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사용될 때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수용자로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러한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성매매나 성인물·음란물 유포 등 청소년 스스로 성 상품화의 생산자 및 전달자가 되는 현실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왜곡된 성의식이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유형의 새로운 문제점을 낳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한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정책 제언의 구체적 대상은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에 대해 특정모델로 사용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아니라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자체이며 그러한 상품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산 강화시키는 스마트폰에 있다. 이상 본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림으로써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청소년의 실질적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부모 혹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할 때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의식이 성행동에 작용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러한 영향관계에 스마트폰 이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 상품화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수립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 1.1.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자극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모방·공유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1.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성의식 개방정도가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4.1. 청소년의 성개방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4.2. 청소년의 정보수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1.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자극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5.2.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5.3.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모방·공유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은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6.1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사용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2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촬영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3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공유를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4 청소년의 성의식은 음란채팅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5 청소년의 성의식은 유인메시지를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내용

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실태와 영향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 상품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의 실태를 분석한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포되는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가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 내지 성의식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청소년의 왜곡된 성 가치관과 성의식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성 상품화의 생산자 및 전달자가 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유해물가운데 성 상품화와 관련 없는 폭력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조사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부모 혹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할 때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의식이 성행동에 작용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러한 영향관계에 스마트폰 이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한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사회적 지지, 성의식,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경험 여부,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매체와 콘텐츠 및 처음 접한 시기,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접촉경로,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공유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대화 경험여부 및 횟수, 주된 동기, 현재 이용 채팅 어플,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 메시지 송수신 경험 여부, 횟수, 수신후의 느낌,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유형과 경로 파악

스마트 시대의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유형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사이버기기가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를 어떤 경로로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심층면접조사 조사내용은 첫째, TV의 성 상품화 콘텐츠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떻게 연계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경로파악, 둘째, 성 상품화 유형, 셋째, 성 상품화의 문제점, 넷째, 성 상품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구의 일차적 초점은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포르노그래피나 가출청소년성매매 같은 문제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의 목적이 대중매체에서 발생하는 성 상품화와 그것이 스마트폰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바, 청소년과 관련한 별도의 성문제는 독립적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지 결과적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된다.

3) 국내외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

국내외의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국내의 성 상품화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성 상품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현황과 민간부분의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제 등을 분석한다. 외국의 성 상품화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방지 대책 관련 법제도와 수행기관의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학계, 현장, 행정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1, 2차에

결쳐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1차 조사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 개념, 비전과 목표,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환경진단과 변화에 대한 전망,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점, 청소년 성 상품화 정책의 개선점과 향후 정책방향,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과제,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 및 한계점, 효율화 방안,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대책 등이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취합하여 비전 및 목표, 정책영역 설정 안에 대한 의견, 정책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한 동의정도 및 중요도,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 대책과 그러한 성 상품화를 강화시키는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제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및 정책 로드맵 제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확산되는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에 대해 청소년의 성 의식이나 성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 따라 3개의 상위영역과 6개의 하위영역별(예방정책 : 교육, 홍보, 보호정책 : 이용자보호, 모니터링, 집행정책 : 감독·단속, 공급자 처벌)로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를 2~3개씩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과제별로 정책방향, 정책의 제안 배경, 주요 내용, 추진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예산 및 조달방법, 해외사례,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자문과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방송국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에 관한 기존 조사 자료나 연구 자료를

분석한다.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및 영향에 관한 분석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수집과 더불어 관련 이론 등 다양한 학술연구를 고찰한다.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국내외의 관련 법·정책 등에 관한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2) 설문조사

2014년 6월 12일 ~ 7월 15일 사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1~3학년) 4,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표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 5월 10일 ~ 5월 11일 2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교급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갱서베이 방식으로 1차 진행하며, 갱서베이 후 자세한 의견 파악을 위해 그룹별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 아이돌스타의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 성의식, 성행동 등을 포함하여 총 58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I -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중·고등학생(1~3학년)	
표집틀	2013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중·고등학생 4,344명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14년 6월 12일 ~ 7월 15일	

3) 심층 면접조사

2014년 5~8월 사이에 눈덩이표집을 통해 성 상품화 피해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등 학교밖 청소년, 학생청소년 등 3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문제점, 성 상품화 유형 및 경로, 성 상품화 유입 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자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표 I-2 질적 연구개요

주요 요소	청소년 성 상품화 대상 청소년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청소년위기교육센터, 대안교실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에게 의뢰
면담참여자 수	30명
표집방법	눈덩이표집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성취도, 가출경험, 비행경험, 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음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2시간, 1~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자료 기록 및 녹취 실시

4) 전문가 의견조사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도출과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스마트 산업종사자, 방송국 PD 등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문제점 도출, 성 상품화 환경진단 등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5) 국내외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사례 조사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및 대책에 관한 국내외의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성 상품화 예방 법제도 및 정책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 개정안의 입법방법론에 관한 조언, 조문에 나타난 구성요건이나 형량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률규정들이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 방법 등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 현황 및 대응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6)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으로서 성 상품화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장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토나 연구방향 자문, 청소년의 성 상품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가 집단토의를 실시하는 한편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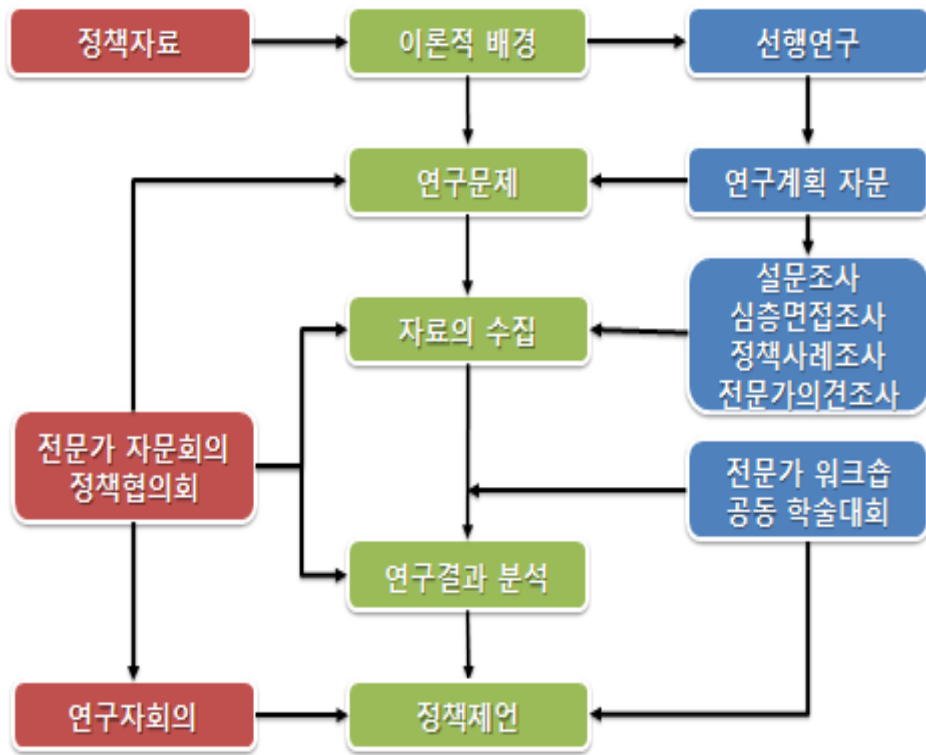
표 I-3 자문회의 내용

횟수	자문영역(내용)	비고
1	실행계획서 정책자문회의 (연구방향 설정)	
2	설문지심의를 위한 자문회의 (실태조사 설문지심의)	
3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4	국내외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법제도 및 정책동향 자문회의	
5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6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7)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사무처,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제도정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및 한국청소년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I-2】와 같다.



【그림 I -2】 연구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성 상품화 개념 및 문제점
2. 청소년 성 상품화 배경
3.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5. 스마트폰과 청소년의 성 상품화
6. 청소년 성 상품화의 영향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성 상품화 개념 및 문제점

1) 성 상품화의 개념

자본주의사회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상품화될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품화될 수 있는 범주에 '인간'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인간은 상품화될 수 없다. 비록 '몸값'이라는 용어가 현대인의 의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축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진 않는다. 이유는 인간존엄성 때문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인간존엄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칸트(I. Kant, 2001)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특정 목적을 위해 수단화될 수 없으며 항상 목적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모든 가치위에 상위로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다. 만약 이 절대적 가치의 소유자인 인간을 수단화할 경우 그는 타인의 목적을 위해 마치 사물처럼 도구화된다. 이렇게 사물화된 존재에겐 자유가 존재할 수 없고,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야 말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을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자유가 개인에겐 없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보장된다. 하지만 그 자유 역시 맹목적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유, 즉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근대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인간의 기계화나 자본주의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인간의 상품화를 경계해 왔다. 고대사회의 노예제도처럼 인간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용납될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절대가치로 간주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물화, 즉 인간소외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상품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인간의 상품화와 성 상품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성 상품화는 무조건 비도덕적인 것일까? 나아가 아이돌 스타의 공연과 같은 대중매체의 야한 동영상에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성 상품화일까?

먼저 성 상품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성 상품화란 말 그대로 정의하면 ‘인간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박충선, 정영숙, 2004)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인간의 성을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성 상품화의 이러한 일차적 개념정립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의 구체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¹⁾

성은 기본적으로 1) 생물학적 개념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Sex’와 2)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확립되는가를 말하는 ‘Gender’, 그리고 3) 남성/여성이라는 구별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것(sexuality)’ 전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적인 것’은 성적 상상, 성적 대상,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이미지 등 인간의 성적 욕망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Sexuality’로서의 성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성 상품화의 개념으로 차용되는 ‘성’ 역시 ‘Sexuality’를 뜻한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해에 기초하여 성 상품화를 새롭게 정의하면 ‘재화획득을 목적으로 성적 욕망, 상상, 행위, 이미지 등 성적 기호를 상품화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리된다.

그런데 상품화 되는 성 역시 일의적이지 않고 다의적이다. 무엇이 어떤 목적으로 상품화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211&cid=42140&categoryId=42140>

표 II-1 성 상품화의 유형과 경로

성 상품화의 종류	성 상품화의 방식		성 상품화의 경로
일차적 성 상품화 (접촉하는 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을 매개로한 성 상품화		성매매, 윤락, 유사성행위 등의 변태성 영업
이차적 성 상품화(보는 성)	적극적이지만 간접적인 방식의 성 상품화	성적흥분을 목적으로 한 육체의 시각적 전시	잡지나 스마트폰 또는 음란비디오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 즉 에로물, 포르노그래피 또는 누드사진 등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성 상품화	은폐된 형태로 성적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육체적 전시	미인대회, 연극, 전위예술, 행위예술 등을 통한 신체의 노출
		은폐된 형태로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육체의 이용	스마트폰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확산되는 성적 이미지, 섹시한 여성이나 꽃미남 또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나 광고 등

<표 I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은 그것이 몸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상품화되거나 몸의 직접적 접촉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화된다. 이 경우 전자를 일차적 성 상품화, 후자를 이차적 성 상품화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은 또한 적극적으로 상품화되거나 소극적으로 상품화된다. 여기서 적극적과 소극적의 구분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이나 이미지의 노출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신체 전부가 드러나는 경우, 후자는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성 상품화는 모두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신체를 노출하여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을 매개로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와 같은 경우, 둘째 적극적으로 신체를 노출하지만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포르노그래피처럼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소극적으로 신체의 일부만을 노출하지만 그 정도가 선정적인 이유로 성적 욕망은 자극하되 역시 간접적으로만 성이 상품화되는 경우이다. 나아가 이 세 번째의 경우 역시 미인대회나 연극, 전위예술 등에서 보이는 경우처럼 동일한 공간 내에서 직접 시각적인 성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실, 1998; 신선미, 정태연, 2005; Featherstone, 1991 재인용 및 부분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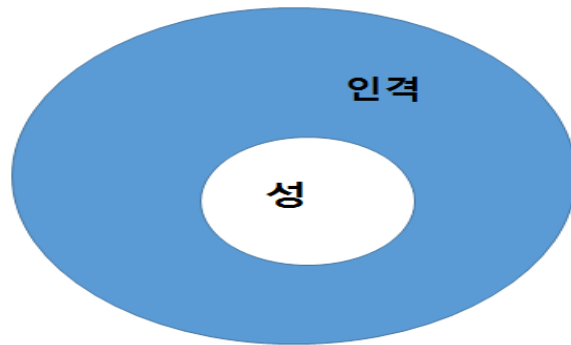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성 상품화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 II-1>의 이차적 성 상품화 가운데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성 상품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TV와 케이블 TV,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는

성적 이미지, 즉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육체의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 방법론적으로 아이돌 스타와 같은 청소년들의 성적 이미지에 국한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협의의 관점에서 성 상품화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 상품화는 아이돌 스타의 공연과 같은 다양한 성적 이미지를 인간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인 형태의 제품으로 설계 및 생산하여 TV와 케이블 TV의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촉발시킴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2) 성 상품화의 문제점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문제는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가에 있다. 개인이 자신만의 사적공간에서 성적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공공질서에 부합하는,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몸이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성매매의 경우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성구매자에 의해 한 존재가 일정 시간동안 성적유희의 대상, 즉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혹자는 성과 개인의 인격은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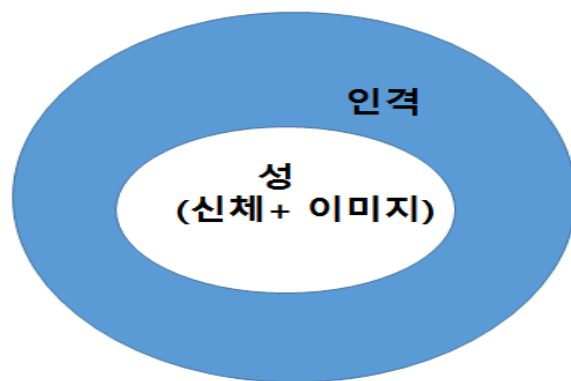


【그림 II-1】 인격과 성의 통합성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다. 인간의 가치는 개인의 다양한 요소들로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은 인격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인격과 분리되어 상품화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할 경우 인격의 상품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렇게 개인의 인격이 몸과 함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인간존엄성이 훼손된다.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매매를 통한 인간의 사물화, 즉 인간소외가 도덕적,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직접적 성의 상품화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간접적 성의 상품화는 어떨까? 역시 이 경우도 성의 오용(김규원, 1997)을 통한 존엄성의 침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성적 이미지의 상품화는 성매매처럼 특정 개인이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격의 도구화를 의미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격의 도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광고나 드라마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주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과거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기초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을 성 상품화의 대상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김정인, 최상진, 김영미, 2001). 물론 최근에는 남성도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다. 소위 ‘꽃미남’, ‘짐승돌’, ‘섹시돌’이라고 불리는 미소년들의 성적 매력 역시 상품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인쇄매체에서 성 상품화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는 남·여 모두의 시각적 자극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섹시미’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접적 성 상품화 역시 비도덕적인 이유는 실제 몸이 아닌 성적 이미지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적 가치 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 방송에서 가끔 보도되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누드사진이 유출될 경우 당사자는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이해하고 또 공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개인의 동의 없이 그런 사진을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II-2】 인격과 성이미지의 통합성

결국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은 성적인 신체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포함되며 모두 인간의 인격적 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 상품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성 상품화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노출을 시도하거나, 누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선정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P2P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 하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클럽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그리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를 통해 수용되고 또 재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성 상품화의 중심에 10대 아이돌 그룹이 있다. 적지 않은 그룹이 ‘대중으로부터의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종속되어 성적 이미지로 상품화되고 있다.

성 상품화의 문제는 상품화하는 행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품화를 통해 미치는 영향 역시 유해하다. 성 상품화를 통해 유포되는 성적 이미지들이 개인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극단적일 경우 성매매나 성범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청소년을 ‘통한’, 그리고 청소년을 ‘향한’, 그래서 결국 청소년에 ‘의한’ 성 상품화가 발생하도록 조장하는 대중매체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유포시키고 있는 스마트폰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성 상품화의 배경

1) 개방적 성태도와 성행동 허용성

청소년기는 의존적인 아동기를 지나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성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는 욕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율성과 사회관계 형성 욕구는 청소년의 성문화와 상관성을 가진다(양성은, 조주영, 2005). 1991년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 권리강조,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선택적 가치의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성숙은 청소년의 성 주체성, 성 의사결정에

대한 개방적 청소년 성문화의 정착을 가속화 하였다.

기성세대에 비하여 다른 의식, 행동, 생활양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청소년의 성 상품화 행동에 기여한다. 기성세대는 성에 대하여 감추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대 청소년들은 영양상태의 개선과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생리적 신체발달에 따른 사춘기 시작 시기가 빨라져 성에 대한 관심이 이른 시기에 형성되고(김신정, 이정은, 김성희, 강경아, 2012), 개방적인 성태도와 성행동 허용성이 청소년들에게 유포된 기반위에 성 지식이 또래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쉽게 습득한 결과 혼전 순결과 같은 사고 자체를 거부하고 허용적인 성행동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윤정, 이창식, 2005). 즉 기성세대가 청소년 시기의 이성 친구 교제, 스킨십, 성경험에 관하여 부정적인 반면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와 성경험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는 또래를 이상시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성규범 변화는 청소년의 실제 성경험 비율의 급격한 증가, 청소년 낙태 빈도 상승, 십대 미혼모 발생,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사회문제로 드러난다(청소년백서, 2013:17).

2) 유해매체

대중매체는 공공영역으로서 사회적 계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순기능적으로 역할 할 때 청소년의 문화·정치·사회·문화·오락의식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화·사회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긴장완화에 기여하며, 넓은 환경과 세계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경험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공공영역의 지도성을 잃고 역기능을 할 때 지나친 자극과 흥분을 유발하게 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유상미, 2009). 이렇듯 성숙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대중매체가 성적왜곡과 학대, 폭력성, 퇴폐적인 문화 등 유해매체 역할을 할 때 유해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자극은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원인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해매체의 개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는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

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⑥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형으로는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 방송 프로그램, 신문(인터넷 신문), 잡지·정보 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출판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전자 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광고 선전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유해 매체물이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청소년유해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①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②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③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⑤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⑥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⑦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⑧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 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⑩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⑪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이에겐 시민·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생존·발달·참여권 등 보편적 권리와 신체·정신적 능력을 발달시킬 보호를 받을 고유한 권리가 포함된다(UN 아동권리협약, 1989). 동 협약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은 청소년이 자신이 가진 재능·정신·신체적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생존 및 발달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여타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착취, 신체·정서·성 학대·방임과 유기·혹사·차별대우·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이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 개인·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 착취·학대·상품화의 대상이 되어 정당한 보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존 및 발달권리를 위협 받으며 자신의 학대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하는데도 제한을 받고 있다. 청소년기는 특히 호기심이 강하고, 윤리적 가치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유로 쉽게 자극받고, 영향 받으며 건전한 이성의 합리적 판단이 배제된 채 행동하기 쉬운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단순히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성적 기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을 도구화하여 유포되며 또 그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다시 역으로 가해자가 되어 왜곡된 성문화의 유포자가 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본인에게 고유한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대중매체에 의한 성 상품화는 사회적 학대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학대’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사회·환경적 특성을 의미하며, 빈곤에 기인한 열악한 의식주 환경 및 미흡한 교육제도, 그리고 조혼·미성년노동·성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포함된다(신선인, 2006 재인용). 방송·인쇄 매체에서 청소년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그렇지 못하던 성 상품화되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사회적 학대에 해당한다. 나아가 인터넷(P2P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클럽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그리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성폭력, 성매매로 이어지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성적착취에 해당하며 반인권적·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상업적 성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등 최빈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상품화가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유엔은 청소년 성 학대·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방지 세계대회』에서 청소년 성 착취 금지와 포르노그래피 제한 조치 등을 제시하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도 제2차 세계대회²⁾에서도 청소년의 상업적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할 정도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사회적 학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UNICEF, 2001).

2) 일본은 “원조교제”를 아동의 성적착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을 이루어 아동매춘과 음란물 금지법 제정, 아동을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성과 폭력 그리고 코미디 등의 코드로 어우러진 미디어의 오락기능은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감시기능이나 상관조정기능 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콘텐츠 생산자와 유포자로서의 대중매체가 지니는 딜레마가 있다. 바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다. 시청률이 곧 자본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오락기능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중매체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합리적인 결론은 중용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자본주의논리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단편적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성 상품화, 특히 광고 등을 통해 선정적인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관용적인 시각을 드러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광고보다는 누드, 누드보다는 성매매를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성에 대해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의식과 보수적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신선미, 정태연, 2005).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성 상품화는 성매매의 경우보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례로 2013년 데뷔한 아이돌그룹은 ‘레이디스코드’, ‘베스티’ 등 모두 20개 팀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두드러지는 그룹은 발견하기 어렵다. 요즘 인기 있는 4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의 경우 5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돌그룹은 섹시코드를 사용한다. ‘걸스데이’가 거기에 해당한다. ‘레인보우 블랙’의 경우는 심지어 멤버들이 세미 누드를 찍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 댄스를 할 때는 가슴과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다. 또한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는 소위 ‘찍벌춤’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몸짓 역시 등장한다. 그 뿐이 아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베드신이나 키스신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을 성 상품화할 경우 발생하는 핵심문제는 무엇보다 인권에 관한 것이다. 일례로 소위 ‘걸그룹’으로 대표되는 아이돌 그룹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콘셉트를 통해 상품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10대들은 수익성 창출을 위한 전략에 의해 구성되고 길들여진다. 소녀들의 경우는 섹시미, 순진무구, 청순함 등이 페르조나로 포장되고, 그렇게 포장된 이미지는 재화창출을 위해 도구화된다. 반면 소년들의 경우는 짐승돌, 또는 초콜릿 복근 등으로 상징화된다. 문제는 이렇게

대중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에 대해 성찰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성형을 해야 하며, 만들어진 이미지로 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수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선택되어졌다는 우월의식과 대중의 사랑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기획사가 시키는 대로 몇 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뿐이다. 삶의 의미나 자기 자신의 발견과 같은 고민은 생각할 여유도 없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생각은 차단당한 채 대량으로 시험되어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져 또 대량으로 유통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무한경쟁의 구도 안에서 오로지 기획사와 대중매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폐기되어 진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인가? 그것은 소위 섹슈얼리티로 강조되는 선정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섹시미와 관능적 유혹의 기호를 청순과 가련의 가면으로 살며시 은폐하고 있는 소녀의 몸이기 때문이다(이수안, 2011).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여성상이 깔려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적 여성상은 남성에게 의해 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즉 서양의 경우는 Lady가 창녀이고 동양은 현모양처와 기생이었다. 백설공주와 악한 여왕,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와 계모 등 동일한 패러다임은 늘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재현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이 현모양처를 기생보다 더 선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대상화되어 있었다. 단지 소유의 대상이나 욕망의 대상이나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는 소유하고 싶은 여성을 투영한 것이고, 기생은 당연히 욕망 방출의 여성상을 투사한 것이다. 그런데 남성적 시각이 늘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요부’라는 말은 실제 남성적 욕망이 여성의 이중적 요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소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걸그룹은 이상적이다. 순수와 청순의 기호는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소유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섹시와 관능미의 기호는 즐기고 싶은 욕망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이중적 욕망은 일례로 소녀 그룹에 열광하는 성인 남성 팬덤, 즉 삼촌 팬 그룹 현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김수아, 2009). 기존에는 소위 ‘몰리타 콤플렉스’의 의심을 받던 이들이 변태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전한 팬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팬층의 변화가 실제 소녀그룹의 실질적 이미지 변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소녀그룹의 성애적 이미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선정적 이미지가 팬들에 의해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인 남성 팬덤과 같은 부류의 현상은 소녀들을 통해 순수와 관능이라는 이중적 욕망을 경험하고 싶은 남성주의적 욕망의 은폐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오히려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청소년 성 상품화는 직·간접적으로, 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학대(신선인, 2006)와 다름없다.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상품화되어지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품화된 성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케이블TV나 영화를 통해 성적 콘텐츠를 접할 경우 그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성의식의 변질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 되고 심지어 강간과 같은 성폭력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사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재웅, 조의진, 2009). 물론 텔레비전과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성적 콘텐츠가 극단적 성의식을 조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웅, 조의진, 2009), 그것이 곧 그러한 성적 콘텐츠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극단적 성의식과 무관하게 성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식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Brown et al., 2002; Ward, 2003; 심재웅, 조의진, 2009 재인용).

성의식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돌 그룹을 보고 발생하는 모방심리 역시 문제이다. 여학생들의 다이어트 열풍이나 거식증 등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래서 신경성 거식증이 대부분 여학생들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선옥, 2003). 나아가 대중매체를 통해 상품화된 여성의 날씬한 몸매를 시정한 결과를 여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측정해보았을 때 성욕이 증가하고 신체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순, 김태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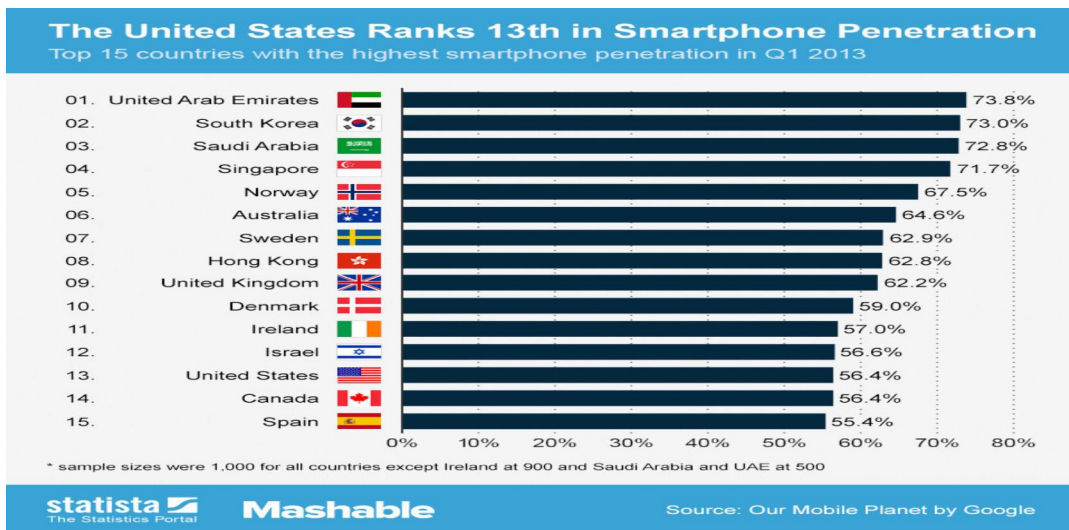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혹자는 성적 가치관 형성의 주체적인 조절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거나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있음을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주체적 가치판단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분별력을 기대하는 것은 다분히 이상적인 발상이다. 또한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실제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생물학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현실성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오영희, 2007). 따라서 그러한 교육은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성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심재웅, 조의진, 2009).

결론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상품화되어지는 청소년들이나 상품화된 이미지를 체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아직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허구적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 상품화의 콘텐츠가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이 빠른 속도와 규모로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스마트폰과 청소년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은 일반 PC와 비슷한 OS를 탑재하여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앱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3G, 4G, LTE, Wi-Fi를 사용하여 시공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한결 이용자 위주의 편의성이 강화되어 있다. 앱은 음성 및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통화 및 메시지), 사용자가 오락·학습 등을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기능(음악 및 동영상),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기능(정보검색), 사용자가 즐거움을 위해 놀이를 하는 기능(게임),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및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SNS)로 분류할 수 있다(윤형보, 왕보람, 박지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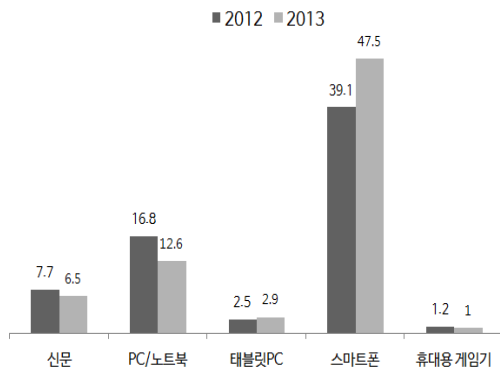
스마트폰은 2009년 11월 아이폰 출시 이후 2013년 7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 3,595만 명이며(조화, 2013:35) 이는 전 국민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랍에미리트(UAE)의 73.8%에 이어 세계 2위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4년엔 81%, 2015년엔 83%, 2016년엔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시놀로지, 2014, 【그림 II-3】 참조).



【그림 II-3】 세계 스마트폰 사용 상위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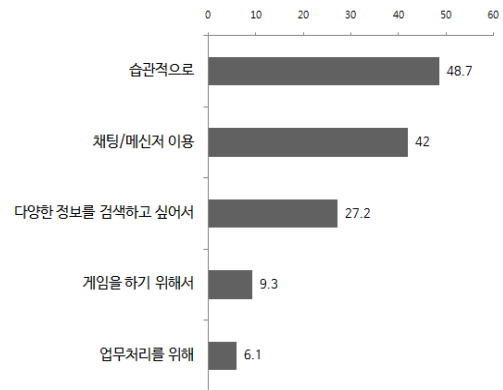
출처: Fox, Z. (2014.08.27). The 15 Countries With the Highest Smartphone Penetration in Mashable.
<http://mashable.com/2013/08/27/global-smartphone-penetration>

청소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2014)의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10대의 61.8%는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였고,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 이용으로 기존의 TV이용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4.6%로 나타났다. TV 시청 중 다른 매체 이용률은 스마트폰이 47.5%로 가장 높고 PC/노트북이 12.6%, 신문이 6.5%로 나타났다. TV 시청 중 다른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48.7%)'가 가장 높고, '채팅/메신저 이용(42.0%)'과 '다양한 정보 검색(27.2%)'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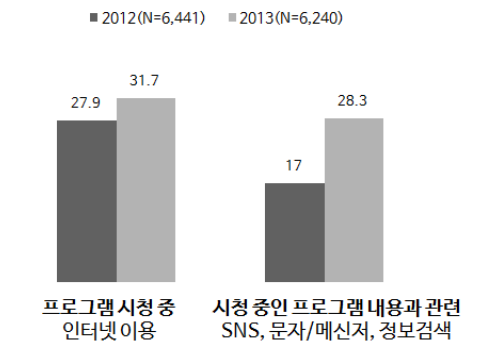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4)



【그림 II-5】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이유(중복응답)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4)

TV 프로그램 시청 중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 추세(27.9%→31.7%)이다. 특히, 시청 중인 TV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SNS, 문자메신저, 정보검색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17.0%→28.3%)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그림 II-6】 TV 시청 중 동시 이용 행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4)

또한 스마트폰만을 사용할 경우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웹서핑에 몰입하고(<표 II-2> 참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SNS·블로그·커뮤니티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으며(<표 II-3> 참조), 게임·오락·동영상 다운로드 빈도수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여(<표 II-4> 참조) 결국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스마트폰 이용 과몰입에 따른 문제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7】 참조).

표 II-2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정보획득

구분	기타 정보 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	뉴스	날씨	상품, 서비스 등 쇼핑 정보(소셜 커머스 포함)	교육· 학습 (어학, 사전 등)	금융·재테크 정보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전체	85.3	78.9	75.9	65.6	41.8	33.9	1.0
남성	83.6	84.3	77.8	64.0	39.8	40.9	0.6
여성	87.3	72.7	73.6	67.5	44.0	25.8	1.5
12-19세	82.8	64.3	62.2	58.8	51.1	8.4	3.2
20대	87.8	79.6	78.2	71.0	45.7	32.3	0.5
30대	84.8	84.0	79.0	69.4	36.9	40.2	0.4
40대	84.3	76.4	76.4	64.0	39.1	44.7	0.6
50대	85.6	79.0	80.7	54.5	35.0	39.1	1.2

출처: 조화(2013:41)

표 II-3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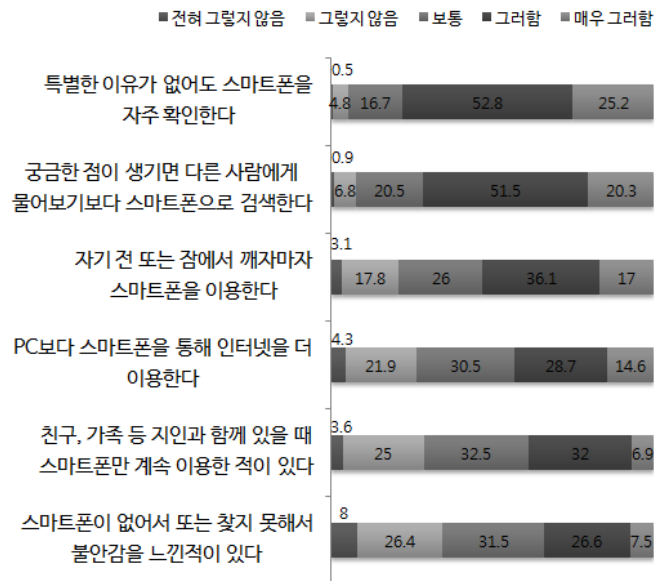
구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등)	이메일	SNS(트위 터, 미투데이, 이, 페이스북 북 등)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 (스카이프 등)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전체	86.4	72.6	60.3	48.1	46.3	19.5	1.3
남성	75.1	75.1	62.3	43.4	46.6	21.4	1.4
여성	86.7	69.7	57.9	53.4	46.0	17.2	1.2
12-19세	83.5	58.3	70.8	50.9	46.5	12.6	1.1
20대	91.2	73.4	68.5	59.4	51.4	19.9	1.0
30대	88.4	73.4	53.8	48.2	46.4	19.5	1.0
40대	83.0	77.2	52.7	38.3	42.4	19.6	2.0
50대	79.2	80.9	53.3	31.8	39.6	28.1	2.0

출처: 조화(2013:42)

표 II-4 스마트폰 이용서비스-여가활동

구분	음악듣기 또는 다운로드	게임 · 오락	동영상(영화, TV 프로그램 등) 보기 또는 다운로드	실시간TV시청 및 라디오 청취(DMB 포함)	전자책, 잡지 읽기 또는 다운로드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전체	83.2	74.3	70.8	57.2	35.1	1.8
남성	82.6	75.6	75.4	58.5	37.9	1.7
여성	83.8	72.7	65.5	55.8	31.8	1.9
12-19세	89.0	81.7	73.3	41.3	27.6	1.9
20대	89.0	82.8	75.5	53.2	36.5	0.8
30대	82.2	81.8	73.0	61.6	36.5	1.0
40대	77.5	65.4	65.0	64.7	39.0	2.5
50대	71.9	37.7	59.7	66.0	31.1	5.1

출처: 조화(2013:43)



【그림 II-7】 스마트폰 이용 과몰입 관련 인식

출처: 조화(2013:46)

이상의 조사결과를 한 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매체가 스마트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른바 스마트시대의 도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선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심의 삶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멀티미디어로서 스마트폰의 특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의 매체들, 즉 TV, 데스크탑, 그리고 핸드폰 등의 기능을 모두 누리면서 동시에 그런 매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대인간 정보나 사진은 물론 동영상교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P2P(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SNS(페이스북³⁾, 트위터⁴⁾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⁵⁾, 마이피플⁶⁾, 라인⁷⁾ 등),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인터넷 방송, 랜덤 채팅(즐톡⁸⁾, 하이데어⁹⁾ 등), 그리고 게임을 즐긴다. 이는 멀티미디어인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대규모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유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Facebook) :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웹사이트 중 하나로, 한국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5월 현재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서부에 있는 팔로앨토(Palo Alto)에 본사가 있다. 미국 나이를 기준으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름·이메일·생년월일·성별 기입만으로 간단하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 맺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과 웹상에서 만나 각종 관심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 4) (Twitter) :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서,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follow)'라는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이는 다른 SNS의 '친구맺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뒤따르는 사람' 곧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트릴 수도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twitter.com'이며, 사용자의 트위터 주소는 '@아이디'로 표기된다.
- 5) (카카오톡/Kakaotalk) : 한국 국적의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글로벌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말한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채팅을 할 수 있으며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은 사용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돼 있거나 상대방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친구추천'한다. 양쪽 모두 전화번호에 서로의 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된다.
- 6) (마이피플/mypeople) : 스마트 폰과 PC환경 모두에서 자유로운 대화 및 파일전송, 오픈채널과 선물하기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서 모바일과 PC환경 모두에서 단문 및 장문의 신속한 대화가 가능하며, 평생 무제한 메시지 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ON 과 오픈채널·외식·카페·영화 공연 등 다양한 할인쿠폰과 선물하기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이나 PC 어디에서든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1:1 채팅 및 그룹채팅이 가능하다.
- 7) (Line) : 빠르고 간편하게 친구들과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1:1은 물론 그룹 대화도 가능하며, 실시간 영상/음성 통화가 무료이며 현재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폰(음성), PC (Windows/MacOS)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8) (즐톡/랜덤채팅) :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화 할 수 있는 무료 랜덤채팅 어플로서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성별, 나이를 확인하고 원하는 상대를 골라 채팅으로 남친, 여친, 친구, 애인을 만든다.
- 9) (HI There/PSYNET) : 서로 다른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매일 사진 일기를 쓰며 지역과 나이, 취미별로 어울려 일상을 공유하고 팜(동아리)을 만들어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자소톡(자기소개톡), 장터(신상정보) 등 태그가 있으며 본인의 관심에 따라 Event를 진행하기도 하고 미팅주선, 타로점, 개인방송국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한다.

실제 여성가족부(2012)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매체를 접한 청소년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새롭게 스마트폰을 통해 공급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실시간으로 기본 수천 개의 생방송이 개설될 수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50만 명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성 상품화 콘텐츠의 특성상 그것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을 통해 유포될 경우 그 확산되는 속도나 규모 그리고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사진 및 동영상이 SNS를 통해 이차로 유포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관한 콘텐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6. 청소년 성 상품화의 영향

1)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스마트폰의 왜곡된 사용이 확산되면서 중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53.1%가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34.1%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등(조화, 2013:46) 스마트폰의 과몰입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고 청소년의 8.4%가 중독사용군으로 조사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스마트폰은 통화 및 메시지 전달기능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접속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PC등 기존 어떤 매체보다 사용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훨씬 더 중독성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기과시와 인정이 사용동기에 해당됨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실제로 연령대별 스마트폰 중독률 조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오강탁, 이제은, 201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상당수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고된다(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스마트폰 중독자들

이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채팅 및 메신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청소년의 경우 SNS 사용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조화, 2013:42) 나타난다.

청소년의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재정적 지출과 일상생활 지속에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주의력 결핍현상을 불러오는 충동조절 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 습관성 행동장애(addictive behavior disorders)를 초래할 수 있다(천예빈, 2013).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에서도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응·일탈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메신저를 사용해서, 또래에 대한 비방·욕설과 그룹채팅 배제 등 스마트폰 따돌림 행동을 초래하고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I-5>, <II-6 참조>).

표 II-5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구분	사례수 *(명)	매체 이용 경험(%)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초등학생 (5~6학년)	1,514	3.6	2.6	5.7	5.2	4.7	2.3	6.4	17.9	—
중·고교생	15,487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위기청소년	1,351	76.3	59.6	47.5	51.8	71.6	31.0	40.8	55.3	8.2

출처: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160

표 II-6 유해매체 이용 장소 비교

구분		사례수 (명)	이용장소(%)						
			집	친구집	학교	학원/독서실 /도서관	PC방	만화방/비디 오방/영화관	기타
중 · 고 교 생	성인용 간행물	2,023	77.8	11.5	3.5	0.6	0.8	1.2	4.5
	성인용 영상물	1,421	73.4	14.7	5.3	0.4	0.8	2.3	3.1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1,072	89.1	5.2	1.6	0.6	0.7	0.4	2.5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1,287	87.6	5.1	2.1	0.3	0.6	0.6	3.7
	컴퓨터 성인물	2,278	85.1	10.3	1.6	0.4	0.7	0.2	1.8
	휴대폰 성인물	1,020	82.1	5.1	5.6	1.5	0.4	0.1	5.2
	온라인 사행성게임	1,043	74.2	1.9	7.2	1.1	10.7	0.0	5.0
	성인용 게임	1,603	51.2	2.9	1.6	0.3	42.7	0.1	1.2
	이성만남 전화번호	96	51.3	12.8	8.6	2.1	10.8	1.6	12.8
위 기 청 소 년	성인용 간행물	376	59.6	22.9	2.4	0.3	2.4	2.9	9.6
	성인용 영상물	285	55.8	21.1	2.1	0.4	2.8	8.4	9.5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225	68.4	17.3	1.3	0.4	1.8	1.8	8.9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242	69.8	16.9	0.8	0.4	1.2	1.2	9.5
	컴퓨터 성인물	341	64.8	21.7	1.5	1.2	3.5	0.6	6.7
	휴대폰 성인물	140	56.4	19.3	3.6	2.1	2.9	1.4	14.3
	온라인 사행성게임	193	33.7	5.7	4.1	1.0	43.5	0.5	11.4
	성인용 게임	255	26.7	3.5	3.1	0.8	64.3	0.0	1.6
	이성만남 전화번호	39	25.6	12.8	5.1	5.1	15.4	5.1	30.8

출처: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161

2) 성 행동 모방

현대사회가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에게 TV,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장 접촉이 쉽고 이와 같이 ‘보는’ 매체들을 통하여 프로그램 콘텐츠의 재미를 더하기위한 교육책으로 노출이나 성행동 이미지 표출이 늘어났고, 이런 트렌드가 청소년의 성 행동 모방과 경험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변화순, 백경진, 이채금, 임미영, 전남숙, 정체유, 2004). ‘보는’ 매체를 통한 왜곡된 성 가치관 전파는 직접적 성관계만 존재하지 않을 뿐 인간의 신체를 성적 이미지화 작업을 거쳐 상품화되어 성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고 상품으로 전락된 것을 의미한다.

몸에 붙는 의상, 미니스커트형 디자인, 수영복 스타일의 유니폼, 신체가 비치는 드레스, 가슴을 노출시키는 의상은 보편화 된지 오래고 청소년들은 이런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연상하는 춤과 안무를 선보이는 아이돌스타에게 열광하고, 광고·쇼·영화 등 문화적 텍스트에서 ‘보이는’ 매체를 통하여 성의 상품화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이 성인에게 노동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퇴폐한 유흥·향락 소비상품으로 전락하여 사회의 잘못된 상품으로 자리하였고, 적절하게 규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채 ‘보는’ 매체를 통하여 전달된 자본주의 폐해가 청소년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키고 내면화 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성 상품화에 동조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김지선, 이근모, 김준, 2011). 청소년들은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상품화된 여성과 남성에 분노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성 상품화된 시선을 가지고 또래의 과감한 의상과 성 이미지 표출에 동조하여 오히려 성 상품화 트렌드를 확대·재생산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성매매, 성폭력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윤리·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성 상품화에 무감각해지고 고귀한 인권을 침해시키고 침해받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육체가 소유와 욕망, 매매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에 무감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상품화, 교환대상화 하는 문화 정착은 결국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폭력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4년 3월 23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성산업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9월 23일 시행)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2월 3일)』을 제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006년 1,745명이었는데 2012년 4,457명으로 2.55배나 늘었고(<표Ⅱ-7> 참조),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도 2008년 1,589건에서 2012년 1,686건으로 9.4%(<표Ⅱ-8> 참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7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

연도별	검거인원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구속	불구속
2006	1,745	149	1,596
2007	2,582	126	2,456
2008	2,112	81	2,031
2009	2,182	125	2,057
2010	1,345	56	1,289
2011	2,006	41	1,965
2012	4,457	124	4,333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250

표 II-8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연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강력범	소계	3,016	3,182	3,106	3,289	2,790
	흉악범	1,427	1,608	999	1,268	1,104
	성폭력	1,589	1,574	2,107	2,021	1,686
폭력범	소계	34,067	29,488	23,276	22,233	32,774
	공갈	1,046	1,495	1,422	1,509	2,827
	폭행 상해 등	33,021	27,993	21,854	20,724	29,947
재산범	소계	39,688	45,774	40,478	37,978	47,605
	절도	33,073	38,494	33,534	31,380	37,256
	횡령 등	1,855	1,664	1,483	1,528	2,448
	장물	571	820	722	454	1,200
	사기	4,189	4,796	4,739	4,616	6,701
교통사범		27,666	18,138	13,842	11,523	12,103
저작권법 위반		20,272	7,720	275	318	759
기타		10,283	8,720	8,799	7,727	11,459

주:1) 흉악범: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 상해 등: 폭행 상해의 죄+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기타.

3) 횡령 등: 횡령+배임+손괴.

4) 교통사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355

제 Ⅲ 장

국내외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

1. 국내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중국

제 Ⅲ 장

국내외의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동향

1. 국내*

1) 국내의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 정책

제Ⅱ장의 우리나라 청소년 성 상품화 실태에서 확인 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달과 인터넷, 스마트폰의 이용확산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정보가 급증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정보와 조장환경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어 왔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관련 정책대응은 법률적 대처와 민간의 자율적 노력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공공 대응 정책

청소년 성 상품화 대응 관련 법률적 대처로는 먼저 2008년 6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 활동의 촉진 및 지원’,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개정 2009.01.28.]’을 명시하였다. 동 법률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 이 절은 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 하도록 명문화하여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음란,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한 정보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 참고). 이는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 청소년을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보호·지원 제도마련(국가 청소년위원회, 2008)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매체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 매체물 관련 범죄, 선정성·사행성으로부터 청소년매체 이용을 지도하려는 의도가 강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3년 104,400건으로 전년대비 45.2%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연간 시정요구가 10 만 건을 넘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표 III-1> 참고), 2013년 시정요구 104,400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2,658건으로 60%를 넘고 특히 성매매·음란 시정요구가 증감률이 129%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접속 시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여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표 III-2> 참고). 특히 유해정보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훼손된 아동·청소년의 성 상품화, 인권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법률상 침해한 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당국의 공조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와 인권침해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표 III-1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시정요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삭제	7,320	9,058	17,827	22,986
이용해지	10,771	12,398	14,342	16,914
접속차단	22,853	31,357	39,296	62,658
기타*	159	672	460	1,842
총 계	41,103	53,485	71,925	104,4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4.3.18., 붙임 1

표 III-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노출 위험 전체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

(단위: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2년	2013년	증감률
도박	29,283	37,580	28.3% ↑	28,800	35,899	24.6% ↑
불법 식의약품	21,306	22,382	5.1% ↑	21,189	22,204	4.8% ↑
성매매음란	15,076	34,634	129.7% ↑	14,085	32,330	129.5% ↑
권리침해	2,947	4,768	61.8% ↑	1,572	3,135	99.4% ↑
기타 법령위반	7,049	11,350	61.0% ↑	6,279	10,832	72.5% ↑
총 계	75,661	110,714	46.3% ↑	71,925	104,400	45.2%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4.3.18., 보도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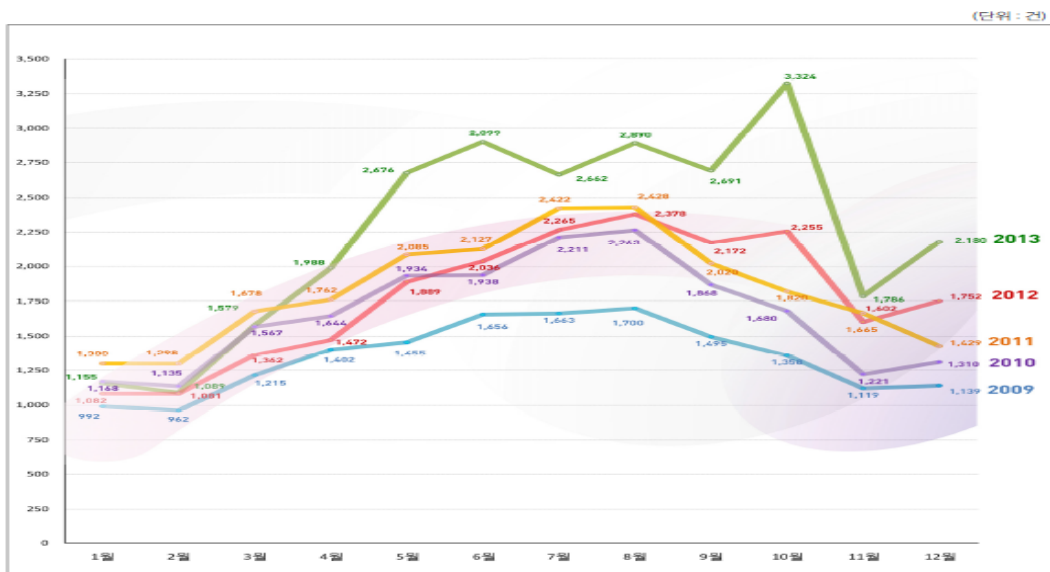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법인 청소년보호법은 2009년 7월 31일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 선전물과 각종 매체 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표 III-3> 참고)을 규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판단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2011년 9월 15일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7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표 III-1> 참고)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1년 9월 15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표 III-3> 참고)하여 청소년의 성 상품화 관련 광고의 확산을 예방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 2012.12.18., 전부 개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카메라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표 III-3> 참고).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 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통신매체를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성 상품화 욕망에서 비롯되는 실제 문제행동을 사회적 규범을 통해 제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발생 빈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에 있고(2013년 26,919건),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도 2013년에 1,061건(4.3%)에 달하며 (【그림 III-1】 참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¹⁰⁾을 이용한 성매매로 이동 중이어서 애플리케이션 상 성매매 알선과 합의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정과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9.29)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III-1】 성범죄 동향

출처: 대검찰청, 2014, 2014 범죄분석: 47, 95

10) 동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애플리케이션 대부분(94.4%)이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1월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손질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성 상품화 내용을 처음으로 처벌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Ⅲ-3> 참고).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하였을 때 대상의 인간 존중성 파괴는 물론 시청자의 가치관과 정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체페이지를 구성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그림 Ⅲ-2】 참고).



민원접수 1377
국번없이 평일 : 09시~18시

불법 · 유해정보신고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고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인증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 합니다.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01

휴대전화 인증

가.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 받는 방법
입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

02

아이핀 인증

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PIN(아이핀)서비스 이용하기

03

생년월일 인증 (기 신청자)

다. 신청 시 기재하셨던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Ⅲ-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불법·유해정보신고

45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이 정보네트워크이면서 동시에 상업성, 성 상품화로 인해 음란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을 객관적 평가를 거친 등급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 가능한 등급정보를 표시하면, 정보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내용을 필터링 또는 블로킹(선별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내용을 기존의 영화등급이나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두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며(방송통신위원회, 201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등급부여 및 내용선별에 사용되는 기술표준으로 ICS(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를 사용하고 SafeNet¹¹⁾ 등급기준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 세부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III-3> 참고):

표 III-3 세부 등급기준

구분	등급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세부 노출 내용	Level 4	성기 노출	성기, 음모, 항문 노출 아동청소년의 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보이는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 (표현)(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 착용한 상태 포함)
	Level 3	전신 노출	전신전라, 둔부, 가슴(유두)노출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정면, 측면, 후면 포함)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Level 2	부분 노출	상반신노출 하반신노출	- 유두가 가려진 가슴 노출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
	Level 1	노출 복장	상반신 노출복장 하반신 노출복장	- 상반신 뒷면(등)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 상태의 노출 -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상태의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 상태의 노출 -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Level	노출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11) 국제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고, 현재 5개 범주에 5등급(0등급에서 4등급)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SACI, ICRA, ENCI의 등급기준과의 호환성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구분	등급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성행위 세부사항	0	없음		
	Level 4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성범죄 실제행위 (성기 등 노출된 상태) 자위행위(성행위)	- 강간, 성적학대 등 성행위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실제 성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포함) - 수간, 시간 등 이상 성교 - 성 기구 또는 유사품, 성기가 아닌 신체일부에 성행위 - 아동과 성, 아동과 아동간의 모든 성행위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노출된 직접적인 자위행위
	Level 3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단순한 성행위 자위행위(간접적)	- 남녀의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편집처리 등) - 성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남녀의 성기, 가슴 또는 둔부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 -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위행위 -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
	Level 2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Level 1	격렬한 키스	격렬한 키스	-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 또는 입을 크게 벌림이 있는 키스
	Level 0	성행위 없음		
폭력 세부사항	Level 4	잔인한 살해	잔인한 살해	-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
	Level 3	살해	살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살해
	Level 2	상해	상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상해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Level 1	격투	단순폭력	- 유혈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
	Level 0	폭력 없음		
언어 세부사항	Level 4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상대의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	-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좇○○, 씹○○ 등) - 노골적인 신체 관련 표현(가랑이를 찢어 죽일, 뼈를 갈아먹을 등)
	Level 3	심한 비속어	상대가 욕으로 받아들이는 심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속어	- 동물에 비유한 표현(개○○ 등) - 신체와 관련 표현 (돌대다리 등)

구분	등급	노출	세부내용	세세부내용
	Level 2	거친 비속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있는 거친 비속어	-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 (쌍놈, 촌뜨기, 팔푼이 등)
	Level 1	일상 비속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악의 없는 비속어	-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비속어 (놈, 젠장, 자식 등)
	Level 0	비속어 없음		
기타 세부 사항	등급 수준 없음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사용조장 - 무기사용조장 - 실물화폐사용 제공 도박
		음주흡연 조장		- 음주흡연조장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인터넷등급서비스 세부등급기준

이상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등급 기준을 가지고 방송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접수되는 통신심의신청 민원의 내용을 보면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민원이 21,963건(55.3%)에 달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4>, <표 III-5> 참고).

표 III-4 월별 통신심의신청 민원 위반내용별 현황

구 분	성매매 음란	권리침해	불법 식·의약품	도박	기타 법령 위반	계
1월	3,246	781	215	2,651	319	7,212
2월	2,047	552	59	1,387	258	4,303
3월	2,026	845	31	1,603	201	4,706
4월	2,362	755	75	1,441	590	5,223
5월	3,790	512	79	2,139	357	6,877
6월	8,492	592	44	1,994	256	11,378
합계	21,963 (55.3)	4,037 (10.2)	503 (1.3)	11,215 (28.3)	1,981 (5.0)	39,699 (100)

표 III-5 월별 통신심이신청 민원 정보제공유형별 현황

구 분	게시판	사이트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동영상(UCC)	P2P/웹하드	인터넷 SNS	기 타	계
1월	429	5,806	563	5	59	349	1	7,212
2월	443	2,775	650	63	30	338	4	4,303
3월	164	3,290	443	39	21	749	0	4,706
4월	341	3,765	649	18	43	407	0	5,223
5월	380	4,160	441	36	1,484	372	4	6,877
6월	163	4,212	503	18	6,176	302	4	11,378
합 계	1,920 (4.8)	24,008 (60.5)	3,249 (8.2)	179 (0.5)	7,813 (19.7)	2,517 (6.3)	13 (0.0)	39,699 (1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2014:9-10

(3) 민간 대응 정책

청소년의 성 상품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8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0여개 인터넷 신문의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유해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4개 신문사를 고발하는 등 공공의 우려와 시정요구에 부응하여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는 불법·유해 광고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정서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기구’를 발족하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¹²⁾을 제정하였다 (김민기, 2012): ①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소재가 사용된 광고는 성인인증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 소재는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거나, 광고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표 III-6> 참고)하여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약’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제5조(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3.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4.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법률	내용	비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6.13.]	23조 (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개정 2009.01.28]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공

법률	내용	비고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9.7.31.〉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 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 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 표시 또는 포장물을 훼손한 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
아동청소년의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공공

법률	내용	비고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201 1. 9.15.〉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매체물내용정보"라 한다)를 덧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방법 및 매체물내용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률	내용	비고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시행 2014.7.22.]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	내용	비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1.9.1 5.]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공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시행201 3. 12.19.]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

법률	내용	비고
[법률 제11556, 2012.12.18., 전부 개정]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2013. 11.)	제8조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1호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2013. 12.3.)	제7조(청소년 보호) ①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소재가 사용된 광고는 성인인증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 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광고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것 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민간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2013.12. 3.)	제5조(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민간

법률	내용	비고
	3.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4.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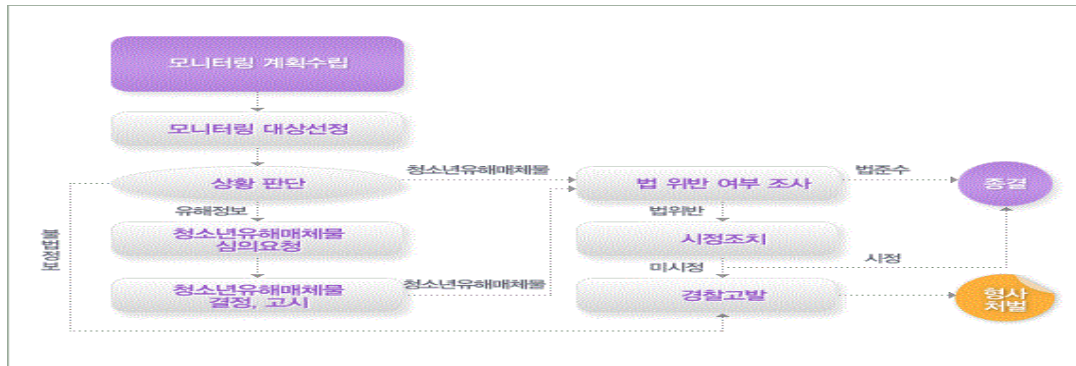
(4) 소관부처

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 상품화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구에서 음반, 방송프로그램, 영상물, 간행물, 게임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2조¹³⁾)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고 있다(【그림 III- 3】 참고).

13) "매체물"의 범위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그림 Ⅲ-3】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인터넷 모니터링 업무 절차도, 여성가족부(2014)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mogef.go.kr>)는 청소년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법률에 따라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악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음악분야/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하여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 청소년유해 매체물 여부를 여성가족부 장관명의로 작성·고시하는 역할을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 몰입 예방제도로서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아는 경우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신청하면 되고,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게임이용 제한은 최대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심의기준과 이를 근거로 마련된 심의규정을 적용, 국내에서 발행되거

나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청소년유해결정 국내외 목록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한다(간행물윤리위원회, 2014, <표 III-2>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http://www.grac.or.kr>)는 2012년 7월 31일 자체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을 정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 광고·선전물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포스터, 스틸, 신문, 잡지, 전단, 자켓 등 공중에게 배포·게시되는 광고·선전물을 대상으로 제10조 선정성¹⁴⁾에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심의·규제하고 있다(<표 III-7> 참조).

표 III-7 등급분류 세부기준

구분	전체 이용 가	12세 이용 가	15세 이용 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 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2014

14)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제정 1999년 개정 2012년 7월 31일)

제10조(선정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31.)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가슴부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강간 등)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인간을 성매매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http://www.kmrb.or.kr>)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영화, 영상콘텐츠(비디오물), 공연물, 광고선전 등에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하고 건전한 영상문화를 조성하는 원칙’(영화¹⁵⁾ 및 비디오물¹⁶⁾ 등급분류 제 1장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시행 2012.1.15]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1.13, 일부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개정 2008.2.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성 상품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규제를 위해 2012년 12월 6일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6항 신설 2012.12.6.>’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 중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의 소지가 있는 방송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도록 청소년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 방송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표 III-8> 참조).

15) 영화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

16) 비디오물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

표 Ⅲ-8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심의 기관	청소년보호 위원회	간행물 윤리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물		정보통신물	
심의 근거 법률 (소관 부처)	청소년보호법 제7조 (여성가족부)	출판법제18 조, 청소년보호 법 제7조 (문화부)	게임법제1 6조,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문화부)	영화비디오 법 제29조, 청소년보호 법 제7조 (문화부)	공연법5조, 청소년보호 법 제7조 (문화부)	방송법 제32 조, 청소년보호 법 제7조 (방 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방송통신위원회)	
청소 년 보호 연령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청소년보호 법 (19세 미만)	만18세 미만	만18세 미만	만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심의 기준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9조	청소년 보호법 적용(출판법 제19조, 시행령 제13조)	자체규정	자체규정	자체규정	청소년보호법 적용 (방송법제33조)		청소년보호법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 방송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심의 대상	음반 및 음악 파일 심의 청 소년 유해업소 (술집 등) 청소 년 유 해 물 건 (성인용품) 청 소년유해악물 (마약 등) 특정 고시 대상물 심의 다른 심 의기관이 요청 한 매체물 다 른 심의기관이 심의 하지 않 는 매체물	소설, 만화, 정기간행물 등 (정보법 매체물 범위)	게임물	영화 비디오물 (정보법 매체물 대상)	공연물 (정보법 매체물 대상)	방송프로그램 (정보법상 매체물범위와 일치)		정보통신물 (정보법 매체물 범위)	
심의 형태	사후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전심의 (등급분류)	사전심의 (등급분류)	사후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후심의	
심의 내용	청소년 유해성	유해 성	청 소 년 유 해성	청소년 유해성 제한상영제	청소년 유해성 연소자 유해성	공공성 공정성	청 소 년 유 해성	불온성 (불법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기관	청소년보호 위원회	간행물 윤리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조치 사항	청소년유해매 체물	수거 폐기 명령	청소년 유 해 매 체 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 등급분류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연령 등급분류	사 과 명 령, 프 로 그 램 정 정 중 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	거부, 정지, 제한 명령	청소년유 해 매체물

출처: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여성가족부는 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가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들을 고시하고 있다. 2013년도 청소년유해정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다룬 비디오물로서 4,147건에 달했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만화단행본도 2,19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기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2,198건, 영화에서 1,215건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규정심의 위반건수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들은 다양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별 분야 심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유해정보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양한 심의기구의 지엽적 대응노력들이 실질적 차단과 억제, 유해정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단위: 건)

연도	고시 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舊 청보 위		계
		도서	정기 간행물	만화 단행 본	만화 잡지	광고 출판	전자 출판	영화	비디오 물	게임물	음반	뮤직 비디 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약물 물건 업소			
													영화	드라마	다큐	민화	음악	기타	PC 통신		전기 통신		
97	19	59	105	1,994	29	11	12	102	444	0	0	0	0	1,699	0	1	19	9	8	607	0	1	5,100
98	62	173	416	1,140	52	0	49	151	762	0	0	0	0	916	30	12	52	14	0	755	0	0	4,522
99	62	304	388	1,501	14	1	16	71	428	0	4			280	2	5	2	0	4	61	36	1	3,118
00	41	366	699	1,227	0	0	0	(197)	(998)	0	(460)			158	0	9	4	0	67	53	41	1	2,625 (1,655)
01	45	289	983	1,387	1	0	0	(143)	(1,083)	(520)	(1,112)			655	58	5	99	451	975	7	407	0	5,317 (2,858)
02	51	259	1,098	1,492	8	0	3	(86)	(1,454)	(896)	(800)			1,432	33	1	114	19	202	435	851	0	5,947 (3,236)
03	68	611	1,220	1,802	131	0	256	(59)	(1,462)	(936)	(536)			2,768	145	0	3	510	284	0	3,537	0	11,267 (2,993)
04	63	371	528	1,810	269	2	602	(89)	(2,746)	(1,547)	(258)			269	67	2	0	0	0	0	7,657	1	11,578 (4,640)
05	55	334	318	1,464	199	0	817	(69)	(2,936)	(1,734)	(127)			1,304	237	0	15	2	179	0	17,131	1	22,001 (4,866)
06	57	365	339	1,424	78	0	740	(92)	(2,355)	(861)	4			3,001	207	0	29	3	480	0	19,475	0	26,145 (3,308)

연도	고시 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 통신 위 계					
		도서	정기 간행 물	만화 단행 집	만 화 잡 지	광고 출판	전자 출판	영화	비디오 물	게임물	음반	뮤직 비디 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기타	PC 통신		전기 통신				
07	65	414	377	1,867	46	0	776	(178)	(2,904)		344		6,506	190	0	151	1	840	0	15,314	0	26,826 (3,386)			
08	44	497	280	2,059	53	0	758	(139)	(2,085)		651		1,041	1,059	0	142	0	609	0	1,198	1	8,348 (2,701)			
09	51	809	223	1,756	229		658		(1,960)	(577)	941		3,119	2,094	0	533	0	1,835	0	229	1	12,427 (2,537)			
10	45	822	253	2,067	189		1,131	0	0	(582)	991		1,041	902	0	459	0	969	0	281	1	9,106 (4,244)			
11	50	858	427	2,810	16		1,102		0	(581)	672	171	2,327	2,443	0	461	0	5,524	0	386	3	17,200 (4,713)			
12	60	804	421	2,881			1,112		0	(759)	1,049	101	1,959	2,316	0	555	0	4,485	0	524	0	16,207 (4,441)			
13	59	766	425	2,196	0	0	834	0	0	(730)	1,000	0	1,215	984	0	544	0	2,198	0	397	0	10,559 (4,877)			
계	897	8,101	8,500	30,877	1,314	14	8,866	324 (1,052)	1,634 (35,606)	5,656 (3,293)	272		29,690	10,767	35	3,182	1,009	18,659	1,918	67,464	11	198,293 (50,455)			
총합계		57,672						1,958 (36,658)		0 (10,504)		5,656 (3,293)		272		63,342						69,382		11 (50,455)	

*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청소년보호법 제21조)

* 영화, 비디오물 등 통계중 () 안 숫자는 '18세미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아 현황총계에 미포함, 청소년 보호법(만19세)과 타법(만18세)과의 연령 차이로 고시 불가에 기인(범량개정 등 연령통일 추진중임)

출처: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는 청소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을 위협하는 학대적 범죄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분명한 범죄임에도 사회구성원에게 여과 없이 제시하여 도덕적·법적 비판력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일반대중을 향한 사회적 학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적 행동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사회일반에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의 심사에 있어 해당매체물의 심의기관 혹은 소관기관이 각기 달라 대응노력 역시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해매체물 심사에 관하여도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결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과 보호시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유해정보의 선별 및 교육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영화·공연을 관장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각기 그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대처를 위한 정부 부처 소관업무들이 파편화된 까닭에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중에서 음란정보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정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고 통용되는 음란물과 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함으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소관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대응하도록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법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 인권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신속한 사법적인 개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큰 문제 양산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이 다양한 의사표현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는 인권침해이며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인권침해 유해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실천 규약 제정을 통해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실천 방안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의 특성상 급속한 파급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률상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혹은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피해물을 삭제할 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법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법과 제도적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도 범죄적 행위에 참여하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스크린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분야의 자발적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유해 광고를 자체 스크린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기구’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규제정책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

1) 서론

스마트시대는 정보화사회의 심화된 단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보화사회는 초기의 ‘Main Frame’ 시대, 즉 한 대의 컴퓨터를 다수가 사용하는 형태에서 중기의 1:1인 ‘Personal Computer (PC)’시대를 거쳐 현재 소위 인공지능(AI)을 통해 여러 컴퓨터를 홀로 사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제 누구나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다양한 일상용품을 원격 통제할 수 있다. 외출한 상태에서 가스나 냉장고를 조절하고,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융합사회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기기가 바로 멀티미디어로서의 스마트폰이다.

모바일 폰인 스마트폰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동 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정보검색, SNS, 쇼핑, TV와 영화시청,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 및 웹툰까지. 이제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세상을 구현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거리에서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 양면성이 있듯, 스마트폰은 사회의 비생산적인 측면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 이 절은 김봉규(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가 집필하였음.

가져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와 맞물리면 스마트폰의 폐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도로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그나마 소수이다. 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건전한 발달과정을 저해하는 유해매체를 접하게 되고, 영향 받는다. 성적 유해물같은 자극적인 영상물은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모방행위나 부적절한 성적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현실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빠져들게 되고, 심지어 가출청소년들은 그런 앱을 통해 성매매로의 유혹을 받는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기업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방송 등의 미디어, 포털사업자 그리고 앱사업자 등에게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고려한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자체가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경우 시청률이 곧 생존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더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게 되고, 이는 아이돌 스타라는 청소년들의 성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글 등을 비롯한 오픈마켓의 경우는 규제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는 스마트폰과 청소년 교육의 문제에 관한 한 거의 미궁(aporia)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유해물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부의 직접규제 역시 다양한 균열과 틈새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기정보화사회를 사는 대부분의 국가는 스마트폰의 그늘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역시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물려 인터넷중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성상품화를 조장하는 청소년유해물이 대규모 생산, 유포,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인터넷중독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심각한 상태이다. ‘Zeit’ 온라인지에 따르면 2011년 독일연방보건국은 독일 내 인터넷중독에 대한 최초의 객관적 연구를 진행했다. 의뢰를 받은 뤼벡(Lübeck)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대학의 전문가들이 14-64세 사이 약 15,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4-64세 사이의 약 1%가 인터넷중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약 56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나이에 따라 중독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중독경향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14-24세의 경우 2.4%가, 14-16세 사이엔 4%나 되었다. 그리고 응답자가운데 14%는 전문가의 견해대로라면 ‘중독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¹⁷⁾ 이는 2014년 현재 더 악화된 상황이다.

17) <http://www.zeit.de/digital/internet/2011-09/internetsucht-untersuchung>

보쿰의대 정신신체의학과 심리치료 병원 수석의사로 있는 뵐트(Bert de Wildt)박사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인터넷중독자의 수는 이미 복권중독자 수를 앞지른 상태이다.” 그는 한국에서 인터넷중독에 빠져 사망한 사례를 들며 독일의 경우도 이제 그러한 사례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님을 지적했다. 동시에 자신이 12년 전 미디어중독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덧붙이고 있다.¹⁸⁾

인터넷의 접속빈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의 제한을 벗어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청소년성상품화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독일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은 매년 청소년보호위반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는데 2004년에 1000건 이상의 청소년보호위반사태를 적발한 이후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엔 1949건이었으며 불만사항이나 문의접수만 5300건에 달했고, 2007년의 경우는 위반사태가 2883건에 달했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또 10%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나아가 2008년에는 6% 정도가 더 증가하여 처음으로 3천 건이 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4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의 수치는 8111건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그 중 1/6만이 독일에서 제공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구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처럼 외국에서 생산되는 오픈마켓의 유형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독일 역시 오픈마켓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⁹⁾ 특히 청소년보호위반사태의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성상품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독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미디어를 통해 10대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기 보다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성상품화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인터넷에서의 모델사이트를 들 수 있다.²⁰⁾ 미성년자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선정적인 사진을 통해 유료의 멤버십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멤버십이 되면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성적대상화된 소녀들은 ‘섹시하고 유혹적인’면서 동시에 ‘어리고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진다. 실제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할로! 저는 조이라고 하고 독일출신의 틴에이지 모델입니다. 저는 톱모델로 커리어를 쌓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제 그림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당신은 제가 모델로서 가야할 험난한 길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예고편을 보시고 가입하시면 다양한 의상과

18) <http://www.derwesten.de/panorama/immer-mehr-menschen-sind-nach-spielen-und-internet-suechtig-id9000497.html>

19) <http://jugendschutz.net/Jahresbericht-2004-2013>.

20) 토마스 귄터, 나디네 쾰러(Thomas Günter und Nadine Köhler),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대상화(Kinder und Jugendliche als sexual Objekte im Internet), tv diskurs 35, 2006.

다양한 배경으로 찍은 저의 특별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를 위한 미성년자의 선정적 사진갤러리와 비디오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데 이는 역시 소비자의 멤버십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광고 중에는 역으로 미성년자를 모델이 되라고 유혹하는 사이트도 있다.

“혹시 당신은 여성이고 13세에서 19세인가. 그런데 한 번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모델인데 함께 일을 할 곳을 찾고 있나? 그렇다면 큰 꿈을 향한 도약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독일정부는 이런 유의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청소년유해물과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구조적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규제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규제가 조금 더 강조되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민간자율규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그렇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²¹⁾ 정부의 직접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와 함께 제3의 길, 즉 새로운 형태의 중도(中道)를 통해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자율이나 규제냐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러한 길 역시 왕도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규제와 자율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실질적인 청소년보호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독일의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한 유해매체 대책

(1)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의 내용

독일의 경우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이 중심이다. 그 외에 일련의 배포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Strafgesetzbuch: StGB)이 다루고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의 "청소년 유해인쇄물 및 미디어내용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2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08. 12. 19.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과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Öffentlichkeit)이 통합되어 2002년 제정, 2003년 4월 1일 발효된 통합법이다. 원칙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위 전달매체(Trägermedien)에 국한되어 있다. 전달매체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매체, 즉 책, 잡지, 비디오, CD 또는 DVD를 의미한다. 전제는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0 청소년보호법 체계

구 성	내 용
제2절(Abschnitt 2: 공공장소)	숙식업소 및 클럽(제4조), 게임장 및 도박장(제6조), 유해행사 및 유해영역시설, 유해장소(제7조, 제8조), 술 및 담배판매(제9조, 제10조)
제3절(미디어영역)	영화 및 게임영상물(제12조), tv 및 tv 모니터를 통한 게임영상물(제13조), 영상 또는 게임프로그램(제14조), 청소년유해정보(제15조)
제4절('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원' 설립 근거 및 권한)	청소년유해정보 목록표 등재 결정 권한과 절차
제5절(위임명령 근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발동 근거
제6절(처벌규정)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자료: 임규철, 외국의 디지털 유해매체 환경 관련 청소년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은 “미디어서비스협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여 만든 법이다. ‘민간 및 공영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등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4세미만 그리고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미만을 뜻한다.²²⁾ 따라서 청소년유해물을 논한다는 것은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인격발달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유해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공공생활에 적합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는 전달매체(Trägermedien)와 통신매체(Telemedien)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비도덕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폭력, 범죄, 인종차별, 전쟁선동, 인간존엄성의 침해행위 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아동,

22) 청소년보호법(JuSchG) 제1조 1-2항;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 제3조 1항(§ 3 Abs. 1)

청소년에게 적합한 성윤리에 위배될 경우나 그 유해성이 심각한 경우를 뜻한다.²³⁾ 특히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해서 “18세 미만의 소녀나 소년으로 하여금 비자연스러운 포즈를 통해 성적자극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15조 2항 4호(§ 15 Abs. 2 Nr. 4 JuSchG)와 청소년미디어주간협약 제4조 1항 9호(§ 4 Abs. 1 Nr. 9 JMStV)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미디어주간협약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4조의 1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86조의 선전수단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의 정신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2. 형법 제86a조에서 적시하는 바 위험적 조직의 표시를 드러내는 내용
3. 국민의 일부 또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또는 그러한 민족성으로 규정되는 집단을 향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 조치 또는 자의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일부 또는 앞에서 언급한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타인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내용
4. 국가사회주의의 지배 하에서 범해진 행위로, 국제형법전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 기재된 형태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화를 교란, 부정 또는 경시하는 내용
5.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예찬 또는 가볍게 여기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인간존엄성이 침해될 정도로 잔혹함이나 비인간성을 묘사하는 경우. 이것은 가상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형법 제126조 제1항에 기재된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7. 전쟁을 예찬하는 내용
8. 표현이나 보도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나 동의 없이, 실제사건, 특히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놓여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며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
9.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성을 강조하도록 아동이나 청소년의 포즈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가상의 경우에도 해당
10. 포르노나 폭력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수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 가상의 경우에도 해당
11.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B부와 D부 수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 목록에 수록된 저작물과 내용상 전부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례는 형법 제86조 제3항이 준용되고, 제5호의 사례는 형법 제131조 제3항에 상응한다.²⁴⁾

다음으로 한국의 청소년보호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23) 청소년보호법(JuSchG) 제18조 1-2항.

24) 청소년미디어주간협약 제4조 1항 9호(§ 4 Abs. 1 Nr. 9 JMStV).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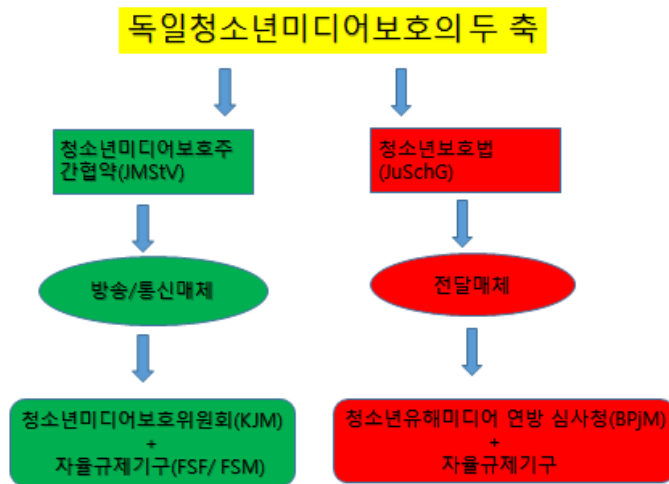
내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청소년보호법 역시 독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실제 청소년유해물을 규정하고 심의기준을 밝히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의 경험이 폭력관련 법령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점, 나아가 법령의 구체성에서 좀 더 섬세하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JMSfV 제5조를 보면 4조에 해당하는 내용보다 약하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Entwicklungsbeeinträchtigung) 내용에 대해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단계별로 법적조치²⁵⁾를 명시하고 있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31조에서 폭력을 미화하며, 수치스럽고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비인간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을 금하고 있고, 184조에서는 포르노그래피 서적 유포(Verbreitung pornographischer Schriften)를 규정하는데 184a조는 성폭력과 수간포르노의 유포에 관한 서적유포(Verbreitung gewalt-oder tierpornographischer Schriften)를 규정하고 184b조는 아동포르노그래피(Kinderpornografie) 그리고 184c조에서는 청소년포르노그래피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독일에서 청소년보호의 근간이 되는 양대 축은 【그림 III-4】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이다. 그리고 양자를 의미론적으로 비교해보면 주간협약(JMSfV)이 보다 시의적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이 전달매체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 청소년미디어주간협약(JMSfV)의 규제영역에는 라디오와 TV와 같은 방송매체와 Internet과 관련업무에 해당하는 통신매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²⁶⁾

25)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http://www.kjm-online.de/public> 참조.

26) <http://de.wikipedia.org/wiki/Jugendmedienschutz>.



【그림 III-4】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두 축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법자체에도 제1조 2항의 전달매체에 관한 규정은 물론 통신매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인터넷 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거나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서 인터넷 서비스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되는 문자, 영상, 음성콘텐츠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²⁷⁾ 다만 통신매체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 매체로 확인된 것을 인덱싱, 즉 유해매체목록에 등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그 외 유해매체물과 관련한 실질적 제재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규정된 대로 각 주의 소관이고 따라서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에서 관장한다. 그런 이유에서 방송,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에 근거하는 것이다.

(2) 청소년보호기관

청소년보호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먼저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 심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이 있다. 연방심사청은 독립기관으로 자율적 재정에 의해 움직이며 여성,가족,노인,청소년을 총괄하는 부서(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소속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JuSchG) 17-25항에 근거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전달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7) 청소년보호법(JuSchG) 제1조3항.

민영방송과 통신매체를 규제하는 기관, 따라서 스마트폰의 문제와 직결되는 기관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과 달리 그 법적 근거를 청소년보호법(JuSchG)이 아닌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에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직속기관으로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을 두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청소년보호넷은 주정부를 도와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활동을 해오다 2003년 4월 1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이 발효된 이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연결되어 움직이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넷은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을 위반하는 유해물을 발견할 경우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동시에 공인된 자율규제기관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에 통고하게 된다. 일례로 2004년 청소년보호넷은 발견된 1000건 이상의 청소년유해물 가운데 70%정도를 신속히 넷상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중 통지를 받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116건의 경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 이양하여 처벌과 행정지도를 받도록 했다. 2005년에 확인된 미성년자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1949건의 유해물 가운데는 독일에서 생산된 874건의 2/3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183건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에 위임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이 경우 최고 500.000 Euro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²⁸⁾

(3) 자율규제

정부규제와 함께 독일의 경우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일반적 자율규제가 아닌 ‘규제된 자율규제’의 형태가 선호된다. 따라서 먼저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문제해결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높고, 불필요한 정부의 절차가 생략되며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정부의 직접규제가 초래할 비용을 절감시키고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자율규제의 정도에 따라 절차의 불투명성이 존재할 수 있고 법률의 일반적 적용이 아닌 사안에 따른 개별적 문제해결성이 강하기에 결론의 불합리한 도출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²⁹⁾ 따라서 자율규제의 본질은

28) <http://jugendschutz.net/> Jahresbericht 2004–2013.

29) 임규철, 외국의 디지털 유해매체 환경 관련 청소년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

그러한 제도의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에 있다.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그 자율규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정도와 구조의 측면에서 1) ‘순수한 자율규제’, 2) ‘일반적 자율규제’ 그리고 3) ‘규제된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순수한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의 통념상 이해되는 도덕성의 수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정부의 규제는 배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2) 일반적 자율규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의 직접규제 이전에 관련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인정하고 그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 국가가 감독하는 것이다. 한국도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를 통해 자율규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은 미비하다. 이유는 자율규제에 관한 몇몇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른 실천만을 요구할 뿐, 실질적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는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1조 1항의 경우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다. 얼핏 보면 ‘요청할 수 있다’는 자율이고 ‘요청해야 한다’는 규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확인요청의 주도권을 생산자에게 주는 것은 자율이라기보다 오히려 방기에 가깝다. 합리적 자율이 아닌 맹목적 자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4항에 보면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1항이나 4항 모두 관련단체의 입장에서선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통상적 의미에서 이해할 때 정부는 그러한 규제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두고, 청소년보호법에서 드러나듯 사후에 위반여부를 검사하여 시정명령(45조)이나 과징금(54조) 또는 58조와 59조의 경우처럼 법적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자율규제의 본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자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면, 단지 사후에 자율규제의 이행여부를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정작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시행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자의 인위적인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자의성만

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율규제로의 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3) 규제된 자율규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일반적 자율규제의 한계는 그러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사업자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전검열이나 과잉집행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다. 다만 문제는 사전검열이나 과잉집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전지도’와 ‘사전검열’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면 정부의 사전개입은 사전검열과 동일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의 사전개입자체가 부정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자율의 반대축인 ‘방임’으로 흐를 수도 있다. 물론 사후감독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후감독과 처벌의 강도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실질적 자율을 담보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바로 그 담보의 합리적 수행을 지향하며, 국가가 사전검열이 아닌 사전지도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실질적 이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된’의 의미는 첫째 사후규제보다는 선규제를 우선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달성한다는 것, 둘째 ‘규제된’의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나 소모적 규제가 아닌 생산적 규제, 즉 공존지향적 참여나 ‘인도’ 또는 ‘도움’의 의미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규제된 자율규제는 일반적 자율규제와 정부의 직접규제의 중도를 추구한 것으로, 자율규제의 중심축이 사업자 측에서 조금 더 정부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자율규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정부가 먼저 심사하고, 실제 메카니즘에 따라 기업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공신력있는 자율규제기구로 국가가 공인해주고, 그 공인된 기구를 통해 자율규제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는 자율규제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판보다 자율규제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 구조확립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자율규제의 본질적 의미에 더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경우 어느 기업이든 임의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단체는 해당 영역마다 한 기구에 국한된다. 그래서 방송의 경우 FSF가 유일하게 공인된 자율규제기구이고 인터넷의 경우 FSM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각주, 나아가 정부를 대변하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공인한다는 것은 해당 단체가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구조와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일은 기업이나 기업협회의 자의성에 임의로 자율규제를 위임하고 사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발생하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자율의 메카니즘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규제

된'의 의미가 강조된다. 동시에 그렇게 공인된 기관의 4년이라는 인증기간을 정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주어진 자율적 규제소임을 이행했는가의 여부가 지속성의 조건이 된다.

(4) 규제된 자율규제기구

독일의 경우 자율규제기구는 임의로 허용되나 정부가 공인하는 자율규제기구는 해당영역에 하나만 존재한다. 각 영역에 대한 자율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커피머신과 같은 '자동기자율규제기구'(Automaten-Selbst-Kontrolle: ASK)
- 2) '방송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
- 3) '영화산업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FSK)
- 4)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
- 5) 인터넷내용평가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ICRA)
- 6) 게임소프트웨어자율규제기구(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USK)

이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송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와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이다. 이 두 기구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인정받은 유일한 기관들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독일 각 주(州) 미디어청(Die Landesmedienanstalten: LMA) 소속의 공공기관으로,³⁰⁾ 각각의 기능, 업무 그리고 예산상의 독립이 보장된다.³¹⁾ 다만 청소년보호법(JuSchG) 제15조에 의거 KJM은 운영규범 제·개정 및 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 제·개정의 경우 LMA의 의장에게 업무보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주간협약(JMStV) 16조에 따라 주간협약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위반할 경우 적절한 규제를 결정한다.³²⁾ KJM이 통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심사절차 및 조치의 내용은 주간협약(JMStV)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KJM은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인증권과 인증철회, 취소권 등이 있다. 그리고 KJM은 JMStV의 위반을 결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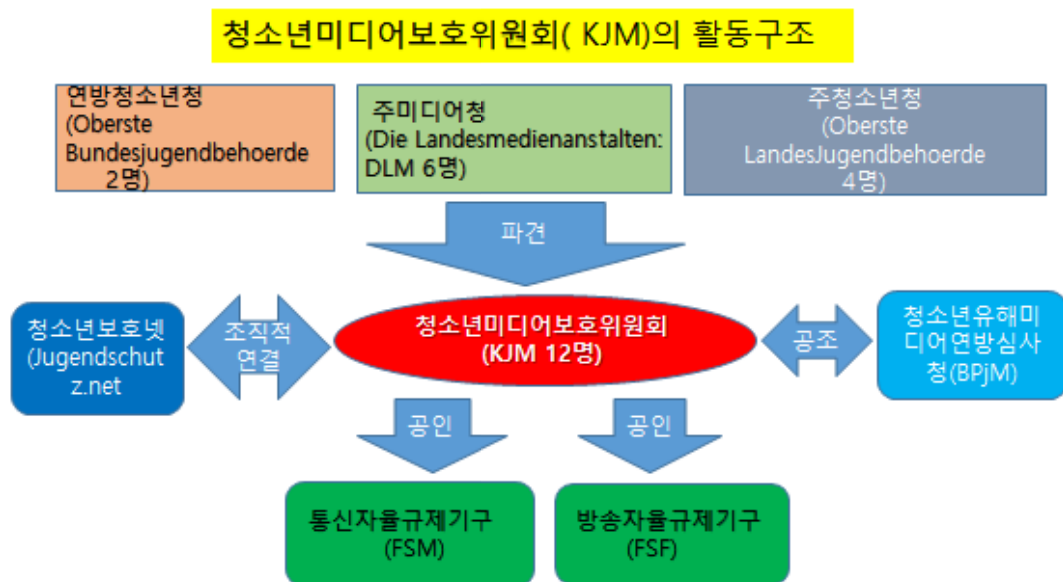
30) JMStV § 14.

31) JMStV § 14 Abs. 6, 8.

32) JMStV § 16(Zuständigkeit der KJM).

위한 상응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칙규정권³³⁾도 가지고 있다. KJM의 판단에 대한 집행은 LMA가 담당한다.³⁴⁾

【그림 III-5】에서 보는 것처럼 KJM은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다수인 6명은 주미디어청에서, 4명은 주청소년청,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연방청소년청에서 파견된다. 이렇게 구성된 KJM은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청(BPJM)과 공조하며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망을 통해 KJM은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직접개입을 시도한다. 동시에 KJM은 통신자율규제기구와 방송자율규제기구를 심의 선정, 공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위임함과 동시에 수시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III-5】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활동구조

【그림 III-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 통신매체의 규제를 담당하는 자율규제기구로 KJM으로부터 공인된 기구는 방송 쪽의 ‘방송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와 통신쪽의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이다.

33) Kriterien für die Aufsicht im Rundfunk und in den Telemedien (<http://www.kjm-online.de/public/kjm> 참조).

34) JMSIV §14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규철, 외국의 디지털 유해매체 환경 관련 청소년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에서 재인용.

이제 FSM 및 FSF와 KJM과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III-6】 FSM과 FSF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청과의 공조를 통해 청소년유해물을 청소년유해목록표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물이 청소년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는다. 다음으로 KJM은 청소년보호넷과의 조직적 연결을 통해 청소년보호넷으로 하여금 인터넷과 방송에서의 청소년유해물을 감시하고 적발하며 동시에 해당업체가 유해물을 삭제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제공자들을 통고받아 벌금과 같은 처벌과 행정지도, 즉 직접규제를 하게 된다.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은 JMStV 제18조에 따라 온라인상의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각 주와의 공동대응을 위해 연방청소년부에 의하여 1997년에 각 주(州)의 미디어 관련 최상위 공동기관인 LMA 소속으로 설치된 청소년 보호목적의 공공기관이다. JMStV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채팅 사이트와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검색엔진과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등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업체의 자율삭제를 유도하며 KJM에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업무를 하는 바, 그것은 FSM이나

FSF와 같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및 인증철회권과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두 기관이 기관의 회원기업들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도와주고 제재하며 이끌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FSM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유해물을 조사하지만 모든 조사가 전적으로 FSM에게만 위임되어 있지 않다. 이미 언급한대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넷은 자체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유해물을 심사하여 FSM의 회원에 해당할 경우 이를 FSM에 통고한다. 그러면 FSM은 이 문제를 해당 회원기업과 함께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회원기업들은 자율규제기구가 심사하고, 자율규제 기구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심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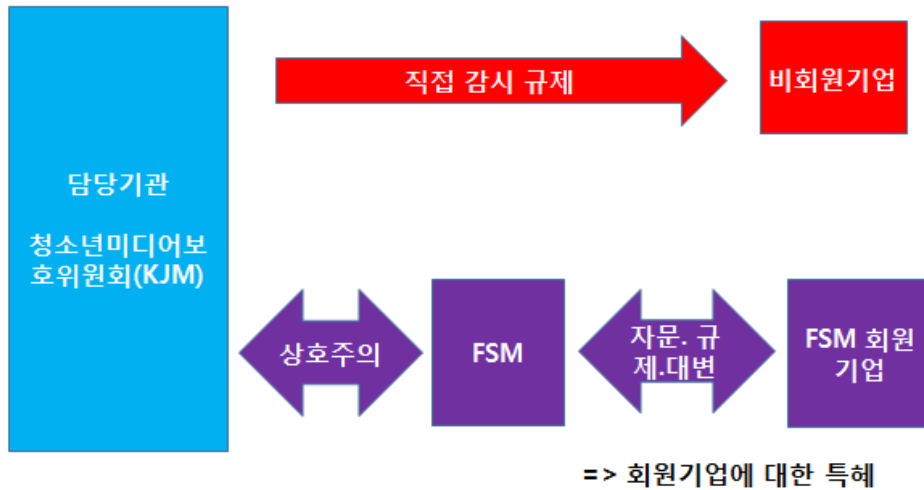
(5)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

이미 언급하였듯 각 주를 대변하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JMStV 제19조에 따라 공영 및 민간방송과 인터넷에 관련된 자율규제기구를 감독한다.³⁵⁾ FSM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공인된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이며,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자율이 아닌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민간규제기구이다. 나아가 기구의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KJM의 상급 기관인 LMA에 있다.

독일에서 FSM이 탄생한 것은 1997년이며, 처음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 의해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 후 2003년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에 따라 규제된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 국가와 산업이 청소년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공조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독일연방 지자체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적 기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2005년 FSM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자율규제기구로 공인되었다. 그 후 FSM은 독일을 대표하는 자율규제기구로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유해물의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SM의 운영원리를 살펴보면 【그림 III-7】과 같다.

35) JMStV §19(Einrichtungen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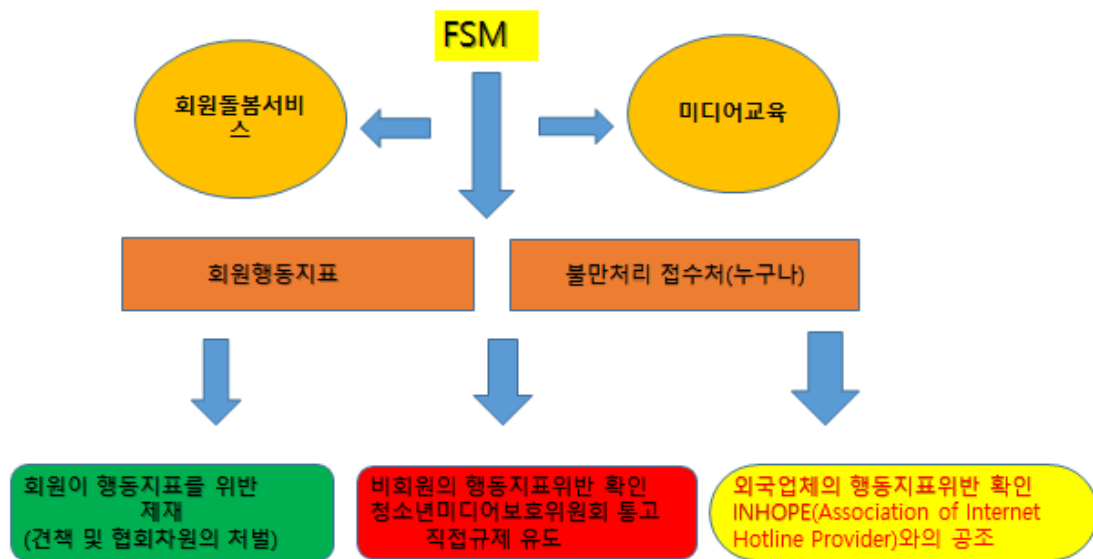
【그림 III-7】 FSM의 운영원리

2005년 FSM이 유일하게 공인된 자율규제기구가 된 이후 미디어관련 기업은 실질적으로 두 방향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FSM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반적 자율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단점은 그러나 【그림 III-7】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직접 감독 하에 놓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 반면 FSM의 회원이 되면 기업은 정부기관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FSM과 조절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직접 상대하는 측은 FSM이므로 결국 회원기업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공인된 창구를 얻은 셈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열린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SM의 측면에서는 회원기업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지만 기업에 소속되거나 기업의 특정협회가 아니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들은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 자율규제기구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규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FSM은 일반자율규제기구에 비해 정당화되고 강력하며 효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동시에 FSM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와 달리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상호조율을 함으로써 기업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SM이 규제된 자율규제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근거는 이와

같이 회원기업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규제로 유도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FSM이 회원기업들의 회비를 받지만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FSM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III-8】과 같다. 구체적으로 회원기업들에 대한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불이행시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제재도 이루어진다.



【그림 III-8】 FSM의 활동

FSM은 단순한 자율규제기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기구이다. 무엇보다 FSM은 회원기업을 대변하여 상담과 조언뿐 아니라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대해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또한 회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준다. 동시에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개인과 가족의 건전한 미디어활동을 돕는다. 나아가 회원기업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미디어주간협약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며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견책부터 회원탈퇴까지 다양한 제재를 통해 긍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비회원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통고 자체적인 직접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외국업체의 위반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INHOPE를 통해 인터넷 핫라인의 유럽지역 공조체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3) 소결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개념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관심’과 ‘구조’ 그리고 ‘체계’이다. 미디어를 통해 범람하는 성적유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실질적이고 의지적인 관심을 독일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심은 청소년보호법 일반으로부터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이라는 방송과 인터넷의 온라인 미디어를 규정하는 법을 탄생시켰고, 동시에 두 법을 각각 전달매체와 통신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나아가 독립적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넷과 청소년미디어 보호 연방심사청을 연결하여 직접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달매체와 통신매체에 각각 하나씩의 공인인증된 자율규제기구를 둬으로써 청소년 성 상품화 등 청소년 미디어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만을 위한 규제된 자율규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을 줄여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FSM의 경우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매개효과를 창출할 가능성도 지닌다. 즉 유연성과 현실성을 우선하는 기업의 요구와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영국*

1) 서 론

영국 청소년들도 유럽경제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급성장해 온 인터넷, 스마트폰의 급속한 전파로 인하여 오락, 창의성발달, 상호작용, 학습과 국제적 문화경험 등 고도 기술발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가파른 범람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성인의 성 상품화의 피해자이자 불법적 구매자로 내몰리는 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영국의 부모들은 청소년들

* 이 절은 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이 유해한 성인물 환경에 노출되고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양상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9). 이와 같은 국민적 우려에 부응하여 2010년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과 자유당 양 정당도 선거공약 정견발표에서 강하고 안정된 가족이 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기반이라는 기치 하에 청소년들이 과도한 상업주의와 미성숙한 성적매력에 이끌리는 문화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었다(HM Government, 2010). 선거가 끝난 후 이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2010년 12월 6일 어머니연합대표(Chief Executive of the Mothers' Union) Reg Bailey를 선임하여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보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영국 부모들 10명 중 거의 9명은 자녀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상품화 문화로 인하여 너무 빠르게 조숙해가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Bailey, 2011). Reg Bailey 보고서는 설문조사, 선행연구,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영국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는데 2011년 6월에 교육부장관이 의회에 제출, 보고한 Reg Bailey의 아동 성 상품화에 대한 독립적 보고서 "Letting Children be Children"이 그것이다. 의회에서 발표한 Reg Bailey의 보고서는 아동 성 상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18개월 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충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입법화하도록 하였다.

Theme 1 -아동의 삶을 도배하고 있는 것들

영국은 점점 더 성문화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많은 부모들은 그런 문화가 자녀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

Ⅱ 정책제안

- ① 출판사, 물류제공업자, 신문방송협회의는 표지에 성애화 된 내용을 담은 잡지와 신문들은 청소년이 보기 쉬운 곳에 두지 않는다.
- ② 광고주, 광고회사,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청소년이 볼 것 같은 장소에서 성애화 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리광고의 양을 줄인다.
- ③ 방통위(Office of Communications/Ofcom)와 방송국은 TV 프로그램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능 여부 경계를 결정할 때 부모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④ 정부는 1984, 2010 비디오기록법(The Video Recordings Act 1984, 2010)에서 뮤직비디오의 연령등급이 없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⑤ 영국 아동인터넷 안전위원회(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는 부모가 가정에서 인터넷의 성인물이나 청소년유해물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야 한다.

Theme 2: 청소년 의류, 상품, 서비스

성애화 되고 편협한 성의식을 심어주는 아동 의류, 상품, 서비스 영역은 영국 부모들의 큰 근심거리이므로 판매업자들은 디자인, 디스플레이, 마케팅 전반에 걸쳐 가족친화적일 필요가 있다.

▶ 정책제안

① 영국 소매기업연합(The British Retail Consortium/BRC)은 소매업자들과 소매업자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무해한 자발적 상거래 규약을 개발하여 동참하게 한다.

Theme 3: 소비자로서 청소년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상행위 세계에 살고 있고 청소년들도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법령과 책임 있는 상행위의 지원으로 관련 문제들을 청소년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제안

①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규칙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관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광고행위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와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16세 이하 청소년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③ 광고행위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와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부모들이 광고기법과 규약, 소비자 고발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방통위(Office of Communications/Ofcom)와 국영 방송국은 청소년들이 성 상품화 내용에 대하여 정서적 탄성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me 4: 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하자

부모들이 성 상품화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참여 방안을 만들고 응답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제안

① 입법당사자들은 성 상품화 관련 입법과정을 부모들이 참여하고 공식적인 feedback을 익명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 있고, 입법결과와 제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업데이트한다.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 당사자들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집에서도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응대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 내용은 'Theme 2: 청소년 의류, 상품, 서비스'의 정책제안에서 나온 자발적 상거래 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Bailey, 2011, pp.21-88 요약)

2) 실 태

영국에서 성과 관련된 이미지는 TV 등 대중 매체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 옥외광고판, 상점 문까지도 도배하고 있어 아동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해오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비교적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주요 방송 채널들도 성적 내용과 이미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그 수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이다(Attwood, 2009). 이런 성적 이미지는 TV 방송편성표에도 나타나고, 뮤직비디오, 잡지, 신문,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이 일반적으로 함께 시청하는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점점 더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녀들이 쉽게 성관련 이미지와 메시지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그런 이미지를 모방하는 풍조들에 대하여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지만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BBC, 2009). 청소년이 성 상품화의 피해자가 되고, 성 상품화의 구매자가 되는 현상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잡지·신문, 광고,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 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① 잡지·신문: 영국 청소년들은 성적 노출 정보들을 잡지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8세 이상 18세 청소년의 거의 절반이 하루 5분 이상 잡지를 탐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berts et al. 2005).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위 'hot'한 정보들을 기사, 사진, 광고에서 찾는 것으로 알려지는 반면 남성 청소년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여성관련 기사나 사진에서 성적 이미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Durham, 1998).

2006년 이래 아동포르노 소지, 제작, 유포 관련 송치현황을 보면 아동대상 성상품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 소지의 경우 2006년에 이미 2,768건에 달하였고, 2010년에 4,543건, 2012년에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참조).

아동포르노 제작 건수도 2006년에 10,761건이나 되었고 2012년에는 14,033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영국의 아동포르노 소지, 제작, 유포 송치현황(2006-2012)**

분류	위반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범죄 정의법	아동포르노 소지	2,768	3,079	4,241	4,117	4,543	3,885	3,849
아동법 1a, 6	아동포르노 제작	10,761	11,209	13,824	13,975	16,289	15,226	14,033
아동법 1b, 6	아동포르노 유포	714	700	949	824	684	743	836

출처: McGuire, 2013, pp.15 재정리

② 광고: 영국의 광고 프로그램에서 성 상품화 현상은 새로운 문제가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점유를 나타낸다. TV 광고에 출연하는 대다수는 여성이며 섹시 아이돌 스타가 주류를 이룬다.

아이돌 스타들은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성인복장을 입고 등장하며 성인 모델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야한 make-up을 하고 섹시한 포즈를 취하며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추기도 한다(Lamb & Brown, 2007). 이런 모습들은 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분히 성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상품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청소년들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성인화된 청소년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성인복장과 make-up, 심지어 행동까지도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③ TV: 영국 TV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많다. 저녁 주요시간대에 편성된 드라마에서도 여성들은 도발적인 의상을 입고 자주 등장하고, 남성들은 그런 여성을 향하여 성적인 대사들을 일상적으로 쏟아낸다(Barr-Anderson et al. 2008). 1990년대부터 불어 닥친 아이돌 스타들을 향한 열풍에 상업화, 성 상품화의 영향으로 아이돌 스타들도 자신들의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인 복장과 섹시한 춤으로 인기몰이를 이어왔다. TV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교육의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공공 방송매체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성 상품화된 청소년의 이미지와 이를 환영하고 열광하는 왜곡된 문화로 인하여 영국청소년들을 잘못된 성문화, 성 상품화 현상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이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④ 인터넷: 영국에서 인터넷은 광고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마켓으로 성장함에 따라 영국 청소년들에게도 그만큼 성 상품화 된 이미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실제로 5-18세 거의 모든 영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에 이미 청소년의 60% 이상이 자신의 인터넷 접속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fcom, 2013). 영국에서 대중적인 Facebook, MySpace, Bebo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 13-14세 나이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의 무용지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자 청소년들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주로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성 이미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미 극도로 성 상품화된 여성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Ringrose, 2010).

영국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인터넷 상 아동대상 성유인 사례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4년 186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3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영국 인터넷 상 아동 성유인 경찰 적발 사례 (2004-2012)**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적 유인	186	237	322	274	313	393	309	371	373

출처: McGuire, 2013, pp.8 재정리

⑤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은 영국의 8-11세 아동 대부분이 즐기는 놀이로 정착하였고, 청소년의 70% 가량이 규칙적으로 게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fcom, 2013). 문제는 청소년들이 즐기는 많은 게임들이 상당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주로 여성 캐릭터들이 그런 대상이 된다는데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 캐릭터의 약 60% 가량이 과도한 노출 형태로 성 상품화된 방식으로 묘사되고, 심지어 청소년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Ofcom, 2013). 특히 노출상태의 여성을 강간 하는 등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

⑥ 스마트 폰: 영국 청소년들은 9살이 될 때 약 절반이 스마트 폰을 소유하고, 15세가 되면 거의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에서 스마트 폰은 청소년의 나이에 부적절한 모든 종류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다(Ofcom, 2013). 영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소위 'sexting'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성적 호기심과 성적 매개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스마트 폰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행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Beatbullying, 2009).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유인하는 2003년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S.15) 위반 기소건수는 2006년 43건에서 2012년 65건으로 63% 증가하였고, 유죄판결 건수도 2006년 36건에서 2012년 81건으로 2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영국 성범죄법 위반 사례 중 인터넷 이용 아동대상 성범죄 유인 범죄 기소 및 유죄건 수 (2006-2012)

구분	위반내용	처벌결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3 성범죄법 15조	16세 이하 여아유인	기소	36	39	36	33	47	49	59
		유죄	29	45	38	40	60	51	63
	16세 이하 남아유인	기소	7	2	13	6	8	11	6
		유죄	7	6	10	9	9	6	8
총계	기소		43	41	59	39	55	70	65
	유죄		36	51	48	49	69	57	81

출처: McGuire, 2013, pp.9 재정리

이상과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영국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전달되는 성

상품화 유해 정보들로 인하여 여성 청소년의 경우 극도로 야위어야하고, 남성 청소년의 경우 근육질이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심어주어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러워 하고 체중에 대하여 염려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져와 비현실적인 기대와 바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한다(Knauss, 2008). 이는 당장 200만 명에 달하는 거식증 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Collins, 2013).

또한 TV,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성 상품화 이미지의 다수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달됨에 따라 여성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남성 청소년은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형상화(Peter & Valkenburg, 2007)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심지어 성 상품화 현상의 피해자가 된 여성을 청소년들이 성적 폭력의 자연스런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도 하다는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2009년 영국 내무성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40%에 달하는 성범죄자가 여성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26%는 여성이 공공연하게 섹시하거나 노출의상을 입는 것은 적어도 성관계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Home Office, 2009) 공공연한 성 상품화 현상이 남성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 이미지를 내면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겐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 청소년은 여성에 대하여 성희롱을 쉽게 여기도록 하고, 여성 청소년은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된다(Dill et al, 2008).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성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관련시행정책 (법 · 제도 및 수행기관)

영국 정부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서 성 상품화의 피해자가 되고, 성 상품화의 구매자로 나서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잡지·신문, 광고,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 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시도해 오고 있다.

(1) 공공 영역

가. 2011년 9월 방통위(Office of Communications/Ofcom)는 저녁 9시~ 오전 5시 30분까지 방송사들의 TV 프로그램 연령제한등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오고 있다. 'TV 프로그램 연령제한등급 가이드라인(Television watershed)'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방영 프로그램의 연령제한등급을 준수해야 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내용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성적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 아닌 이상 위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Ofcom guidance, 2011). 뮤직비디오 TV 방영물의 경우에도 이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나. 1984, 2010 비디오 기록법(1984, 2010 The Video Recordings Act): 비디오 기록법(1984, 2010 The Video Recordings Act)은 비디오 영상물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규약하기 위하여 1984년에 만들어진 법이나 음악, 스포츠, 종교, 교육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2012년에 영국정부는 뮤직비디오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에 대한 Bailey Review 제안에 따라 2014년 초 음악, 스포츠, 종교, 교육관련 내용을 담은 비디오물에서도 연령제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VIDEO RECORDINGS ACT 1984 『EXEMPTED VIDEO WORKS』 REGULATIONS 2014).

다.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part 4)은 15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 모바일 폰 인터넷 등을 사용한 성적유인 사범에 대하여 최대 10년을 구금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 전화(혹은 채팅)나 만남을 한 경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적 유인으로 간주, 아동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여행을 한 경우 성적 유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경우에 다음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였다(<표 Ⅲ-14> 참고).

표 III-14 아동대상 성적 유인 사범에 대한 형량

범죄 내용	최소형량	형량 범위
공격행동으로 성교 혹은 강간의 목적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4년 구금 피해자가 13-16세라면 2년 구금	3-7년 구금 1-4년 구금
아동으로 하여금 강제로 성적 행동을 하도록 의도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2년 구금 피해자가 13-16세라면 18개월 구금	1-4년 구금 12개월에서 2년 6개월 구금
가중처벌 요소	위협 혹은 강제성 마약, 알코올 등 범죄를 조장하는 중독성 물질의 사용 납치 혹은 구금	

라.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part 6A)은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과 1988년 범죄정의법(1988 Criminal Justice Act)을 개정하여 노출이 심한 아동사진을 소지, 제작, 유포, 광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오름차순, <표 III-15> 참고).

- 1 수준: 성적행동 없는 외설적 이미지
- 2 수준: 아동 간 성교 없는 성적 행동 이미지, 혹은 아동 자위 이미지
- 3 수준: 성인과 아동 간 성교 없는 성적 행동 이미지
- 4 수준: 아동을 포함하거나 아동 간, 혹은 아동과 성인 간 삽입이 포함되는 이미지
- 5 수준: 가학성애, 수간

표 III-15 아동 외설 사진 소지, 제작, 유포,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

범죄 내용	최소형량	형량 범위
4-5 수준 이미지 제작하도록 의뢰하거나 동기부여한 자	6년 구금	4-9년 구금
4-5 수준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자		
4-5 수준 이미지를 유포한 자	3년 구금	2-5년 구금
1-3 수준 이미지를 제작 혹은 판매한자	2년 구금	1-4년 구금
4-5 수준 이미지를 개인적 목적으로 대량 소지	12개월 구금	6주-2년 구금
3 수준 이미지를 대량 유포		
- 3 수준 이미지를 개인적 목적으로 대량 소지	26주 구금	4주-18개월 구금
- 4-5 수준 이미지를 소량 소지		
- 2 수준 이미지를 대량 유포		
- 3수준 이미지를 소량 유포		
- 2 수준 이미지를 대량 소지하거나 3수준 이미지 소량 소지	12주 구금	4주-26주 구금
- 1-2 수준 이미지 유포		

범죄 내용	최소형량	형량 범위
- 1-2 수준 이미지를 경제적 이득없이 다른 소장품과 교환 1수준 이미지를 개인적 목적으로 대량 소지, 유포하지 않은 경우	사회봉사 명령	구금 없는 형량
가중처벌 고려사항	가중 처벌 감형 요소	
- 타인, 특히 아동에게 유포 - 판매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보관 - 타인이 무심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지 저장 - 위협 혹은 강제성 - 마약, 알코올 등 범죄를 조장하는 중독성 물질의 사용 -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 - 피해자를 타인에게 알리겠다 위협하는 행위 -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	- 개인적 목적으로 소량의 이미지 보관 - 보기는 했으나 저장하지 않은 행위 - 개인적 목적으로 소량을 판매했거나 대상이 16세 이상일 경우	

마. 영국 아동인터넷 안전위원회(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의 주도하에 영국의 주요 인터넷 및 모바일 전화 제공회사들(BT, Sky, TalkTalk, Virgin Media)의 동의로 2012년 10월까지 부모가 임의로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의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 2011, 표 III-16 참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성인관련 혹은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려 계획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표 III-16 영국 인터넷 안전위원회 인터넷 부모통제 실행 규약

영국 BT, TalkTalk, Virgin Media and Sky의 인터넷의 부모 통제 실행규약
인터넷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함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온라인상에 있으나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은 어른들에게만 적절한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이 있다. 영국의 주요 인터넷 제공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ISP 기술을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터넷의 부모통제 실행 규약을 제시한다. -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구입 장소, 설치장소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동 서비스는 추가 요금 부담을 하지 않는다. - 기존 모든 사용자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규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 향후 보다 발전된 인터넷 사용 규제방안이 나올 때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다. -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안전을 교육하는 NGO, 학교, 경찰 등과 공조할 방안을 모색한다. - 이용자 의견을 받아 인터넷 부모 사용 규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인식개선에 참여하는 정부, 의회, 정책입안 전문가들과 공조한다.

바. 광고행위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2014년 개정된 광고규약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을 묘사하는 형태로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The BCAP Code/The UK Code of Broadcast Advertising, 2014: 5.5)을 분명히 하였다.

사. 2012년 11월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보고 듣는 광고물들에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이미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권리, 책임, 의무, 자유, 시민권’의 견지에서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Ad: Check’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III-17> 참고).

표 III-17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청소년 유해 성 상품화 이미지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학교(교사, 학생) 제공 자료

Ad:Check은 선생님들에게 광고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학급활동 시에 광고제작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이해를 넓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Ad:Check은 학생들에게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 책임, 자유, 시민권에 대하여 논쟁이 될 수 있는 광고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 광고는 왜 법규가 필요한가?
- 광고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가?

다음 자료들을 pdf형태로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요 [PDF] : 광고 규약 요약

- 큰질문 1: 1: 광고는 왜 법규가 필요한가? [PDF]

PowerPoint 자료 BQ1, 활동자료 Paddy Power [video]

- 큰 질문 2:광고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PDF]

Videoresource:Lesson2, 활동 1- Beyoncé Heat perfume [video]

- 큰 질문 3: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가?[PDF]

PowerPointBQ3 Resource 1

Videoresource:Lesson1, 활동 1- Belle D’Opium perfume [video]

〈다양한 자료〉

- 잘못된 광고: non-broadcast ads [ppt]
Clinique ad [video]
Burger King ad [video]
- 유해한 광고: non-broadcast ads [ppt]
Barnados ad [video]
British Heart Foundation ad [video]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d [video]
London Dungeon ad [video]
Reebok ad [video]
Tango ad [video]
Harmful advertising notes [PDF]
Offensive advertising Offensive advertising: non-broadcast ads [ppt]
Department of Health ad [video]
KFC ad [video]
Motor Neurone Disease ad [video]
Reed ad [video]
Trident ad [video]
- 범죄를 부추키는 광고 [PDF]

출처: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Ad: Check 자료실
웹사이트 <http://www.asa.org.uk/News-resources/School-parent-resources.aspx>

아. 청소년 인터넷 안전 전담기구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설치·운영 : 영국정부는 8·17세 아동·청소년 중 인터넷 사용자가 99%에 달하고 SNS 등 사용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을 넘어감에 따라 온라인상 커뮤니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련 안전위협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의 성적착취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CEOP는 아동·청소년의 성관련 안전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국내외 공조를 주도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계·주도하는 국가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는 영국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gency)의 산하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CEOP의 하는 일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관련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국가센터로서 아동·청소년의 성 관련 안전 위협요소 예방 및 발견/개입, 특히 온라인 서비스로 신고 및 개입의 핵심역할을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관련 학대, 피해, 범죄, 위기로인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온라인 신고의 최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장 발전된 인터넷 신고전략방안을 수립·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②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관련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경찰, 범죄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 인터넷 업계의 도움에 의한 다면적 접근이 문제해소에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CEOP는 2006년에만 국내에서 14,070건, 국외 공조조직으로부터도 10,000건의 아동·청소년 성학대·착취 신고를 받아 개입을 진행하였다. 최근 2012년 '아동포르노 유포, 온라인 아동 성착취, 다국적 아동 성학대, 아동성학대 교제'에 대한 '전략적 위협 사정(Strategic Threat Assessment)'를 실시한 결과 '아동포르노 유포자'는 50,000명,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유인' 사례 1,145건, '다국적 아동 대상 성학대' 영국인 66명, '아동성학대 교제' 피해아동 2,409명(가해자 1,514명)을 발견하였다(CEOP, 2013).

③ CEOP는 2013년 6백 45만 파운드(약 110억)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해 국내외 경찰, 아동학대전문기관(NAPCC, Childnet) 전문가, 인터넷(Microsoft, AOL, Vodafone) 서비스 관련 전문가, 정부관련 전문가(교육부, 내무부, 외교부 등)들 112명(경찰 13명) 파견되어 와서 업무를 진행한다(CEOP, 2013, Annual Review 2012-2013:19). CEOP는 정보(Intelligence), 위해감소(Harm Reduction), 작전(Operation)부서로 구분되며 각 부서는 관리, 통신, 공조, 협력 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으로 구성된다. 정보(Intelligence) 부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범죄관련 정보를 받으며 모든 정보보고는 센터웹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해감소(Harm Reduction) 부서는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영국 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성문제 특화 프로그램인 'ThinkUKnow'를 활용한다. 작전(Operation)부서는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자 아동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학대가해자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한다.

④ 국내외 기관과 공조 아동학대 이미지 소지 및 유포 조직 발견 및 검거 공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lickCEOP'를 개설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누구나 발견 즉시 리포트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한다(【그림 III-9】 참고).

CEOP는 인터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2004년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가상대책반(Virtual Global Taskforce)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하여 대처한다.

MSN Messenger

ClickCEOP : MSN Mess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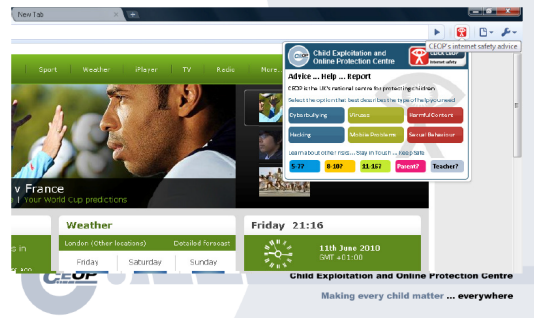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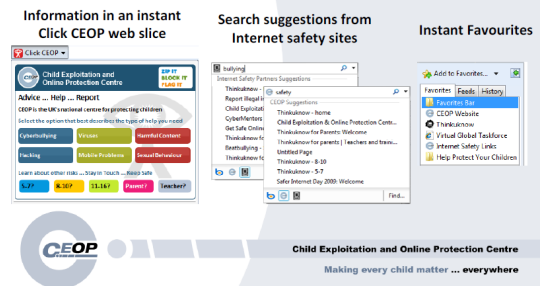
Google Chrome

ClickCEOP : Google Chrome



Internet Explorer 8

ClickCEOP : Internet Explorer 8



【그림 III-9】 CEOP 인터넷 주요 공조 사이트

- ⑤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 ⑥ 교사, 경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적 착취·학대·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한다. 2006~2009년 까지 'EU연합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 프로그램 (European Commission's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의 지원하는 'ThinkuKnow education programme)을 통하여 500만 명의 아동,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 관련 전문가들을 교육하였다 (Forward, 2010).

(2) 민간 영역

가. 신문·잡지 관련 협의회는 시민들의 염려와 우려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진열하지 않도록 하는 신문·잡지의 진열 가이드라인을 3만부를 만들어 모든 관련 소매상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부모들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ParentPort』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10】 참고).

 ParentPort 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ParentPort 는 영국 미디어협의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유해한 자료들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자녀에게 유해한 어떤 것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ParentPort 바로 그런 청소년을 미디어 상 나타나는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니다. 언제라도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시면 ‘Make a Complaint’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ParentPort 바로 응답할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 • 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ATVOD) • BBC Trust •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 • Ofcom • 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 • Video Standards Council (VSC)
오늘의 인터넷 상식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녀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부모님을 위한 Q and A 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ParentPort에서 민원을 손쉽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TV 프로그램, 광고, 영화, 비디오게임, 신문, 잡지 그밖에 어떤 관련 내용에서 자녀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하셨을 때 바로 이곳에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III-10】 Parent port 웹사이트 <http://www.parentport.org.uk>

나. 2011년 10월부터 광고협회(the Advertising Association/AA)는 옥외광고 시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이 만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이미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표 III-18> 참고)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옥외광고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2011년 6월, Reg Baily의 아동의 광고화와 성상품화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 이후 교육부는 ‘Letting Children be Children’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 정책은 아동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성상품화 이미지를 포함하는 옥외광고를 줄이도록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에 촉구하고 있다. 사실 ASA는 ‘Letting Children be Children’ 정책보고서가 출간되기 전에도 잘못 가이드 되고 있는 광고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ASA는 광고에서 아동의 성 상품화 문제가 아동과 부모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주목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책임적인 선정적 성상품화 이미지들로부터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 받는 것이다.

‘무책임한 성적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SA는 사례별로 적절한 판단을 하려 한다. 판단과정에서 사회의 보편적인 표준에 해당하는 의견을 고려하면서, 대중의 관점에서 성적 이미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제기된 사항들을 보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 상품화 이미지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첫째, ASA는 옥외 이미지광고를 대중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필 것이다.

둘째, ASA는 일부 성적인 이미지의 옥외 광고 노출 장소를 고려할 때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즉, 광고상품의 본질, 광고장소, 광고사이즈와 수위, 일반대중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스쿨존 100 미터 이내에는 옥외광고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을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선정적이지 않거나 악하게 선정적인 경우: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있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우,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해당된다. 이와 비슷한 옥외 광고들의 이미지들은 선정성이 미약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선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들: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란제리를 입고 유혹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 제한 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아동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
- 완전히 선정적인 이미지라 옥외광고로 허용될 수 없는 이미지: 여성이 란제리 옷을 입고 하의 속옷 옆과 상의 속옷 끈을 푼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성 상품화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커플이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란제리 입은 여성의 표정이 전체적으로 선정적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면 이 또한 옥외광고물로 허용될 수 없다.
- 광고주들이 광고를 제작할 때 성 상품화 문제와 관련하여 ASA가 선정적인 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정적인 포즈로 의혹 받을 수 있는 내용: 다리 부분, 힙의 강조
- 요염하고 선정적인 얼굴 표정
- 가슴 노출, ‘부분적으로’도 포함
- 힙 위에 올린 손,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잡으면서 선정적인 얼굴 표정
- 자신을 선정적이게 만지는 행위: 다리를 쓸거나 가슴 잡는 행위
- 오르가즘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이나 몸 자세
- 옷 벗는 행위, 예를 들어 하의 속옷이나 상의 속옷을 풀거나 내리는 행위
- 중요 신체 부위를 집중하게 만드는 자세

- 사람들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자세
 - 명백한 선정적 란제리 예를 들어 스타킹 벨트 채찍 사슬과 같은 장비
- <http://www.asa.org.uk/Resource-centre/~media/Files/ASA/Reports/Advertising%20and%20young%20people%20June%202011.ashx>

다. 영국 소매기업연합(The British Retail Consortium/BRC)은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편향성과 브라나 비키니 형태의 성인화된 의류 디자인 제품 제공과 판매를 제한하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회원 중 약 40%가 동 캠페인에 동참하였다(The British Retail Consortium, 2011).

4) 소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청소년이 상업주의 물결에 밀려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들은 옥외광고나 서점, 상점에서뿐만 아니라 공중과 방송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여과 없이 전달되는 성적 내용과 이미지로 인하여 건강하게 성숙해야 할 과제들을 성취하기보다 그런 유해한 요소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영국 청소년들은 성적 노출이 일상화 되어있는 잡지와 신문을 자신도 모르게 일상적으로 접하고, 광고프로그램에서 성인복장으로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자기포레 아이돌 스타를 보며 성인과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여성을 TV를 통하여 학습하고, 인터넷 상에서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여성 캐릭터를 선호하도록 내몰리며,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은 노출과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청소년의 잘못된 감성을 자극하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역행한다. 영국 청소년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sexting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왜곡된 메시지와 성 상품화 현상에 대하여 부모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런 성 상품화 현상이 건강한 가족문화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영국사회의 결속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정책마련을 고심해 왔다. 먼저, 영국정부는 2011년 범국민적인 성 상품화 현상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련의 성 상품화 현상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대처는 공중과 방송에서

비디오물도 연령제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법안을 손질하고, 방송위원회는 심야시간대 이전에는 성인물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TV 프로그램 연령제한등급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 산하 광고표준국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광고물에서 자신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이미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해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Ad: Check’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인터넷 안전위원회의 주도로 영국 인터넷 및 모바일 회사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의 청소년 유해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광고행위위원회도 2014년 새로이 개정된 광고규약에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을 묘사하는 형태로 광고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광고협의회는 옥외광고 시 청소년 유해 성 상품화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신문·잡지 관련 협의체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장소에 성관련 내용 포함 신문·잡지 진열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부모들의 우려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적용하려는 시도로 부모 민원 수집 웹사이트 ‘ParentPort’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영국 소매기업연합도 성인화된 의류 디자인 제품의 제공과 판매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분야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를 대처하는 영국의 민관 협력적 시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그에 따른 주요결과로 제기되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영국정부가 2006년에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설립하기 이전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 간 노력들은 파편화된 접근과 개별 부처 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와 성매매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인권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학대 문제에 대하여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시급하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에서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³⁶⁾ 유인(grooming)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실제상황에서 이를 조장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바가 있다. ‘2005년 아동학대 및 성범죄방지법(스코틀랜드)(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도 16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학대 문제에 대하여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하여 야간시간대에 TV에서 성인물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TV 프로그램 연령제한등급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고, 광고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이미지를 신지 못하도록 구체적 제시를 포함하며, 인터넷·모바일 회사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의 청소년 유해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옥외광고나 신문잡지 광고 시 청소년 유해 성 상품화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개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학대 문제는 지역·국가적 문제이고 국제적 양상을 띠므로 지방정부와 부처 간 연계, 국제공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영국은 2006년에 이미 청소년 인터넷 안전을 전담하는 곳으로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설치하였는데, 영국의 CEOP는 경찰, 인터넷산업체, 그리고 관련부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CEOP는 정부와 통신업체 재원으로 가동되며, 경찰과 범죄 관련 종사자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되고 온라인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청소년을 유인하는 채팅사이트를 찾아 범죄자를 색출하고,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웹사이트를 추적하며, 함정 수사도 전개한다. CEOP는 인터넷 ‘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 사이트로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CEOP 지능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36)구체적인 성매매 내용이 없어도 사전 시도행위를 포함.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부처 간 각각 진행되고 있는 방송 통신 및 온라인상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매매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1) 실시간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핫라인 전화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2)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매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응급구조팀을 운용하며, (3) 지역사회·국가·국제 공조가 가능하도록 파트너쉽³⁷⁾을 형성하여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4)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국*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성적 물상화 또는 성 상품화(sexual objectification)는 한 관심 있는 외국인에 의해 잘 지적되고 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영국인이 운영하는 "거창한 이야기(The Grand Narrative)"가 바로 좋은 보기다.³⁸⁾ 이 웹사이트는 한국인의 여권운동(feminism), 성, 대중문화에 관해 분석하며, 이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타임(Time),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뉴스전문 케이블방송 씨엔엔(CNN), 세계적 통신사 합동통신(The Associated Press, AP), 슬레이트(Slate), 제제벨(Jezebel), 버스트(BUST) 등에 한국사회의 성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과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성 상품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작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관련하여 미국의 성 상품화에 관한 현황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관한 대책을 모색한다.

37) 경찰, 실종아동보호기관, 입양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 절은 안동근(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38) <http://thegrandnarrative.com/about-2/>

1)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영향

미국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2014년 7월 23에 발표한 Pew Internet Project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의 78%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47%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80%는 데스크탑이나 랩탑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23%는 테블릿 컴퓨터를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81%는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76%는 페이스북을, 24%는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15%의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Instagram), 7명 가운데 1명은 핀터레스(Pinterest), 10명 가운데 1명은 텀블러(Tumblr)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그러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재 10대들이 2020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한 퓨연구소의 대답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10대들과 청년들의 두뇌는 35세 이상의 어른 세대들과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들은 보다 많이 배우고 보다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찾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행동과 인지능력의 변화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들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들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들 대부분의 에너지를 짧은 소셜 메시지를 공유하고, 오락을 즐기고, 사람과 지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소비할 것이다. 그들은 깊은 사고능력을 결핍하고,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인관계능력이 결핍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퓨연구소는 미국 10대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통한 성적 이미지 교환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퓨연구소는 미국 전국의 12세-17세 10대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퓨연구소 인터넷과 미국인의 삶 프로젝트(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15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⁴⁰⁾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의 10대들은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누드 또는 누드에 가까운 자신들의 이미지를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39) http://www.pewinternet.org/files/2014/07/How-teens-do-research_ACT-college-planners_pdf.pdf

40) <http://www.pewinternet.org/2009/12/15/teens-and-sexting/>

나타났다. 15%의 10대들은 자신들의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누드 또는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를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10대들이 어린 10대들보다 더 많은 "성적인 메시지(sexts)"를 받는 경향이 있다. 휴대전화를 소유한 17세의 8%가 도발적인 성적 이미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가 하면, 30%가 누드 또는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전화사용료를 지불하는 10대들이 더 많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화요금을 자신들이 내는 10대들의 17%가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전화요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는 10대들의 3%만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산업 규제

청소년의 성 상품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영화산업의 발달과정과 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페인재단연구(Payne Fund Studies)가 최초이다. 이 연구프로젝트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16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영화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 논문과 책으로 출간하여 미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11개의 연구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Lowery & De Fleur, 1983). 1920년대는 영화가 가장 인기 있는 대중매체로 자리 잡은 시기로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대중 오락매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때였다. 1922년에 영화관람표는 매주 4천만장이 팔렸고, 1929년에는 그 숫자가 9천만장으로 치솟았다. 그 가운데 약 4천만은 아동 청소년들이 구매한 것이고, 약 1천7백만장은 14세 미만의 아동들이 구매한 것이다. 이토록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영화구경을 한 사회적 배경은 맞벌이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동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은 오락 수단이 바로 영화였다.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영화의 인기는 부모, 교육자, 학자들의 관심과 걱정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부적절한 할리우드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페인재단에서 연구기금을 지원하여 영화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페인재단연구의 연구 결과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1920년 500편, 1925년 500편, 1930년에 제작된 총 1500편의 영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영화는 범죄, 섹스, 사랑, 미스터리, 전쟁, 어린이, 역사, 여행, 코미디, 선전선동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500편의 영화의 3/4이 넘는 영화가 범죄, 섹스, 사랑을 주제로 다루었다. 영화장면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진행한 연구결과, 영화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만약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의회를 통한 법 제정으로 영화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영화협회는 1930년에 미국의 주요 할리우드 영화제작사협회가 영화제작강령(Motion Picture Production Code)을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영화산업계에서 준수하도록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1968년까지 시행되다가 1968년 11월 1일 영화산업계는 처음으로 영화등급제를 개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오늘날 영화등급제의 초석이 되었으며, 미국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의 자율규제제도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텔레비전 산업 규제

미국에서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생산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청소년 아이돌의 성 상품화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까닭은 미국 대중문화가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한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산업 탄생 초부터 성적 노출을 통한 여성의 물상화(objectification) 또는 성 상품화(sex appeal)가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에서 아이돌의 인기는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리우드 배우들은 미국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20년대 초 미국 영화관의 주요 고객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영화계의 아이돌들의 말과 행동과 패션을 열심히 흉내내는 바람에 정부와 부모와 교육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유명한 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영화는 아동 청소년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인 결과를 얻었다(Lowery, & De Fleur, 1983 참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할리우드 영화산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만일 영화산업계가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영화산업계는 오늘날 영화등급제의 뿌리인 자율규제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⁴¹⁾ 영화라는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포르노그래피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 권력이 영화 예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헌법이 보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영화산업계의 자율규제는 오늘날 미국 대중문화산업계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81년 미국 뮤직텔레비전(MTV)의 등장과 함께 음악계에서 아이돌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음악계의 아이돌의 노출은 영화배우 못지않게 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이 미국 사회의 특징이다. 비록 성인이기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춤동작은 매우 선정적이지만 그러한 춤동작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의 신체적 노출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수용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그 정도의 노출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저스틴 비버가 10대일 때의 공연을 보면 노출이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사회가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아이돌을 포함한 연예인들의 노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심지어 10대 아이돌이 공연을 하면서 보여주는 노출이나 선정적 춤동작과 저속한 노래 가사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돌들의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 동작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유통,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관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포르노그래피 그 자체는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1)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원인

미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가족 프로그램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시트콤을 보면 청소년들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기준으로 이 청소년들의 패션을 보면 매우 노출이 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행동도 매우 자유분방하여 신체적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노골적인 암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에서의 노출과 암시적 행동은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사실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영화와 그 이후 텔레비전의 사회적 효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Lowery, & De Fleur, 1983 참조). 즉 청소년들은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 태도, 행동을 흉내 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는 대중매체에 노출이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바비 인형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 이는 바비 인형이 지닌 소녀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 때문이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들 특히 소녀들은 텔레비전, 뮤직비디오, MP3, 영화, 카툰, 애니메이션, 매거진/웹진, 스마트폰과 같은 대중매체의 주요 이용자층으로 부상하였다.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성 상품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에 매일 같이 노출됨으로써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여성은 성적 유희의 대상'이라는 메시지에 노출되고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게 된다(APA,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대중매체에서 청소년들의 섹스어필은 시청률을 올려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성인 아이돌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보여주는 연기나 아이돌 가수들의 섹시한 춤동작과 노골적인 가사는 청소년 시청자들은 물론 청소년 아이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나머지 청소년 성 상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노출을 은밀하게 생산하고 교환하는 일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단속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완화정책과 함께, 미국 텔레비전에서는 황금시간대(prime time)에 암시적인 누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http://www.entertainment.time.com/2013/06/10/is-there-an-epidemic-of-nudity-on-primetime-tv/print/>

5)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영향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성 상품화는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 상품화된 대상, 이를테면 아이돌과 같은 대상을 접하는 여고생들이나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 만족도가 낮아지며, 섭식 장애, 낮은 자존감, 우울증, 심지어 신체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 소녀들의 성상품화는 미국사회에 만연한 개방적인 성적 태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 소녀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발생,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APA, 2010).

(1) 성적 개방, 성폭력 및 성매매 조장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성적 이미지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일수록 성의식이 개방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적극적인 성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자신 사용한 옷가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의 형성과, 그 결과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약화시켜 성매매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심지어 국제적인 성매매와 성노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청소년들에게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성을 매개로 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이렇게 쉽게 번 돈으로 자신이 사고 싶은 옷, 액세서리 등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유혹과 함정에 빠져들어 자신을 삶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상실할 수 있다. 그 결과 학교에 출석을 게을리 하게 되고 학교에서 급우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쁘게는 선량한 학생들을 나쁘게 몰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창 호기심이 많고 모방하기 좋아하는

청소년기에 또래들의 행동은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모 자녀관계에 악영향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미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자녀들의 지나친 노출과 행동은 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시트콤에 등장하는 청소년 아이돌들의 신체 노출과 지나친 행동을 따라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편하게 바라보는 부모는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는 자녀들에 옷가지나 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자녀들은 반발하다보니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더 소원한데, 이러한 틈을 타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악영향이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6) 스마트시대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규제법 및 대책

미국에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아이돌의 노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된 법률은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들은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오고 있다. 참고로 아래 법률에서 아동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이다.

(1) 아동온라인보호법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⁴³⁾의 일부(외설규제 조항)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미국은 합법적인 성인음란물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터넷 상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을 제정하였다.⁴⁴⁾ 제231조 e항에서 17세 미만을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43) http://www.ipmall.info/hosted_resources/crs/96-321.pdf

44) 외설(decency) 규제는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음란(obscenity)에 대한 법리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음란물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있다. 이 법률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 및 통신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시간이나 노력, 노동 등을 투입하는 자와 인터넷에 게시된 미성년자 유해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법률은 저속한 표현을 한 자에게도 적극적인 항변(affirmative defense)의 기회를 허용한다. 즉 미성년자 유해물에 대해 선의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 기소에 대한 적극적 항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아동인터넷보호법

인터넷아동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은 학교와 공공 도서관 컴퓨터에서의 아동이 그들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접속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⁴⁵⁾ 이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나 인터넷 등급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학교나 공공 도서관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나 공립학교의 컴퓨터에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그래피, 미성년자(17세 미만)에게 유해한 시각적인 묘사가 담긴 내용의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여과시켜주는 기술적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 안전 정책을 보유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아동 음란 및 포르노그래피방지법

아동음란 및 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COPPA)은 아동 대상 범죄를 조장하는 아동 음란 및 포르노그래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 및 포르노그래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⁴⁶⁾ 이 법은 명백한 성적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청소년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정보에 대한 중개와 교사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각적 묘사는 성적 행위를 대상이 실제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나 컴퓨터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봉되지 않은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그 외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전자적, 기계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생성된 사진, 비디오, 그림,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45) <http://www.fcc.gov/guides/childrens-internet-protection-act>

46) <http://www.coppa.org/#>

(4)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대책

미국심리학회(APA)는 2010년 연차보고서에서 미국 의회와 청소년 관련 연방기구와 미디어 산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힘을 합해, 모든 종류의 대중매체와 상품에서 소녀들의 성상품화 이미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APA, 2010).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을 위하여 미국의 주요 SNS 기업과 포털사이트들은 국내의 모니터링 회사에 외주를 주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있다.

7) 스마트시대 청소년 성 상품화 정책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스마트시대에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아이돌의 공연 시 보여주는 선정적인 춤 동작과 노출과 저속한 언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남녀노소가 가정에서 동시에 시청하는 지상파 방송 공연 중계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아이돌의 지상파 방송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의 문화는 신체적 노출과 저속한 언어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돌 그룹의 신체적 노출이나 선정적 춤동작과 저속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하다. 아이돌의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려는 연예기획사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규제에 앞서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율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돌과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도 건전한 대중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율규제에 적극적인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문화콘텐츠진흥기금

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아동 청소년 아이돌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정부와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구들이 알맞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돌이나 일반 아동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경우에 외국의 수사기관과 청소년보호단체들과 협력해서 관련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공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 청소년 포르노그래피 제작, 유통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수사공조체제를 청소년 성 상품화 행위에 대해서 응용 가능한 것을 골라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및 법원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에 따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찰, 경찰, 법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범죄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5. 일본*

1) 서론

(1) 청소년 대상 복지사범

과거 10년간 복지사범의 법령별 송치건수는 다음과 같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의 송치인원이 200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만남사이트규제법 위반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9> 참조).

* 이 절은 박병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표 III-19 일본의 복지사범의 법령별 송치건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성년자음주금지법	111	108	154	165	182	157	148	179	132	134
미성년자흡연금지법	30	45	56	91	323	804	1,059	1,271	1,375	1,146
풍속영업법	522	571	645	646	560	425	379	400	367	363
매춘방지법	228	165	127	126	103	104	66	62	92	46
아동복지법	704	731	653	626	513	457	402	431	371	402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1,845	2,049	2,229	1,914	1,732	2,030	2,296	2,297	2,291	2,353
근로기준법	56	115	104	119	90	58	38	44	81	81
직업안정법	107	93	97	54	67	34	22	78	52	46
독극물단속법	498	342	222	191	112	111	66	28	29	4
마약단속법	252	250	170	147	99	137	119	124	94	56
청소년보호육성조례	2,020	2,251	2,578	2,896	2,970	3,013	3,078	2,860	2,635	2,698
음란성행위 등	1,491	1,546	1,682	1,755	1,716	1,644	1,534	1,351	1,222	1,344
심야외출제한	279	465	685	954	1,041	1,183	1,335	1,295	1,210	1,123
만남사이트규제법	31	18	47	122	367	348	404	451	360	337
기타 특별법	151	99	82	78	74	75	69	31	30	21
총 계	6,555	6,837	7,164	7,175	7,192	7,753	8,146	8,256	7,909	7,687

출처: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5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2014, <그림>2-2-1 참조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의 송치상황을 보면, 2013년의 송치건수는 2,353건으로 전년보다 62건(2.7%) 증가하였고 송치인원은 1,893명으로 전년보다 46명(2.5%) 증가하였다.

최종별로는 아동매춘사건이 송치건수·송치인원 모두 감소경향에 있지만, 아동포르노 사건은 송치건수·송치인원 모두 증가경향에 있다. 2013년의 송치건수는 1,644건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으며, 인터넷을 직접 이용한 아동포르노 사건도 1,124건으로 전년보다 39건(3.6%) 증가하였다(<표 III-20> 참조).

표 III-20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송치건수	아동매춘	1,668	1,579	1,613	1,347	1,056	1,095	954	842	695	709
	만남사이트 이용	745	654	775	679	531	358	254	230	213	123
	텔레폰클럽 영업	178	219	169	61	46	72	54	86	29	34
	아동포르노	177	470	616	567	676	935	1,342	1,455	1,596	1,644
	인터넷 직접 이용*	85	136	251	192	254	507	783	883	1,085	1,124
	총 계	1,845	2,049	2,229	1,914	1,732	2,030	2,296	2,297	2,291	2,353
송치인원	아동매춘	1,095	1,024	1,140	984	860	865	701	662	579	641
	만남사이트 이용	498	495	593	596	428	336	227	207	195	112
	텔레폰클럽 영업	135	129	119	61	48	65	41	54	27	32
	아동포르노	137	312	350	377	412	650	926	1,016	1,268	1,252
	인터넷 직접 이용*	76	110	174	172	213	394	644	725	954	978
	총 계	1,232	1,336	1,490	1,361	1,272	1,515	1,627	1,678	1,847	1,893

주)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5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2014, <그림>2-1-2 참조

* 아동포르노 중 '인터넷 직접 이용'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또는 구성요건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만남사이트를 통한 아동매춘 기회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남사이트규제법) 제6조(금지유인행위) 위반사건의 송치상황을 보면, 2013년의 송치건수는 337건으로 전년보다 23건(6.4%) 감소하였고, 송치인원은 338명으로 전년보다 19명(5.3%)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일본 만남사이트규제법 위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송치건수	1호	12	8	18	42	102	75	105	113	104	147
	2호	6	4	15	56	158	154	183	227	166	141
	3호	12	6	8	13	50	46	57	34	39	24
	4호	1	0	6	11	57	73	59	77	51	25
	총 계	31	18	47	122	367	348	404	451	360	337
송치인원	1호	10	7	16	37	102	74	102	110	100	146
	2호	6	4	17	53	157	154	185	223	166	142
	3호	12	6	8	12	48	33	55	34	38	34
	4호	1	0	7	12	60	80	60	76	53	26
	총 계	29	17	48	114	367	341	402	443	357	338

주)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5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2014, 〈표〉2-1-3 참조

* 1호: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유인·알선

2호: 성인에 대한 아동과의 성교 유인·알선

3호: 아동에 대한 대가 지불 이성교제 유인·알선

4호: 아동과의 대가수수 이성교제 유인·알선

한편, 아동매춘의 피해아동 수는 감소 경향에 있으나 아동포르노 사건의 피해아동은 증가경향에 있으며, 2013년에 새롭게 특정된 피해아동은 646명으로 전년보다 115명(21.7%) 증가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표 III-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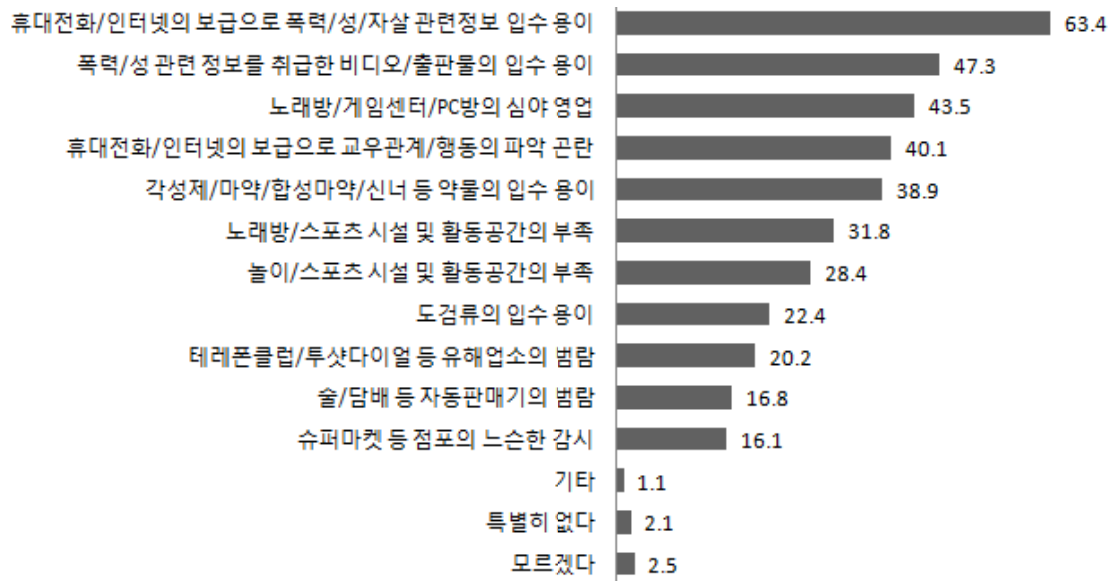
표 III-22 일본 아동매춘·아동포르노규제법 위반의 피해아동·청소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동매춘	미 취 학	0	0	0	0	0	0	0	0	0
	초등학생	10	7	7	2	0	2	1	1	2
	중 학 생	596	588	478	378	323	319	280	222	177
	고등학생	670	558	460	460	343	331	324	276	190
	기타학생	10	4	4	5	1	5	3	1	0
	유직소년	36	52	49	50	23	34	13	15	12
	무직소년	274	295	327	249	156	198	120	104	91
	총 계	1,596	1,504	1,325	1,144	846	889	741	619	471
아동포르노	미 취 학	0	5	12	6	6	9	33	20	16
	초등학생	5	26	26	24	33	53	93	81	57
	중 학 생	30	68	126	105	126	157	223	233	200
	고등학생	33	119	74	122	147	161	228	228	233
	기타학생	0	0	2	0	0	0	1	3	2
	유직소년	4	4	3	6	7	3	9	6	7
	무직소년	10	24	10	12	19	22	27	29	16
	총 계	82	246	253	275	338	405	614	600	531

주)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5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2014, 〈표〉2-1-2 참조

(2) 청소년 비행의 사회환경 요인

일본 내각부가 2010년 11월 20세 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63.4%로 가장 높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간단하게 폭력과 성, 자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47.3%), '간단하게 폭력과 성에 관한 정보를 다룬 비디오·출판물을 입수할 수 있다'(43.5%), '노래방, 게임센터, PC방 등이 심야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40.1%),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년의 교우관계와 행동을 파악하기 힘들게 되고 있다'(38.9%)의 순이었다(【그림 III-11】 참조).⁴⁷⁾



【그림 III-11】 청소년 비행의 사회환경 요인

47) 日本 内閣府, 「少年非行に関する世論調査」, 2010.11~12. <http://survey.gov-online.go.jp/h22/h22-shounenbikou/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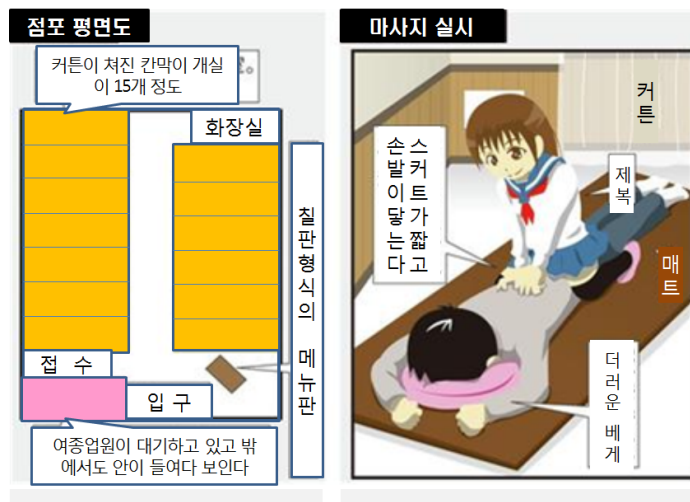
2) 청소년을 이용한 유해정보

(1) 청소년을 이용한 유해정보의 실태와 문제점

가. JK 산업(JK business)

‘JK 비즈니스’, ‘JK 산업’이라는 형태의 유해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함께 산책을 하는 것부터 매매춘까지 이루어지는 여고생 대상 섹스산업이다.

JK 리플레는 여고생에게 객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이다. 리플레는 손발 마사지를 의미하는 리플렉솔로지(reflexology)의 약자이다. JK 리플레는 여고생에 의한 마사지라는 의미로서, 여고생을 만지거나 여고생이 만져 주는 형태이다.⁴⁸⁾



【그림 III-12】 JK 리플레의 이미지

일반적인 마사지 점포는 국가자격이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JK 리플레와 같은 점포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개업하기 쉬워서 점포가 급증하고 경쟁이 심해졌다. 손님을 확보하려는 점포 측과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소녀의 안이한 계산이 맞아떨어져 어린 소녀를 상품으로 위법한 점포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JK 리플레’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봄이다. 아키하바라(秋葉原) 지역을 중심으로

48) 仁藤夢乃, 『女子高生の裏社会』, 光文社新書, 2014. p.62.

점포가 늘어나, 2013년에는 동경에만 약 80개 점포가 있다.

JK 리플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업자들은 JK 산보와 JK 촬영회라는 신종 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JK 촬영회'는 객실 안에서 소녀들을 손님이 원하는 포즈로 촬영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점포로서, 아키하바라에만 약 100개에 달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기본요금은 60분 8천 엔, 차이나드레스 등으로 갈아입으면 1천 엔, 동영상이면 5천 엔이 추가된다.

그리고 'JK 산보'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이 퇴근길의 샐러리맨에게 말을 걸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을 하는 등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키하바라에만 96개 점포에 달한다고 한다. JK 산보의 옵션에는 나란히 걷기 2천 엔, 눈싸움 1천 엔, 사진찍기 1장 2천 엔, 머리카락 만지기 2천 엔, 머리모양 바꾸기 1천 엔, 손집어넣기 1천 엔, 손잡기(18세 이상) 10분당 1천 엔, 팔짱끼기(18세 이상) 5분당 1천 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 서비스 외에도 성관계까지 갖는 뒷거래(裏オプシヨン)도 있다.⁴⁹⁾ 미국 국무성은 「2014년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4)에서 일본의 'JK 산보'를 새로운 인신매매 사례로 제시하여 일본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⁵⁰⁾

나. 청소년 착용 속옷의 거래

일본에서는 청소년이 착용한 적이 있는 속옷(팬티, 브래지어 등)을 매입하는 중고 속옷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청소년이 속옷을 중개업자에게 우송하면 업자는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가격과 함께 올리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업자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구입 대상은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을 불문하며, 학교의 교복이나 체육복을 매입한다. 장기간 사용하거나 세탁하지 않은 것을 취급하며, 심지어는 배변이나 월경 등에 의한 오물이 부착된 것도 매입한다. 얼굴사진과 속옷을 입은 모습의 사진을 첨부하면 가격이 높아지기도 한다.

최근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에 의한 거래는 거의 중지되고 있다. 그러나 SNS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매자와 직거래를 하는 청소년은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스토킹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49) 仁藤夢乃, 『女子高生の裏社会』, 光文社新書, 2014. p.104.

50) "In a recent trend called josh | -kose | osampo, also known as "high school walking," girls are offered money to accompany men on walks, in cafes, or to hotels, and engage in commercial sex."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4, 2014.6. p.220.



【그림 III-13】 중고 속옷 거래 사이트

다. 걸즈 선술집(ガールズ 居酒屋)

노출이 심한 화려한 복장의 점원이 실내를 오가는 것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코하마 시내의 「걸즈 이자카야」(ガールズ居酒屋)가 2012년 4월 11일 중고생을 심야에 종사하게 하여 가나가와 경찰에 적발되었다. 가나가와 경찰은 2012년 4월 11일 중고생을 심야에 종사하게 하여 풍속영업법(연소자 사용)과 근로기준법(심야근로) 위반 혐의로 세 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술집 경영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5세~17세의 여자 중고생 6명을 오후 10시 이후에 종사하게 하여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운반하게 하였다.

점원이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접대하는 클럽에 가까운 영업형태라고 생각되지만, 걸즈 이자카야는 풍속영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음식점으로서 보건소의 허가만으로 손쉽게 가게를 낼 수 있다. 때문에 변화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성이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술을 함께 마시는 등 클럽처럼 영업하고 있는 곳도 많다.

가슴을 강조하고 배꼽이 드러난 짧은 상의에 미니스커트 차림을 한 점원이 실내를 오간다. 걸즈 이자카야는 과격한 차림에 퍼포먼스 서비스가 수반되지만, 아르바이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고생들이 일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가게에서 남성 손님에게 휴대전화와 메일주소를 가르쳐 주었다가 집요하게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여고생도 있고, 오사카에서는

결즈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이 술을 마시고 접대하다가 쓰러져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라. 아이돌 가수의 과도한 노출

2007년 10월 16일 동경 지방경찰청(경시청)은 17세 여성의 DVD가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우리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에 위반한다는 용의로 아이돌 가수의 사진집·DVD 업계의 수석 프로듀서 등 4명을 체포하였다. 동경 지방경찰청은 “다른 작품에 비해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⁵¹⁾ 이 사건은 누드가 아닌 작품에 대해 아동포르노를 적용한 선례가 되었다.⁵²⁾

2007년 12월 3일 17세 고교생 모델에게 과격한 수영복 차림을 시켜 촬영한 혐의로 기획사 사장 등 4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9년 2월 16일에는 16세의 소속 모델을 출연시킨 작품이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또한 2009년 7월 19일 가나가와현 경찰은 여고생이 과격한 수영복 차림으로 출연하는 음란한 내용의 DVD를 제조한 혐의로 비디오 소프트 판매업체의 사장 등을 체포하였다. 유두와 성기가 찍히지 않고 성행위 장면이 없는 이미지 비디오임에도 체포를 함으로써 표현의 다양화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돌 가수의 사진집과 이미지 비디오에서는 스커트 안에 하얀 비키니를 입혀 속옷이 보이는 것처럼 하거나, T백 팬티를 입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비키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욕조에 가랑이를 비비는 표현을 한다. 바나나를 물게 하여 자위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정액을 연상시키는 연유를 끼얹는 등 노골적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가슴을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나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⁵³⁾ 남자 아이돌도 백사장에서 상반신을 벗은 채 격투기와 비치발리볼을 하고, 일본 씨름경기의 복장인 훈도시 차림을 한다.

이러한 표현수법은 2000년대 초에 유행한 착의(着衣) 에로티시즘이라고 부르는 장르로 유두와 성기가 찍히지 않은 최대한의 범위에서 섹스어필을 하는 수법이다.⁵⁴⁾

51) 『欲望のゆくえ 子どもを性の対象とする人たち』, p.137.

52) 週刊プレイボーイ 2007년 11월 12일호 No.46 『過激水着の「小さすぎた面積」』, p.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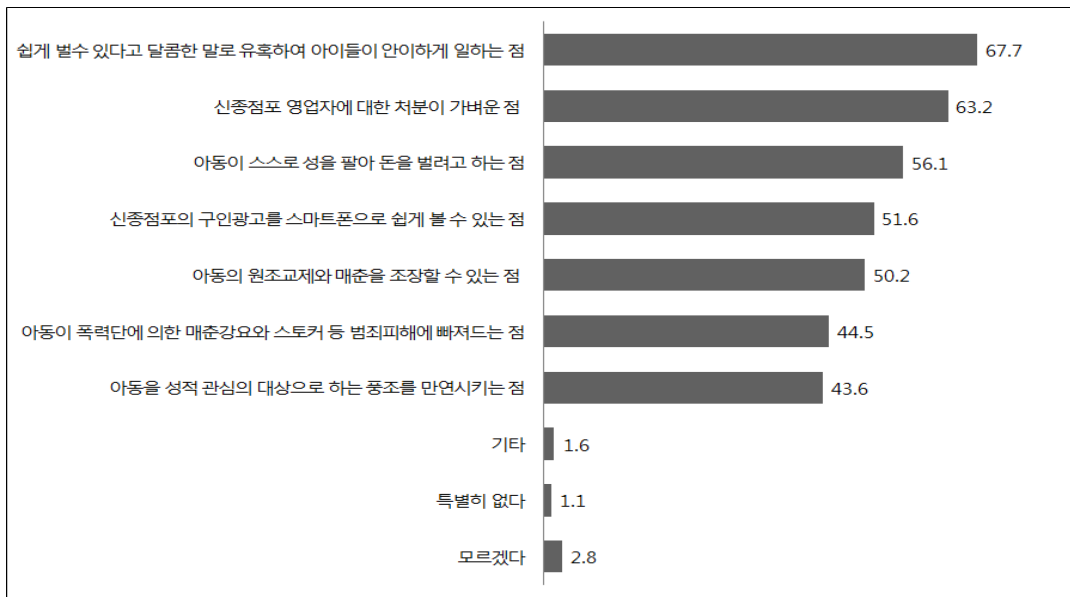
53) 1991년생 후지마 유카리(藤間ゆかり)는 당초 1993년으로 공공연하게 칭하였으며, 실제 연령 15세인 때에 13세라고 하면서 DVD를 냈지만, 18세에 AV 배우로 데뷔할 때에 실제 나이가 발각되었다.

54) 『欲望のゆくえ 子どもを性の対象とする人たち』, p.137-139.

(2) 신종 성산업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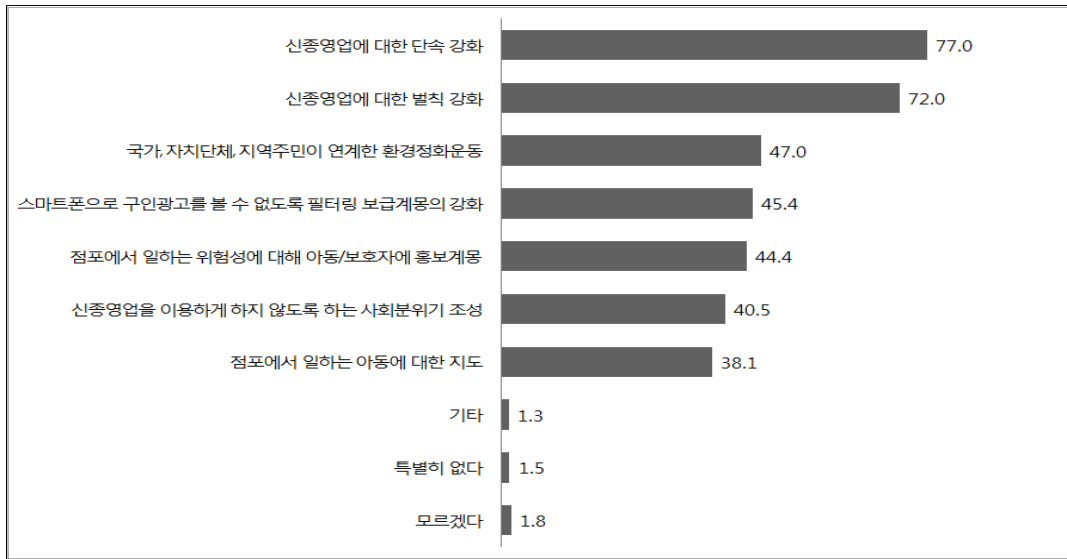
일본 내각부가 2013년 7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을 상품으로 하는 신종 영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손쉽게 벌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아이들이 안이하게 일하고 있는 점’이 67.7%, ‘그런 가게의 영업자에 대한 처분이 가벼운 점’이 63.2%로 높았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점’(56.1%), ‘이런 가게의 구인광고를 아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점’(51.6%), ‘아동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을 조장할 수 있는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4】 참조).⁵⁵⁾

그리고 신종 영업의 출현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으로는 ‘신종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가 77.0%, ‘신종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가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5】 참조).



【그림 III-14】 아동의 성을 상품으로 하는 신종영업의 문제점

55) 日本 内閣府, 「子供の安全に関する世論調査」, 2013.7
<http://www8.cao.go.jp/survey/h25/h25-kodomo/2-3.html>



【그림 III-15】 정부에게 바라는 아동의 성을 상품으로 하는 신종영업 대책

가. JK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

동경 지방경찰청(경시청)은 JK 비즈니스가 성매매의 온상이 된다고 보고 2013년 2월 JK 리플레의 경영자를 풍속영업법 용의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풍속영업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시청은 JK 리플레의 객실 서비스가 청소년이 종사할 수 없는 유해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업자들의 대응은 신속했다. JK 리플레 대신 'JK 촬영회'와 'JK 산보'(JK お散歩)와 같은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요금을 지불하고 거리에서 소녀와 데이트를 하는 JK 산보는 가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자들은 형식상 JK 산보 이후의 뒷거래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동매춘으로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⁵⁶⁾

동경 경시청은 JK 리플레의 단속을 강화했지만, 옆에서 자거나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풍속영업법 위반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18세 미만의 소녀를 복지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후생성 노동감독부서에 문의하였다. 2012년 12월 후생성이 JK 리플레의 영업형태를 '손님에게 성적인 위안, 쾌락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경시청은 단속에 들어갔다.

56) 共同通信 2014년 9월 16일

2013년 1월 전국에서 최초로 동경의 17개 JK 리플레 점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일제 수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학생 3학년생 2명을 포함하여 15~17세 소녀 76명을 소년육성과가 보호하였다. 동경 경시청은 2013년 12월부터 JK 산보에 대해서도 가게에서 일하는 18세 미만의 소녀를 보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유해아르바이트로 빠져드는 소녀들을 단속함으로써 업계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유해업무’는 주로 위험한 기계나 약품을 사용하는 업무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연소자에 대한 유해업무’의 위반에 대한 형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대부분은 벌금을 지불하고 석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사카 경찰은 JK 리플레를 근로기준법보다 벌칙이 무거운 아동복지법으로 적발하였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유해한 목적으로 아동을 지배하에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⁵⁷⁾

오사카 경찰은 2014년 5월 13일 마에사카 용의자(48세)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객실에서 여고생들에게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게 하는 「JK 리플레」에서 18세 미만의 소녀를 감시 하에 두고 마사지를 하게 했다는 혐의이다. 용의자들은 2013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고교 2년생인 소녀(17세)를 CCTV가 설치된 대기실에서 외출을 제한하고 미니스커트 등의 차림으로 손님에게 마사지를 시킨 혐의가 있다. 용의자들은 소녀의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각과 결근을 한 소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JK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임에 틀림없다. 업자를 단속할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는 쫓고 쫓기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법률 정비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이다. 아동의 성을 대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학대·착취행위에 최고 10년형을 부과하고 있다.

57) 朝日新聞 2014년 5월 13일

나. 청소년에 대한 보도 및 사이버 보도 활동

길거리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범죄피해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일본 경찰은 보도(補導)라는 활동을 통해 비행소년의 발견활동, 발견 소년에 대한 수사, 조사, 관계기관 송치·통고,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연락, 주의, 조언을 하고 있다.⁵⁸⁾

범죄소년을 검거하고 조사하는 등 강제력을 수반하는 보도도 있지만, 가급적 강제조치를 피하고 임의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에서 소년에게 주의와 조언을 하는 가두보도, 일정기간 계속하는 계속보도,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소년상담도 보도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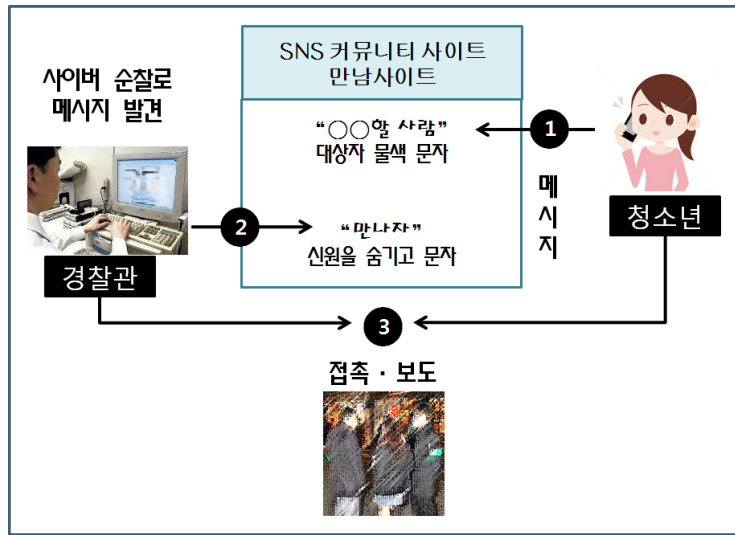
특정적인 사실은 보도조치를 모두 기록하고 소년경찰 부서에 보고한다는 점이다.⁵⁹⁾ 성명이나 친구관계를 기록한 보도표(補導票)를 작성하고 보호자와 학교에 연락한다. 보도표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보관하고 시도별로 D/B화한다. 2012년의 보도인원은 총 91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 기인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등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이어서 가두보도만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의 원조교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사이버 보도(補導)」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속옷 판매나 원조교제에 관한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면, 사이버 순찰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한 경찰관은 스마트폰으로 청소년과 문자를 주고받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여 주의·지도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8) 「소년의 일탈적인 비행행위에 관한 소년경찰활동요강」(1960년 경찰청 차장 지침은 보도를 ‘비행의 방지와 소년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가 순찰하여 가두지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보도(補導)에 속하지 않는다.

59) <http://ja.wikipedia.org/wiki/%E8%A3%9C%E5%B0%8E> 참조.



【그림 III-16】 사이버 보도(補導)의 구조

사이버 보도는 시즈오카 지방경찰이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2013년 9월말까지 59명을 보도하였다. 일본 경찰청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4월부터 홋카이도, 동경,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효고,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10개 지방경찰에서 시범 실시하였다.⁶⁰⁾ 그 결과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2천 건 중 115건에서 청소년과 실제로 접촉하여 89명의 청소년을 보도하였다.

경시청(동경 지방경찰청)은 2014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문자에 대처하기 위해 소년육성과와 일부 경찰서에서 스마트폰을 시험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 4월부터 97개 전체 경찰서에 스마트폰을 배치하였다.⁶¹⁾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18세 미만의 소녀 등 220명을 사이버 보도하였다. 220명 중 메일을 보내는데 사용한 기기를 조사한 결과, 98.2%에 해당하는 10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²⁾

다음은 일본 경찰청의 사이버 보도 추진에 관한 지침이다.

60) 朝日新聞 2013년 10월 10일자.

61) 스포니치(スポニチ) 2014년 3월 31일자.

62) 共同通信 2014년 8월 21일자.

사이버 보도의 추진에 대하여⁶³⁾

최근 인터넷에 기인한 복지사범 피해가 증가하는 등 대단히 우려할 상황에 있으나, 이른바 원조교제는 권유를 가장하여 조직적인 아동매춘(兒童賣春)의 알선을 행하는 사범을 비롯한 악질성이 높은 복지사범 피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의한 원조교제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종래의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행하는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가두보도(街頭補導)로는 복지사범 피해의 방지를 꾀하기 어려우며 그 대책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13년 10월 21일부터 원조교제의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도(補導)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내의 정세에 따라 효과적인 사이버 보도의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1. 목적

아동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등 인터넷 상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사이버 순찰에 의해 발견하여 투고를 한 아동과 접촉해 직접 주의·지도하는 사이버 보도를 실시하여 원조교제를 방지함으로써 인터넷 상에 기인하는 복지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육성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제

각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따라 사이버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계획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투고를 한 자가 주로 여자 아동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성경찰직원의 활동에 배려한다.

3. 실시요령

(1) 사이버 순찰

각 지방경찰청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검색대상 사이트는 아동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한다.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83호)에 규정하는 금지유인행위(동법 제6조 제5호를 제외한다) 및 매춘방지법 위반 등 이외의 것으로서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자에 의한 부적절한 메시지로 한다.

한편, 메시지는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내용 외에 기타 부적절한 메시지도 각 지방경찰청의 운용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2) 교신작업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한 경우, 메시지를 보낸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와 현장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메일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교신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교신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성고 등 또는 대가지급을 보여 이성교제를 유인하는 내용의 메일 등을 송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현장접촉 및 보도

메일 등의 교신으로 메시지를 올린 대상자와 현장에서 접촉한다. 대상자와 접촉한 결과 아동이라고 판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연령이 18세 또는 19세인 경우에도 불량행위 소년으로서 보도를 실시하여,

그 소년에게 지도·조언을 행하고 보호자에게 그 소년의 불량행위 사실을 연락하며 필요한 감호나 지도조치를 촉구한다.

현장접촉에 있어서는 복수의 근무자로 대응하기로 하며, 소년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의 도주나 미인국(美人局)⁶⁴⁾ 등을 상정한 체제를 확보하는 등 각종 사고방지에 유의한다.

(4) 사이버 보도에 의한 불량소년의 종류

사이버 보도에 의해 보도한 경우의 불량행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올린 것을 사실을 포착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불량행위 소년의 보도에 대하여」(2008년 10월 17일자 경찰청 丙少発 제33호)의 별표 「불량행위의 종별 및 태양」의 「불건전오락」으로 보도하며, 소년이 스스로 매춘의 상대방이 되는 등 소년의 건전육성에 지장이 있는 성적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건전 성적 행위」로 보도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불량행위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도로 접촉한 소년이 지정한 불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로 보도해도 상관없다.

4. 소년육성 담당부서와 복지사범 수사 담당부서의 연계

대상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사범과 매춘의 알선 등 복지사범의 피해아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복지사범을 수사하는 부서가 밀접하게 연계하여 피해아동의 조기구출과 피해의 확대방지에 노력한다.

5.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사단법인 전국소년경찰자원봉사협회에서는 사단법인 전국소년보도원협회에 의한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활동」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 (2004년 5월 19일자 경찰청 丁少発 제79호 외)와 같이 인터넷에 범람하는 만남사이트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경찰자원봉사자 중에서 선발된 지정원이 유해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말걸기·보도활동을 행하는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은 소년보도원연락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소년서포트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에 의한 사이버 보도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고, 적절한 지정원의 추천과 지정원에 의한 정보제공의 원활한 수리 등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에 노력한다.

6. 소년의 규범의식 양성

비행방지교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강습 등에서 사이버 보도의 실례를 소개하고, 인터넷의 이용에 기인한 소년의 범죄피해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추진하여 소년의 규범의식 양성에 노력한다.

7. 업무관리의 철저

지방청 소년담당 부서의 간부는 사이버 보도의 실시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신작업과 현장접촉 등의 실시상황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업무관리를 철저히 한다.

8. 기타

(1) 사이버 보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색 및 기동성이 우수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기자재의 활용이 효과적이므로, 각 지방청에서 기자재의 정비와 통신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노력한다.

(2) 사이버 보도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한다.

다. 청소년 착용 속옷 거래에 대한 대응

청소년이 사용한 속옷 중개업자나 구매자를 처벌하는 움직임은 2007년부터 강화되었다. 하지만, 중개업자나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⁶³⁾

다음은 청소년 사용 속옷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동경, 오사카의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이다.

표 III-24 동경도·오사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착용한 속옷의 매입 등의 금지) ② 누구도 청소년으로부터 착용한 속옷(청소년이 한 번 착용한 속옷 또는 청소년의 타액이나 분뇨를 말하며, 청소년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칭한 속옷, 타액 또는 분뇨를 포함한다.)을 매입하고, 매각 위탁을 받거나 착용한 속옷 등의 매각 상대방을 청소년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도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 그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3(청소년에의 권유행위 금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이 한 번 착용한 속옷 또는 청소년의 타액이나 분뇨를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24조의4(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한 자	
2.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5조(벌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35조(착용한 속옷의 매입 등의 금지) 누구도 청소년으로부터 착용한 속옷을 매입, 혹은 매각의 위탁을 받거나 매각 상대방을 청소년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청소년에 대한 권유 금지) 누구도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착용한 속옷을 매각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63) 2013년 10월 10일 경찰청 丁少発 제143호

64) 부부가 공모하여 행하는 공갈 또는 사기행위이다. 妻(妻)가 '먹잇감'이 될 남자를 유혹하여 간통하고 성행위의 도중이나 끝난 순간에 남편이 나타나 처벌을 범한 것을 이유로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소녀로부터 유혹을 받아 막상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 공범이 등장해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하나?”며 협박을 하는 것이다. 소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은 아동복지법이나 조례, 혹은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65) “이바라기 현 경찰청 소년과와 미토(水戸) 경찰서는 20일 「이바라기현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의 사용한 속옷 매입 등의 금지 위반의 용의로 이바라기현 이시오카(石岡)시의 파견사원 남자(52)를 미토 지방경찰청에 서류 송치하였다. 피의자는 작년 11월 17일 오전 11시 15분경 미토시 미야초(水戸市 宮町)의 빌딩 8층 주차장에서 여자중학생 2명(모두 13세)으로부터 사용한 속옷 2매를 총 1만 엔에 산 용의이다.” 産経新聞 2014년 1월 20일

조례에 의해 처벌을 하자, 청소년 사용 속옷의 중개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에 의한 처벌이고 벌금이 10만 엔에서 50만 엔에 이르기까지 높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⁶⁶⁾

라. 걸즈 이자카야에 대한 대응

경찰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PC방에 대해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무허가영업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풍속영업법에 의하면 5평방미터 미만의 객실을 설치하는 음식점은 풍속영업 허가가 필요하지만, PC방의 객실 부스는 지금까지 풍속영업법에 의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PC방에서 아동매춘사건과 부정액세스사건이 다발하자, 전국적으로 풍속영업법에 의한 적발과 지도를 실시한 것이다. 풍속영업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형태로营业을 한 결과, 풍속영업법의 취지 목적인 선량한 풍속환경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자카야에서도 엄밀하게 풍속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저축될 부분이 많다. 이자카야에서는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심야음식점이 많지만, 이 경우에 95평방미터 미만의 객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객실을 만드는 이자카야가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95평방미터를 넘는 객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2명이나 4명의 객실이라면 이 넓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객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객실 내를 들여다 볼 수 없게 물건을 설치하는 일도 있다.

마. 아이돌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대응

오사카 청소년문제협의회는 2010년 11월 26일 비키니 차림의 아동이 과격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새롭게 「성적 학대의 기록」으로 정의하여 제조·판매와 소지를 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시모토 오사카 지사에게 제언하였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의 제조·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키니나 속옷류는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문제협의회는 비키니

66) 인기 아이돌 AKB48이 자신들이 사용한 의상을 후쿠시마 대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자선모임에 출품하였다. AKB48이 출품한 옷 중에는 캐미솔이 포함되어 있었고, 누가 사용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어사전을 인용하여 캐미솔을 여성용 속옷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미성년자 멤버가 착용했을 경우에는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에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차림의 과격한 포즈는 “성적 착취·학대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소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오사카 시는 2011년 2월 일본 최초로 비키니나 속옷을 착용한 채 음부나 엉덩이를 강조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 관련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그런 자태를 사진이나 전자기록으로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다.

수영복이나 속옷류를 착용한 채 음란한 포즈를 취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규정한 것은 오사카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최초이다.⁶⁷⁾ 한편,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하면서, 사업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의복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않은 상태 또는 수영복이나 속옷만을 입은 상태의 선정적인 자태를 도서류나 영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감독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III-25 동경도·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8조의 6의 3(청소년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도서류 등 관련 보호자 등의 책무) 보호자 등은 아동포르노 및 13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의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입지 않은 상태 또는 수영복 혹은 속옷만을 입은 상태(이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상태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의 선정적인 자태를 시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함부로 성욕의 대상으로 묘사한 도서류 또는 영화에서 청소년이 성욕의 대상으로 당해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감독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자가 전항의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사는 보호자 또는 사업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 관련 제1항의 도서류 또는 영화 등에서 뚜렷하게 선정적인 것으로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 혹은 반포하거나 이를 열람 혹은 관람에 제공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호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4. 지사는 전항의 지도 또는 조언을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39조(아동의 성적 학대 관련 노력의무) 사업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사진,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타인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록으로서	

67) 読売新聞 2010년 11월 26일자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을 말한다) 관련 기록매체 기타 물건(이하 '아동의 성적 학대 기록'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수영복, 속옷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부나 엉덩이를 강조한 자태를 취하게 하는 행위

(7)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는 당해 청소년을 위협하거나 기만 혹은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청소년이 수영복, 속옷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부 또는 엉덩이를 강조한 자태를 취하게 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일본은 포르노와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심각할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속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교토 지경찰청은 2014년 8월 30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음란영상을 배부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포르노 업계 최대 업체인 「FC2」⁶⁸⁾의 일본 관계회사 「홈페이지 시스템사」와 관계자 주택을 공연음란 방조의 혐의로 수색하였다.⁶⁹⁾ 이를 통해 경찰은 홈페이지 시스템사가 일본 FC2의 실질적인 운영회사라고 보고 있다. 회원등록 요금과 수익의 흐름 등을 조사하여 위법한 동영상의 범람을 막을 계획이다.

(1)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일본 내각부가 2013년 7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해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가 62.1%로 가장 많았고, '아동에 대한 인터넷 이용교육을 충실히 한다'(50.5%), '보호자와 아동에 대해 인터넷 이용에 기인한 범죄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41.3%), '스마트폰 계약·판매시에 보호자에 대한 필터링 설명·권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자를 지원한다'(38.9%)의 순이었다(【그림 III-17】참조).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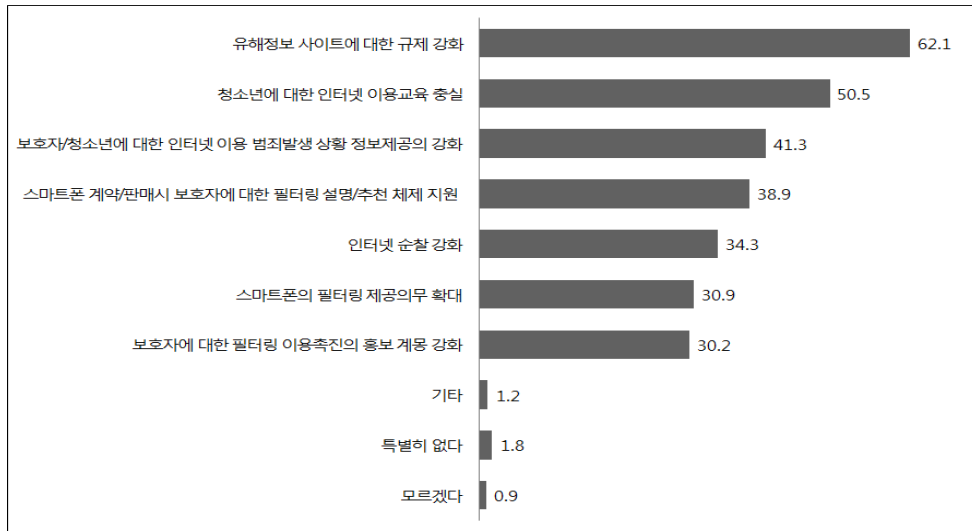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68) 홈페이지 시스템사는 2002년에 설립하여 2013년 9월의 매출액이 11억엔에 달한 다. FC2는 1999년 설립에 설립되었으며, 유료 송신으로 FC2측과 투고자가 수입을 얻는 시스템으로서 회원수가 2천만 명을 넘는 최대 포르노 업체이다. 하지만 거점이 미국 네바다주에 있어서 일본 법률을 적용해 단속하기가 어려웠다.

69) 朝日新聞 2014년 9월 30일자

70) 日本 内閣府, 「児童の安全に関する世論調査」, 2013.7. <http://www8.cao.go.jp/survey/h25/h25-kodomo/index.html>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세세하게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림 III-17】 정부에 바라는 인터넷 유해정보 대책

가.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⁷¹⁾은 제4장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 판매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의무(제17조)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의무(제18조)
- 인터넷 접속기능을 가진 기기 제조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치 의무(제19조)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노력의무(제20조)
- 청소년 유해정보가 발신된 경우의 특정서버 관리자의 노력의무(제21조)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국민 연락 접수체제의 정비(제22조)
-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제23조)

71) 정식 명칭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임.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제17조(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필터링 서비스 제공의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상대방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 혹은 PHS 단말기의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소년의 보호자가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PHS 단말기를 보호하는 청소년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구받은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인터넷과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의 제조사업자의 의무) 인터넷과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휴대전화 단말기 및 PHS 단말기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서 그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노력의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로서 열람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다음 사항에 배려하여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제한하는 정보를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 열람의 제한을 가급적 줄일 것
3.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에 대하여 성능 및 편리성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 유해정보가 발신된 경우의 특정서버 관리자의 노력의무) 특정서버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서버를 이용하여 타인에 의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발신된 것을 알게 된 때 또는 스스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국민 연락의 접수체제 정비) 특정서버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서버를 이용하여 발신이 행해진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국민의 연락을 접수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특정서버 관리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만남사이트 규제법

만남사이트 규제법⁷²⁾은 만남사이트의 이용으로 인한 아동매춘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만남사이트에 인한 범죄가 다발하자,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2008년 일부를 개정하였다.

만남사이트 규제법에서 규제하는 만남사이트(인터넷 이성소개사업)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이성교제 정보를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이성교제 희망자의 이성교제 정보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을 것
-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를 열람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그 정보를 게재한 이성교제 희망자와 전자메일을 이용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반복 계속하여 제공할 것

또한 만남사이트 이용자는 게시판에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이성교제를 구하는 메시지의 기재가 금지되며(제6조), 게시판에 아동을 성교 상대로 하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기재한 자나 아동을 상대로 금품 목적의 이성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기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만남사이트 이용은 금지된다.

표 III-27 만남사이트 규제법

만남사이트 규제법	
제6조(아동 관련 유인의 금지) 누구도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성교 등(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을 만지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사람(아동을 제외한다)을 아동과의 성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대가를 줄 것을 나타내서 아동을 이성교제(성교 등을 제외한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대가를 받을 것을 나타내서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전 각호 외에 아동을 이성교제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10조(아동 이용금지의 명시 등) 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인터넷 이성교제사업에 대해 광고 또는 선전을 할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72) 정식 명칭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임.

- ② 전항에 규정하는 외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이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이 아니라는 확인)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그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성명, 연령 기타 본인을 특정하는 사항의 확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여기에 전달할 때
2.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이성교제 희망자에게 전달할 때
3. 전 2호의 규정에 의해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그 정보와 관계되는 제1호에 규정한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할 때
4.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할 때

제33조(벌칙) 제6조(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고자, 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개정하여 휴대전화에 의한 사이트 열람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의 이용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필요성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의 유해정보에 접할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판매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례에 스마트폰의 필터링 의무화와 설명의무를 규정한 곳은 2014년 4월 현재 전국 25개 시도에 달한다.⁷³⁾

73) 朝日新聞 2014년 5월 10일자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8조의 7(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자의 책무) ①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으로 청소년의 매춘, 범죄피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개발하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및 편리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법 제30조 제1호의 필터링 추진기관 및 동조 제2호 및 제6호의 민간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으로 청소년의 매춘, 범죄피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그 업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향상 및 이용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③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 상대방에게 청소년의 이용 유무를 확인하여 이용자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지하여 이용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대방에게 청소년의 이용 유무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도서류의 열람 혹은 관람하게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청소년이 그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기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기기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계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청소년의 건전한 판단능력 육성을 위해, 그 이용에 따른 위험성 및 과도한 이용에 의한 피해와 이들의 제거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청소년이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계몽에 노력한다.

제18조의 7의 2(휴대전화 단말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장치) ① 보호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관련 계약(당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청소년을 휴대전화 단말 등의 사용자로 하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관련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때에는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이용상황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이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감독하고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기타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내용 기타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제1항에 규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동항의 서면에 기재된 정당한 이유 기타 사항을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사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사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권고를 받은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지사가 지정한 부서의 직원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에 영업시간 내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 8(인터넷 이용 관련 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 혹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 지역사회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청소년의 건전한 판단능력 육성을 위해 스스로도 인터넷 이용에 따른 위험성 및 과도한 이용의 폐해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제거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노력하고, 리를 감안하여 청소년과 함께 인터넷 이용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등 적절한 이용의 확보에 노력한다.

③ 동경도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라.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업체의 대응

에이에스 차일드(주)는 아동의 네트워크 이용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터넷 범죄와 학교폭력, 만남사이트, 유해정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는 웹서비스 『FilⅡ』⁷⁴⁾의 β판을 2014년 6월 30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녀의 스마트폰이 이 앱을 깔면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SNS 어카운트에 접속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학교폭력, 만남사이트, 범죄행위, 범죄피해, 유해정보 등의 위험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비상 연락하는 최첨단 방어수단이다.⁷⁵⁾

4) 수행기관

일본의 성 상품화에 관한 단속은 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청소년의 성을 침해하는 유해사범을 「복지범」(福祉犯)으로 분류하여 적극 단속·처벌하고 있다.

74) <https://www.filⅡ.net>

75) 朝日新聞 2014년 6월 30일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가 더 발달되어 있으며, 경찰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경찰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마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한편, 경찰만의 노력만으로 소년비행의 예방과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룰 수 없다. 이에 일본에서는 경찰활동에 민간 자원봉사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년비행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총칭하여 「소년경찰 자원봉사자」라고 부른다. 경찰도 소년경찰 자원봉사자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가두보호활동과 상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소년경찰 자원봉사자는 활동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⁷⁶⁾

표 III-29 일본의 소년경찰 자원봉사자의 구분과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소년 보도원	지방경찰청장의 위촉을 받아 지역사회의 보도활동,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폭넓은 비행방지활동을 한다.
소년 지도위원	풍속영업법을 바탕으로 시도公安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소년보호활동과 유해업소 업자에 대한 조언활동을 한다.
소년경찰 협조원	지방경찰청장의 위촉을 받아 폭주족 등 비행집단에 소속된 소년을 집단에서 이탈시키고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상담을 한다.

5) 소결

(1) 청소년을 이용한 성 정보에 대한 입법적 대응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대한 일본의 법제도적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K 리플레나 JK 산보, JK 촬영회와 같은 이른바 JK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풍속영업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JK 비즈니스를 ‘미성년자 유해업무’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유해한 목적으로 아동을 지배하여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76)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37/volunteer/shonen.html>

그렇다면 우리 법체계는 JK 비즈니스와 같은 신종 성상품화 영업에 대응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달리 ‘청소년 유해업소’를 풍속영업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제2조), 그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고시」⁷⁷⁾는 청소년고용·출입금지에 대해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예시하고 있다.

표 III-30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1-30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 【영업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여성가족부 고시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JK 리플레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침대를 비치하며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걸즈 이자카야는

77)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고 종업원이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므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동법 제2조 제5호 단서)고 규정하여, 업소에서 내거는 명칭이 아니라 행해지고 있는 행위로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JK 촬영장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JK 산보에서 길거리에서 청소년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단속이 가능하다. 문제는 JK 산보를 알선한 이후의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JK 산보에서 업주는 형식상 산보를 알선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뒷거래, 즉 성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취한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알선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지 못하면 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JK산보와 같이 길거리 데이트를 알선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규제법으로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인터넷 사업자 및 휴대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필터링 서비스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인터넷 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실정에서, PC 판매자는 물론 스마트폰 판매자에게도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동경의 조레처럼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필터링을 거부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판매점에 비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다소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3) 사이버 보도 제도의 도입 검토

만남사이트 게시판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딸기⁷⁸⁾로”라는 메시지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만나자” “일이 끝나면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장소에 나간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녀에게 신분을 밝히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지도를 한 후에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일본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보도」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사이버 보도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원조교제와 같은 비행이 인터넷에서 만연되고 청소년 비행이 다양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래와 같은 선도 방식으로는 비행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사이버 보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의 범리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도활동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재량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이다.⁷⁹⁾ 함정수사(Entrapment)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불법인 「범의유발형」과 합법인 「기회제공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범의유발형이란 범죄의도가 없는 자에게 작용해서 범죄의도를 일으키게 해서 범행현장을 검거하는 경우이며,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죄의도가 있는 자에게 그 범죄의도를 실행할 범행기회를 주기만 하여 범행현장을 검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대법원도 “본래 범죄의도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⁸⁰⁾고 판시하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함)는 함정수사에 대해, 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약물범죄나 총기범죄 등의 수사에서, ② 일반적인 수사방법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한 경우에, ③ 기회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함정수사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⁸¹⁾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 보도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의 일환이며,

78) 일본어로 딸기(苺)를 「이치고」라고 한다. 그런데 이치고는 숫자 1과 5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딸기라고 한 것은 원조교제를 1만 5천엔에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79) 毎日新聞 2014년 4월 1일자

80)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81) 最高裁 平成16年7月12日決定 刑集58卷5号333頁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 일본 경찰도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한 이후 사이버 보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법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는 대단히 유사하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우리도 사이버 보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중국*

1) 서론

2013년 11월 18일 중국공영방송 CCTV에서 보도 된 《生活早参考(생활조참고)》 ‘웨이신색정 조사 편’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은 중국의 대표 모바일 인스턴트메시지인 웨이신(微信)의 ‘주변사람 검색(附近的人)’ 기능을 통하여 유해정보를 쉽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 검색’이란 주변에 웨이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검색하는 기능이다. ‘주변사람 검색’은 초기 건전한 친목도모의 목적과 달리 지금은 신체노출 사진 게시, 성매매 등 많은 유해정보가 전파되고 있다. 특히 조직을 구성하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채팅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하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청소년은 유해정보를 야한 사이트 등에서 접했으나 네트워크 관리 부문의 감독이 심해지면서 야한사이트에서 접하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반해 현재는 웨이신 등 모바일 인스턴트메시지를 통한 유해정보 접촉이 더 쉽고 간편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이러한 인스턴트메시지에서 유해정보를 접하는 일은 더 이상 낮선 현상이 아니다(CCTV, 2013.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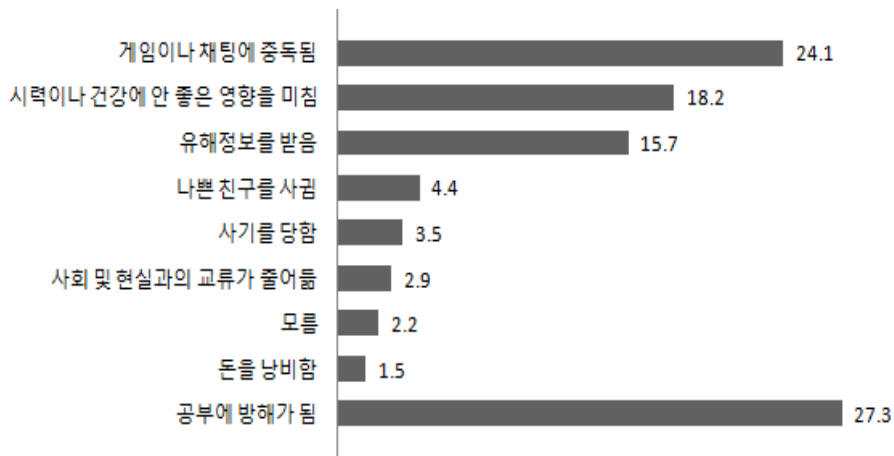
웨이보(중국판 페이스북), 웨이신과 QQ(중국판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SNS에서의 유해정보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신체노출 사진 및 동영상 판매 등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 이 절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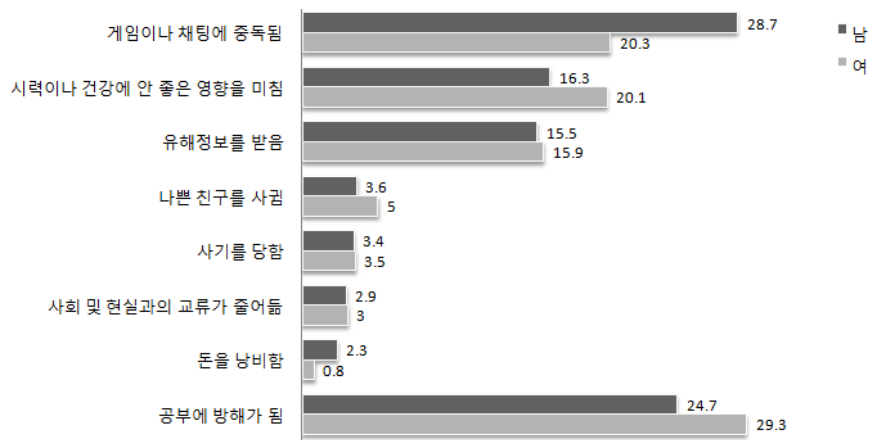
중국소년선봉단사업발전센터에서 발표한 「2011 중국미성년자인터넷 및 SNS운용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96.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78.4%가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 중 23%는 매일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6%의 미성년자가 웨이보(중국의 페이스북)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76.3%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에서 유해정보를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8.9%가 '가끔 접한다'고 답하였다. 미성년자는 광고, 동영상 및 게임에서 각각 60.4%, 30.6%, 23.6%의 유해정보를 경험하였고, 유해정보는 야한사진(63.5%), 폭력성 동영상(38.2%), 허위정보(37.0%), 야한 동영상(3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미성년자의 인터넷에 대한 문제 인식

출처: 중국소년선봉단사업발전센터(2011). 「2011 중국미성년자인터넷 및 SNS운용현황조사보고서」



【그림 III-19】 성별에 따른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 인식

출처: 중국소년선봉단사업발전센터(2011). 「2011 중국미성년자인터넷 및 SNS이용현황조사보고서」

「2012미성년자인터넷유해정보(음란정보)접촉상황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성년자가 접한 유해 정보는 주로 음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있는 음란광고, 음란사진, 음란영화, 음란게임, 음란소설 및 음란대화, 음란만화 등이 있었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해정보를 주로 접한 사이트는 음란 사이트, 블로그, QQ채팅, 논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들이 유해정보를 접할 때 컴퓨터(61.7%), 테블릿pc(37.9%), 휴대전화(19.6%)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던 미성년자 중 42.1%가 인터넷의 유해정보가 ‘매우 많다’, ‘비교적 많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주동적으로 유해정보를 검색해보았다는 의견이 22.1%, 우연히 접했을 때 접속해본다는 의견이 15.1%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남자 미성년자의 경우 여자 미성년자보다 유해정보를 더 많이 접하였다(43.9%, 33.0%). 그리고 남자 미성년자가 여자 미성년자보다 유해정보를 주동적으로 더 많이 찾아보았으며(34.0%, 9.1%), 유해정보를 우연히 접했을 때 호기심으로 접속해봤다고 대답하였다(24.1%, 5.3%).

3) 미성년자 성 상품화 관련 법제

표 III-31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1991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⁸²⁾ 제 2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1년 9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50호로 발령, 2006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수정되고 통과되어 2006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0호로 발령,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 66호로 공포,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음)

[제 1장 총칙] 제 2조 본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공민을 말한다.

[제 4장 사회보호] 제 34조 어떤 조직, 개인이 제작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음란, 폭력, 살인, 공포, 도박 등 미성년자를 해치는 도서, 간행물, 음향 영상제품 및 인터넷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35조 미성년자를 상대로 식품,약품, 완구, 오락시설 등을 생산, 판매할 경우 응당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로워서는 안 되며 주의사항을 명시할 때에는 응당 뚜렷한 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 제 38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모집 채용해서는 안되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미성년자를 판매, 납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금지한다. 미성년자를 협박, 기만, 이용하여 구걸 또는 미성년자를 조직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연기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장 법률책임] 제 60조 본 법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기타 법률, 법규가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한 것이 있으면 현존규정을 따르며 인신재산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빚어냈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죄를 구성하였으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64조 음란, 폭력, 살인, 공포, 도박 등 도서, 간행물, 음향 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및 인터넷 정보를 제작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임대 및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주관 부문이 명하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준다.

– 제 68조 비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하였거나 만 16세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과중, 유독, 유해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노동 또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였을 경우 노동보장부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가 영업면허를 정지시킨다.

– 제 71조 미성년자를 협박, 기만, 이용하여 구걸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연기 등 활동하였을 경우 공간기관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준다.

출처: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홈페이지(www.okmedia.or.kr/news.php?code=&mode=view&num=12500&page=)

82)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은 1999년 6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9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7호로 발령되어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 66호로 공포,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음.)

[제 3장 미성년자 불량행위 예방-이경희(2005 재인용)] 제 29조 어떠한 사람이라도 미성년자를 교사·협박·유인하여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불량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0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위법하는 내용, 폭력·음란·도박·테러 활동 등의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31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라도 미성년자의 위법범죄를 유발하는 내용 및 과장된 폭력·음란·도박·테러 활동 등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간행물·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임대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2조 방송·영화·TV·연극 프로그램은 과장된 폭력·음란·도박·테러 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방송영화TV 행정부와 문화행정부는 방송·영화·TV·연극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제 4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한 불량행위 교정-곽병선(2010 재인용)] 제 34조 본 법에서 “심한 불량행위”는 아래와 같이 사회에 심한 위해를 끼치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란한 문서 혹은 음향영상제품 등을 전파하는 행위

(5) 성적행위나 성매매 행위

(9) 기타 아주 심하게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한편, 중국형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의 살인, 고의 상해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극물 투입 등 이상의 8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곽병선, 2010 재인용).

[제 7장 법률책임-법률교육망(2014)] 제 52조 제1항 본 법 제 3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과장된 폭력·음란·도박·테러 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내용을 출판물에 포함할 경우 출판행정부에 의해 출판물 및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압수하며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건의 경과가 심각할 경우 출판물 및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압수하며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항 미성년자 출판물에 음란한 내용을 제작·복제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판매·임대·전파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제 53조 제1항 본 법 제 3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 미성년자의 위법범죄를 유발하는 내용 및 과장된 폭력·음란·도박·테러 활동 등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간행물·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임대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 및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간행물·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과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압수한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제2항 조직이 전항의 행위를 할 경우 간행물·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과 법을 위반하고 얻은 소

득을 압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 56조 미성년자를 교사·협박·유인하여 본 법의 불량행위, 심한 불량행위 혹은 미성년자가 불량행위, 심한 불량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할 경우 공안기관의 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병과한다.

*출처: 이경희(2005 재인용), 광병선(2010 재인용), 법률교육망(2014)

표 III-33 인터넷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본 규정은 국가방송영화TV총국과 중화인민공화국정보산업부령으로 2008년 1월 31일부터 실행한다.)

제 16조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것, 인터넷 운영기관이 개입하였을 경우의 시청 프로그램은 법률, 행정법규, 기관의 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이미 방영된 시청프로그램은 최소한 60일 동안 남겨두어야 한다. 시청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미성년자를 폭력, 색정, 도박, 테러활동 등 위법행동에 유인하는 경우

표 III-34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 처리 방법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⁸³⁾령으로 2000년 9월 25일 국무원령 공포 및 시행되었다.)

제 15조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복제·전파해서는 안 된다.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테러 혹은 교사범죄의 내용을 유포할 경우

제 20조 본 조치 제15조의 하위 정보를 제작·복제·전파 하였을 경우 혹은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이 약할 경우,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인터넷국제네트워크안전보호관리조치> 등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서 처벌한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⁸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영업허가증 발급기관은 책임을 지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을 중지하고 정돈해야 하며, 기업등기기관에 통지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해 서류등록기관은 책임을 지고 웹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웹사이트를 닫는다.

현재 중국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인 <중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중국미성년자보호법>은 중국의 사회변화와 미성년자범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존하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 현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두 개의 법률 외에는 기타 미성년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기타 성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다양한

83) 중국의 중앙정부이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윤경우, 2014)

84) 동 법규 제3조에 의하면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경영성인터넷정보서비스와 비경영성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경영성인터넷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비경영성인터넷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성, 공유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경영성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비경영성인터넷정보서비스는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중국의 미성년자 수는 점점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의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의한 정보 통신 수단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며, 인터넷상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규범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지성우, 송희숙, 2013 재인용). 때문에 중국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를 위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미성년자인터넷 보호조례>제정을 계획하고, 2014년 4월 4일 중앙사회관리종합위원회 청소년위법범죄예방항목 조전체회의에서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를 2014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인민일보, 2014. 4. 4.).

4) 소결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관한 한 중국의 현 상황은 그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법률인 <중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중국미성년자보호법>를 살펴보아도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법적 규정이 처벌중심이며 자율규제에 대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제 IV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영향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 IV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영향 분석*

1. 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사용행태가 어떠하며 청소년들의 성상품화 등 성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스마트시대에 대중매체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성 상품화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설계 및 수행

(1) 표본설계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모집단 지역별 학생수, 학교수 : 중학교

구분	학생수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00,532	99,162	102,625	382	380	378
경기	153,378	149,354	152,096	598	598	597
인천	33,129	33,052	33,839	132	134	132
강원	17,950	17,856	18,575	163	163	162
충북	18,864	18,754	19,481	127	127	127
충남	25,480	24,897	25,513	199	198	198
대전	19,770	19,393	20,361	87	87	88
경북	29,557	29,478	29,416	289	289	288
경남	40,926	40,638	41,984	274	273	273
부산	35,971	36,052	37,676	169	170	170
대구	30,731	31,258	31,811	123	123	122
울산	14,913	14,978	15,656	61	61	61
전북	23,371	22,857	24,027	207	208	208
전남	22,236	22,160	22,801	251	249	253
광주	21,493	21,159	22,097	87	86	86
제주	8,118	7,786	7,806	44	43	43
합계	596,419	588,834	605,764	3,193	3,189	3,186

표 IV-2 모집단 지역별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3,565	74,332	76,405	14,710	14,110	14,690	17,516	16,945	17,719	4,118	4,259	4,166
경기	124,983	122,181	122,369	4,378	4,011	3,672	21,335	20,545	21,533	4,027	4,158	4,179
인천	24,258	24,236	25,116	1,904	1,848	1,901	7,753	7,056	7,127	1,084	1,109	1,225
강원	15,007	14,771	14,779	154	153	157	3,717	3,291	3,147	389	362	328
충북	12,263	12,062	12,054	1,615	1,558	1,544	5,504	5,347	5,350	439	383	333
충남	19,291	18,792	18,648	1,972	1,907	1,701	4,905	4,893	4,962	659	532	472
대전	13,300	13,114	13,379	3,172	3,202	3,389	3,746	3,740	3,446	670	657	563
경북	22,029	21,751	21,839	2,722	2,719	2,705	6,554	6,239	6,192	597	573	487
경남	32,099	32,229	32,432	2,956	2,875	3,330	6,280	6,338	6,159	713	705	563
부산	24,521	24,957	25,753	4,072	4,173	4,279	8,808	9,142	9,662	2,029	2,056	1,883
대구	20,189	20,264	21,414	6,098	6,162	6,499	6,728	6,578	6,567	861	877	787
울산	11,718	12,343	12,731	1,010	687	719	3,379	2,953	3,043	355	353	285
전북	17,983	18,075	18,193	1,346	1,352	1,287	4,963	4,844	4,689	583	499	470
전남	14,710	14,604	14,992	2,389	2,389	2,270	6,409	6,206	6,002	473	426	356
광주	17,169	16,515	16,971	1,389	1,366	1,384	3,807	3,723	3,748	325	323	280
제주	6,055	5,826	5,923	223	237	250	1,611	1,558	1,492	145	141	103
합계	449,140	446,052	452,998	50,110	48,749	49,777	113,015	109,398	110,838	17,467	17,413	16,48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3 모집단 지역별 학교수 : 고등학교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3	181	179	44	44	44	74	74	74	17	17	17
경기	342	331	321	13	12	11	72	72	72	18	18	18
인천	79	76	75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8	88	88	1	1	1	24	24	24	4	4	4
충북	45	46	46	6	6	5	27	27	27	4	4	4
충남	76	76	75	9	9	9	30	30	30	6	5	5
대전	37	36	36	9	9	9	12	12	12	4	4	4
경북	123	122	123	11	11	11	52	52	52	6	6	6
경남	137	136	135	10	10	10	37	37	37	6	6	6
부산	79	79	79	15	15	15	40	39	39	10	10	9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3	3	11	11	11	3	3	3
전북	92	92	92	5	5	5	31	31	31	4	4	4
전남	87	89	90	8	8	8	48	50	49	5	5	5
광주	47	47	46	5	5	5	12	12	12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520	1,504	1,490	165	163	161	526	527	526	104	103	102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나.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하였다.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 수가 약 13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4,000을 넘도록 하였다.

표 IV-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4,344명)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4	192	96	81	78
경기	261	192	96	81	
인천	87	96			
강원	87	96	96	81	
충북	87	96			
충남	87	96			
대전	87	96			
경북	87	96	96	81	
경남	87	96			
부산	87	96			
대구	87	96			
울산	87	96	96	81	
전북	87	96			
전남	87	96			
광주	87	96			
제주	87	96			
합계	1,653	1,728	480	405	78

표 IV-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144명)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6(2)	6(2)	3(1)	3(1)	3(1)
경기	9(3)	6(2)	3(1)	3(1)	
인천	3(1)	3(1)			
강원	3(1)	3(1)	3(1)	3(1)	
충북	3(1)	3(1)			
충남	3(1)	3(1)			
대전	3(1)	3(1)			
경북	3(1)	3(1)	3(1)	3(1)	
경남	3(1)	3(1)			
부산	3(1)	3(1)			
대구	3(1)	3(1)			
울산	3(1)	3(1)	3(1)	3(1)	
전북	3(1)	3(1)			
전남	3(1)	3(1)			
광주	3(1)	3(1)			
제주	3(1)	3(1)			
합계	57(19)	54(18)	15(5)	15(5)	3(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144(48)개

다.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

출범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추출하였다.

① 학교(PSU) 추출 :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

- 각 층화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
-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
-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함

② 학급(SSU) 선정

-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

③ 응답자 선정

- 추출 학급 내 재적 학생 전원 조사 원칙
- 각 층 내에서 성별 등에 따른 조정이 되도록 전체 학급의 학생 수(성별), 당일 결시자, 조사 거절자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고 사전 학교 컨택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조사 시 성별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였다.

라. 실사

본 조사는 2014년 6월 12일 ~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44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IV-6 조사완료 학생 수(4,356명)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2	182	92	71	64
경기	271	184	89	85	
인천	86	106			
강원	96	107	93	67	
충북	94	108			
충남	96	91			
대전	97	98			
경북	89	94	92	74	
경남	98	73			
부산	85	107			
대구	82	97			
울산	91	97	96	80	
전북	105	83			
전남	103	87			
광주	97	100			
제주	88	89			
합계	1,750	1,703	462	377	64

표 IV-7 조사완료 학급 수(144개)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6	6	3	3	3
경기	9	6	3	3	
인천	3	3			
강원	3	3	3	3	
충북	3	3			
충남	3	3			
대전	3	3			
경북	3	3	3	3	
경남	3	3			
부산	3	3			
대구	3	3			
울산	3	3	3	3	
전북	3	3			
전남	3	3			
광주	3	3			
제주	3	3			
합계	57	54	15	15	3

(2) 조사표

가. 사전조사

조사표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본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 5월 10일 ~ 5월 11일 2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교급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갱서베이 방식으로 1차 진행하며, 갱서베이 후 자세한 의견 파악을 위해 그룹별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IV-8 사전조사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중1	중3	고1	고3	합계
남	2	3	1	0	6
여	3	6	5	6	20
합계	5	9	6	6	26

나. 조사 도구

조사도구는 청소년들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 성의식, 성행동 등을 포함하여 총 58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IV-9> 참조).

①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은 신선미(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17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은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자극’으로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야한 영상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다. 두 번째 요인은, ‘인권침해’로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와 마찬가지이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6이다. 세 번째 요인은 ‘모방·공유’로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신뢰도 계수는 .72이었다.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관한 인식의 총 설명력은 55.25%로 나타났다.

② 아이돌스타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

아이돌스타 영상물 시청에 대한 부모님(혹은 보호자), 가장 친한 친구의 반응(사회적 지지)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반응을 포함한 2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다.

③ 성 의식

청소년의 성 의식에 대한 문항은 백혜정, 김은정(2008)의 연구를 참고 및 재구성하여 10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 의식은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성 개방성'으로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7이다. 두 번째 요인은 '성 보수성'으로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서는 안된다'와 '결혼 후에는 배우자 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라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계수는 .47이다. 청소년의 성 의식에 대한 총 설명력은 48.16%이다.

④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경험 여부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경험 여부(성행동)에 관한 문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포함한 야한 대화(음란채팅),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 몸매 피팅모델, 포옹을 파는 행위, 키스를 파는 행위 등 10개의 보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 외의 응답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적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해당없음' 보기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보기로 구성하고 청소년의 성 행동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⑤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매체와 콘텐츠

청소년이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매체와 콘텐츠를 알아보기 위해 윤해진, 문성철(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2문항으로 구성하고, 우선순위 3개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⑥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접한 시기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접한 시기 문항은 1개로 구성하였다.

⑦ 스마트폰 이용 실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스마트폰 이용 여부를 알아보았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에서의 이용 프로그램은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 및 재구성하였다.

⑧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접촉 경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접촉 경로에 대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등),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이메일, 모바일 인터넷전화(textplus, 보이스트록 등), 랜덤채팅(똥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 화상 채팅(아자르, 스카이프 등) 등 17개의 보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 외의 응답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적도록 했다.

⑨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는 백미성(2014)의 연구에서 참고 및 재구성하였다. 먼저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경험여부를 알아보았고, 촬영 횟수, 촬영 후의 공유경로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⑩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공유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공유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는 백미성(2014)의 연구에서 참고 및 재구성하였다. 먼저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공유 경험여부를 알아보았고, 공유 횟수, 공유경로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⑪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대화 경험여부 및 횟수, 주된 동기

청소년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대화 경험여부 및 횟수, 주된 동기는 김은경(1998), 백미성(2014)의 연구에서 참고 및 재구성하였다. 먼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대화 경험여부를

알아보았고, 야한대화 횟수, 주된 동기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⑫ 현재 이용 채팅 어플

청소년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에 대해 이용한적 없음을 포함한 즐톡, 하이데어, 심톡, 빠꾸기, 1km, 랜덤채팅 등 13개의 보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 외의 응답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적도록 했다.

⑬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 메시지 송수신 경험여부, 횟수, 수신 후의 느낌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 메시지 송수신 경험여부, 횟수, 수신 후의 느낌은 백미성(2014)의 연구에서 참고 및 재구성하였다. 먼저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 메시지 송수신 경험여부를 알아보았고, 음란 메시지 송수신 횟수, 수신 후의 느낌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⑭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직업, 응답자의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응답자의 희망 교육수준 등을 알아보았다.

표 IV-9 설문조사 내용

세부문항		문항 수	문항번호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매체와 콘텐츠		2	문1(1~2)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접한 시기		1	문2
아이돌스타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		17	문3(1~17)
아이돌스타 영상물 시청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보호자, 친구의 사회적 지지)		2	문4(1~2)
성 인식		10	문5(1~10)
스마트폰 이용 여부		1	문6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		1	문7
스마트폰에서 이용 프로그램		1	문8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접촉 경로		1	문9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3	문10, 문10-1, 문10-2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공유 경험여부 및 횟수, 공유경로		3	문11, 문11-1, 문11-2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야한대화 경험여부 및 횟수, 주된 동기		3	문11, 문11-1, 문11-2
현재 이용 채팅 어플		1	문13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 메시지 송수신 경험여부 및 횟수, 수신 후의 느낌		3	문14, 문14-1, 문14-2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경험여부		1	문15
배경문항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1
	부모님의 학력	2	배경문항2(1~2)
	부모님의 직업	2	배경문항3(1~2)
	응답자의 학업성적	1	배경문항4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5
	응답자의 희망 교육수준	1	배경문항6
총 문항 수		558	

(3) 조사수행

가.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2014년 6월 9일 ~ 6월 10일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에서 진행하였고 권역별로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 내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특성 이해, 조사 진행 방법 및 방문 시 응대 스크립트,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 온라인 실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나. 자료처리

① 에디팅 및 편칭

에디팅은 단위 무응답 여부 확인, 조사표에 표시된 기본 항목의 로직 체크를 실시하였고,

편집 전용 프로그램에 자료입력을 하였다. 편집 검증은 8월 11일 ~ 8월 14일, 4일간 16개 학급, 468부를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 에러율 0.1% 미만으로 나타나 검증 통과하였다.

② 데이터 클리닝

조사표 상의 항목 간 기본 로직 및 응답자 수 확인, 내용 상 관련이 있는 문항 간의 내용적 확인 등을 통한 데이터 클리닝 실시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기준 및 해당 케이스를 연구진에게 보고한 후, 협의를 통해 최종 데이터 클리닝 기준을 확정 후 데이터에 실시하였다.

③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며, 학교가 일차추출단위이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이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와 각 세부 층의 성별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학년별 및 성별로 안정적인 가중치 분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지역 구분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중학교는 3개 권역(서울/경기/인천, 강원/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제주,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는 4개 권역(서울/경기/인천, 강원/충북/충남/대전,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전북/전남/광주/제주), 특성화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해당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설문 내용을 표본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된 변인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별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설정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평가하였다. 해당 이론적 개념에 대해 측정 항목들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

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연구개념 전체를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하여 신뢰도와 단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단일차원에 대한 각 측정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chi^2(df, \rho)$, 기초부합지수(GFI), 수정부합지수(AGFI), 원소평균 자승잔차(RMR), 근사오차평균자승제곱근(RMSEA), 비교부합지수(CFI), 표준부합지수(NFI), 터커루이스지수(TLI) 값 등을 검토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RMR($\leq .05$)과 RMSEA($\leq .10$)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90을 초과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⁸⁵⁾. 여러 적합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반적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후 통계적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모형 수정을 진행하였다. 수정된 최종 모형을 기준으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지지,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 의식을 매개하여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2.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특성

조사대상 특성에서 확인한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이 52.3%, 여학생은 47.7%였으며, 교급에서는 중학교 48.8%, 일반/특목/자율고는 42.2%, 특성화고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도시 47.6%, 중소도시 37.5%, 읍면지역은 14.9%였으며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별로는 양부모가정이 91.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부모/조손가정은 6.9%, 기타 1.4%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취업여부에 따라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은 26.3%,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은 4.9%, 부모님 직업 없음은 1.9%, 부모님 안 계심은 0.3%였으며 맞벌이가정이 65.1%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학업성적에서는 상위권은 26.4%, 중위권은 41.6%, 하위권은 30.4%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이 36.4%, 중층이 43.4%, 하층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73.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졸 6.8%, 대학원은 16.9%로 나타났다.

85)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서울: 청람.

표 IV-10 조사대상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4356	100.0
성별	남자	2279	52.3
	여자	2077	47.7
교급	중학교	2124	48.8
	일반/특목/자율고	1836	42.2
	특성화고	395	9.1
지역	대도시	2075	47.6
	중소도시	1633	37.5
	읍면지역	648	14.9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3995	91.7
	한부모/조손가정	299	6.9
	기타	62	1.4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834	65.1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144	26.3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12	4.9
	부모님 직업 없음	82	1.9
	부모님 안계심	13	0.3
학업성적	상(잘한다)	1149	26.4
	중(보통)	1812	41.6
	하(못한다)	1324	30.4
경제적 수준	상	1585	36.4
	중	1892	43.4
	하	807	18.5
희망교육수준	고졸	296	6.8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218	73.9
	대학원(석박사과정)	736	16.9

2)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와 콘텐츠

①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4,306명 중 33.3%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TV(29.8%), 소셜미디어(15.2%), 인터넷/포털사이트(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6.1%, 여학생은 30.2%로 스마트폰과 TV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했다.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가 32.3%, 특성화고 39.2%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했으며, 중학교는 35.0%로 스마트폰보다 TV를 통해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본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4.9%, 중소도시가 31.4%, 읍면지역이 33.0%로 나타났다. 부모님 취업여부에 따라 부모님 안 계심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맞벌이가정은 33.8%,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은 33.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은 30.1%, 부모님 직업 없음 26.1%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31.2%)에서 중위권(32.8%), 하위권(36.1%)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30.0%)에서 중층(33.7%), 상층(34.6%)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로 꼽았다. 희망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33.5%), 대학원(2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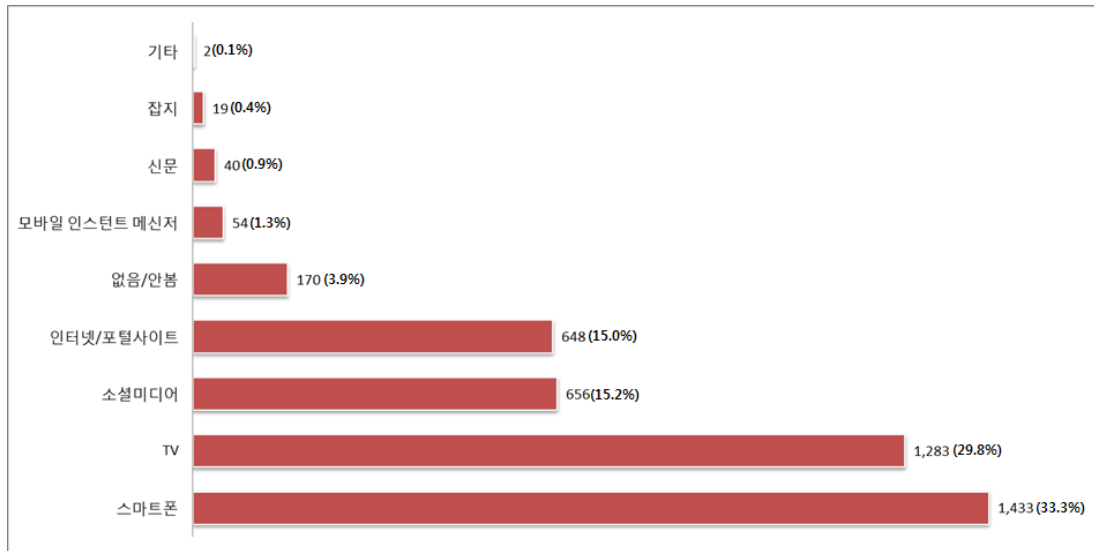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스마트폰	TV	소셜 미디어	인터넷/포털사이트	없음/안봄
전체		33.3	29.8	15.2	15.0	3.9
성별	남자	36.1	29.4	10.5	17.4	3.7
	여자	30.2	30.2	20.5	12.4	4.2
교급	중학교	33.0	35.0	12.1	12.3	4.8
	일반/특목/자율고	32.3	25.0	18.5	18.8	2.9
	특성화고	39.2	23.7	16.9	12.6	4.1
지역	대도시	34.9	29.3	14.7	15.6	3.0
	중소도시	31.4	29.6	16.0	14.6	5.3
	읍면지역	33.0	31.6	15.2	14.5	3.5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3.6	29.8	15.1	14.7	4.1
	한부모/조손가정	30.3	29.0	16.0	18.9	3.4
	기타	30.4	32.4	19.5	16.5	0.0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33.8	29.3	15.3	15.0	3.6
	외벌이가정(양친있음)	33.1	30.7	14.9	14.1	5.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30.1	28.7	15.5	19.2	3.0
	부모님 직업 없음	26.1	33.7	16.0	22.0	0.0
	부모님 안계심	53.2	38.8	5.0	3.1	0.0
학업성적	상(잘한다)	31.2	30.7	13.3	18.6	3.5
	중(보통)	32.8	31.3	14.9	13.1	5.0
	하(못한다)	36.1	27.0	17.0	14.6	2.9

구분		스마트폰	TV	소셜 미디어	인터넷/ 포털사이 트	없음/ 안볼
경제적 수준	상	34.6	28.1	14.1	16.5	4.0
	중	33.7	30.5	15.4	13.4	4.1
	하	30.0	31.7	16.8	16.1	3.4
희망교육 수준	고졸	40.7	28.6	12.9	13.2	2.7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3.5	29.5	16.0	14.6	3.9
	대학원(석박사과정)	29.8	31.1	12.7	17.8	4.6

[표 계속]

구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신문	잡지	기타	전체 (N)
전체		1.3	0.9	0.4	0.1	100.0(4306)
성별	남자	1.0	1.4	0.4	0.1	100.0(2263)
	여자	1.5	0.4	0.5	0.1	100.0(2043)
교급	중학교	1.6	0.5	0.6	0.0	100.0(2105)
	일반/특목/자율고	0.8	1.2	0.3	0.1	100.0(1811)
	특성화고	1.6	1.8	0.2	0.0	100.0(389)
지역	대도시	1.1	0.9	0.5	0.1	100.0(2036)
	중소도시	1.7	0.7	0.5	0.0	100.0(1624)
	읍면지역	0.7	1.6	0.0	0.0	100.0(64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2	1.0	0.5	0.1	100.0(3954)
	한부모/조손가정	2.2	0.0	0.2	0.0	100.0(294)
	기타	1.3	0.0	0.0	0.0	100.0(58)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4	1.1	0.5	0.0	100.0(2806)
	외벌이가정(양친있음)	0.8	0.8	0.4	0.0	100.0(1136)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3.1	0.0	0.3	0.0	100.0(209)
	부모님 직업 없음	0.0	1.0	0.0	1.3	100.0(77)
	부모님 안계심	0.0	0.0	0.0	0.0	100.0(13)
학업성적	상(잘한다)	1.2	1.3	0.2	0.0	100.0(1140)
	중(보통)	1.4	0.9	0.6	0.0	100.0(1789)
	해(못한다)	1.1	0.7	0.5	0.2	100.0(1312)
경제적 수준	상	1.2	1.0	0.5	0.1	100.0(1568)
	중	1.6	0.8	0.6	0.0	100.0(1875)
	하	0.5	1.2	0.1	0.1	100.0(798)
희망교육 수준	고졸	1.0	1.0	0.0	0.0	100.0(291)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3	0.7	0.4	0.1	100.0(3190)
	대학원(석박사과정)	1.5	1.9	0.7	0.0	100.0(728)



【그림 IV-1】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순위)

②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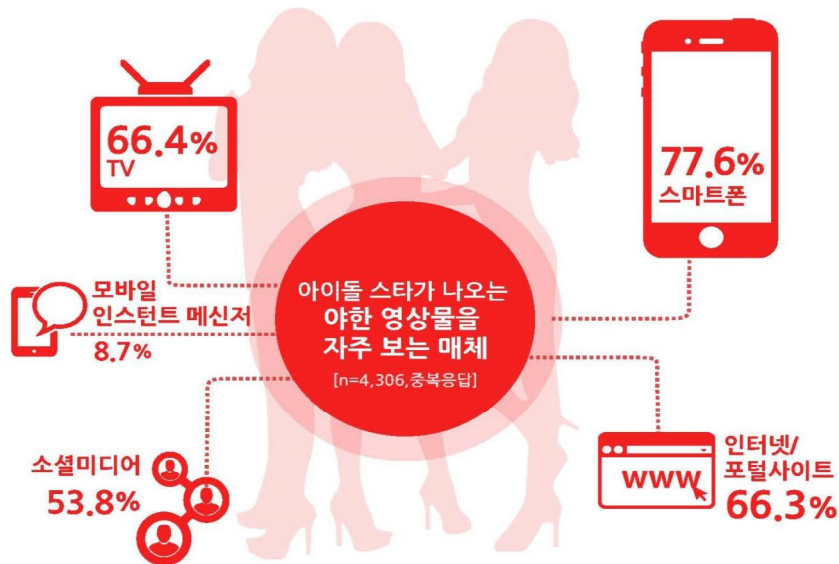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4,306명 중 77.6%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TV(66.4%), 인터넷/포털사이트(66.3%), 소셜미디어(5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78.1%, 여학생의 77.0%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7.1%, 일반/특목/자율고는 77.0%, 특성화고는 83.1%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79.6%, 중소도시가 76.1%, 읍면지역이 75.0%로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 77.2%, 한부모/조손가정이 79.8%, 기타 90.4%로 나타났으며,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맞벌이가정이 77.5%,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이 76.4%,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이 79.8%, 부모님 직업 없음이 84.6%, 부모님 안 계심이 8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72.8%)에서 중위권 (78.7%), 하위권(79.7%)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은 75.8%, 중층은 79.3%, 하층은 76.5%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81.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 78.3%, 대학원이 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스마트 폰	TV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소셜미 디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잡지	없음/ 안볼	신문	기타
전체	4306	77.6	66.4	66.3	53.8	8.7	4.1	3.9	2.7	0.2
성별	남자	2263	78.1	65.4	70.2	47.3	7.9	4.6	3.7	0.3
	여자	2043	77.0	67.5	62.1	61.1	9.6	3.5	4.2	0.1
교급	중학교	2105	77.1	68.1	60.8	49.8	10.6	4.6	4.8	0.1
	일반/특목/ 자율고	1811	77.0	65.9	72.4	57.5	7.0	3.5	2.9	0.3
	특성화고	389	83.1	59.4	68.0	58.6	6.9	3.8	4.1	0.0
지역	대도시	2036	79.6	67.0	68.9	52.0	8.9	4.5	3.0	0.1
	중소도시	1624	76.1	64.0	63.4	55.8	8.5	4.0	5.3	0.3
	읍면지역	646	75.0	70.6	65.7	54.6	8.8	2.9	3.5	0.1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954	77.2	66.4	66.1	53.7	8.7	4.3	4.1	0.2
	한부모/조손 가정	294	79.8	65.6	69.5	54.5	9.4	1.7	3.4	0.5
	기타	58	90.4	71.1	63.4	60.8	5.1	1.8	0.0	1.8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806	77.5	66.9	66.5	54.3	8.6	4.3	3.6	0.2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136	76.4	65.4	64.6	52.1	9.5	4.1	5.2	0.1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09	79.8	64.5	71.6	54.9	10.1	2.4	3.0	0.7
	부모님 직업 없음	77	84.6	69.5	70.7	57.4	3.4	0.6	0.0	3.3
	부모님 안계심	13	82.4	68.1	88.6	37.5	5.7	0.0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140	72.8	66.8	71.3	54.3	6.2	3.8	3.5	0.2
	중(보통)	1789	78.7	65.5	64.8	53.5	9.4	3.6	5.0	0.2
	하(못한다)	1312	79.7	67.4	64.4	53.6	10.2	5.0	2.9	0.2
경제적 수준	상	1568	75.8	64.5	65.2	55.0	10.4	4.0	4.0	0.2
	중	1875	79.3	68.1	66.1	52.7	8.4	4.1	4.1	0.1
	하	798	76.5	66.4	69.9	53.8	6.7	4.3	3.4	0.5
희망교육 수준	고졸	291	81.9	67.9	70.6	49.7	5.7	3.8	2.7	3.3
	대학졸업 (2,3년제 및 4년제)	3190	78.3	66.3	66.1	55.0	9.2	3.6	3.9	2.1
	대학원(석박 사과정)	728	71.9	66.2	66.6	51.1	7.8	6.4	4.6	5.0



【그림 IV-2】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1+2+3순위)

③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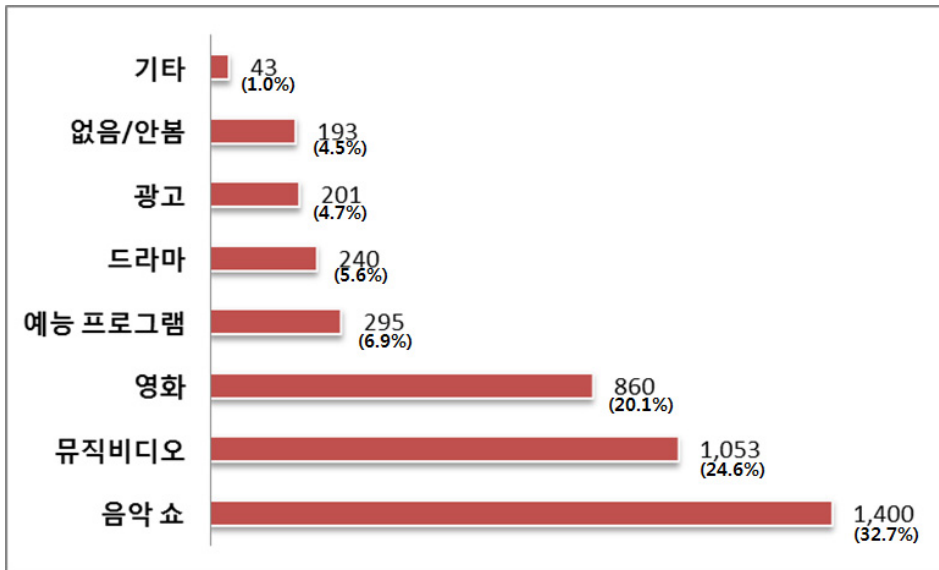
아이돌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4,281명 중 32.7%의 청소년이 ‘음악쇼’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뮤직비디오(24.6%)’, ‘영화(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32.1%, 여학생은 33.3%가 음악쇼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3.3%, 일반/특목/자율고는 32.0%, 특성화고는 32.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2.7%, 중소도시가 32.9%, 읍면지역이 32.0%가 음악쇼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 32.7%, 한부모/조손가정이 33.3%, 기타 28.1%로 나타났으며,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맞벌이가정(양친있음)이 33.0%,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이 32.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이 33.1%, 부모님 직업 없음이 31.9%, 부모님 안계심이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30.6%)에서 중위권(32.2%), 상위권(36.3%)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음악쇼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 30.5%에서 중층 33.5%, 하층은 35.7%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음악쇼를 통하여 야한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교육 수준에서는 고졸이 34.6%, 대학졸업이 32.5%, 대학원이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단위: %(명))

구분		음악 쇼	뮤직 비디오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광고	없음/ 안봄	기타	전체 (N)
전체		32.7	24.6	20.1	6.9	5.6	4.7	4.5	1.0	100.0(4281)
성별	남자	32.1	21.0	22.1	8.2	5.0	5.9	4.7	1.1	100.0(2248)
	여자	33.3	28.5	17.9	5.5	6.3	3.3	4.3	0.9	100.0(2033)
교급	중학교	33.3	22.1	17.4	7.4	7.5	5.8	5.7	0.8	100.0(2096)
	일반/특목/자율고	32.0	28.2	22.1	6.5	3.5	3.6	3.2	1.0	100.0(1793)
	특성화고	32.8	21.2	25.2	6.5	4.9	3.8	4.0	1.6	100.0(391)
지역	대도시	32.7	24.5	21.3	6.5	6.1	4.8	3.3	0.9	100.0(2021)
	중소도시	32.9	24.6	18.5	6.9	5.4	4.2	6.4	1.2	100.0(1617)
	읍면지역	32.0	24.9	20.3	8.6	4.4	5.5	3.8	0.6	100.0(643)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2.7	24.9	19.8	6.9	5.5	4.7	4.5	1.0	100.0(3929)
	한부모/조손가정	33.3	18.3	24.6	7.9	5.5	5.2	4.0	1.2	100.0(294)
	기타	28.1	31.9	19.1	3.6	10.4	2.6	4.3	0.0	100.0(58)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33.0	24.7	20.0	6.6	5.7	5.0	4.1	1.0	100.0(2787)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32.0	25.2	19.3	7.5	5.5	3.8	5.6	1.0	100.0(1128)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3.1	19.4	23.3	9.7	4.7	5.2	3.0	1.6	100.0(209)
	부모님 직업 없음	31.9	22.1	26.9	4.7	3.4	5.5	5.6	0.0	100.0(79)
	부모님안계심	59.1	23.9	5.8	11.2	0.0	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36.3	27.0	17.3	4.4	5.8	4.0	4.0	1.1	100.0(1136)
	중(보통)	32.2	23.8	19.1	8.7	4.9	4.7	5.7	0.9	100.0(1778)
	하(못한다)	30.6	23.2	23.7	7.0	6.0	5.3	3.2	1.1	100.0(1302)
경제적 수준	상	30.5	24.2	20.9	7.8	6.9	4.2	4.6	1.0	100.0(1560)
	중	33.5	23.5	20.5	6.9	5.1	5.1	4.4	0.9	100.0(1860)
	하	35.7	27.4	17.2	5.7	3.8	4.8	4.2	1.2	100.0(79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34.6	18.0	21.3	8.6	4.9	7.6	2.7	2.2	100.0(287)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2.5	24.8	20.2	7.5	5.2	4.7	4.3	0.9	100.0(3169)
	대학원(석박사과정)	33.3	26.7	18.4	4.2	6.7	3.9	5.9	0.8	100.0(727)



【그림 IV-3】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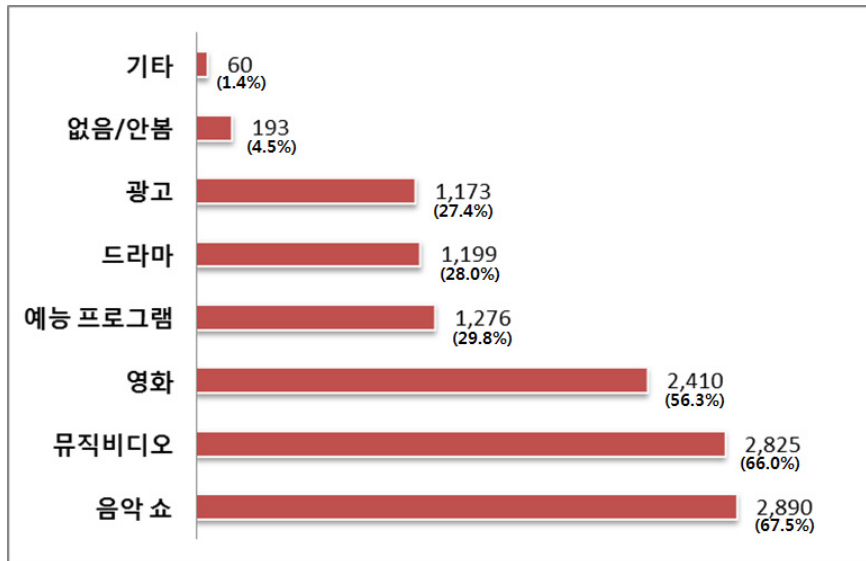
④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3순위)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3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음악쇼’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281명 중 6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뮤직비디오 66.0%, 영화 5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70.1%)이 남학생(64.5%)보다 음악쇼를 통해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본다고 응답했다.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는 66.2%, 중학생의 64.1%가 음악쇼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67.6%, 중소도시가 67.8%, 읍면지역이 66.2%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 67.4%, 한부모/조손가정이 67.4%, 기타 74.4%로 나타났으며,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부모님 안 계심이 88.5%,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이 70.2%, 맞벌이가정이 68.9%,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이 63.7%, 부모님 직업 없음이 62.7% 순으로 음악쇼를 통해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로 꼽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이 70.2%, 중위권이 66.5%, 하위권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 66.1%에서 중층 67.9%, 하층은 69.4%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음악쇼를 통하여 야한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62.2%, 대학졸업이 68.0%, 대학원이 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3순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음악 쇼	뮤직 비디오	영화	광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없음/안볼	기타
전체		4281	67.5	66.0	56.3	29.8	28.0	27.4	4.5	1.4
성별	남자	2248	64.5	59.3	59.9	34.5	29.6	24.2	4.7	1.6
	여자	2033	70.7	73.4	52.4	24.5	26.2	30.9	4.3	1.3
교급	중학교	2096	64.1	60.9	51.1	31.8	29.7	30.7	5.7	1.2
	일반/특목/자율고	1793	71.7	71.7	60.3	28.1	27.1	22.9	3.2	1.5
	특성화고	391	66.2	66.7	66.4	26.1	22.8	30.0	4.0	2.3
지역	대도시	2021	67.6	66.6	58.7	28.9	28.8	28.1	3.3	1.2
	중소도시	1617	67.8	65.3	52.6	29.7	26.7	26.4	6.4	1.9
	읍면지역	643	66.2	65.5	58.4	32.4	28.4	27.5	3.8	1.2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929	67.4	66.5	56.2	29.8	27.8	26.9	4.5	1.5
	한부모/조손가정	294	67.4	59.3	56.9	30.3	31.6	31.7	4.0	1.2
	기타	58	74.4	64.6	61.0	21.0	21.6	37.0	4.3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787	68.9	65.9	55.5	30.5	28.7	26.9	4.1	1.5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128	63.7	67.4	57.9	28.6	26.0	27.1	5.6	1.5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09	70.2	60.7	56.2	33.3	30.8	30.4	3.0	1.6
	부모님 직업 없음	79	62.7	69.7	58.8	16.9	25.7	33.6	5.6	0.8
	부모님 안계심	13	88.5	56.5	58.9	20.4	46.9	11.2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136	70.2	71.7	54.4	32.1	25.0	22.1	4.0	1.4
	중(보통)	1778	66.5	65.3	55.8	28.4	29.1	28.3	5.7	1.3
	하(못한다)	1302	66.7	62.2	58.5	30.1	29.6	30.1	3.2	1.7
경제적 수준	상	1560	66.1	67.0	56.5	28.8	28.4	27.1	4.6	1.6
	중	1860	67.9	65.1	56.6	30.5	28.5	28.2	4.4	1.3
	하	795	69.4	66.4	54.9	30.7	26.7	25.4	4.2	1.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7	62.2	59.2	64.8	35.5	27.8	30.1	2.7	2.4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169	68.0	66.9	56.4	29.1	28.7	27.0	4.3	1.3
	대학원(석박사과정)	727	67.2	66.7	52.5	31.4	25.7	26.0	5.9	1.5



【그림 IV-4】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1+2+3순위)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기타)에 대해서 전체 61명 중 39.2%의 청소년이 ‘사진/동영상캡처/동영상’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32.5%), ‘웹툰’(16.8%), ‘책/잡지/포스터’(6.6%), ‘방송프로그램’(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61	100.0
사진/동영상캡처/동영상	24	39.2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20	32.5
웹툰	10	16.8
책/잡지/포스터	4	6.6
방송프로그램	2	3.8

(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에 대해서 전체 4,222명 중 37.8%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이라고 응답했고,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일반/특목/자율고(26.0%)와 특성화고(26.9%)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chi^2=739.125$, $p<.001$). 지역별로는 중소지역(40.1%), 대도시(37.3%), 읍면지역(33.3%) 순으로 나타났고($\chi^2=54.872$, $p<.001$), 가족구성원별로는 한부모/조손가정(38.9%), 양부모가정(37.7%), 기타(33.5%) 순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봤다고 응답했다($\chi^2=34.720$, $p<.01$). 부모님 취업여부로 보았을 때,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4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부모님 직업 없음(40.0%), 맞벌이가정(38.5%), 외벌이가정(양친있음)(34.9%), 부모님 안 계심(22.5%)순으로 나타났다($\chi^2=70.868$, $p<.0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41.4%), 하위권(37.8%), 중위권(35.4%) 순으로 나타났으며($\chi^2=30.939$, $p<.05$),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34.2%)에서 중층(38.1%), 상층(39.1%)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chi^2=36.362$, $p<.05$).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서는 대학졸업(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고졸(36.0%), 대학원(35.3%)의 순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봤다고 응답했다($\chi^2=51.384$, $p<.001$).

표 IV-1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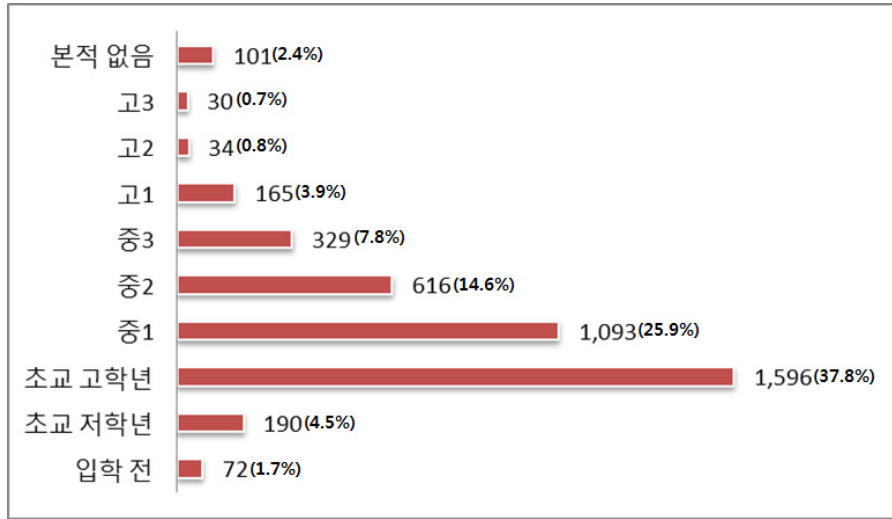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중1	중2	중3
성별	전체	1.7	4.5	37.8	25.9	14.6	7.8
	남자	2.5	4.5	36.2	28.6	14.0	6.9
	여자	0.9	4.5	39.5	22.9	15.2	8.9
교급	중학교	1.5	4.9	50.0	30.3	7.9	1.7
	일반/특목/자율고	1.9	4.4	26.0	21.0	20.9	13.9
	특성화고	2.1	2.5	26.9	25.2	20.8	12.5
지역	대도시	1.8	3.6	37.3	26.9	14.4	8.1
	중소도시	1.9	5.9	40.1	23.7	15.1	6.8
	읍면지역	1.3	3.8	33.3	28.5	13.6	9.7
가족 구성원	양부모 가정	1.7	4.2	37.7	25.7	14.9	8.0
	한부모/조손가정	2.1	7.5	38.9	29.5	9.3	5.9
	기타	0.0	5.4	33.5	22.5	19.6	9.1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1.8	4.5	38.5	25.8	13.7	7.7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4	3.7	34.9	25.9	17.7	8.5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1.2	6.6	42.3	29.6	9.0	6.4
	부모님 직업 없음	3.7	7.7	40.0	21.5	13.6	6.8
	부모님 안계심	0.0	22.0	22.5	35.0	6.1	5.9
학업	상(잘한다)	2.2	3.8	41.4	26.3	13.0	6.3

구분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중1	중2	중3
성적	중(보통)	1.6	4.4	35.4	27.2	14.6	8.4
	하(못한다)	1.4	5.4	37.8	24.1	15.5	8.3
경제적 수준	상	1.9	4.3	39.1	26.6	13.6	7.0
	중	1.3	3.8	38.1	26.7	14.4	8.2
	하	2.3	6.8	34.2	23.2	16.3	8.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3	10.1	36.0	22.2	15.7	7.7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7	4.3	38.3	27.0	14.0	7.8
	대학원(석박사과정)	1.5	2.9	35.3	23.4	16.6	8.5

[표 계속]

구분		고1	고2	고3	없음/ 본적 없음	전체 (N)	통계량
전체		3.9	0.8	0.7	2.4	100.0(4222)	—
성별	남자	3.4	0.7	0.8	2.4	100.0(2228)	t=0.215
	여자	4.4	0.9	0.5	2.3	100.0(1993)	
교급	중학교	0.0	0.0	0.0	3.7	100.0(2056)	$\chi^2=739.125^{***}$
	일반/특목/자율고	8.1	1.7	1.2	0.8	100.0(1775)	
	특성화고	5.0	0.8	1.5	2.6	100.0(391)	
지역	대도시	4.5	0.8	0.9	1.7	100.0(1982)	$\chi^2=54.872^{***}$
	중소도시	2.3	0.7	0.5	3.2	100.0(1600)	
	읍면지역	5.9	1.1	0.2	2.6	100.0(64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9	0.8	0.7	2.4	100.0(3876)	$\chi^2=34.720^{**}$
	한부모/조손가정	3.1	0.7	0.2	2.8	100.0(290)	
	기타	5.3	4.6	0.0	0.0	100.0(55)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0	0.8	0.7	2.3	100.0(2757)	$\chi^2=70.868^{***}$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3.9	0.8	0.3	3.0	100.0(1105)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6	0.2	0.3	1.9	100.0(207)	
	부모님 직업 없음	0.8	0.0	4.7	1.2	100.0(78)	
	부모님 안계심	8.5	0.0	0.0	0.0	100.0(12)	
학업 성적	상(잘한다)	3.2	0.6	0.8	2.2	100.0(1129)	$\chi^2=30.939^*$
	중(보통)	4.3	0.5	0.7	3.0	100.0(1739)	
	하(못한다)	4.0	1.1	0.5	1.9	100.0(1292)	
경제적 수준	상	3.6	0.6	0.5	2.8	100.0(1528)	$\chi^2=36.362^{**}$
	중	3.9	0.7	0.5	2.4	100.0(1839)	
	하	4.4	1.0	1.4	1.6	100.0(793)	
희망 교육 수준	고졸	3.1	0.0	1.8	1.2	100.0(286)	$\chi^2=51.384^{***}$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6	0.7	0.5	2.1	100.0(3124)	
	대학원(석박사과정)	5.4	1.2	1.0	4.1	100.0(716)	

* $\alpha.05$, ** $\alpha.01$, *** $\alpha.001$



【그림 IV-5】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요즘 아이돌 스타의 영상물이 야한 옷(짧은 치마 등 노출의상)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다’가 28%로 가장 높았지만 ‘그렇다’(27.4%)와 0.6%만의 차이만 있었다. 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칠 경우 전체 청소년의 38%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구성원과 부모님 취업여부를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이 성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 성별에서 여학생(42.0%)이 남학생(34.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p<.05$), 교급별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44.9%)가 중학교(32.4%), 특성화고(36.5%)에 비해 성적으로 자극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29.313, p<.001$). 그러나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40.6%)이 대도시(36.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2.709, p<.1$). 또한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43.0%)이 중위권(37.8%)과 하위권(34.1%)보다 자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1.730, p<.001$). 그러나 중위권과 하위권은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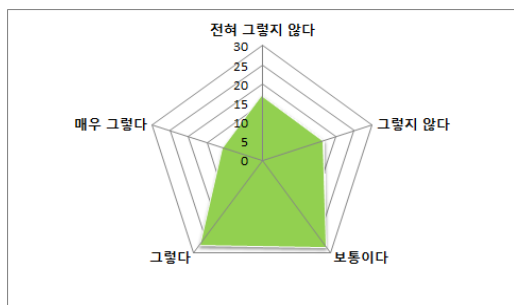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과 중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층(41.5%)이 중층(35.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3.670$, $p<.05$).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45.0%)이 고졸(32.5%)과 대학졸업(37.2%)보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으로 인해 성적으로 더 자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9.281$, $p<.001$). 하지만 고졸과 대학졸업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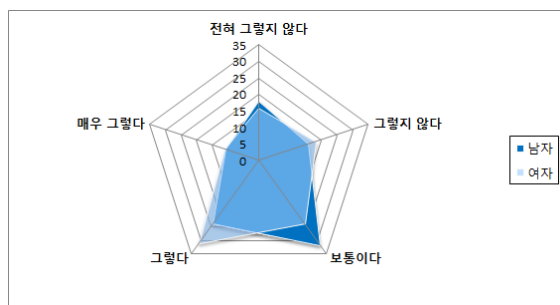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7.1	16.9	28.0	27.4	10.6	100.0(4345)	—
성별	남자	18.0	15.9	31.7	24.0	10.4	100.0(2274)	$t=-2.565^*$
	여자	16.0	18.1	23.9	31.2	10.8	100.0(2071)	
교급	1중학교	20.4	17.2	30.0	23.2	9.2	100.0(2121)	$F=29.313^{***}$ 2) 1, 3
	2일반/특목/자율고	13.5	16.8	24.8	32.2	12.8	100.0(1829)	
	3특성화고	15.5	16.2	31.8	28.2	8.4	100.0(395)	
지역	1대도시	18.1	18.5	26.9	24.6	11.9	100.0(2068)	$F=2.709^{\dagger}$ 3) 1
	2중소도시	17.2	15.1	28.7	29.5	9.5	100.0(1632)	
	3읍면지역	13.4	16.6	29.4	31.3	9.3	100.0(64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6.9	16.8	28.3	27.7	10.4	100.0(3984)	$F=0.180$ —
	한부모/조손가정	18.6	18.8	25.2	22.0	15.5	100.0(299)	
	기타	20.8	15.1	22.3	38.6	3.2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17.2	16.8	28.0	27.3	10.7	100.0(2826)	$F=0.113$ —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6.2	16.6	28.3	28.7	10.1	100.0(1142)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17.4	19.4	27.8	20.3	15.1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17.2	16.7	28.7	29.1	8.3	100.0(82)	
	부모님 안계심	8.7	44.5	15.1	11.2	20.4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14.7	15.3	27.0	29.7	13.3	100.0(1146)	$F=11.730^{***}$ 1) 2, 3
	2중(보통)	16.7	17.2	28.3	27.6	10.2	100.0(1810)	
	3하(못한다)	19.1	18.1	28.7	24.9	9.3	100.0(1318)	
경제적 수준	1상	17.7	15.9	27.2	28.1	11.2	100.0(1576)	$F=3.670^*$ 3) 2
	2중	17.2	17.6	29.5	26.3	9.4	100.0(1891)	
	3하	14.8	17.6	26.1	28.4	13.1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9.3	16.1	32.2	22.1	10.3	100.0(296)	$F=9.281^{***}$ 3) 1, 2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7.1	17.8	27.9	27.2	10.0	100.0(3210)	
	3대학원(석박사과정)	14.7	14.3	26.0	30.5	14.5	100.0(733)	

$\dagger p<.10$, $*p<.05$, $**p<.01$, $***p<.001$



【그림 IV-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인식 분포도)



【그림 IV-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다’(9.1%)와 ‘매우 그렇다’(3.4%)의 긍정적인 답변을 합쳐 12.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앞 문항, 즉 아이돌 스타의 영상을 통해 성적으로 자극받는 통계(38%)와 비교해볼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해 청소년들이 재미(12.5%)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성적으로 자극만 준다(38%)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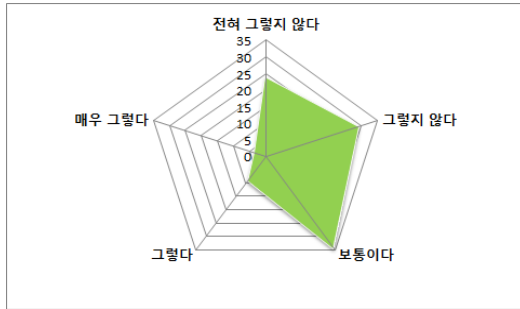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성별, 교급별, 지역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18.6%)이 여학생(5.7%)보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고 응답했다($p<.001$). 교급별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18.2%), 일반/특목/자율고(15.8%)가 중학교(8.5%)에 비해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에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64.449$, $p<.001$). 그러나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3.8%)가 읍면지역(13.0%), 중소도시(1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767$, $p<.001$). 그러나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14.2%), 중위권(11.9%), 하위권(11.9%) 순으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고 응답했다($F=2.764$, $p<.1$).

표 IV-18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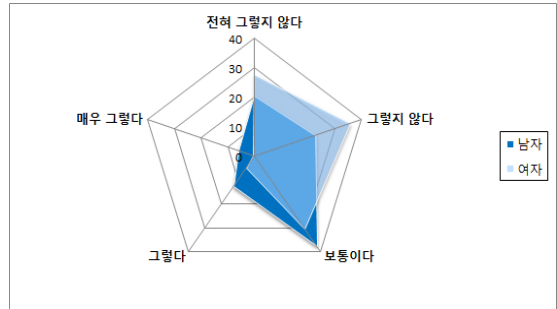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24.1	29.1	34.4	9.1	3.4	100.0(4345)	—
성별	남자	20.6	23.0	37.8	12.7	5.9	100.0(2274)	t=14.822***
	여자	27.9	35.8	30.6	5.1	0.6	100.0(2071)	
교급	1중학교	29.9	30.1	31.5	6.5	2.0	100.0(2121)	F=64.449*** 2, 3)1
	2일반/특목/자율고	18.8	28.3	37.1	11.6	4.2	100.0(1829)	
	3특성화고	17.3	27.2	37.3	11.3	6.9	100.0(395)	
지역	1대도시	23.1	28.6	34.5	10.2	3.6	100.0(2068)	F=11.767*** 1, 3)2
	2중소도시	27.4	29.8	32.2	7.5	3.1	100.0(1632)	
	3읍면지역	19.0	28.8	39.3	9.7	3.3	100.0(64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24.1	29.6	34.1	8.9	3.3	100.0(3984)	F=1.716
	한부모/조손가정	24.4	23.3	36.0	11.8	4.5	100.0(299)	
	기타	22.0	23.1	43.9	7.8	3.2	100.0(62)	—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3.8	28.5	34.6	9.2	3.9	100.0(2826)	F=1.900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25.1	31.5	32.2	8.7	2.5	100.0(1142)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3.8	24.8	37.4	11.1	2.8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25.3	27.5	39.0	8.1	0.0	100.0(82)	
	부모님 안계심	5.6	38.2	51.2	0.0	5.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22.6	30.0	33.1	10.3	3.9	100.0(1146)	F=2.764† 1)2
	2중(보통)	26.1	28.9	33.1	8.5	3.4	100.0(1810)	
	3하(못한다)	22.7	28.6	36.8	9.0	2.9	100.0(1318)	
경제적 수준	상	25.7	27.0	33.8	9.7	3.8	100.0(1576)	F=1.223
	중	24.1	30.6	33.5	8.8	3.1	100.0(1891)	
	하	21.1	30.0	37.0	8.6	3.3	100.0(807)	—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3.1	26.9	32.7	13.1	4.3	100.0(296)	F=1.726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4.1	29.6	34.4	8.5	3.3	100.0(3210)	
	대학원(석박사과정)	24.4	28.1	33.6	10.4	3.6	100.0(733)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8】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9】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렇다(21%)’와 ‘매우 그렇다(7.7%)’를 합하면 28.7%로 3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 문항에서 ‘재미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12.5%에 그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희망교육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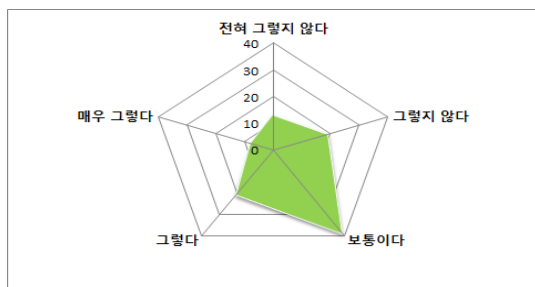
성별에서 여학생(40.9%)이 남학생(17.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32.0%)가 일반/특목/자율고(27.0%), 특성화고(18.5%)에 비해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49.862$, $p<.001$). 그러나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26.2%)가 중소도시(32.2%)와 읍면지역(27.8%)보다 자극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8.899$, $p<.001$).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취업여부는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30.3%)이 하위권(25.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5.988$, $p<.01$). 또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18.8%)이 대학졸업(28.8%)과 대학원(33.8%)보다 불쾌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8.794$, $p<.001$). 하지만 대학졸업과 대학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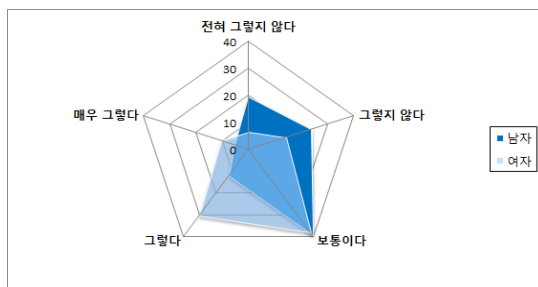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3.3	19.2	38.8	21.0	7.7	100.0(4342)	—
성별	남자	19.5	23.9	39.2	12.2	5.3	100.0(2270)	t=-19.742***
	여자	6.6	14.2	38.3	30.6	10.3	100.0(2072)	
교급	1중학교	9.1	16.4	42.5	22.2	9.7	100.0(2119)	F=49.862*** 1)2, 3
	2일반/특목/자율고	17.3	21.9	33.7	20.8	6.2	100.0(1829)	
	3특성화고	17.7	21.8	42.0	15.0	3.5	100.0(395)	
지역	1대도시	16.3	20.6	37.0	19.5	6.7	100.0(2065)	F=18.899*** 2, 3)1
	2중소도시	11.1	17.2	39.6	23.4	8.7	100.0(1631)	
	3읍면지역	9.6	20.2	42.4	19.4	8.4	100.0(645)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13.1	19.1	39.1	21.2	7.6	100.0(3981)	F=3.711* 1, 2)3
	2한부모/조손가정	15.5	19.3	35.2	20.1	9.9	100.0(299)	
	3기타	20.3	29.7	32.9	11.5	5.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3.5	20.0	38.6	20.5	7.4	100.0(2825)	F=2.940*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2.5	16.6	39.9	23.2	7.8	100.0(114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4.5	15.8	38.7	21.3	9.7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5.5	29.5	34.8	16.3	13.8	100.0(82)	
	부모님 안계심	20.4	51.2	17.0	11.4	0.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14.0	19.1	36.4	20.9	9.5	100.0(1148)	F=5.988** 2)3
	2중(보통)	11.5	18.5	39.7	22.9	7.5	100.0(1808)	
	3하(못한다)	14.6	20.1	39.8	19.0	6.5	100.0(1316)	
경제적 수준	상	13.5	21.0	36.0	21.5	8.0	100.0(1576)	F=1.228 —
	중	13.0	17.5	42.0	21.0	6.4	100.0(1889)	
	하	12.6	19.4	36.9	20.7	10.3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6.6	23.3	41.4	12.9	5.8	100.0(291)	F=8.794*** 2, 3)1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2.5	19.4	39.3	21.8	7.0	100.0(3209)	
	3대학원(석박사과정)	14.4	16.0	35.8	22.5	11.3	100.0(735)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10】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인식 분포도)



【그림 IV-1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그렇다(37.2%)’와 ‘매우 그렇다(19.1%)’의 응답비율을 합칠 때 50%가 넘는 56.3%가 되었다. 반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모두 20%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들 가운데 둘 중 한 명은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보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논리에 따른 상업성으로부터 그러한 노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소위 ‘돈을 벌수만 있다면 노출도 상관없다’는 식의 공연을 통해 청소년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존재발전을 가져오기보다 자본주의논리에 보다 더 각인되고 있는 현실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를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 교육수준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 여학생(63.9%)이 남학생(49.3%)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와 중학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특목/자율고(63.1%)가 중학교(50.4%) 보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F=26.262$, $p<.001$).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5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55.2%)와 읍면지역(51.7%)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9.851$, $p<.001$).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권(60.9%)이 하위권(5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7.783$, $p<.001$).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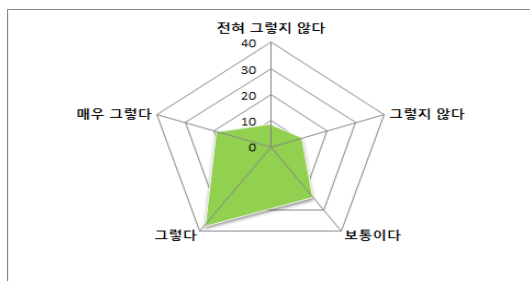
을 실시한 결과, 하층(57.7%)이 중층(53.9%)보다 높았다($F=3.257, p<.05$). 희망교육수준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62.9%), 대학졸업(55.8%), 고졸(47.7%)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F=8.917, p<.001$).

표 IV-20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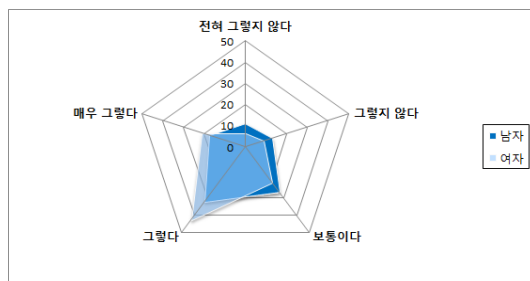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8.9	11.0	23.8	37.2	19.1	100.0(4344)	—
성별	남자	11.3	13.0	26.5	32.0	17.2	100.0(2272)	$t=-9.220^{***}$
	여자	6.4	8.8	20.9	42.8	21.1	100.0(2073)	
교급	1중학교	9.4	14.3	25.9	33.7	16.6	100.0(2123)	$F=26.262^{***}$ 2)1
	2일반/특목/자율고	8.5	7.5	20.9	40.8	22.3	100.0(1827)	
	3특성화고	8.1	9.1	26.6	39.3	16.9	100.0(395)	
지역	1대도시	10.3	10.9	23.6	36.2	18.9	100.0(2066)	$F=9.851^{***}$ 2)1, 3
	2중소도시	7.5	9.3	23.8	38.6	20.9	100.0(1631)	
	3읍면지역	8.1	15.6	24.6	36.8	14.9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8.9	11.0	24.0	37.3	18.7	100.0(3983)	$F=1.597$ —
	한부모/조손가정	8.0	11.0	22.2	35.0	23.8	100.0(299)	
	기타	16.5	9.5	18.9	38.5	16.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9.2	11.5	23.6	36.5	19.3	100.0(2826)	$F=0.948$ —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7.9	9.6	24.9	39.6	18.0	100.0(1140)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8.0	11.9	24.1	35.9	20.0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10.4	10.1	16.9	38.1	24.5	100.0(82)	
	부모님 안계심	5.5	18.5	48.1	22.9	5.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8.5	9.4	21.3	39.2	21.7	100.0(1147)	$F=7.783^{***}$ 1)3
	2중(보통)	8.1	11.7	23.9	37.8	18.5	100.0(1809)	
	3하(못한다)	10.1	11.5	26.3	34.7	17.3	100.0(1317)	
경제적 수준	1상	8.4	11.6	21.7	39.1	19.2	100.0(1578)	$F=3.257^*$ 3)2
	2중	9.4	10.8	25.9	36.4	17.5	100.0(1889)	
	3하	7.9	10.5	23.9	35.7	22.0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1.1	14.4	26.8	32.5	15.2	100.0(295)	$F=8.917^{***}$ 3)2)1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8.0	11.4	24.8	37.7	18.2	100.0(3208)	
	3대학원(석박사과정)	10.3	7.6	19.3	38.1	24.8	100.0(735)	

* $p<.05$, ** $p<.01$, *** $p<.001$



【그림 IV-12】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13】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82.7%)’고 답했으며 소수만이(5.8%) 따라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문항에서 그러한 야한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들 다수의 반응이 재미없었으며 동시에 불쾌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세부적으로 성별,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별 영역에서 유의미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8.8%)이 남학생(3.1%)에 비해 아이돌 스타를 따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p<.001$).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6.2%)이 대도시(5.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3.090$, $p<.05$). 또한 가족구성원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5.6%)과 한부모/조손가정(6.1%)이 기타(18.6%)보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66$,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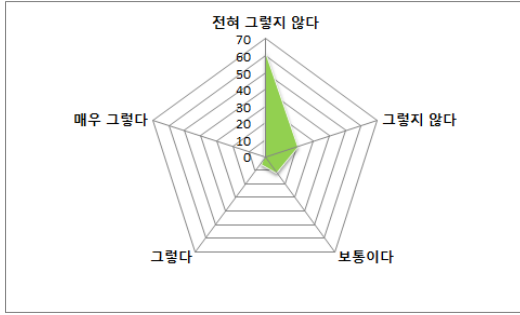
한편, 부모님 취업여부에서는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권(6.4%)에서 상위권(5.0%)으로 갈수록 아이돌 스타를 따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F=3.029$, $p<.05$).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권(6.4%)이 상위권(5.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3.755$, $p<.05$).

표 IV-2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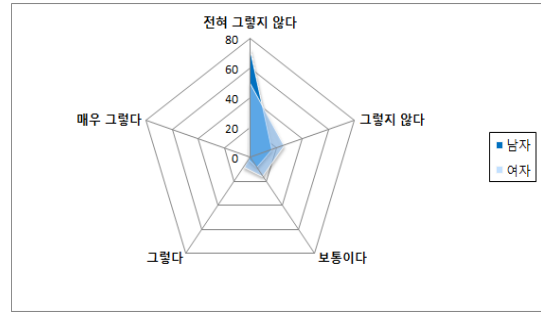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62.3	20.4	11.4	4.9	0.9	100.0(4338)	—
성별	남자	73.1	15.9	7.9	2.3	0.8	100.0(2269)	t=-14.915***
	여자	50.5	25.4	15.4	7.8	1.0	100.0(2069)	
교급	중학교	63.9	18.9	11.5	4.7	0.9	100.0(2117)	F=0.873
	일반/특목/자율고	61.0	22.0	11.0	5.0	1.0	100.0(1829)	—
	특성화고	60.1	21.1	12.9	5.9	0.0	100.0(393)	
지역	1대도시	63.5	19.9	10.8	4.9	0.9	100.0(2061)	F=3.090*
	2중소도시	62.6	20.3	11.3	5.1	0.7	100.0(1629)	3)1
	3읍면지역	57.9	22.1	13.8	4.6	1.6	100.0(648)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62.3	20.7	11.4	4.8	0.8	100.0(3977)	F=14.466***
	2한부모/조손가정	66.8	16.6	10.5	5.3	0.8	100.0(299)	3)1 ,2
	3기타	40.9	19.4	21.2	12.1	6.5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61.7	20.7	11.7	4.9	0.9	100.0(2825)	F=3.029*
	외벌이가정(양친있음)	63.9	21.1	10.0	4.3	0.7	100.0(1136)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69.0	15.9	11.8	3.1	0.2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59.2	16.3	12.1	11.3	1.2	100.0(82)	
	부모님 안계심	50.2	11.4	23.3	15.1	0.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65.2	20.3	9.5	4.0	1.0	100.0(1142)	F=3.755*
	2중(보통)	62.4	21.0	11.1	4.5	1.0	100.0(1808)	3)1
	3하(못한다)	60.8	19.6	13.2	6.1	0.3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63.3	21.4	9.8	4.5	1.0	100.0(1572)	F=1.514
	중	62.8	19.5	12.7	4.6	0.5	100.0(1891)	—
	하	61.0	20.8	11.0	5.9	1.2	100.0(804)	
희망 교육 수준	고졸	62.9	20.7	11.3	4.5	0.7	100.0(296)	F=0.175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62.3	20.6	11.3	5.0	0.8	100.0(3201)	—
	대학원(석박사과정)	63.4	20.1	11.1	4.5	1.0	100.0(73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14】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1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다’는 성별, 교급, 학업성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53.7%에 달했고 부정적이 답변은 33.5%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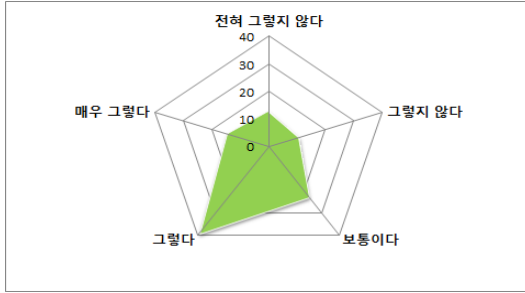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59.6%)이 남학생(48.3%)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60.2%), 일반/특목/자율고(58.1%)에 비해 중학교(48.7%)가 낮았다($F=23.913$, $p<.001$). 그러나 특성화고와 일반/특목/자율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58.2%)에서 하위권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아이돌 스타를 따라하는 청소년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39$, $p<.05$).

표 IV-22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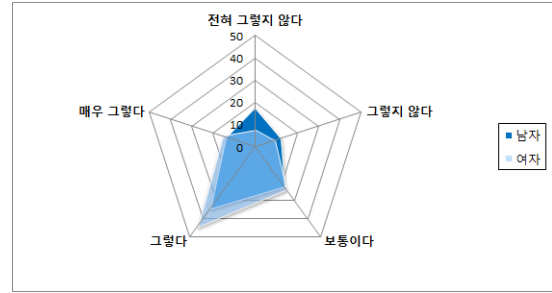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2.9	10.6	22.8	39.2	14.5	100.0(4345)	—
성별	남자	17.7	12.1	21.9	34.5	13.8	100.0(2273)	t=-9.898***
	여자	7.6	9.0	23.8	44.3	15.3	100.0(2073)	
교급	1중학교	15.7	12.0	23.6	35.1	13.6	100.0(2122)	F=23.913*** 2, 3>1
	2일반/특목/자율고	10.4	9.6	21.9	42.3	15.8	100.0(1828)	
	3특성화고	9.3	7.9	22.6	46.6	13.6	100.0(395)	
지역	대도시	14.5	10.0	22.3	37.3	16.0	100.0(2066)	F=0.325 —
	중소도시	11.8	10.6	23.7	40.4	13.5	100.0(1632)	
	읍면지역	10.6	12.5	22.3	42.2	12.4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3.0	10.5	23.4	39.0	14.2	100.0(3985)	F=1.469 —
	한부모/조손가정	10.5	14.0	14.5	44.3	16.8	100.0(298)	
	기타	16.7	4.9	26.8	26.1	25.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13.2	10.9	23.0	38.1	14.8	100.0(2827)	F=0.439 —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1.9	9.4	23.7	41.4	13.6	100.0(1142)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10.3	16.7	14.8	43.7	14.5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16.0	7.5	20.7	46.3	9.6	100.0(81)	
	부모님 안계심	15.4	5.8	23.8	50.0	5.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11.7	9.5	20.5	43.8	14.5	100.0(1148)	F=4.139* 1>3
	2중(보통)	12.0	11.5	23.8	38.4	14.3	100.0(1810)	
	3하(못한다)	14.7	10.5	23.2	37.3	14.2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13.4	10.5	22.0	38.3	15.8	100.0(1579)	F=1.998 —
	중	12.8	11.0	24.1	39.4	12.7	100.0(1891)	
	하	11.6	10.4	21.1	42.0	14.9	100.0(80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13.8	10.0	25.7	36.3	14.3	100.0(296)	F=1.773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2.5	10.8	23.0	40.4	13.3	100.0(3208)	
	대학원(석박사과정)	12.8	10.2	20.4	37.7	18.9	100.0(735)	

* $p<.05$, ** $p<.01$, *** $p<.001$



【그림 IV-16】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17】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낮게(7.7%)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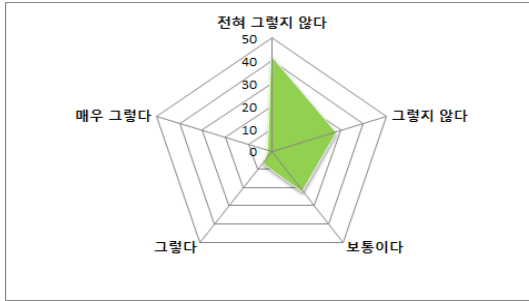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부모님 취업여부와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2.6%)이 여학생(2.4%)에 비해 응답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p < .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가 8.8%로 중학교의 6.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F=6.868, p < .001$). 한편, 지역별로는 $p < .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조손가정(10.7%)과 양부모가정(7.6%)에 비해 기타(2.6%)는 낮게 나타났는데($F=5.132, p < .01$), 양부모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10.7%)이 하위권(6.7%)보다 높게 나타났다($F=5.132, p < .01$). 또한 희망교육수준별로는 $p < .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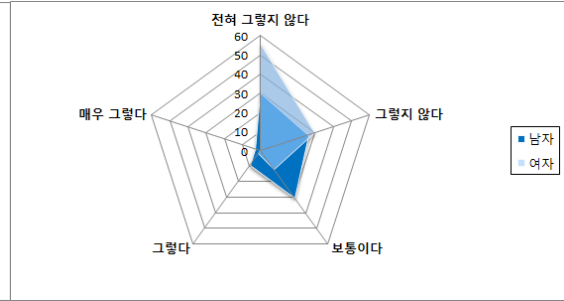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42.8	27.9	21.6	6.1	1.6	100.0(4341)	—
성별	남자	30.6	26.4	30.4	9.5	3.1	100.0(2268)	t=23.449***
	여자	56.1	29.5	12.0	2.3	0.0	100.0(2073)	
교급	1중학교	45.1	26.7	21.6	5.5	1.2	100.0(2119)	F=6.868** 3)1
	2일반/특목/자율고	41.4	29.1	20.8	6.9	1.8	100.0(1827)	
	3특성화고	36.7	28.6	25.9	5.6	3.2	100.0(395)	
지역	대도시	42.9	26.4	22.2	6.8	1.7	100.0(2063)	F=2.635† —
	중소도시	44.2	29.1	19.4	5.8	1.5	100.0(1631)	
	읍면지역	38.9	29.6	25.4	4.4	1.7	100.0(648)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42.4	28.5	21.5	6.1	1.5	100.0(3981)	F=4.403* 1, 2)3
	2한부모/조손가정	44.1	20.2	25.0	7.1	3.7	100.0(298)	
	3기타	57.1	25.2	15.0	1.1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2.6	28.1	21.7	5.7	1.9	100.0(2823)	F=1.335 —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42.1	29.0	21.1	7.0	0.9	100.0(1141)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46.1	19.9	24.7	7.9	1.5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37.7	32.7	23.3	6.2	0.0	100.0(81)	
	부모님 안계심	32.0	17.0	30.5	0.0	20.4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40.3	28.5	20.6	8.1	2.6	100.0(1144)	F=5.132** 1)2
	2중(보통)	44.0	27.7	21.7	5.6	1.0	100.0(1809)	
	3하(못한다)	42.7	27.8	22.8	5.1	1.6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42.6	27.4	20.6	7.9	1.6	100.0(1574)	F=1.248 —
	중	42.8	28.3	23.0	4.2	1.6	100.0(1890)	
	하	42.0	28.2	21.1	7.0	1.9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39.9	24.2	28.2	4.7	3.0	100.0(296)	F=2.808†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2.9	28.7	20.9	6.0	1.5	100.0(3206)	
	대학원(석박사과정)	41.9	26.3	22.7	7.1	2.0	100.0(73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1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인식 분포도)



【그림 IV-1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19%로 20%에 가까웠다. 이는 실제 자신이 자극받는다(7.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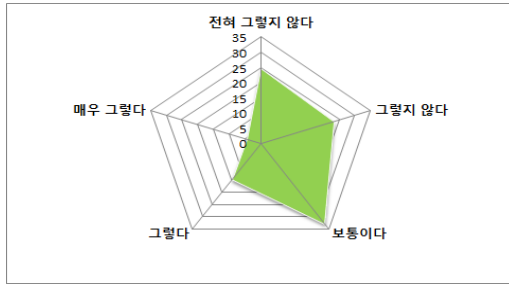
성별, 가족구성원, 학업성적 영역에서 유의미했다. 성별로는 남학생(24.3%)이 여학생(13.1%)보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p<.001$). 가족구성원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조손가정이 22.8%로 가장 높았고 양부모가정이 18.7%, 기타는 15.6%의 응답비율을 보였다($F=6.166, p<.01$). 하지만 양부모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이 23.2%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위권, 하위권 각각 18.6%, 15.8%의 순으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친구들에게 자극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F=11.237, p<.001$). 하지만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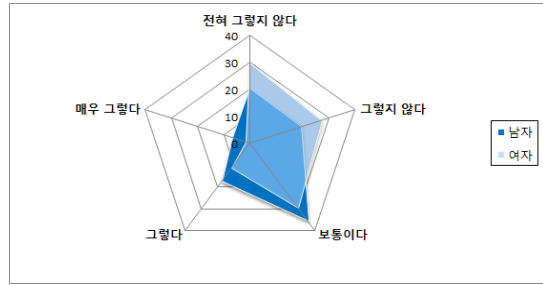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25.0	23.2	32.9	14.8	4.2	100.0(4343)	—
성별	남자	20.5	19.5	35.7	17.6	6.6	100.0(2273)	t=12.684***
	여자	29.9	27.3	29.7	11.6	1.5	100.0(2070)	
교급	중학교	25.9	22.5	33.2	14.3	4.1	100.0(2121)	F=1.281
	일반/특목/자율고	24.6	23.6	32.3	15.4	4.0	100.0(1829)	—
	특성화고	21.5	24.9	33.4	14.2	6.0	100.0(393)	
지역	대도시	25.5	21.9	33.1	15.2	4.3	100.0(2067)	F=1.628
	중소도시	25.4	24.2	33.0	13.3	4.2	100.0(1628)	—
	읍면지역	22.2	24.8	31.8	17.1	4.0	100.0(648)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24.7	23.6	32.9	14.8	3.9	100.0(3983)	F=6.166**
	2한부모/조손가정	23.8	19.3	34.2	14.8	8.1	100.0(298)	1, 2)3
	3기타	45.6	17.1	21.7	13.0	2.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25.5	23.8	31.8	14.5	4.3	100.0(2825)	F=1.182
	외벌이가정(양친있음)	23.0	22.7	35.6	15.4	3.3	100.0(114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2.1	20.9	36.2	15.3	5.6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23.4	22.9	32.0	16.2	5.5	100.0(81)	
	부모님 안계심	28.9	8.6	42.1	0.0	20.4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21.6	21.5	33.7	18.1	5.1	100.0(1148)	F=11.237***
	2중(보통)	25.7	23.0	32.6	14.9	3.7	100.0(1808)	1)2, 3
	3하(못한다)	25.9	25.2	33.1	11.7	4.1	100.0(1316)	
경제적 수준	상	26.3	21.4	32.0	16.5	3.8	100.0(1578)	F=0.170
	중	23.7	24.2	34.4	13.5	4.2	100.0(1891)	—
	하	23.5	24.8	32.1	14.5	5.0	100.0(804)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7.0	19.8	35.1	13.8	4.3	100.0(296)	F=0.839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4.3	24.2	33.1	14.4	4.1	100.0(3207)	
	대학원(석박사과정)	25.5	20.4	31.9	17.2	4.9	100.0(734)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2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인식 분포도)



【그림 IV-21】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열려있거나 자유로워졌다’는 문항에선 다수(58.6%)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10.7%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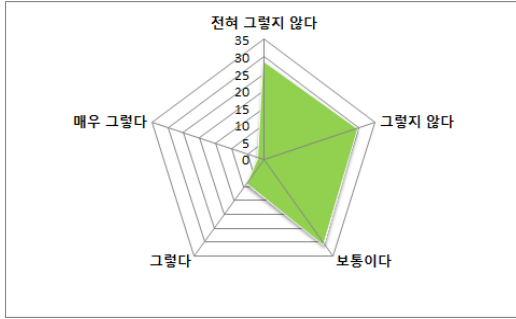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12.2%)이 여학생(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가 각각 13.3%, 13.1%로 중학교의 8.1%보다 높게 나타났다($F=31.407$, $p<.001$).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12.1%)이 중소도시(10.5%)보다 높은 수치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고 응답했다($F=3.603$, $p<.05$).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12.9%)이 중위권(10.0%), 하위권(9.5%)에 비해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F=5.123$, $p<.01$). 하지만 중위권과 하위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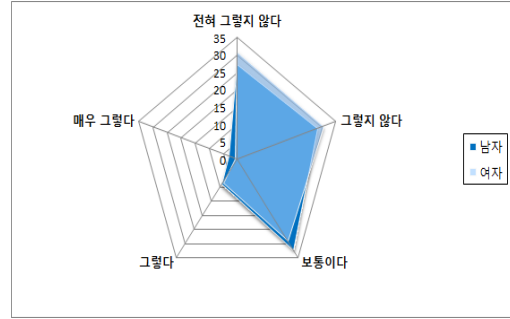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29.2	29.4	30.6	8.7	2.0	100.0(4339)	—
성별	남자	27.3	28.2	32.3	9.2	3.0	100.0(2269)	t=4.935***
	여자	31.2	30.7	28.9	8.2	0.9	100.0(2070)	
교급	1중학교	33.2	29.8	28.9	7.0	1.0	100.0(2115)	F=31.407*** 3)2)1
	2일반/특목/자율고	26.5	29.2	31.0	10.4	2.9	100.0(1829)	
	3특성화고	20.2	28.2	38.4	10.1	3.1	100.0(395)	
지역	1대도시	29.3	28.8	31.4	8.3	2.2	100.0(2061)	F=3.603* 3)2
	2중소도시	31.0	29.1	29.3	8.9	1.6	100.0(1630)	
	3읍면지역	24.3	32.1	31.5	9.6	2.4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29.4	29.6	30.5	8.6	2.0	100.0(3979)	F=1.390 —
	한부모/조손가정	25.9	29.3	32.1	10.0	2.8	100.0(298)	
	기타	34.5	19.6	32.5	11.2	2.2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29.8	27.9	31.6	8.7	2.1	100.0(2821)	F=0.683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28.1	33.7	27.7	8.5	2.0	100.0(114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6.4	30.4	31.3	9.9	2.0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26.2	34.2	33.6	6.0	0.0	100.0(81)	
	부모님 안계심	10.5	28.9	57.5	0.0	3.1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26.0	30.8	30.3	9.9	3.0	100.0(1145)	F=5.123** 1)2, 3
	2중(보통)	30.4	29.4	30.2	8.3	1.7	100.0(1805)	
	3하(못한다)	29.9	29.0	31.6	8.0	1.5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30.7	27.1	30.1	9.8	2.4	100.0(1576)	F=0.256 —
	중	27.5	32.5	30.7	7.7	1.7	100.0(1885)	
	하	29.8	28.3	31.5	8.6	1.8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8	25.6	35.9	7.1	2.6	100.0(296)	F=0.477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9.3	30.1	29.8	8.9	1.9	100.0(3201)	
	대학원(석박사과정)	28.0	29.8	31.7	8.1	2.4	100.0(735)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2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인식 분포도)



【그림 IV-2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열려있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다수(54.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12.4%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13.5%)이 여학생(11.3%)보다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15.4%)와 특성화고(13.4%)가 중학교(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24.341$,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15.4%)이 중소도시(10.7%)에 비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의 성에 대한 시각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F=5.142$, $p<.01$).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이 14.8%로 하위권(11.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F=4.41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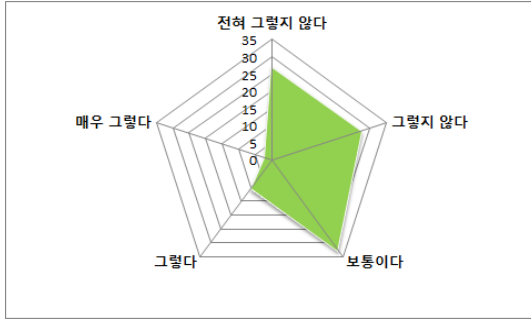
표 IV-2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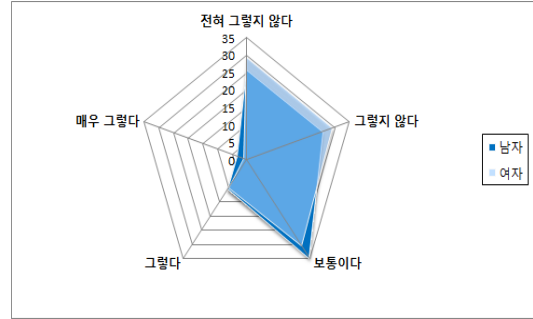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전체		27.6	27.4	32.6	10.3	2.1	100.0(4341)	—
성별	남자	25.9	25.9	34.7	10.5	3.0	100.0(2271)	t=4.462***
	여자	29.4	29.0	30.3	10.2	1.1	100.0(2070)	
교급	1중학교	31.1	27.7	31.6	8.4	1.2	100.0(2119)	F=24.341*** 2, 3>1
	2일반/특목/자율고	25.2	27.3	32.1	12.5	2.9	100.0(1826)	
	3특성화고	19.7	26.2	40.6	10.7	2.8	100.0(395)	
지역	1대도시	27.2	26.4	33.5	10.7	2.1	100.0(2063)	F=5.142** 3>2
	2중소도시	29.2	28.2	31.8	8.8	2.0	100.0(1631)	
	3읍면지역	24.5	28.3	31.8	13.0	2.4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27.8	27.4	32.5	10.3	2.0	100.0(3981)	F=1.085 —
	한부모/조손가정	23.8	28.1	35.2	9.5	3.4	100.0(298)	
	기타	32.9	20.8	29.1	15.7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8.5	26.1	32.4	11.0	2.0	100.0(2824)	F=1.651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25.6	30.6	32.6	8.9	2.3	100.0(1140)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1.8	29.7	37.3	8.6	2.6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31.9	24.7	36.2	7.3	0.0	100.0(81)	
학업 성적	부모님 안계심	10.5	34.7	15.4	33.6	5.8	100.0(13)	F=4.413* 1>3
	1상(잘한다)	24.8	29.1	31.3	11.3	3.5	100.0(1146)	
	2중(보통)	27.4	27.6	33.1	10.4	1.5	100.0(1808)	
경제적 수준	3하(못한다)	29.7	25.9	33.4	9.3	1.6	100.0(1316)	F=0.792 —
	상	28.6	25.6	31.3	11.7	2.8	100.0(1577)	
	중	26.4	29.1	34.1	8.9	1.5	100.0(1887)	
희망 교육 수준	하	27.5	27.3	32.2	11.1	1.9	100.0(807)	F=0.620 —
	고졸	28.0	22.4	37.9	8.9	2.8	100.0(296)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6.9	27.5	33.3	10.3	2.0	100.0(3204)	
	대학원(석박사과정)	29.0	29.2	27.9	11.4	2.5	100.0(735)	—

† p<.10, * p<.05, ** p<.01, *** p<.001



【그림 IV-2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25】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열리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낮게(15.3%)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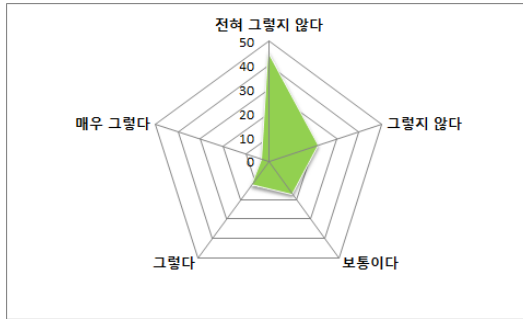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공유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에서 여학생(16.8%)이 남학생(14.0%)에 비해 공유를 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22.3%)가 일반/특목/자율고(19.2%)와 중학교(10.7%)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F=70.002,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17.1%)이 중층(13.7%)보다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2.983, p<.1$).

표 IV-2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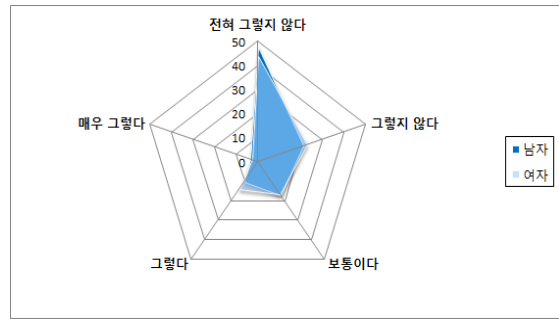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전체		45.9	21.8	16.9	12.3	3.1	100.0(4343)	—
성별	남자	47.8	21.0	17.2	10.5	3.4	100.0(2272)	t=-2.333*
	여자	43.8	22.7	16.6	14.2	2.7	100.0(2071)	
교급	1중학교	54.4	20.1	14.8	8.6	2.1	100.0(2119)	F=70.002*** 3)2)1
	2일반/특목/자율고	39.4	23.2	18.3	15.3	3.9	100.0(1828)	
	3특성화고	30.8	24.9	22.1	18.0	4.2	100.0(395)	
지역	대도시	45.8	20.9	18.3	11.9	3.1	100.0(2064)	F=0.753 —
	중소도시	46.7	22.6	15.4	12.3	2.9	100.0(1632)	
	읍면지역	44.3	22.6	16.6	13.4	3.2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5.7	22.2	17.0	12.0	3.0	100.0(3983)	F=0.685 —
	한부모/조손가정	46.7	18.0	17.0	14.1	4.3	100.0(298)	
	기타	56.6	13.5	10.2	18.2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5.3	21.3	18.0	12.0	3.4	100.0(2824)	F=1.009 —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46.6	24.4	14.5	12.2	2.3	100.0(1142)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49.8	18.0	17.0	12.3	2.9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45.7	22.4	13.4	14.6	3.9	100.0(81)	
	부모님 안계심	39.4	20.8	15.4	24.3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48.0	21.5	14.8	12.2	3.5	100.0(1146)	F=1.888 —
	중(보통)	45.3	24.1	16.2	11.4	3.0	100.0(1810)	
	하(못한다)	44.7	19.5	19.9	13.1	2.8	100.0(1317)	
경제적 수준	1상	47.2	20.7	16.1	13.0	3.1	100.0(1578)	F=2.983† 3)2
	2중	46.0	22.9	17.5	11.2	2.5	100.0(1889)	
	3하	42.8	22.5	17.6	12.8	4.3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1.4	21.6	22.2	9.5	5.2	100.0(296)	F=1.713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5.4	22.3	17.0	12.5	2.7	100.0(3206)	
	대학원(석박사과정)	48.9	21.7	13.7	11.8	4.0	100.0(73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2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인식 분포도)



【그림 IV-2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 본 적이 있다’는 65.7%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18.1%만이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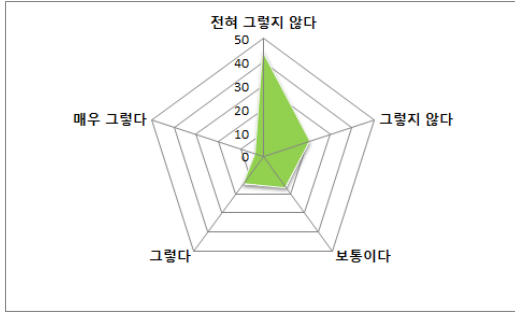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교급,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12.6%), 일반/특목/자율고(22.8%), 특성화고(25.7%)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F=65.380$, $p<.001$).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권(19.6%)이 상위권(17.8%)보다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F=4.751$, $p<.01$). 또한 희망교육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19.7%)이 대학졸업(18.3%), 대학원(16.7%)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으며($F=4.089$, $p<.05$), 대학졸업(18.3%)과 대학원(16.7%)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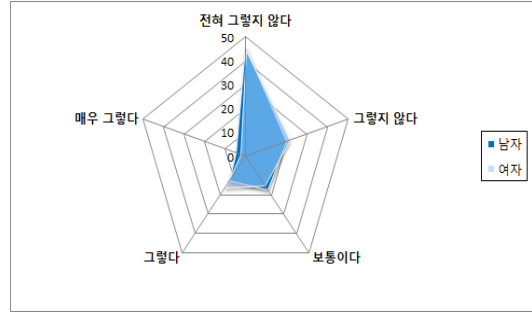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45.2	20.5	16.3	14.5	3.5	100.0(4338)	—
성별	남자	45.9	19.4	17.3	12.9	4.5	100.0(2272)	t=-0.005
	여자	44.5	21.6	15.1	16.4	2.5	100.0(2065)	
교급	1중학교	53.0	19.3	15.1	10.1	2.5	100.0(2117)	F=65.380*** 3)2)1
	2일반/특목/자율고	39.4	21.0	16.8	18.2	4.5	100.0(1828)	
	3특성화고	30.5	23.9	20.0	21.1	4.6	100.0(393)	
지역	대도시	45.9	18.7	16.6	14.9	3.8	100.0(2066)	F=0.356 —
	중소도시	45.7	21.0	15.4	14.5	3.4	100.0(1628)	
	읍면지역	41.5	24.6	17.1	13.6	3.2	100.0(644)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5.1	20.6	16.5	14.2	3.6	100.0(3977)	F=1.493 —
	한부모/조손가정	43.9	19.8	13.8	18.6	3.9	100.0(298)	
	기타	58.1	12.9	11.0	16.5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45.0	19.8	17.2	14.0	4.1	100.0(2821)	F=1.178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5.4	22.3	14.8	15.1	2.4	100.0(114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46.8	21.4	15.0	13.3	3.4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38.6	23.0	11.3	24.2	2.9	100.0(81)	
학업 성적	부모님 안계심	39.4	20.8	0.0	39.7	0.0	100.0(13)	F=4.751** 3)1
	상(잘한다)	48.9	19.5	13.8	14.2	3.6	100.0(1145)	
	중(보통)	44.2	22.3	16.4	14.0	3.1	100.0(1807)	
	하(못한다)	42.8	19.2	18.3	15.4	4.2	100.0(1315)	
경제적 수준	상	46.0	19.9	15.1	15.2	3.8	100.0(1574)	F=1.720 —
	중	45.8	20.2	17.7	13.0	3.3	100.0(1887)	
	하	41.4	23.2	15.4	16.7	3.4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35.5	25.0	19.8	14.6	5.1	100.0(296)	F=4.089* 1)2, 3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5.2	20.2	16.3	15.1	3.3	100.0(3204)	
	3대학원(석박사과정)	48.0	20.4	14.9	12.4	4.3	100.0(732)	

* $p<.05$, ** $p<.01$, *** $p<.001$



【그림 IV-2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2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76.3%)’고 답했으며 소수만이(6.9%) 자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문항에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의 긍정적인 응답(7.7%)과 비슷한 수치로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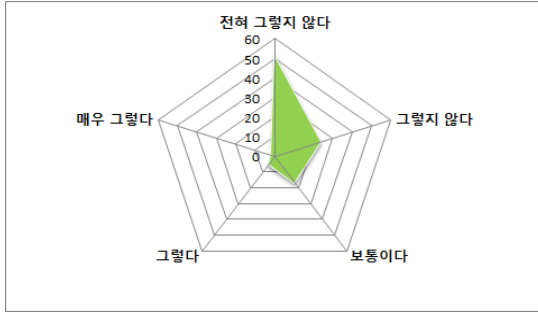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급,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12.2%)이 여학생(1.2%)에 비해 응답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9.2%)와 특성화고(7.6%)가 중학교(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23.396$,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이 9.1%로 중위권(6.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F=2.665$, $p<.1$).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8.9%)이 대학졸업(6.7%)과 대학원(7.3%)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고 응답했다($F=5.179$, $p<.01$). 하지만 대학졸업과 대학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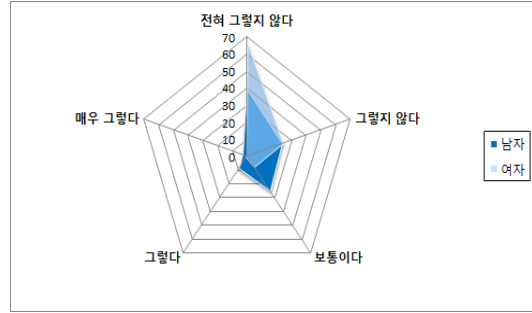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52.6	23.7	16.7	5.3	1.6	100.0(4318)	—
성별	남자	39.5	23.3	25.1	9.2	3.0	100.0(2252)	t=24.908***
	여자	67.0	24.2	7.6	1.1	0.1	100.0(2066)	
교급	1중학교	57.5	22.2	15.5	3.5	1.3	100.0(2104)	F=23.396*** 2, 3)1
	2일반/특목/자율고	49.0	24.2	17.6	7.6	1.6	100.0(1822)	
	3특성화고	43.3	29.6	19.5	4.6	3.0	100.0(392)	
지역	대도시	52.3	22.9	17.5	5.5	1.7	100.0(2053)	F=1.579
	중소도시	54.5	23.3	15.3	5.6	1.3	100.0(1623)	—
	읍면지역	49.0	27.3	17.9	4.0	1.8	100.0(642)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52.3	24.1	16.8	5.4	1.4	100.0(3961)	F=0.907
	한부모/조손가정	55.8	17.8	18.0	4.7	3.8	100.0(295)	—
	기타	59.4	25.2	8.9	4.8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53.6	22.3	17.4	4.9	1.8	100.0(2804)	F=1.450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9.5	28.3	15.1	6.4	0.7	100.0(1137)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57.2	19.5	15.3	5.0	3.0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50.0	24.7	23.2	0.9	1.2	100.0(81)	
	부모님 계심	37.5	5.7	36.3	15.4	5.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51.4	24.2	15.4	6.3	2.8	100.0(1138)	F=2.665†
	2중(보통)	53.7	23.7	16.5	4.8	1.2	100.0(1794)	1)2
	3하(못한다)	52.1	23.2	18.6	5.1	1.0	100.0(1315)	
경제적 수준	상	53.8	20.7	17.6	6.0	1.9	100.0(1569)	F=2.119
	중	52.5	25.9	15.8	4.4	1.4	100.0(1875)	—
	하	50.2	24.5	17.6	6.2	1.4	100.0(804)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47.5	19.5	24.1	5.9	3.0	100.0(294)	F=5.179**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2.9	24.6	15.8	5.3	1.4	100.0(3185)	
	3대학원(석박사과정)	53.7	21.6	17.4	5.1	2.2	100.0(733)	1)2, 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31】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76.7%)’고 답했으며 소수만이(7.3%) 성적행위를 상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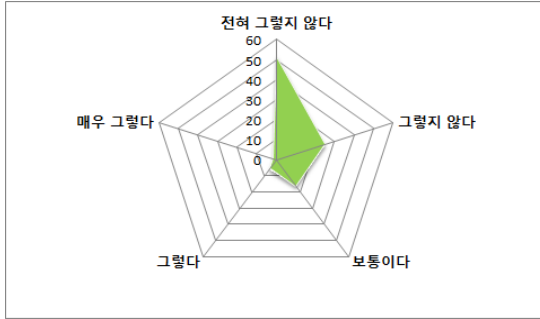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부모님 취업여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적 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에서 남학생(10.3%)이 여학생(3.9%)보다 성적 행위를 상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9.7%)와 일반/특목/자율고(8.4%)가 중학교(5.8%)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다($F=19.709,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목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취업여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20.4%)이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6.0%), 부모님 직업 없음(3.3%)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2.802, p<.05$). 하지만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과 부모님 직업 없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별로는 $p<.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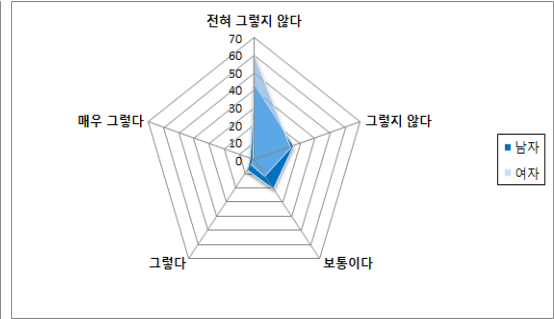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52.0	24.6	16.1	5.7	1.6	100.0(4347)	—
성별	남자	43.7	25.6	20.4	7.6	2.7	100.0(2273)	t=13.998***
	여자	61.1	23.6	11.4	3.5	0.4	100.0(2074)	
교급	1중학교	56.2	23.8	14.3	4.6	1.2	100.0(2122)	F=19.709*** 2, 3>1
	2일반/특목/자율고	48.9	25.3	17.4	6.4	2.0	100.0(1830)	
	3특성화고	43.9	26.5	19.8	7.9	1.8	100.0(395)	
지역	대도시	51.5	22.2	18.6	5.9	1.8	100.0(2067)	F=3.317* —
	중소도시	52.9	25.4	14.7	5.7	1.3	100.0(1632)	
	읍면지역	51.4	30.6	11.6	4.5	1.8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51.5	25.0	16.3	5.7	1.6	100.0(3987)	F=1.913 —
	한부모/조손가정	56.7	20.7	14.5	6.1	2.1	100.0(298)	
	기타	64.0	20.6	11.0	2.9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1맞벌이가정(양친있음)	52.2	24.0	16.6	5.4	1.8	100.0(2829)	F=2.802* 5>3, 4
	2외벌이가정(양친있음)	49.4	27.6	15.2	6.7	1.1	100.0(1142)	
	3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58.0	21.5	14.5	4.3	1.7	100.0(212)	
	4부모님 직업 없음	61.3	16.7	18.7	3.3	0.0	100.0(81)	
	5부모님 안계심	32.0	11.2	36.3	15.4	5.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51.1	24.2	15.1	7.1	2.4	100.0(1148)	F=2.219 —
	중(보통)	52.7	24.6	16.0	5.5	1.1	100.0(1810)	
	하(못한다)	51.4	25.0	17.4	4.6	1.5	100.0(1318)	
경제적 수준	상	52.1	23.6	15.9	6.3	2.2	100.0(1579)	F=1.519 —
	중	51.9	25.4	17.0	4.4	1.2	100.0(1891)	
	하	51.3	24.9	14.9	7.3	1.5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9.5	21.2	20.8	6.0	2.4	100.0(296)	F=2.684†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2.4	25.1	15.4	5.7	1.4	100.0(3210)	
	대학원(석박사과정)	50.8	23.9	17.2	5.8	2.2	100.0(735)	

† $p<.10$, * $p<.05$, ** $p<.01$, *** $p<.001$



【그림 IV-3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3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는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93.3%)’고 답했으며 소수만이(1.2%)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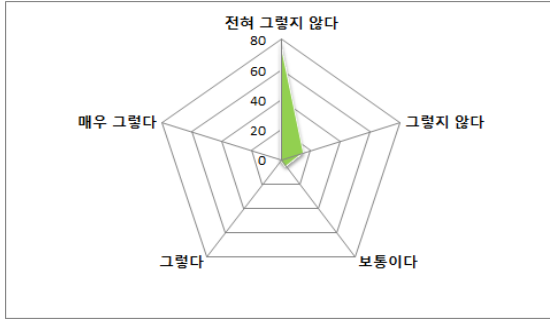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1.3%)이 여학생(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1.5%)가 중학교(1.2%)보다 높게 나타났다($F=3.695$, $p<.05$). 한편, 가족구성원별로는 $p<.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취업여부에서는 맞벌이가정(1.3%)과 부모님 직업 없음(5.2%)이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0.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2.152$, $p<.1$).

표 IV-3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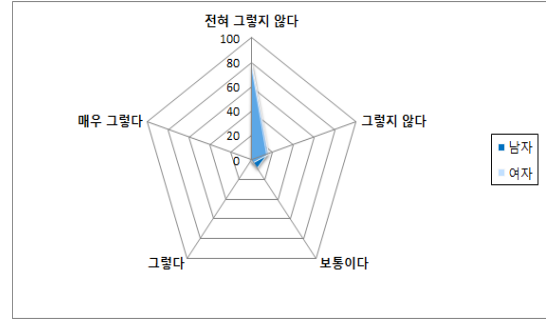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78.6	14.7	5.4	0.7	0.5	100.0(4346)	—
성별	남자	76.9	13.9	7.9	0.6	0.7	100.0(2272)	F=4.892***
	여자	80.5	15.7	2.8	0.8	0.3	100.0(2074)	
교급	1중학교	80.6	13.2	5.0	0.8	0.4	100.0(2122)	F=3.695* 2)1
	2일반/특목/자율고	77.2	15.7	5.6	0.7	0.7	100.0(1828)	
	3특성화고	74.0	18.6	7.0	0.2	0.2	100.0(395)	
지역	대도시	79.3	13.0	6.4	0.9	0.5	100.0(2067)	F=1.007 —
	중소도시	78.9	15.5	4.6	0.7	0.4	100.0(1631)	
	읍면지역	75.8	18.5	4.5	0.1	1.0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78.4	14.8	5.7	0.7	0.5	100.0(3986)	F=2.478† —
	한부모/조손가정	83.2	12.8	2.5	0.7	0.8	100.0(298)	
	기타	69.3	23.8	5.3	0.0	1.6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1맞벌이가정(양친있음)	79.0	13.6	6.1	0.6	0.6	100.0(2827)	F=2.152† 1,4)3
	2외벌이가정(양친있음)	77.1	17.4	4.4	0.7	0.3	100.0(1142)	
	3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84.8	12.3	2.6	0.0	0.2	100.0(212)	
	4부모님 직업 없음	73.1	19.1	2.6	5.2	0.0	100.0(81)	
	5부모님 안계심	73.4	20.8	5.8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78.5	15.8	4.5	0.7	0.5	100.0(1147)	F=0.814 —
	중(보통)	79.7	13.6	5.4	0.8	0.5	100.0(1810)	
	하(못한다)	77.4	15.2	6.4	0.6	0.4	100.0(1318)	
경제적 수준	상	79.1	13.4	5.7	1.0	0.7	100.0(1579)	F=0.728 —
	중	77.8	15.6	5.8	0.4	0.3	100.0(1890)	
	하	79.6	15.0	4.1	0.8	0.4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76.4	13.4	9.4	0.2	0.5	100.0(296)	F=1.784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78.9	15.1	4.8	0.8	0.4	100.0(3209)	
	대학원(석박사과정)	78.9	13.2	6.1	0.7	1.0	100.0(735)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34】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3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51.3%에 달했고 부정적인 답변은 21.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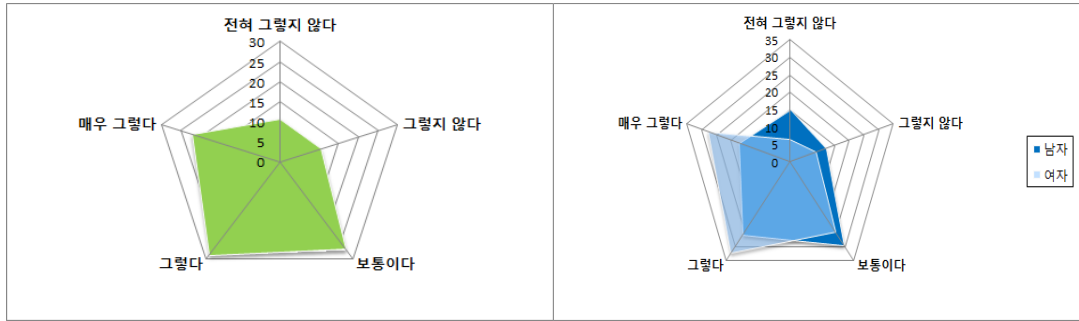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구성원과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0.1%)이 남학생(43.3%)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45.5%)와 특성화고(44.6%)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F=37.182,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55.4%)가 대도시(48.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10.313, p<.001$). 부모님 취업여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벌이가정(양친있음)(55.8%)이 맞벌이가정(4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78, p<.001$).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55.7%)이 하위권(49.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5.502, p<.01$). 또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55.4%)과 대학졸업(51.5%)이 고졸(41.4%)보다 높았으며($F=5.879, p<.01$), 대학졸업과 대학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0.9	10.5	27.3	28.9	22.4	100.0(4342)	—
성별	남자	15.1	12.1	29.5	25.8	17.5	100.0(2273)	t=-12.947***
	여자	6.3	8.8	24.9	32.3	27.8	100.0(2069)	
교급	1중학교	8.3	8.9	25.2	31.7	25.9	100.0(2119)	F=37.182*** 1)2, 3
	2일반/특목/자율고	13.1	12.2	29.2	26.7	18.8	100.0(1827)	
	3특성화고	14.7	11.1	29.6	23.9	20.7	100.0(395)	
지역	1대도시	12.8	11.1	27.6	27.3	21.2	100.0(2065)	F=10.313*** 2)1
	2중소도시	9.2	9.8	25.7	30.8	24.6	100.0(1629)	
	3읍면지역	9.3	10.3	30.6	29.1	20.7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0.8	10.5	27.1	29.5	22.1	100.0(3982)	F=0.404 —
	한부모/조손가정	11.2	10.1	31.0	21.1	26.7	100.0(298)	
	기타	17.0	10.0	22.9	29.1	21.0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1맞벌이가정(양친있음)	12.2	10.8	27.4	28.1	21.5	100.0(2827)	F=5.378*** 2)1
	2외벌이가정(양친있음)	7.7	9.4	27.0	32.6	23.2	100.0(1139)	
	3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9.3	13.0	31.9	17.1	28.7	100.0(212)	
	4부모님 직업 없음	8.7	10.3	18.6	33.6	28.7	100.0(80)	
학업 성적	5부모님 안계심	20.4	15.1	8.9	55.6	0.0	100.0(13)	F=5.502** 1)3
	1상(잘한다)	10.6	9.4	24.3	29.6	26.1	100.0(1148)	
	2중(보통)	10.2	10.4	29.3	29.2	20.9	100.0(1806)	
	3하(못한다)	11.8	11.7	27.4	28.1	21.0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10.9	11.4	24.0	30.3	23.4	100.0(1577)	F=0.453 —
	중	10.5	9.9	29.4	29.1	21.1	100.0(1888)	
	하	11.2	10.2	29.2	25.9	23.4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6.0	11.6	30.9	19.4	22.0	100.0(296)	F=5.879** 2, 3)1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0.1	10.6	27.9	29.7	21.7	100.0(3205)	
	3대학원(석박사과정)	11.1	10.1	23.4	29.5	25.9	100.0(73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6】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인식 분포도)

【그림 IV-37】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40.6%였고, 부정적인 답변은 27.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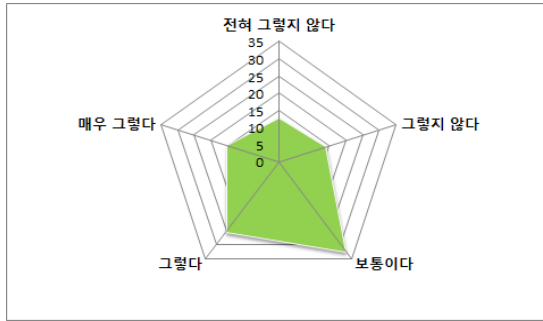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원과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48.3%)이 남학생(33.6%)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가 각각 37.8%, 37.4% 순으로 나타났다($F=18.037$,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42.9%)가 대도시(39.4%)보다 높은 수치였다($F=6.852$, $p<.01$). 또한 부모님 취업여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벌이가정(양친있음)(45.0%)이 맞벌이가정(38.9%)보다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확대와 마찬가지라고 응답했다($F=4.758$, $p<.01$).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47.0%)이 중위권(38.1%), 하위권(38.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6.692$, $p<.01$). 하지만 중위권과 하위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46.1%)과 대학졸업(40.3%)이 고졸(32.4%)보다 높게 나타났다($F=7.159$, $p<.01$). 하지만 대학원과 대학졸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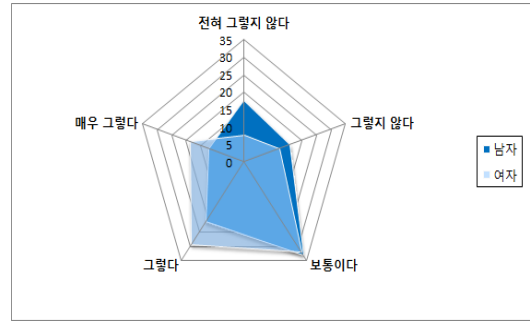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3.0	14.1	32.3	25.2	15.4	100.0(4347)	—
성별	남자	17.8	15.9	32.8	21.3	12.2	100.0(2273)	t=-12.947***
	여자	7.7	12.1	31.9	29.5	18.8	100.0(2074)	
교급	1중학교	10.8	12.8	32.8	25.5	18.1	100.0(2122)	F=18.037*** 1)2, 3
	2일반/특목/자율고	15.3	15.2	31.8	24.8	12.9	100.0(1829)	
	3특성화고	14.1	15.8	32.7	25.4	12.0	100.0(395)	
지역	1대도시	15.3	13.5	31.8	24.9	14.4	100.0(2067)	F=6.852** 2)1
	2중소도시	10.7	14.8	31.6	25.0	17.9	100.0(1632)	
	3읍면지역	11.4	14.1	35.9	26.6	12.0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2.9	14.0	32.3	25.4	15.3	100.0(3986)	F=0.756 —
	한부모/조손가정	12.4	14.9	32.7	23.3	16.7	100.0(298)	
	기타	19.2	15.0	30.7	19.8	15.3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1맞벌이가정(양친있음)	14.2	14.3	32.6	24.2	14.7	100.0(2828)	F=4.758** 2)1
	2외벌이가정(양친있음)	9.9	13.5	31.6	28.5	16.5	100.0(1142)	
	3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2.6	16.6	35.2	19.0	16.7	100.0(212)	
	4부모님 직업 없음	11.6	10.1	26.0	34.3	18.0	100.0(81)	
	5부모님 안계심	5.0	23.3	23.9	47.8	0.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12.9	12.1	28.0	29.3	17.7	100.0(1148)	F=6.692** 1)2, 3
	2중(보통)	11.6	15.6	34.8	23.0	15.1	100.0(1810)	
	3하(못한다)	14.6	13.8	33.0	25.1	13.4	100.0(1317)	
경제적 수준	상	13.3	15.1	29.5	25.2	16.9	100.0(1578)	F=0.149 —
	중	12.8	13.0	34.6	25.3	14.3	100.0(1891)	
	하	12.1	15.0	32.6	25.6	14.6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7.6	16.0	34.1	21.5	10.9	100.0(296)	F=7.159** 2, 3)1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2.3	14.1	33.3	25.1	15.1	100.0(3209)	
	3대학원(석박사과정)	13.5	13.2	27.2	28.0	18.0	100.0(73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8】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인식 분포도)



【그림 IV-39】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성별 차이)

(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시청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시청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중 '나의 부모님께서(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은 72.4%에 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은 4.2%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보수적이며 성개방풍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희망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4.6%)이 여학생(3.7%)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6.4%)와 일반/특목/자율고(4.8%)가 중학교(3.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F=40.934$,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목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교육수준에서는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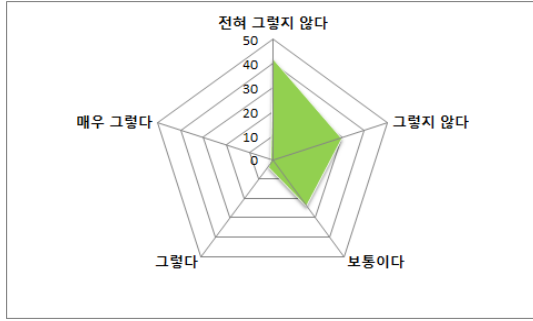
표 IV-34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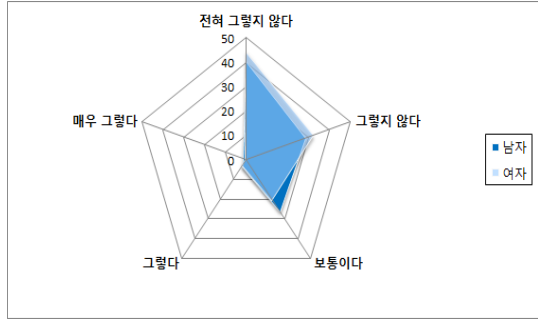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42.4	30.0	23.4	3.2	1.0	100.0(4345)	—
성별	남자	40.6	28.4	26.3	3.2	1.5	100.0(2272)	t=4.472***
	여자	44.3	31.8	20.2	3.2	0.5	100.0(2074)	
교급	1중학교	48.9	28.4	19.4	2.5	0.8	100.0(2123)	F=40.934*** 2, 3)1
	2일반/특목/자율고	36.9	31.8	26.5	3.7	1.1	100.0(1827)	
	3특성화고	32.9	30.7	30.0	4.3	2.1	100.0(395)	
지역	대도시	43.2	28.5	24.5	2.8	0.9	100.0(2067)	F=0.270 —
	중소도시	42.2	31.1	21.9	3.8	1.1	100.0(1631)	
	읍면지역	40.2	32.0	23.7	3.0	1.1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2.5	30.5	22.7	3.2	1.0	100.0(3985)	F=2.072 —
	한부모/조손가정	40.5	23.1	32.5	3.0	1.0	100.0(298)	
	기타	42.0	31.0	24.1	2.9	0.0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41.9	29.8	23.9	3.1	1.2	100.0(2827)	F=1.846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4.0	31.8	20.2	3.3	0.8	100.0(114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42.1	24.3	30.2	3.1	0.3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39.7	26.4	29.4	4.5	0.0	100.0(82)	
	부모님 안계심	16.2	45.0	38.8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43.7	27.7	22.9	4.4	1.3	100.0(1146)	F=0.355 —
	중(보통)	42.0	31.4	22.7	3.0	0.8	100.0(1810)	
	하(못한다)	41.6	30.3	24.7	2.3	1.2	100.0(1319)	
경제적 수준	상	42.5	30.5	22.4	3.4	1.2	100.0(1578)	F=1.799 —
	중	42.9	30.7	22.6	3.2	0.7	100.0(1891)	
	하	41.0	27.9	27.0	2.8	1.3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1.5	26.4	25.6	4.3	2.3	100.0(296)	F=3.015*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2.0	31.7	22.5	3.0	0.7	100.0(3209)	
	대학원(석박사과정)	44.0	24.4	26.0	3.5	2.1	100.0(734)	

* $p<.05$, ** $p<.01$, *** $p<.001$



【그림 IV-40】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41】 나의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시청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중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다수(59.1%)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10.0%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1.7%)이 여학생(8.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14.1%)와 일반/특목/자율고(11.8%)가 중학교(7.8%)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F=45.002$, $p<.001$).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13.9%)이 중위권(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3.136$, $p<.05$).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10.4%)이 중층(8.8%)보다 친한 친구가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3.92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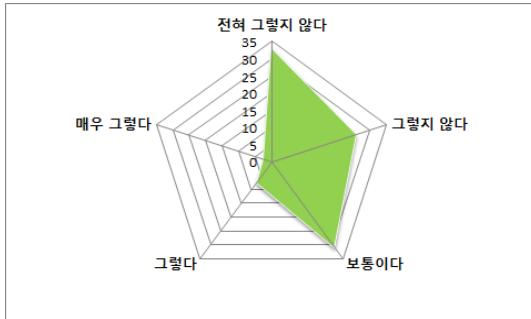
표 IV-35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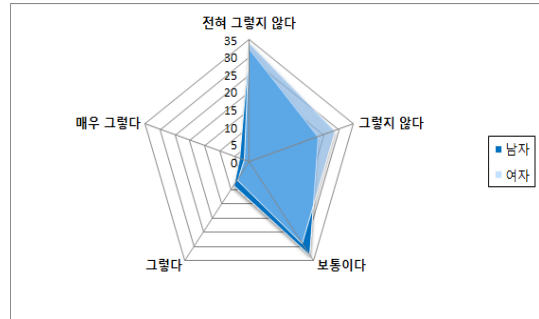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33.4	25.7	30.9	7.6	2.4	100.0(4340)	—
성별	남자	32.6	22.9	32.8	8.6	3.1	100.0(2267)	t=4.453***
	여자	34.3	28.8	28.7	6.6	1.6	100.0(2073)	
교급	1중학교	39.5	25.6	27.2	5.9	1.8	100.0(2118)	F=45.002*** 3)2)1
	2일반/특목/자율고	28.6	26.4	33.3	8.7	3.1	100.0(1826)	
	3특성화고	23.2	23.5	39.2	11.7	2.4	100.0(395)	
지역	대도시	33.7	24.9	31.6	8.1	1.7	100.0(2064)	F=0.124 —
	중소도시	32.9	26.6	30.5	7.0	2.9	100.0(1629)	
	읍면지역	33.6	25.9	29.4	7.8	3.3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3.5	26.2	30.3	7.6	2.4	100.0(3982)	F=1.278 —
	한부모/조손가정	31.8	19.1	39.4	7.9	1.9	100.0(296)	
	기타	38.1	24.7	26.6	7.4	3.2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34.0	25.2	30.3	8.0	2.6	100.0(2824)	F=0.294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32.1	27.8	31.1	6.6	2.4	100.0(114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33.5	20.4	37.9	7.3	0.9	100.0(210)	
	부모님 직업 없음	23.6	31.4	35.4	9.7	0.0	100.0(82)	
	부모님 안계심	26.0	41.0	33.0	0.0	0.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33.1	24.4	28.6	11.0	2.8	100.0(1146)	F=3.136* 1)2
	2중(보통)	33.8	26.7	31.2	6.2	2.1	100.0(1808)	
	3하(못한다)	32.6	25.9	32.5	6.5	2.4	100.0(1316)	
경제적 수준	1상	33.0	26.7	29.1	7.9	3.3	100.0(1575)	F=3.925* 3)2
	2중	35.0	25.1	31.1	7.1	1.7	100.0(1889)	
	3하	29.6	26.0	34.0	8.4	2.0	100.0(80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32.5	23.4	33.9	6.8	3.4	100.0(296)	F=1.538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3.4	26.6	30.3	7.6	2.1	100.0(3204)	
	대학원(석박사과정)	32.8	23.6	32.3	8.2	3.1	100.0(734)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42】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43】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성별 차이)

(5) 성 의식

성에 대한 의식 중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36.4%, 부정적인 응답이 30.9%로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혼전동거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모님의 취업여부, 학업성적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43.2%)이 여학생(29.0%)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26.0%)에서 나타난 수치에 비해 일반/특목/자율고(46.2%), 특성화고(47.0%)부터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508$, $p<.001$). 그러나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38.5%)가 중소도시(33.8%)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8.294$, $p<.001$). 또한 가족구성원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조손가정(44.2%)이 양부모가정(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98$, $p<.05$).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이 41.5%로 상층(36.3%)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F=3.923$, $p<.05$).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45.5%)이 대학졸업(35.7%)과 대학원(36.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F=5.480$, $p<.01$). 하지만 대학졸업과 대학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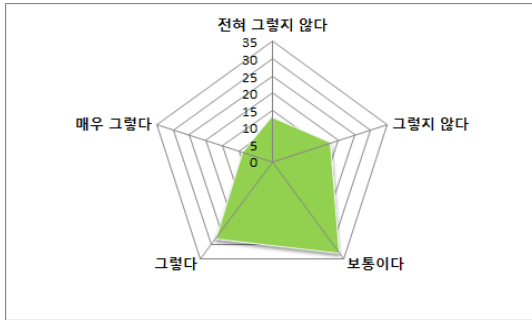
나타났다.

표 IV-36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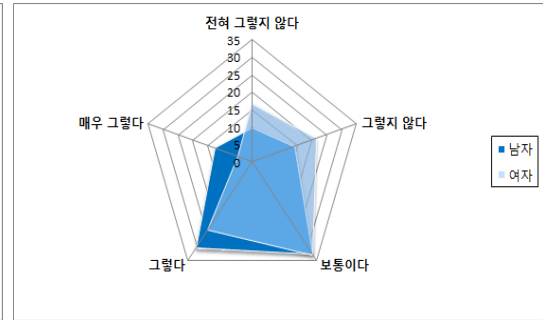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3.2	17.8	32.7	27.7	8.8	100.0(4351)	—
성별	남자	9.9	14.4	32.5	30.6	12.5	100.0(2276)	t=12.382***
	여자	16.7	21.4	32.9	24.4	4.6	100.0(2075)	
교급	1중학교	17.7	20.4	35.9	20.0	6.0	100.0(2122)	F=100.508*** 2, 3>1
	2일반/특목/자율고	8.3	15.7	29.8	34.9	11.3	100.0(1833)	
	3특성화고	11.2	13.2	28.6	35.3	11.7	100.0(395)	
지역	1대도시	11.6	17.3	32.6	29.0	9.5	100.0(2071)	F=8.294*** 1>2
	2중소도시	15.4	18.6	32.1	26.0	7.8	100.0(1632)	
	3읍면지역	12.4	17.1	34.3	27.5	8.7	100.0(648)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13.5	17.5	33.2	27.2	8.5	100.0(3990)	F=3.698* 2>1
	2한부모/조손가정	9.3	19.9	26.6	32.0	12.2	100.0(299)	
	3기타	6.8	25.6	24.8	35.1	7.7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3.9	16.6	32.6	27.9	9.0	100.0(2831)	F=0.488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2.6	19.1	33.7	26.5	8.1	100.0(1143)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0.4	22.6	29.0	27.1	10.9	100.0(212)	—
	부모님 직업 없음	9.0	22.6	31.6	33.6	3.3	100.0(82)	
	부모님 안계심	0.0	28.9	20.9	39.7	10.5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13.0	19.3	30.1	28.6	9.1	100.0(1148)	F=0.536
	중(보통)	13.4	17.3	33.9	27.6	7.8	100.0(1811)	
	하(못한다)	13.3	16.7	33.2	26.9	9.9	100.0(1322)	—
경제적 수준	1상	15.9	17.2	30.7	27.1	9.1	100.0(1582)	F=3.923* 3>1
	2중	11.8	18.0	36.0	26.2	8.0	100.0(1890)	
	3하	11.4	18.1	28.9	31.8	9.8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1.9	14.6	28.1	32.0	13.5	100.0(296)	F=5.480** 1>2, 3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2.3	18.5	33.5	27.7	8.0	100.0(3213)	
	3대학원(석박사과정)	18.2	15.3	30.2	26.3	10.0	100.0(736)	

* $p<.05$, ** $p<.01$, *** $p<.001$



【그림 IV-44】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인식 분포도)



【그림 IV-45】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전체적으로 69.7%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13.0%의 청소년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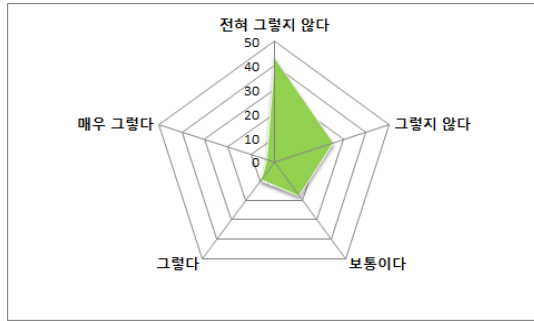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17.1%)이 여학생(8.6%)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와 특목고가 각각 19.2%, 15.9%로 중학교(7.2%)의 두 배를 상회하는 비율이었다($F=92.167$,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목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4.2%)가 중소도시(1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3.887$, $p<.05$).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15.6%)이 상층(12.9%)에 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응답했다($F=2.552$, $p<.1$).

표 IV-37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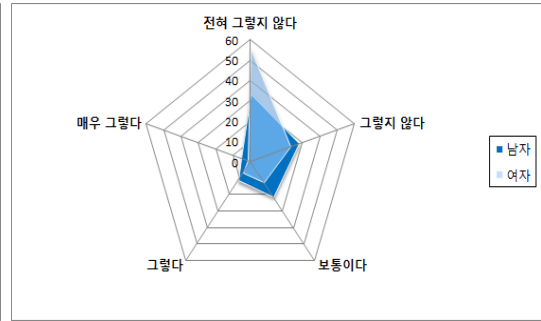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43.9	25.7	17.3	9.6	3.5	100.0(4344)	—
성별	남자	33.3	28.0	21.6	11.7	5.4	100.0(2267)	F=15.685***
	여자	55.6	23.2	12.6	7.3	1.3	100.0(2077)	
교급	1중학교	51.7	26.1	15.0	5.4	1.7	100.0(2117)	F=92.167*** 2, 3)1
	2일반/특목/자율고	36.0	25.2	19.5	14.4	4.8	100.0(1832)	
	3특성화고	38.9	25.9	19.3	9.6	6.3	100.0(395)	
지역	1대도시	42.7	24.5	18.6	10.7	3.5	100.0(2068)	F=3.887* 1)2
	2중소도시	45.5	27.2	15.1	8.6	3.6	100.0(1628)	
	3읍면지역	44.1	25.8	18.4	8.7	3.0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4.0	25.5	17.8	9.3	3.3	100.0(3983)	F=0.541 —
	한부모/조손가정	43.6	27.5	11.0	12.6	5.2	100.0(299)	
	기타	39.5	29.9	15.2	10.6	4.8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44.1	24.8	17.6	10.0	3.4	100.0(2827)	F=0.531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4.1	26.9	17.8	7.9	3.3	100.0(114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44.2	28.1	10.9	12.3	4.6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44.6	29.7	16.5	8.5	0.8	100.0(82)	
	부모님 안계심	21.1	62.4	11.5	0.0	5.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44.7	25.5	15.0	10.3	4.6	100.0(1147)	F=0.220 —
	중(보통)	43.7	26.5	17.2	9.3	3.3	100.0(1807)	
	하(못한다)	43.8	25.0	19.3	9.3	2.6	100.0(1319)	
경제적 수준	1상	46.8	23.6	16.6	9.2	3.7	100.0(1579)	F=2.552† 3)1
	2중	42.5	28.0	17.5	8.6	3.3	100.0(1887)	
	3하	41.8	24.7	17.9	12.5	3.1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1.7	26.8	16.1	8.5	6.9	100.0(295)	F=1.282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3.5	26.7	17.5	9.3	3.0	100.0(3212)	
	대학원(석박사과정)	46.9	20.8	16.8	11.3	4.1	100.0(73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46】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47】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다’가 38.7%, ‘그렇다’가 32.1%로 청소년이 혼전성관계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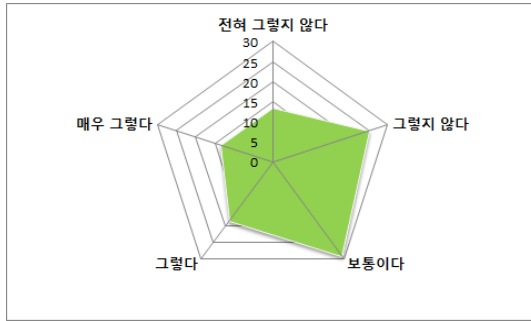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44.7%)이 여학생(32.2%)보다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응답했다($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27.2%)에 비해 일반/특목/자율고(49.6%)와 특성화고(50.5%)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응답했다($F=148.912$,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36.9%), 읍면지역(33.9%)이 대도시(41.7%)에 비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F=10.063$, $p<.001$). 하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42.8%)이 중층(35.6%)에 비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F=4.736$, $p<.01$).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41.9%)이 대학원(39.4%)보다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응답했다($F=2.562$, $p<.1$).

표 IV-3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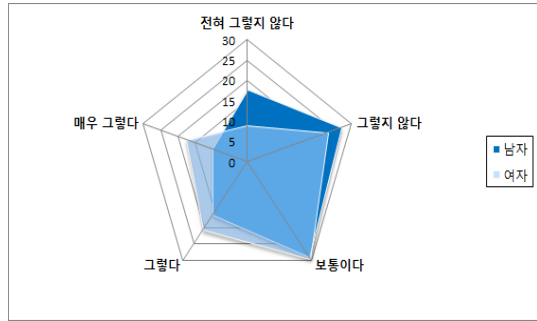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3.6	25.1	29.2	18.4	13.7	100.0(4343)	—
성별	남자	17.8	26.9	28.9	16.3	10.1	100.0(2267)	t=-11.039***
	여자	9.1	23.1	29.4	20.7	17.7	100.0(2076)	
교급	1중학교	9.0	18.1	31.1	21.8	19.9	100.0(2124)	F=148.912*** 1)2, 3
	2일반/특목/자율고	17.9	31.7	27.3	14.9	8.3	100.0(1825)	
	3특성화고	18.5	32.0	27.5	16.9	5.2	100.0(395)	
지역	1대도시	15.8	25.9	28.8	16.9	12.6	100.0(2064)	F=10.063*** 2, 3)1
	2중소도시	11.8	25.0	28.6	19.6	15.0	100.0(1631)	
	3읍면지역	11.2	22.8	31.9	20.5	13.7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3.2	25.1	29.6	18.2	13.9	100.0(3982)	F=1.587 —
	한부모/조손가정	16.9	27.0	23.4	20.7	11.9	100.0(299)	
	기타	23.2	17.1	29.1	20.0	10.5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3.9	25.4	29.7	16.9	14.0	100.0(2826)	F=1.106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2.4	23.8	28.4	22.0	13.5	100.0(114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5.1	26.7	23.1	21.3	13.8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6.6	32.3	32.7	17.2	11.3	100.0(82)	
	부모님 안계심	29.0	21.2	5.8	32.7	11.4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15.7	25.1	25.8	19.8	13.6	100.0(1143)	F=1.348 —
	중(보통)	11.6	25.0	31.4	18.5	13.6	100.0(1810)	
	하(못한다)	14.2	25.5	28.6	17.5	14.2	100.0(1319)	
경제적 수준	1상	14.8	25.2	25.5	19.3	15.1	100.0(1579)	F=4.736** 2)3
	2중	11.6	24.0	32.1	18.7	13.6	100.0(1888)	
	3하	14.9	27.9	28.7	16.8	11.7	100.0(804)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16.9	24.9	29.0	15.5	13.7	100.0(296)	F=2.562† 3)1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3.2	25.0	30.1	18.8	12.9	100.0(3205)	
	3대학원(석박사과정)	12.9	26.5	24.5	17.9	18.2	100.0(73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4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49】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의식 중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75.7%, 부정적인 응답이 1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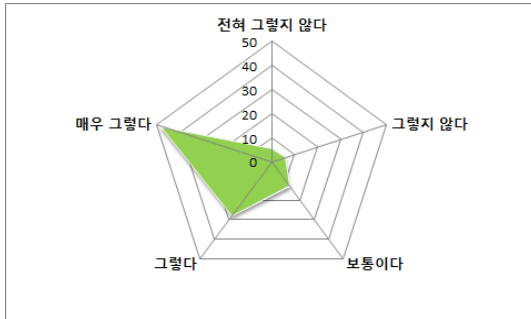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지역,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14.3%)이 여자(8.8%)보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응답했다($p<.001$).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3.5%)가 중소도시(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643$, $p<.01$).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9.7%)에서 중위권(10.9%), 하위권(14.1%) 순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결혼 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F=11.704$, $p<.001$). 하지만 상위권과 중위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14.0%), 대학원(12.3%), 대학졸업(11.2%) 순으로 결혼 후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3.498$, $p<.05$). 하지만 대학졸업과 대학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9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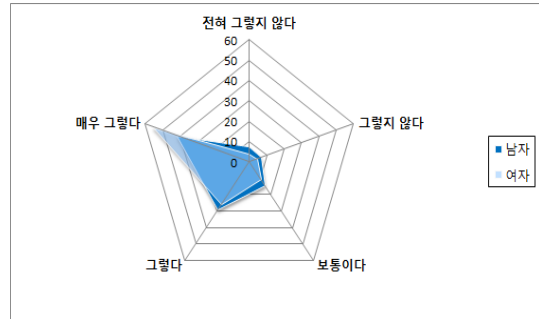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5.7	6.0	12.6	27.5	48.3	100.0(4339)	—
성별	남자	7.3	7.0	14.6	29.2	41.9	100.0(2270)	t=-9.166***
	여자	3.9	4.9	10.4	25.5	55.3	100.0(2070)	
교급	중학교	6.3	5.5	12.6	30.1	45.4	100.0(2113)	F=2.273
	일반/특목/자율고	5.5	6.2	12.2	25.1	51.0	100.0(1831)	
	특성화고	3.2	7.4	14.4	23.9	51.1	100.0(395)	
지역	1대도시	6.7	6.8	13.2	25.7	47.7	100.0(2066)	F=5.643** 2)1
	2중소도시	4.8	5.2	11.5	28.7	49.9	100.0(1627)	
	3읍면지역	4.4	5.4	13.9	30.1	46.3	100.0(64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5.5	5.8	12.9	27.6	48.1	100.0(3978)	F=0.825
	한부모/조손가정	6.3	8.6	10.7	26.8	47.7	100.0(299)	
	기타	10.5	2.4	5.2	19.5	62.3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6.0	5.7	13.2	27.4	47.7	100.0(2821)	F=1.311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5	6.1	12.1	28.3	49.0	100.0(114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7.2	8.5	10.1	29.4	44.9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3.2	9.9	8.9	21.5	56.5	100.0(81)	
학업 성적	부모님 안계심	8.1	0.0	11.5	17.6	62.9	100.0(13)	—
	1상(잘한다)	4.8	4.9	10.6	27.9	51.8	100.0(1147)	
	2중(보통)	5.0	5.9	12.8	27.9	48.4	100.0(1802)	
	3하(못한다)	7.0	7.1	14.3	27.1	44.5	100.0(1319)	
경제적 수준	상	6.3	5.5	11.7	26.9	49.7	100.0(1581)	F=0.230
	중	4.6	6.9	13.0	29.5	46.0	100.0(1882)	
	하	6.4	5.1	13.8	24.9	49.8	100.0(80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6.8	7.1	18.2	24.9	43.0	100.0(296)	F=3.498*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4	5.8	12.2	28.7	47.9	100.0(3206)	
	대학원(석박사과정)	5.8	6.6	11.7	23.8	52.2	100.0(732)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IV-50】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51】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의식 중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77.8%)’라고 응답했으며 소수만이(9.5%)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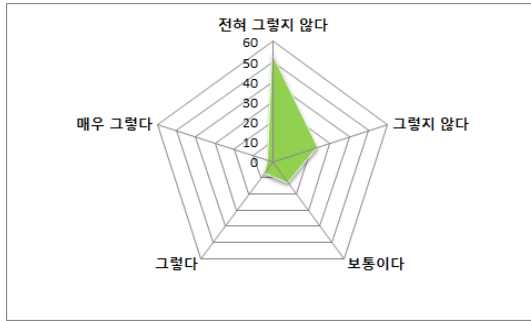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4.4%로 여학생(4.0%)의 세 배를 상회하는 비율이었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12.3%), 특성화고(12.0%)가 중학교(6.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F=53.065$, $p<.001$). 그러나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1.0%)가 중소도시(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8.089$, $p<.001$). 가족구성원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한부모/조손가정(8.9%), 기타(6.3%) 순이었다($F=3.786$, $p<.05$). 하지만 양부모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11.9%)이 대학졸업(9.1%)보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F=3.611$, $p<.05$).

표 IV-40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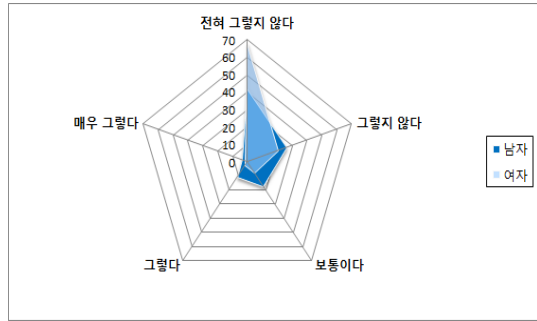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54.5	23.3	12.8	7.1	2.4	100.0(4349)	—
성별	남자	42.0	26.1	17.5	11.0	3.4	100.0(2272)	t=19.334***
	여자	68.2	20.2	7.6	2.9	1.2	100.0(2076)	
교급	1중학교	61.7	22.5	9.4	4.3	2.1	100.0(2120)	F=53.065*** 2, 3>1
	2일반/특목/자율고	47.5	24.1	16.0	9.6	2.7	100.0(1833)	
	3특성화고	48.4	23.6	16.0	10.2	1.9	100.0(395)	
지역	1대도시	52.9	21.7	14.3	8.3	2.7	100.0(2069)	F=8.089*** 1>2
	2중소도시	57.2	23.8	10.8	6.0	2.3	100.0(1632)	
	3읍면지역	52.8	27.1	12.9	5.8	1.5	100.0(648)	
가족 구성원	1양부모가정	54.3	23.3	12.9	7.1	2.5	100.0(3988)	F=3.786* 1, 2>3
	2한부모/조손가정	52.4	25.5	13.2	8.2	0.7	100.0(299)	
	3기타	77.8	12.1	3.8	2.3	4.1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53.8	23.0	13.4	7.7	2.2	100.0(2831)	F=0.694
	외벌이가정(양친있음)	55.0	24.9	11.5	5.7	2.8	100.0(114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53.2	26.2	13.4	6.9	0.4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58.7	16.5	11.1	9.2	4.5	100.0(82)	—
	부모님 안계심	63.7	20.9	0.0	15.4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56.3	23.3	10.8	7.2	2.3	100.0(1148)	F=1.372 —
	중(보통)	54.0	23.6	12.8	7.6	2.1	100.0(1808)	
	하(못한다)	52.7	23.5	14.6	6.5	2.7	100.0(1322)	
경제적 수준	상	55.6	22.4	11.7	7.2	3.1	100.0(1583)	F=0.125 —
	중	53.5	24.3	13.3	7.1	1.8	100.0(1887)	
	하	53.0	23.7	14.0	7.5	1.9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50.3	19.0	18.8	8.8	3.0	100.0(296)	F=3.611* 1>2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4.2	24.4	12.3	7.2	1.9	100.0(3211)	
	3대학원(석박사과정)	56.4	20.6	12.8	6.5	3.8	100.0(736)	

* $p<.05$, ** $p<.01$, *** $p<.001$



【그림 IV-52】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53】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4351명 중 78.9%의 청소년이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10.8%의 청소년은 돈을 받고 성을 팔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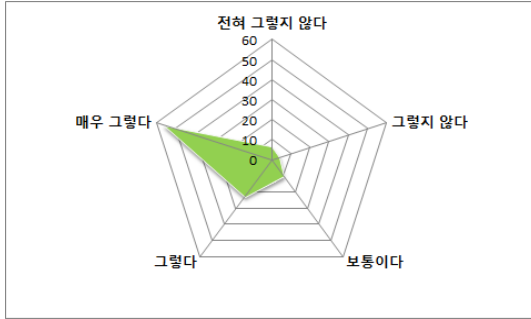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부모님 취업여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6.9%)보다 남학생(14.3%)이 높았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12.6%)와 특성화고(10.4%)가 중학교(9.3%)에 비해 돈을 받고 성을 팔아도 된다고 응답했다($F=25.477$,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2.4%)가 중소도시(9.5%)보다 돈을 받고 성을 팔아도 된다고 응답했다($F=6.734$, $p<.01$). 부모님 취업여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맞벌이가정(11.7%)이 외벌이가정(양친있음)(9.1%)보다 돈을 받고 성을 팔 수 있다고 응답했다($F=3.925$, $p<.01$).

표 IV-41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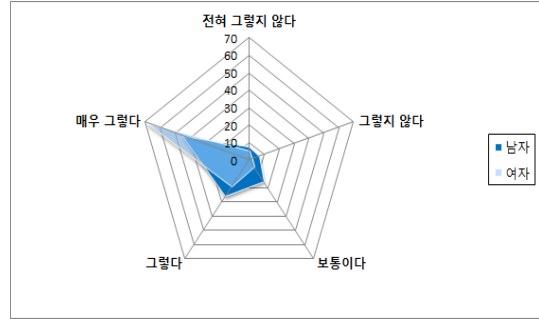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분석
전체		6.4	4.4	10.3	22.6	56.2	100.0(4351)	—
성별	남자	7.5	6.8	15.1	25.7	44.8	100.0(2276)	t=-14.846***
	여자	5.1	1.8	5.1	19.2	68.8	100.0(2075)	
교급	1중학교	7.0	2.3	6.7	21.0	63.0	100.0(2122)	F=25.477*** 1)2, 3
	2일반/특목/자율고	5.8	6.8	13.8	24.3	49.3	100.0(1833)	
	3특성화고	5.7	4.8	13.8	23.6	52.2	100.0(395)	
지역	1대도시	7.3	5.1	11.8	20.9	55.0	100.0(2073)	F=6.734** 2)1
	2중소도시	5.4	4.1	8.9	23.6	58.0	100.0(1630)	
	3읍면지역	5.8	3.2	9.3	25.7	56.0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6.3	4.4	10.3	22.7	56.2	100.0(3990)	F=0.048 —
	한부모/조손가정	5.5	5.3	11.5	23.2	54.5	100.0(299)	
	기타	13.7	0.8	5.9	12.8	66.8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1맞벌이가정(양친있음)	7.0	4.7	11.1	21.9	55.3	100.0(2831)	F=3.925** 2)1
	2외벌이가정(양친있음)	5.0	4.0	8.2	25.2	57.4	100.0(1142)	
	3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5.8	3.7	10.6	23.9	56.1	100.0(212)	
	4부모님 직업 없음	1.2	3.8	11.6	18.9	64.6	100.0(82)	
	5부모님 안계심	23.3	5.8	0.0	30.5	40.4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6.6	6.0	9.8	22.5	55.2	100.0(1149)	F=1.042 —
	중(보통)	6.3	3.7	9.9	23.9	56.2	100.0(1809)	
	하(못한다)	6.0	4.2	11.5	21.7	56.6	100.0(1322)	
경제적 수준	상	6.5	4.6	9.6	22.1	57.1	100.0(1581)	F=0.505 —
	중	6.0	4.3	10.2	23.9	55.5	100.0(1891)	
	하	6.5	4.8	11.9	21.8	55.1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0	5.4	17.5	21.8	51.3	100.0(296)	F=2.105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6.2	4.0	9.5	23.7	56.5	100.0(3213)	
	대학원(석박사과정)	7.4	5.5	11.3	19.5	56.4	100.0(736)	

* $p<.05$, ** $p<.01$, *** $p<.001$



【그림 IV-54】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 안 된다(인식 분포도)



【그림 IV-55】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 안 된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5.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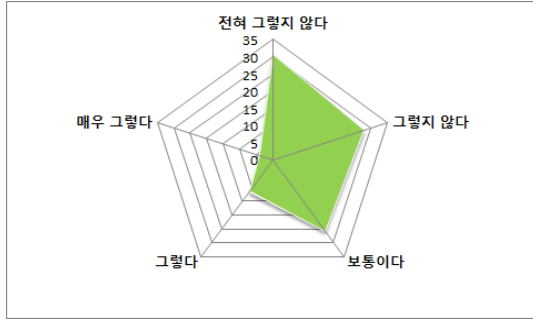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경제적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19.7%)이 여학생(10.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001$). 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21.8%), 일반/특목/자율고(19.8%)에 비해 중학교(10.5%)에서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다($F=87.796$,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15.8%)가 중소도시(1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2.751$, $p<.1$).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17.4%)이 중층(14.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5.721$, $p<.01$).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21.9%), 대학원(17.0%), 대학졸업(14.4%) 순으로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8.066$, $p<.001$). 하지만 대학원과 대학졸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음란채팅은 서로가 위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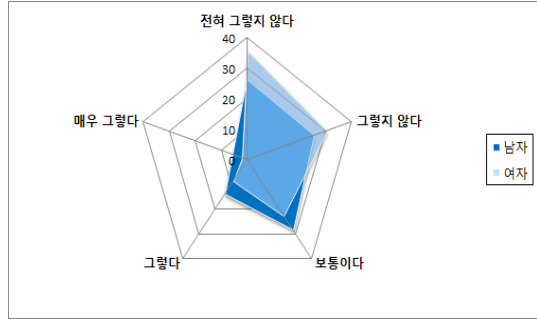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31.0	27.8	25.7	11.6	3.9	100.0(4343)	—
성별	남자	26.4	25.4	28.5	14.0	5.6	100.0(2271)	t=10.745***
	여자	35.9	30.5	22.8	8.9	2.0	100.0(2072)	
교급	1중학교	38.9	28.4	22.2	7.8	2.7	100.0(2117)	F=87.796*** 2, 3>1
	2일반/특목/자율고	24.4	27.2	28.6	14.8	5.0	100.0(1831)	
	3특성화고	18.8	27.7	31.7	16.4	5.3	100.0(395)	
지역	1대도시	30.3	26.3	27.6	11.5	4.3	100.0(2068)	F=2.751† 1>2
	2중소도시	32.8	28.4	23.9	11.2	3.6	100.0(1628)	
	3읍면지역	28.4	31.3	24.4	12.8	3.1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1.0	28.1	25.6	11.6	3.7	100.0(3982)	F=1.020 —
	한부모/조손가정	30.7	24.7	26.7	11.0	6.9	100.0(299)	
	기타	28.8	29.1	28.6	11.9	1.7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31.6	27.3	25.5	11.8	3.8	100.0(2822)	F=0.658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29.3	29.8	25.8	11.4	3.8	100.0(1143)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32.1	26.4	26.4	8.0	7.1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28.7	29.6	28.7	11.0	2.0	100.0(82)	
	부모님 안계심	55.5	23.3	5.8	15.4	0.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30.4	30.4	22.0	13.2	3.9	100.0(1146)	F=0.796 —
	중(보통)	31.7	27.5	26.7	10.5	3.7	100.0(1810)	
	하(못한다)	30.6	26.6	27.1	11.5	4.2	100.0(1316)	
경제적 수준	1상	34.2	29.2	21.0	11.2	4.4	100.0(1583)	F=5.721** 3>1
	2중	29.8	27.4	28.4	11.1	3.3	100.0(1883)	
	3하	28.1	26.9	27.6	13.3	4.1	100.0(806)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24.9	24.9	28.4	15.5	6.4	100.0(296)	F=8.066*** 1>2, 3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1.4	28.6	25.6	11.1	3.4	100.0(3208)	
	3대학원(석박사과정)	32.2	26.1	24.7	11.5	5.5	100.0(73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56】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식 분포도)



【그림 IV-57】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은 50.4%에 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은 19.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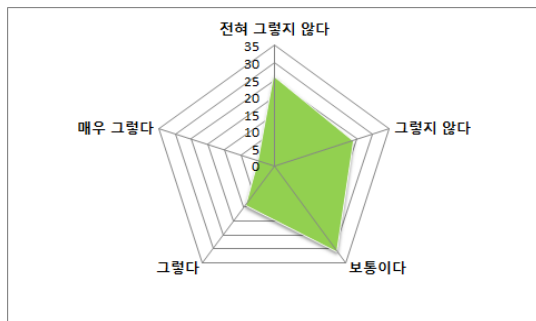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급, 지역,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23.3%), 여학생은 14.2%로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25.8%)와 특성화고(25.1%)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중학교(11.9%)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F=196.221$,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20.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17.9%)로 나타났다($F=2.835$, $p<.1$). 한편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23.1%)이 상층(19.6%), 중층(16.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응답했다($F=8.555$, $p<.001$). 하지만 상층과 중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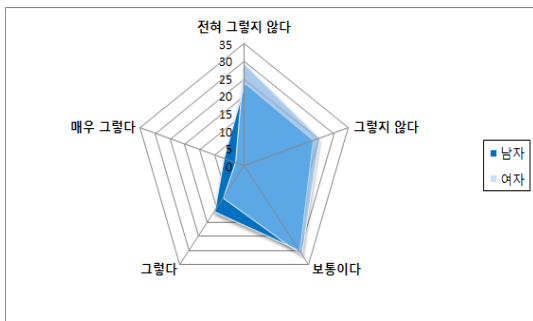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26.4	23.9	30.7	14.1	4.9	100.0(4349)	—
성별	남자	23.7	22.9	30.1	16.5	6.8	100.0(2276)	t=7.660***
	여자	29.4	25.0	31.3	11.5	2.7	100.0(2073)	
교급	1중학교	37.8	26.7	23.6	8.8	3.1	100.0(2123)	F=196.221*** 2, 3)1
	2일반/특목/자율고	15.9	22.1	36.2	19.3	6.6	100.0(1831)	
	3특성화고	14.2	17.8	42.9	18.9	6.2	100.0(395)	
지역	1대도시	25.6	23.3	30.6	15.1	5.4	100.0(2069)	F=2.835† 1)2
	2중소도시	27.7	24.7	29.7	13.5	4.5	100.0(1632)	
	3읍면지역	25.9	24.0	33.2	12.6	4.2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26.5	23.8	30.9	14.0	4.8	100.0(3989)	F=1.728 —
	한부모/조손가정	24.1	25.8	27.2	16.2	6.7	100.0(299)	
	기타	32.3	22.2	32.8	10.9	1.7	100.0(61)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26.2	23.7	31.0	13.9	5.2	100.0(2829)	F=0.663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26.5	25.1	30.2	13.9	4.3	100.0(1143)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5.5	23.9	28.9	16.1	5.6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29.6	20.6	24.4	23.4	2.0	100.0(82)	
	부모님 안계심	49.6	21.2	5.8	18.5	5.0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27.1	25.6	27.3	15.0	4.9	100.0(1149)	F=1.508 —
	중(보통)	27.1	23.2	31.8	13.2	4.7	100.0(1811)	
	하(못한다)	24.9	23.7	31.4	14.8	5.2	100.0(1319)	
경제적 수준	1상	29.1	24.2	27.1	14.1	5.5	100.0(1583)	F=8.555*** 3)1, 2
	2중	25.9	24.6	32.6	13.2	3.7	100.0(1891)	
	3하	22.4	22.3	32.2	16.8	6.3	100.0(80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7.9	20.3	29.9	15.8	6.1	100.0(296)	F=0.462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5.7	24.5	31.5	14.0	4.3	100.0(3212)	
	대학원(석박사과정)	27.9	23.0	27.6	14.4	7.1	100.0(73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58】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인식 분포도)



【그림 IV-59】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는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88.1%)’고 답했으며 소수만이(4.1%)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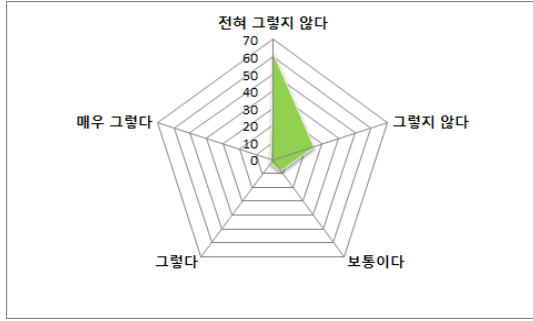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6.0%, 여학생은 2.0%로 나타났다($p<.001$). 교급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7.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특목/자율고(4.0%), 중학교(3.5%) 순이었다($F=14.552$, $p<.001$). 학업성적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권(4.2%)이 중위권(4.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2.991$, $p<.1$).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상층(4.5%), 중층(3.1%) 순으로 나타났다($F=6.956$, $p<.01$). 하지만 상층과 중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7.2%)이 대학졸업(3.7%)보다 법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고 응답했다($F=2.890$, $p<.1$).

표 IV-44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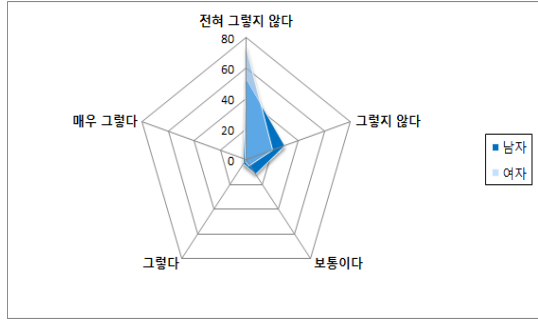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63.5	24.7	7.8	2.6	1.5	100.0(4349)	—
성별	남자	53.8	29.1	11.1	3.5	2.6	100.0(2274)	t=14.972***
	여자	74.1	19.9	4.1	1.6	0.4	100.0(2075)	
교급	1중학교	66.4	23.3	6.8	2.0	1.5	100.0(2123)	F=14.552*** 3)2)1
	2일반/특목/자율고	61.6	26.2	8.2	2.8	1.2	100.0(1831)	
	3특성화고	56.2	25.2	11.0	4.3	3.4	100.0(395)	
지역	대도시	63.4	24.6	8.0	2.4	1.5	100.0(2069)	F=0.004 —
	중소도시	64.2	24.0	7.2	2.7	1.9	100.0(1632)	
	읍면지역	61.6	26.7	8.4	2.7	0.7	100.0(64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63.2	24.8	7.8	2.6	1.5	100.0(3988)	F=0.589 —
	한부모/조손가정	68.3	19.7	8.0	2.1	1.8	100.0(299)	
	기타	57.5	38.4	1.4	2.7	0.0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63.1	24.5	8.2	2.6	1.6	100.0(2827)	F=1.524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63.9	25.8	6.7	2.1	1.5	100.0(1144)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68.8	20.3	6.9	3.0	1.0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58.3	22.1	12.3	6.1	1.2	100.0(82)	
	부모님 안계심	86.2	0.0	8.9	0.0	5.0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63.7	25.2	7.1	2.6	1.4	100.0(1147)	F=2.991† 3)2
	2중(보통)	65.3	23.7	6.9	2.6	1.5	100.0(1811)	
	3하(못한다)	61.0	25.1	9.6	2.5	1.7	100.0(1319)	
경제적 수준	1상	65.4	22.9	7.2	2.8	1.6	100.0(1582)	F=6.956** 3)1, 2
	2중	63.6	26.0	7.3	1.6	1.4	100.0(1891)	
	3하	59.7	24.2	10.1	4.2	1.8	100.0(805)	
희망 교육 수준	1고졸	60.1	24.4	8.3	4.4	2.7	100.0(295)	F=2.890† 1)2
	2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63.4	25.8	7.1	2.3	1.4	100.0(3211)	
	3대학원(석박사과정)	66.6	19.0	9.7	3.1	1.6	100.0(736)	

† $\alpha.10$, * $\alpha.05$, ** $\alpha.01$, *** $\alpha.001$



【그림 IV-60】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인식 분포도)



【그림 IV-61】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성별 차이)

성에 대한 인식 중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40.8%, 부정적인 응답이 30.6%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동성연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50.8%)이 남학생(31.7%)보다 높았다($p<.001$). 교급별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특목/자율고(48.6%)와 특성화고(44.6%)가 중학교(33.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48.093$, $p<.001$). 하지만 일반/특목/자율고와 특성화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40.7%)이 중소도시(39.3%)보다 동성연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3.572$, $p<.05$). 학업성적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권(35.6%)에서 중위권(41.3%), 상위권(46.0%) 순으로 상위권일수록 동성연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6.996$, $p<.01$). 하지만 상위권과 중위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층(46.8%), 상층(40.8%), 중층(38.1%) 순으로 나타났다($F=9.231$, $p<.001$). 그러나 상층과 중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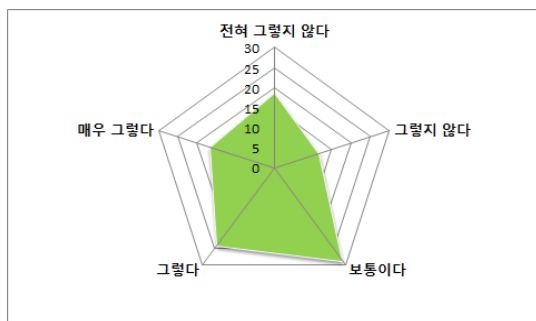
표 IV-45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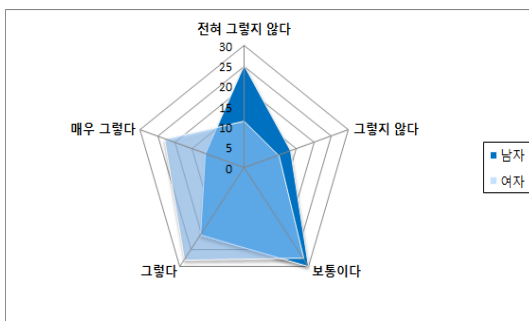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18.8	11.8	28.7	24.0	16.8	100.0(4353)	—
성별	남자	25.2	13.3	29.8	20.5	11.1	100.0(2276)	t=-15.547***
	여자	11.7	10.1	27.4	27.8	23.0	100.0(2077)	
교급	1중학교	23.3	14.0	29.4	17.8	15.5	100.0(2124)	F=48.093*** 2, 3)1
	2일반/특목/자율고	15.0	9.1	27.3	30.5	18.2	100.0(1833)	
	3특성화고	11.8	12.3	31.3	27.5	17.1	100.0(395)	
지역	1대도시	19.6	10.9	27.5	23.6	18.4	100.0(2073)	F=3.572* 3)2
	2중소도시	19.6	12.8	28.3	24.5	14.8	100.0(1632)	
	3읍면지역	14.1	11.8	33.4	24.0	16.7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8.6	12.0	28.9	24.0	16.6	100.0(3992)	F=0.198 —
	한부모/조손가정	21.8	8.6	26.1	23.8	19.7	100.0(299)	
	기타	15.8	12.8	27.4	27.0	17.0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8.0	12.0	28.1	24.9	17.0	100.0(2831)	F=0.902 —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9.5	11.8	30.8	22.3	15.6	100.0(1144)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5.3	8.0	24.3	21.9	20.4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19.6	9.4	27.3	23.7	20.1	100.0(82)	
	부모님 안계심	23.1	0.0	41.9	27.0	8.1	100.0(13)	
학업 성적	1상(잘한다)	20.0	11.5	22.5	26.6	19.4	100.0(1149)	F=6.996** 1, 2)3
	2중(보통)	16.5	12.7	29.5	24.0	17.3	100.0(1811)	
	3하(못한다)	20.9	10.7	32.8	21.7	13.8	100.0(1322)	
경제적 수준	1상	21.0	11.9	26.3	23.4	17.4	100.0(1583)	F=9.231*** 3)1, 2
	2중	18.2	12.5	31.3	23.8	14.3	100.0(1891)	
	3하	16.1	9.7	27.4	25.6	21.2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0.4	8.6	37.6	17.1	16.4	100.0(296)	F=0.807 —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8.3	12.4	28.7	24.3	16.3	100.0(3215)	
	대학원(석박사과정)	21.0	9.5	24.8	25.7	19.0	100.0(736)	

† p<.10, * p<.05, ** p<.01, *** p<.001



【그림 IV-62】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식 분포도)



【그림 IV-63】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별 차이)

4) 스마트폰 이용 형태

(1) 스마트폰 이용 여부

스마트폰 이용 여부는 전체응답자의 다수(96.4%)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구성원과 부모님 취업여부를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97.5%)이 남학생(95.3%)보다 높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급에서는 특성화고(9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96.9%), 일반/특목/자율고(95.1%) 순으로 나타났다($\chi^2=19.381$, $p<.001$). 지역별로는 중소도시(97.2%)가 대도시(95.8%), 읍면 지역(96.1%)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065$, $p<.1$). 학업성적을 보면, 상위권(94.4%)에서 중위권(96.8%), 하위권(97.5%)으로 성적이 하위권일 수록 스마트폰 이용률이 더 높았다($\chi^2=18.614$, $p<.001$). 또한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층(97.1%)이 상층(95.3%), 하층(96.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7.674$, $p<.05$). 희망교육수준에서 고졸(97.7%)과 대학졸업(97.1%)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대학원은 9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chi^2=26.985$, $p<.001$).

표 IV-46 스마트폰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체(N)	통계량
전체		96.4	3.6	100.0(4356)	—
성별	남자	95.3	4.7	100.0(2279)	t=3.829***
	여자	97.5	2.5	100.0(2077)	
교급	중학교	96.9	3.1	100.0(2124)	x ² =19.381***
	일반/특목/자율고	95.1	4.9	100.0(1836)	
	특성화고	99.3	0.7	100.0(395)	
지역	대도시	95.8	4.2	100.0(2075)	x ² =5.065†
	중소도시	97.2	2.8	100.0(1633)	
	읍면지역	96.1	3.9	100.0(64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96.3	3.7	100.0(3995)	x ² =1.613
	한부모/조손가정	97.8	2.2	100.0(299)	
	기타	96.3	3.7	100.0(62)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96.4	3.6	100.0(2834)	x ² =7.680
	외벌이가정(양친있음)	95.9	4.1	100.0(1144)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98.0	2.0	100.0(212)	
	부모님 직업 없음	95.8	4.2	100.0(82)	
	부모님 안계심	82.4	17.6	100.0(13)	
학업 성적	상(잘한다)	94.4	5.6	100.0(1149)	x ² =18.614***
	중(보통)	96.8	3.2	100.0(1812)	
	하(못한다)	97.5	2.5	100.0(1324)	
경제적 수준	상	95.3	4.7	100.0(1585)	x ² =7.674*
	중	97.1	2.9	100.0(1892)	
	하	96.6	3.4	100.0(8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97.7	2.3	100.0(296)	x ² =26.985***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97.1	2.9	100.0(3218)	
	대학원(석박사과정)	93.2	6.8	100.0(736)	

† p<.10, * p<.05, ** p<.01, *** p<.001

(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4,193명 중 23.1%가 '2시간-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22.0%)', '1시간 미만(12.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23.9%)이 여학생(22.2%)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24.0%), 중학교(22.9%), 특성화고(19.6%) 순으로 나타났다

다($\chi^2=141.537$, $p<.001$). 지역별로는 읍면지역(24.1%)이 대도시(23.7%), 중소도시(22.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24.282$, $p<.1$). 가족구성원에서 살펴보면, 기타(27.1%), 양부모가정(23.1%), 한부모/조손가정(22.5%)순으로 나타났다($\chi^2=58.548$, $p<.001$).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부모님 직업 없음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벌이가정(양친있음)(23.4%), 맞벌이가정(23.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19.6%)의 순으로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미만'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chi^2=83.919$, $p<.001$).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24.5%), 상위권(23.3%), 하위권(20.9%) 순으로 나타났다($\chi^2=171.136$, $p<.001$).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24.9%), 상층(23.0%), 중층(22.4%) 순으로 나타났고($\chi^2=81.920$, $p<.001$), 희망교육 수준별로는 고졸(17.1%), 대학졸업(23.5%), 대학원(23.4%) 순으로 나타났다($\chi^2=172.816$, $p<.001$).

표 IV-47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전체		12.3	22.0	23.1	17.2	9.3	6.4
성별	남자	15.0	26.9	23.9	15.5	7.9	5.0
	여자	9.4	16.6	22.2	19.1	10.9	7.9
교급	중학교	12.4	21.4	22.9	17.2	9.4	6.6
	일반/특목/자율고	14.1	24.7	24.0	16.7	7.9	5.3
	특성화고	3.7	12.7	19.6	19.4	15.5	10.2
지역	대도시	11.7	23.3	23.7	17.0	8.9	6.4
	중소도시	13.2	21.3	22.0	17.9	10.1	5.7
	읍면지역	12.0	19.2	24.1	16.0	8.8	8.3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12.7	22.6	23.1	17.0	9.0	6.3
	한부모/조손가정	8.4	14.5	22.5	19.4	14.5	7.1
	기타	4.2	16.9	27.1	16.1	4.5	8.6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1.8	21.9	23.2	17.3	9.4	6.5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4.9	23.9	23.4	16.3	7.9	6.1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9.6	16.4	19.6	22.2	14.2	6.8
	부모님 직업 없음	5.7	18.4	27.2	15.4	11.3	4.4
	부모님 안계심	0.0	18.3	0.0	9.8	25.6	7.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7.9	27.3	23.3	15.7	6.9	4.1
	중(보통)	11.7	22.5	24.5	16.7	8.7	6.5
	하(못한다)	8.6	17.2	20.9	19.2	12.0	8.1
경제적 수준	상	15.5	24.5	23.0	15.6	7.4	5.8
	중	12.1	22.2	22.4	18.0	9.6	6.3
	하	6.7	17.3	24.9	18.6	12.1	7.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11.1	12.7	17.7	14.3	12.0	10.3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0.3	22.3	23.5	18.9	9.5	6.1
	대학원(석박사과정)	21.5	25.3	23.4	11.5	6.8	5.9

[표 계속]

구분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전체(N)	통계량 사후검증
전체		3.5	1.6	4.6	100.0(4193)	—
성별	남자	2.1	0.7	3.0	100.0(2173)	t=-13.037***
	여자	5.0	2.6	6.3	100.0(2021)	
교급	중학교	3.6	1.9	4.7	100.0(2056)	x ² =141.537***
	일반/특목/자율고	3.2	1.1	3.0	100.0(1745)	
	특성화고	5.2	2.5	11.2	100.0(392)	
지역	대도시	3.6	1.8	3.8	100.0(1987)	x ² =24.282†
	중소도시	3.2	1.2	5.4	100.0(1587)	
	읍면지역	4.4	2.0	5.1	100.0(62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5	1.6	4.1	100.0(3842)	x ² =58.548***
	한부모/조손가정	3.2	2.6	7.9	100.0(291)	
	기타	5.7	0.0	16.9	100.0(6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3.6	1.3	5.0	100.0(2731)	x ² =83.919***
	외벌이가정(양친있음)	3.1	1.8	2.7	100.0(1097)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3	2.8	6.0	100.0(207)	
	부모님 직업 없음	7.2	5.4	5.0	100.0(78)	
	부모님 안계심	32.4	0.0	6.9	100.0(11)	
학업 성적	상(잘한다)	1.6	0.9	2.2	100.0(1083)	x ² =171.136***
	중(보통)	3.8	1.9	3.7	100.0(1754)	
	하(못한다)	4.9	1.7	7.3	100.0(1289)	
경제적 수준	상	2.6	1.2	4.4	100.0(1509)	x ² =81.920***
	중	3.9	1.5	3.9	100.0(1835)	
	하	4.6	2.6	5.7	100.0(780)	
희망 교육 수준	고졸	7.0	3.4	11.4	100.0(289)	x ² =172.816***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8	1.5	4.1	100.0(3121)	
	대학원(석박사과정)	1.3	1.3	2.9	100.0(684)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3)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4,189명 중 84.3%의 청소년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NS(81.3%), 모바일 게임(52.6%), 영상스트리밍(49.6%), 인터넷 방송(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89.2%)이 남학생(79.7%)보다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83.7%, 일반/특목/자율고는 83.7%, 특성화

고는 89.5%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도시 84.1%, 중소도시 84.1%, 읍면지역은 85.1%였으며, 가족구성원별로는 양부모가정이 84.1%, 한부모/조손가정은 84.2%, 기타 94.7%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취업여부에 따라 맞벌이가정은 84.6%,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은 82.6%,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은 84.6% 등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상위권(81.2%)에서 중위권(84.7%), 하위권(86.2%)으로 갈수록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이 83.6%, 중층이 84.6%, 하층이 8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8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졸 84.3%, 대학원은 78.9%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구분		사례 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모바일 게임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등)	포털 사이트	모바일 쇼핑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전체		4189	84.3	81.3	52.6	49.6	34.6	27.6	19.8	17.5
성별	남자	2172	79.7	77.3	67.3	45.2	50.8	29.2	10.1	14.7
	여자	2018	89.2	85.6	36.8	54.3	17.2	25.8	30.2	20.5
교급	중학교	2054	83.7	79.4	59.0	53.7	39.5	23.9	15.7	15.7
	일반/특목/자율고	1742	83.7	81.8	44.9	46.4	27.7	31.3	22.7	19.1
	특성화고	393	89.5	88.8	53.6	41.9	40.0	29.9	27.7	19.7
지역	대도시	1983	84.1	80.5	54.8	50.0	34.0	28.2	18.3	18.6
	중소도시	1587	84.1	80.5	48.8	50.3	34.1	28.4	20.3	17.4
	읍면지역	620	85.1	85.5	55.7	46.2	38.0	23.5	23.0	14.4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838	84.1	81.0	52.7	49.6	34.5	27.8	19.6	17.4
	한부모/조손가정	291	84.2	82.4	54.0	49.2	36.3	25.4	19.9	19.3
	기타	60	94.7	92.8	38.8	52.1	36.3	22.3	33.1	19.1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2727	84.6	82.0	53.7	49.1	35.3	26.4	20.4	17.5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097	82.6	78.8	51.1	50.6	33.5	30.6	17.8	17.5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07	84.6	80.8	51.8	49.2	33.9	23.6	17.2	20.3
	부모님 직업 없음	78	87.7	83.2	55.3	49.4	28.7	36.9	26.3	14.2
	부모님 안계심	11	100.0	93.3	63.8	45.4	56.6	13.8	36.2	13.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083	81.2	77.8	53.2	50.1	31.2	35.1	16.1	18.5
	중(보통)	1755	84.7	81.3	53.2	48.5	35.0	26.0	19.8	17.7
	하(못한다)	1285	86.2	83.9	52.4	50.2	37.2	23.2	22.5	16.5
경제적 수준	상	1506	83.6	81.0	53.4	50.0	34.4	29.0	19.6	18.7
	중	1836	84.6	81.3	51.4	48.6	34.5	25.4	19.1	16.6
	하	778	84.4	81.2	56.0	50.4	35.8	29.8	21.0	17.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9	84.3	77.2	53.8	42.9	42.7	22.8	18.6	13.3
	대학졸업 (2,3년제 및 4년제)	3117	85.4	82.9	54.1	50.3	34.7	26.2	20.0	17.3
	대학원(석박사과정)	684	78.9	74.7	47.2	49.6	30.6	36.1	18.5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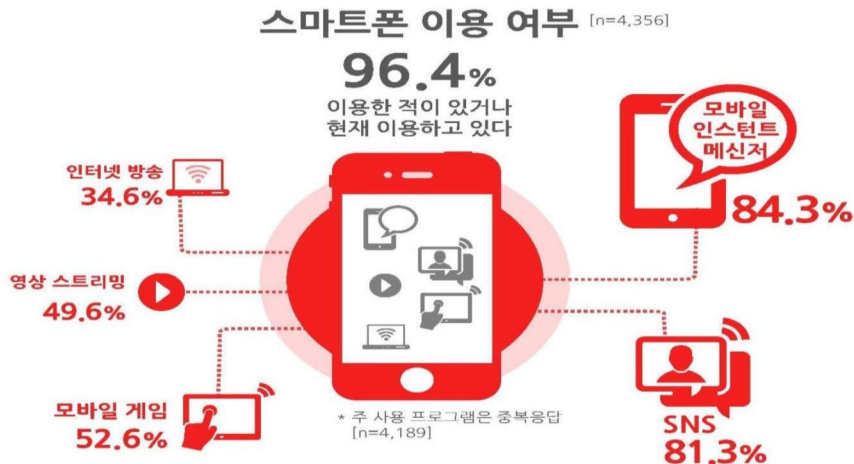
[표 계속]

구분		웹하드 (파일노리 등)	블로그 미니홈피	랜덤 채팅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이메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화상 채팅	기타
전체		15.5	15.0	14.2	12.6	11.7	9.8	7.4	6.1
교급	중학교	6.3	16.8	14.3	7.4	12.3	11.7	10.5	5.7
	일반/특목/자율고	23.9	13.3	13.0	17.5	10.8	7.1	3.2	6.1
	특성화고	27.0	13.4	19.5	18.5	12.1	11.9	10.2	8.0
	대도시	17.0	15.3	16.2	13.3	11.7	8.8	7.6	5.5
지역	중소도시	15.0	15.4	13.4	12.3	11.7	11.0	7.2	6.1
	읍면지역	12.2	13.4	10.1	11.4	11.4	9.8	7.3	7.9
성별	남자	25.4	14.0	11.8	18.6	10.3	7.9	10.4	5.6
	여자	4.9	16.2	16.9	6.2	13.1	11.8	4.2	6.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5.5	15.2	14.0	12.5	11.4	9.5	7.4	6.1
	한부모/조손가정	17.4	14.3	16.4	14.5	13.5	12.7	8.2	6.2
	기타	7.1	10.5	22.5	12.7	17.5	16.6	7.1	3.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5.6	16.0	14.5	12.2	11.4	10.0	7.6	5.8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5.1	13.6	13.2	13.8	12.2	9.2	6.8	6.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2.5	14.1	12.4	13.9	12.0	10.7	7.7	6.6
	부모님 직업 없음	24.9	9.5	13.9	8.5	9.7	4.9	8.6	13.3
	부모님 안계심	50.5	13.0	46.8	6.1	6.9	6.8	13.8	7.4
학업 성적	상(잘한다)	17.1	15.4	13.9	11.9	11.9	6.8	6.7	6.2
	중(보통)	14.8	15.1	13.2	13.2	11.5	8.9	6.9	6.1
	하(못한다)	15.4	15.0	15.6	12.4	11.4	13.3	8.8	6.1
경제적 수준	상	14.6	16.1	15.2	12.6	11.9	11.6	8.4	5.0
	중	14.6	13.7	12.5	11.4	10.5	8.2	6.6	6.1
	하	19.9	16.6	15.8	15.3	13.4	9.6	7.8	8.3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1.8	10.5	17.5	14.0	9.0	11.5	13.1	5.9
	대학졸업 (2,3년제 및 4년제)	14.8	15.2	14.3	12.2	10.8	9.9	6.9	5.5
	대학원(석박사과정)	16.9	16.4	12.3	13.8	15.3	8.1	7.7	9.6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기타)에 대해서 전체 226명 중 27.5%의 청소년이 ‘웹툰’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음악’(18.6%), ‘인터넷 소설/E-Book/잡지’(10.7%), ‘인터넷 강의/학습’(9.7%), ‘인터넷 뉴스/기사’(7.2%), ‘성인 콘텐츠 사이트’(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226	100.0
웹툰	62	27.5
음악	42	18.6
인터넷 소설/E-Book/잡지	24	10.7
인터넷 강의/학습	22	9.7
인터넷 뉴스/기사	16	7.2
성인 콘텐츠 사이트	16	7.0
전화	11	5.1
문자	10	4.3
인터넷 사이트	9	3.9
광고	7	3.3



[그림 IV-6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프로그램

(4)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음란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에 대해 SNS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37.1%), 남학생(35.5%) 순으로, 가족구성원별로는 기타(53.3%), 한부모/조손가정(42.5%), 양부모가정(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특성화고(53.6%), 일반/특목/자율고(40.5%), 중학교(29.3%) 순으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37.4%), 대도시(36.5%), 중소도시(35.3%) 순으로,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부모님 안 계심(54.7%),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40.5%), 맞벌이가정(양친있음)(37.1%), 부모님 직업 없음(35.1%), 외벌이가정

(양친있음)(32.3%) 순으로, 학업 성적별로는 하위권(39.4%), 중위권(35.1%), 상위권(33.7%) 순으로, 경제적수준별로는 상층(34.4%), 중층(34.8%), 하층(42.2%) 순으로 하위계층일수록 SNS를 통해 성인물 및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38.0%), 대학졸업(37.1%), 대학원(3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 음란물 주로 접촉하는 경로

구분		사례 수	이용한 적 없음	SNS	포털 사이트	웹하드 (파일노리 등)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등)
전체		4165	42.9	36.3	13.5	12.8	11.9	9.1	7.3	5.0
성별	남자	2154	34.9	35.5	18.7	22.1	10.5	10.7	12.2	7.4
	여자	2011	51.6	37.1	7.9	2.8	13.5	7.3	2.0	2.4
교급	중학교	2035	53.2	29.3	12.0	3.9	12.3	8.8	2.9	5.1
	일반/특목/자율고	1739	34.8	40.5	15.0	20.8	11.8	9.3	11.5	4.6
	특성화고	391	25.8	53.6	14.2	23.3	10.4	9.4	11.1	6.3
지역	대도시	1969	39.7	36.5	13.7	14.0	12.5	9.9	8.0	5.1
	중소도시	1575	46.5	35.5	13.7	12.4	11.9	9.3	6.8	4.9
	읍면지역	621	44.3	37.4	12.1	10.1	10.3	5.8	6.3	5.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813	43.6	35.5	13.7	12.7	11.8	8.9	7.3	5.0
	한부모/조손가정	292	36.1	42.5	12.6	15.0	13.4	11.3	8.4	5.1
	기타	60	36.2	53.3	4.4	5.5	14.1	10.2	2.8	5.5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708	42.3	37.1	13.1	13.0	11.4	9.1	6.7	5.2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090	46.3	32.3	15.0	12.0	13.1	8.0	8.7	4.5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08	41.0	40.5	12.2	10.5	13.8	12.1	9.1	4.8
	부모님 직업 없음	78	34.3	35.1	12.9	21.8	7.7	13.2	5.0	4.8
	부모님안계심	11	13.5	54.7	6.9	44.5	6.9	6.1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079	43.1	33.7	15.6	13.3	12.2	8.3	8.0	5.7
	중(보통)	1736	44.9	35.1	12.6	12.8	12.2	7.8	7.4	4.4
	하(못한다)	1283	40.6	39.4	13.0	12.4	11.2	11.3	6.5	5.1
경제적 수준	상	1500	44.9	34.4	14.8	11.4	12.2	9.7	7.8	6.3
	중	1824	44.4	34.8	13.0	12.3	11.3	8.2	6.0	4.0
	하	773	36.3	42.2	12.1	16.9	12.6	9.6	9.2	4.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9	34.8	38.0	14.0	16.4	12.8	10.6	7.1	4.0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093	43.3	37.1	12.5	12.3	12.2	8.9	7.1	5.1
	대학원(석박사과정)	684	44.7	31.5	18.0	13.7	10.6	8.8	8.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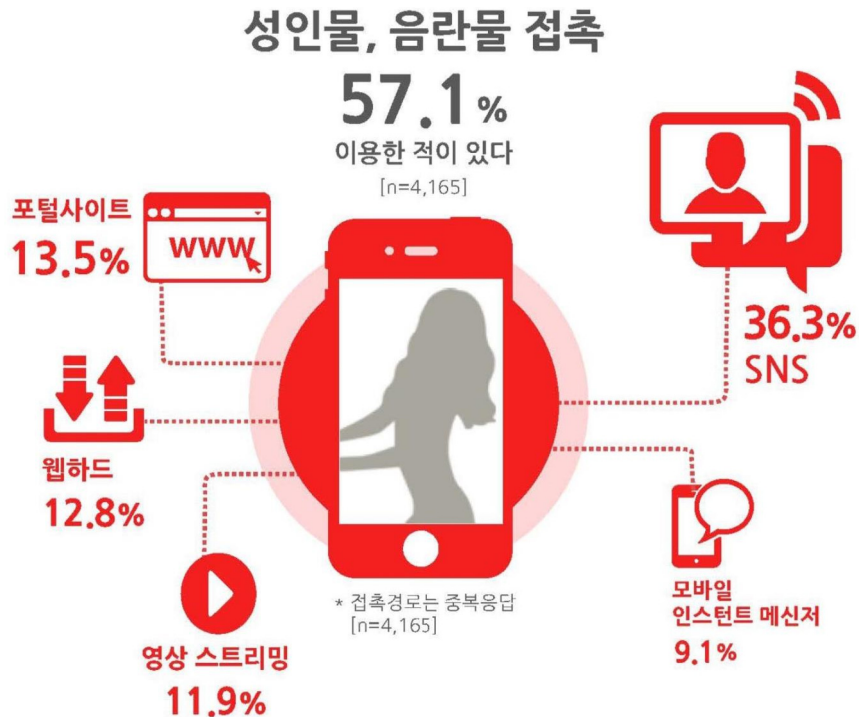
[표 계속]

구분		블로그, 미니 홈피	랜덤 채팅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화상 채팅	이메일	모바일 게임	기타	모바일 쇼핑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체		3.9	3.5	3.3	1.6	1.3	1.1	0.9	0.4	0.4
성별	남자	5.3	3.1	3.7	2.1	1.4	1.6	0.9	0.7	0.8
	여자	2.5	3.9	2.8	1.0	1.1	0.6	0.9	0.2	0.0
교급	중학교	4.2	3.4	2.7	2.2	1.1	1.3	0.9	0.3	0.6
	일반/특목/자율고	3.8	3.2	3.8	0.8	1.4	1.0	1.0	0.3	0.3
	특성화고	3.1	4.6	4.1	1.7	1.6	0.9	0.7	1.6	0.2
지역	대도시	4.0	4.2	3.4	1.8	1.3	1.4	1.0	0.6	0.6
	중소도시	4.2	3.1	3.3	1.6	1.1	1.2	0.5	0.4	0.3
	읍면지역	3.3	2.1	3.0	0.7	1.4	0.3	1.7	0.1	0.4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0	3.3	3.2	1.5	1.3	1.1	0.9	0.4	0.4
	한부모/조손가정	3.8	5.4	5.1	2.6	0.9	1.1	0.5	0.7	0.6
	기타	2.9	7.2	1.3	4.2	1.3	0.0	0.7	0.0	1.3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0	3.2	2.8	1.5	1.3	1.1	0.7	0.6	0.4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4.1	3.8	4.2	1.5	1.1	1.1	1.3	0.3	0.4
학업 성적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4.2	4.2	5.6	1.7	1.3	0.4	0.2	0.0	0.0
	부모님 직업 없음	1.5	2.7	2.6	4.3	2.1	4.3	2.6	0.0	2.1
	부모님 안계심	0.0	0.0	0.0	0.0	0.0	0.0	3.7	0.0	0.0
경제적 수준	상(잘한다)	5.5	4.3	4.8	1.8	1.1	1.6	1.2	0.6	0.7
	중(보통)	3.8	2.7	3.1	1.5	1.6	1.3	0.8	0.6	0.4
	하(못한다)	2.9	3.6	2.4	1.3	1.0	0.6	0.8	0.1	0.3
희망 교육 수준	상	4.5	2.9	4.2	1.9	1.3	1.5	0.9	0.5	0.4
	중	3.3	2.9	2.4	1.2	0.7	0.8	0.7	0.3	0.4
	하	4.4	5.5	3.9	1.8	2.4	1.2	1.5	0.8	0.4
교육 수준	고졸	1.5	3.9	3.1	2.4	1.6	0.6	1.4	0.4	0.2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9	3.3	3.2	1.4	1.1	1.1	0.9	0.4	0.4
대학원(석박사과정)		5.2	4.1	3.8	2.0	1.8	1.6	0.8	0.8	0.8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 음란물 접촉 경로(기타)에 대해서 전체 37명 중 35.0%의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 사이트'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광고'(20.1%), '인터넷 뉴스/기사'(13.3%), '인터넷 사이트'(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51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물, 음란물 접촉 경로(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37	100.0
성인 콘텐츠 사이트	13	35.0
광고	7	20.1
인터넷 뉴스/기사	5	13.3
인터넷 사이트	3	8.3
DMB	2	4.7



【그림 IV-65】 청소년의 성인물·음란물 접촉경로

(5)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여부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없다(98.0%)’고 답했으며 소수만이 ‘있다(2.0%)’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 행위 촬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촬영 경험이 있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가족구성원에서 살펴보면, 기타(10.2%), 한부모/조손가정(2.5%), 양부모가정(1.8%) 순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20.675$, $p<.001$). 또한 희망교육수준에서 고졸(3.7%)이 대학졸업(1.6%), 대학원(2.2%)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7.199$, $p<.05$).

표 IV-52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통계량
전체		2.0	98.0	100.0(4197)	—
성별	남자	2.0	98.0	100.0(2173)	$t=-0.174$
	여자	2.0	98.0	100.0(2025)	
교급	중학교	1.7	98.3	100.0(2058)	$\chi^2=4.094$
	일반/특목/자율고	2.0	98.0	100.0(1746)	
	특성화고	3.3	96.7	100.0(393)	
지역	대도시	2.1	97.9	100.0(1988)	$\chi^2=0.299$
	중소도시	1.8	98.2	100.0(1587)	
	읍면지역	2.1	97.9	100.0(623)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1.8	98.2	100.0(3845)	$\chi^2=20.675^{***}$
	한부모/조손가정	2.5	97.5	100.0(292)	
	기타	10.2	89.8	100.0(60)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1	97.9	100.0(2734)	$\chi^2=3.880$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3	98.7	100.0(1097)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1.9	98.1	100.0(208)	
	부모님 직업 없음	3.4	96.6	100.0(78)	
	부모님 안계심	0.0	100.0	100.0(11)	
학업성적	상(잘한다)	1.2	98.8	100.0(1085)	$\chi^2=4.455$
	중(보통)	1.9	98.1	100.0(1755)	
	하(못한다)	2.5	97.5	100.0(1290)	
경제적 수준	상	2.3	97.7	100.0(1512)	$\chi^2=4.058$
	중	1.4	98.6	100.0(1837)	
	하	2.1	97.9	100.0(780)	
희망교육수준	고졸	3.7	96.3	100.0(289)	$\chi^2=7.199^*$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6	98.4	100.0(3123)	
	대학원(석박사과정)	2.2	97.8	100.0(686)	

* $p<.05$, ** $p<.01$, *** $p<.001$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의 촬영 횟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81명 중 50.1%의 청소년이 '1-2번'이라고 응답한 반면, 14.5%의 청소년은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22.0%)이 여학생(6.4%)보다 높게 '11번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p<.05$).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7.2%)가 대도시(10.5%), 읍면지역(0.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21.006$, $p<.01$). 가족구성원별로는 양부모가정(1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chi^2=38.377$, $p<.001$), 부모님 취업여부에서는 외벌이가정(양친있음)이 18.6%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촬영한 경험이 더 많았다($\chi^2=41.686$, $p<.001$). 경제적 수준은 상층(4.8%)과 중층(14.7%)에 비해 하층(40.6%)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chi^2=15.337$, $p<.1$), '11번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촬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IV-53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횟수

(단위: %(명))

구분		1-2번	3-4번	5-6번	7-8번	11번 이상	전체(N)	통계량
성별	전체	50.1	26.1	6.8	2.5	14.5	100.0(81)	t=2.340*
	남자	40.3	25.6	10.5	1.6	22.0	100.0(42)	
	여자	60.6	26.5	2.9	3.5	6.4	100.0(39)	
교급	중학교	49.8	28.0	8.8	1.7	11.7	100.0(36)	$\chi^2=4.661$
	일반/특목/자율고	49.4	23.8	7.4	0.0	19.4	100.0(32)	
	특성화고	53.1	26.4	0.0	10.8	9.8	100.0(13)	
지역	대도시	69.1	9.4	7.6	3.4	10.5	100.0(40)	$\chi^2=21.006^{**}$
	중소도시	25.4	38.7	6.3	2.4	27.2	100.0(27)	
	읍면지역	43.6	50.9	5.5	0.0	0.0	100.0(13)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7.8	29.7	2.1	3.0	17.4	100.0(67)	$\chi^2=38.377^{***}$
	한부모/조손가정	44.0	0.0	56.0	0.0	0.0	100.0(7)	
	기타	83.1	16.9	0.0	0.0	0.0	100.0(6)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41.1	37.3	2.6	2.6	16.5	100.0(54)	$\chi^2=41.686^{***}$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72.2	5.1	0.0	4.1	18.6	100.0(15)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8.8	0.0	61.2	0.0	0.0	100.0(4)	
	부모님 직업 없음	36.4	0.0	63.6	0.0	0.0	100.0(3)	
학업 성적	상(잘한다)	61.0	22.3	0.0	4.9	11.8	100.0(12)	$\chi^2=10.025$
	중(보통)	35.9	29.3	5.1	4.3	25.3	100.0(33)	
	하(못한다)	52.7	28.4	12.5	0.0	6.4	100.0(31)	
경제적 수준	상	52.8	38.4	2.2	1.8	4.8	100.0(33)	$\chi^2=15.337^{\dagger}$
	중	49.3	25.2	10.9	0.0	14.7	100.0(26)	
	하	26.6	11.1	12.7	9.1	40.6	100.0(16)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9.4	51.5	6.8	6.2	6.1	100.0(11)	$\chi^2=7.364$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2.4	22.6	4.4	2.8	17.8	100.0(49)	
	대학원(석박사과정)	47.2	24.7	11.6	0.0	16.5	100.0(15)	

† $p<.10$, * $p<.05$, ** $p<.01$, *** $p<.001$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공유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78명 중 55.4%의 청소년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성적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공유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48.4%의 청소년이 'SNS'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5.5%, 여학생의 55.3%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했고, 교급별로는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각각 61.6%, 48.8%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는 'SNS(75.4%)'를 통해 성적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중에는 한부모/조손가정(71.4%)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58.4%), 양부모가정(53.6%) 순이었다. 부모님 취업여부에서 역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사진

및 동영상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상(잘한다)(58.4%), 중(보통)(59.2%) 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한 반면, 하(못한다)(53.5%)는 ‘SNS’라고 응답했다. 또한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층(57.6%), 하층(70.8%)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한 반면에 상층의 58.2%는 ‘SNS’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의 72.6%가 ‘SNS’라고 응답했으며 대학졸업(2, 3년제 및 4년제), 대학원(석박사과정)의 각각 58.4%, 69.3%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했다.

표 IV-54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공유 경로

구분		사례 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	랜덤 채팅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화상 채팅	없음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전체		78	55.4	48.4	11.8	10.1	9.9	9.5	9.4	9.1
성별	남자	41	55.5	55.0	22.6	9.3	19.1	13.7	2.4	17.4
	여자	37	55.3	41.3	0.0	11.0	0.0	4.9	16.9	0.0
교급	중학교	35	61.6	54.9	19.4	13.2	16.7	12.8	3.9	12.1
	일반/특목/자율고	32	48.8	32.4	7.6	10.2	6.1	7.1	18.4	9.0
	특성화고	11	55.8	75.4	0.0	0.0	0.0	6.0	0.0	0.0
지역	대도시	38	52.5	34.2	10.2	14.8	0.0	10.5	15.8	2.6
	중소도시	29	70.3	63.8	14.4	1.6	26.8	5.5	4.6	17.1
	읍면지역	11	26.9	57.1	10.1	16.3	0.0	16.3	0.0	10.1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66	53.6	51.3	11.4	12.0	11.8	8.7	5.7	10.8
	한부모/조손가정	6	71.4	49.2	26.3	0.0	0.0	26.3	17.0	0.0
	기타	6	58.4	16.9	0.0	0.0	0.0	0.0	41.6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54	51.1	51.7	13.8	12.7	14.3	10.5	7.1	9.8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3	64.8	50.5	0.0	7.6	0.0	0.0	4.6	13.6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	63.8	48.5	0.0	0.0	0.0	0.0	11.7	0.0
	부모님 직업 없음	3	100.0	63.6	63.6	0.0	0.0	63.6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1	58.4	36.4	4.2	33.6	4.2	13.1	14.3	4.2
	중(보통)	32	59.2	55.5	19.5	0.0	17.3	8.7	6.7	14.0
	하(못한다)	30	51.2	53.5	8.3	13.9	5.8	10.6	3.6	7.2
경제적 수준	상	33	46.4	58.2	6.1	8.5	4.8	8.5	8.1	3.4
	중	24	57.6	43.9	14.4	21.0	6.0	16.3	3.1	9.3
	하	15	70.8	53.9	24.8	0.0	31.4	4.4	9.4	24.8
희망 교육 수준	고졸	9	27.3	72.6	0.0	0.0	7.7	7.0	0.0	0.0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48	58.4	50.7	14.7	13.5	11.7	9.6	5.8	11.8
	대학원(석박사과정)	15	69.3	45.5	14.4	9.8	3.1	14.4	13.7	9.8

[표 계속]

구분		웹하드 (파일노리 등)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등)	이메일	포털 사이트	기타	모바일 인터넷 전화	모바일 쇼핑
전체		9.1	7.9	7.6	6.9	3.3	2.9	2.3	2.1	1.7
성별	남자	17.4	15.2	14.6	12.4	6.4	1.2	0.0	3.9	3.3
	여자	0.0	0.0	0.0	0.9	0.0	4.9	4.9	0.0	0.0
교급	중학교	12.1	14.6	17.1	14.6	1.4	6.6	5.2	1.4	3.9
	일반/특목/자율고	9.0	3.5	0.0	1.1	6.5	0.0	0.0	3.5	0.0
	특성화고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대도시	2.6	5.3	2.3	2.3	5.6	0.0	0.0	3.0	2.3
	중소도시	17.1	14.4	17.4	15.7	1.6	1.6	0.0	1.6	1.6
	읍면지역	10.1	0.0	0.0	0.0	0.0	16.3	16.3	0.0	0.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0.8	9.4	9.0	8.2	4.0	3.5	2.8	2.4	2.0
	한부모/조손가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9.8	11.4	10.9	10.0	4.8	4.2	3.4	2.9	2.5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3.6	0.0	0.0	0.0	0.0	0.0	0.0	0.0	0.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모님 직업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업 성적	생(잘한다)	4.2	14.3	4.2	4.2	14.3	4.2	0.0	14.3	4.2
	중(보통)	14.0	14.2	16.9	15.3	3.1	0.0	0.0	0.0	2.7
	해(못한다)	7.2	0.0	0.0	0.0	0.0	6.1	6.1	0.0	0.0
경제적 수준	상	3.4	2.6	5.3	2.6	0.0	5.5	5.5	0.0	2.6
	중	9.3	1.9	1.9	3.4	6.0	1.9	0.0	1.9	1.9
	하	24.8	32.4	24.8	24.8	7.6	0.0	0.0	7.6	0.0
희망 교육 수준	고졸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학졸업 (2,3년제 및 4년제)	11.8	12.0	11.4	9.6	2.4	3.8	3.8	2.4	1.8
	대학원(석박사과정)	9.8	3.1	3.1	5.5	9.8	3.1	0.0	3.1	3.1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공유 경로(기타)에 대해서 전체 2명 모두의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 사이트'라고 응답했다.

표 IV-55 스마트폰을 통한 이성과의 성적행위 공유 경로(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2	100.0
성인 콘텐츠 사이트	2	100.0

이성과의 성적행위 촬영 여부



【그림 IV-66】 이성과의 성적 행위 촬영 후 공유경로

(6)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공유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전체 89.2%의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8%였다.

세부적으로는 부모님 취업여부와 학업성적을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가족구성원,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2.7%)이 여학생(8.7%)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13.0%)가 일반/특목/자율고(12.3%), 중학교(9.0%)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12.748$, $p<.01$). 지역별로는 대도시(11.9%)가 중소도시(10.4%)와 읍면지역(8.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chi^2=7.802$, $p<.05$). 가족구성원에서는 한부모/조손가정(15.0%)이 양부모가정(10.5%), 기타(7.9%)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6.142$, $p<.05$). 또한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층(13.9%), 상층(11.0%), 중층(9.1%) 순으로 나타났다($\chi^2=13.851$, $p<.01$),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15.3%)이 대학졸업(10.2%), 대학원(11.3%)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7.257$, $p<.05$).

표 IV-56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통계량
전체		10.8	89.2	100.0(4197)	—
성별	남자	12.7	87.3	100.0(2173)	$t=-4.225^{***}$
	여자	8.7	91.3	100.0(2025)	
교급	중학교	9.0	91.0	100.0(2058)	$\chi^2=12.748^{**}$
	일반/특목/자율고	12.3	87.7	100.0(1746)	
	특성화고	13.0	87.0	100.0(393)	
지역	대도시	11.9	88.1	100.0(1988)	$\chi^2=7.802^*$
	중소도시	10.4	89.6	100.0(1587)	
	읍면지역	8.1	91.9	100.0(623)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0.5	89.5	100.0(3845)	$\chi^2=6.142^*$
	한부모/조손가정	15.0	85.0	100.0(292)	
	기타	7.9	92.1	100.0(6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0.3	89.7	100.0(2734)	$\chi^2=6.380$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1.2	88.8	100.0(1097)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4.9	85.1	100.0(208)	
	부모님 직업 없음	13.2	86.8	100.0(78)	
	부모님 안계심	0.0	100.0	100.0(11)	
학업 성적	상(잘한다)	9.7	90.3	100.0(1085)	$\chi^2=3.496$
	중(보통)	10.5	89.5	100.0(1755)	
	하(못한다)	12.0	88.0	100.0(1290)	
경제적 수준	상	11.0	89.0	100.0(1512)	$\chi^2=13.851^{**}$
	중	9.1	90.9	100.0(1837)	
	하	13.9	86.1	100.0(780)	
희망 교육 수준	고졸	15.3	84.7	100.0(289)	$\chi^2=7.257^*$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0.2	89.8	100.0(3123)	
	대학원(석박사과정)	11.3	88.7	100.0(686)	

* $p<.05$, ** $p<.01$, *** $p<.001$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의 공유 횟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441명 중 423%의 청소년이 '1-2번'이라고 응답한 반면, 16.9%의 청소년은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28.8%)의 청소년이 대도시(15.2%), 중소도시(15.6%)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25.288$, $p<.01$).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권(1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하위권(17.2%), 중위권(14.7%) 순으로 나타났다($\chi^2=19.786$, $p<.05$). 희망교육수준에서 살펴보면, 대학원(30.1%)이 고졸(14.7%)과 대학졸업(13.4%)에 비해 '11번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야한 사진, 성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본 것으로 나타났다($\chi^2=26.383$, $p<.01$).

표 IV-57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횟수

(단위: %(명))

구분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	11번 이상	계	통계량
전체		42.3	22.9	11.7	4.3	1.8	16.9	100.0(441)	—
성별	남자	41.4	22.4	12.4	2.5	1.0	20.3	100.0(270)	$t=1.379$
	여자	43.9	23.7	10.7	7.2	3.1	11.5	100.0(172)	
교급	중학교	43.9	20.1	14.0	4.7	3.2	14.1	100.0(181)	$\chi^2=11.953$
	일반/특목/자율고	40.9	26.8	9.1	3.8	0.5	18.8	100.0(210)	
	특성화고	42.6	16.3	14.4	5.3	2.6	18.8	100.0(50)	
지역	대도시	44.8	26.0	9.3	4.3	0.4	15.2	100.0(230)	$\chi^2=25.288^{**}$
	중소도시	37.1	21.1	16.6	5.3	4.4	15.6	100.0(161)	
	읍면지역	48.1	14.1	7.3	1.6	0.0	28.8	100.0(5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42.9	21.3	12.4	4.4	1.9	17.2	100.0(394)	$\chi^2=10.363$
	한부모/조손가정	33.7	38.7	6.0	4.6	1.5	15.5	100.0(44)	
	기타	86.5	0.0	13.5	0.0	0.0	0.0	100.0(4)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39.7	21.1	11.9	4.9	2.7	19.6	100.0(273)	$\chi^2=18.872$
	외벌이가정(양친있음)	48.9	23.2	13.4	3.0	0.5	10.9	100.0(12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37.3	32.1	8.5	6.5	0.0	15.6	100.0(31)	
	부모님 직업 없음	46.1	53.9	0.0	0.0	0.0	0.0	100.0(10)	
학업 성적	상(잘한다)	41.8	14.5	12.2	7.9	1.2	22.4	100.0(103)	$\chi^2=14.646$
	중(보통)	44.1	23.2	11.6	2.4	2.3	16.4	100.0(179)	
	하(못한다)	40.4	29.2	11.7	4.4	1.7	12.5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43.6	21.7	11.8	4.4	0.6	18.0	100.0(160)	$\chi^2=19.786^*$
	중	38.8	30.3	7.8	5.6	2.8	14.7	100.0(163)	
	하	46.4	13.2	18.2	2.8	2.2	17.2	100.0(109)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7.4	14.2	16.0	2.2	5.4	14.7	100.0(43)	$\chi^2=26.383^{**}$
	대학졸업 (2,3년제 및 4년제)	45.1	24.4	11.5	4.0	1.6	13.4	100.0(310)	
	대학원(석박사과정)	25.7	25.3	11.6	7.4	0.0	30.1	100.0(76)	

* $p<.05$, ** $p<.01$, *** $p<.001$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445명 중 67.2%의 청소년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55.3%의 청소년이 ‘SNS’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66.1%, 여학생은 68.8%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했고,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가 73.7%로 나타났으며 중학교(66.9%), 특성화고(57.0%)는 ‘SNS’를 통해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중에는 양부모가정(67.1%)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있었으며 한부모/조손가정(75.9%), 기타(78.3%)는 ‘SNS’라고 응답했다. 부모님 취업여부에서는 맞벌이가정(67.8%), 외벌이가정(양친있음)(67.6%), 부모님 직업 없음(72.2%)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한 반면,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82.9%)은 ‘SNS’라고 응답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 역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의 79.6%가 ‘SNS’라고 응답했으며 대학졸업, 대학원의 각각 70.1%, 67.8%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했다.

표 IV-58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경로

구분	사례 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	이메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랜덤 채팅	화상 채팅
전체	445	67.2	55.3	6.0	5.3	6.4	1.1	4.4	3.8
성별	남자	271	66.1	51.3	6.0	4.7	8.1	1.8	3.9
	여자	174	68.8	61.6	5.9	6.3	3.8	0.0	5.2
교급	중학교	184	62.8	66.9	8.0	4.5	5.6	2.6	6.7
	일반/특목/자율고	210	73.7	44.8	3.7	5.5	6.8	0.0	3.5
	특성화고	51	56.0	57.0	7.9	7.8	7.9	0.0	0.0
지역	대도시	232	70.4	49.1	5.9	4.2	6.4	1.2	6.0
	중소도시	163	66.0	64.5	6.1	7.6	4.2	0.3	3.6
	읍면지역	50	56.1	54.4	5.9	3.3	13.9	3.3	0.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99	67.1	52.9	5.9	5.2	5.7	1.0	4.6
	한부모/조손가정	42	66.9	75.9	4.8	4.8	10.6	0.0	1.0
	기타	5	74.6	78.3	20.4	20.4	31.1	20.4	20.4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77	67.8	53.2	5.7	4.6	6.6	0.8	3.6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21	67.6	55.4	6.5	8.3	3.6	1.4	6.8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1	64.1	82.9	6.5	0.0	8.9	0.0	0.0
	부모님 직업 없음	8	72.2	27.8	0.0	0.0	20.1	0.0	4.8
학업 성적	상(잘한다)	104	66.0	58.1	4.3	7.4	8.0	0.4	6.3
	중(보통)	183	66.3	53.9	7.3	5.9	4.8	1.0	4.6
	해못한다	151	70.2	55.5	5.2	2.9	6.7	1.1	2.4
경제적 수준	상	162	66.8	61.3	8.7	7.7	7.1	1.1	4.2
	중	167	66.1	56.5	3.2	6.1	5.7	0.3	6.4
	하	107	70.4	46.2	5.7	0.3	5.8	1.6	1.2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4	47.4	79.6	6.7	5.5	8.5	2.2	2.2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12	70.1	51.7	6.1	4.9	4.7	1.1	4.1
	대학원(석박사과정)	77	67.8	58.0	6.1	8.0	12.0	0.6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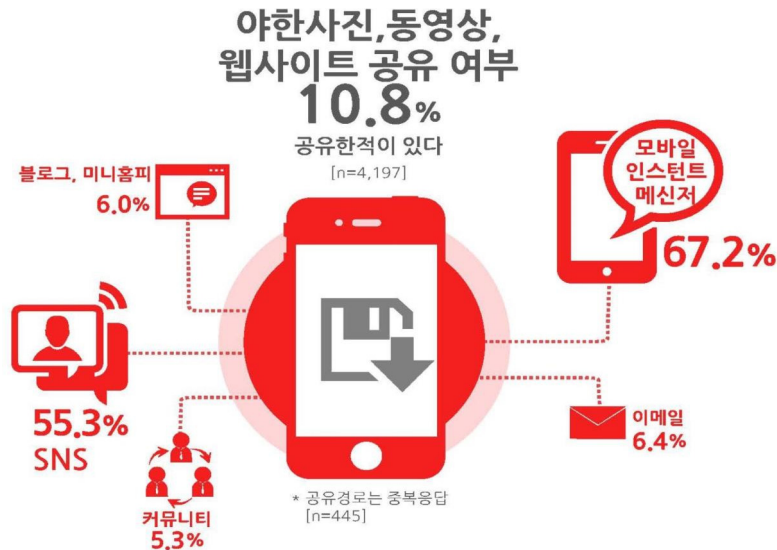
[표 계속]

구분		모바일 게임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등)	모바일 쇼핑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파일노리 등)	포털 사이트	기타	없음
전체		1.7	5.1	4.1	0.7	7.6	12.5	10.6	0.8	0.3
성별	남자	2.8	6.6	6.4	1.1	11.2	17.6	10.8	1.4	0.5
	여자	0.0	2.7	0.5	0.0	1.9	4.5	10.2	0.0	0.0
교급	중학교	3.7	7.1	5.9	1.3	1.9	5.2	10.1	1.8	0.5
	일반/특목/자율고	0.2	4.5	2.5	0.3	10.9	17.7	9.4	0.2	0.2
	특성화고	1.3	0.0	3.9	0.0	14.5	17.1	17.0	0.0	0.0
지역	대도시	2.0	6.3	3.1	1.1	8.1	13.4	11.0	0.7	0.2
	중소도시	2.0	3.8	5.7	0.3	7.6	14.1	10.6	1.2	0.0
	읍면지역	0.0	3.3	3.3	0.0	5.0	3.2	8.9	0.0	1.7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7	4.8	3.9	0.5	7.6	12.3	10.8	0.9	0.3
	한부모/조손가정	0.0	5.4	4.0	0.0	6.4	13.6	7.2	0.0	0.0
	기타	20.4	20.4	20.4	20.4	20.4	20.4	20.4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1.8	3.8	2.2	0.5	7.0	10.1	10.1	0.7	0.4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4	4.8	7.7	0.5	6.3	14.8	11.6	0.0	0.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0.0	7.4	0.0	0.0	8.7	18.5	3.3	0.0	0.0
	부모님 직업 없음	0.0	0.0	20.1	0.0	0.0	0.0	0.0	20.1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2.1	6.9	2.1	0.4	8.4	18.7	14.9	0.0	0.0
	중(보통)	2.5	5.1	5.8	0.8	6.6	9.1	8.1	0.9	0.2
	하(못한다)	0.0	1.3	2.9	0.0	6.0	10.3	8.6	1.4	0.6
경제적 수준	상	2.7	4.9	7.2	0.9	8.3	14.7	9.7	0.2	0.5
	중	1.3	4.5	2.1	0.3	4.5	12.5	11.3	1.0	0.2
	하	0.3	1.6	1.9	0.0	7.0	6.3	8.0	1.6	0.0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2	7.3	2.2	2.2	7.5	8.1	9.5	3.8	2.0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0	4.1	4.2	0.5	6.3	12.5	11.2	0.7	0.0
	대학원(석박사과정)	0.6	4.7	5.4	0.6	9.8	12.6	6.7	0.0	0.0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경로(기타)에 대해서 전체 4명 중 45.2%의 청소년이 '친구(SD카드)'와 '직접 만나서'라고 응답했다.

표 IV-59 스마트폰을 통한 야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경로(기타)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4	100.0
친구(SD카드)	2	45.2
직접 만나서	2	45.2



【그림 IV-67】 청소년의 야한 사진·동영상 공유 경로

(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를 해본 경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채팅)를 해본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4,197명 중 86.4%의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6%였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원과 부모님 취업여부를 제외한 성별, 교급, 지역,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15.0%)이 여학생(12.0%)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교급별로는 특성화고(16.6%)가 중학교(12.5%)와 일반/특목/자율고(14.3%)에 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야한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14.3$, $p<.1$).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14.1%)와 중소도시(14.1%)는 같은 수치를 보였고 읍면지역이 10.6%로 나타났다($\chi^2=5.567$, $p<.1$). 또한 학업성적에서는 상위권

(12.4%)과 중위권(12.4%)이 같은 수치를 보였고 하위권(16.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10.531$, $p<.01$).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층(15.5%)과 상층(14.6%)에 비해 중층(11.7%)이 낮게 나타났다($\chi^2=9.148$, $p<.05$). 마지막으로 희망교육수준에서는 고졸(16.8%)이 대학졸업(13.7%)과 대학원(11.4%)보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야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5.370$, $p<.1$).

표 IV-60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통계량
전체		13.6	86.4	100.0(4197)	—
성별	남자	15.0	85.0	100.0(2173)	$t=-2.851^{**}$
	여자	12.0	88.0	100.0(2025)	
교급	중학교	12.5	87.5	100.0(2058)	$\chi^2=5.905^{\dagger}$
	일반/특목/자율고	14.3	85.7	100.0(1746)	
	특성화고	16.6	83.4	100.0(393)	
지역	대도시	14.1	85.9	100.0(1988)	$\chi^2=5.567^{\dagger}$
	중소도시	14.1	85.9	100.0(1587)	
	읍면지역	10.6	89.4	100.0(623)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13.5	86.5	100.0(3845)	$\chi^2=1.304$
	한부모/조손가정	15.7	84.3	100.0(292)	
	기타	12.0	88.0	100.0(60)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3.6	86.4	100.0(2734)	$\chi^2=2.269$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3.2	86.8	100.0(1097)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14.7	85.3	100.0(208)	
	부모님 직업 없음	13.5	86.5	100.0(78)	
	부모님 안계심	28.5	71.5	100.0(11)	
학업성적	상(잘한다)	12.4	87.6	100.0(1085)	$\chi^2=10.531^{**}$
	중(보통)	12.4	87.6	100.0(1755)	
	하(못한다)	16.1	83.9	100.0(1290)	
경제적 수준	상	14.6	85.4	100.0(1512)	$\chi^2=9.148^*$
	중	11.7	88.3	100.0(1837)	
	하	15.5	84.5	100.0(780)	
희망교육 수준	고졸	16.8	83.2	100.0(289)	$\chi^2=5.370^{\dagger}$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3.7	86.3	100.0(3123)	
	대학원(석박사과정)	11.4	88.6	100.0(686)	

$^{\dagger} p<.10$, $^* p<.05$, $^{**} p<.01$, $^{***} p<.00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채팅)를 해본 경험 횟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567명 중 29.5%의 청소년이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교급, 희망교육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37.2%)와 특성화고(43.9%)가 중학교(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39.719$, $p<.001$).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41.2%)과 대학졸업(39.5%)에 비해 대학원(25.8%)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chi^2=21.953$, $p<.05$).

표 IV-61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 경험 횟수

(단위: %(명))

구분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	11번 이상	전체(N)	통계량
전체		26.5	27.0	10.1	5.8	1.2	29.5	100.0(567)	-
성별	남자	24.5	28.8	8.4	3.6	1.7	33.1	100.0(326)	t=1.629
	여자	29.1	24.5	12.5	8.7	0.5	24.6	100.0(241)	
교급	중학교	34.1	29.1	11.3	5.1	2.2	18.3	100.0(255)	$\chi^2=39.719^{***}$
	일반/특목/자율고	20.5	26.9	9.4	5.5	0.4	37.2	100.0(247)	
	특성화고	19.7	19.2	8.1	9.2	0.0	43.9	100.0(65)	
지역	대도시	26.6	26.9	9.6	6.0	0.9	30.0	100.0(279)	$\chi^2=4.568$
	중소도시	25.6	26.6	9.9	5.3	1.9	30.7	100.0(222)	
	읍면지역	29.0	28.6	13.1	6.2	0.0	23.0	100.0(6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26.2	27.0	9.7	6.1	1.3	29.7	100.0(516)	$\chi^2=8.393$
	한부모/조손가정	27.0	29.1	12.1	1.6	0.0	30.2	100.0(45)	
	기타	40.1	14.8	29.0	10.5	0.0	5.6	100.0(7)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3.1	26.2	10.4	5.8	1.0	33.4	100.0(369)	$\chi^2=23.880$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32.8	30.6	8.8	6.9	2.0	18.9	100.0(144)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6.8	15.1	14.2	2.4	0.0	31.5	100.0(30)	
학업 성적	부모님 직업 없음	35.6	44.9	0.0	0.0	0.0	19.5	100.0(11)	$\chi^2=7.244$
	상(잘한다)	26.7	9.8	19.3	7.0	0.0	37.2	100.0(11)	
	중(보통)	24.9	26.3	10.5	7.8	2.1	28.5	100.0(135)	
경제적 수준	하(못한다)	28.2	25.6	9.8	4.3	1.7	30.3	100.0(216)	$\chi^2=11.186$
	상	26.7	9.8	19.3	7.0	0.0	37.2	100.0(11)	
	중	26.6	28.8	11.1	6.0	1.7	25.8	100.0(221)	
희망 교육 수준	하	25.3	29.0	9.9	7.2	0.4	28.3	100.0(214)	$\chi^2=21.953^*$
	고졸	21.9	15.4	15.8	5.7	0.0	41.2	100.0(13)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3.5	25.0	9.3	9.1	3.6	39.5	100.0(47)	
	대학원(석박사과정)	28.7	29.2	9.5	5.7	1.1	25.8	100.0(425)	

* $p<.05$, ** $p<.01$, *** $p<.00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채팅)를 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교급, 지역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556명 중 38.2%의 청소년이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교급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48.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35.8%), 중학생(28.8%) 순으로 나타났다($\chi^2=58.416$, $p<.001$). 지역별로는 대도시(40.7%), 중소도시(37.4%), 읍면지역(30.0%) 순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1.815$, $p<.1$).

표 IV-62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야한 대화를 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성적 호기심	기타	상대방이 채팅하자고 먼저 접근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전체		38.2	29.5	19.2	10.3	1.6
성별	남자	39.0	29.9	16.8	9.7	2.5
	여자	37.1	28.9	22.4	11.0	0.3
교급	중학교	28.8	37.3	15.0	15.4	0.8
	일반/특목/자율고	48.2	22.2	20.9	6.3	2.0
	특성화고	35.8	26.9	28.8	5.3	3.2
지역	대도시	40.7	28.5	16.7	12.3	1.7
	중소도시	37.4	29.4	20.5	7.6	1.8
	읍면지역	30.0	33.7	25.0	10.6	0.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8.5	29.1	19.7	9.9	1.3
	한부모/조손가정	39.0	34.7	8.6	12.1	4.4
	기타	0.0	17.2	53.4	29.4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39.1	29.9	20.7	8.0	1.4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39.1	27.3	17.3	11.1	1.9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45.5	37.4	4.6	12.6	0.0
	부모님 직업 없음	13.4	45.4	6.1	35.1	0.0
	부모님 안계심	21.2	0.0	78.8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44.1	30.9	15.7	5.6	3.2
	중(보통)	37.1	27.8	21.1	10.1	0.8
	하(못한다)	37.2	31.1	19.0	11.6	0.9
경제적 수준	상	37.4	33.9	15.0	10.2	0.8
	중	40.3	26.4	21.2	8.3	2.8
	하	38.4	28.2	22.6	10.7	0.0
희망 교육 수준	고졸	46.8	23.2	21.3	7.8	1.0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9.0	28.5	19.2	10.2	1.4
	대학원(석박사과정)	31.1	40.3	17.9	7.8	1.9

[표 계속]

구분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을 하기 위해	전체(N)	통계량
전체		1.3	0.1	100.0(556)	—
성별	남자	2.1	0.1	100.0(319)	t=-1.122
	여자	0.3	0.0	100.0(238)	
교급	중학교	2.6	0.0	100.0(249)	$\chi^2=58.416^{***}$
	일반/특목/자율고	0.3	0.1	100.0(244)	
	특성화고	0.0	0.0	100.0(63)	
지역	대도시	0.0	0.0	100.0(270)	$\chi^2=31.815^{\dagger}$
	중소도시	3.1	0.2	100.0(221)	
	읍면지역	0.7	0.0	100.0(66)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3	0.1	100.0(504)	$\chi^2=15.413$
	한부모/조손가정	1.3	0.0	100.0(46)	
	기타	0.0	0.0	100.0(6)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0.7	0.1	100.0(362)	$\chi^2=39.907$
	외벌이가정(양친있음)	3.3	0.0	100.0(14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0.0	0.0	100.0(31)	
	부모님 직업 없음	0.0	0.0	100.0(11)	
	부모님 안계심	0.0	0.0	100.0(3)	
학업 성적	상(잘한다)	0.2	0.3	100.0(133)	$\chi^2=28.320$
	중(보통)	3.1	0.0	100.0(211)	
	해(못한다)	0.2	0.0	100.0(203)	
경제적 수준	상	2.6	0.0	100.0(215)	$\chi^2=24.785$
	중	0.8	0.2	100.0(211)	
	하	0.0	0.0	100.0(118)	
희망 교육 수준	고졸	0.0	0.0	100.0(49)	$\chi^2=27.254$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7	0.0	100.0(414)	
	대학원(석박사과정)	0.6	0.5	100.0(78)	

† $p<.10$, * $p<.05$, ** $p<.01$, *** $p<.001$

청소년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를 한 가장 큰 이유(기타)에 대해서 전체 107명 중 94.9%의 청소년이 '이야기하다가 가끔 나옴'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을 낚기 위해'(2.6%), '경험담 공유'(0.9%), '섹드립'(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3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야한 대화를 한 가장 큰 이유(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107	100.0
이야기하다가 가끔 나눔	101	94.9
모르는 사람을 낚기 위해	3	2.6
경험담 공유	1	0.9
섹드립	1	0.7

(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질문에 총 3,659명 중 8.2%의 청소년이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랜덤채팅(4.8%)’, ‘돛단배(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4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

구분	사례 수	이용한 적 없음	낯선 사람과의 대화	랜덤채팅	돛단배	가가 라이브 채팅	줄톡
전체	3659	86.0	8.2	4.8	4.6	2.0	1.2
성별	남자	1875	88.6	5.9	4.2	3.0	1.3
	여자	1784	83.3	10.5	5.5	6.3	1.1
교급	중학교	1765	85.5	9.9	4.2	3.0	1.2
	일반/특목/자율고	1562	87.9	5.7	4.8	5.7	1.1
	특성화고	332	80.3	10.6	8.0	8.1	1.0
지역	대도시	1746	84.0	9.2	6.5	4.2	1.6
	중소도시	1362	86.5	7.8	3.9	5.2	0.8
	읍면지역	551	91.2	5.8	1.7	4.4	0.8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354	86.3	8.0	4.6	4.4	1.1
	한부모/조손가정	255	83.9	11.6	6.5	8.3	2.8
	기타	50	81.6	4.3	8.3	2.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399	86.0	8.6	4.6	4.6	1.2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949	86.4	7.1	5.2	3.9	1.0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183	87.2	8.8	5.8	8.4	2.5
	부모님 직업 없음	62	85.2	6.1	1.0	5.3	1.0
	부모님 안계심	11	53.2	28.5	28.1	6.1	0.0
학업	상(잘한다)	954	85.9	8.0	4.6	4.6	1.2

구분		사례 수	이용한 적 없음	낮선 사람과의 대화	랜덤채팅	덧단배	가가 라이브 채팅	즐톡
성적	중(보통)	1541	86.5	7.8	4.7	4.3	1.8	1.0
	하(못한다)	1111	85.5	9.0	5.2	5.2	2.1	1.4
경제적 수준	상	1319	84.4	8.6	4.7	5.2	1.9	1.3
	중	1600	87.7	8.0	4.2	3.7	1.8	0.9
	하	684	85.4	7.9	6.6	5.9	2.6	1.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45	84.1	8.4	6.2	6.8	1.0	2.0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732	85.9	8.5	4.7	4.5	1.8	1.1
	대학원(석박사과정)	599	87.3	6.7	4.8	4.5	3.1	1.3

[표 계속]

구분		기타	심톡	1km	우체통	편톡	하이데어	빠꾸기
전체		1.1	1.1	0.6	0.6	0.3	0.2	0.2
성별	남자	1.0	0.9	0.7	0.4	0.2	0.2	0.2
	여자	1.3	1.2	0.6	0.8	0.3	0.3	0.2
교급	중학교	1.6	1.2	0.5	0.1	0.4	0.1	0.2
	일반/특목/자율고	0.6	0.8	0.6	1.2	0.1	0.3	0.2
	특성화고	1.2	1.2	1.6	0.4	0.2	0.4	0.2
지역	대도시	1.7	1.2	0.6	0.9	0.2	0.3	0.2
	중소도시	0.9	0.9	0.9	0.3	0.2	0.2	0.2
	읍면지역	0.1	0.9	0.2	0.2	0.6	0.1	0.1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2	1.0	0.6	0.4	0.2	0.2	0.2
	한부모/조손가정	0.5	2.4	1.5	1.1	0.8	0.8	0.6
	기타	0.0	0.0	0.0	10.1	0.0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1.0	1.1	0.6	0.4	0.3	0.3	0.2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8	0.7	0.6	0.6	0.2	0.1	0.1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0.0	2.1	0.0	0.8	0.7	0.0	0.5
	부모님 직업 없음	2.0	2.7	0.0	0.0	0.0	1.2	0.0
학업 성적	부모님 안계심	0.0	0.0	6.1	6.1	0.0	6.1	0.0
	상(잘한다)	1.7	1.2	0.6	0.7	0.2	0.2	0.1
	중(보통)	1.3	0.7	0.4	0.4	0.1	0.3	0.1
	하(못한다)	0.5	1.5	0.9	0.4	0.6	0.2	0.4
경제적 수준	상	1.3	0.9	0.5	0.8	0.3	0.4	0.1
	중	1.4	0.9	0.7	0.3	0.3	0.2	0.3
	하	0.4	1.8	0.7	0.3	0.2	0.2	0.2
희망 교육 수준	고졸	0.3	1.9	0.6	0.6	0.9	0.6	0.6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0	1.2	0.6	0.4	0.2	0.2	0.2
	대학원(석박사과정)	2.3	0.3	0.5	0.5	0.2	0.4	0.2

청소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기타)에 대해서 전체 42명 중 49.9%의 청소년이 ‘마약채팅’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아자르’(12.6%), ‘잼’(6.5%), ‘연예인 빙의톡’(5.5%), ‘카페 채팅’(5.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65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기타)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전체	42	100.0
마약채팅	21	49.9
아자르	5	12.6
잼	3	6.5
연예인 빙의톡	2	5.5
카페 채팅	2	5.5

(9)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

랜덤채팅(돛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962명 중 81.8%의 청소년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8.2%의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원과 부모님 취업여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별로는 한부모/조손가정(30.6%), 양부모가정(17.3%), 기타(7.9%)의 순으로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9.871$, $p<.01$). 또한 부모님 취업여부별로는 부모님 안 계심(60.9%)이 맞벌이가정(18.5%),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6.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26.9%), 부모님 직업 없음(5.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11.573$, $p<.05$).

표 IV-66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송수신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통계량
전체		18.2	81.8	100.0(962)	—
성별	남자	18.6	81.4	100.0(468)	t=-0.365
	여자	17.7	82.3	100.0(494)	
교급	중학교	15.9	84.1	100.0(504)	x ² =3.844
	일반/특목/자율고	20.5	79.5	100.0(340)	
	특성화고	21.2	78.8	100.0(118)	
지역	대도시	19.4	80.6	100.0(477)	x ² =3.981
	중소도시	15.3	84.7	100.0(376)	
	읍면지역	22.4	77.6	100.0(110)	
가족구성원	양부모가정	17.3	82.7	100.0(873)	x ² =9.871**
	한부모/조손가정	30.6	69.4	100.0(74)	
	기타	7.9	92.1	100.0(15)	
부모님 취업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18.5	81.5	100.0(614)	x ² =11.573*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6.2	83.8	100.0(256)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6.9	73.1	100.0(46)	
	부모님 직업 없음	5.7	94.3	100.0(24)	
	부모님 안계심	60.9	39.1	100.0(5)	
학업성적	생잘한다	16.5	83.5	100.0(250)	x ² =3.713
	중(보통)	16.7	83.3	100.0(392)	
	해못한다	21.8	78.2	100.0(305)	
경제적 수준	상	17.2	82.8	100.0(371)	x ² =4.043
	중	16.8	83.2	100.0(401)	
	하	23.4	76.6	100.0(175)	
희망 교육수준	고졸	27.0	73.0	100.0(72)	x ² =3.742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7.7	82.3	100.0(717)	
	대학원(석박사과정)	17.1	82.9	100.0(153)	

* α .05, ** α .01, *** α .001

랜덤채팅(뚝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 횟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38.0%의 청소년이 '1-2번'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3-4번(23.1%)', '5-6번(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번 이상'이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가족구성원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살펴보았을 때, 중소도시(29.2%), 대도시(13.4%), 읍면지역(9.8%) 순으로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11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x^2=19.593$, $p<.1$). 또한 가족구성원별로는 양부모가정(18.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조손가정(16.9%), 기타(0.0%) 순으로 나타났다($x^2=19.071$, $p<.1$).

표 IV-67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송수신 횟수

(단위: %(명))

구분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	11번 이상	기타	전체(N)	통계량
전체		38.0	23.1	10.1	5.3	4.6	18.2	0.8	100.0(171)	-
성별	남자	32.0	21.2	11.8	5.1	5.0	24.9	0.0	100.0(85)	t=1.627
	여자	43.9	25.0	8.5	5.5	4.1	11.6	1.5	100.0(86)	
교급	중학교	32.2	26.5	12.9	3.8	5.6	19.0	0.0	100.0(78)	$\chi^2=13.370$
	일반/특목/자율고	41.4	21.8	9.7	5.0	5.0	17.1	0.0	100.0(68)	
	특성화고	46.9	16.1	2.6	10.7	0.0	18.6	5.2	100.0(25)	
지역	대도시	35.7	28.5	9.5	6.6	6.2	13.4	0.0	100.0(91)	$\chi^2=19.593^{\dagger}$
	중소도시	34.2	17.2	13.4	3.1	0.6	29.2	2.3	100.0(57)	
	읍면지역	55.7	16.8	4.5	5.4	7.7	9.8	0.0	100.0(24)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7.3	24.9	10.8	4.4	3.2	18.5	0.9	100.0(147)	$\chi^2=19.071^{\dagger}$
	한부모/조손가정	44.4	10.5	3.2	11.6	13.4	16.9	0.0	100.0(23)	
	기타	0.0	34.9	65.1	0.0	0.0	0.0	0.0	100.0(1)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39.7	21.5	8.7	6.4	4.3	18.3	1.2	100.0(110)	$\chi^2=30.319$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31.4	31.6	15.3	0.0	0.0	21.6	0.0	100.0(42)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39.1	11.3	5.8	16.2	24.4	3.2	0.0	100.0(12)	
	부모님 직업 없음	29.4	70.6	0.0	0.0	0.0	0.0	0.0	100.0(1)	
학업 성적	상(잘한다)	38.2	0.0	27.1	0.0	0.0	34.8	0.0	100.0(3)	$\chi^2=17.418$
	중(보통)	27.8	35.2	6.1	1.6	4.3	23.4	1.6	100.0(40)	
	하(못한다)	35.9	18.1	10.6	6.5	9.1	19.8	0.0	100.0(63)	
경제적 수준	상	0.0	0.0	43.8	0.0	0.0	56.2	0.0	100.0(2)	$\chi^2=13.181$
	중	35.6	27.6	13.0	7.8	0.6	14.5	1.0	100.0(63)	
	하	37.4	19.8	8.3	2.3	6.7	24.4	1.0	100.0(65)	
희망 교육 수준	고졸	11.0	32.0	24.9	0.0	0.0	32.0	0.0	100.0(3)	$\chi^2=14.816$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25.3	13.1	22.8	13.8	1.8	23.1	0.0	100.0(19)	
	대학원(석박사과정)	41.4	26.1	9.1	3.4	4.6	14.3	1.0	100.0(125)	

† $p<.10$, * $p<.05$, ** $p<.01$, *** $p<.001$

랜덤채팅(똥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유인 메시지를 받은 후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전체 52.5%의 청소년이 '채팅방을 나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메시지에 대한 답을 거부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10.2%)을 제외한 나머지 약 38.2%의 청소년들은 유인 메시지 수신 시에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지역, 가족구성원,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희망교육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IV-68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 수신 시 주된 반응

(단위: %(명))

구분		채팅방을 나감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함	메시지에 대한 답을 거부함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알려줌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에 대한 대화 시도
전체		52.5	23.3	10.2	9.6	3.3
성별	남자	46.2	30.9	6.7	13.3	3.0
	여자	58.8	15.8	13.7	5.9	3.6
교급	중학교	57.6	24.7	10.5	2.1	4.1
	일반/특목/자율고	47.1	25.4	7.7	15.8	2.4
	특성화고	51.4	13.2	16.0	16.4	3.0
지역	대도시	48.6	27.2	8.9	12.6	1.4
	중소도시	51.1	22.6	12.7	5.8	6.3
	읍면지역	70.3	10.4	9.0	7.2	3.1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53.3	24.7	9.6	7.3	3.8
	한부모/조손가정	44.8	15.5	14.5	25.2	0.0
	기타	100.0	0.0	0.0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55.0	18.0	12.3	8.6	5.0
	외벌이가정(양친있음)	50.3	38.3	4.8	4.7	0.0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27.7	20.4	11.3	40.6	0.0
	부모님 직업 없음	0.0	70.6	29.4	0.0	0.0
		부모님 안계심	100.0	0.0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45.5	37.8	8.7	5.2	2.0
	중(보통)	54.0	19.3	11.0	10.8	4.3
	하(못한다)	55.6	17.5	10.5	11.4	3.1
경제적 수준	상	60.3	25.1	4.2	7.0	1.7
	중	48.7	26.0	15.4	6.0	3.4
	하	47.9	13.3	11.6	20.3	5.8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5	24.7	14.5	20.2	12.2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58.9	19.7	9.6	8.6	1.6
	대학원(석박사과정)	38.0	38.8	10.8	7.4	5.0

[표 계속]

구분		기타	오프라인에서 만남	전체(N)	통계량
전체		0.9	0.2	100.0(175)	—
성별	남자	0.0	0.0	100.0(87)	t=-1.583
	여자	1.8	0.4	100.0(88)	
교급	중학교	0.9	0.0	100.0(80)	$\chi^2=14.597$
	일반/특목/자율고	1.2	0.5	100.0(70)	
	특성화고	0.0	0.0	100.0(25)	
지역	대도시	0.8	0.4	100.0(93)	$\chi^2=12.734$
	중소도시	1.4	0.0	100.0(58)	
	읍면지역	0.0	0.0	100.0(25)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1.0	0.2	100.0(151)	$\chi^2=10.383$
	한부모/조손가정	0.0	0.0	100.0(23)	
	기타	0.0	0.0	100.0(1)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양친있음)	0.7	0.3	100.0(114)	$\chi^2=35.368$
	외벌이가정(양친있음)	1.8	0.0	100.0(42)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	0.0	0.0	100.0(12)	
	부모님 직업 없음	0.0	0.0	100.0(1)	
	부모님 안계심	0.0	0.0	100.0(3)	
학업 성적	상(잘한다)	0.0	0.9	100.0(41)	$\chi^2=9.104$
	중(보통)	0.5	0.0	100.0(65)	
	하(못한다)	1.8	0.0	100.0(66)	
경제적 수준	상	1.2	0.6	100.0(64)	$\chi^2=15.332$
	중	0.5	0.0	100.0(67)	
	하	1.2	0.0	100.0(41)	
희망 교육 수준	고졸	0.0	0.0	100.0(19)	$\chi^2=15.278$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1.2	0.3	100.0(127)	
	대학원(석박사과정)	0.0	0.0	100.0(2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10)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경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음란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4,163명 중 15.0%의 청소년이 야한 대화(음란채팅)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0.9%),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0.6%), 키스를 파는 행위(0.3%),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

표 IV-69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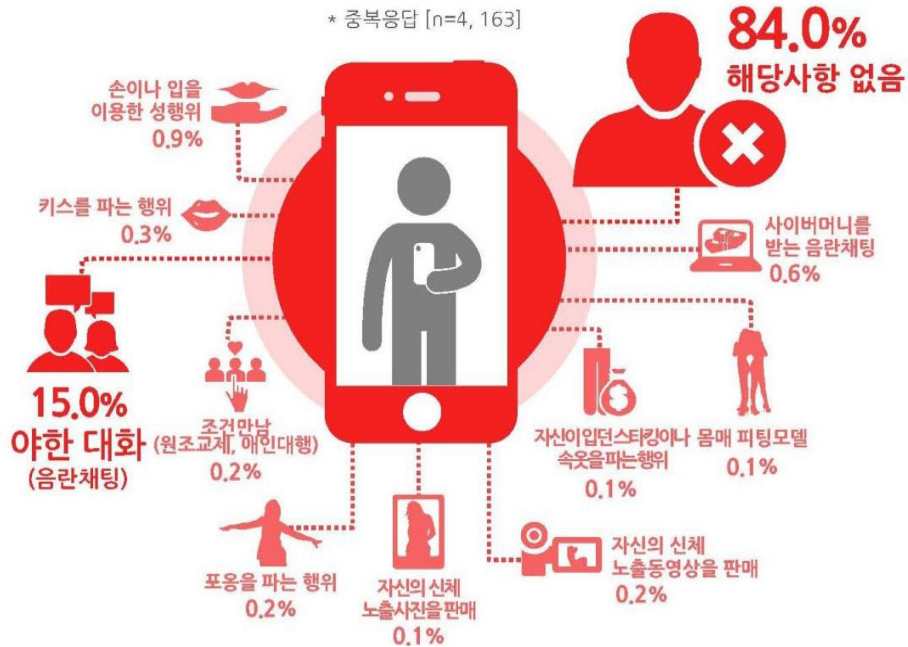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당 사항 없음	야한 대화 (음란 채팅)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	사이버 머니를 받는 음란 채팅	키스를 파는 행위	조건만남 (원조교제, 애인대행)
전체	4163	84.0	15.0	0.9	0.6	0.3	0.2
성별	남자	2152	81.8	16.8	1.5	0.6	0.3
	여자	2010	86.4	13.0	0.3	0.6	0.1
교급	중학교	2046	85.4	13.5	0.9	0.7	0.3
	일반/특목/자율고	1731	83.3	15.9	1.0	0.4	0.1
	특성화고	386	79.7	18.6	0.7	1.0	0.0
지역	대도시	1968	83.4	15.5	1.3	0.7	0.1
	중소도시	1573	83.6	15.7	0.6	0.5	0.3
	읍면지역	622	87.3	11.7	0.8	0.5	0.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3817	84.3	14.8	0.7	0.6	0.2
	한부모/조손가정	289	80.7	17.3	3.7	0.5	0.9
	기타	57	85.8	14.2	1.3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2714	84.3	14.7	0.7	0.7	0.3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1088	84.0	15.2	0.7	0.5	0.1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205	80.9	16.3	4.3	0.6	0.5
	부모님 직업 없음	77	85.1	14.9	2.2	0.0	2.2
	부모님 안계심	11	71.5	28.5	0.0	0.0	0.0
학업 성적	상(잘한다)	1079	85.9	13.0	0.3	0.8	0.0
	중(보통)	1740	84.8	14.3	0.9	0.5	0.4
	하(못한다)	1279	81.5	17.3	1.5	0.6	0.2
경제적 수준	상	1494	83.4	16.1	0.6	0.2	0.1
	중	1827	85.7	12.9	1.1	0.8	0.2
	하	777	81.8	17.2	1.1	0.8	0.7
희망 교육 수준	고졸	287	80.3	19.2	2.4	0.6	0.8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3099	84.1	14.8	0.9	0.6	0.2
	대학원(석박사과정)	680	85.9	13.4	0.3	0.7	0.3

[표 계속]

구분		포옹을 파는 행위	자신의 신체 노출동영상을 판매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판매	몸매 피팅모델	자신이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파는 행위	기타
성별	전체	0.2	0.2	0.1	0.1	0.1	0.0
	남자	0.2	0.3	0.3	0.2	0.1	0.0
	여자	0.1	0.0	0.0	0.0	0.0	0.0
교급	중학교	0.2	0.2	0.2	0.1	0.1	0.0
	일반/특목/자율고	0.2	0.2	0.1	0.2	0.1	0.0
	특성화고	0.0	0.0	0.0	0.3	0.0	0.0
지역	대도시	0.2	0.2	0.2	0.2	0.1	0.0
	중소도시	0.2	0.2	0.1	0.1	0.0	0.0
	읍면지역	0.0	0.1	0.1	0.1	0.1	0.0
가족 구성원	양부모가정	0.1	0.2	0.1	0.1	0.0	0.0
	한부모/조손가정	0.9	0.2	0.2	0.2	0.2	0.0
	기타	0.0	0.0	0.0	0.0	0.0	0.0
부모님 취업 여부	맞벌이가정 (양친있음)	0.2	0.2	0.2	0.2	0.1	0.0
	외벌이가정 (양친있음)	0.0	0.0	0.0	0.1	0.0	0.0
	외벌이가정 (한부모가정)	0.5	0.4	0.4	0.4	0.4	0.0
학업 성적	부모님 직업 없음	2.2	0.0	0.0	0.0	0.0	0.0
	부모님 안계심	0.0	0.0	0.0	0.0	0.0	0.0
	상(잘한다)	0.0	0.2	0.1	0.0	0.0	0.0
경제적 수준	중(보통)	0.3	0.1	0.2	0.1	0.0	0.0
	하(못한다)	0.2	0.2	0.2	0.2	0.2	0.0
	상	0.0	0.0	0.1	0.0	0.0	0.0
희망 교육 수준	중	0.2	0.3	0.2	0.3	0.1	0.0
	하	0.6	0.0	0.0	0.1	0.0	0.0
	고졸	0.8	0.4	0.4	0.5	0.3	0.0
교육 수준	대학졸업(2,3년제 및 4년제)	0.1	0.1	0.1	0.1	0.0	0.0
	대학원(석박사과정)	0.3	0.2	0.1	0.1	0.1	0.0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행위 여부

* 중복응답 [n=4,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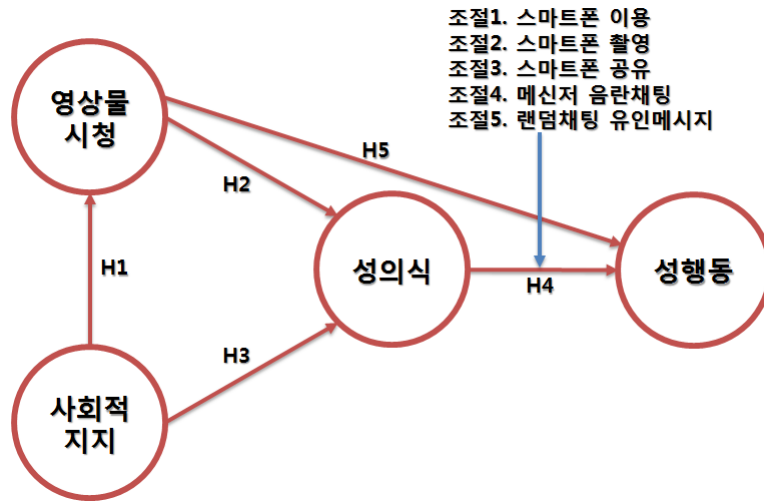
【그림 IV-68】 스마트폰을 통한 성행동 비율

5)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이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연구모형과 가설 수립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과 부모 혹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성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의식이 성행동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스마트폰 이용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IV-69]와 같다.



【그림 IV-69】 연구모형

나. 연구문제 수립

앞의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의 언급한 바와 같이 성 상품화는 아이돌 스타의 공연과 같은 다양한 성적 이미지를 인간의 성적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인 형태의 제품으로 설계 및 생산하여 TV와 케이블 TV의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촉발시킴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으로써, 성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난 성 의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성 의식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성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우선,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부모와 친구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영향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 1.1.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상미(2009)는 대중매체가 공공영역의 지도성을 잃고 역기능을 할 때 지나친 자극과 흥분을 유발하게 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성숙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성적왜곡과 학대, 폭력성, 퇴폐적인 문화 등 유해매체의 부정적인 자극은 청소년 성 상품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2.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자극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모방·공유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지지로써 부모와 친구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반응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성세대의 폐쇄적 성교육으로 부정적, 폐쇄적 특성을 보이지만, 현재 청소년들은 영양상태의 개선과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생리적 신체발달에 따른 사춘기 시작 시기가 빨라져 성에 대한 관심이 이른 시기에 형성되며(김신정, 이정은, 김성희, 강경아, 2012),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에 따라 생성된 성 지식이 또래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형성된 성태도(의식)로 이어져 혼전 순결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개방화되는 경향으로 변화함으로써, 성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윤정, 이창식,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 의식과 성 행동간 영향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성의식 개방정도가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1 청소년의 성개방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4.2 청소년의 정보수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 의식 형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의식을 매개하여 성 행동으로 관계형성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 행동에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5.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1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자극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5.2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5.3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하는 모방·공유적 요소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순환구조로 판단되며, 김은실(1998), 신선미, 정태연(2005), Featherstone(1991) 등이 언급한 것처럼 이차적 성 상품화로써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성 상품화 방식으로 TV와 케이블 TV,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는 성적 이미지, 즉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육체의 이용에 본 연구가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 폰을 매개로 한 이용, 촬영, 공유, 음란채팅, 유인메시지 등의 경험이 성 의식과 성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어떠한 조절(매개)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은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6.1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사용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2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촬영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3 청소년의 성의식은 스마트폰 공유를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4 청소년의 성의식은 음란채팅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6.5 청소년의 성의식은 유인메시지를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가. 신뢰도 분석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는 30개 항목에 대하여 전체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04로 양호한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관한 17개 항목의 질문을 구성하는 3개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72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경우도 .79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의식에서 성개방성 요인은 .77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성을 가지는 반면에 성보수성은 .47로서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 보수성 요인이 연구에 중요하므로 다소 낮은 신뢰성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감안하여 각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표 IV-70>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V-70 신뢰도 분석

변수		Cronbach's	문항수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	자극	.86	8
	인권침해	.76	4
	모방공유	.72	5
사회적 지지		.79	2
청소년의 성의식	성개방성	.77	8
	성보수성	.47	2

나.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본 후 청소년의 생각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관련 17개 문항에 대해 베리맥스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요인 선별기준은 1.0이상의 아이겐 값과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자극 요인은 24.22%, 인권침해 요인은 15.82%, 모방·공유 요인은 15.22%의 변량을 설명하여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인식에 대한 전체 변량의 55.25%를 설명하고 있다.

표 IV-71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명	구분	성분		
		1	2	3
자극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82	.01	.1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77	.27	.02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76	-.09	.19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	.67	.03	.31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67	-.07	.32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자유롭게 변할 것이다	.65	.07	.26
	야한 친구이나 춤이 재미있다	.54	-.26	.39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	.48	.44	.13
인권 침해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04	.83	-.02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와 마찬가지이다	-.01	.80	-.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13	.76	-.02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21	.60	.12
모방·공유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00	.03	.74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본 적이 있다	.36	-.07	.72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34	-.05	.68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다	.10	.26	.54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	.32	.02	.52
eigenvalue		4.12	2.69	2.59
설명력(%)		24.22	15.81	15.22

다.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의 성의식관련 10개 문항에 대해 베리맥스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요인 선별기준은 1.0이상의 아이겐 값과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성개방성, 정보수성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성개방성 요인은 30.05%, 정보수성 요인은 18.11%의 변량을 설명하여 아이돌 영상물 지각에 대한 전체 변량의 48.16%를 설명하고 있다.

표 IV-72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명	구분	요인	
		1	2
성개방성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76	.056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69	.173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7	-.011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62	.36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	.58	.304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51	.509
	남성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처럼 허용될 수 있다	.50	-.46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47	.35
성보수성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된다	.20	.73
	결혼 후에는 배우자 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	.07	.66
eigenvalue		3.01	1.81
설명력(%)		30.05	18.11

라. 확인적 요인분석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은 내재된 잠재변수의 구조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되며, 이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적 조사 혹은 이 둘에 근거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요인) 간의 관계를 사전에 가정하고, 가설화된 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⁸⁶⁾ 모형 검정의 기준이 되는 지수를 적합지수라고 하며, 중요도에 따라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로 구분한다. 자주 이용되는 절대적합지수에는 χ^2 , NCP, GFI, RMR, RMSEA, ECIV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수들은 관찰된 상관·공분산 행렬(S)과 모델에 의해 재생산된 상관·공분산 행렬(Σ) 간의 차이에 기초를 둔다.

적합도 해석 기준으로 카이자승 통계량(χ^2)이 작고 확률값(ρ)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카이자승 통계량(χ^2)이 크고 확률값(ρ)이 작으면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RMSEA의 경우 Stinger(1990)는 .10 이하이면 자료를 적합시키고, .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RMR의 경우 .05미만일 때에만 적합한 것으로 기준한다. TLI, CFI, GFI, AGF I 등의 적합기준은 .09이상일 때에만

86)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서울: 청람.

적합한 것으로 기준하며, 적합지수는 0과 1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순으로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표 IV-65>의 적합도 지수 기준표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표 IV-73 적합도 지수

적합도 유형	적합도 지수	권장수준
절대적합 지수	카이자승 통계량(χ^2)	χ^2 임계치와 비교(p=0.05이상)
	원소평균자승잔차(RMR)	0.05 이하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0.1 이하
	적합지수(GFI)	0.9 이상 (0.8 이상 : 한계지지)
충분적합 지수	조정적합지수(AGFI)	0.8 이상
	표준적합지수(NFI)	0.9 이상
	비표준적합지수(NNFI)	0.9 이상
	비교적합지수(CFI)	0.9 이상
	충분적합지수(IFI)	0.0 ~ 1.0범위에서 0.90이상
간명적합 지수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0.6 ~ 0.9 사이
	간명기초적합지수(PGFI)	0.0 ~ 1.0 사이

자료: 노경섭(2014)⁸⁷⁾, 배병렬(2006), 신건권(2013)⁸⁸⁾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나)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 df, GFI, NFI, TLI, CFI,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4 이하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⁸⁹⁾ SMC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 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SMC 값은 다음과 같이 <표 IV-74>에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항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7)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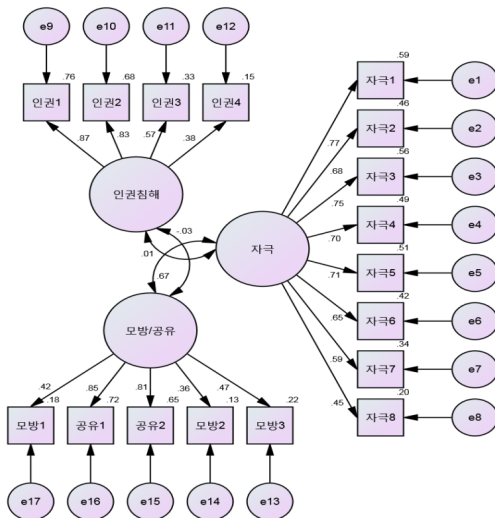
88) 신건권(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89)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서울: 청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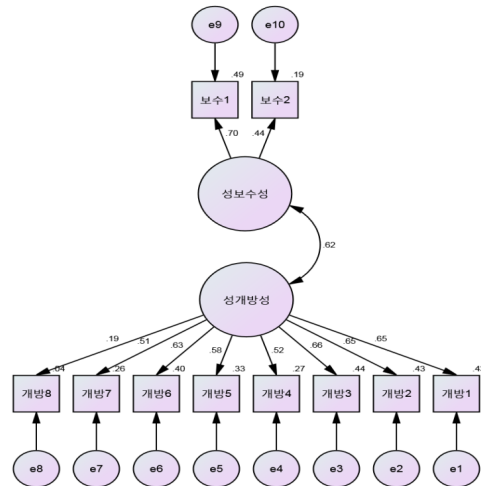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야한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의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842, NFI=.781, TLI=.746, CFI=.783, RMSEA=.114으로 보수적 기준에서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청소년의 성의식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923, NFI=.831, TLI=.780, CFI=.834, RMSEA=.105으로 두 요인 모두 적합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적합도 지수를 보수적 관점이 아닌 포괄적 관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V-74 각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적합지수

잠재요인	χ^2	df	GFI	NFI	TLI	CFI	RMSEA
청소년의 아이돌스타 야한영상물 시청	6,721.162 ($p = .000$)	116	.842	.781	.746	.783	.114
청소년의 성의식	1,651.836 ($p = .000$)	34	.923	.831	.780	.834	.105



【그림 IV-70】 확인적 요인분석(영상물 시청)



【그림 IV-71】 확인적 요인분석(성의식)

<표 IV-75>는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p값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변수 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잠재요인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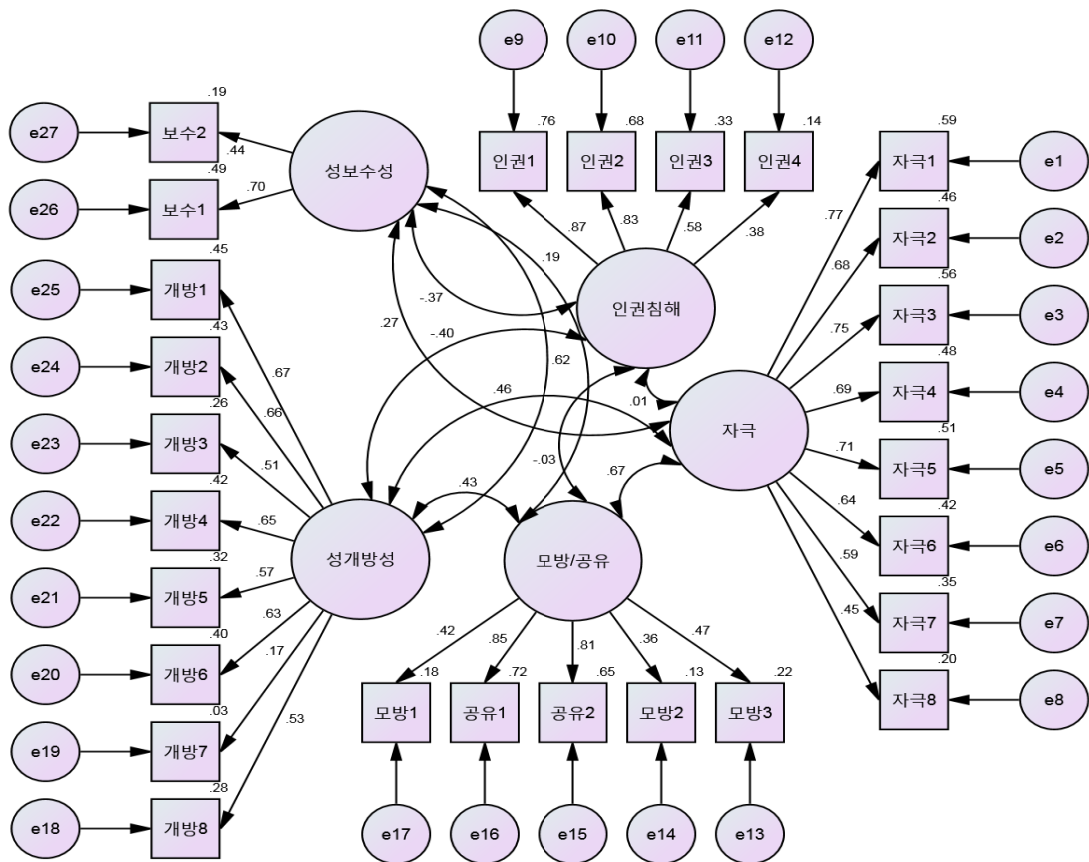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t 값	p 값
자극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1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960	44.171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	.921	45.659	.00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자유롭게 변할 것이다	.867	42.077	.000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	.674	28.104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	.764	38.082	.00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1.029	49.468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899	46.828	.000
인권침해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1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889	-17.047	.000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231	-18.068	.000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와 마찬가지로이다	-2.928	-18.108	.000
모방공유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1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3.028	29.990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구들에게 공유해본 적이 있다	3.035	30.263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다	1.269	18.938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1.231	21.387	.000
성개방성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1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04	34.923	.000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1.025	35.132	.000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83	28.808	.000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	.940	31.515	.000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900	34.041	.000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589	28.641	.000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9	11.266	.000
성보수성	결혼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	1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된다	1.530	15.982	.000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전체 잠재요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거항목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전체 잠재요인에 대한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19,149.151$, $df=629$, $p\text{-value}=.000$ 으로 χ^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GFI=.849$, $NFI=.778$, $TLI=.758$, $CFI=.783$, $RMSEA=.082$ 로 나타나서, 적합도 권고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inger(1990)에 의거 RMSEA가 .10 미만이므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77>은 전체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p값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변수 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6 전체 잠재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적합지수

잠재요인	χ^2	d.f	GFI	NFI	TLI	CFI	RMSEA
전체변수	9,585.151 ($p=.000$)	314	.849	.778	.758	.783	.082



【그림 IV-72】 전체 잠재적 확인적 요인분석

표 IV-77 전체 잠재요인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잠재 요인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t 값	p 값
자극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는다	1.00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962	44.336	.00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1.030	49.564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	.918	45.588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901	47.038	.000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에 대한 시각이 자유롭게 변할 것이다	.864	41.984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	.764	38.136	.000
	야한 옷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	.681	28.424	.000
인권 침해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000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와 마찬가지로 이다	.920	51.299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603	37.624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408	23.820	.000
모방· 공유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1.0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다	1.289	18.992	.000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	3.056	29.788	.000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본 적 이 있다	3.067	30.072	.000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1.231	21.197	.000
성개방성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 고 싶다	1.000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94	10.116	.000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1.493	29.104	.000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	1.544	27.321	.000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1.676	29.543	.000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1.276	25.355	.000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 는다	1.672	29.727	.000
성보수성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1.700	30.020	.000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된다	1.000		
	결혼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 다	.659	16.853	.000

(3) 상관관계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구통계적 변수와 독립, 매개, 종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4 이하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개념들간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며,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미치고 있으며($r = .665$; $\rho = .000$), 다음으로 자극과 모방공유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573$; $\rho = .000$). 반대로 성행동과 정보수성($r = .079$; $\rho = .000$), 부모지지($r = .098$; $\rho = .000$)에 가장 적은 상관관계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은 친구의 지지도 많이 받는 상관관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모방·공유가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들의 상관관계 행렬은 다음 <표 IV-78>과 같다.

표 IV-78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결과

구분	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	부모지지	친구지지	성개방성	정보수성	성행동
자극	1							
인권침해	.257**	1						
모방공유	.573**	.224**	1					
부모지지	.197**	.292**	.308**	1				
친구지지	.276**	.271**	.372**	.665**	1			
성개방성	.346**	.392**	.314**	.337**	.360**	1		
정보수성	.153**	.255**	.104**	.142**	.116**	.355**	1	
성행동	.200**	.119**	.233**	.098**	.148**	.233**	.079**	1

**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 연구문제의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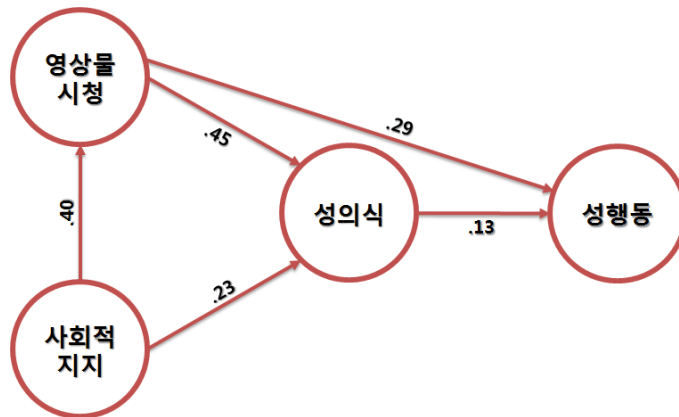
가.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구성개념간의 관계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이전에 상관관계, 요인 적재치, 표준오차를 검토 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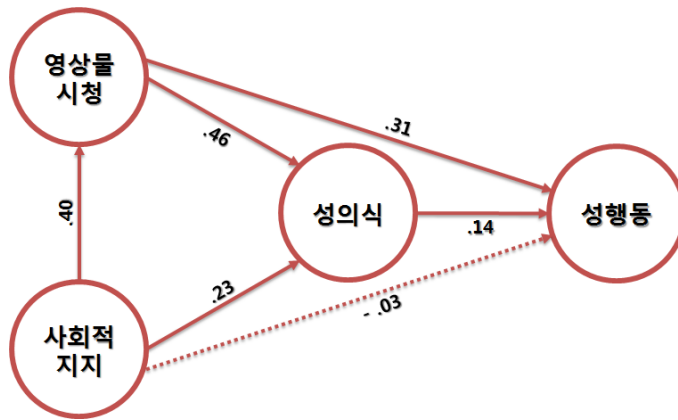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GFI, AGFI, CFI, TLI, NFI 모두 .9 이상이며, RMR은 .5 미만이고, RMSEA는 .1 미만으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MLI(Modification Indices)지수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최종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모형은 기본연구 모형에 비해서 적합지수가 비교적 향상되었으며, 다른 대안모형에 비해서 적합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비교평가는 다음 <표 IV-79>과 같다.

표 IV-79 연구모형 적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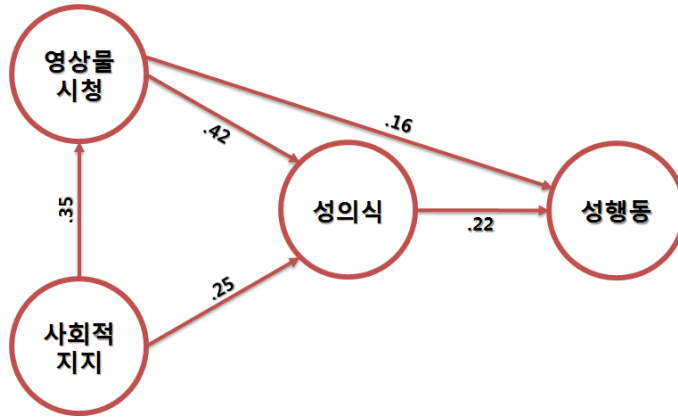
모형구분	χ^2	df	RMR	GFI	AGFI	CFI	TLI	NFI	RMSEA
연구모형	671.590 (p=.000)	16	.040	.969	.916	.940	.857	.917	.097
수정모형	670.121 (p=.000)	15	.040	.963	.911	.918	.848	.917	.100
최종모형	287.592 (p=.000)	14	.023	.983	.957	.977	.932	.964	.067



【그림 IV-73】 연구모형



【그림 IV-74】 수정모형



【그림 IV-75】 최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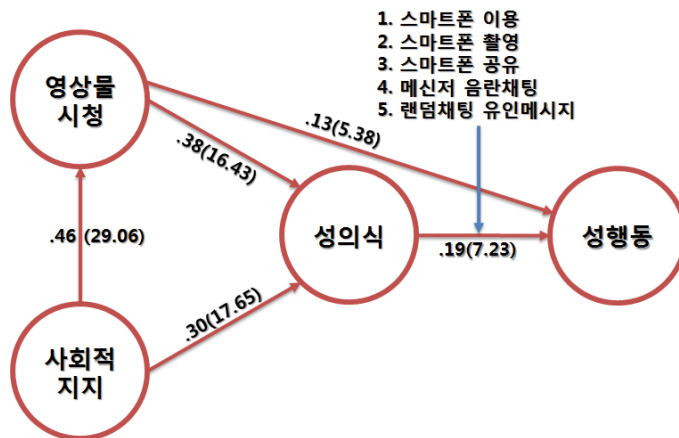
나. 가설 검증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본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AMOS 21.0을 통해 각 구성개념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 영상물 시청, 성의식, 성행동간의 영향관계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구모형의 가설을 모두 채택하였다. <표 IV-80>과 【그림 IV-76】에 제시된 모수추정치를 통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영상물 시청($\beta=.47$; $\rho < 0.01$), 성의식($\beta=.30$; $\rho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beta=.38$; $\rho < 0.01$), 성행동($\beta=.13$; $\rho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식은 성행동($\beta=.20$; $\rho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후, 【그림 IV-76】 과 같이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IV-80 연구가설 검정 결과

경로	요인부하량		C.R(t)	P	채택 여부
	표준화	비표준화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47	.35	29.06	.00	채택
사회적 지지 → 성의식	.30	.25	17.65	.00	채택
영상물 시청 → 성의식	.38	.42	16.43	.00	채택
성의식 → 성행동	.20	.22	7.22	.00	채택
영상물 시청 → 성행동	.13	.16	5.38	.00	채택



【그림 IV-76】 최종 연구모형의 검정 결과

다. 매개효과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보기 위해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81>과 같다. <표 IV-81>에 제시된 각 간접효과 결과를 보면,

성의식을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영상물 시청(.465)에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미치며, 총 효과에서는 성의식(.475)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성의식 간에 영향관계에서 직접효과는 .300이고 간접효과는 .176으로 부분매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성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간접적으로 .153의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 시청과 성의식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378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성행동(.203)에 .129의 직접효과와 .074의 간접효과로 부분매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식은 성행동에 .195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은 영상물 시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성의식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성의식, 영상물 시청과 성행동 간의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표 IV-81 연구가설 검정 결과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465**	—	.465**
	→ 성의식	.300**	.176**	.475**
	→ 성행동	—	.153**	.153**
영상물 시청	→ 성의식	.378**	—	.378**
	→ 성행동	.129**	.074**	.203**
성의식	→ 성행동	.195**	—	.195**

** : 효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함.

라. 조절효과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촬영, 공유, 음란채팅, 유인메시지를 매개효과요인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연구모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여부,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을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여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야한사진, 성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등 공유 경험여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여부, 랜덤채팅(똥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메시지 주고받은 경험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비교를 하였다. 각 모형별 구분시 다른

영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조절차이 유무를 <표 IV-82>의 ρ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대비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촬영, 스마트폰 공유, 유인메시지의 경우 ρ 값이 .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조절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음란채팅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표본별 조절효과를 적용한 결과 <표 IV-82>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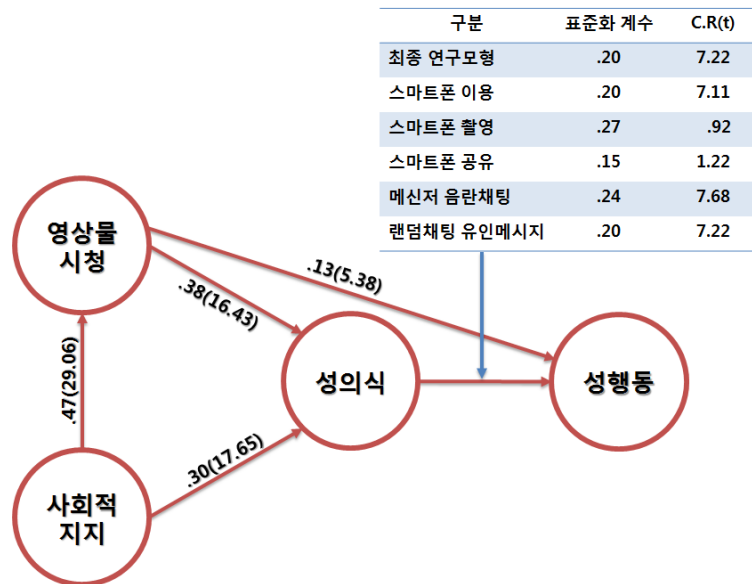
표 IV-82 각 모형별 비교

Model	DF	CMIN	P	NFI	IFI	RFI	TLI
				Delta-1	Delta-2	rho-1	rho2
스마트폰 이용	1	.05	.82	.000	.000	- 0.002	- 0.002
스마트폰 촬영	1	.31	.58	.000	.000	- 0.003	- 0.003
스마트폰 공유	1	.34	.56	.000	.000	- 0.003	- 0.003
음란 채팅	1	5.85	.02	.001	.001	- 0.002	- 0.002
유인메시지	1	- 3.80	1.00	.000	.000	- 0.004	- 0.004

각 모형별 검정결과에서 스마트폰 촬영을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공유, 음란채팅, 유인메시지는 청소년의 성 의식이 청소년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 영향관계에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대비 성의식과 성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인스턴트 메신저를 활용한 음란채팅에 대한 표본이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유인메시지, 스마트폰 이용은 근접하거나 유사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 의식과 성 행동 간에 영향관계에서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채팅이 조절효과로써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촬영 및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때 성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83 각 모형별 검정결과 비교

구분		Estimate	S.E.	C.R.	P
연구모형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47	.02	29.06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0	.02	17.65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38	.02	16.43	.00
	성 의식 → 성 행동	.20	.03	7.22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3	.02	5.38	.00
스마트폰 이용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47	.02	29.31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0	.02	16.67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38	.02	16.48	.00
	성 의식 → 성 행동	.20	.03	7.11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3	.03	5.16	.00
스마트폰 촬영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14	.14	.99	.17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49	.12	4.28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1	.08	2.66	.06
	성 의식 → 성 행동	.27	.30	.92	.17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8	.13	1.37	.15
스마트폰 공유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35	.06	6.18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3	.05	6.17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0	.06	3.21	.00
	성 의식 → 성 행동	.15	.13	1.22	.02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2	.09	1.22	.02
음란채팅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31	.05	6.31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5	.05	6.58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1	.06	3.66	.00
	성 의식 → 성 행동	.24	.03	7.68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05	.02	- 2.30	.02
유인 메시지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47	.02	29.06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0	.02	17.65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38	.02	16.43	.00
	성 의식 → 성 행동	.20	.03	7.22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3	.02	5.38	.00



【그림 IV-77】 최종 연구모형 및 조절모형 검정 결과

지금까지 사회적지지, 영상물 시청이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성 의식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표본을 스마트폰 촬영, 스마트폰 공유, 음란채팅, 유인메시지 경험여부만 구분하여 이러한 영향력의 변화와 차이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구분은 사례수 크기의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조절효과에서는 생략하였다. 표본을 비교한 결과 p값이 .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경험여부에 따른 조절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는 다음 <표 IV-8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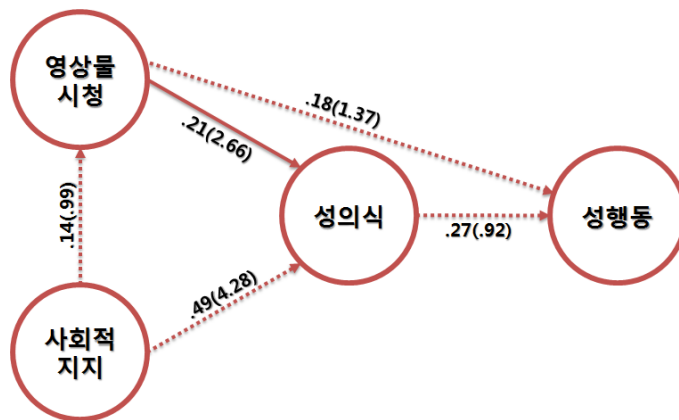
표 IV-84 각 모형별 비교

Model	DF	CMIN	P	NFI	IFI	RFI	TLI
				Delta-1	Delta-2	rho-1	rho2
스마트폰 촬영	1	.37	.55	.000	.000	- .003	- .003
스마트폰 공유	1	1.37	.24	.000	.000	- .003	- .003
음란 채팅	1	3.46	.06	.000	.000	- .002	- .002
유인메시지	1	.02	.88	.000	.000	- .005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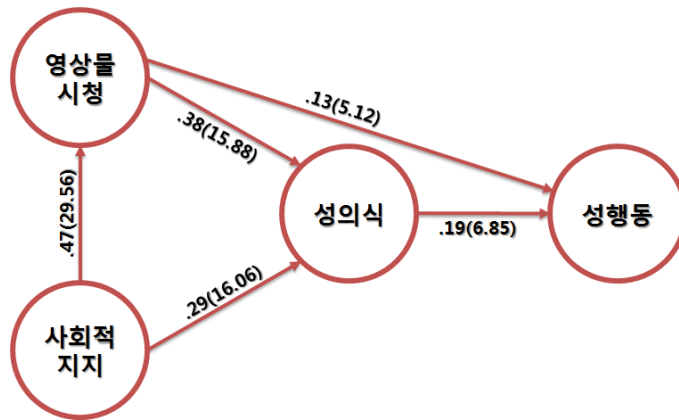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여부를 구분하여 비교를 한 결과 <표 IV-85>와 같이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성적행위를 촬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의식과 성행동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성 의식간의 영향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지지와 영상물 시청 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5 스마트폰 촬영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스마트폰 촬영	촬영경험 있음				촬영경험 없음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14	.14	.99	.17	.47	.02	29.56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49	.12	4.28	.00	.29	.02	16.06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1	.08	2.66	.06	.38	.02	15.88	.00
성 의식 → 성 행동	.27	.30	.92	.17	.19	.03	6.85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8	.13	1.37	.15	.13	.03	5.12	.00



【그림 IV-78】 스마트폰 촬영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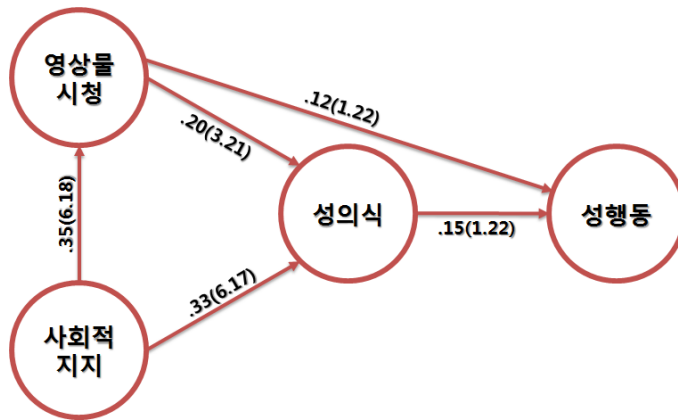


【그림 IV-79】 스마트폰 촬영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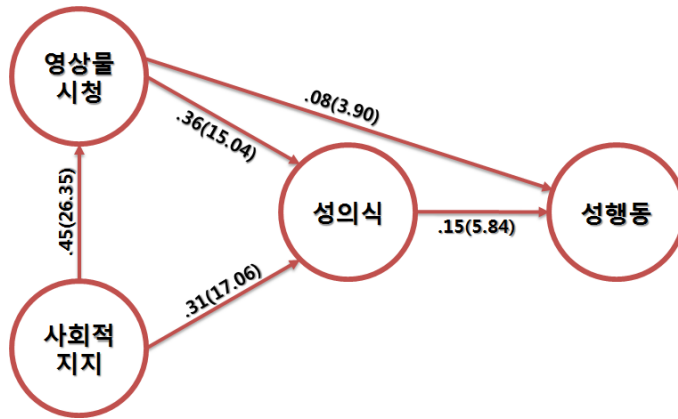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야한사진, 성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등 공유 경험여부를 구분하여 비교를 한 결과 <표 IV-86>과 같이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공유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 의식과 성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으로 공유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와 영상물 시청 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와 영상물 시청 간의 관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6 스마트폰 공유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스마트폰 공유	스마트폰 공유경험 있음				스마트폰 공유경험 없음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35	.06	6.18	.00	.45	.02	26.35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3	.05	6.17	.00	.31	.02	17.06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0	.06	3.21	.00	.36	.02	15.04	.00
성 의식 → 성 행동	.15	.13	1.22	.02	.15	.03	5.84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12	.09	1.22	.02	.08	.02	3.90	.00



【그림 IV-80】 스마트폰 공유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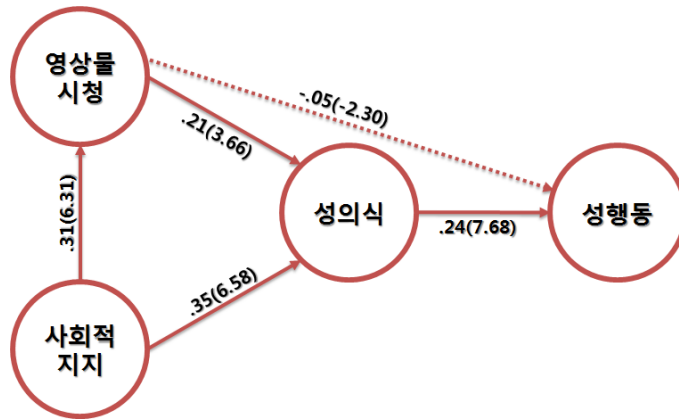


【그림 IV-81】 스마트폰 공유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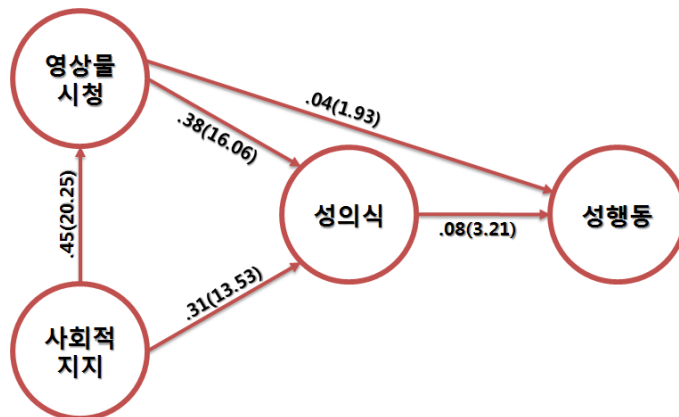
청소년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여부를 구분하여 비교를 한 결과 <표 IV-87>과 같이 나타났다. 음란채팅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 의식과 성 행동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절효과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채팅경험은 성 의식과 성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영상물 시청 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7 음란채팅 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음란채팅	음란채팅경험 있음				음란채팅경험 없음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31	.05	6.31	.00	.45	.02	20.25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5	.05	6.58	.00	.31	.02	13.53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21	.06	3.66	.00	.38	.02	16.06	.00
성 의식 → 성 행동	.24	.03	7.68	.00	.08	.01	3.21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05	.02	-2.30	.02	.04	.01	1.93	.05



【그림 IV-82】 음란채팅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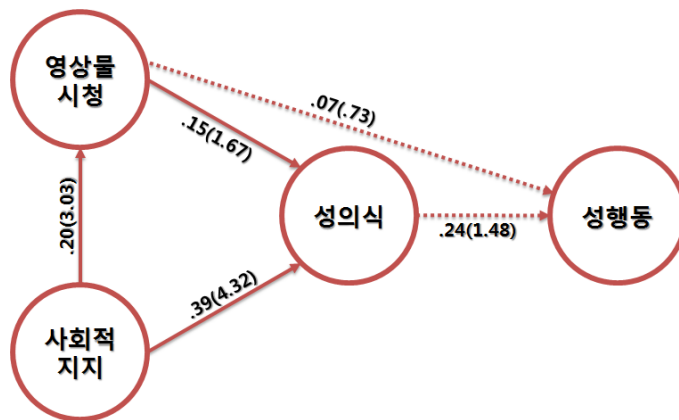


【그림 IV-83】 음란채팅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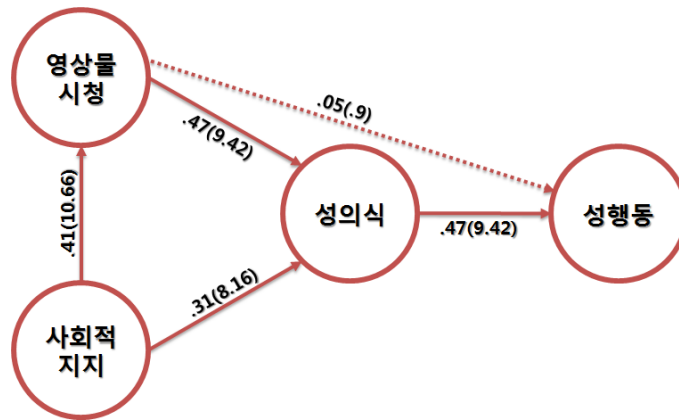
청소년의 랜덤채팅(뚝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메시지 주고받은 경험여부를 구분하여 비교를 한 결과 <표 IV-88>과 같이 나타났다. 음란채팅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 의식과 성 행동간의 영향관계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인메시지의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성 의식 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8 유인메시지 경험에 대한 효과분석 차이

유인메시지	메시지경험 있음				메시지경험 없음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사회적 지지 → 영상물 시청	.20	.07	3.03	.03	.41	.04	10.66	.00
사회적 지지 → 성 의식	.39	.09	4.32	.00	.31	.04	8.16	.00
영상물 시청 → 성 의식	.15	.09	1.67	.02	.47	.05	9.42	.00
성 의식 → 성 행동	.24	.16	1.48	.06	.26	.08	3.26	.00
영상물 시청 → 성 행동	.07	.10	.73	.19	.05	.06	.90	.28



【그림 IV-84】 랜덤채팅 유인메시지 경험 있음



【그림 IV-85】 랜덤채팅 유인메시지 경험 없음

3. 소결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17개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를 통해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응답분포를 분석해보면 응답자들은 자신에 대한 판단과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후 청소년의 인식 중 ‘요즘 아이돌 스타의 영상물이 야한 옷(짧은 치마 등 노출의상)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38%로 높았지만 정작 자신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낮게(7.7%) 나타났다. 동시에 친구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9%로 2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친구들이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12.5%에 그치고 있는 반면 28.7%로 30%에 가까운 수치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82.7%의 압도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영상물 시청 후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선 긍정적인 답변이 53.7%에 달했다. 자신은 별로 관심 없고 재미없으며 불쾌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 가운데 친구들은 관심 있고 재미있으며 따라서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일종의 자기방어기제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향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야한 영상물의 공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모순이 발견되었다. 친구와 공유한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친구들에게 그러한 영상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한 적이 있는지, 또는 야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역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동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그러한 동영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이용에 대해 도덕성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다수인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40%이상의 응답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을 학대로 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50%가 넘는 56.3%가 아이돌 스타의 노출이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결과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 스타의 야한 동영상을 자신이 따라할 경우 부모와 친구의 반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도 역시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청소년들은 그러한 영상물이 성에 대한 개방적 시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청소년의 성의식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30%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다수가(69.6%) 부정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지켜야 하는 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다수는 긍정적이었으며 역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77.8%) 부정적이었다. 그 외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질문,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는 질문 등에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다만 동성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40% 이상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혼전순결, 정신적 순결 등에 더 가치를 두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학생의 96.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3시간미만(57.4%)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앱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84.3%)로 가장 많았으며, SNS(81.3%), 모바일게임(52.6%), 영상스트리밍(49.6%), 인터넷방송(34.6%)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와 SNS는 게임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성인물과 음란물 접촉 경로의 대부분을 SNS(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13.5%), 웹하드(12.8%), 영상스트리밍(11.9%),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9.1%) 순으로 접속빈도가 나타났으며,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이후에 공유와 야한사진, 동영상, 웹사이트 공유 등의 경로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5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와 SNS가 청소년의 성인물, 음란물 등의 접촉 공유경로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과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의 모델로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한 후, 그러한 영상물의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스마트폰 이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 및 성행동에 효과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스마트폰 사용 경험, 스마트폰으로 촬영 및 업로드 경험, 스마트폰으로 성인사이트, 영상물 등 공유 경험,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 송수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영상물 시청에 직접효과(465, $\rho < .01$)가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성의식(475, $\rho < .01$)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성의식 간에 통계적으로 작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분매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378($\rho < .01$)로 사회적 지지가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대비 직접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고, 총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매개할 경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분매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성의식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효과를 비교하면 영상물 시청(.074, $\rho < .01$)이 사회적지지(.153, $\rho < .01$)보다 적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직접효과(.129, $\rho < .01$)를 포함한 총 효과(.203, $\rho < .01$)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195, $\rho < .01$)보다 직접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총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성의식을 매개할 경우 성행동에 더 큰 영향관계를 가지는 부분매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여부,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을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여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야한사진, 성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등 공유 경험여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여부, 랜덤채팅(돛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메시지 주고받은 경험여부에 대하여 각 경험여부에 따른 표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스턴트 메신저의 음란채팅이 조절효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촬영경험은 영향관계에 유의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연구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채팅을 규제할 경우에 청소년의 성행동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음란채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상의 인스턴트 메신저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규제 혹은 완충적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과정을 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과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성의식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의 빈도가 증가하여도 성행동이 완화되며, 청소년의 성의식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성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친구 혹은 지인들의 관심이 청소년의 성 정체성(의식)을 확립하며, 올바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방과 공유가 확산됨과 동시에 성의식이 개방화되고, 성관련 행동들이 증가하는 영향을 가진다. 즉, 청소년기의 아이돌 스타의 영향은 그들을 모방과 공유, 콘텐츠 재생산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에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 개방화를 통해 부정적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의식이 개방화될수록 부정적 성행동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완화하는 역할로 스마트폰 이용을 매개효과를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는 최종 연구모형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음란채팅이 증대·확산 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란채팅은 성 상품화의 확대·재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청소년의 음란채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성 행동에 대한 완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음란채팅을 규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채팅문화를 양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V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 V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연구*

1. 조사 개요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와 영향,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3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1대 1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V-1>과 같다.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성별	교급 및 연령	가족구성	부모님 최종학력	부모님 직업유무	가정 형편	희망교 육수준
1	남	고2 (18세)	(외)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아버지-중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고졸
2	남	고 2 (18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아버지-고졸 어머니-잘 모르겠음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2~3년 제
3	여	고 2 (18세)	아버지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없음 어머니-해당사 항 없음	보통	4년제
4	여	고 2 (18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4년제 대졸 어머니-4년제 대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4년제
5	남	고 2 (18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초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매우 못 삼	고졸
6	여	고 2 (18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초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없음 어머니-있음	보통	4년제
7	여	고 2 (18세)	아버지,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해당사 항 없음	보통	2-3년 제
8	여	고 2 (18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2-3년 제
9	여	고 1 (17세)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잘 모르겠음 어머니-잘 모르겠음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고졸
10	여	고 1 (17세)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2-3년제 대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고졸
11	여	고 1 (17세)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이상	고졸
12	여	고1 중퇴 (17세)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못 삼	4년제
13	여	고1 (17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잘 모르겠음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매우 못 삼	고졸

사례 번호	성별	교급 및 연령	가족구성	부모님 최종학력	부모님 직업유무	가정 형편	희망교 육수준
14	여	중학교 종퇴 (18세)	아버지, 할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해당사 항 없음	보통	고졸
15	여	20세	어머니	어머니-잘 모르겠음	어머니-있음	못 삼	고졸
16	여	고 1종퇴 (19세)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보통	4년제
17	여	17세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중졸 어머니-중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중	고졸
18	여	15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	대졸
19	남	고 2 (18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중	고졸
20	남	고 1 (18세)	아버지	아버지-대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하	고졸
21	남	고 1 (19세)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잘 모르겠음 어머니-있음	중	고졸
22	여	고 1 (17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상	고졸
23	여	고 1 (17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2-3년제 대졸 어머니-2-3년제 대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	고졸
24	남	고 1 (18 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4년제대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	4년제
25	남	고 3 (19 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	4년제
26	남	고 2 (19 세)	아버지	아버지-중졸 어머니-잘 모르겠음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하	고졸
27	여	고 2 (18 세)	아버지,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없음	보통	대졸
28	남	고 1 (18 세)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대졸 어머니-잘 모르겠음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상	대졸
29	남	고 2 (19 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고졸 어머니-대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보통	4년제
30	여	고 2 (19 세)	아버지, 형제 또는 자매	아버지-고졸 어머니-고졸	아버지-있음 어머니-있음	중	4년제

2) 조사도구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성윤숙, 박병식, 2009; 홍봉선, 남미애, 2010) 분석과 성매매대상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 특성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전문가 4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성매매 청소년 및 학생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성 상품화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V-2 심층 면접 질문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아이돌 스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경험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의한 성적인 자극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공유한 경험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상상해본 경험 -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주변인의 반응
2	스마트폰 이용 행태	-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 -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 여부 -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공유 여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채팅을 해본 경험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한 행동 -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 -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 -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 좋아하는 영상물 - 즐겨보는 영상물 -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3	랜덤채팅 어플 (어플리케이션) 이용	- 현재 이용하고 있는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 - 랜덤채팅 어플에 가입한 계기 - 랜덤채팅 어플의 이용 목적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메시지 송수신 여부 -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본인 반응 -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를 한 경험 -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한 생각 - 결혼 전 순결에 대한 생각 -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경험 -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 -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 조건만남으로 버는 수입 -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 -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 -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 조건만남 후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 탈조건만남을 위한 노력 -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 청소년의 랜덤채팅 이용금지, 성인 및 본인확인 강화 등에 관한 생각 - 조건만남 후의 달라진 본인의 삶
4	일반적 특성	- 성별 - 연령 - 함께 살고 있는 가족 - 부모님의 학력수준 - 부모님의 직업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본인의 희망교육수준

3) 연구절차

문화기술적 접근은 청소년 성 상품화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들 자신의 의미 창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 상품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4년 5월 초부터 시작하여 2014년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취한 본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 장소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 제보자들의 심층면접은 주 제보자들의 사정에 따라 1~2회 개별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녹취하는 것을 승낙 받아 녹음을 하였다.

또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시작 전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식사를 같이 하거나 다과를 먹으며 한 시간 정도 그들 옆에서 행동을 관찰하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이나 모습, 표정 등을 현장노트에 적었다. 이렇듯 제보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는 각 개인의 개별적 관심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면접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새로운 느낌들을 현장노트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것을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였다(성운숙·박병식, 2009).

표 V-3 심층 면접조사 방법

주요 요소	청소년 성 상품화 대상 청소년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청소년위기교육센터, 대안교실 담당자 등 현장 전문가에게 의뢰
면담참여자 수	30명
표집방법	눈덩이표집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성취도, 가출경험, 비행경험, 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음, 한부모나 조손가정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2시간, 1~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자료 기록 및 녹취 실시
면담자	연구자

4) 자료 분석

현장 노트를 읽을 때마다 연구지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상되는 비유나 속담을 포함한 일차적인 해석들을 적고 검토하였다.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하여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핵심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웹(web)을 만들었다.

자료의 범주화에서 주제영역 분류를 청소년의 스마트폰 행태(빈도, 계기), 랜덤채팅 동기, 랜덤채팅 청소년의 심리, 주변환경, 가정체계, 지역사회체계,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상·하위 범주들을 정하고 이를 부호화 범주로 전환한 뒤 현장노트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코딩작업을 완결하였다. 마지막으로 표기된 부호와 범주의 수대로 현장노트를 복사해서 범주별로 정리한 뒤 동일 범주의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위하여 자료 분석을 하는 동안 ‘좋은 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청소년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여 자료와 분석결과를 재검토하였다. 즉 제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관점, 시간, 공간, 상황 등을 달리하여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Denzin, 1978; Goetz & LeCompte, 1984, 성윤숙·박병식, 2009 재인용).

2. 조사결과

1) 심층면접조사

(1) 일반적 특성

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묻는 질문에 30명 중 14명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라고 응답했으며, “엄마랑 새아빠랑. 저희 오빠는 일하러 갔어요.”, “가족들 다. 누나, 저, 엄마, 아빠.”, “엄마, 새아빠.”라고 응답했으며, 재혼 가정도 적지 않았다. 14명의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이라고 응답했고, “할머니 계세요. 엄마, 여동생이요. 아버지는 이혼하셨는데 따로 만나요.”,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어요.”, “엄마는 저 5살 때 아빠랑 이혼했어요.”, “엄마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 누나 둘이랑 살아요. 아빠랑 이혼했어요.”라고 응답했다. 또한 2명의 청소년은 조손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새엄마랑 아빠랑은) 같이 살았는데 친구랑 문자로 새엄마 욕하다가 걸려서 쫓겨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요. 엄마, 아빠는 다른 동네에(살아요).”라고 응답했다(부록 5, <표 I-1> 참조).

질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1. 할머니 계세요. 엄마, 여동생이요. 아버지는 이혼하셨는데 따로 만나요. Q. 아빠는 재혼하셨어요? 그냥 애인만. Q. 아빠는 왜 만나? 아빠가 만나자고 해서. Q. 용돈도 주고 그래? 네. 같이 밥 먹고. Q. 엄마랑 아빠랑은 안 만나? 네 안 만나요.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연락해요. Q. 엄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 애인은 있는데 재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2.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Q.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엄마는 저 5살 때 아빠랑 이혼했어요. Q. 엄마 안 만나? 엄마 가끔 만나요. 1년에 한두 번. Q. 엄마는 결혼하셨어요? 엄마 재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Q. 만나는데 확실히 몰라? 엄마 재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Q. 엄마 만나서 뭐해? 밥 먹고 쇼핑하고 그래요. Q. 네가 만나자고해? 제가 만나자고 하면 엄마가(나와요). Q. 엄마가 먼저는 안 해? 네. Q.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카우신 거야?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정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엄마 만나는 이유도 뭐 사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Q. 엄마는 잘해줘? 네.
3. 아빠요. Q. 왜 다른 사람은 없어?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어요. Q. 너는 왜 아빠랑 살아? 엄마 쪽에 남자가 있으니까. 지금 애기도 가져서. 애기도 3명씩이나 있어요. 아빠가 저 거기서 가족을까봐 데리고 왔고 왔다고. Q. 그 전에 알았어? 엄마가 그런 거? 아빠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참다참다 못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넷째인데 위에 다 죽었던 말이에요. 첫째는 그냥 첫째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였는데 죽었고, 제가 넷째예요. Q. 어떻게? 태어나다가. 낙태하다가. 태어나다가 죽었고, 저 태어났어요. 또 애가 한명 더 있었대요. 엄마 배 속에. 그런데 아빠랑 동의하지도 않고 그 남자랑 가서 낙태를 시킨 거예요. 그 애를. 그래서 아빠가 참다못해서 크게 싸우고 이혼해서 그 남자랑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지금 세 명이에요.
13. 엄마랑 새아빠랑. 저희 오빠는 일하러 갔어요. Q.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 거야? 언제? 중1, 중2. Q. 엄마, 아빠 이혼해서 방황한 거야? 네. 엄마한테 나 죽는다는 소리도 많았고. Q.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해서? 아니요. 재혼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싫어했어요. 새아빠를. Q. 네가 싫어하는 거야? 제가 새아빠를 진짜 싫어해요. Q. 지금도? 지금도 싫어해요.
15. 엄마요. Q.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Q. 형제, 자매도 없어? 네. Q.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어? 저 고1 때요. Q. 엄마는 재혼 안 하신대? 네.
17.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Q. 엄마, 아빠는? 새엄마랑 아빠랑. Q. 같이 안살아? 같이 살았는데 친구랑 문자로 새엄마 욕하다가 걸려서 쫓겨났어요. Q. 그래서 할머니네서 사는 거야? 원래 할머니네서 살았는데 새엄마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쫓겨나서 다시 할머니랑 살아요. Q. 원래 엄마는? 몰라요. 누군지. Q. 언제부터 없었어? 엄마 얼굴을 사진보고 처음 알았어요. Q. 그게 언제였어? 중학교 때쯤. Q. 그전에는 엄마가 없었어? 네. Q. 누가 키웠어? 작은 엄마가 새엄마 오기 전까지. 새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을 거예요. Q. 새엄마가 얼마나 널 카운 거야? 4년, 5년. Q. 새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네. 받아쓰기 같은 거 안 풀면 때리고 그랬어요.
18. 엄마, 새아빠, 새아빠가 친아빠처럼 완전 잘해줘서. 완전 친아빠 같이 배고프다고 불러뽕사오고. Q. 너 혼자야? 오빠도 같이 살았는데 오빠랑 아빠랑 너무 많이 싸워서 오빠 나가고. Q. 새아빠가 너만 예뻐해줘? 네. 오빠는 싫어해요. 남자라고. 저만 예뻐해요. Q. 원래 엄마가 이혼하신거야? 네. Q. 언제 아빠가 새로 들어왔어? 5살 때. 엄청 오래돼서 친아빠 같아요.
21. 엄마, 누나 둘이랑 살아요. 아빠랑 이혼했어요. Q. 아빠는 안 만나? 아빠 없어요. Q. 언제 이혼했어? 꽤 됐어요. 고등학교 때. Q.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가족 애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열 받아요.
28. 가족들 다. 누나, 저, 엄마, 아빠. Q. 엄마, 아빠는 재혼 같은 거 하신지 않았어? 재혼이 뭐예요? Q. 다시 결혼하는 거. (재혼) 아니에요.
29.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요. Q. 엄마, 아빠는 같이 안살아? 엄마, 아빠는 다른 동네에 친애이긴 한데 신방동이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일하느라고 저 봐줄 사람이 없으니 까 할머니한테 맡겨놔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엄마아빠한테 안 갈 거라고 여기서 살 거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게 된 거죠.

② 가정형편

가정형편에 관한 질문에 청소년 30명 중 ‘중’이라는 응답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 1명, ‘하’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보통. 공부하는 건 주는데 용돈은 안 받아요. (용돈이 필요하다면) 알바하든지 해요.”, “엄마도 해줄 건 다 해주세요.”, “(용돈을) 하루에 만원씩 받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줘요.”, “매우 못살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했다.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괜찮아요. (용돈은) 필요할 때나 줄때 받고 그래요. (알바는) 하는데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해요.”라고 했다. ‘하’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빚만 8억인가 그래요. 집도 자기들 빚내서 사고. 그리고 친아빠가 위자료도 안 주고.”, “원래는 중간정도는 됐는데 아빠가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착해가지고.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아빠가 급한 거 돈 막을 데 있어서 돈 돌려 달라 그러면 한 번도 돌려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 다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형편이 좀 안 좋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살 만큼. 힘들긴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 사는 거죠.”라고 했다(부록 5, <표 I-2> 참조).

질문: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상 28. 괜찮아요. 상. 괜찮게 살면 '상' 이죠. '중' 은 조금 어렵게 살면 '중' 아닌가? Q. 용돈 얼마 받아? 다 달라요. Q. 대충. 저는 필요할 때나 줄때 받고 그래요. Q. 알바 같은 거 해? 하는데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해요. 이제. Q. 원래 무슨 알바 했어? 저 서빙이요. Q. 얼마나 벌었어? 한 달에 7-80. Q. 지금은 왜 안 해? 엄마가 하지말래요. 힘들어하니까. □ 중 3. 중간. 매우 못살진 않은 것 같아요. 14. 보통. Q. 그런데 용돈만 안 주시는 거야? 네. Q. 필요한 건 어떻게 해? 공부하는 건 주는데 용돈은 안 받아요. 아니면 알바하든지 해요. 27. 보통. Q. 아빠가 돈을 많이 버셔? 모르겠어요. 용돈을 제대로 줘요. Q. 용돈은 얼마나 받아? 하루에 만원씩 받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줘요. 30. 중. Q.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빠가 잘 해주셔? 네. 엄마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줄 건 다 해주세요. Q. 같이 안 살지만 엄마도 너희에게 다 해줘? 학비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가끔씩 와서 해주세요. Q. 엄마는 결혼 안 하셨어? 네. Q. 아빠도?	네. Q. 합치셨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 아빠의 일이니까. □ 하 13. 하. Q. 엄마, 아빠가 사장인데? 빚만 8억인가 그래요. 집도 자기들 빚내서 사고, 그리고 친아빠가 위자료도 안 주고. Q.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100만원씩이나 줘? 제가 다 졸라서 사주는 거죠. Q. 알바비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이야? 아니요. 안 포함해서.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Q. 네가 필요할 때만 줘? 네. 수학여행 갈 때나, 애들끼리 바다에 갈 때나, 애들끼리 어디 놀러갈 때. 다른 때는 안 줘요. 제가 달라고 하면 주는 스타일이라서. 20. 하루 벌어 하루 살 만큼. 힘들긴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 사는 거죠. 앞만 보고. 26. '하' 인 것 같아요. 원래는 중간정도는 됐는데 아빠가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착해가지고.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아빠가 급한 거 돈 막을 데 있어서 돈 돌려 달라 그러면 한 번도 돌려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 다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형편이 좀 안 좋아요. Q. 그래서 네가 알바하는거야? 네. 휴대폰 매매 해가지고 그게 잘 될 때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요. Q. 한 달에 얼마정도 벌어? 평균 한 100만원.

③ 부모님 직업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앞서 언급했던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은 대부분 “네. 둘 다 사장이에요, 식당.”, “두 분이 가게하세요. 치킨집.”라고 응답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외벌이가정의 청소년은 “아버지는 다리 다쳐서 아직 일 안해요.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인테리어 하시다가 뺑소니 당하셔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 다니세요. 일은 하세요.”, “(아버지는 감성주점에 서)피아노치고 색소폰 불고.”라고 응답했다. 또한, “아빠 직업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마는 주부예요.”, “아빠 직업 있는데 무슨 직업인지 몰라요. 새엄마는 주부예요.”, “엄마는 옷가게, 아빠는 관심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겠죠.”라고 응답하면서 부모님의 직업을 모른다는 청소년도 있었다(부록 5, <표 I-3> 참조).

질문: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3. 아버지는 다리 다쳐서 아직 일 안해요. 엄마는 몰라요.
 13. 네. 둘 다 사장이에요. 식당. Q. 각자 해? 여기가 엄마 식당이면, 다른 식당, 다른 식당, 아빠 식당. Q. 부자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쓰는 게 많으니까. Q. 뭘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한 달에 돈 달라하고, 옷 사달라고 하면 100만원 넘으니까. Q. 100만원이 나 써? 그래서 제가 알바 하고. Q. 어떤 알바 해? 엄마 가게에서 알바 하고, 제가 안 입는 옷이 진짜 많아요. 그거 팔아요. 친구나 카페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0만원 벌어요.
 15.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하신다고 들었어요.
 16. 아빠 직업이 원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마는 주부예요.
 17. 아빠 직업 있는데 무슨 직업인지 몰라요. 새엄마는 주부예요. Q. 엄마, 아빠는 애기 못 낳았어? 새엄마 말로는 아빠 정자가 부족해서 못 낳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엄마가 담배를 펴요. 어릴 때부터 펴서 몸이 말이 아닌가 봐요.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임신 못하는 것 같아요. Q. 둘이 사는데 언니하고 너만 있네. 아빠는 너희들에게 신경 안 써? 신경 쓰긴 써요. 전화해서 사랑한다,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빠 별로 안 좋아해서. Q. 결국 엄마가 너희를 싫어하니까 내쫓은 거야? 네. Q.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싶어? 아니요. 불편해요. 그 집 자체가. Q. 거기는 잘 살아? 아니요. 이번에 이사했다는데 원래 저희 집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인데 더 좁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더 좁으니까 못 살겠어요. 넓다가 좁은 데로 옮기니까 답답해요.
 20. 네. 아버지는 인테리어 하시다가 뺑소니 당하셔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 다니세요. 일은 하세요. 몇 개월 동안 못 견고 그랬어요. Q. 생활은 어떻게 했어? 제가 했죠.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밥 먹고 다 하죠. Q. 밥은 누가해? 밥은 집에서 해먹지 않아요. 귀찮아서. 라면 사먹고, 좀 굶다가 알바 가서 먹고.
 21. 엄마는 옷가게, 아빠는 관심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겠죠.
 24. 네. 두 분이 가게하세요. 치킨집.
 27. 연주. 피아노치고 색소폰 불고. Q. 어디서 연주하셔? 감성주점 그런데.

④ 희망하는 교육수준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30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고졸이면 돼요”, “고등학교까지요.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꿈이 없어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만 받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만 하려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대학등록금까지 하면 빛이 더 더해지니까 싫어요.” 등의 내용처럼 고등학교 졸업까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3명의 청소년은 “전문대요.”와 같이 2~3년제 전문대라고 응답했고, 12명의 청소년은 “대학교 가야죠. 4년제 가야죠”,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생활 마치고 싶어요.” 등으로 대학교 졸업까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부록 5, <표 I-4> 참조).

질문: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 고등학교 졸업 1. 고졸이면 돼요. Q. 왜?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갈 텐데 어중간해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3.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대학등록금까지 하면 빛이 더 더해지니까 싫어요. Q. 대학교 가기 싫어? 가고는 싶은데 가기 싫어요. Q. 왜? 대학등록금도 그렇고, 가도 안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고생해도 똑같으니까. 19. 고등학교까지요.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파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20. 고등학교 졸업만 하려고요. Q. 뭐 하고 싶어?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죠. Q. 어떻게 하려고?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리든 뭘 해야죠. 일단 돈이 우선이니까 돈 벌어야죠.	□ 전문대 졸업 2. 전문대요. Q. 너는 꿈이? 모델이요. □ 4년제 대학교 졸업 16.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Q. 꿈이 뭐야? 노래요. Q. 가수되고 싶어? 네. 춤추는 거 말고 발라드 가수. Q.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다는 거지? 네. 24. 모르겠어요. 오디션 만약에 있어서 합격하면 고졸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대학교 가야죠. 4년제 가야죠. 29. (4년제)대학생활 마치고 싶어요. Q. 전공은?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중이에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아이돌스타를 중심으로

①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게 되는 매체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에 대해 30명의 청소년 중 모두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TV와 스마트폰, 인터넷(컴퓨터), 페이스북을 더한 다중 매체 이용 형태를 보였다. 그 외의 매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잡지, 광고, 스마트폰, 뮤직비디오, 공연 관람을 통해 아이돌 스타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TV에서 많이 보죠.,” “음악.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그런 거 봐요.,” “저는 TV. 뮤직뱅크나 쇼음악중심 그런 거.”라고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돌 스타를 본다고 한 청소년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도 보죠.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으로만 봐요. TV를 안 봐가지고.”라고 응답했다(부록 5, <표 I-5>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17. 스마트폰으로만 봐요. TV를 안 봐가지고. Q. 다른 거 본 적 없어? 뮤직비디오도 핸드폰으로 봐요. Q. 어떤 아이돌 스타를 봤어? 엑소 밖에 없는데. Q. 엑소가 남자 아이돌 스타야? 남자. Q. 여자는? 여자는 다 싫어요. 18. 스마트폰이나 TV Q. 주로 누구 보는데? 남자요. EXO나 BTOB. 19. 저는 TV. 뮤직뱅크나 쇼음악중심 그런 거. Q. 어떤 아이돌 스타? 남자? 여자? 남자는 필요 없고, 저는 에이핑크나 아니면 걸스데이. 그렇게. Q. 노출 많이 해? 에이핑크는 모르겠는데, 걸스데이는 노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Q. 노출은 어느 정도 해? 아니요. 배랑 바지가 짧고 아님 막 치마나 그 중국에서 입는 그런 거랑 대충 뭐 그렇게 입어요. 20.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죠. Q. 주로 누구 보는데?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은 없어요. 딱히 뭐 걸스데이 이런 거. 올라오니깐 Q. 아한 거 같아? 당연히 저기하죠. 치마도 짧고 하니깐. 요새는 뭐를 해도 그런 게 있어야 된대요. Q. 페이스북에서 보는 거야? 네.	Q. TV에서는 안 봐? TV를 잘 안 봐요. 별로 스마트폰이 저기하게 되니깐. 21. 음악.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그런 거 봐요. 주로 보는 애들이 걸스데이, 그리고 AOA. Q. 너 방에 갔다 왔어? 교도소랑 소년원 갔다 왔어요. 3개월 전에 나왔어요. 2012년도에 들어갔다가 강도 상해 흥기. Q. TV를 통해서 본 거야? TV를 통해서 보고, 요즘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노래감상하고,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좀 보고. 24. TV에서 많이 보죠. Q. 다른 건?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서. Q. 스마트폰으로는 안 봐요? 스마트폰으로도 보죠. 유튜브에서. 26. 핸드폰이요. Q. 핸드폰을 통해서만 봐? 근데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봐요. TV를 잘 안 봐서. Q.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서 봐?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3분정도 짧막짧막하게 봐요. Q. 누구 야 주로? 여러 명이죠. 그냥. Q. 걸그룹? 걸그룹도 있고.

②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는 전체 30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12명의 청소년이 중학교, 1명의 청소년이 고등학교, 4명의 청소년이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때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4~6학년이었고, 아이돌 스타는 원더걸스, 채연이라고 했다. “원더걸스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때 채연 꺼 봤어요.”

중학교 때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청소년들은 중학교 1~2학년이었으며, 아이돌 스타는 티아라 지연이나 2NE1, 현아를 언급하였다. 고등학교는 청소년 한 명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트리블메이커, 가인, 브라운아이드 걸스라는 아이돌 스타의 이름을 응답하기도 하였다. “처음 본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옛날부터 계속 봐서 잘 모르겠어요. 현아 때 쯤.”, “. 가인이 피어나 그거 애들이 뮤직비디오가 야하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본 적 있어요.”(부록 5, <표 I-6>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 초등학교

15. 초등학교 때인가. Q. 몇 학년? 한 5학년. Q. 그 때 유명했던 애들이 누구야? 그 때 채연 꺼 봤어요. Q. 그 때 아이돌 스타였어? 그 때는, 네.
19. 원더걸스요. 초등학교 때. Q. 아하다는 생각 안 들어? 저는 보면 좀 좋은데, 그냥 아하긴 한데 그냥 좋긴 좋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고 안 좋죠. Q. 부모님이랑 같이 본 적 있어? 어쩌다 같이 TV 보다 나올 때 그냥 어쩌다 잠깐. 야한 거 나올 때 돌려요.
20. 초등학교때. 4~5학년 뮤직뱅크 이런데. Q. 그 때 유명했던 애들이 누구였어? 그 때 저기했던 애들이 소녀시대. Q. 그 때 아했어? 네 조금. 전 조금씩 조금씩 봐서.
24. 초등학교 때 봤죠. 3~4학년. Q. 누구? 아마 지드래곤 백댄서였을 거예요. Q. 여자예요? 네.
30. 초등학교 4학년 정도. Q. 그 때는 누구였어? 티아라.

□ 중학교

1. 중학교 1학년, 2학년? Q. 그 때 당시 누구 봤어요? 지연 봤던 거 같아요. 티아라 지연.
12.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올라갈 때 쯤. Q. 어떤 가수의 영상물을 봤어요? 저는 옛날 가수 많이 좋아해서. 그 때 유행했던 가수는 모르겠어요.
29. 중학교 3학년부터 고1 그 정도 때요. Q. 그때는 누가 유명했어? 에프터스쿨 유이인가? 꿀벅지라고 해서 짧은 반바지 입고 나왔잖

아요.

□ 고등학교

4. 고1.

□ 기타 (정확히 기억안남)

6. 처음 본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옛날부터 계속 봐서 잘 모르겠어요. 현아 때 쯤. Q. 현아 이후에 그런 게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네.
11. 가인이 피어나 그거 애들이 뮤직비디오가 아하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본 적 있어요. 나오고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나오고 일주일 뒤인가?
14. 그건. 브라운아이드걸스? 그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아해요. Q. 지금도 나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니까. Q.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네.
22. 짧은 기억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Q. 최근 본거나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아하다고 생각한 건 없어요? 솔직히 남자들 웃통 까는 건 딱히 아하다는 생각 안하는데, 여자들 보면 가슴 다 드러나고 짧은 바지 치마 그런 거 입고 남자랑 여자랑 춤 같이 추는데 붙어서 그러면 솔직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저렇게 해야 인기 같은 거 얻는 게 막 불쌍하기도 하고. Q. 기억나는 야한 영상물 없어요? 트러블메이커 현아랑 장현승 나오는 거.

③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한 경험 및 시기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한 경험에 관하여 30명 중 12명의 청소년들이 모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때, 춤보다는 옷을 많이 따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좀 멋있어 보여서.”, “네. 장난 식으로 따라한 적 있죠.”, “옷은 유행 따라서 막 한다고 해야 되나.”, “꼭 똑같은 옷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입는 경우는 많죠.”, “꼭 똑같은 옷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입는 경우는 많죠.”, “그냥 학교에서 축제나 그런 거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여자아이돌 그룹 춤.”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반면, 30명 중 18명의 청소년들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춤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해요.”같은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없어요. 저는 없고, 친구들이 많이 따라 해요. 친구들 중에 댄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댄스 하는 애들끼리 그냥 옷 입고 춤추는 경우도 있고.”, “춤추는 애들끼리 학교에서 그룹 같은 거 결성해서 공연 다니고.”처럼 아이돌 스타를 따라한 친구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부록 5, <표 I-7>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3. 좀 멋있어 보여서 중학교 때 옷 입는 게 예뻐 보여서. 옷 좀 짧게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줌.
10. 네. 장난 식으로 따라한 적 있죠. 평소에도 그래요. 밖에 나가고 그럴 때.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15. 아니요. 그냥 그런 춤은 별로 안 좋아해서. Q. 옷 같은 거는? 옷 같은 거는 그렇게 입은 적은 있어요. 막 이렇게 파인 옷이나. 중학교 때요.
16. 옷은 유행 따라서 막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머리부터 신경 많이 써요. Q. 아이돌 스타를 많이 따라 했어? 네. 똑같이 따라 하지는 못하죠. 한도가 있으니까. Q. 주로 어떤 걸 따라했어? 그냥. 화장법 이런 것도 그렇고. 화장법 그냥 아이라인 그리는 법. 머리 색깔도 했었고. 그냥 옷은 내 몸이 따라주는 데까지만. 춤은 관심 없어요. 춤은 장난으로. Q. 어떤 춤 했어? 그냥 막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끝반 춤추고 그게 그냥 무늬만 흉내 내는. Q. 현아의 끝반 춤 같은 거? 네. 초등학교 때요. 5~6학년 때요. Q. 초등학교 때부터 스타일을 따라 하게 됐어? 막 그 때 갑자기 반향이 시작돼서 그 때부터 좀 밖으로 하게 됐어요.
22. 춤이라기보다는 옷 같은 거는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그냥 저렇게 입으면 예쁘거나 그런 거 때문에 꼭 똑같은 옷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입는 경우는 많죠. 다른 애들이나 저나. Q.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요? 그냥 좀 밝은 옷도 좋아하고 많이 짧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에 좀 붙는 거. 상의가. 예전부터 옷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23. 옷은 없고 춤. Q. 춤은 어떤 걸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축제나

그런 거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여자아이돌 그룹 춤. Q. 어떤 여자아이돌 그룹을 따라했어요? 걸스데이. 중학교 3학년 때. Q. 그럼 친구들 중에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하는 사람 있어요? 따라서 입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은 많아요.

□ 없음

1. 아니요. 저는 남자인데. Q. 아나~ 아이돌 스타 남자는 보이그룹도 있는데. 짐승돌?. 저는 춤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해요. 아니요. Q. 그럼 옷은 어떤 걸 입었어요? 그냥 노출 제일 많았던 게 메리야스에 청바지. Q. 그건 뭐예요? 보고 따라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입고 싶어서 입었던 거예요.
7. 아니요. 친구들이 옷 같은 거 말고 춤 같은 거 학교 축제 같은데서.
8. 없어요. Q. 주변 친구들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해요.
9. 아니요. Q. 주변 친구들 중 따라 하는 걸 봤나요? 따라 하는 것 못 봤고 애들 사이에 입스문 나가지고 봐 보라고.
11. 없어요. Q. 친구들도? 없어요.
13. 없어요. 저는 없고. 친구들이 많이 따라 해요. 친구들 중에 댄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댄스 하는 애들끼리 그냥 옷 입고 춤추는 경우도 있고. Q. 학교에서요? 학교에선 안하고 공연 같은 거요. Q. 친구들 중에 공연 같은 거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 하나 입고 한 적도 있고.
27. 없어요. Q. 왜? 그런 거 싫어해요. 노출 심한 것. Q. 왜 싫어해? 파인 것 입으면 가리게 돼요. 창피해요.

④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한 성적인 자극 경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한 성적인 자극 경험 관련 질문에 30명 중 4명의 청소년만이 성적인 자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6명의 청소년은 성적인 자극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섹시하기만해요.”, “성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제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와 되게 몸매 좋네, 섹시하네, 남자들 봐도 몸 괜찮네 이런 정도지 막 그런 쪽으로는.”, “전혀요.”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일견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성적 자극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자 중 19명이 여자 청소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인 자극이나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적 자극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진짜 그런 거 보고 막 유흥업소 간 적도 있고.”, “저런 여자랑 살면 좋겠다. 자위 같은 거 한 적은 있어요.”, “상상만해도 좋은데.”라고 응답하였다(부록 5, <표 I-8>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까?

□ 있음

1. Q. 예를 들면 요즘에 스텔라 티저 광고 같은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Q. 그러면 아이돌 스타 여자 걸그룹 아하지 않아요? 아하쥬. 많이 바뀐 거 같아요. Q. 어떻게 바뀐 거 같아요? 많이 노출도 심해지고, 파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Q. 그런 거 보면 성적 자극을 받나요? 네. Q. 어떻게 받아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하고 싶다가나 그 연예인들은 예뻐쥬. 그 뭐지. 막 실제로 TV에서만 보다가 막 예쁜 여자애들 나오고 좀 막 섹시한 춤추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진짜 그런 거 보고 막 유흥업소 간 적도 있고.
2. 받아요. 그냥 성적인 생각 많이 들고, 저런 여자랑 살면 좋겠다. 자위 같은 거 한 적은 있어요.
18. 네. 멋있다. Q. 한 번 뽀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어? 상상만

해도 좋은데.

□ 없음

20. 아뇨. 그런 건 없고. 딱 보면 그냥 섹시하다. 이정도. Q. 흥분되고 그런 건 아니고?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거 보고 흥분되고 그런 거 없는데.
22. 그냥 음 성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제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와 되게 몸매 좋네, 섹시하네, 남자들 봐도 몸 괜찮네 이런 정도지 막 그런 쪽으로는.
26. 전혀요. Q. 왜? 그냥 TV에 나오는 거 나오면 다 같이 보는 건데.
29. 섹시하긴 한데 자극을 받진 않아요. 섹시하기만해요.
30. 아니요.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그냥 '멋있다' 정도.

⑤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한 경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한 경험에 관해서 30명의 청소년 중 21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친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그냥 뭐 ‘재 저렇게 해서 야하다.’ 친구들끼리 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 막 그냥 걸레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당연하쥬. 사이트. 제 아이디 지금 애들이 다 쓰고 있어요.”, “네. 페이스북,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알려줬어요.”, “네. 있어요. 복근 같은 거 멋지다고.”,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친구들 태그하고 그랬어요.” 같은 응답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카톡과 같은 어플을 통해 주소, 사진,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구체적인 경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30명의 청소년 중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은 3명이었다. 한편, 친구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알려준다고 한 청소년은 6명이었는데, “친구가 알려준 적은 있어요.”, “저도 친구들이 말해줘서 본 거라서.”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략 두 명 중의 한 명 이상이 야한 동영상의 재 확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부록 5, <표 I-9>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3. 네. 그 왜 현아 뮤비. Q. 뮤직비디오를 누구한테 보여줬나요?
그냥 친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남자친구한테도 보여줬어요.
7. 네. 페이스북,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알려줬어요. 그 페이스북에 링크 올려서 애들 태그해놓고 공유했어요. Q. 친구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카톡으로.
12. 네. 있어요. 복근 같은 거 멋지다고.
22. 네. Q.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채 저렇게 해서 아하다.' 친구들끼리 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 막 그냥 갈레 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식. Q. 그럼 어디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냥 카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는 글 이렇게 올라오면 댓글에서 언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언급하면 막 '해 봐' 그런 식? 페이스북에 막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니깐.
24. 당연하죠. 사이트. 제 아이디 지금 애들이 다 쓰고 있어요. Q.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뭐 다운받았는지 한 번 씩 보면 현란하죠. Q. 그런데 그거 이용하려면 성인인증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머리가 나빠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하나도 못 외웠어요. Q.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분증 주웠어요.
26. 네.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친구들 태그하고 그랬어요. Q. 누구 했어? 학교 친구요. 현아요. Q. 현아 좋아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자주 봐요. Q. 왜 봐? 동영상이 자주 뜨는데 현아 동영상이 제일 많이 떠요.

□ 없음

2.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저 혼자만 봤어요.
8. 요즘 TV를 안 봐서. Q. 친구한테서 영상물을 받은 적은 없어요? 네.
14. 공유하지는 않고 그냥 얘기는 했어요. 그거 뮤직비디오나 그렇게 요즘은 현아 그런 애들 너무 아하잖아요. 좀 안 좋게 생각하고. Q.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막 공감해요.

□ 친구가 알려줌

4. 아니요. 친구가 알려준 적은 있어요. 친구가 그런 뮤직비디오 나오면 그 거 본 적 있냐고.
14. 아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말해줘서 본 거라서. Q.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봐.' 이라고 '많이 아하더라.' 이러면서.
16. 네. 다 제가 찾아 본 게 아니라. 전달 듣고 주고받고 해서. Q. 그래서 많이 알게 됐어? 아니요. 그런 걸 알게 된다 보다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좀. Q. 그걸 말로 했어? 페이스북으로 공유했어? 그냥 보여주고 같이 보고. Q. 주로 어디서 공유했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Q.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은 없어요. Q. 그래서 알려주고 같이 봤어? 네. Q. 그걸 다른데다 공유한 적은 없어? 네.

⑥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한 경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한 경험을 응답한 청소년 30명 중 5명의 청소년만이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그래서) 자위.”, “아이돌이 야한 행동을 하면 개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자기 전에 놀러가고 그런 생각하는데.”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걸 못 느꼈다니까요.”, “아니요. 그걸 보고 왜 상상해요?”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성적 자극 경험에 대한 질문과 같이 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성적 자극이나 성적 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자극을 받은 남학생의 경우 성적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대답한 것으로부터 남성 청소년들의 경우 야한 영상물의 시청이 단순한 향유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향한 의지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부록 5, <표 I-10>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Q. 그래서 뭐했어요? 자위?
그냥 혼자 그랬죠. Q.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실전이죠.
Q. 실제 영향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런 거
같아요.
2. 네. 그런 적도 있고. 아이들이 야한 행동을 하면 개로 상상을
해봤어요.
17. 네. 해봤어요. 아 누구였지. 개 이름 뭐였지. 아무튼 있어요.
Q. 뭘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 전에 놀라가고 그런 생각하는데.
Q.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상했어? 네. 그런 데이트부터 시작해가
지고. Q. 남자 아이돌 스타는 누구야? 동방신기 아닌데. 첫
번째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23. 네. Q. 어떤 거요? 뽀뽀. 남자친구랑. 뭐라 해야 되지. 막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이렇게. Q. 그냥 뽀뽀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네.

□ 없음

13.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방송이 다 언론이 다
퍼트리는데. 그렇게 야하게 하는 애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28. 아니요. 그걸 보고 왜 상상해요?
29. 아니요. 싫어요. Q. 왜? 만약 그런 사람이 제 여자 친구라면
그런 옷 입고 무대에서 춤추고 그러는데, 별로 좋다고 생각해요.

⑦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13명의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불쌍해요. 불쌍하죠.”,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몸쓸 짓이라고 생각해요.”, “애기들도 볼 텐데 노출하고 이러면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그러니깐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13명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개네들이 하고 싶으니깐.”, “이해 안돼요. 몸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로도 돈 많이 벌잖아요.”, “저희한테 좋겠죠. 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볼 수 있으니깐.” 그 외의 기타 응답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유흥업소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수위가 안 높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병신 같아요.”라고 말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도 성 상품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11> 참조).

질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한다고 생각

10. 불쌍해요. 불쌍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지들은 옷 벗고.
11.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원래 걸그룹 포맷 현아도 안 그랬는데 이제 막 계속 현아가 뜨니까 점점 회사에서 막 애 아하게 입혀놓고 좀 그러가지고.
12. 몹쓸 짓이라고 생각해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19금 같이 야한 옷을 입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5.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되게 막 다 성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도 볼 텐데 노출하고 이러면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22. 솔직히 불쌍하죠. 개네도 가수 같은 게 되고 싶어서 노력한 거고, 막 보면 얼굴도 다 고치고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성매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애들 보면 불쌍하죠. 개네들도 일단 여자고 하고 그런데 일단 벗고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걸레 같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거 보면 돈 벌려고 참 노력 많이 하는 거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불쌍해요.

□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4. 불쌍한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겠죠.
6. 그거는 그냥. 그. 개네들이 하고 싶으니깐.
8. 이해 안돼요. 몸 보여줘야 되잖아요.
19. 저희한테 좋겠죠. 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볼 수 있으니깐.
28.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로도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 기타

14. 자기들만의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깐 꼭 이제 뭐 어린애들만 보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수위가 안 높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21. 병신 같아요. Q. 왜? 안 벗어도 노래로 성공할 수 있는데, 꼭 벗으라고 하잖아요. 좀 벗어나 뜨니깐.

⑧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이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응답한 청소년 30명 중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고 생각한 청소년 11명은 “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못 쉬게 하고 뭐 계속 스케줄 같은 거 꼭 차있는 거 보면.” 등과 같이 응답했다. 반면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17명의 청소년은 “아니요. 그냥 합의 하에 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괜찮으니까 하는 거겠죠.”, “강압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니죠. 그 아이돌을 하려고 시작했던 애들이 딱 그 정도의 힘듦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죠.” 등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수는 아이돌 스타를 통한 성 상품화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12> 참조).

질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고 생각 7. 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12.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이돌이 돈을 받거나 그런 거일수도 있잖아요. 17.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잠깐 못 쉬게 하고 뭐 계속 스케줄 같은 거 꼭 차있는 거 보면. Q. 학대라는 생각이 들어? 네.	거 같아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 5. 아니요. 그냥 아닌 거 같아요. 아이돌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해요. 20.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아이돌을 하려고 시작했던 애들이 딱 그 정도의 힘듦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죠. 그 때가서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24. 아니요. 아이돌도 인격체가 있으니까 싫다면 싫다고 하겠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면 되죠. 그걸 하는 걸 보면 자기도 괜찮으니깐 하는 거겠죠. 26. 강압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기들도 딱히 크게 거부를 안 하면 학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2. 아니요.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합의 하에 하는	

⑨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청소년 30명 중 부모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청소년은 13명이었으며, “민망해서 서로 피해요.”, “막 아빠가 욕을 되게 해요. 걸린 적 있거든요.”, “욕하죠. 미친년이라고.”, “막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짧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나 어른들은 꼴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부모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4명의 청소년은 “우리 딸 춤 잘 추네.”, “잘 춘다고.”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반응이 없었다고 한 9명의 청소년은 “별로 생각 없는 거 같던데.”, “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축제 얘기하니깐 별 말 안했어요.”, “민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저걸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본다고 해서 민망해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4명의 청소년은 부모님과 아이돌 스타의 영상물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보수적이며 당연히 성개방풍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부록 5, <표 I-13> 참조).

질문: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부정적인 반응

2. 같이 본 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 TV에서 춤을 추면은 아빠랑 보면은 보기 민망해서 안 봐요. 민망해서 서로 피해요. 저는 그냥 안 봐요.
9. 막 아빠가 욕을 되게 해요. 걸린 적 있거든요. 가끔 TV 보잖아요. 뮤비 딱 보고 있으면 시스루 같은 거 브라자만 입고 그런 거 보면. 저거 뭐하는 짓이냐고 끄라고 사람 못돼먹은 년들 이라고.
10. 욕하죠. 미친년이라고. 그냥 처음에 한 번 심하게 욕먹었어요. 술집여자 같다고. 근데 신경 안 써요.
12. 막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짧다고 그러고.
16. 엄마 아빠나 어른들은 꼴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Q. 왜? 그냥 보기 싫다고. 재네랑 같냐고.

□ 긍정적인 반응

23. 우리 딸 춤 잘 추네. Q. 막 좋게 말해주셨어요? 잘한다고? 네.

26. 잘 춘다고. Q. 그때 춤은 남자애 따라 한거야? 네. Q. 누가 잘 춘대? 아빠요.

□ 반응 없음

3. 별로 생각 없는 거 같던데. 별로 그렇게 표현 안했어요. Q. 화장 몇 살부터 했어? 화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Q. 부모님이 뭐라고 안 했어?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다고 밖에 말 안 해줬어요.
4. 네. 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축제 얘기하니까 별 말 안했어요.
20. 그냥 별 말 안 해요. 너 그냥 보는구나. Q.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뮤직뱅크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별로 전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옆에서 보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는 거예요. Q. 부모님들은 뭐라고 안하셔? 아. 엄마는 아 재 왜 저렇게 싸게 입고 나와. 왜 저렇게 하냐고. 돈 벌라고 다 저러는 거야. 요즘엔 다 저래 이러면 뭐 그러냐고. Q. 부모님이랑 같이 봐서 민망하진 않아? 네. 민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저걸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본다고 해서 민망해질 부분이 뭐가 있어요?

⑩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서 13명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들도 화장했을 때 와~예쁘다는 얘기하고.”, “괜찮다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따라하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고.” 등과 같은 내용의 응답을 하였다. 6명의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냥 예의상 예쁘다 잘 어울린다. 속마음은 재 좀 그렇다.”, “헐 애 봐. 헐 재 왜 저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이상한 새끼라고 막 그러죠.”, “대놓고 하진 않고 뒤에서 수근 거리고 싸 보인다고 하고 하는 애들도 많고”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그냥 별 말 안 해요.”, “그러려니 해요.” 등의 친구들의 반응이 없다고 한 7명의 청소년도 있었다. 한편 4명의 청소년은 접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성에 대한 시각이 보다 더 개방적인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무관심한 경향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부록 5, <표 I-14> 참조).

질문: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긍정적인 반응

2. 예전에 한 번 춤 따라한 적 있는데, 그 때는 남자가 여자 춤을 따라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걸스데이 따라했는데, 축제 때 따라했는데, 그 때 호응 좋았어요.
3. 친구들도 화장 했을 때 와~ 예쁘다는 얘기하고.
12. 괜찮다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네.
30. 친구들은 다 유행하는 거라 자기들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배우려고 하고.

□ 부정적인 반응

7. Q. 다른 친구가 그런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어요? 그냥 예의상 예쁘다 잘 어울린다. 속마음은 재 좀 그렇다.
9. 헐 애 봐. 헐 재 왜 저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13. 보통 친구는 그런 거 보고 갈레 같다. 아니요 대놓고 하진 않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싸 보인다고 하고 하는 애들도 많고. Q. 근데 너는 신경 안 써? 저는 신경 안 써요. 제가 입고 싶어서 입으니까.

25. 같이 다 따라보죠. Q. 보고 말아요? 얘기 안 해요? 아까 말했는데, 욕 한다고. Q. 그 친구를 볼 때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또라이 같이 보죠. 이상한 새끼라고 막 그러죠. 딱 봐도 이상한 새끼 같잖아요. 그걸 왜 따라하고 있어요. Q. 왜요? 창피해요. 따라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꼭 그 사람 입었던 거를 따라서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 반응 없음

5. 그냥 별 말 안 해요.
27. 그러려니 해요. Q. 야한 옷이나 춤을 따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지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⑪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노출만 규제(4명), 춤만 규제(3명),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12명),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 불필요(11명)와 같이 응답하였다. 노출만 규제하자고 한 청소년은 “등 파이고, 가슴골 살짝 보이는 정도. 그것도 심한 거 같긴 한데.”, “치마는 허벅지 반 까지 뭐 그 정도나.”라고 응답했다. 춤만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한 청소년 3명은 “막 드러눕거나 그런 거 싫고.”, “너무 이제 막 서로 붙어가지고, 상체나 하체 쪽으로 너무 만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면 좀 이상하겠죠.”등과 같이 노출보다는 무대에 눕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춤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7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매우 더러워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망해요.”등의 노출 및 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반면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11명도 있었다. “뭔가 멋있는데, 매력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 등과 같이 응답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규제를 긍정하는 입장이 70%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좋아할 것이라는 대중매체관계자들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30%정도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에서 역으로 왜 대중매체의 노출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쪽 보다는 긍정적인 청소년들의 시정률이 높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록 5, <표 I-15> 참조).

질문: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노출만 규제

1. Q. 텔레비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등 파이고 가슴골 살짝 보이는 정도. 그것도 심한 거 같은데. 치마도 디게 짧고 요즘에는. Q. 춤은? 춤은, 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과해서. 표현하는 게. 남자 잡고 추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끝난 댄스. 그런 거 추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흥분되는 거 같아요. Q. 자기가 그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허용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노출은 보이는 정도. 춤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노출 많으면 좋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 볼 땐 좋은데 가족들끼리 있을 때 돌리다가 보면 되게 눈치 보여요. 뭔가 어색하고. 민망하고.
20. 저 나름대로 기준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Q. 막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죠. 치마는 허벅지 반 까지 뭐 그 정도나. 배꼽은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거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안 보이고. 엉덩이 이렇게 하체는 중요한 두 부분 큰 면적으로 가리는 거 빼고는. Q. 춤은? 춤은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춤은 보이지만 않으면. Q. 아하잖아? 성행위 연상하는 춤이라던가? 네. 괜찮아요. 근데 개네들도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Q. 청소년들이 영향 받지 않을 거 같아? 괜찮다고는 안 하고 그렇다고 안 괜찮다고는 안 해요. 그런 영향을 받는 자들도 잘못된 거니까.

□ 춤만 규제

12. 그런 건 상관없는데. 동작이나 등장인물 같은 거. 막 드러눕거나 그런 거 싫고. 등장인물은 여자들끼리 아하게 추는 것도 있고 남자들끼리 아하게 추는 것도 있고. 여자들끼리는 괜찮는데 남자들끼리 추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14. 그냥 누가 봐도 인상 찌푸릴 만한 그럴 만한 건 보기 안 좋죠. Q. 예를 들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 봤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Q. 저런 장면을 보면 좀 그렇다 라고 느끼는 거 있어? 너무 이제 막 서로 붙어가지고. 상체나 하체 쪽으로 너무 만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면 좀 이상하겠죠. Q. 노출보다는 춤 자체가? 노출보다는 춤이. Q. 늙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게 약간 좀 더 과한 거 같아요. Q. 노출은 괜찮은데? 오히려 노출보다도 몸을 보여주는 거니까.

□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

7.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매우 더러워요. 걸레 같아요. 키스나 포옹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전하게 노래 부르고 하면 되는데. 왜 옷을 벗고 노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9. Q. 아이돌 스타가 노출을 하거나 야한 춤을 추게 해도 괜찮은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훨씬 어린. 만약에 드라마도 15세라고 뜨지만 더 어린 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Q. 아이돌 스타들이 키스, 포옹, 노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보죠. 다. 그 때 뭐지. 탑이랑 이효리도 콘서트 하다가 뽀뽀했었잖아요. 그 때 반응은 좋은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연예인한테 안 좋은 감정. 만약 이효리 하면~ 아 탑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요. 키스나 노출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 불필요

3. 좀 파인 거 괜찮고. 짧은 치마도 괜찮고. 아예 다 비치는 시스루? 전 괜찮은데? 다 좋은데? 짧은 치마? 시스루? 다 비치는 거까지? 춤 같은 거도 성행위 연상 장면. 짝벌춤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뭔가 멋있는데. 매력 있는데?
6. Q. 아이돌 스타가 야한 춤이나 노출해도 괜찮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개네가 아이돌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거 보고 좋아하죠. 여자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걸레 같아요.
25.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Q. 아이돌 스타의 심한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 Q. 보기 싫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Q.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죠. 개네를 안 보면 그만인데. TV를 봐가지 나오는 건데. Q. 성행위 연상이 되는 춤을 추는 건 어떤 거 같아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Q. 그럼 키스나 뽀뽀, 포옹 중에 허용 가능한 건 뭐예요? 키스는 안 되고 뽀뽀는 되겠죠. 포옹은 안 되고. Q. 노출 같은 것도 다 괜찮아요? 네. 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⑫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에 관한 질문에 청소년은 에이핑크, 포미닛, 걸스데이, 블락비, 엑소, 지드래곤 등 아이돌 가수를 언급하였다.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은 “저는 차라리 가수들을 좋아하죠. 포맨. 개네는 그냥 가수예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은 노래 같지 않은 노래 부르니까 발라드 가수가 좋아요.”, “전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영화배우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리쌍, 포맨, 이은미, 배우는 김태희, 원빈, 주지훈, 한효주 등이라고 응답하였다(부록 5, <표 I-16> 참조).

질문: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모두 말씀해주시요.

3. 시스타 요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걸스데이 요빈에 멋있었어요. 그리고 블랙비. 블랙비는 뭔가 진짜 개성 있게 생겨서 좋고, 시스타는 모르겠어요. 원래 좀 귀찮았어요. 노래 잘 불러서. 걸스데이는 요빈에 남친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20. 아이돌 스타는 없는 것 같아요. Q. 왜?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가수들을 좋아하죠. 포맨. 개네는 그냥 가수예요. 남자 가수. 김범수, 박효신, 나얼. 이정. 김진우. Q. 여자는 없네? 여자도 있죠. 노래 잘하는 거. 손승연이 나 이은미. 윤미래. Q. 아이돌은 없네? 아이돌에 속하는 애들 노래잘하는 소녀시대 태연이나 그런 애들은 개인적으로 노래 잘하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룹 단체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7. 김태희랑 원빈이요.	21. 걸스데이.
12. 소녀시대. 그리고 김유빈이랑 유재석.	22. 빅뱅 권지용. 그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잘생겼네 이 정도. 막 다른 애들처럼 팬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요즘 다 잘 생겼는데 되게 잘생겼네 이런 정도지.
13. 리쌍, 다이아믹듀오, 빈지노, 데프콘, 조용필.	23. 전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영화배우 좋아해요. 소지섭이 나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16. 여자는 포미닛. 현아는 별로. 근데 포미닛 개네가 옷 입는 것도 고급스럽고. Q. 근데 포미닛 개네도 아하게 입잖아? 아한테 좀 옷을 있어보이게 입어요. Q. 그리고 또? 2NE1. 근데 개네도 되게 멋있어요.	25. 지금은 없어요. 지금 개네는 한효주. 한효주가 좋아요.
17. 주지훈이나 김재욱. 김동욱인가 이동욱인가. 가수는 엑소 밖에 없는데.	
19. 에이핑크, 걸스데이, 포미닛. 남자그룹은 필요 없어요.	

⑬ 좋아하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

청소년이 좋아하는 영상물은 “런닝맨, 우걸. 끝이에요.”, “무한도전, 개그콘서트.”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간 아이돌은 어찌다 보고, 엠카운트다운 그런 것들.”, “뮤직뱅크.” 등 아이돌 스타가 출연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동물농장, 음악 프로그램 안 봐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만화밖에 안 봐요. 원피스. 밥 먹을 때 TV도 안 봐요. 핸드폰만 봐요.”와 같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영상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및 연예인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부록 5, <표 I-17> 참조).

질문: 좋아하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6. 동물농장, 음악 프로그램 안 봐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엑소 팬들처럼 관심 있는 게 아니어서.	핸드폰만 봐요.
10. 런닝맨, 우걸. 끝이에요. 안 봐요.	26. 뮤직뱅크.
15. 뮤직뱅크.	27. 런닝맨.
18. 주간 아이돌은 어찌다 보고, 엠카운트다운 그런 것들.	28. 무한도전, 개그콘서트.
25.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TV를 잘 안 봐요. 저 예능도 안 봐요. 만화밖에 안 봐요. 원피스. 밥 먹을 때 TV도 안 봐요.	29. 런닝맨, 1박2일.
	30. 음악방송 좋아해요. 엠카운트 다운이나, 뮤직뱅크랑, 우리동네 예체능.

⑭ 즐겨보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

즐거보는 영상물에 관한 질문은 상기 좋아하는 영상물의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런닝맨’, ‘무한도전’,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I-18> 참조).

질문: 즐겨보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2. 무한도전, 웃겨 죽겠어요. 3.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만 봐요. 다른 건 잘 안 봐요. 5. 런닝맨, 무한도전. 7. 슈퍼맨이 돌아왔다. 10. 런닝맨, 우걸. 12. 런닝맨. 13. 런닝맨이랑 닥터이방인, 너희들은 포위됐다. 안녕하세요. 14. 그거 두 개(무한도전, 런닝맨) 제일 즐겨보고, Q. 왜 즐겨보는	거 같아? 뭔가 약간 부담 없다 그래야 되나. 15. 뮤직뱅크. Q. 왜 좋아해?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거기서 신곡 같은 거 듣고 노래 다운받고 듣는 거 좋아해서. 27. 무한도전하고 런닝맨. Q. 왜 재미있어? 유재석이 재미있어요. 얘기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28. 무한도전. 29. 런닝맨, 1박2일 같은 예능.

(3)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의 확대·재생산**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해 청소년 20명은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잠자는 시간, 수업 시간만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하루 내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 3명, 2-4시간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 3명, 5시간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 3명,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은 1명으로 나타났다. “다섯 시간.”, “열 몇 시간. 대부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16시간 정도 만지고 있겠죠.”, “저 핸드폰 없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줬는데 두 번 다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19> 참조).

질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 10시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계속 보니까 계속 봐요. 페이스북 같은 거 애들이 올려놓은 게시물. 페이스북으로 친구관계 맺은 개네들이 올리는 거. 심심하니까 봐요. 3. 거의 24시간 정도. 잘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열~. 거의 새벽까지 4.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잠들 때까지 해요. 6.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 8. 하루 종일. 14. 2시간. 17. 다섯 시간. Q. 어디서 해? 집에서. Q.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아. 다섯 시간 넘는 거 같아요. 쉴 때도 하고 만지작 하기도 하고. 여덟 시간, 여덟 시간 정도 될 거 같은데. 21. 열 몇 시간. 대부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잘 때 빼고.	23. 거의 24시간. 25.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런 거 빼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버스 올 때랑. 거의 하루 종일 쓸 걸요? 일할 때도 거의 핸드폰 보니까. Q. 수치로 나타낸다면? 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8시간, 6시간 빼고 18시간. 16시간 정도 만지고 있겠죠. 30. 수업할 때 빼고는 거의. 4시간 정도. □ 기타 11. 저 핸드폰 없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줬는데 두 번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풀더 유행했을 때 썼어요.

②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웹툰, 랜덤채팅, 음악 감상, 사진 촬영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멀티미디어로서 스마트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향유와 관계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페북이랑 카톡이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런 거.”, “메신저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해요.”, “카톡, 페이스북. 네이버 웹툰, N드라이브, 네이버, 음악.”, “애니팡 같은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페북하거나. 트위터 같은 거 살펴보고.”(부록 5, <표 I-20> 참조)

질문: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웹툰 보거나 Q. 어떤 웹툰 봐? 웹툰 내용은 그냥 연애 좀 웃기는 거 코미디. 그리고 그냥. 웹툰은 그 뭐지 프리드로우? 또 예전 거 봤는데. 지금은 안 봐요. Q. 또 다른 거 안 해? 페이스북. 애들 메시지 같은 거 보고. Q. 카카오톡은? 카톡도 하죠. Q. 친구들도 많이 봐? 네. 좀 보는 애들은 봐요. Q. 랜덤채팅은? 그건 안 해요. Q. 아자르 해 봤어? 해 보긴 해봤어요. 4. 페북이랑 카톡이요. 5.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런 거. 6.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근데 그거 두 개 말고는 하는 거 없어요. 7. 페이스북, 카카오톡, 노래 듣는 거랑, 메신저. 8. 카톡하고 페이스북. 9. 페이스북이랑 사진 찍는 거 10. 카톡, 페북. 11.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걸로 페이스북 해요. 12. 메신저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해요. 페이스북은 좋아요 누르면서. Q. 랜덤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16. 페이스북이랑 웹툰 보고. 또 카카오톡. 게임하고. Q. 웹툰은 어떤 내용이야? 웹툰은 처음 보고 있거든요. 그냥 그 대학 다니는 얘기. Q. 게임은 어떤 게임 해? 트레지? 애니팡 2, 3 자주 해요. Q.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걸 봐? 페이스북 친추되어있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Q. 랜덤채팅 해본 적 있어? 네. 옛날에 해봤어요. Q. 근데 지금은 안 해? 네. 여기 들어온 뒤로. Q. 언제 하고 안 해? 겨울, 작년 겨울.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올 1월 2월? 18.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그거 밖에 안 해요. Q. 랜덤채팅? 옛날에. Q. 졸톡? 네. 19. 페이스북. Q. 페이스북에선 뭐해? 애들이랑 글 올리고 댓글 달고, 네이버 웹툰이랑. Q. 네이버 웹툰에서 주로 어떤 거 봐? 저는 베사만도 봤었는데, 그거 끝나가지고 이제 못보고 지금 강해요랑 가도바이 스쿨이라 보카방이랑 엄청 많아요. Q. 어떤 내용이야? 싸우는 거요. 그리고 평범한 팔반. 마션 임파서블인가. Q. 너는 주로 웹툰 많이 보는 거야? 아니요. 게임 많이 해요. Q. 무슨 게임 해? 케로로 팡팡 같은 거. Q. 하루에 얼마나 해? 게임은 한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전부 다 페이스북이에요. Q. 랜덤채팅 같은 거 안 해봤어? 돛단배. 25. 카톡, 페이스북, 네이버 웹툰, N드라이브, 네이버, 음악. Q. 웹툰은 어떤 거 봐요? 거의 다 볼 걸요. 월요일엔 강시, 화요일엔 노블레스, 수요일엔 헬퍼, 목요일에는 기, 금요일엔 가도바이스쿨. Q. 요일별로 하나씩 봐요? 네. 29. 페이스북이나 게임 같은 거. Q. 페이스북에선 뭐봐? 애들이 웃긴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는 동영상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Q. 게임은? 캔디크러쉬나 쿠키런 등등. 혼자 있을 때, 버스타고 가거나 할 때 해요. Q. 랜덤 채팅은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Q. 아자르는? 아자르는 해봤어요. 30. 애니팡 같은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페북하거나. 트위터 같은 거 살펴보고. Q. 채팅도 해봤어? 채팅은 안 해보고. (카톡으로) 아는 친구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③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응답자 30명 중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 보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2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명 모든 청소년이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른 경로에 비해 페이스북에서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웹하드(5명), 게임(1명), 웹사이트(2명), 랜덤채팅(1명)으로 응답하였으며, 본 적 없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2명)도 있었다. 이는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매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파일쿠키라고. 원래는 핸드폰 말고 인터넷으로 하는 웹하드 그런 건데요. 거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가지고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게임할 때. 고스톱 칠 때.”(부록 5, <표 I-21> 참조)

질문: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 SNS

7. Q. 음란물이나 성인물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은 아동 페이지가 있어요.
17.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딱 띄웠고요. Q. 너 지금 다운 받는데 이름이 뭐야? 파일노리. 거기는 성인인증 해야 되는 사이트예요. Q. 처음 들어갈 때만 하는 거잖아. 네. Q. 또? 파일노리밖에 없는데.
25. 아니. 컴퓨터로 봤어요. 아 스마트폰 페이스북으로 뜨긴 뜨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애매해요. Q. 왜 애매해요? 일할 때 띄워. Q. 일할 때가 언제인데요? 밤 11시부터 1시 사이인데 제가 1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에요. Q. 다 지워져요? 운영자가 안 들어오는 시간대에 개네가 뿌리고 운영자가 들어오면 한 번에 다 지워버려요. Q. 컴퓨터로는 어떤 곳에서 봐요? 파일쿠키. 파일아이. Q. 다운로드받는 그런데서 본다는 거죠? 웹하드? 네. 당연히요. Q. 인터넷 방송 그런 건 안 봐요? 그런 건 안 봐요. 그런 건 수위가 낮잖아요. Q. 성인 웹사이트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 1때인가 레드투브라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성인 게시물이었어요. 거기 아동이 수 백개였어요. 거기. 완전 그걸로 봤죠. 그러다가 거기에 짝 동영상이에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서양 국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요. 그래서 PC방에서만 볼 수 있는데, PC방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 바이러스 먹일 생각으로 봐요.
28. 페이스북. Q. 하루에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몇 건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루에 2~3개. Q. 그것들을 다 봐? 넘길 때도 있고 시간 있는 날은 다 봐요. Q. 우리나라 애들이야 외국 애들이야? 우리나라 애들이요. Q. 어떤 느낌이 들어? 아하쥬. 그런데 보다가 꺼요. Q. 왜? 데이터 아끼려고.

동영상 잘 안 봐요.

□ 웹하드

2. 네. 파일쿠키라고. 원래는 핸드폰 말고 인터넷으로 하는 웹하드 그런 건데요. 거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가지고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야한 거 성인물. 성관계 맺는 거. Q. 동성애 그런 건 안 봤어? 동성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동성끼리는 외국. 안 봤는데 그런 게 나와요.
19. 많이 봤죠. Q. 어디에 주로 있었어?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그거 아 뭐 쌤 막 투투디스크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찾아 보면 한 가지가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Q. P2P야? P2P요. 그런 거랑 비슷한 사이트 많은데 거기서 무료로 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그냥 성인인증하고 봐요. 그냥. Q. 성인인증 어떻게 해? 저희 아빠 꺼요. Q. 처음 가입할 때만 아빠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다 무료니까. Q. 아빠 주민 번호로 보는 거야? 제 걸로는 못 보죠. 19금이니까.

□ 게임

15. Q. 음란물이나 성인물 접촉해본 적 있어? 네. 어떤 경로로 해봤어? 경로보다는 게임할 때. 고스톱 칠 때. Q.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좀 막 돈을 내면 옷을 벗길 수 있는? Q. 돈 내면 벗겨져? 어느 선까지? 게임에 있는 캐릭터의 옷? 네. 돈을 내고는 안했는데,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위에 옷이랑 아래 옷. Q. 그게 어느 선까지? 그냥 속옷만 차고 있는? 팬티까지? 네. 아하쥬. 그걸 호기심으로 하고 돈을 내게 하는 거니까. 돈을 내면 다 보죠. Q. 캐릭터가 엄청 리얼해? 그냥 컴퓨터상에서도 애니로 야한 게임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④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쉽,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에 관해 질문했다. 그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15명이었으며, “여자 친구랑 뽀뽀한 사진 같은 거.”, “네. 뽀뽀만.”, “네. 해본 적 있어요. 일 년 더 됐나. 그 때 성관계 하는 거.” 등으로 주로 이성친구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30명 중 15명이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남친이랑 찍은 적 없죠.”, “병신도 아니고. 그런 개 사이코 같은 짓을 왜 해요.”라고 하거나 ‘친구들이 찍은 걸 본 적 있다’, ‘한번 찍어 보고 싶다’는 일부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는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분명 사생활 침해 및 선정적인 영상물의 생산주체가 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부록 5, <표 I-22> 참조).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여자 친구랑 뽀뽀한 사진 같은 거. 뭐 뽀뽀하고. 그냥 뽀뽀한 거. 9. 네. 뽀뽀만. 17. 네. 해본 적 있어요. 일 년 더 됐나. 그 때 성관계 하는 거? 그런 거 한 때 했어요. Q. 누가 찍었어? 둘이 합의하에. Q. 그 때렸던 애가? 네. Q. 그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삭제했어요. Q. 헤어지고 나서? 네. 개 핸드폰도 바꿔가지고 안 남아있어요. □ 없음 2. 한 번도 없어요. 3. 아니요. 남친이랑 찍은 적 없죠. 15. 아니요. Q. 키스도? 네. Q. 누가 올린 거 본 적 있어? 네.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요. Q. 어떤 내용이었어? 모르는 사람들. 아둥으로도 올라올 때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하다가 찍혀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둘이 원해서. 노래방이나 길가 이런 데. Q. 얼굴도 나와? 네. Q. 왜 봤어? 그냥 보여서 봤어? 네. Q. 그게 많이 올라와? 본인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 놓은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둥을 좋아요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을 경우 제가 떠요. 제가 볼 수 있게 떠요. 장난 식으로 태그 걸거나 할 때 그 때 댓글 단다고 쓰니까. 21. 그런 걸 왜 간직해요. 병신도 아니고. 그런 개 사이코 같은 짓을 왜 해요. Q. 찍은 적도 없어? 네. Q. 여친하고 뽀뽀한 것도 찍은 적 없어? 네. 25. 아니요. 촬영해본 적은 없는데, 촬영해보고 싶어요. Q. 어떤 성적행위요? 성관계요. Q. 왜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남자들은? Q. 남자들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간직하고 싶잖아요.

⑤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려본 경험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려본 경험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총 30명 중 13명이었다. “진을 찍는데 뭐 카스에다가 배경화면. 카카오 스토리 배경화면.”, “네. 다들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뽀뽀한 거 올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요.”, “그냥 친구들이 올리면 쓰니까 저도 남자친구랑 뽀뽀한 사진 올린 적도 있고.” 등과 같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려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명이었으며, “친구들이 올린거 보면 부러워요.”라고 대답하면서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한 청소년도 있었다. 8명의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에 관해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영상물의 생산주체도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23> 참조).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네. 다들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뽀뽀한 거 올리고.
7. 페이스북 같은데 올려요. 친구들도 다 보이게 해놔요.
18. 사진을 찍는데 뭐 카스에다가 배경화면, 카카오톡 스토리 배경화면.
Q. 남자친구 있어?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옛그제? 오래 갔어요. 100일. Q. 같은 학생이야? 네. Q. 몇 살이야? 저보다 한 살 많아요. Q. 그래서 마음이 아파?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은데.
Q. 그래서 다 내렸어? 다 지워야죠. 다 지웠어요. Q. 뽀뽀한 것만 올렸어? 올린 게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해놨다가 2일

뒤에 다시 다 내렸나? 그럼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관심 받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22. 그런 거는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올리면 쓰나간 저도 남자친구랑 뽀뽀한 사진 올린 적도 있고,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안하니까.

□ 없음

13. 저는 안올리는데 친구들이 뽀뽀하는 사진이나 폐북에 올려요. 카카오톡스토리 같은 것도. Q. 친구들이 올린 거 보면 어때? 친구들이 올린거 보면 부러워요.

⑥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경로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경로에 대해 청소년 16명이 “네. 폐북에 올려봤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거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톡스토리”, “올린 것 보다는 일단 그냥 카톡 프사만 해놓는 거죠.”와 같은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SNS가 청소년유해물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록 5, <표 I-24> 참조).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유하거나 올렸습니까?

□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8. 네. 폐북에 올려봤어요.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친구들한테 뽀뽀하는 거 보냈어요.
12.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다른 데는 없어요.
13. 거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톡스토리, 그렇게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면 트위터 같은 데.
19.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 있죠. Q. 지금 사귀는 여친? 네. Q. 어깨동무 하고 손잡은 그런 거? 네. Q. 뽀뽀한 거는? 네. Q. 땀 거는 찍은 적 없고? 네. Q.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제 또래 다 그래요. 다. 커플들.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사이는

이 정도다 이런 거. Q.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해? 지워야죠.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거 지우면 되잖아요. Q. 누군가에게 공유 되잖아? 공유안하고 그냥 좋아요만 해요.

20. 올린 것 보다는 일단 그냥 카톡 프사만 해놓는 거죠.
23. 페이스북이요. Q. 그럼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Q. 주로 어디다 올려요? 저는 거의 다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 기타

10.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⑦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험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소년 30명 중 공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명이었다. “당연하죠.”, “저희가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면 다 뜨잖아요.”, “그냥 야동 같은 거 보면 댓글에 친구 언급해주고 장난 식으로.”라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있었다. 반면, 공유한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14명이었다. “받은 건 많은데 알려준 건 없어요.”, “아니요. 나 뭐 걸릴까봐 공유는 안 해요.”, “웃긴 사진들만 친구들 태그 해봤지 야한 거에는 태그 안 해봤어요.”같은 응답 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명의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에 관해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유해물의 재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25> 참조).

질문: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0. 당연하죠. 11. 저희가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면 다 뜨잖아요. 좋아요 눌러도 뜨고 광고도 많이 봤어요. 22. 그냥 야동 같은 거 보면 댓글에 친구 언급해주고 장난 식으로. 28. 네. 성인 웹사이트 알려줬죠. 친구한테. Q. 어떤 내용이었어? 포인트 있는데 있잖아요.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디스크, 파일구리 이런데. Q. 거기 성인인증 안 되지? 옛날에 했죠. 아빠 것으로 했어요. 지금은 안 봐요. 엄마가 컴퓨터 안심 이런데 걸러냈어요. □ 없음 1. 아니. 저는. 저는 그러니깐. 옛날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그런	거 보고. 요즘에는 안 보고. 이렇게 욕구 있으면 이렇게 뭐야 실전으로 풀어가지고. Q. 업소를 가서 여자와 만나요? 아니요. 업소 잘 안가고 아는 여자애들하고. 9. 받은 건 많은데 알려준 건 없어요. 16. 아니요. 나 뭐 걸릴까봐 공유는 안 해요. 20. 제가 공유한 적은 없어요. Q. 그러면 공유된 걸 본 적은 있어? 그러니깐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낚는 거 해서 몇 번 하다가 바이러스도 먹어가지고 그랬었어요. 29. 야한 동영상은 태그 안하고, 페이스북에 초성 따서 만든 웃긴 사진들만 친구들 태그 해봤지 야한 거에는 태그 안 해봤어요. Q.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 중학교 때는 자주 보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안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Q. 중학교 때는 공유해 본적 있어? 아니요. 저 혼자만 봤어요.

⑧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에 대해 응답한 청소년 30명 중 13명이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으로도 주소 알려줬어요.”, “페이스북에서 나오면 공유해가지고 아는 오빠들 태그해주고”, “웹하드에서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가입을 해서. 성인으로 가입해서 성인물도 볼 수 있어요. 큰아빠 주민번호로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30명 중 1명은 웹하드를 통해 공유했는데, “친구들끼리만. 알려주고. 아이디 주고. 볼 거 보라고.”와 같은 내용이었다. 역시 SNS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구체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의 공유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에 대해 16명의 청소년이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부록 5, <표 I-26> 참조).

질문: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공유했습니까?	
□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2. 파일쿠키 말고도 페이스북 안에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자 들이, 성인 페이지들이 야한 동영상을 올리면 몇 시간마다 썰려요. 그런 거 가끔 봤어요. 근데 거의 다 웹하드에서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가입을 해서, 성인으로 가입해서 성인물도 볼 수 있어요. 큰아빠 주민번호로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돈 내고는 한 번도 안 봤어요. Q.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 걸로, 인증은 안 받고 그냥 주민번호만 넣으면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Q.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가입할 때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지? 네. 처음 가입할 때만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5. 카카오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만나서. 12. 페이스북에서 나오면 공유해가지고 아는 오빠들 태그해주고,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22. 페이스북에서. 거기서는 공유를 할 때 댓글에서 친구를 언급할 수 있으니깐 그럼 친구한테 아는 사람이 뜨고 제가 자기를 언급했다고 뜨고 그 사람도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깐. Q. 그냥 야동 주소 한 거예요? 주소 말고 동영상. 28. 페이스북. Q. 페이스북 말고는? 카카오톡으로도 주소 알려줬어요. Q.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 고맙다고 하죠. Q. 왜 공유했어? 애들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내줘요. □ 웹하드 1. 친구들끼리만. 알려주고, 말로 알려주고, 아이디 주고, 볼 거 보라고. Q. 어떤 내용인데? 어디다 올려? 사진 말고 동영상. 음란물. 아니요. 보통 웹하드에 많아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⑨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해본 경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30명 중 18명의 청소년이 음란 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고, 12명의 청소년은 음란 채팅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음란채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8명 중 10명은 친구들과 음란한 대화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내용은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게 좀 음란적인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남자애들끼리 나 어제 누구누구랑 같이 술 마셨다 모텔에서 잤다 그런 이야기.”등과 같았다. 그리고 음란채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8명 중 7명은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아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 아무나.”, “그냥 장난 식으로 그 사람이 야한 얘기 하면 그 사람 변태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다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음란채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12명의 청소년이었는데, “저는 봤어요. 피시방에 사람들 많잖아요. 하는 거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고.”와 같이 우연히 보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 중 4명은 음란 채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명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아닌 전화를 통해 음란대화를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SNS를 통한 음란채팅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27> 참조).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Q. 아는 사람하고요? 아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 아무나. 없는 거 같아요. 아 옛날에. 이거 되게 어렸을 때. 14살 중학교 1학년? 뭐 랜덤채팅 같은 거 만났었던 말이에요.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만나가지고 실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조건만남 하려다가 안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리니깐 하려다가 용기가 안 생겨서 그 땐 어리니깐.
6. 아 그런 적 많죠.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게 좀 음란적인 얘기를 해요. Q. 낯선 사람과는 안하나요? 낯선 사람이랑 음란채팅하지는 않아요. Q. 주변 친구들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16. 그냥 여자 친구들이랑. Q. 뭐에 대해서 얘기해? 그냥 막 '짹' 같은 거.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니나 까' 이라고.
20. 최근에요. Q. 누구랑?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좀 친한 애들 몇 명 남자애들이랑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애들이 사진 같은 거 올려요. 야한 사진이라던지. 탁탁 뿌려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와 야 막 그렇냐고 이런 걸 왜 저기 하냐고 막 찌냐고 다리 찌냐 이랬죠. Q. 그럼 주기적으로 해? 주기적으로 하진 않죠. 그냥 대화하다보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도 있고. 무서운 사진 올릴 때도 있고. Q. 카톡에서 친구들이 방에 초대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깐 저희들끼리 이렇게. 네 명. Q. 네 명에서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리와? 아니요. 야한 동영상은 없었어요. 사진만 이렇게. '이거 찢지 않냐' 이렇게 투척하고. Q. 일반 여자만? 일반 여자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22. 똥단배나 그런 데서 만나면 막 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알려준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가 따로 있으니깐 친추를 할 수 있으니깐 폰 번호 없이도. 그런 거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 알려주면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카카오톡 같은 걸 하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하더라도 나중에 프사 사진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안 알려주고 그냥 채팅방에서만 채팅하다가 자꾸 이상한 얘기 하면 채팅방 나가면 그 사람 저한테 대화를 보낼 수가 없으니깐 나가고. Q. 음란채팅을 해본 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장난 식으로 그 사람이 야한 얘기 하면

그 사람 변태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다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화하다가 재미없으면 대화방 나가게 되고.

25. 네. 있어요. 아. 카카오톡으로 한 적은 없고 전화로 했어요. Q. 어떤 전화요? 뭘 신고안할 거지 우리 합의 보기로 했잖아요. 어떤 여자애한테 그랬어요. 전날 밤 따먹고 다음 날 전화해서 신고안할 거지? 우리 둘이 합의 하에 한 거 맞지? 그래서 개가 네. Q. 그 친구는? 애가 소개시켜줬어요. 하라고. 셋이 같이 술 먹고. 방을 두 개 잡고 했죠. Q. 전화는 뭐예요? 제가 녹음했어요. 우리가 합의 하에 한 거냐고. 신고 해봐요. 뽕이예요. Q. 무슨 일 생기면 증거로 제출하려고? 증거 제출하려고. Q. 야한 대화는 없어요? 네.
26. 그런 적은 없어요. Q. 남자애들끼리는 안 해봤어? 남자애들끼리는 해봤죠. Q. 뭐 해봤어? 남자애들끼리 나 어제 누구누구랑 같이 술 마셨다 모텔에서 잤다 그런 이야기. Q. 그럼 너는 뭐라 그래? 아 그러냐고 좋겠다고. Q. 모르는 사람이랑 해본 적은 없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해요.

□ 없음

15. 음. 아니요. 그런 건 솔직히 친구들끼리만 하는 거라서.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 하는 건 별로? Q. 모르는 사람들이랑 많이 하잖아? 요새 그런 걸로 안하고 컴퓨터 헤드셋 끼고 하는 거 많아서. Q. 헤드셋 끼고 뭘 해? 음성으로 하는 거죠. Q. 음란채팅 해봤어? 아니요. 저는 봤어요. 피사방에 사람들 많잖아요. 하는 거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고. 칠 때도 있고 말로도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7. 있어요. 학교에서 남자애들 이야기 하는 것만 들었어요. Q. 남자친구랑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Q. 친구들이 음란채팅 하는 거 봤어?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요. 어제 여자를 먹었다. 누구 이러면서 몰려들었어요. 지들끼리 여자 먹었다고 얘기 했어요. Q. 카톡 같은 데에서 야한 사진이나 이런 거 받아 본 적은 없어? 있어요. 친구한테. Q. 친구가 왜 보냈어? 배경화면에 할 것 없냐고 하니까 보내줬어요. Q. 누구? 연예인. 남자. Q. 웃 베푼 거? 네. 그래서 배경화면으로 했어요. Q. 너의 신체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 본 적 있어? 없어요.

⑩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 30명 중 17명이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친구와의 장난(6명), 호기심(1명), 심심해서(1명), 이유 없음(2명), 이유 모름(3명), 기타(4명)와 같은 내용이었다. 친구와 장난하기 위해 음란 채팅을 하게 된 6명의 청소년은 “장난으로. 중 2때요”, “그 사람 반응 같은 게 재미있으니깐.”과 같이 응답했다. 호기심이 생겨 음란 채팅을 하게 된 1명의 청소년은 “되게 호기심. 안 해 봤었으니깐. 너무 궁금해서.”, 심심해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1명의 청소년은 “애들 다 학교 갔을 때 심심해가지고

했어요.”라고 하였다.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2명의 청소년은 “이유는 딱히 없고...”등이라고 하였으며, 이유 모름이라고 한 2명의 청소년은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4명의 청소년은 “그냥 그런 사진 올라오다보니깐,”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SNS가 기본적으로 음란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 없다면 굳이 하지 않을 경우도 스마트폰의 시공을 제한받지 않는 용이성으로 인해 음란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명이었다(부록 5, <표 I-28> 참조).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친구와의 장난

11. 장난으로 중 2때요. 한참 그때 많이 유행해서 장난으로 하다가 재미없어서 안했어요.
22. 재미로. 제가 뭐 해서 먼저 보낸 적은 없고 그 사람 반응 같은 게 재미있으니깐 Q.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막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올리니깐 재미있어 보이니깐 저도 했던 거지 제가 먼저 찾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Q. 어떤 걸 올렸어요? 그 사람도 대화를 하다가 아는 애들을 만나고 막 그 사람도 재밌는 게 있으면 캡처를 해서 이 사람 웃기다고 그런 식으로 올린 거.

□ 호기심

1. 되게 호기심. 안 해 봤었으니깐. 너무 궁금해서.

□ 심심해서

12. 애들 다 학교 갔을 때 심심해가지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했어요. Q. 무슨 대화 해봤어? 조건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 이유 없음

2. 이유는 딱히 없고 친구들이랑 지내다보면 친구들이 편해지면서 믿어지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야한 말들, 여자들이랑 예전에 사귀어 여자 친구랑. 제가 여자 친구한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친구가 싫다고 해서.

□ 이유 모름

17. 음.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Q. 전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왜 거기서 해? 전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Q. 못 듣게 하려고? 이유도 없이 그런 채팅을 해? 그러니깐 어떻게 하다보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 기타

20. 그냥 그런 사진 올라오다보니깐. 아무래도 남자다보니깐 좀 그렇잖아요. 뭐 썬다 색시하다 그러는 거죠. 애들이. Q. 호기심이야? 호기심은 다 지났고요. 그냥 그런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개네들이야 그냥 보내는 거고 개네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보다가 썬다고 캡처를 하고. Q. 너는 보기만 하고 썬다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내? 네. 그렇진 않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 친한 애들이 요만큼인데.
28.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나 오늘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뭐했냐고 물어보면 다 얘기하죠.

⑪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한 후 느낌이나 감정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한 후 느낌이나 감정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30명 중 16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재미있음(6명), 아무 느낌 없음(5명), 불쾌함(1명), 허무함(1명), 기타(3명)라고 하였다. 재미있다고 응답한 6명의 청소년은 “전 되게 그런 거 없고, 재미로 했던 거 같아요.”, “그 남자의 반응이 재미있었고요.”, “그냥 웃겼죠.”라고 하였다.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5명의 청소년은 “...다른 느낌 없었고.”, “감정이 없어요.”와 같이 응답하였

다. 불쾌하다고 느낀 1명의 청소년은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럽고.”라는 감정을 나타냈다. 허무하다고 느낀 1명의 청소년은 “허무했죠.”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에 속한 청소년 3명은 음란채팅을 하고 난 느낌이나 감정보다 음란채팅을 하는 친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쾌함을 느낀 경우가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음란채팅에 대한 상대적 무감각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부록 5, <표 I-29> 참조).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고 난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 재미있음 1. 전 되게 그런 거 없고, 재미로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재미로. 3. 그 남자의 반응이 재미있었고요. Q.나이는? 20살? 19살 정도. 22. 그냥 웃겼죠. □ 아무 느낌 없음 2. 여자들이랑 하면 여자들이랑 음란채팅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느낌 없었고, 남자들이랑 했으면 하도 편해서 장난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29. 감정이 없어요. Q.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출 사진도 팔고, 포옹이나 키스알바, 조건만남도 하고 입던 속옷도 파는 거 본적 없니? 페이스북에 페이지 관리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올린 거 봤는데 카카오톡에 엑소 숙소 쳐들어 갔는데 엑소가 누구누구가 입던 팬티 판다고 그런 사진 있다고 봤어요. Q. 얼마야? 한 장당 50에서 100정도에 팔아요. Q. 거기 댓글들은 어때? 좋긴 좋은데 이런 거 이해 안 간다는 애들도 있고,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되냐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진짜 엑소 팬티인지는 모르잖아요. Q. 그런 건 공유 안 해? 그런 거 공유해봤자 남자애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여자애들	낫가림이 심해서(말 안 해요). □ 불쾌함 9. 더러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럽고,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깐 재미에 호기심에 해봤는데 이걸 좀 아니다 싶었죠.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말이 막 진짜 좀 그렇잖아요. 아한 말도 엄청 하고, 별 것도 아닌데 아한 말도 엄청 하고 지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음란채팅 해 봤나 뭐 그러진 않고 저는 친구들 고민 있으면 만나서 얘기해요. 만약에 쌤이 저한테 폰으로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됐다 하고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면 좀 그러니깐 만나서 얘기해요. 막 이상해요. □ 허무함 24. 허무했죠. 여자애들 걸리려다가 남자 걸려서. □ 기타 26. 저도 뭐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되죠.

⑫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한 행동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한 행동에 대해 청소년 30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함, 음란 채팅만 함, 자신의 사진을 보냄,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요구,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 상대방이 자신이 입던 스타킹을 판매할 것을 요구, 기타로 나타났다. 첫째,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저는 뭘 보여주진 않았고 상대 여자 측에서 몸을 보여줬어요. 가슴만.”라고 했다. 둘째, 음란 채팅만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음란채팅만 한 거예요 사진은 보낸 적 없어요.”라고 말했다. 셋째, 자신의 사진을 보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런 거 해보려다가 얼굴 사진. 그 뭐지 머리 다 여기 반쪽만 다 내고 찍어서

친구랑 같이 보냈어요.”, “그냥 옷 다 입은 전신사진 밖에.”라고 했다. 넷째,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요구한다고 한 청소년은 “막 말하다가 사진 보여 달라고 해요.”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한다고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조건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조건만남 예전에 가출했을 때 했어요.” 여섯째, 상대방이 자신이 입던 스타킹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는 청소년은 “줄록 들어가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입고 있던 스타킹 얼마에 산다고 그런 거 있었어요.”와 같이 응답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각각 친구가 대화방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거나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상 청소년들의 반응에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정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조장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관음증, 노출증, 성매매, 절편음란증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 나아가 그러한 변태적 성 징후들이 특별한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러한 메시지의 심각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30> 참조).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함

1. 저는 뭘 보여주진 않았고 상대 여자 측에서 보여줬어요. 몸을 보여줬어요. 가슴만. Q.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원했어? 아니요. 그냥 자기가 만족하던데요. Q. 네가 보내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그냥 지가 보여주는. 보내던데요. 그때 당시 열여섯인가 열일곱. 저보다 많았어요. Q. 그래서 그 여자 만났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재미로만 했다고. 보여주지만 하고, 안 만났다니까요. 너무 멀고 그런 거 같아요. Q. 신체 노출만 했어요? 어떠한 반응? 저는 구경만 했어요. Q. 개한테 뭐 보냈을 거 아니야? 안 보냈어요. 보기만 했어요. Q. 보기만 했어? 흥분됐어? 그냥 무덤덤했는데요.

□ 음란 채팅만 함

2. 음란 채팅만 한 거예요. 사진은 보낸 적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는 애들이랑 한 거예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랑. 예전에 중학교 때 랜덤채팅 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제가 너무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랜덤채팅이 있었어요. 똥단배라고 중학교 때 한 번 했어요. 아한 말도 해보고 호기심에 그래서 특별한 결과는 없었고 그냥 음란 채팅이 끝이었어요.

□ 자신의 사진을 보냄

3. 그런 거 해보려다가 얼굴 사진. 그 뭐지 머리 다 여기 반쪽만 다 내고 찍어서 친구랑 같이 보냈어요. Q. 음란 채팅 해보고? 네. 음란 그런 건 안 해 봤어요. Q. 근데 얼굴 사진을 왜 보냈어요? 그냥 개도 보냈길래 잘 생겼다고 해주고 하고 보내줬죠.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랑 또 하고.

□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 요구

11. 막 말하다가 사진 보여 달라고 해요. 애들끼리 다 있어요. 막 되게 웃긴다하고 당신이 먼저 보여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나갔어요. Q. 다음에 또 한 적 있어요? 아니요.

□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

12. 조건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3. 조건만남 예전에 가출했을 때 했어요. 중 1때 중 2때 중 3때도. 그때 그냥 뭐지 애들이 가출일행 언니들이나 오빠들이나 알려줘 가지고 조건만남 시키고 전 또 가셔도 도망가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무너질까봐. 부모님 다 아세요. Q. 그 언니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다 카페에서. 가출 카페에서. 중딩 때 한참 거기 있었는데 폐쇄됐어요. Q.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15만원 10만원 그 언니들한테 다 가죠. 월세 값. 방 비 다 우리가 해준다. 그 언니들 나이가 17살에서 22살까지. 다 저한테 시켰죠.

□ 상대방이 자신이 입던 스타킹을 판매할 것을 요구

16. Q. 아자르 해봤어? 아니요. 그런 거 없고 옛날에 줄록 들어가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입고 있던 스타킹이나 팬티 얼마에 산다고 그런 건 있었어요. Q. 남자들이 얼마에 산데? 3만원인가 5만원? Q. 그러고 어떻게 했어? 그런 거 보고 무시했어요. 사기 같아서. Q. 그럼 그런 거 본 적만 있어? 네. Q. 애인 대행은 안 해봤어? 네. 그런 건.

⑬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청소년 30명 중 성인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8명), 스마트폰 중독(9명), 아무런 영향이 없음(5명), 긍정적인 영향(2명), 기타(4명), 접촉 경험 없음(2명)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청소년 8명은 “되게 성관계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잖아요.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막 야한 걸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안 좋고.”, “그게 만약 음란물이 심각한 정도로 올라오면 저도 충동 같은 게 생겨요.”라고 하면서 야동과 똑같이 행동해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청소년 9명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냥 핸드폰만 만지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빠져가지고.”, “없으면 불안해요.” 등과 같이 응답했다.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5명은 “저한테 영향을 줄 건 없죠. 개네가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등이라고 했다. 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청소년 2명은 “자기들이 뭐지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성관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기타 응답한 청소년은 음란물을 찍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성관계의 평균연령이 낮아졌다고 보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성개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다는 진술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폰을 찬성한 2명이 성욕의 대리충족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대목이다. 이는 대리충족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나 그것은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역으로 보면 그러한 성인물의 시청을 통해 성적자극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부록 5, <표 I-31> 참조).

질문: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성인·음란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

1. 되게 성관계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잖아요.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조건만남 되게 랜덤채팅하다 생기고 그러니깐 욕구 참았던 게 이제 못 참잖아요. 만나서 막 뭐하고 그런 거면 요새 평균 연령이 13.5세라고 들었나?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막아야 될 거 같아요. 랜덤채팅 같은 거 노출 못하게.
6.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요즘 다 그런 거 같아요.
26. 그게 만약 음란물이 심각한 정도로 올라오면 저도 충동 같은 게 생겨요. Q. 어떤 충동? 생각 정도요.

□ 스마트폰 중독

8.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냥 핸드폰만 만지잖아요. Q.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변하게 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 애들 만나고, 핸드폰만 만지고.
18. 스마트폰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빠져 가지고, 자려고 하면 스마트폰 다시 키고, 또 자려고 하면 다시 키고,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Q. 성인을 같은 건? 많이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성폭력이나 여자애들 막 그럴까봐.
30. 일단 성적이 떨어져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번에 성적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있으면 '아 조금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막상 시험 날 시험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시험도 망치고, 그리고 잠을 늦게 자요. 할 게 없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Q. 중독성은 어떤 것 같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 두고 오면 조퇴하고 가지러 가거든요. 집이 먼데도 핸드폰 가지러가요. 그 정도로 (없으면 불안해요).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 아무런 영향이 없음

25. 아무 영향도 안 준다고 생각해요. Q. 왜요? 저한테 영향을 줄 건 없죠. 개네가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Q. 청소년들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Q. 그럼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 좋은 거 같아요. 누나들이 방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누나들이 방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방에 누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야동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대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진 거 같아요. Q.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건요? 네.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밖에서 노는 거 때문에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Q. 스마트폰으로 인해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없어요.

□ 긍정적인 영향

11. 자기들이 뭐지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성관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보면 제 친구가 야동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보다가 애가 질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안 봐요.

□ 기타

15. Q. 그 때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근데 그 찍은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Q.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걸 꼭 뿌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Q. 그걸 어떻게 뿌렸지? 거기 있었으니깐. 그 자리에 있어서 한 명이 올렸는데 그게 공유가 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Q. 개네 둘이 하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야? 네.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옥상에서 하고 있으니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깐 그 중에 한명이 찍은 거죠. Q. 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알고 있었겠죠. 찍는데 그 쪽을 보고 했으니깐. Q. 찍는 데도 계속해? 네. 근데 얼굴이 확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4)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과정(유통경로) 및 대책

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랜덤채팅

현재 이용하고 있는 랜덤채팅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 30명 중 24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명에 불과했다. 뚝단배, 아자르, 1km, 빠꾸기, 즐톡, 심톡, 낯선 사람과의 대화, 랜덤채팅, 컴얼롱, 돈톡과 같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페이스북 기능인 에스크를 사용하여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제 친구가 뺑에 갔어요.”, “뚫단배’도 있었고요, ‘낯선사람과의 대화’ 그런 거. 그리고 ‘라인’으로 화상채팅 하는 애들도 봤고.”등으로 응답하면서 주변 친구가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랜덤채팅의 이용 빈도는 한두 번 써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랜덤채팅이 거의 보편화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32> 참조).

질문: 현재 이용하는 랜덤채팅 어플은 무엇입니까?

□ 이용하고 있음

6. 써본 적은 있죠. 뚫단배, 1km, 한 번씩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미없어가지고. Q. 접속하면 상대방이 바로 말을 걸어와요? 네. 1km는 1km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아요. 뚫단배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나고 그러지는 않고요. Q.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한 때 유행했었어요. 중학교 때.
13. 지금은 원래부터 깔아댐던 거는 즐톡 밖에 없어요. Q. 언제 썼어? 저 중 3인가 중 2때 인가 지금 써? 그걸 사용안하고 있거든요. 또 어쩔 때 필요하니까 시간 때우기요. 왜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아니면 학교 어디 갈 때. 심심할 때 하는 거죠. Q. 거기서 뭐해. 누구랑 얘기해?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재미없으면 나가고 변태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얘기해요. Q. 뭐라고 얘기해? ‘뭐하냐’, ‘밥먹었냐’ Q. 너한테 만나자고 안 해? 네. 만나자고 해도 어차피 제가 나가면 끝이잖아요. 딱히 신경 안 써요. Q. 만나자고 해도, 만난 적 있어? 아니요. 그냥 다 나이 먹고 별로예요. 거의 다 아저씨.

□ 이용한적 없음

26. 그것 때문에 제 친구가 뺑에 갔어요. Q. 왜 갔어?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10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즐톡에서 여자랑 랜덤채팅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Q. 몇 살이었어? 친구는 열일곱이요. 여자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차가 3살인가 4살인가 났을 거예요. 만나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고.
30. 없어요. Q. 주변에 랜덤채팅 쓰는 애들이 있어? 네 친구들. ‘뚫단배’도 있었고요. ‘낯선사람과의 대화’ 그런 거. 그리고 ‘라인’으로 화상채팅 하는 애들도 봤고. Q. 개네들은 그래서 뭐해? 그렇게 해서 사귀는 애도 있고요. Q. 개네들은 어떤 계기로 가입한 것 같아? 일단 심심하다고 해서 재미로. Q. 너는 왜 안 해봤어? 재미있어 보이지 않고. Q. 그 친구들의 랜덤채팅의 이용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 여자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심심해서, 할 것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남자애들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② 랜덤채팅을 가입하게 된 이유

랜덤채팅을 가입하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랜덤채팅 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여서, 친구들이 알려줘서, 심심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친구들이 랜덤채팅 하는 것이 재미있어보여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14명이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홍보하는 거 보고,” “애들이 많이 하니까 재밌어가지고”와 같이 응답하였다. 둘째, 친구들이 알려줘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2명의 청소년이었다. “그냥 친구들이 이거 재밌었다고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친구가 알려 줬어요.”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셋째, 심심해서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2명이었다. “심심해서,” “그냥 심심해서 마켓에서 친구 또는 특이라고 쳤는데 그런 게 나와서 한번 해봤어요.”라고 한다. 넷째, 돈을 벌기 위해 랜덤채팅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30명 중 1명으로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기타 응답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나 영화관 광고를 통해 흥미를 느껴 사용해봤다는 응답도 있었다. 돈이 필요해서 가입한 청소년들 가운데 실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이용한 청소년이 있었다. 비록 한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30명 중의 1명이지만 이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부록 5, <표 I-33> 참조).

질문: 랜덤채팅 어플에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 친구들이 랜덤채팅 하는 것이 재미있어보여서 1.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홍보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하는데 재미있다고 하길래, 호기심에. 6. 애들이 많이 하니깐 재밌어가지고, Q. 친구들도 많이 해요? 그냥 개네들도 주위에서 많이 하니깐 한 번씩 해보고. □ 친구들이 알려줘서 9. 그냥 친구들이 이거 재미있다고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16. 친구가 알려 줬어요. □ 심심해서 10. 심심해서	12. 그냥 심심해서 마켓에서 친구 또는 톱이라고 쳤는데 그런 게 나와서 한번 해봤어요. □ 돈을 벌기 위해 14. 돈이 필요해서. □ 기타 8. 그 건 못 들었어요. 남자애들이 성욕 채우려고, Q. 남자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15. 그제 영화관에서 광고를 하다가 무슨 막 모르고 보았는데 화수할 수도 있고 폭탄메시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재밌을 거 같아서 깔았거든요.

③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목적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목적은 재미있어보여서,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가 랜덤채팅을 이용해서, 심심해서, 돈을 벌기 위해, 호기심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랜덤채팅 어플이 재미있어보여서 가입했다는 청소년은 30명 중 5명이었다. “재밌어보여서.”, “그냥 재밌는 사람 많잖아요.”와 같이 응답했다. 둘째, 랜덤채팅 어플을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입했다는 청소년은 1명으로 “예쁜 여자들 보려고”라고 응답했다. 셋째, 친구가 랜덤채팅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가입했다는 4명의 청소년은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많이 해서.”와 같이 응답했다. 넷째,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가입했다는 5명의 청소년은 “그제 시간을 좀 잘 때워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해봤어요.”와 같이 응답했다. 다섯째, 돈을 벌기위해 랜덤채팅을 한다는 3명의 청소년은 “돈. 돈 필요해서.”, “그냥 돈이 없어서.”등의 응답을 했다. 여섯 째,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한다는 1명의 청소년은 “그냥 호기심이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 “그냥 한다고”, “남친이랑 연락하려

고.”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대목은 돈을 벌기 위해 채팅을 한다는 3명의 청소년들이다. 이는 랜덤채팅이 직간접적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랜덤채팅을 청소년이 거의 대부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부록 5, <표 I-34> 참조).

질문: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 재미있어보여서 6. 재미있어보여서. 10. 그냥 재밌는 사람 많잖아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그거 보면 재밌는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까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땐 안하죠. □ 이성친구를 만나기 위해 2. 예쁜 여자들 보려고. 예쁜 여자들 많이 봤어요. 30명 이상 본 거 같아요. 30번 넘게 하면 1명 나올까 말까 나와서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Q. 왜 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목적인데. 심심해서 하긴 하는데 예쁜 여자들 나오면 더 좋은 거죠. □ 친구가 랜덤채팅을 이용해서 5.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좀 이상한 애들도 많고. 그러가지고 안했어요. 7. 친구들이 많이 해서.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냈어요. □ 심심해서 9. 그제 시간을 좀 잘 때워준다고 해야 되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고 그런 거.	19. 저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Q. 재미가 없어? 왜? 맨 처음에는 18살 남자 하면서 그러는데 뭐가 재밌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죠. Q. 친구들이 사용해가지고 네가 한 거야? 네. □ 돈을 벌기 위해 14. 돈. 돈 필요해서. Q. 그것도 아는 언니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는 거지? 네. 16. 그냥 돈이 없어서. □ 호기심 20.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낯선 사람들과 채팅을 한대요. Q. 여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여자 친구 있으니까. 낯선 사람과의 채팅을 한대요. 말 잘 통하는 애들 만나면 재미있대요. □ 기타 8. 그냥 한다고. 15. 남친하고 연락하려고. Q. 남친하고 그거 말고는 연락 방법이 없어? 네. 집에 도착하면 저한테 톡을 해요. 그러면 집전화로 연락해요.

④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 30명 중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이 14명,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9명, 기타 응답을 한 청소년은 1명,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6명이었다.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보낸 경험은 없고,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받은 건 있어요.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도 쪽지로 와요”, “보낸 경험은 없고 받은 경험은 있죠”, “메시지 보내는 건 아니고 방을 만들어요. 그냥 막 조건 얼마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요.” 등과 같이 응답했다. 성적인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 1명의 청소년은 “보낸 적 있죠.”라고 응답했다.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애들 보면 랜덤채팅으로 막 원조교제인가 그런 거 하고 막 그래요.”라고 하거나 “그거하자 만나자 어디로 갈 테니 주소 불러라” 같은 메시지를 주변 친구들이 받아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랜덤채팅에서 받지 않고, 스팸메일로 많이 받아왔다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50%정도의 청소년이 성유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청소년들에게서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수의 성과 관련한 거래가 랜덤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부록 5, <표 I-35> 참조).

질문: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12. 받은 건 있어요. 보내진 않았어요.
15. 아니요. Q. 성적인 유인메시지를 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근데 스마트폰 보다는 컴퓨터상에서 많이 보이죠. 토크온 같은데 들어가면, 그냥 날라 와요. Q. 토크온이 뭐야? 헤드셋 끼고 Q. 헤드셋 끼고 음성 통화하는 데야? 네. 그냥 거기 들어갔어도 쪽지로 와요. Q. 조건 할래 같은 그런 내용이야? 네. 그런 식. Q. 토크온이라는 게 그러면 컴퓨터에서 하는? 컴퓨터에서 하는 버디버디. Q. 메신저 같은 거네? 네. Q. 그거 많이 이용해? 네. 저는 게임할 때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우리 팀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타자를 치고 있기 힘들거나 귀찮을 때 말로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Q. 무슨 게임? 써든 아니면 롤. 언제 나온 거야? 삼 년 됐나. 그건 얼마나 했어? 써든은 남자친구 때문에 최근에 시작했어요. 롤은 한지 이 년 삼 년.
16. 네. Q. 네가 보냈어? 아니요. 메시지 보내는 건 아니고 방을 만들어요. 그냥 막 조건 얼마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대화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하면 나가고 만나기로 하면 만나고. Q. 조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때? 그냥 그 쪽에서 물어봐요. 키는 몇이고 어떨고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20. 보낸 경험은 없고 받은 경험은 있죠.

24. 네. 보낸 적 있죠. Q. 받은 적은 있어요? 받은 적은 없는 거 같아요. Q. 친구 중에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사람 있어요? 있긴 있죠. 진짜 성적으로는 말고 진짜 친구 같은 여자애들한테 장난치죠. Q. 성적인 장난치는 거예요? 성적인 장난치는 거죠. Q. 그럼 친구들이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Q. 랜덤채팅으로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네.

□ 없음

2.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7. 아니요. 그 낯선 사람채팅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주면 바로 연결이 끊겨요. 나가면. 번호 같은 거. Q. 상대방이 성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Q. 랜덤채팅하고 직접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절대. 위험하다고 해서. Q. 주변에서 유인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나요? 그거하자 만나자 어디로 갈 테니 주소 불러라 그런 거. Q.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말해요? 거의 19, 30?
23.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 막 다른 애들 보면 랜덤채팅으로 막 원조교제인가 그런 거 하고 막 그래요. Q.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고 그래요? 네. 만나는 애들도 있어요.

⑤ 랜덤채팅에서 받은 유인 메시지 내용

랜덤채팅에서 받은 유인 메시지 내용은 주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거나 사진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30명 중 6명이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지금 당장 만나자 지금 바로 만날래?”, “막 조건하자고”, “그냥 ‘조건만남 하실래요. 그런 얘기 밖에 없었어요.” 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명의 청소년 중 3명은 “막 사진도 보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사진 보내 달라 그런 얘기도 많고, 만나자, 몇 살이나, 가슴 같은 거 몇 컵이나 막 이런 것도 많았고” 등 랜덤채팅에서 사진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에서도 “막 그 여자애들. 그 좀 성적인 거 좋아하는데 번호 주고 자기 주소 주고 원조교제해서 사귀어요.”, “폰 섹스할거냐? 안 할 거냐?” 등 청소년이 많은 유인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인 메시지를 보내는 성인들의 성의식이나 성도덕의 심각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실질적 반응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의해 성과 관련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부록 5, <표 I-36> 참조).

질문: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조건만남 요구

3. 조건 지금 당장 만나자 지금 바로 만날래? 40 어찌고저찌고 40 준다요. Q. 어떻게 하니깐 막 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보내요. 가입만 해도 들어오고, 계속 거절 눌러도 계속 들어오고.
12. 막 조건하자고
17. 그냥 ‘조건만남 하실래요’ 그런 얘기 밖에 없었어요.
20. 조건만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야동 사이트에서 링크 딱 주고, 아래에다 지가 글을 쓴 거예요. 다 복사를 한 거죠. 끝에 복사를 해서 링크 올리면 지금 15,000원 결제하면 10,000포인트가 들어온다.

□ 사진 요구

22. 그냥 사진 보내 달라 그런 얘기도 많고, 만나자, 몇 살이나,

가슴 같은 거 몇 컵이나 막 이런 것도 많았고, 막 변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막 성관계 해봤냐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23. Q. 친구들이 받은 성적인 메시지 내용은 어땠어요? 막 몇 살이나고 막 물어보고 막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음 막 사진도 보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Q. 얼굴 사진? 얼굴 사진. 아니면 막 몸 사진. Q. 다 벗은 거? 아니요. 입고 있는 거요.

□ 기타

7. 막 그 여자애들. 그 좀 성적인 거 좋아하는데 번호 주고 자기 주소 주고 원조교제해서 사귀어요. 돈 벌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19. 폰 섹스할거냐? 안 할 거냐? Q. 그런 내용이었어? 네. 그런 거. Q. 무효는 아니지? 모르겠어요. 무효라고 하는데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라고 할 거 같아서.

⑥ 랜덤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를 받는 정도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를 받는 정도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에 접속하자마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며, 랜덤 채팅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메시지가 온다고 응답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떠요.”, “접속해있는 동안 그 메시지가 많이 와요.”,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60개 정도”, “거의 대부분.”, “방이 내가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일대일대화 방에서 대화중이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쪽지가 다다다다 와요. 쪽지가 한 되게 몇 십 개 왔어요. 그래서 막 지우기 바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에 10개 썩 떠요.” 등과 같이 청소년이 상당량의

위험한 유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상당히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37> 참조).

질문: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3. 거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떠오. 계속 거절해도 또 오고 또 와요. 진짜 자주 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그거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삭제했어요. 계속 와요. 여기 방이 계속 차서 계속 오면, 싫다고 다른 방 가면 다른 방에서 또 와요. Q. 그럼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안됐구나? 아니요. 거기 나이 제한 되어있는데, 나이를 만약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도 2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다 그래요. 아저씨들이 청소년들한테도 말 많이 걸고, 18로 하는데도 다 보냈어요. Q. 거기다가 뭐라고 가입해? 아이디라던가 사진 같은 거 안 올렸어요. 닉네임이랑. 연령 표시. 여자 이렇게만 해서. 아무거나 ‘ㅇ’ 이런 거 써 놓고 나이 딱 하구서 들어가도 계속 와요. 10. 접속해있는 동안 그 메시지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Q. 그럼 상대방 나이는 얘기 안 해요? 나이는 얘기 안하고 그런	건 얘기 안하고. Q. 그냥 보내달라고만 해요? 네. 13.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60개 넘게. 한 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16. 방이 내가 사람이라 대화하고 있잖아요. 일대일대화 방에서 대화중이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쪽지가 다다다다 와요. 쪽지가 한 되게 몇 십 개 왔어요. 그래서 막 지우기 바빴거든요. Q. 그 중 제일 좋은 조건을 만난 거야? 그 중에서 골라서 가깝고. 18.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에 10개 씩 떠오. Q. 청소년으로 가입 안 했어? 몇 살로 했어? 그게 18살부터 40대까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8살로 선택했어요. 19. 거의 대부분. Q. 구체적으로 몇 건? 오는 게 아니라 방을 개설하면 들어오는 게 끝이에요. Q. 몇 명 들어오는 거야? 일대일 밖에 안 돼요. Q. 그럼 남자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고 그냥 나가요.

⑦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반응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반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도 한다고 응답했다. 그냥 별 반응 안 보였는데., “계속 하자던데.”, “영계네.”, “나이 속여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그냥 이제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몇 살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 거 솔직히 상관 안 해요.” 등과 같이 청소년에 따라 각각 랜덤 채팅방에서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의식 안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거의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38> 참조).

질문: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3. 그래도 반응 안보였는데? 계속 하자던데. 9. 그래도 계속 보내주는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10. 영계네. “영계네” 라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욕하고 나가죠. 12. 그냥 별 반응 안 보였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13. 나이 속여요. 스무 살이거나 스물두 살이거나. 중학생이어도 화장 진하게 그러니까 몰라봐요. 19. 그냥 이제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Q.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안 물어봐? 그냥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나이 상관없	어요. 그냥 여자 문제예요. 22. 처음에는 솔직히 바로 막 그런 얘기 안 하고 몇 살이라고 시작을 해요. 몇 살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 거 솔직히 상관 안 해요. 학생이야 해 봤냐 그러고 학생이든 성인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23. 친구들이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는 상대방이 친구가 청소년인 걸 알았을 때 뭐라고 반응했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Q. 대화를 그만 해야겠다 면서 이러진 않아요? 네.

⑧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만난 경험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만난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이 30명 중 3명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6명이었다. 실제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들은 “네. 조건으로 얘기해서 만난 건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동네친구로 하자는 걸로 만나자고 했어요.”, “요즘은 나이 적은 애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친구들이)막 만나서 키스하고 막. 그러고 돈 받았대요” 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들은 “없어요.”, “아니요. 직접 만난 적 없어요. 삼촌 아저씨 그래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의 성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39> 참조).

질문: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2. 네. 조건으로 얘기해서 만난 건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동네친구로 하자는 걸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사귀었어요. 그냥 그 오빠 좀 귀여워하고 그 오빠도 저 귀여워하고 놀다보니깐 사귀었어요. Q. 실제로 만나서 돈을 받았나요? 돈이나 그런 거 받은 건 없어요. Q. 그 사람이 뭘 해줬어? 편의점 사장이라 제가 종종 놀러 가면 안아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같이 일하고 그래요. Q. 거기 편의점 가서? 알바비 줘? 아니요. 근데 제가 원래 봉사활동을 좋아해요. Q. 무료로 하는 거야? 네.
13. 요즘은 나이 적은 애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Q. 그래서 만난 적 있어? 네.

23. 친구들이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네. 막 만나서 키스하고 막. 그러고 돈 받았대요. Q. 그거죠. 애인대행 알바 그런 거 아니에요? 키스 알바?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다는데? 키스하고 막 만져주고 막 그런 거 해서. Q. 그래서 얼마 받았대요? 그것도 한 5만원 3만원? Q. 그 친구는 그런 걸 자주 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 없음

3. 없어요.
9. 아니요. 직접 만난 적 없어요. Q. 상대방 나이는? 스물다섯 살? 아저씨빨이잖아요. 삼촌 아저씨 그래서.

⑨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4명이었으며, 화상채팅만 사용했다는 청소년은 30명 중 5명,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30명 중 12명이었으며, 기타 응답으로 2명이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봤다는 청소년은 “저는 구경만 했어요.”, “위에 벗는 사람들 있죠. 남자애들.”, “남자가 막 자기 비춰주고. 자위하는 거.”등과 같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했다. 화상채팅만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아자르라고, 그거 반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자르 같은 거 해봤어요. 재밌어요.”라고 응답했다. 또한,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와 같이 응답하면서, 한 청소년은 주변 친구들

중 화상채팅을 통해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친구가 신체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을 통해 불건전한 성의식과 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러한 성적 경험이 개인의 성의식이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부록 5, <표 I-40>참조).

질문: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봤음

1. 아니요, 없어요. Q. 여자애들이 노출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 저는 구경만 했어요. 저는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Q. 왜? 그 때 중학생이었으니까. Q. 지금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이 있으면 만났을 거 같아요. 만나서 조건만남이나 그런 거 했을 거 같아요.
10. 위에 벗는 사람들 있죠. 남자애들. Q. 왜 벗는지는 알아요? 그냥 덩데요. 그냥 여자애들 반응 보는 게 재밌잖아요. Q. 그럼 그런 거 남자애들이 많이 해요? 네. Q. 그럼 남자애들이 그런 걸 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네. 그런 애들 있을 걸요? 아 맞아요. 있어요. Q. 남학생들이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나요? 그런 건 아니고 돈 달라고? 저는 제 후배가 여자였는데, 그 여자애가 저랑 같이 있다가 잠깐 만나고 온대요. 만나고 오는데 돈이랑 담배 받아왔어요.
17. 그런 적은 없는데. 반대편 쪽에서 아자르 같으면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었고. 남자가 막 자기 비춰주고 자위하는 거 Q. 성행위 하는 거 손으로 보여줘? 네. Q. 그래서 어떻게 했어?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Q. 얼굴

안 보여줘? 캡처하면 끝나는데. 그거 하는 거 캡처하고 얼굴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 되요. 개 얼굴 팔리는 거잖아요. 개는 아자르에서 자위하는 미친놈 되는 거고. Q. 몇 번 봤어? 한 세 네 번. Q. 그걸 왜해?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 보려고 넘기는 거죠. Q. 잘생긴 남자가 어느 시간대에 나와? 아홉시 열시 그 사이.

□ 화상채팅만 사용했음

5. 아자르라고, 그거 지금 저희 누리반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물어보고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번호도 받고 카톡하고 그랬었어요.
13. 아자르 같은 거 해봤어요. 재밌어요. 요즘은 잘 안하고 유행할 때 좀 했어요. Q. 언제 해봤어요? 한 달 전. 저희 반 남자애들이 알려줬어요.

□ 없음

14. 그런 건 안 해봤어요.

⑩ 신체노출 혹은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 신체노출 혹은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질문했다. 그 결과, 청소년 30명 중 2명의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았으며, “제가 봤어요. 무조건 신고해요. Q. 남자가 했어요? 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 남자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거예요.”, “(친구가)여자가 노출한 건 본 적이 없는데, 남자는 자기가 자기 거. 자위행위를 하더라고.” 등으로 응답했다. 또한 4명의 청소년은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자는 성기를, 여자들은 가슴을 보여주는 등 신체 노출과 심지어 사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본 적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는데 그 상대방이 막 보여주려고 해서 바로 꺾어요”라고 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음란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랜덤채팅 경험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손쉽게 유해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5, <표 I-41>참조).

질문: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봄 13. 네. 제가 봤어요. 무조건 신고해요. Q. 남자가 했어요? 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 남자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거예요. 글씨에 중국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뭘 소리지 하고 엄마한테 해석을 부탁했더니. 저희 엄마가 중국 식당 하시는 분이어서 중국어를 알아요. 남자 그게 밑에 성기가 보이는 거예요. 헉 이게 뭐지 하고 신고했어요. Q. 어떻게 신고해? 거기 신고하는 거 있어요. Q. 그런 여자 봤어? 네. 많죠. 여자들도 가슴 다 내놓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관심 끌려고. 많이 봤죠. 20. 네. 본 적 있어요. 여자가 노출한 건 본 적이 없는데, 남자는 자기가 자기 거. 자위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미친놈 또라이 사이코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다 개가 딱 한 거예요. 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화상채팅 하는데 개가 너는 뭘 보고 하냐고 보고하지도 않고 사정을 하냐고 그러니깐 대답을 안 하고 끄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대요. □ 본 적 없음 5. 그런 건 못 봤어요. Q. 주변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11. 없어요. 12. 없는데 그 상대방이 막 보여주려고 해서 바로 꺾어요.

⑪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에 관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22명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명 중 8명이었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조건만남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많이 봤어요. 많이 학교에서도 조건만남 하다가 소문나서 자퇴한 애 있어요”, “네. (조건만남)해서 소년원 들어갔어요”, “친구들 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깐 애가 아는 여자애고, 애가 다른 지역에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가 근데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네 둘이서 아는 오빠한테 갔어요. 근데 이 오빠가 돈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를 조건만남을 돌린 거예요.”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또한, 직접 조건만남을 알선 한 청소년도 있었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청소년들 중 아는 사람이 여자 청소년들을 관리하며 포주를 한다거나 유흥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설문인 “애정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결국 청소년들의 특성상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반면 자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록 5, <표 I-42> 참조).

질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7. 많이 봤어요. 많이 학교에서도 그거(조건만남) 하다가 소문나서 자퇴한 애 있어요. 누리반에 ○○○애도 지금 논산에서 보도(보도방) 뛰고 있다고. 얼굴 못 들고 다니죠. 소문나면 다 전학가요. 애들이 다 했냐 했냐 뭐했냐? 어떻게 됐어? 얼마 받았어?

16.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Q. 친구들은 어디서 만났어? 원래 알던 Q. 조건할 때가 언제였어? 올해 1월 그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원래는 노래방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Q. 어떻게 알게 됐어? 친구들이 알려줬어? 네. 그냥 꼬신 게 아니라. 원래 일하던 데서 일 더 못하게 돼가지고. Q. 노래방 도우미 한 거야? 그 건 얼마 받아? 돈은 다 달라요. 한 노래방만 고정으로 쓰면 3만원 받거든요. 시간당. 근데 뭐야 그 룬 말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 근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때요. 얼마씩 5천원, 7천원 씩. Q. 보도방도 해봤어? 보도방은 뭐하는 거야? 네. 보도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콜 오는 데서 똑같이 일해요. 그냥 들어가서 초이스되고, 그러니깐 몇 명 아가씨들 돌아가면서 골라서 앉아요. 손님들이 앉으라고 그러면 앉아서. Q. 그럼 선택되어야지 하는 거야? 선택 안 되면 어떻게 해? 네. 좀 큰 노래방들은 그렇게 초이스 해도 되는데, 아닌 데는 손님 세 명 오면 딱 아가씨 세 명만 들어가거든요. 좀 큰 데는 여러 명에서 들어가거든요. Q.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일반 룸이 아니어서 스킵십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고 그런 거거든요. 원래 룸만 다 터치가 되고 일반은 안돼요. 제가 일반에서 일했던 말이에요. 만약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가슴 만지려고 그러려고 하면 그냥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돼요. Q. 시급은 3만원이야? 고정으로 일하면 3만원인데. 저는 보통 그렇게 보도방으로 일했어요. 3만원에서 돈을 때서 7천원이라고 쳐가지고. Q. 몇 군데 다녔어? 제가 고 1때부터 했었거든요. Q. 근데 고 1인데 어떻게 했어? 거기서 실장들이 받아줬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고 1때는 인천, 의정부, 부천, 수원에서도 했었고. Q. 안 나갔어? 네. 2차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갔어요. 무서워서.

Q. 근데 알바를 못하게 됐어? 네. 부천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차비가 더 들 것 같아서 들어서 조건 몇 번 하고 그냥 부천에서 일하자 하고.

21. 그럼 너는 조건만남 알선을 한 거네? 팔았었어요. 여자애를. 배 태워서 뭐 이상한 섬인가. 보낸 적은 있어요. Q. 얼마 받았어? 내가 돈 받는 게 아니라고. 아는 형이 팔러간다고 갔다 오라고. Q. 청소년 파는 거야? 어떤 여자. 성인 인가? 그건 몰라요. 그 때 줄려서 배에서 잤는데. 전 잠들었어요. 그냥 팔고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저 500만원 때졌어요. 그냥 같이 가겠다고 500만원. Q. 그런 형들 어디서 만났어? 그냥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22. 네. (조건만남)해서 소년원 들어갔어요. Q. 그 친구 몇 살이었어요? 저랑 동갑이요. Q.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구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을 나왔는데, 개가 옆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중1때는 ○○중 다니던 친구 소개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개가 ○○중에서 애들이랑 싸웠었나 뭐 어쨌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가 소문이 안 들렸어요. 개가 ○○중 안다니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개가 천안에서 갈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맞냐고 하니깐. 내가 아는 ○○○이 맞대요. 개는 천안 가서 그렇게 살았구나 해서. 그래서 그냥 걸레소리 듣고 다니길래 그런가보다 그랬죠. 어느 날 개 조건만남 잡혀서 소년원 들어갔다고 그 얘기 듣고.

25. 있어요. Q.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그러니깐 애가 아는 여자애고, 애가 다른 지역에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가 근데 집을 나왔어요. 그러가지고 애네 돌아서 아는 오빠한테 갔어요. 근데 이 오빠가 돈이 좀 많아요. 그러가지고 이 여자애를 조건만남을 돌린 거예요. 이 남자애가. 포주처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수위 하나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죠. Q. 수위는요? 밥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술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자러 갈 수도 있는 거고.

⑫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경험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경험에 대해 청소년 30명 중 3명이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고, 30명 중 3명은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30명 중 7명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30명 중 16명은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의 접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가입을 하고, 아니 남자들이 먼저 조건하냐고 알았다고 소개하고 가격 말하고 하면.”, “즐툽이랑 킴얼롱.” 이라고 했으며, 특정한 채팅 어플(즐툽, 킴얼롱)을 언급하며 채팅방을 만들어서 직접 만난다고 했다. 조건만남을 한 친구가 있다고 한 청소년은 “네. 그 버디버디라는 채팅이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했대요.”, “채팅하다가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면 성관계 맺고 그래요. 돈 받고.”라고 응답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청소년 중 1명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업소에 가서 돈을

내고 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통해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조건만남 한 친구까지 합치면 3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이는 비율상 적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43> 참조).

질문: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3. Q. 어떤 용어를 써? 가입을 하고, 아니 남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이라고 알았다고 소개하고 가격 말하고 하면,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 빼고는, 그냥 안에서 싸는 거나 후장 같은 거나 그 성기 먹기 그런 거. 16. Q. 그럼 즐락이랑 컴얼롱을 통해서 한 거야? 즐락이랑 컴얼롱. Q. 그런 곳이 많아? 엄청 많아요. Q. 어떻게 가입을 한 거야? 가입이 주민번호 입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름하고 성별하고 사는 곳만, 그리고 방 만들기 전에 지역 있어요, 서울 이렇게 해놓고, 채팅 방 여러 개 띄우, 그러면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되게 많아요, 채팅방 1, 2, 3 이래서 들어가서 사람들 되게 많은데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막 대딸도 있고, Q. 대딸이 뭐야? 대신 딸쳐준다고, 그 것도 5만원 받고, 손으로 대신 딸쳐준다고, 그냥 차 안에서 남자가 바지 벗고 앉아있으면 손으로 딸쳐준다고, 그리고 그 거랑 조건이랑, Q. 남자 자위행위를 해주는 거야? 네, Q. 조건은 얼마 받아? 조건은 13? 근데 13에 두 번하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Q. 애인 대행은 안 해 봤어? 애인 대행은 안 해 봤어요, 애인 대행은 그냥 밖에서 제가 사람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좋게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밖에 사람들 있는 데서 애인해주고 그러면.	23. Q. 친구가 어떤 어플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요? 아니요, 그런 기억 안 나요. Q.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알아요, 막 랜덤채팅 그런 거 따로 성매매 막 원조교제 막 그런 따로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막 깔아서 가입하면 자기가 여기 있으면 다른 남자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막 띄우, 막 뜨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막 채팅하다가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면 성관계 맺고 그래요, 돈 받고.
□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음 3.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나요? 네 그 바다바다라는 채팅이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했대요, 만남 해가지고 그 이저씨가 용돈 줄게 이래가지고 키스만 하면 돈 준다고 했는데, 키스만 하면 15만원인가, 근데 키스만 안했대요, 막 하고 만지고,	□ 없음 1. 아니요, 그런 건 한 적 없어요, Q. 주변에 본 적도 없고? 네, Q. 돈을 주고 처음 만남을 한 적은 있잖아, 주변사람에게 들어서, 어디어디 좋더라, 찾아가서 돈 내고 했죠, 돈 내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자가 들어와요, 랜덤인데, 그런데(침대)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웬만해서 예쁜 애들 들어와요, 나이는 다 성인이에요, 그냥 모텔방처럼 되어있어요, Q. 7만원 줬던 때는 언제야? 1년 전이요, Q. 그러면 그 때 당시 여자들의 나이는? 25정도, 20대 초반, Q. 그 때 왜 갔어? 그냥 욕구 풀려고요, Q. 근데 지금도 가요? 이번 년도에, 14년도에 딱 한번 가고 안 갔어요, Q. 얼마 줬어요? 그 때는 8만원, 천안에 되게 많아요, Q. 몇 시? 12시 새벽, Q. 청소년 확인은 안 해요? 하는데 청소년인지 검사하긴 하는데, 저하고 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생겨서, 심하게 안하는 거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얼추 맞는다 싶으면 그냥 넘긴 거 같아요, Q. 주민등록감사는 안 해? 저는 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했어요, 다른 사람 민중 주는 거 받아서 다 들어갔어요, 저는 안 해요, Q.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 짹짹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관리 받고, 더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성병 같은 거 걸린 적 없어요, 콘돔 안 끼고 해요, 콘돔 더 낀다고 돈 더 내는 건 없어요.

⑬ 채팅 어플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한 횟수

채팅 어플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한 횟수에 대해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많은 횟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조건만남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일 년, 한 일 년 했던 거 같아요.”, “20번은 넘는 거 같아요.”, “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애도 있고 고1 올라가서 그러는 애들도 많아요.”와 같이 응답했다. 그 외에 조건만남을 5번 정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단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면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건만남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함을 볼 수 있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44> 참조).

질문: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3.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들은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나요? 개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랑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원룸에 같이 살았어요. 아예 그 아저씨랑.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들 엄청 많이 만나고, 그건 저도 모르는 오빠들인데. 갑자기 어떤 오빠들이예요. 오빠들 진짜 많았어요. 오빠들 막 맨날 하루에 막 다섯 번씩 하고 산책하러 산책하러. 막 그랬어요. 예쁘게 생긴데 없었는데 그냥 뭐 먹으려고 하려고 그런 거죠. 10. Q. 그 친구는 조건 만남 자주 해요? 일 년, 한 일 년 했던 거 같아요. 13. 20번은 넘는 거 같아요. Q. 돈 안주는 사람도 있어? 안주면 제가 때려요. 협박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칼을 가지고 있을 상황도 많아서. 칼을 언제나 늘 갖고 다녀요. 지금은 놀러갈 때는 안 갖고 다녀요. 저희 동네가 중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살인사건도 많고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요. 그거 갖고 만약에	돈 안주면 머리채 잡고 협박하죠. 왜 안주냐고 또 지갑 보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왔구나 하면 한 번 끌고 가가지고 은행가서 돈 찾으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은 다 받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때 아는 오빠들이랑 사니깐. 오빠들이 다 알려주고 싸움하는 것도 알려주고. 남자들은 거기만 차면된다. 그러니깐 미안하다고. 만약에 15면 30~40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협박했으니깐. Q. 뭐라고 협박하나요? 저 미성년자인거 아니까. 저도 문제긴 문제지만. 미성년자랑 하는 게 더 문제니깐 신고한다고. 미안하다고 가서 돈 주죠. Q. 졸투으로 한 다음에 연락은 뭘로 해? 카톡이나 틱톡. 그래서 오라고 하면 아이디를 서로 교환해서 가까운 데로 오라고 하고. 16. 한 5번 정도. 23. 친구들이 실제 조건만남을 어느 정도 했어요? 엄청 많아요. Q. 언제부터? 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애도 있고 고1 올라가서 그러는 애들도 많아요.

⑭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대방의 직업과 나이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은 “어이없는 게 유부남도 있고 경찰사람도 있고, 아 조사 다했죠. 지들이 경찰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대학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일반 직장인, 해병대라는 사람도 있고.”과 같이 회사원, 경찰, 교사, 대학 교수, 군인, 판사 등이었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그리고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나이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10대도 있었고, 40대 미만도 있었고.”, “한 32.”, “20대 초반부터 17살인 애들도 있어요.” 등처럼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되어있고, 그 중 2~30대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할 경우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건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가 후에 인간관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부록 5, <표 I-45>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는 어떠한가?

3.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들의 상대 직업과 나이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10대도 있었고, 40대 미만도 있었고. 13. 어이없는 게 유부남도 있고 경찰사람도 있고, 아 조사 다했죠. 저들이 경찰이라고 뽀뽀하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대학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일반 직장인, 해병대라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 거 하다보니까 아 이제 진짜 믿을 사람이 없구나. 경찰도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겠어요. 판사도 하는 사람 있는데 제가 아니고 그건 친구가 했어요. 친구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휴대폰을 우연히	봤대요. 그랬더니 판사라는 직업이.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후반. 14. 아니요. 잘 몰라요. Q. 어느 정도인지 몰라? 한 32. Q. 직업 모르고? 네. 16. 거의 다. 젊은 20대 초반도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17살인 애들도 있어요. Q. 그런 애들하고 해봤어? 해보진 않았어요. 나이 17 되어있어서. 그리고 제가 했던 사람들 중에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Q. 직업은? 모르겠어요. 직업은 그냥 다들 회사원 같은데. Q. 결혼한지는 모르겠고? 네.

⑮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차 안에서 만나서 했고, 모텔 갔다고 모텔 가고, 집에서 했다고 하고.”, “주로 모텔 근처나. 변화가 쪽.”, “ 주로 모텔 근처나. 변화가 쪽.”등과 같이 모텔, 집, 차 안, 술집이었으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체계의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부록 5, <표 I-46> 참조).

질문: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3.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는 주로 어디서 했나요? 모텔, 차 안, 집(남자 집). 차 안에서 만나서 했고, 모텔 갔다고 모텔 가고, 집에서 했다고 하고. 13. 주로 모텔 근처나. 변화가 쪽. Q. 성폭행 당해본 적은 있나요? 예전에 강간은 당했었어요. 선배들한테. 모르는 선배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깐 저희 학교 선배인거죠. 그냥 길가다가 끌려갔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컴퓨터에서 있던 실재가 저한테 일어나니까. 그냥 당하고만 살고 중2때 또 당하고 살고 그 때 잘 몰라서 당하고 살고 이제는 안 당하죠. 창고 같은데. 끌고, 아니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친한 척 하라고. 안하면 죽는다고. 막 데리고 가고,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신고도 못했어요. 선배니까. 그 때는 몰랐으니깐. 아무것도. Q. 언제 당했어요? 중 1이랑 중 2. Q. 부모님한테 말 안했어? 그거조차도 말 안했어요. Q. 임신 안됐어? 근데 임신 안했어요. 모르겠어요. 16. 모텔 아니면 차 안. Q. 근데 모텔에서 주민등록증 검사는 안했어? 그러니까 안하는 데를 알고 거기만 간 거죠. 성복동이었어요.	21. 모텔. Q. 업주랑 연결되어 있겠네? 네. 전화해서. 지금 남자랑 여자랑 가니까. Q. 민증 검사 안하겠네? 네. Q. 모텔한테 줘야겠네? 모텔 개네한테 한 달에 만약 백 준다고 하면 팀으로 3천만 원. 모텔비 바가지로 씹어요. 5만원 받음 거 9만원이라고 바가지 존나 씹우고, 우리가 팀을 안줘도 돼요. 모텔 개네한테 이렇게 했으니깐 우리한테 돈을 더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텔비를 바가지를 씹이라. 모텔비가 얼마얼마고 이렇게 해주겠다 알았다고 사장이랑 연결해서 그 여자한테 해서 그 여자애들도 다 대포예요. 야 그 뭐뭐 남자랑 커플 방 가라. 커플룸이 15만원인데, 평일 날에는 많이 있대요. 주말에는 새벽에만 잘 돼요. 그러가지고 개네가 네 오빠. Q. 그러면 모텔비는 그 남자가 15만원 내고, 너네한테 13만원 내고? 밤 12시 지나면 20만원, 10만원 할증 붙어요. 바가지 존나 씹우는 거예요. Q. 술 먹고 하는 거야? 술 먹고 2차까지 가면 20만원 더 줘야 돼요. 1차에서 20, 2차에서도 20, 3차까지 간다 그러면 3차에서 40. 총 80만원 버는 거예요. Q. 80만원 번 거 가지고 때주는 거야? 여자애 20, 나머지 60은 갖죠.

⑩ 조건만남으로 받는 금액

조건만남으로 받는 금액은 대부분 평균 10만 원 이상이었으며, 최소 금액은 5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금액은 3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5번 했거든요. 거의 4~5번. 그래가지고 진짜 40~50 이랬어요”, “10.”, “8만원, 10만원.”, “5~6만원.”, “5만원, 10만원.”, “8만원 10만원 한번 만나는데.”, “10에서 15. 켈 많이 받은 건 20만원.”, “15만 원 정도”, “12만원 아님 13만원.”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단 청소년들이 쉽게 조건만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며, 또 일단 넘어간 경우 왜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며 다른 일반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부록 5, <표 I-47> 참조).

질문: 조건만남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3.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하루에 5번 했거든요. 거의 4~5번. 그래가지고 진짜 40~50 이랬어요. 한번 할 때마다 100이래요. 요번에 제가 또 아는 애가 있는데 임신했어요. 개도 애 낳았는데. Q. 어떻게 알았어? 어떤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개도 조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개가 임신을 했어요. 두 번 씩이나 했어요. 임신을. 한 명은 지워서 입양 보냈고, 한 명은 애기 낳고 입양 보냈어요. 한 명은 지금 애 키우고 있는데 두 번 다 낳았는데. 개는 아예 그 일에서 손을 뗐어요. 개도 그 언니들이 시켜서 개보고 하라고 했어요. Q. 그럼 그 언니들이 포주인거야? 네. 그 때도. 시켰어요. 맨날 당했어요. Q. 그럼 개는 지금 누구랑 살아? 지금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데. 남편은 지금 남편 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개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키운대요. 한 5월 달 쯤에 혼인신고해서. 조건해서 만난 애인지는 몰라요. 9.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8만원 10만원 한번	만나는데. 11.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5~6만원(친구). 12. 전체가 40만원. 한 번 만나는데 5만원, 10만원. 13. 한 번 할 때 10에서 15. 켈 많이 받은 건 20만원. Q.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 거의 계속 모았다면 500은 넘을 거 같아요. 16. 12만원 아님 13만원. Q. 다 돈을 받았어? 네. Q. 이상한 남자는 없었어? 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강제로. 원래 먼저 돈을 받고 하는데 개가 끝나고 주겠대요. 근데 이미 그 때는 모텔 안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강제로 막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근데 열받아가지고 옷 입고 돈 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8만원을 주는 거예요. 어이없어 가지고 다음에 돈 8만원만 받고 나왔어요. Q. 조건이 뭐였어? 저는 조건 그냥 다 안 되고 평범하게. 평범하게 하되 하고 만났는데 (성기를) 빨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금 빨아주고 그러고 저는 누워만 있고. 하는 거죠. Q. 질 사정 이런 거 안 하고? 네. Q. 하는 남자 없었어? 네.

⑪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관해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들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은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그냥 돈 때문에.”, “다른 알바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등과 같이 응답했다. 이를 살펴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용돈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가출하고 난 뒤 돈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가 잘 구해지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돈을 빨리 받기 위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크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도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주 관심이 자본에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결과이다(부록 5, <표 I-48>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막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Q. 부모님한테는 달라고 하면 안 돼? 막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13.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고 용돈도 적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때 돈도 없고, 사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엄마랑 싸우고 나서 집 나가서 갈 데도 없어서 산배들 집 가서 놓고 그렇게 자냈었어요. Q. 그러다 산배언니들이랑 알게 된 거야? 네. Q. 다른 대안이 없었어? 아니요, 그 땐 했었어요. 잔디지나 서빙 같은 거 했었는데, 월세 내기 빠듯해서, 그거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먹고 자고 해서 100만원, 월세 내면 10만원이고,	웃이나 식비나 이런 거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다 보니깐, 적으면 두 명 이고, 많으면 여섯 명. Q.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거의 다 조건만남. 뽕빠이 한 적도 있고. 15. 그냥 돈 때문에. Q. 조건만남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친구가 옆에 있었잖아요. 친구 소개로.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막 다른 알바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다른 고깃집 알바 서빙은 하루에 3만원 그 정도 받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그런 거는 5만원 받고 그래서 하는 거 같아요. Q. 그 친구들은 아직도 해요? 네,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⑱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돈(1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빠져나오기 힘들어서(1명), 기타(5명), 접촉 경험 없음(12명)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돈으로 인해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다고 한 청소년은 “쉽게 돈을 버니까.”, “이미 돈의 맛을 들였으니깐 이걸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걸 계속 하면 막 성욕구가 그렇고, 한 번 그러면 계속 계속 생각나고 하고 싶고 그렇대요.”라고 응답했다. 조건만남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를 응답한 청소년은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깐 잡혀있는 거예요.” 라고 했다. 그 외에 “개는 계속 하고 있어요.”, “못 끊는 건 중독이죠.”라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부록 5, <표 I-49>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돈

12. 쉽게 돈을 버니까. Q. 돈은 벌어서 뭐하는 데 써? 막 놀거나 노래방이나 그런데 가거나 술 먹거나. 어. 담배도 사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떨어지면 화장품 사고 그래요.
13. 이미 돈의 맛을 들였으니깐 이걸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Q. 돈 때문에? 네. Q. 어떻게 안 하게 됐어? 그거 하다 보니깐 성병도 걸리고, 에이즈? 아니. 모르겠어요. 매독 헤르페스? 그럴 걸요. 그거 걸려서 치료도 하고, 지금 항문에 사마귀 났어요. 사마귀 난다고 해가지고, 저 났었어요. 그래서 치료 받았어요. 뭔가 불룩하게 나와 가지고, 여기 선생님이랑 병원 갔었어요. 사마귀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수술했어요. 아팠어요.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걸 계속 하면 막 성욕구가 그렇고, 한 번 그러면 계속 계속 생각나고 하고 싶고 그렇대요. 근데 그렇기도 한데 그거 하면 돈도 받고 그러니깐 좋은가 봐요.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없고, 막 성병 걸린 애도 있고요. 그거 하다가 신고당해서 소년원 간 애도 있어요.

□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10.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깐 잡혀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Q. 어떻게 하다 잡혀있게 된 거예요?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업소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가 기간 끝나서, 할 거 못 돼 보여요. 솔직히.

□ 기타

11.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개는 계속하고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 친구 다른 친구가 말해줬어요.
24. 못 끊는 건 중독이죠. 이제, 저야 잘 모르지만 중독 같은 게 있겠쥬.

⑬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채팅 어플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대화신청, 쪽지가 오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입사, 질사, 후장 빼고 다 가능. 한 번하는데, 1회 15.’ 라고 글을 올려요.”, “만날 사람하고 즐툵에 올려요.”, “일단 대화신청이 와요. 그러면 그거 ‘ㄷ’하냐고 물어봐요.”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는 상대방이 키, 나이, 몸무게를 물어보며, 얼굴 사진이나 몸매 사진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조건(성관계, 애인대행)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상대 남자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만남을 가지자고 말한다. 조건만남을 하자는 얘기가 오가면 다른 채팅 어플(카카오톡, 틱톡 등) 아이디를 알려주어 다른 채팅 어플에서 연락하게 된다고 한다. “틱톡 아이디 주고받고 만나요.”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채팅 어플에서 연락하는 이유는 “즐툵은 얘기하다보면 성적인 단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즐툵이 바로 튕겨서 대화가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틱톡으로 넘어가요.”라고 응답했다. 이에 성적인 단어 사용이 허용되는 다른 어플로 이동하여 연락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 단, 휴대폰 번호는 조건만남 후 다시 연락이 오거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질문: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 Q. 조건만남 한 친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채팅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을 했나요? ‘입사, 질사, 후장 빼고 다 가능. 한 번하는데, 1회 15.’ 라고 글을 올려요. 만약 대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작해요. 개네가. 하기 말하기 전에 개네 남자애가 조건이라면 그 남자가 보내면 그 여자가 그렇게 입사, 질사, 후장 빼고 다 가능하고 보내요. 지네끼리 다 통해졌으면 다 만나는 거예요.
12. 즐툵에 들어가요. 그러면 만날 사람하고 즐툵에 올려요. 뭐라고 해야 되지.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 올리면 게시판처럼 올라가요. 제가 쓴 글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남자들이 그 말을 보고 쪽지를 보내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나서 하게 돼요. Q. 뭐라고? 뭐 시간당 얼마 소개는 나이 뭐 키. 그런 거 물어보죠. Q. 그럼 조건은? 남자는 돈을 준다 그러고 그러면 남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Q. 남자가 원하는 건 대체로 뭐야? 거의 다 몸을 대주는 거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삭제를 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애인대행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도 해주고. 뭐 같이 놀아주면 애인대행 해주면 노래방 가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돈 준다는 사람도 있고. Q. 조건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틱톡 연락처를 주고받고. 틱톡은 아시죠? 카톡 아이디처럼 틱톡도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틱톡 아이디 주고받고 만나요. 만나서 만나서 놀거나. Q. 예를 들면 아이디가

- 뭐? 자기 가입할 때 만든 아이디. 친구추가에 뜨면 한명밖에 안 떠서 대화 걸면 ‘누구누구세요’ 맞다고 하면 대화를 해서 ‘어디로 갈까요’ 하면 목적지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만나요. Q. 거기 가서 만나면 휴대폰 번호는 안 알려줘? 휴대폰 번호는 안 알려줘요. 휴대폰 번호는 다음에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 협박전화도 올 수 있는 점이라서 안 해요. Q. 아이디는 여러 개? 한 아이디로 계속 써요. 즐툵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틱톡에서? 알려주는? 즐툵은 얘기하다보면 성적인 단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즐툵이 바로 튕겨서 튕겨지니깐 대화가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틱톡으로 넘어가요. Q.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애인처럼 하고 나면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놀거나 해요.
13. 일단 대화 신청이 와요. 그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ㄷ’하냐고 물어봐요. 한다고 하면 스펙이랑 가격을 알려달라고 해요. 키, 나이, 몸무게 그럼 다 말하고, 거짓말도 하죠. 나이 속이고 키 속이고 몸무게 속이고 그래서 얘기하다 저는 얼굴 사진 보여주고 몸매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하기 싫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카톡 아이디 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장난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온다고 해서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전혀 안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세 네 번. 그 다음에 돈 받고 돈 안주면 협박하고.

이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채팅어플이나 소셜미디어의 공급 업체들간의 상호 긴밀한 교류나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50> 참조).

㉔ 조건만남을 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

조건만남을 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에 대해 신체적 변화만 있음(3명), 정신적 변화만 있음(2명),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음(3명), 없음(7명)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변화만 있다고 한 청소년은 “임신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다 변화 없던데.”, “살이 되게 많이 찼 거 같아요.”라고 응답했다. 정신적 변화만 있다고 한 청소년은 “아저씨나 삼촌뻘들 보면 좀 다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있다고 한 청소년은 “많이 맞았대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빠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소심하던 애가 완전 성격이 나쁜 애로 변했어. 몸 변화는 이게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밥도 규칙적으로 안 먹다 보니깐 살도 더 찌고, 낙태도 한 적.”이라고 응답했다.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없다고 한 청소년은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진 않죠. 한번 했으니깐 그 맛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하게 되니까.”등과 같이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변화에 노출된 청소년들이(8)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7)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가 없다고 한 청소년 가운데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좋겠다.”라고 답한 청소년의 경우 그 대답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조건만남은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분명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부록 5, <표 I-51>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하게 된 후,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신체적 변화만 있음

3.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임신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다 변화 없던데. 애들, Q. 본인들은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9.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살이 되게 많이 찼 거 같아요. 애가. 그러가지고 상상임신해서 학교 자퇴했어요. 여기 학교였는데.

□ 정신적 변화만 있음

17. 아저씨나 삼촌뻘들 보면 좀 다 그럴 거 같다는 생각. Q. 남자에 대해서? 네.

□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음

10.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많이 맞았대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빠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근데 개가 엄청 착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성격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솔직히 친구 입장에서선 불쌍하죠.

개가 막 안 좋게 보인다가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친구니깐 어쨌든 그냥 불쌍했어요.

13. 일단 거의 부정적[이]게 생각되고, 남자라는 인식 자체에서도 있고 자책을 많이 해요. 심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성격 많이 변하고 저 원래 옛날에는 착했었어요. 어쨌든보니까 선배들 만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다보니까 해서 성격이 돌아쥔, 완전 정반대 됐죠. 소심하던 애가 완전 성격이 나쁜 애로 변했어요. 몸 변화는 이게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밤도 규칙적으로 안 먹다보니까 살도 더 찌고 Q. 임신이나 낙태경험은? 엄마는 모르는데. 임신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임신했다고 해야 되나. 두 번 정도, 낙태도 한 적이.

□ 없음

1.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진 않죠. 한번 했으니깐 그 맛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하게 되니까.
14.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Q. 몸에 이상은 없어? 그런 건 없었어요.
15.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기분은 나빴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원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아무 거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㉑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명,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명이었다. 조건만남에서 벗어나려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네. 친구들이 개 한 번 찾으러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도움 받고 쉼터 온 거예요.”라고 응답했다. 반면 조건만남에서 벗어나려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청소년은 “아니요. 이제 이거 걸리고 나서 이제 도움 청할 일도 없었고.”, “벗어나려고 저 그냥 마음먹었는데.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나간다 이려고.”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 중에 상당수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록 5, <표 I-52> 참조).

질문: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0. Q. 조건만남을 한 친구가 조건만남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친구들이 개 한 번 찾으러 갔을 거예요. 집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개 붙잡혀있는 데로 갔나 못 빼워서 부모님 불러와서 데려왔대요.
16. 네. 그래서 도움 받고 쉼터 온 거예요. Q. 캠프는 어떻게 가게 됐어? 캠프는 제 친구가 거기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그래서 그 때 제가 중간에 있다가 수원으로 넘어갔을 때였는데. 검정고시는 떨어졌고, 졸업장은 애들보다 뒤쳐지기 싫은데 일 그만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쉼터 들어 갈 생각은 없었는데.

□ 없음

14. 아니요. 이제 이거 걸리고 나서 이제 도움 청할 일도 없었고. Q. 그 때가 언제였어요? 3월 달에. 그게 타지고 그러고 캠프를 간 거죠. Q. 캠프를 언제 갔어요? 캠프가 4월 며칠. Q. 봉사활동

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보호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종이를 주더라고요. 등록 사회봉사 명령서? Q.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야? 정해진 데로 가야되는 거야? 보호관찰소인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라 같이 가기로 했어요. Q. 선생님하고 상담 받았어? 캠프 가기 전에 선생님 만나서 얘기 했었어요.

18. 벗어나려고 저 그냥 마음먹었는데.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나간다 이려고. Q. 그러고 안 나갔어? 네. Q. 너 캠프 가봤다고 그랬잖아. 도움이 좀 됐어? 경찰이 가라고 한 것도 있고 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집에 있기 싫고 재미없으니깐 집에만 있으니깐 학교만 가고 진짜 재미있긴 재미있었어요. 완전 뭐 캠프에서 나가서 언니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도 잘 맞고, 교육하면 성매매하지 말아야한다고 그러고 솔직히 좋았었는데. Q. 갔다 오고 나서 몇 번 상담했어? 두 번. 연락 많이 했을 걸요. 나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㉓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30명 중 5명의 청소년이 “성인인증을 강화해야할 거 같아요.”, “모텔 같은데서 신분증 검사하는 게 좋을 텐데.” 등의 내용처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랜덤채팅 어플 자체의 제거가 조건만남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30명 중 7명의 청소년은 “그냥 못하게 없애버려야죠.”, “랜덤채팅을 없애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주로 채팅 어플에서의 조건만남 단속, 성인인증, 모텔과 같은 업소 출입 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반면, 30명 중 11명의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하였다. “없어요. 개네들은 없어요. 답 없어요.”, “없을 거 같아요. 뽕촌도 결국엔 합법적인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청소년도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부모님이 용돈만 잘 준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겠죠.”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소극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취업강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도움책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도 규제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록 5, <표 I-53>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단속 강화

2. 잘 모르겠어요. 냅두면 안 될 거 같아요. 막으려면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9세 미만. 성인인증을 강화해야 할 거 같아요. Q. 웹하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증. 지금 웹 하드 사이트가 인증 안 해도 되거든요. 거의 웬만한 건. 그래서 보통 부모님 주민번호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 같아요. 인증을 강화해야 할 거 같아요. Q. 랜덤채팅 금지하는 방법?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는데. 네. 좀 위험한 거 같아요. 남자들의 목적이 거의 여자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만나게 돼서 강제로 성관계하게 되다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3. 채팅을 일단 없애고, 모텔 같은데서 신분증 검사하는 게 좋을 텐데 남자여자가 같이 들어가면. 좀 어리게 생겼으면 검사하는데 좀 그래도 막 하면 검사를 아예 안 해요. 요즘 애들끼리 가는데도 안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 랜덤채팅 제거

16. 그냥 못하게 없애버려야죠. Q. 그런 애플 같은 거를? 네. 하나하나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29. 랜덤채팅을 없애요. Q. 그럼 성인들은 어떻게 해?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결혼해서 하든가. 성인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서 하면 되죠.

□ 없음

10. 솔직히 친구 입장에서 없는 거 같아요. 해줄 게 말 밖에 없잖아요. 학생이라 돈을 대신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없어서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지 돈 없다는데 안하겠어요?
24. 없을 거 같아요. 뽕촌도 결국엔 합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은 진짜 다 잡아갔죠. 몇 십 년 전부터 있었을 거 같아요. 어떤 쌤도 그랬는데, 남자들은 다 어쩔 수 없다고. 저희 학교 옛날 쌤이 저 학교 처음 일주일 다니고 수업 듣는데, 소나무 뒤에서 섹스하다 걸리면 죽는다고.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대요. 스릴이 넘친대요. Q. 아동 많이 보죠? 아동 많이 안 봐요. 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25.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안됐죠. 원래 쉽게 돈을 버는 애들은 어렵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됐죠. Q. 대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자기 의지 아니면 없죠.

□ 기타

7.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12. 청소년도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부모님이 용돈만 잘 준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겠죠. Q. 너도 알바 할 수 있잖아? 알바 못하는데. 여자가 나이가 안 돼서 못한다고. Q. 부모님 동의? 그냥 부모님 동의라는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안 된대요. Q. 알바하려고 어디 가봤는데? 당구장도 가보고 서빙도 가보고 편의점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속 애인대행이나 했어요.

㉓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예방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30명 중 12명, 예방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30명 중 12명, 기타 응답은 30명 중 3명, 접촉 경험 없음 응답은 3명이었다. 예방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채팅 없애고 단속 심하게 하고.,” “팬클럽은 거 같아요.,”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본인인증강화.” 등과 같이 예방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예방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그거 말고도 요즘 여자애들은 보도방 가서 보도 뛰어요.,” “소용없어 보여요.,” “모든 사이트는 성인인증 하긴 해도 언젠가 다 뚫려요.”라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라가 좀 그런 게 청소년들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는 것도 않고, 했다고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지원을 해주던가.”와 같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차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발적 조건만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6명 중 5명의 청소년이 규제강화를 통한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규제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또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가 조건만남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부록 5, <표 I-54> 참조).

질문: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랜덤채팅 이용금지, 성인 및 본인확인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방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3. 채팅 없애고 단속 심하게 하고, 성인인증 강화하고, 네. 아니 학생 아니라고 계속 우겼는데 개는 동의하에 했는데, 근데 만약 경찰한테 걸려봐요. 그 남자 쪽에서만 불리하잖아요. 학생인지 아닌지 꾸미면 모르잖아요.
8. 괜찮은 거 같아요. Q. 조건만남 하는 애들이 줄어든 거 같아요? 네.
20. 네.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본인인증강화, 지금도 충분히 강화되었긴 한데 그건 그냥 옆에 엄마 아빠 휴대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인증강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 발급일 이런 걸로 인증한다거나 완전 본인 아니면 자기한테 가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Q. 그럼 채팅이나 그런 거 못 하잖아?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못 보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보도록 노력할 거 아니예요. 일단 청소년들이 보는 건 안 되잖아요. 19세 이상만 보는 거고.

□ 예방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6. 그거 말고도 요즘 여자애들은 보도방 가서 보도 뛰어요. 요즘 여자애들은 그래요. 또라이들. 저희 학교에도 그런 여자애들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 나오는 애들. 돈에 미쳐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해도.

10. 소용없어 보여요. 절대. 부모님 민증 가져가면 되는데.
24. 그거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쥬. 그런 걸 만든다고 메신저가 끊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Q. 다른 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쥬. Q. 성인인증강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닐 거 같아요. 모든 사이트는 성인인증 하긴 해도 언젠가 다 뚫려요.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안이. 진짜 다 뚫리잖아요. 지금 아동 다 막아놓으면 뭐해요. 여차피 다 뚫리는데.

□ 기타

4. 없어요.
5. 모르겠어요.
18. 근데 그게 나라가 좀 그런 게 청소년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집안 사정이 그렇다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지도 못하고 그러면 막는다고 해서 안할 애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는 것도 없고, 했다고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지원을 해주던가.

㉔ 조건만남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조건만남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 조건만남을 한 친구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청소년은 “삶이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요.”와 같이 응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 청소년은 “몸이 아파진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거는 예전에 그런 일 했으니깐 남친 사귀거나 친구들 사귄 때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 “경찰이랑 남자를 못 믿겠다는 게 가장 부정적인 거 같아요.”, “아. 그냥 후회돼요.”, “완전 망가졌어요. 보는 눈도 안 좋고 막 소문도 엄청 나고 그러니깐 학교도 안 가고.”라고 응답했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옛날보다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해졌어요.”, “이 일을 다시는 하면 안되는 게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건 돈 생긴 거 밖에 없고요.”등과 같이 응답했다. 이상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건만남이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청소년의

경우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해졌다는 것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소극적인 성격이 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쨌든 전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조건만남이 아닌 다른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조건만남에 대한 긍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이 일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청소년의 대답은 조건만남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진술이라고 하겠다(부록 5, <표 I-55> 참조).

질문: 조건만남을 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부정적)

3. Q. 학생 친구가 조건만남 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삶이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애들이 좀 덜하긴 한데. 안 하긴 하는데. 하는 애들은 계속 하고 하다가 안하는 애들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12. 몸이 아파진 것도 있을 거고. 억지로 당한 적도 있으니까. Q. 억지로 당한 적 있어? 성폭행 당한 거야? 성폭행이라고 해야 할 지 강간이라고 해야 될 지 아무튼 당했어요. Q. 어떻게 당했어요? 애인대행 하러갔다가? 네. 차에서 덩치 큰 새끼가 막 뭐라 해야 되지 조수석 거기 제가 앉았잖아요. 그냥 차를 대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제 위로 올라와요. 덩치 큰 새끼가 올라오는데. Q. 운전석에 개가 앉고, 네가 옆에 앉았어? 네. Q. 개가 막 건너왔어? 네. 근데 막 건너서 왔어요. 덩치 존나 큰 사람이 오니깐 저항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당했죠. 이렇게 해서. Q. 신고했어? 아니요. 번호도 모르고 하니깐. Q. 그럼 당하고 돈은 줬어? 네. 돈을 줬어요. 똑같이. Q. 그러니까 원래는 애인 대행만 하기로 했는데 너는 당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 가는 차에다 돌멩이 던졌어요. 맞았어요. Q. 그럼 그 뒤로 가위로 바꾼 거야? 네. Q. 근데 왜 신고 안 했어?	저도 그걸 얘기를 한 사람이니깐 저도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Q.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때려야죠. 못하게. 13. 긍정적인 거는 옛날보다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했는데. 중 1 중 2때. 학교 애들한테 심하게 폭행당하고 그랬었어요. 그 땐 되게 소심했었으니깐.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성격 확 바뀌니깐 애들이 재미있다고 하고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깐 재미있고.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예전에 그런 일 했으니깐 남친 사귀거나 친구들 사귄 때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 만약에 친구나 남친이 알게 되면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좁은데. 자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 같아요. 재는 몰라요. 14.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거죠. 다시는 안하고 싶죠. 부정적인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이 일을 다시는 하면 안되는 게 긍정적이고. 경찰이랑 남자를 못 믿겠다는 게 가장 부정적인 거 같아요. 16. 긍정적인 건 돈 생긴 거 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거는 아. 그냥 후회돼요. 잠깐의 순간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5) 청소년의 성 상품화 및 성의식

①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른 생각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른 생각에 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아 돈 주고,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진짜 싫어요.”, “더러워요.”, “저희 말로 걸레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또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와 같은 슬픔이나 동정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외에 “잘 모르겠어요.”, “성매매나 뭐지 야한 거 찍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연예계에 스폰 같은 거 많잖아요.”,

“성을 상품화 한다. 뭐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성 상품화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부록 5, <표 I-56> 참조).

질문: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2. 아 돈 주고,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한다는 느낌? 네. 사랑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커플들이 그걸 돈 주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되게 아닌 거 같아요.	9. 상품화? 판다는 거예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3. 진짜 싫어요. 아니 청소년을 왜 돈을 주고 사요? 청소년도 솔직히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왜 다른 아저씨들이랑. 개네들도 이해 안 가요. 지금 뭐 걸레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13. 성매매나 뭐지 야한 거 찍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연예계에 스폰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요.
4. 더러워요. Q.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거나 책에서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 Q. TV 어디에서 봤어요? 몰라요. 그냥 채널 돌리다가	16.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냥.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26. 성을 상품화 한다. 뭐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Q. 성매매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29. 저희 말로 걸레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②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청소년 30명 중 조건만남(8명), 성적 이미지(5명), 돈(4명), 걸레(4명), 더러움(4명), 없음(1명), 기타(4명)로 응답하였다. 조건만남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하는 학생들.,” “그냥 조건만남”라고 응답하였다. 성적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거가 들어요.,” “남자랑 여자랑 하는 그런 게 떠올라요.”라고 응답했다. 돈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청소년들은 “돈 없어서.,” “여자가 팔릴 거 같은.”과 같이 응답하였다. 걸레에 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청소년들은 “걸레. 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더러운 이미지를 떠올린 청소년들은 “그냥 더럽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애들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막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가 봤던 야동에 있는 여자들.”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조건만남과 돈을 떠올린 청소년들이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식 안에 성 상품화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부록 5, <표 I-57> 참조).

질문: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 조건만남

1. 조건만남 하는 학생들.
13. 그냥 조건만남.

□ 성적 이미지

6. 성에 대한 거가 들어요.
7. 남자랑 여자랑 하는 그런 게 떠올라요.

□ 돈

11. 돈 없어서.
15. 여자가 팔릴 거 같은.

□ 걸레

3. 걸레. 뭐하는 거지 이런 생각.
21. 걸레. 씨바 걸레네.

□ 더러움

4. 그냥 더럽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 기타

9.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들이 계단에서 몇 번 구르면 낙태가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애들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막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미지? 그런 거.
29. 제가 봤던 아동에 있는 여자들.

③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청소년 30명 중 21명이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서로 믿음도 없고 잘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안 되죠.”, “. 자기가 책임 질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가 임신하기라도 하면 애 인생 망치는 거고.”와 같이 응답하였다. 반면,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8명이었으며,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분위기 타다가 술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깐.”,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꼭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솔직히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남친이랑 하는 거 싫어해요.”라고 응답하여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 청소년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견해와 상반된다. 청소년들이 혼전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애정이 없는 사람과’라는 단서에서 성매매에 대한 시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단순한 만남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애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부록 5, <표 I-58> 참조).

질문: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

2. 아니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믿음도 없고 잘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명 만나고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애정이 없는 사람과 해본 적 없어요.
6.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안 괜찮죠. Q. 만약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걸레죠. 주위에 많아요. 그런 애들 요즘 애들 다. 남자애들 다. 발정 나가지고 누구 한명이라도 쫓 걸레라고 소문난 애들 개들 한 번이라도 먹어보려고 발악을 해요. Q. 성관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남자애들 다 그래요. 저기 있던 남자애들 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29. 아니요. 자기가 책임 질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가 임신하기라도 하면 애 인생 망치는 거고, 그냥 한번 그러고 말건데 이해가 안가요.

□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

10.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17. 네. Q. 왜?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분위기 타다가 술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깐. Q. 언제? 한 반년 전? 까먹었는데. 아 아니다.

삼년 전에 그 강남에서. 당했어요. Q. 어떻게? 그러니깐 제가 원래 그 오빠랑 친했어요. 그 오빠 집에 있다가 아는 언니 만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오빠 지금은 21살이요. 그런 적 있어가지고 갔는데 하지 말라고 울면서 그랬는데. 밀어냈는데 남자를 제가 어떻게 밀어내요.

28.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Q. 아무 여자랑 해도 돼? 네. 뭐 상관이에요. Q.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할 수 있지? 꼭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Q.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해본 적 있어? 없어요. Q. 그런데 왜 된다고 생각해? 기회가 된다면 할 거예요.

□ 기타

13. 솔직히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남친이랑 하는 거 싫어해요. Q. 왜? 남친은 보잖아요. 하고 나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이 떨어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모르는 사람은 하고 나서 안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저는 남친 사귀면 20대들 사귀면 난 그런 거 싫어하니깐 난 널 마음껏 풀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여자랑 하라고 해요.

④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청소년 30명 중 9명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30명 중 19명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은 “잠자리는 가져도 되는데, 성관계까지는 안 되고.”, “절대. 혼전순결.”, “여자라면? 서로 좋으면. 남자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표가 나잖아요.”라고 응답했다. 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은 “네.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오래 연애 해가지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데 안 사귀는 사람이라면 안 돼요.”, “막 옛날에는 그래야지 됐는데, 요즘에는 막 결혼 전에 막 먼저 해보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된대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한 적이 없어서.”라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청소년이 혼전순결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나 성매매나 단순한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부록 5, <표 I-59> 참조).

질문: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5. 잠자리는 가져도 되는데, 성관계까지는 안 되고, 진짜 잠자는 거만.

9. 절대. 혼전순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안해야겠다.

20. 여자라면? 서로 좋으면. 남자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기할건데 그래도 여자는 좀 순결을 지켜야한다. Q. 그럼 남자는 표가 안 나니까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죠. 남자도 지켜야한다 그것보다도 여자가 표가 좀 더 나니까. 처녀막이나 이런 거. Q. 그럼 부인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저한테 말을 했다면 그래도 좀 화는 나겠쥬. 좀 실망스럽겠쥬. 나 말고 다른 남자랑 했다는 게. 그래도 어떡해요, 결혼해가지고 살아야지.

□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6. 네.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오래 연애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저는 관참을 거 같아요.

7.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도 되는데 안 사귀는 사람이랑은 안돼요.

23. 아니요. Q. 왜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고, 막 옛날에는 그래야지 됐는데, 요즘에는 막 결혼 전에 막 먼저 해보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된대요.

□ 기타

11. 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한 적이 없어서.

3. 소결

이상에서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주로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돌스타를 자주 보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두 명 중의 한 명 이상이 야한 동영상은 친구에게 공유하는 등 재 확산에 가담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야한 영상물의 시청이 단순한 향유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향한 의지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은 아이돌스타를 통한 성 상품화를 심각한 인격 훼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70%의 청소년이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30%의 청소년이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왜 대중매체에서 노출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해 30명의 청소년 중 20명이 ‘하루 종일’등과 같이 하루 내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스마트폰에서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물이나 음란물, 심지어 이성과의 성적행위 등을 접촉 및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스마트폰이 청소년 유해물의 재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이 선정적인 영상물의 생산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30명 중 18명의 청소년이 음란 채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에게 SNS를 통한 음란채팅이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 없다면 굳이 하지 않을 경우도 스마트폰의 시공을 제한받지 않는 용이성으로 인해 음란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채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음증, 노출증, 성매매, 절편음란증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나아가 그러한 변태적 성 징후들이 특별한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러한 메신저의 심각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30명의 청소년 중 3명이 돈을 벌기 위해 랜덤채팅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비록 3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50%의 청소년이 성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랜덤채팅에 접속하자마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며, 랜덤채팅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메시지가 온다고 응답했다. 유인 메시지 내용은 주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거나 사진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반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며,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의식 안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거의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인 또는 친구가 조건만남을 한 경험에 대해 3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은 경찰, 교사, 대학 교수, 판사, 회사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모텔, 집, 차 안, 술집이었으며, 조건만남으로 받는 금액은 대부분 평균 10만 원 이상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며 다른 일반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다고 응답했다.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에 대해 상당수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소극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취업강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도움책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도 규제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성 상품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건만남이나 돈을 떠올렸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의식 안에 성 상품화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애플리케이션마켓에는 이미 수많은 유해매체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쉽게 성인물동영상이나 성인용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성인물이나 불법적인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 그 외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성범죄나 성매매 등의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VI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 VI 장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전문가패널 선정

기존의 델파이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회수율은 일반적인 서베이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략 50%에서 70% 정도로 어떤 경우는 현저히 낮은 것도 있다. 낮은 응답률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의 수, 즉 표본 집단의 크기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owe, Wright & Bloger, 1991). 단, 10여명 내외의 소집단 패널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Armstrong, 2002). 하지만 대다수 델파이 선행연구가 패널은 최소 15명 이상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Jensen & Anderson, 1996; Rowe, Wright & Bloger, 1991; Woudenbergh, 1991; Yuxiang, Donghua & Changgeng, 1990, 성윤숙, 박병식, 2009 재인용).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 전체 참가자의 수,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Jensen & Anderson, 1996; Armstrong, 2002).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선정기준을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나 업무 경력자(학계, 연구기관, 실무기관, 청소년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로 정하였다. 먼저 학계는 대학교수의 경우 청소년 성 상품화 연구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으며, 신문방송학, 법학, 경찰행정학, 범죄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로 제한했다. 현장의 경우 청소년 성 상품화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행정계의 경우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담당자 공무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선정하였다. 이 결과 연구진 자체조사와 자문추천을 통해 전문가로 최종 판단된 분들을 개별 접촉하여 델파이 조사를 승낙한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전문가는 학계(13명), 현장전문가(11명), 행정계(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IV-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영역	델파이조사 전문가 분야	인원
학계	경찰행정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3명, 행정학과 교수 1명, 신문방송학부 교수 4명, 범죄심리학과 1명, 연구원 1명,	13명
현장	방송국 PD 2명, 한국정보화진흥원 1명, 한국사이버감시단 1명, 십대여성인권 센터 4명, 미래행복인재연구원 1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국선전담변호사 1명, 법률사무소 1명	11명
행정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1명,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명,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팀 1명, 서울지방경찰청 1명, 남서울중학교 1명, 목천고등학교 1명	6명
합계		30명

2) 조사도구

앞선 이론적, 실천적 연구동향과 해외연구동향의 검토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연구의 내용 범주를 미리 설정해보기로 했다. 수요예측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통상 현재까지의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미래예측의 질문지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이다(Benaire, 1988; Linstone & Turoff, 1975; Tillman, 1989, 성윤숙, 박병식, 2009 재인용).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박병식, 성윤숙, 2009; 홍봉선, 남미애, 2008)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구분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처
2	청소년 성 상품화 개념	- 청소년 성 상품화 개념
3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환경진단(사회·문화적 특성, 변화 등)과 변화에 대한 전망	-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진단 -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향후 전망
4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점	-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점 -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문제점
5	청소년 성 상품화의 개선점과 향후 정책방향	-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개선점 및 향후 정책방향 -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의 개선점 및 향후 정책방향 -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의 개선점 및 향후 정책방향
6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 -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7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 청소년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 각각의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8	청소년의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효율화 방안	-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 -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한계점 -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 정책의 효율화 방안
9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질문	- 청소년 성 상품화가 나타나는 이유 -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의 경계 -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주체 - 성 상품화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역기능 -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안 -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자가 인터넷성매매 방지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 인터넷성매매 감시,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표 IV-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구분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처
2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	- 6개 항목의 동의하는 정도 - 6개 항목의 우선순위
3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목표	- 6개 항목의 동의하는 정도 - 6개 항목의 우선순위
4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	-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명칭 제시 - 예방(교육, 홍보) - 보호(이용자 보호, 모니터링) - 집행(감독·단속, 공급자 처벌)
5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영역의 예방 정책과제	- 교육영역의 12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홍보영역의 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6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영역의 보호 정책과제	- 이용자 보호영역의 1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모니터링영역의 1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영역의 집행 정책과제	- 감독·단속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공급자 처벌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3) 조사방법 및 절차

델파이 연구에서 신뢰성 확보는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여 2차 설문을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에 적합한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Murphy & Hammons, 1995; Rowe, Wright & Bolg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회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연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에 의해 코딩, 분석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의 방법을 자문회의로 활용하였다. 또한 2회기 도구에서는 범주화한 한 항목에 대해 패널개인의견을 요청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범주를 검증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포함시켰다. 델파이방법 자체가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른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은 확보된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수행한다. 1회기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1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방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1회기 조사는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2회기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이후 2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에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3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각 델파이 회기별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1회기(first round)

델파이방법에서 1차 설문의 형식은 기술식(개방형) 또는 구조화된 제한 응답양식의 두가지 중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 특히 1차 설문은 탐색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참가 전문가들이 발산적 지각(divergent perception)을 고찰한 다음 이것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Webler, et. al., 1991). 처음 설문지가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세분되어 있으면 응답자의 반응범위가 줄어 그만큼 문제 해결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태가 더 좋다(Rowe, Wright & Bolger, 1991). 즉 1차 설문부터 구조적 질문을 활용하면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개념적 틀을 응답자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Tillman,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술식(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성운숙·박병식, 2009).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자체조사를 통해 청소년인터넷성매매 연구와 관련한 학계(13명), 현장전문가(11명), 행정계(6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최초 2배수에 가까운 패널명단을 확보하여 조사에 대한 개별적인 승낙을 구한 결과였다. 사전 문헌연구 및 관계자료 및 자문을 통해 패널에게 청소년 성 상품화의 개념,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무엇인지,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과 목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설정으로 상위영역과 각 상위영역에 따른 하위영역, 영역구분에 대한 기준,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정책추진과제 제시,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효율화방안,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2) 제 2회기(second round)

2차 설문지는 제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재평가 하도록 요청한다. 1차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고려할 점은 각 델파이 차수간의 시간적 간격이다(Linstone & Turoff, 1975; Linstone, 1978). 피드백의 상이한 시간적 지체는 델파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 자료의 반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rmstrong, 2002). 그리고 구조화된 2차 설문지는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평가한다(이종성, 2006).⁹¹⁾ 2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결과

(1) 청소년 성 상품화의 사회·문화적 환경진단

먼저,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진단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 중 5명의 전문가는 '상품화된 선정적인 성문화가 보편화 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성문화의 보편화 및 확대를 언급하였다. 또한 4명의 전문가는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합'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4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 만연'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3명의 전문가는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가르침과 소통의 부재'라고 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다른 2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대상의 연예 및 오락 산업, 스마트 보급으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심화'라고 응답했으며, '도덕성, 윤리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가치 악화'라고 2명의 전문가가 비윤리적 악영향을 언급했다. 그 외 10명의 기타 응답에서는 '미디어 간, 콘텐츠 간 경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심각', '기성세대들과 대화단절 문제'등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대중매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진단에 대한 질문에

91) 평균(mean), 중앙치(median), 혹은 최빈치(mode)와 같은 중앙경향값과 표준편차 혹은 사분편차 등을 구하여, 전문가 패널간의 합의 수준을 확인한다(Riggs, 1983; Benaire, 1988).

30명 중 13명의 전문가가 ‘아이돌 스타의 지나친 노출의상과 노래가사 등의 선정성 문제’라고 응답했다. 그 외 8명은 ‘미디어의 무비판적인 청소년 성 이미지 활용’ 즉, 미디어의 성 상품화라고 응답했고, 다른 8명의 전문가는 ‘TV방송채널 간 경쟁에 따라 아이돌 스타들의 성 상품화를 강조함’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 4명은 ‘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확대로 성 상품화가 심화’라고 응답했으며, 3명의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문제의식 없이 즐기고 있음’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아이돌 스타, 그룹의 증가’, ‘연예프로그램의 방송 주도’, ‘청소년 대안문화 부재’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스마트폰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진단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 중 11명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일반화’라고 응답했다. 또한 6명의 전문가는 ‘다양한 SNS 매체의 등장’, 또 다른 6명은 ‘미디어를 각종 성매매 산업의 광고, 홍보 도구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그 외 4명은 ‘미디어를 각종 성매매 산업의 광고, 홍보 도구로 활성화’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3명은 ‘선정적 내용의 빠른 확산’, ‘기술의 발달로 단속과 규제가 어려운 실정’,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라고 대답했다.

(2) 청소년 성 상품화의 향후 전망

첫 번째로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 중 14명의 전문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 시장의 확장이 예상’이라고 했으며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명의 전문가는 ‘경쟁 심화 및 산업확대에 따라 자극적 상품개발 경향 촉진’, 다른 2명은 ‘황금만능주의로 성적 개방은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각각 2명의 전문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제도 장치 마련 필요’, ‘성에 대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 등의 본질적 교육 필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8명의 전문가는 ‘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성의 이중적 윤리의 가속화’ 등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대중매체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 중 10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명의 전문가는 ‘TV방송 채널 간 경쟁 심화’라고 응답했다. 4명의 전문가는 ‘아이돌 스타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 안무 및 노출 수위 등의 상승’이라고 했으며, 다른 4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의 아이돌스타의 선정적인 춤, 의상 등을 따라하는 모방 증가’라고 응답했다. 또한 3명은 ‘가이드라인 등 법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른 3명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연예 기획자에 대한 교육 필요'라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성 상품의 유통이 쉬워짐', '다양한 성 상품화와 반영된 방송 채널이 늘어남'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스마트폰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 중 8명의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 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라고 하면서 법·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7명은 '다양한 성 산업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성 산업의 활성화를 꼽았다. 5명의 전문가는 '스마트 사용의 저연령화'라고 응답했다. 다른 전문가 4명은 '혼자만 보지 않고 대중에게 확대 및 재생산이 됨'이라고 응답했고, 3명은 '미디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등 성범죄의 증가'라고 응답했다. 그 외 3명의 전문가는 '무제한 검색 및 잘못된 지식 습득으로 인한 청소년 성에 대한 인식 변화', '독서와 같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위축'등이라고 응답했다.

(3) TV·케이블TV·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점

먼저,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30명 중 15명이 '아이돌스타의 지나친 노출 의상과 성적 춤동작의 문제'라고 응답했고, 11명의 전문가가 '그릇된 성의식, 성역할 고착'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둔화', '외모지상주의 심화', 'TV·케이블TV 활동에 대한 규제체계 부재'등의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9명의 전문가가 '미디어를 통한 성적 표현물의 유통이 쉬워지는 문제'라면서 쉬운 유통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또한 7명의 전문가는 '성 상품화에 대한 경계의식이 약해짐'이라고 응답했고, 6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에 대한 보호 및 규제장치 부재'라고 응답했다. 한편, 5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악용한 조건만남 홍보 증가'라고 언급하면서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 함',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및 중독 현상의 심화'등이라고 응답했다.

(4) 청소년 성 상품화의 개선점 및 향후 정책 방향

첫 번째로,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개선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6명의 전문가가 ‘청소년 성 상품화 억제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라고 응답했으며, 4명은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4명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미디어를 통한 성 상품화를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했으며, 3명은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형사 처벌 강화’라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3명은 ‘청소년 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대안문화 육성’응답했다. 2명은 ‘청소년 유해정보의 필터링 의무화’, 다른 2명의 전문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 행위에 대한 규제수위 상향조정’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청소년 아이돌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성 상품화를 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화’, ‘선정적 광고 등을 제작한 광고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엄격한 광고 규제의 절차 요구’등으로 전반적으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 스타의 성 상품화의 개선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30명 중 7명이 ‘무분별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제재 강화’라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명의 전문가는 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방송사, 미디어시민단체, 학계가 함께하는 공동 모니터링 팀 조직’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명의 전문가는 ‘TV·케이블TV 활동에 대한 방송가이드라인 마련’, 다른 2명은 ‘언론, 대중문화 등의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다른 2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 산업의 유통경로를 막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다른 2명은 ‘성 상품화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필터링 의무화’라고 응답했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 ‘세미나, 학술연구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 강조’, ‘시청자와 시민단체, 방송사가 술선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등이 있었다.

셋째,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의 개선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6명의 전문가가 ‘학부모,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실시’라고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4명의 전문가는 기업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과 특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였다. 한편, 6명의 전문가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중 3명은 ‘청소년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콘텐츠 유통 철저단속’, 다른 3명은 ‘스마트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체 규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에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불량 유통 상품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기준 및 제재 수단 마련’,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의 강력한 처벌’등의 응답이 있었다.

(5)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정책 비전

향후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 질문(중복 응답)에 전체 30명 중 8명의 전문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9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7명은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 3명은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라고 대답했다. 2명은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 보호되는 사회구현’, 다른 2명은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익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강화’등이 있었다.

(6)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정책 목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중복응답)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법·제도적 개선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30명 중 7명의 전문가가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4명은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2명은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다른 2명은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라고 응답했다. 한편, 5명의 전문가는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라고 하면서 교육적 목표를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활성화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있었다.

(7) TV·케이블TV·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과제

① TV·케이블TV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과제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정책과제 응답(복수)과 그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0명 중 8명의 전문가가 ‘아이돌스타의 과도한 노출 및 춤 규제’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판정’,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한 방송과 기획들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방송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었다. 다른 8명의 전문가는 ‘성 상품화에 대한 올바른 성 교육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는 ‘아이돌스타에 대한 교육 방안 마련’, ‘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성교육 제도화’,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연예기획사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었다. 5명의 전문가는 ‘방송사 내부 심의구조 개선 및 강화’가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강화’, ‘내부심의 위반 시 방송사재허가에 재제점수로 활용’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편, 4명의 전문가는 ‘제작사 등 기업 규제의 장치 마련’이라고 응답했고, 세부추진과제로는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기업 윤리 의식을 강화를 위한 기업교육’, ‘청소년을 고용하는 소속사들에 대한 청소년 착취를 막기 위한 규제 법 강화’ 등이 있었다. 다른 4명은 ‘방송사의 성 상품화 관련 방송 기준 설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세부정책과제는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 ‘방송등급제 기준 개선 및 강화’,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예술과 성 상품화의 기준 마련’, ‘문화예술계의 자정노력 지원 정책’,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정책과제가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②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과제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정책과제 응답(복수)과 그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0명 중 10명의 전문가가 ‘성 상품화에 대한 올바른 성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이용 교육 강화’, ‘관련 업체의 정화 의식과 시민들의 건전한 성의식 및 가치관 성립’,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 강화 교육 실시’, ‘성 상품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한 교육’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8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처벌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세부추진과제는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춘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라고 응답했다. 7명의 전문가는 ‘스마트폰 앱에서

의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강화',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문화소비자운동을 통해 음란·퇴폐물의 생산, 유통을 감시',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 발생 시 기업책임 확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등이 있었다. 다른 7명은 '스마트폰 유해정보의 차단'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스마트폰 필터링은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라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폰에서 청소년 보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기술개발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5명). 세부추진과제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앱 다운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첨가',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국내 온라인 보안 업체 및 통신사업자 자체 시스템의 의무적인 구축',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청소년의 성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마트 문화 건설'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 TV·케이블 TV·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먼저, TV·케이블 TV를 통한 아이돌 스타의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전체 30명 중 13명의 전문가가 '성 상품화 관련 단속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및 규제기술상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4명의 전문가는 '대중의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라고 응답했으며, 3명은 '아이돌 스타의 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의 부재'라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TV·케이블TV등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프라인상의 업소에 대한 규제에 치중', 'TV에서 성 상품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심의기준이나 존재하지 않음' 등이 있었으며, 심지어 '규제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전체 30명 중 11명의 전문가가 '사적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규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6명은 '모바일 앱의 유통 경로 차단 등의 기술적 한계'를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스마트폰 문화 에티켓이 확립되지 않은 환경의 문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의 협조 체계 구축이 미비함', '유해정보의 필터링 제도 부재',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문화 정착', '개인적인

매체를 일일이 단속·홍보·예방하는 데에 드는 많은 예산',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사회화를 안내할 프로그램 부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9) TV·케이블 TV·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규제정책의 효율화 방안

TV·케이블 TV를 통한 아이돌 스타의 성 상품화 규제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에 관한 의견이 다수였다. 전체 30명 중 7명은 '아이돌 스타의 노출 및 춤에 대한 심의기준 및 심의 시스템 개선', 다른 7명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대중매체 안에서의 성 상품화 규제', 2명은 '성 상품화 연예 기획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있었다. 한편, 5명의 전문가는 '방송사 및 기획사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 다른 5명은 '기획사 및 연예인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캠페인 진행' 등이라고 하면서 기획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아이돌 스타의 청소년 시청 시간 외 출연금지', '규제에 대한 국민적 홍보'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30명 중 8명의 전문가가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라고 응답했다. 또한 7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대상 건강한 성 문화 및 성 정체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 실시'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명의 전문가는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성 상품화 콘텐츠 자동 검색 및 차단 장치 등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개발'이라고 응답했다. 4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소지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화', 4명은 '기업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 2명은 '청소년 성 상품화에 관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라고 응답했다. 그 외 '정부 및 관련 업체의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공감대 형성 필요', '모바일 상에서의 불량 콘텐츠 기준 마련', '스마트폰 상 불법 정보 제공자로 신고 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처벌, 해당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다.

(10)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질문

① 청소년 성 상품화가 나타나는 이유

청소년 성 상품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전체 30명 중 14명의 전문가가 '이윤추구를 위한

청소년 연예인 활용'이라고 응답했으며, 7명의 전문가는 '대중의 잘못된 문화인식'이라고 응답하면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청소년 성 상품화가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또한 5명은 '스마트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매체를 통한 이미지와 영상의 전파속도가 빠름'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미디어의 상업화와 시청률 지상주의', '청소년의 가치관을 통제할 수 없는 권위 부재' 등이 있었다.

②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다수의 전문가가 가치관의 혼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 중 15명의 전문가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줌'이라고 응답했고, 5명의 전문가는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성 범죄 증가'라고 응답했다. 한편, 2명의 전문가는 '물질만능주의 위협에 노출', 다른 2명은 '청소년의 자존감 저하'라고 응답했다. 그 외 응답으로는 '건전한 직업관 및 진로 의식 형성 저해',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김' 등이 있었다.

③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의 경계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의 경계에 대한 질문에 30명의 전문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계에 대해 응답했다. 하지만 성욕 유발에 따라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를 구분 짓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로들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면 성 상품화', '필요이상의 노출과 자극적 행위', '전체적으로 문학적/과학적/예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 오로지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말초적 자극만을 강조하는 것의 차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영리성에 따라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를 구분 짓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금전적 수익', '예술적인 표현을 더 포용하는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의 경계 선정성을 규제하는 부분의 적절성' 등이 있었다. 기타 '매수자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 등의 의견도 있었다.

④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주체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15명의 전문가가 '더욱 강한 자극의

콘텐츠를 지향하는 미디어, 기획사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7명의 전문가는 '성적 일탈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책임이라고 응답하는 전문가(3명)도 있었다. 기타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성인'등의 응답도 있었다.

⑤ 성 상품화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역기능

성 상품화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역기능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13명의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 관련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쉬운 접근성'을 꼽았다. 또한 4명의 전문가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으로 학원, 일상생활, 심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줌'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13명의 기타 응답 중 '저급문화의 확산', '정보 통신 윤리의 왜곡 및 실종',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무제한 행동' 등이 있었다.

⑥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안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안에 대해 전체 30명 중 18명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중 4명은 '성 상품화에 대한 기준 및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명의 전문가는 '제작·유통 관련업자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실시', 다른 2명은 '청소년 보호 앱 설치 의무화'라고 응답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의식이 있는 시민들의 모니터링과 신고, 검증, 공개발표 등 시스템 구축',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등이 있었다. 한편 교육 강화를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5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대상 올바른 성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현실적인 성 교육 강화'가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규제 강화' 등 심의규정 강화를 언급한 전문가도 있었다.

⑦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자가 인터넷 성매매 방지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자가 인터넷 성매매 방지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체 30명 중 21명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8명의 전문가가 ‘모니터링 강화’라고 응답했고, 3명은 ‘업계의 자율 규제’, 2명은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심의체계의 강화’, 2명은 ‘필터링 서비스의 의무화’, 다른 2명은 ‘유해정보 차단 앱의 개발’, 4명은 ‘형사 처벌 강화’라고 응답했다. 또한 ‘온라인 내에서 성매매 접근 사례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이라고 응답한 전문가(3명)도 있었다. 한편, ‘인터넷 및 모바일 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기구 구성’,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것이 두려울 수 있는 사회의 인식변화 필요’ 등의 기타 응답도 있었다.

⑧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30명 중 7명의 전문가가 ‘해외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5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성보호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필요’라고 응답했으며, 4명은 ‘국제 공조 및 기준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2명은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12명의 응답 중에는 ‘아동인권협약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국제포럼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규제방안 마련’, ‘법적 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의 불법적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노력’, ‘해외 서비스기업의 국내서비스에 대한 감시 시스템 운영’ 등이 있었다.

⑨ 인터넷 성매매 감시,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인터넷 성매매 감시,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 중 9명의 전문가가 ‘청소년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책임강화’라고 응답하면서 모니터링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8명의 전문가는 ‘관련 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2명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함정수사를 정책적으로 인정’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11명의 전문가는 ‘청소년 및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 ‘청소년과 부모의 인식을 높이고 공동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이 강화' 등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고, '인터넷 성매매는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라는 기타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2) 2차 조사결과

(1)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각각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30명의 전문가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5점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6문항일 경우 1위에는 6배수, 2위에는 5배수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에 관한 질문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등 6 문항이 도출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1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117),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113),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100),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96),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7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는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4.5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4.50),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4.47),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4.47),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4.27),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4.07) 순으로 중요도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한 상대적 동의하는 정도 가중치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	빈도						가중치	평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6	11	5	4	3	1	130	4.50
2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8	4	5	6	4	3	117	4.53
3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	8	4	5	4	4	5	113	4.47
4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	3	5	5	7	6	4	100	4.27
5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	4	4	5	5	5	7	96	4.47
6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1	2	5	4	8	10	74	4.07

한편,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목표에 관한 질문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성 상품화에 반하는 다양한 대안적 콘텐츠 개발’,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 등 6 문항이 도출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15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120),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105),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02), ‘성 상품화에 반하는 다양한 대안적 콘텐츠 개발’(74),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7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도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4.5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4.27),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4.23),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4.20), ‘성 상품화에 반하는 다양한 대안적 콘텐츠 개발’(3.87),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3.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상대적 동의하는 정도 가중치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빈도						가중치	평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18	5	4	2	1	0	157	4.53
2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3	6	14	3	3	1	120	4.27
3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5	6	4	4	6	5	105	4.20
4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8	3	10	6	2	102	4.23
5 성 상품화에 반하는 다양한 대안적 콘텐츠 개발	2	2	1	8	7	10	74	3.87
6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	1	3	4	3	7	12	72	3.77

(2)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2차 조사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의 영역 구분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본 설문지 기본 영역인 예방, 집행의 두 영역을 예방, 보호, 집행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하위영역을 두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방(교육, 홍보), 보호(이용자 보호, 모니터링), 집행(감독·단속, 공급자 처벌)로 나누어 각 하위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문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 교육’,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 12 개가 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2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258),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243),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224),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200),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199),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185),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17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170),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165),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136),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12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는 예방영역의 교육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4.4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4.33),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4.27),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4.20),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4.17),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4.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4.03)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4.03)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3.93),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3.90),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3.87),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3.6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예방(교육)		빈도												가중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1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 도마련	8	2	3	4	4	1	4	2	2	0	0	1	266	4.47
2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	4	6	4	4	2	3	3	1	0	2	1	0	258	4.33
3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	4	4	4	5	1	2	4	2	0	3	0	1	243	4.20
4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	0	3	6	1	7	3	3	2	2	2	1	1	224	4.27
5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	3	2	2	3	3	4	0	4	3	1	3	2	200	3.93
6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1	4	1	4	2	4	0	6	4	1	1	2	199	4.17
7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	3	1	0	1	5	2	2	8	4	1	2	0	185	4.03
8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	2	2	3	1	2	3	2	1	1	7	3	3	173	3.87
9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	2	0	3	3	1	3	6	0	1	2	6	2	170	4.10
10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0	4	3	1	2	1	2	4	1	4	3	5	165	4.03
11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2	1	1	1	1	2	3	0	5	3	1	11	136	3.90
12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1	1	0	2	0	2	1	0	7	4	9	2	121	3.60

한편,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 등 5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1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96),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 (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91),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84),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79)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는 예방영역의 홍보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4.4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4.33),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4.30),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3.97),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3.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예방(홍보)		빈도					가중치	평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10	6	4	4	6	100	3.97
2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	5	11	1	11	2	96	4.40
3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	6	2	13	5	4	91	4.30
4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	3	7	7	7	6	84	3.87
5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	6	4	5	3	12	79	4.33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이용자 보호)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문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 범위 기준 마련’,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 등 15개가 도출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32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300),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292),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287),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270),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267),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254),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239),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227),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222),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202),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194),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182),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172),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16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균에서는 보호영역의 이용자 보호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4.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4.43),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4.40),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4.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4.23)와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4.23)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4.20),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4.00),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3.90),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3.83),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3.80),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3.77),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3.70),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3.67),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3.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이용자 보호)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보호(이용자 보호)	빈도															가중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13 순위	14 순위	15 순위		
1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	3	6	5	3	2	1	1	1	4	2	1	1	0	0	0	328	4.50
2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	6	2	2	5	2	2	0	2	1	0	3	3	1	0	1	300	4.23
3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	1	4	4	2	2	1	5	2	3	3	2	0	1	0	0	292	4.20
4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6	1	1	3	2	4	1	1	3	2	2	2	1	0	1	287	4.43
5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2	2	2	3	3	4	1	3	2	0	4	2	0	0	270	4.23
6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	2	1	1	5	3	2	2	4	2	3	0	2	1	2	0	267	3.83
7	방송사 심의위원회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	2	4	0	0	2	5	1	4	2	2	1	2	5	0	1	254	4.30
8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	1	2	2	2	1	3	3	1	3	4	3	0	2	2	0	239	4.40

[표 계속]

정책과제 - 보호(이용자 보호)	빈도															기중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13 순위	14 순위	15 순위		
9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	2	1	1	2	5	1	1	3	0	1	3	2	4	3	1	227	4.00
10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	0	1	2	4	1	1	4	2	2	3	2	1	2	3	3	222	3.77
11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3	2	0	1	2	2	0	2	1	3	2	2	2	2	6	202	3.90
12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	1	0	2	0	1	3	2	3	2	1	6	2	1	3	3	194	3.37
13 연형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 범위 기준 마련	0	2	2	1	2	1	2	1	2	0	1	3	2	10	1	182	3.70
14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	0	2	3	0	1	0	3	1	0	2	3	3	3	2	7	172	3.80
15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	1	0	3	0	1	1	1	2	2	2	1	3	3	3	6	164	3.6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모니터링)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 정립’,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아동유인방지법 제정’,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 등 14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2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27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262),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261),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249),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234),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233),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220),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203),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201), ‘아동유인방지법 제정’(192),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182),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169),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16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는 보호영역의 모니터링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4.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4.37)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4.33)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4.33),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4.33)는 같은 평균을 나타냈고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4.23),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4.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4.10)과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4.10)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4.07), ‘아동유인방지법 제정’(3.97),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3.87),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3.87),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3.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모니터링)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보호(모니터링)		빈도														가중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13 순위	14 순위		
1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2	3	5	5	3	3	1	4	1	1	1	0	1	0	292	4.33
2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5	3	1	3	3	4	2	1	1	3	2	1	0	1	276	4.50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	2	4	7	3	1	3	0	0	1	0	1	3	4	1	262	4.33
4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3	2	2	4	3	2	3	3	3	1	1	0	2	1	261	4.37
5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	4	4	2	1	4	1	2	2	0	0	4	2	1	3	249	4.13
6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0	2	6	2	1	2	2	3	4	2	3	0	0	3	234	4.33
7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	3	1	2	4	2	1	3	1	4	2	0	4	1	2	233	4.10
8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	1	3	1	0	2	4	3	2	4	4	2	2	1	1	220	4.23
9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1	3	0	1	2	2	5	1	0	3	6	4	1	1	203	4.10
10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2	1	1	2	1	4	0	2	3	6	2	1	2	3	201	4.07
11	아동유인방지법 제정	5	1	0	1	3	0	4	1	1	1	0	1	4	7	192	3.97
12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	0	1	2	0	3	3	2	4	1	2	1	2	9	0	182	3.87
13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	1	1	0	1	1	1	3	3	2	2	5	7	1	2	169	3.77
14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	1	1	1	2	1	0	0	3	5	3	2	3	3	5	165	3.8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감독·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문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 등 10개를 도출하였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21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196),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194),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17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169),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168), ‘앱 개발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163),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148),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128),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9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도 집행영역의 감독·단속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4.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4.40), ‘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4.37),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4.33),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4.23),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4.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4.07)와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4.07)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4.00),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3.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감독·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집행(감독·단속)	빈도										가중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5	7	3	5	5	1	2	1	0	1	219	4.67
2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8	1	5	4	3	0	2	2	2	3	196	4.37
3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2	5	6	3	5	3	0	3	3	0	194	4.40
4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2	6	3	1	0	5	6	4	3	0	172	4.23
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5	3	2	5	2	2	1	2	1	7	169	4.20
6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	2	2	3	1	7	5	5	2	3	0	168	4.07
7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	2	3	4	3	4	2	3	3	2	4	163	4.33
8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2	1	3	1	2	6	5	6	4	0	148	4.07
9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2	2	1	4	1	2	3	2	7	6	128	4.00
10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	0	0	0	3	1	4	3	5	5	9	93	3.47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공급자 처벌)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문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 ‘인터넷 성매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 출연 제한 등 규제’ 등 8개가 도출되었다. 평균과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정책과제 도출의 우선순위로 한다.

먼저, 가중치에서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184)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164),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157),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131),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130),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112),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111),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출연제한 등 규제’(9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는 집행영역의 공급자 처벌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4.6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4.60),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4.47),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4.33),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4.30),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4.13),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4.03),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출연제한 등 규제’(3.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공급자 처벌)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집행(공급자 처벌)	빈도								가중치	평균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4 순 위	5 순 위	6 순 위	7 순 위	8 순 위		
1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	12	4	3	3	4	2	2	1	184	4.60
2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4	9	3	6	2	3	1	2	164	4.63
3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 처벌 강화	4	5	8	4	2	2	4	0	157	4.47
4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	2	3	5	4	4	5	6	1	131	4.30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2	5	4	4	2	6	2	5	130	4.33
6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	3	0	4	0	8	6	5	4	112	4.03
7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2	0	3	6	7	1	5	6	111	4.13
8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출연제한 등 규제	1	4	0	3	1	5	5	11	91	3.87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 2차 조사결과,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은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의 영역 구분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통해, 본 설문 의 기존 영역인 예방, 집행의 두 영역을 예방, 보호, 집행으로 세 영역으로 수정하고, 각각의 영역에 하위영역을 두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책영역은 예방(교육, 홍보), 보호(이용자 보호, 모니터링), 집행(감독·단속, 공급자 처벌)로 나누었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가중치에서는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2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258),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243), ‘영유아 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224),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200),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199),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185),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17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170),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165),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136),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121)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가중치에서는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1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96),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 (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91),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84),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7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이용자 보호)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가중치는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32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300),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292),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287),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270),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267),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254),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239),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227),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222),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202),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194),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182),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172),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16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호(모니터링)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가중치에서는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2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27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262),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261),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249),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234),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233),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220),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203),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201), ‘아동유인방지법 제정’(192),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182),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169),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16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감독·단속)영역의 정책과제의 가중치는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21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196),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194),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17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합정수사의 법적 허용’(169),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168), ‘앱 개발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163),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148),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128),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93)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공급자 처벌)영역의 정책과제의 가중치에서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184)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164),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157),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131),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130),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112),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111),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출연제한 등 규제'(91) 순으로 나타났다.

제 VII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2. 정책제언

제 VII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성 상품화 실태 및 영향

스마트폰 이용과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대중매체의 청소년 성 상품화의 모델로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특정한 후, 그러한 영상물의 시청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스마트폰 이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 및 성행동에 효과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스마트폰 사용 경험, 스마트폰으로 촬영 및 업로드 경험, 스마트폰으로 성인사이트, 영상물 등 공유 경험,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 송수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영상물 시청에 직접효과(465, $\rho < .01$)가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성의식(.475, $\rho < .01$) 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성의식 간에 통계적으로 작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분매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378($\rho < .01$)으로 사회적 지지가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대비 직접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고, 총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을 매개할 경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분매개

* 이 장은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성의식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효과를 비교하면 영상물 시청(.074, $\rho < .01$)이 사회적지지(.153, $\rho < .01$)보다 적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직접효과(.129, $\rho < .01$)를 포함한 총 효과(.203, $\rho < .01$)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195, $\rho < .01$)보다 직접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총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이 성의식을 매개할 경우 성행동에 더 큰 영향관계를 가지는 부분매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여부,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여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야한사진, 성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 등 공유 경험여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를 이용한 음란채팅 경험여부, 랜덤채팅(뽕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메시지 주고받은 경험여부에 대하여 각 경험여부에 따른 표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스턴트 메신저의 음란채팅이 조절효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촬영경험은 영향관계에 유의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연구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채팅을 규제할 경우에 청소년의 성행동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음란채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상의 인스턴트 메신저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규제 혹은 완충적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과정을 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과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성의식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의 빈도가 증가하여도 성행동이 완화되며, 청소년의 성의식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성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친구 혹은 지인들의 관심이 청소년의 성 정체성(의식)을 확립하며, 올바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 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방과 공유가 확산됨과 동시에 성의식이 개방화되고, 성관련 행동들이 증가하는 영향을 가진다. 즉, 청소년기의 아이돌 스타의 영향은 그들을 모방과 공유, 콘텐츠 재생산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은 청소년들

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에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은 성의식 개방화를 통해 부정적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의식이 개방화될 수록 부정적 성행동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의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완화하는 역할로 스마트폰 이용을 매개효과를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는 최종 연구모형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음란채팅이 증대·확산 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란채팅은 성 상품화를 확대·재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조치해야할 문제로 인식된다. 청소년의 음란채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성행동에 대한 완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시지의 음란채팅을 규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채팅문화를 양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외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정책 동향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대처하는 법과 제도는 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의 심사에 있어 해당매체물의 심의기관 혹은 소관기관이 각기 달라 대응노력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기 그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중에서 음란정보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신속한 사법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인권침해 유해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실천 규약 제정을 통해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실천 방안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필요하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규제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는 개념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관심’과 ‘구조’ 그리고 ‘체계’이다. 미디어를 통해 범람하는 성적유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실질적이고 의지적인 관심이 독일의 청소년보호정책을 통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반으로부터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이라는 방송과 인터넷의 온라인 미디어를 규정하는 법을 탄생시켰고, 동시에 두 법을 각각 전달매체와 통신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나아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넷과 청소년미디어 보호 연방심사청을 연결하여 직접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달매체와 통신매체에 각각 하나씩의 공인인증된 자율규제기구를 둬으로써 청소년 성 상품화 등 청소년미디어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규제의 단점을 극복한 규제된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매개효과를 창출하여 유연성과 현실성을 우선하는 기업의 요구와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에서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⁹²⁾ 유인(grooming)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실제상황에서 이를 조장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아동학대 및 성범죄방지법(스코틀랜드)(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도 16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06년에 이미 청소년 인터넷 안전을 전담하는 곳으로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설치하여, 경찰, 인터넷산업체, 그리고 관련부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력적 시도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아이돌을 포함한 연예인들의 노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즉 10대 아이돌이 공연을 하면서 보여주는 노출이나 선정적 춤동작과 저속한 노래 가사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돌들의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 동작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유통,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관된 정책이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2)구체적인 성매매 내용이 없어도 사전 시도행위를 포함.

일본의 경우 일차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한 성 정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풍속영업법과 함께 ‘미성년자 유해업무’의 처벌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규제법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인터넷 사업자 및 휴대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필터링 서비스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 보도 제도를 불법인 「범의유발형」이 아니라 합법인 「기회제공형」으로 적용하여 선도와 지도를 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범인체포가 아니라 청소년 선도의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한 이후 사이버 보도를 도입하였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한 중국의 현 상황은 그 전문성이 미약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법률인 <중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중국미성년자보호법>을 살펴봐도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법적 규정이 처벌중심이며 자율규제에 대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스마트시대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 탐색

청소년의 성 상품화 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주로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돌스타를 자주 보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두 명 중의 한 명 이상이 야한 동영상 친구에게 공유하는 등 재 확산에 가담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야한 영상물의 시청이 단순한 향유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향한 의지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대다수의 청소년은 아이돌스타를 통한 성 상품화를 심각한 인격 훼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70%의 청소년이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30%의 청소년은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왜 대중매체에 노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한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해 30명의 청소년 중 20명이 ‘하루 종일’등과 같이 하루 내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스마트폰에서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물이나 음란물, 심지어 이성과의 성적행위 등을 접촉 및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스마트폰이 청소년 유해물의 재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이 선정적인 영상물의 생산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30명 중 18명의 청소년이 음란 채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에게 SNS를 통한 음란채팅이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 없다면 굳이 하지 않을 경우도 스마트폰의 시공을 제한받지 않는 용이성으로 인해 음란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채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음증, 노출증, 성매매, 절편음란증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나아가 그러한 변태적 성 징후들이 특별한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러한 메신저의 심각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30명의 청소년 중 3명이 돈을 벌기 위해 랜덤채팅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비록 3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50%의 청소년이 성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랜덤채팅에 접속하자마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며, 랜덤채팅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메시지가 온다고 응답했다. 유인 메시지 내용은 주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거나 사진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반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며,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의식 안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거의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인 또는 친구가 조건만남을 한 경험에 대해 3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은 경찰, 교사, 대학 교수, 판사, 회사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모텔, 집, 차 안, 술집이었으며, 조건만남으로 받는 금액은 대부분 평균 10만 원 이상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며 다른 일반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다고 응답했다.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에 대해 상당수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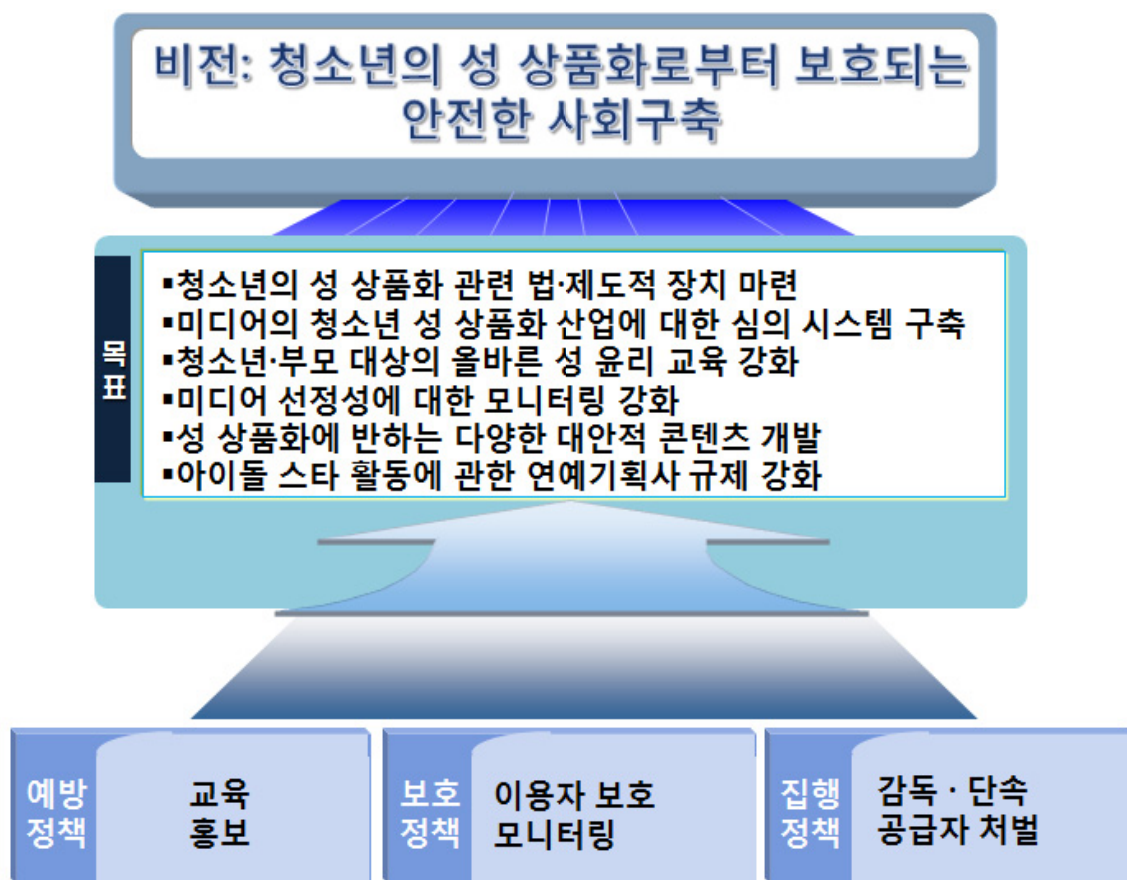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소극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취업강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도움책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도 규제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성 상품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건만남이나 돈을 떠올렸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의식 안에 성 상품화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애플리케이션마켓에는 이미 수많은 유해매체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쉽게 성인물동영상이나 성인용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성인물이나 불법적인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 그 외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성범죄나 성매매 등의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의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비전은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 참조).



【그림 VII-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의 비전·목표 및 정책영역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VII-1>참조).

표 VII-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추진과제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예방 정책	교육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홍보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
보호 정책	이용자 보호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 방송사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삭제 기능 강화

[표 계속]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보호 정책	모니 터링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아동유인방지법 제정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
집행 정책	감독 · 단속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합정수사의 법적 허용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멀티미디어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
	공급자 처벌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 출연제한 등 규제

2. 정책제언

앞에서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 따라 3개의 상위영역과 6개의 하위영역별(예방정책 : 교육, 홍보, 보호정책 : 이용자보호, 모니터링, 집행정책 : 감독·단속, 공급자 처벌)로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를 2~3개씩 총 11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그림 VII-2】 참조).

선정된 각 과제별로 정책의 제안 배경, 주요 내용, 추진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예산 및 조달방법, 해외사례, 기대효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자문과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방송국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방 정책	교육 홍보	보호 정책	이용자 보호 모니터링	집행 정책	감독·단속 공급자 처벌
생 산 단 계			-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 설립 -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유통 단 계			-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 전담반 신설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	
소 비 단 계		Blessing-Family Project : 성 상품화와 유해 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젝트				

【그림 VII-2】 단계별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Blessing-Family Project	
과제 1	: 성 상품화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젝트
▶ 정책 기본방향	
청소년보호가 가정보호이고 가정보호가 가정행복!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역기능 그리고 성 상품화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정부주도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통일된 교육, 효율적인 교육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착	
정책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소비단계 예방정책 교육·홍보

1) 제언배경

스마트 시대와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는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그와 함께 청소년과 가족을 위협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나 심지어 학부모들도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77.6%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악쇼(67.5%), 뮤직비디오(66.0%), 영화(56.3%) 등이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전체 청소년의 37.8%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가 초교 고(4/5/6)학년이라고 응답했으며 38%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동영상을 볼 경우 성적으로 자극받는데 비해 12%만이 재미를 느낀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성 상품화의 영상물이 효용성 측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정에 도움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스마트폰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 결과 부모의 부재정도가 낮을수록 매체와 콘텐츠의 접촉빈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42.3%), 한부모/조손가정(38.9%) 등 가족의 관심부재가 야한 영상물 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극화나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와 별도로 부모교육의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가정행복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길임을 깨닫는 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생계와 직업의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에는 자녀교육의 의미와 함께 역시 미디어와 청소년 성 상품화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유해매체물 차단이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과 실질적 의미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간단체에만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교육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가정행복교육위원회(가교위: 가칭) 설치

교육의 통일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전담조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에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가정행복교육위원회(가교위: 가칭)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고려하면 가교위를 교육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각 교육청과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치된 가교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미디어교육과 성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나아가 가교위 내에 미디어 분과, 성교육 분과 및 홍보분과 등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기하도록 구조화한다.

① 미디어교육과 성교육의 정규교과 신설과 담당 교사 양성·배치

연구 결과 응답자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와 성교육은 유치원이나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은 초, 중, 고의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의 역기능, 디지털 유해매체물 등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산발적인 미디어나 성 관련 특강이나 윤리교육 내에서 다루어지는 미디어 및 성 교육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일시적인 자극이나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의식에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구조상 미디어와 성에 관한 별도의 정규교육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는 교육감이나 학교책임자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디어와 성 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대학에서의 학제변화가 요구된다. 즉 미디어와 성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미디어윤리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전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면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의 윤리교사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학부모 대상 Blessing-Family 교육 활성화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부모의 부재정도가 낮을수록 매체와 콘텐츠의 접촉빈도가 높아지며, 특히 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42.3%), 한부모/조손가정(38.9%) 등 가족의 관심부재가 야한 영상물 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시급하다.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진행되는 부모교육 특강으로는 교육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그나마 이루어지는 몇 번의 부모교육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어머니들만 참석하는 관계로 가정의 실질적 리더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본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은 프로그램화되어야 한다. 한 두 번이 아니라 미디어와 성, 그리고 사회와 자녀교육에 관련한 심층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전문교사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은 비영리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강사를 초청,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미디어와 성교육에 관한 부모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고양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단위로 문화예술회 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교양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장단위의 교육과 공무원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현실이니 가교위 주도하에 Blessing-Family Project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 시행하는 것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 현실과 스마트폰의 매개역할이 확인된 상황에서 교육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나 스마트폰 중독 등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다. 일단 가교위의 홍보분과를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한 후 그에 적합한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는 전 국민 대상의 공모전을 실시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모바일, 잡지 등 매체별 특성별 홍보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어플 등 청소년에게 친근하면서도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 상품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마트폰의 생산적 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유해광고에 대처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광고를 통한 유해매체물의 유포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행책들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절차

- (1) 제 1단계(2015년 ~ 2016년) :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가정행복교육위원회(가교위:가칭) 설치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가정행복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법적 타당성과 근거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또한 가정행복교육위원회의 산하부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며 그 활동영역과 한계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계, 관련부처,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Blessing-Family Project의 현실화를 위해 장·단기적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3) 제 3단계(2017년 ~2018년) : 가정행복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산하부서와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과 각 급 학교를 중심으로 Blessing-Family Project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전체 교육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을 보완한다.
- (4) 제 4단계(2018년 ~ 계속) : Blessing-Family Project를 정착시킨다.

표 VII-2 Blessing-Family Project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중기: 제 3단계 (2017년~2018년)	장기: 제 4단계 (2018년~계속)
주요 내용	•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가정행복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법적 타당성과 근거를 확인 후 연구모델 개발	• Blessing-Family Project의 현실화를 위한 장·단기적 실행계획서 확립 및 의견수렴	• Blessing-Family Project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전체 교육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보완	• Blessing-Family Project 정착

4) 관련법 개정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제 34장 제 34조 2의 5항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안에 Blessing-Family Project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가정행복교육위원회(가교위: 가칭)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350백만 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가정행복교육위원회운영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 따라 조직·설립 운영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3 Blessing-Family Project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2016년)	• 가정행복교육위원회운영모델 연구·조사비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10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중기: 2단계 (2017~2018년)	• 가정행복교육위원회운영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간담회,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 가정행복교육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 운영	운영비 300,000,000원 × 1년	300
장기: 3단계 (2018년~)	• 가정행복교육위원회운영 운영	추후 예산반영	
총계			500

6) 해외 사례

(1) 영국의 경우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국 아동인터넷 안전위원회(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의 주도하에 영국의 주요 인터넷 및 모바일 전화 제공회사들(BT, Sky, TalkTalk, Virgin Media)의

동의로 2012년 10월까지 부모가 임의로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의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 2011, <표 VII-4> 참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성인관련 혹은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려 계획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표 VII-4 영국 인터넷 안전위원회 인터넷 부모통제 실행 규약

영국 BT, TalkTalk, Virgin Media and Sky의 인터넷의 부모 통제 실행규약 인터넷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온라인상에 있으나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은 어른들에게만 적절한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이 있다. 영국의 주요 인터넷 제공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ISP 기술을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터넷의 부모통제 실행 규약을 제시한다. -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구입 장소, 설치장소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동 서비스는 추가 요금 부담을 하지 않는다. - 기존 모든 사용자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규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 향후 보다 발전된 인터넷 사용 규제방안이 나올 때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다. -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안전을 교육하는 NGO, 학교, 경찰 등과 공조할 방안을 모색한다. - 이용자 의견을 받아 인터넷 부모 사용 규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인식개선에 참여하는 정부, 의회, 정책입안 전문가들과 공조한다.

(2) 광고행위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2014년 개정된 광고규약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을 묘사하는 형태로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The BCAP Code/The UK Code of Broadcast Advertising, 2014: 5.5)을 분명히 하였다.

(3)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유해물, 특히 성 상품화의 문제에 대한 영국 광고표준국의 적극적 홍보가 생산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2012년 11월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보고 듣는 광고물들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이미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권리, 책임, 의무, 자유, 시민권'의 견지에서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Ad: Check'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VII-5> 참조).

표 VII-5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청소년 유해성 상품화 이미지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학교(교사, 학생) 제공 자료

Ad:Check은 선생님들에게 광고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학급활동 시에 광고제작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이해를 넓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Ad:Check은 학생들에게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 책임, 자유, 시민권에 대하여 논쟁이 될 수 있는 광고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 광고는 왜 법규가 필요한가?
- 광고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가?

다음 자료들을 pdf형태로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요 [PDF] : 광고 규약 요약
- 큰질문 1: 1: 광고는 왜 법규가 필요한가? [PDF]
PowerPoint 자료 BQ1, 활동자료 Paddy Power [video]
- 큰 질문 2: 광고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PDF]
Videoresource: Lesson2, 활동 1- Beyoncé Heat perfume [video]
- 큰 질문 3: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가? [PDF]
PowerPoint BQ3 Resource 1
Videoresource: Lesson1, 활동 1- Belle D' Opium perfume [video]

〈다양한 자료〉

- 잘못된 광고: non-broadcast ads [ppt]
Clinique ad [video]
Burger King ad [video]
- 유해한 광고: non-broadcast ads [ppt]
Barnados ad [video]
British Heart Foundation ad [video]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d [video]
London Dungeon ad [video]
Reebok ad [video]

Tango ad [video]
 Harmful advertising notes [PDF]
 Offensive advertising Offensive advertising: non-broadcast ads [ppt]
 Department of Health ad [video]
 KFC ad [video]
 Motor Neurone Disease ad [video]
 Reed ad [video]
 Trident ad [video]
 - 범죄를 부추키는 광고 [PDF]

출처: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Ad: Check 자료실
 웹사이트 <http://www.asa.org.uk/News-resources/School-parent-resources.aspx>

7) 기대효과

모든 행동이전에는 항상 먼저 생각이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의식이 보이는 행위보다 우선하며 실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행위가 아닌 의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한 번 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유동적이지 않다. 다만 의식의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으니 단기적인 정책위주의 국가에서는 인지되고 있으나 선호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교육이 행동과 습과 그리고 결국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미디어와 성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현재 미디어와 성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당위이다.

과제 2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 정책 기본방향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선정적 청소년 유해물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물건·유해악물의 심의기구를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도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유통단계 집행정책 감독·단속

1) 제안배경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악물 등의 종별에 따라 심의하는 기관이 다르다. 소설·만화·간행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프로그램·정보통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비디오물·공연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음반·음악파일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악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표 VII-6> 참조).⁹³⁾

표 VII-6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관

심의 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 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소설 • 만화 • 간행물	• 방송프로그램	• 정보통신물	• 영화 • 비디오물	• 공연물	• 게임물	• 음반 및 음악파일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악물 등
	* 청소년보호법 대상물로 국한						
심의 기준 (소관 부처)	• 청소년보호법 • 출판법 (문화부)	• 청소년보호법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 정보통신법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규정 (문화부)	자체규정 (문화부)	자체규정 (문화부)	•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심의 형태	사후심의	사후심의	사후심의	사전심의 (등급분류)	사후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사전심의 (등급분류)	사후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93) 박병식, 「음반·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토론회자료, 2011

심의 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 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치	수거 폐기 명령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과명령 프로그램 정정 중지 등	청소년 유해매 체물	거부, 정지, 제한 명령	청소년 유해 매체물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 등급분류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연령 등급분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청소년유해매체물

그런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선정성·음란성의 심의기준이 음반, 유해간행물, 유해방송물, 유해정보통신물 등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표 VII-7> 참조). 이것은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표 VII-7 선정성·음란성에 관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유해 음반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간행물 심의규정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 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수록한 것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해 방송물 심의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 · 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 · 혼음 · 근친상간 · 사체강간 · 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 윤간 ·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 · 청소년을 성폭력 · 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유해 정보 통신물 심의 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 ·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심의기관과 심의기준이 다르므로, 심의기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업소·유해약물·유해물건의 심의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그에 따른 주요결과로 제기되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영국정부가 2006년에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설립하기 이전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 간 노력들은 파편화된 접근과 개별 부처 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와 성매매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인권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1)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신설을 위한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신설을 위한 연구·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신설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첫째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산하에 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 일관된 심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개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학대 문제는 지역·국가적 문제이고 국제적 양상을 띠므로 지방정부와 부처 간 연계, 국제공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영국이 청소년 인터넷 안전을 전담하는 곳으로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설치하였는데, 영국의 CEOP는 경찰, 인터넷산업체, 그리고 관련부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CEOP는 정부와 통신업체 재원으로 가동되며, 경찰과 검찰 등 범죄 관련 종사자,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되고 온라인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청소년을 유인하는 채팅사이트를 찾아 범죄자를 색출하고,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웹사이트를 추적하며 합정 수사도 전개한다. CEOP는 인터넷 '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 사이트로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CEOP 지능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CEOP의 하는 일: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의 성 관련 안전 위협요소 예방 및 발견/개입
- 경찰, 범죄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한 다면적 접근

CEOP의 책임:

-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 예방 및 개입
- 국내외 기관과 공조 아동학대 이미지 소지 및 유포 조직 발견 및 검거 공조
-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전개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부처 간 각각 진행되고 있는 방송 통신 및 온라인상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매매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1) 실시간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핫라인 전화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2) 청소년 성 상품화와 성매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응급구조팀을 운용하며, (3) 지역사회·국가·국제 공조가 가능하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4)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물건·유해약물의 심의기구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과 인권보호점검팀도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청소년 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신설하여 신고접수부터 응급구조 및 사법적 대응,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해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의 역할과 전방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그 외 기존에 각 부처 소속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 팀을 통합하여 단속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3) 추진절차

- (1) 제 1단계(2015년 ~ 2016년)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의견수렴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계, 산업계, 관련부처,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에 대한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 법적 근거 마련, 예산확보 등 효과적인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설립준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3) 제 3단계(2017년 ~)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설립 및 운영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표 VII-8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 내용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을 위한 모델 개발 : 연구 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법적 근거마련, 예산확보)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설립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실질적 운영

4) 관련법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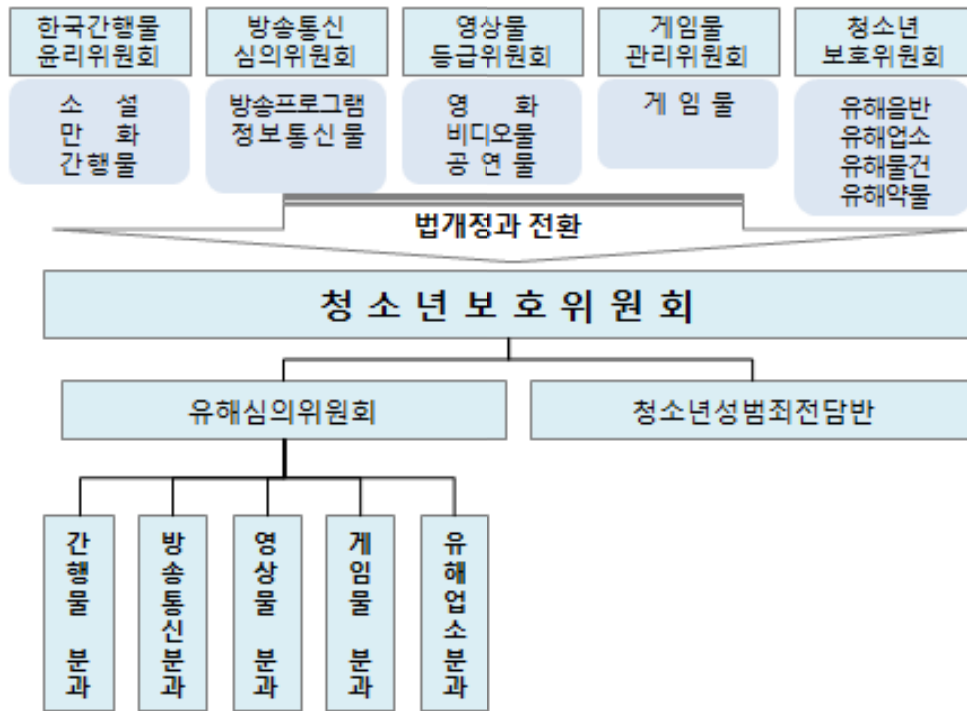
청소년보호법 제6장 제36조가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심의 매체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긴다.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의 확대·신설에 따른 설치규정, 임무, 조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전담기구 신설 또는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1조(회의 및 운영) 및 대통령령,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담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하려한다면, 제41조의2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41조의3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해심의 분과위원회를 개편 및 확대하려한다면,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고, 각 심의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개정한다.

나아가 법개정을 기초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내에 각 분과별 유해심의위원회를 소속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그 규모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분야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방송심의위원회와 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보호 전담반을 신설한다면 효율성,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경찰관 파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성매매 수사권한 부여 등 논의가 필요하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이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성매매'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도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35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성격과 위상에 따라 조직·설립 운영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9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의 신설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2016년)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 성보호전담반 운영모델 연구·조사비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10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중기: 2단계 (2016~2017년)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 보호전담반 운영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 의 도출	간담회,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 성보호전담반 설립준비 기획단 운영	운영비 300,000,000원 × 1년	300
장기: 3단계 (2017~)	•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 성보호전담반 운영	청소년 유해심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 호전담반 성격에 따라 추후 예산반영	
총계			500

6) 해외 사례

영국의 CEOP는 2006년에만 국내에서 14,070건, 국외 공조조직으로부터도 10,000건의 아동·청소년 성학대·착취 신고를 받아 개입을 진행하였다. 최근 2012년 ‘아동포르노 유포, 온라인 아동 성착취, 다국적 아동 성학대, 아동성학대 교제’에 대한 ‘전략적 위협 사정(Strategic Threat Assessment)’을 실시한 결과 ‘아동포르노 유포자’는 50,000명,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유인’ 사례 1,145건, ‘다국적 아동 대상 성학대’ 영국인 66명, ‘아동성학대 교제’ 피해아동 2,409명(가해자 1,514명)을 발견하였다(CEOP, 2013).

CEOP는 2013년 6백 45만 파운드(약 110억)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성적 착취, 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해 국내외 경찰, 아동학대전문기관 (NAPCC, Childnet) 전문가, 인터넷(Microsoft, AOL, Vodafone) 서비스 관련 전문가, 정부관련 전문가(교육부, 내무부, 외교부 등)들 112명(경찰 13명) 파견되어 와서 업무를 진행한다(CEOP, 2013, Annual Review 2012-2013:19). CEOP는 정보(Intelligence), 위해감소(Harm Reduction), 작전(Operation)부서로 구분되며 각 부서는 관리, 통신, 공조, 협력 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으로 구성된다. 정보(Intelligence) 부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범죄관련 정보를 받으며 모든 정보보고는 센터웹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해감소(Harm Reduction) 부서는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영국 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성문제 특화 프로그램인 ‘ThinkUKnow’를 활용한다. 작전

(Operation)부서는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자 아동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학대가해자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외 기관과 공조 아동학대 이미지 소지 및 유포 조직 발견 및 검거 공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lickCEOP'를 개설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누구나 발견 즉시 리포트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한다. CEOP는 인터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2004년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가상대책반(Virtual Global Taskforce)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하여 대처한다.

몇 몇 주요부서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윤숙·박병식, 2009 재인용).

① 정보부(Intelligence Faculty)

정보부에서는 주로 기관의 허브 역할과 범죄가능성 행동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분석이 완료된 정보는 지역 경찰서나 그밖에 관할 부서에 전달하거나 내부 부서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아동학대에 대한 CEOP의 향후 역할과 기능을 보완한다. 또한 범죄자 관리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국내외 수배자 위치를 파악하여 그런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부에서는 통계분석, 연통계보 제작과 기타 정보에 대한 결과 정리에 대해 담당하고 있다.

② 위험관리부(Harm Reduction Faculty)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분석과 정보부와 운영부의 수행결과를 토대로 위험관리부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교사, 경찰, 아동보호종사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실무자들에게 정부 주관의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 시 유익함과 위험에 노출되었을 시 어떻게 하는지 등 아동,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청소년 고문패널(YAP: Youth Advisory Panel)에서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
- 경찰, 보호부서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와 같이 전문 인력들을 위한 연수 과정들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UCLAN에서 인증하며, 연수 참가자들은 과학수사행동분석학의 대학원 연구생 자격이 주어진다.

- 기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진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영국아동인터넷안전회의(UKCCIS), 경찰공무원협회의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매매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사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부처와 아동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외에서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단체와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한다.
- 아동매매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경찰과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한다.
- 성범죄자 면담 시 인터뷰 방법 등 그 밖에 참고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아동 성범죄자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

③ 운영부(Operation Faculty)

운영부(작전부)에서는 전문가의 지원과 조언을 통해 아동 학대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부에서는 사례 분석을 하여 초기에 전문가의 지원과 조언을 한다. 본 부서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인터넷 조사를 전개하기 위한 수용능력 극대화(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함)
- 아동학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범죄자 리스트를 세밀화하는 재정조사 자원
- CEOP 피해자 신원확인팀(Victim Identification Team)에서는 정교한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도록 돕는 팀임
-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과 지침에 의한 준비

CEOP는 정부와 통신업체 재원으로 가동되며, 경찰과 범죄 관련 종사자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되고 온라인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청소년을 유인하는 채팅사이트를 찾아 범죄자를 색출하고,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웹사이트를 추적하며, 함정 수사도 전개한다. CEOP는 인터넷 '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 사이트로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CEOP 지능수사

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의 2008~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75%, 프로젝트 수입 6%, 내부사업 수입 19%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많은 부분이 국고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7) 기대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 간 노력들은 파편화된 접근과 개별 부처 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문·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와 성매매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심 의기구의 통합과 청소년성보호전담반 신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학대·인권 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개입·해소하는 One Stop 창구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 3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⁹⁴⁾		
▶ 정책 기본방향				
일반적 자율규제와 정부의 직접 규제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규제와 자율의 소모적 갈등에서 생산적 융합으로의 이행을 통해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본질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기구 설립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단계와 영역	생산단계 집행정책 감독·단속	

1) 제안배경

미디어에서 생산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자율규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별사안에

94) 이 과제는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규(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가 집필하였음.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업자들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절차의 불투명성이나 정당성의 확보, 무엇보다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곤 한다. 실제 자율규제를 언급할 때마다 그 필요성과 실효성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의 극복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성공여부는 제도의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규제의 도입보다 자율규제의 효율적 작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규제가 다의적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은 시의적이다.

1) 순수한 자율규제는 의미론적으로 자율의 순수성을 담보하지만 기업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배제하는 개념이기에 현실성이 없다.

2)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감독 이전에 관련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인정하고 그러한 자율규제의 적절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한국도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를 통해 자율규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효용성은 주지하듯 크지 않다. 이유는 자율규제에 관한 몇몇 조항명기와 실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위반한 경우의 경미한 처벌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는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1조 1항의 경우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청해야 한다' 대신 '요청할 수 있다'를 적은 것은 아마도 전자는 규제처럼, 후자는 자율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확인요청의 주도권을 생산자에게 주는 것은 자율이라기보다 오히려 방기에 가까울 수 있다. 합리적 자율이 아닌 맹목적 자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4항에 보면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 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1항이나 4항 모두 관련단체의 입장에선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통상적 의미에서 이해할 때 정부는 그러한 규제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두고, 청소년보호법에서 드러나듯 사후에 위반여부를 검사하여 시정명령(45조)이나 과징금(54조) 또는 58조와 59조의 경우처럼 법적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자율규제의 본질이 자율규제의 실제적 발생에 있다면, 이미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사후감독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의성만이 아니라 자율규제로의 유도를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3) 규제된 자율규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일반적 자율규제의 한계는 그러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사업자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전검열이나 과잉집행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다. 다만 문제는 사전검열이나 과잉집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전지도’와 ‘사전검열’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면 정부의 사전개입은 사전검열과 동일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의 사전개입자체가 부정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자율의 반대축인 ‘방임’으로 흐를 수도 있다. 물론 사후감독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후감독과 처벌의 강도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실질적 자율을 담보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바로 그 담보의 합리적 수행을 지향하며, 국가가 사전검열이 아닌 사전지도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실질적 이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된’의 의미는 첫째 사후규제보다는 선규제를 우선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달성한다는 것, 둘째 ‘규제된’의 일상적 의미에서 벗어나 소모적 규제가 아닌 생산적 규제, 즉 공존지향적 참여나 ‘인도’ 또는 ‘도움’의 의미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규제된 자율규제는 일반적 자율규제와 정부의 직접규제의 중도를 추구한 것으로, 자율규제의 중심축이 사업자 측에서 조금 더 정부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자율규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정부가 먼저 심사하고, 실제 메카니즘에 따라 기업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공신력있는 자율규제기구로 국가가 공인해주고, 그 공인된 기구를 통해 자율규제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는 자율규제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판보다 자율규제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 구조확립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자율규제의 본질적 의미에 더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경우 어느 기업이든 임의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단체는 해당 영역마다 한 기구에 국한된다. 그래서 방송의 경우 FSF가 유일하게 공인된 자율규제기구이고 인터넷의 경우 FSM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각주, 나아가 정부를 대변하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공인한다는 것은 해당 단체가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구조와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일은 기업이나 기업협회의 자의성에 임의로 자율규제를 위임하고 사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발생하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자율의 메카니즘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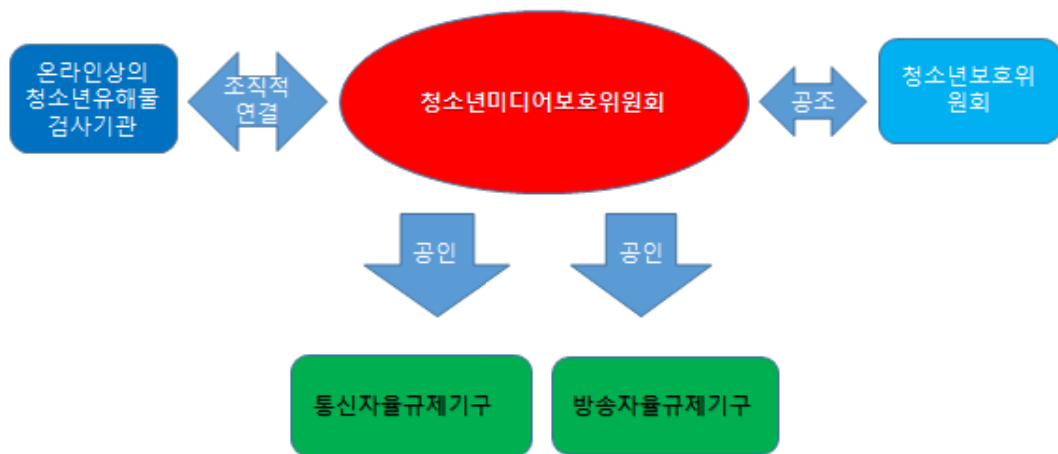
된'의 의미가 강조된다. 동시에 그렇게 공인된 기관의 4년이라는 인증기간을 정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주어진 자율적 규제소임을 이행했는가의 여부가 지속성의 조건이 된다.

이상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개념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관심'과 '구조' 그리고 '체계'이다. 미디어를 통해 범람하는 성적유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실질적이고 의지적인 관심을 독일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심은 청소년보호법 일반으로부터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이라는 방송과 인터넷의 온라인 미디어를 규정하는 법을 탄생시켰고, 동시에 두 법을 각각 전달매체와 통신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나아가 독립적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넷과 청소년미디어 보호 연방심사청을 연결하여 직접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달매체와 통신매체에 각각 하나씩의 공인인증된 자율규제기구를 둬으로써 청소년 성 상품화 등 청소년미디어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만을 위한 규제된 자율규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을 줄여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FSM의 경우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매개효과를 창출할 가능성도 지닌다. 즉 유연성과 현실성을 우선하는 기업의 요구와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칭)' 운영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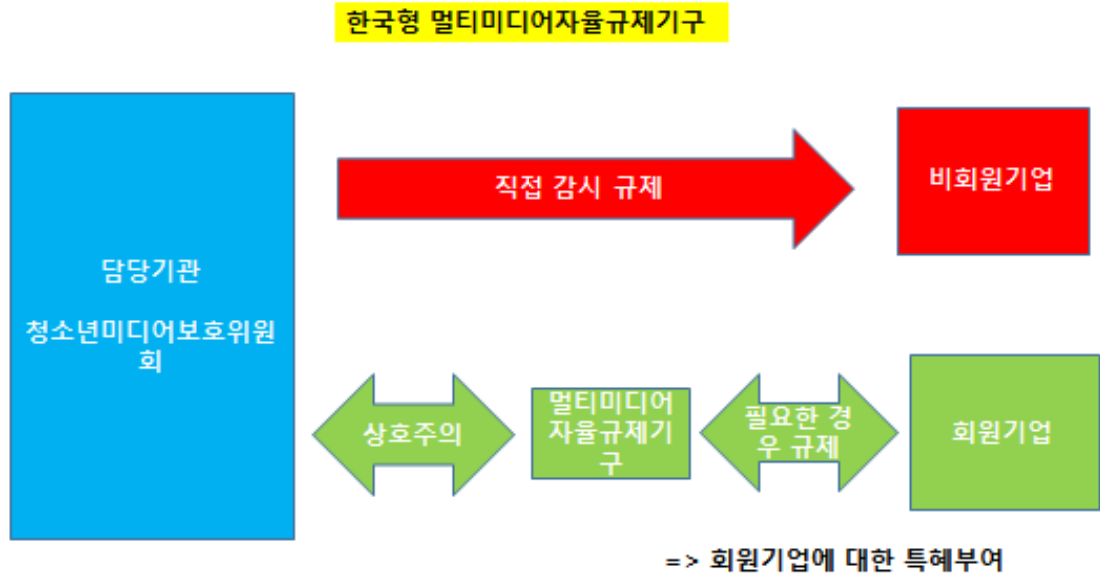
먼저 자율규제기구가 실질적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구조적 토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구조적 토대는 독일의 경우처럼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각 주의 공통관심사에 의해 만들어져 독립적으로 방송과 온라인상의 청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VII-4】와 같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



【그림 VII-4】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그림 VII-4】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청소년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다. 첫째는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온라인상의 청소년유해물 검사기관과의 조직적 연결,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검사기관을 통해 수시로 청소년 성 상품화를 비롯한 유해물에 대해 통고받게 되고, 그에 대한 자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공조하여 유해물목록에 등재하거나 자체적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둘째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선개입함으로써 예방차원에서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이는 독일의 경우처럼 영역별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공인하는 하나의 자율규제기구를 선정하고 그 독립기구로 하여금 사업자들을 자율규제로 인도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에 역할을 위임하되 공인유효기간을 규정하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동시에 청소년유해물 검사기관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음으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한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위반을 적발할 시엔 그 사항을 자율규제기구에 통고함으로써 기구가 사업자와 직접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율이 실패할 경우에만 직접개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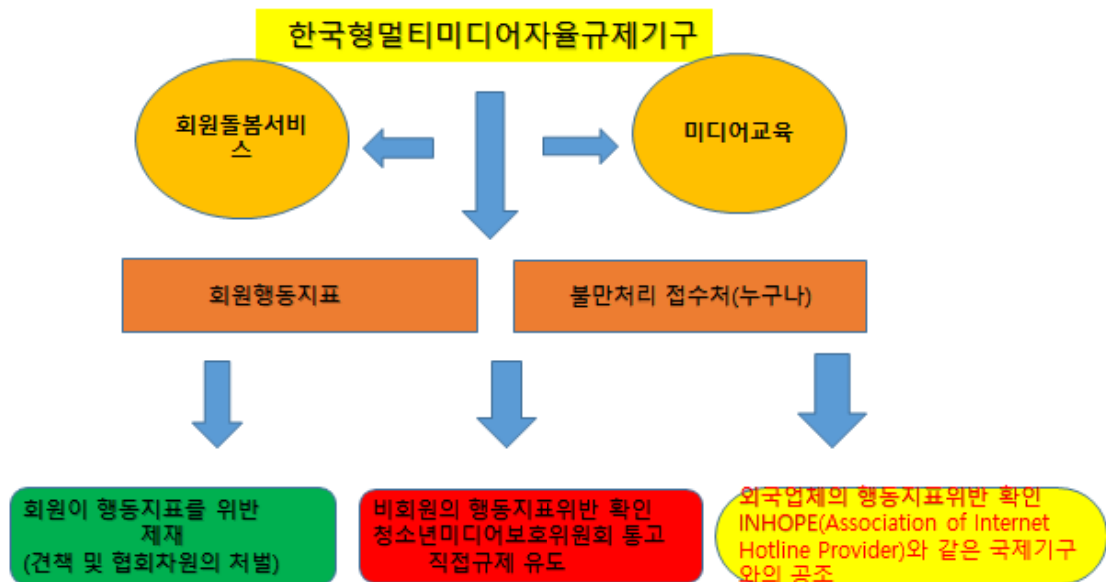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 유사하나,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규제기구라는 점, 동시에 정부로부터 공인된 자율규제기구라는 점에서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그림 VII-5】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운영모델

무엇보다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 지니는 장점은 【그림 VII-5】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규제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자신들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에 자문해주며 또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때에 따라 대변해준다는 점이 있다. 나아가 회원기업의 경우 혹시 청소년보호위반으로 검사기관에 적발되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서 자율규제기구에게 통고했을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기구만을 상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아가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 지니는 특성은 그 역할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그림 VII-6】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활동영역

【그림 VII-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 만들어져 단순히 회원행동지표를 통한 회원돌봄서비스에만 그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불만처리를 직접 받아 처리하는 접수처가 되고, 회원, 비회원 및 외국업체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통일성과 체계성의 측면에서 분명 생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독일의 모델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 토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영역, 그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기구의 성격과 위상, 주요기능과 역할,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충분한 구조적 토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년 ~ 2016년)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연구·조사 및 의견수렴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위상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계, 산업계, 관련부처,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모형을 개발한다.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예산확보 등 효과적인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화를 위해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설립준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제 3단계(2017년 ~) : 한국형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 설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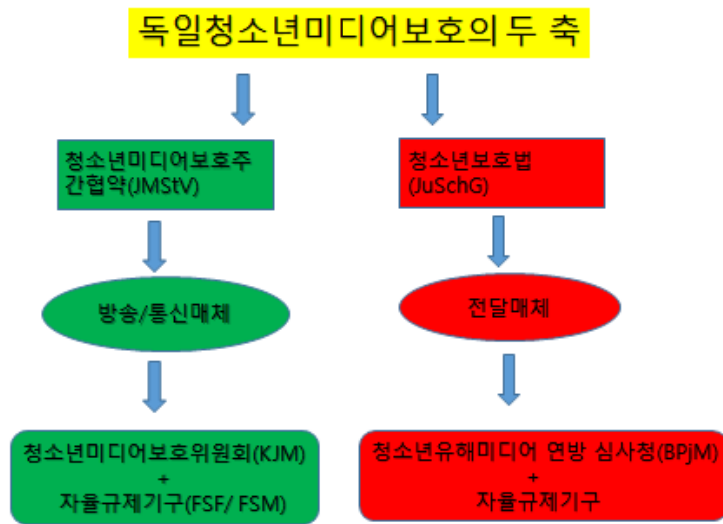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표 VII-10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 내용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 모델 개발: 연구·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로 개발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및 제도화(법적 근거마련, 예산확보)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설립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규제된 자율규제’의 모델로서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의 실질적 운영

4) 관련법 개정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매체물 심의분과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청소년미디어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내에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된 자율규제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법적 토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문적이며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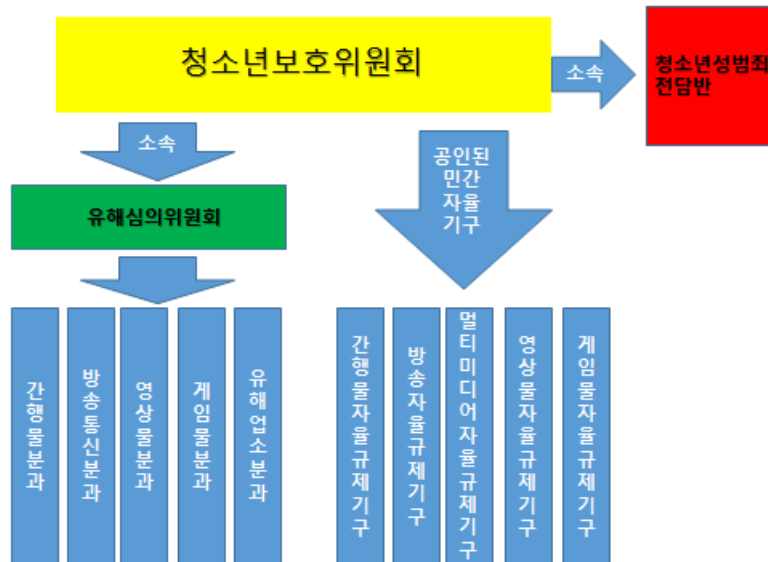


【그림 VII-7】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법적 토대

무엇보다 독일의 경우 【그림 VII-7】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과 별도로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의 각주가 공통적으로 온라인상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멀티미디어관련 실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또한 청소년성 상품화와 같은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법적규정, 나아가 자율규제에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방송과 온라인의 중요도를 인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과 별도의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구분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별도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멀티미디어

어자율규제기구의 제반 법적 성립조건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보호법 안에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 가운데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종합 정리하여 청소년미디어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은 일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6장 제36조가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 유해심의 매체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긴다. 그리고 각 심의기관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내에 각 분과별 유해심의위원회를 소속하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틀을 확립한다. 다음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41조 2항을 개정하거나, 제41조의 3을 신설하여 자율규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보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선정하여 공인한다. 자율규제기구는 분야별로 하나씩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이 때 그 규모나 중요도를 감안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방송자율규제기구와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규제기구의 선정과 공인은 자율규제가 일반적 자율규제가 될 경우 유해심의위원회와 자율규제기구의 실질적인 2중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 신설될 자율규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자율규제로서의 사후 검증과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전검증을 통한 예방의 차원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I-8】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민간자율규제기구의 관계망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표 VII-11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기구 설립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 모델 연구·조사비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10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2단계 (2016~2017년)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간담회,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설립 준비 기화단 운영	운영비 300,000,000원 × 1년	300
3단계(2017~)	•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운영	규제기구 성격에 따라 추후 예산반영	
총계			500

6) 해외 사례

독일의 경우 자율규제기구(ASK)는 임의로 허용되거나 정부가 공인하는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기구'는 해당영역에 하나만 존재한다. 각 영역에 대한 자율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커피머신과 같은 '자동기기자율규제기구'(Automaten-Selbst-Kontrolle: ASK)
- 2) '방송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
- 3)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V.: FSM)
- 4) '영화산업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FSK)
- 5) '인터넷내용평가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ICRA)
- 6) '게임소프트웨어자율규제기구'(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USK)

이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송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와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V.: FSM)이다. 이 두 기구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인정받은 유일한 기관들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독일 각 주(州) 미디어청(Die Landesmedienanstalten: LMA) 소속의 공공기관으로,⁹⁵⁾ 각각의 기능, 업무 그리고 예산상의 독립이 보장된다.⁹⁶⁾ 다만 청소년보호법(JuSchG) 제15조에 의거 KJM는 운영규범 제·개정 및 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 제·개정의 경우 LMA의 의장에게 업무보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주간협약(JMStV) 16조에 따라 주간협약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위반할 경우 적절한 규제를 결정한다.⁹⁷⁾ KJM이 통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심사절차 및 조치의 내용은 주간협약(JMStV)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KJM은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인증권과 인증철회, 취소권 등이 있다. 그리고 KJM은 JMStV의 위반을 결정하기 위한 상응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칙규정권⁹⁸⁾도 가지고 있다. KJM의 판단에 대한 집행은 LMA가 담당한다.⁹⁹⁾

95) JMStV § 14.

96) JMStV § 14 Abs. 6, 8.

97) JMStV § 16(Zuständigkeit der KJM).

98) Kriterien für die Aufsicht im Rundfunk und in den Telemedien (<http://www.kjm-online.de/public/kjm> 참조).

99) JMStV § 14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윤숙·유홍식 (2012).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중 임규철, 독일의 디지털 유해매체 환경 관련 청

KJM은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다수인 6명은 주미디어청에서, 4명은 주청소년청,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연방청소년청에서 파견된다. 이렇게 구성된 KJM은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청(BPJM)과 공조하며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망을 통해 KJM은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직접개입을 시도한다. 동시에 KJM은 통신자율규제기구와 방송자율규제기구를 심의 선정, 공인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위임함과 동시에 수시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7) 기대효과

규제된 자율규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즉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면 자율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과 규제의 융합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매개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보호의 실질적 예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그러한 자율규제의 패러다임을 독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여 실천적 효과를 증대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을 줄여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는 유연성과 현실성을 우선하는 기업의 요구와, 그리고 원칙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사이에서 합리적 절충으로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 수용자 중심 정책 및 제도 분석)에서 재인용.

과제 4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

▶ 정책 기본방향

스마트폰 이용과 랜덤채팅의 유인메시지를 통해 음란채팅이 증대확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채팅이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목적이 아닌 선도목적의 사이버 잠복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유통단계 집행정책영역 감시·단속

1) 제안배경

2009년 버디버디, 스카이라브 등 인터넷채팅사이트가 청소년 성매매 접촉 경로로 사용되는 실태 (성윤숙, 박병식, 2009) 및 경찰청·청소년중앙점검단의 단속에 실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도 처벌제도’는 2009년 개정 공포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위해 유인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용이하도록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는 인터넷 채팅 중 캡처가 가능해져 신고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경찰청 117 안전드림센터에 성매매 유인과 관련된 증거 내용을 캡처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에서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¹⁰⁰⁾ 유인(grooming)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실제상황에서 이를 조장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바가 있다. ‘2005년 아동학대 및 성범죄방지법(스코틀랜드)(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 Act 2005’도 16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는 유도수사, 소위 함정수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첫째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국가가

100) 구체적인 성매매 내용이 없어도 사전 시도행위를 포함.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윤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2007년 대법원 판례도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¹⁰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목적의 청소년 유인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는 함정수사도 아니고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유인행위 처벌규정이 생긴 이후 경찰관이 청소년 성매매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 일반에 대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위한 함정수사는 필요하다. 이 경우 국민전체를 범죄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수 의사가 실제로 있는 사람만을 유도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나 민변 주장은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이다. 유도수사는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도를 실제 가지고 있는 자를 범죄실행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범죄에 적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도수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유도수사에 걸린 다는 자체가 없던 욕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그런 의도가 선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점을 충분히 알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비행이 과거의 업소형에서 대부분 인터넷과 랜덤채팅앱으로 전이되고 있고, 일어난 후의 처벌보다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2) 주요배경

(1)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만남사이트 게시판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딸기”¹⁰²⁾라는 메시지를 경찰관이

101) 2011년 서울중앙지법도 경찰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컴퓨터 도박장에 위장 잠입해 지속적으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것을 요구한 끝에 이를 실행한 피사방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발견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만나자”, “일이 끝나면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장소에 나간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녀에게 신분을 밝히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지도를 한 후에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일본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보도」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사이버잠복 선도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비행이 인터넷에서 만연되고 청소년 비행이 다양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래와 같은 선도 방식으로는 비행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의 법리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도활동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재량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이다.¹⁰³⁾ 함정수사(Entrapment)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불법인 「범의유발형」과 합법인 「기회제공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범의유발형이란 범죄의도가 없는 자에게 작용해서 범죄의도를 일으키게 해서 범행현장을 검거하는 경우이며,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죄의도가 있는 자에게 그 범죄의도를 실행할 범행기회를 주지만 하여 범행현장을 검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대법원도 “본래 범죄의도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¹⁰⁴⁾고 판시하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함)는 함정수사에 대해, 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약물범죄나 총기범죄 등의 수사에서, ② 일반적인 수사방법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한 경우에, ③ 기회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함정수사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¹⁰⁵⁾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 보도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의 일환이며,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 일본 경찰도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한 이후 사이버 보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법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는 대단히 유사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범죄 일반에 대해선

102) 일본어로 딸기(苺)를 「이치고」라고 한다. 그런데 이치고는 숫자 1과 5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딸기라고 한 것은 원 조교제를 1만 5천엔에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103) 毎日新聞 2014년 4월 1일자

104)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105) 最高裁 平成16年7月12日決定 刑集58卷5号333頁

합정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드러난다.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 무고한 시민이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다. 범행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전정보의 입수만으로도 그 정보를 범죄행위의 증거로 채택하고 범인검거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유인방지법(Anti-Grooming Law)’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¹⁰⁶⁾. 대화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고 유도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의 유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입장이다. 영국도 아동유인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관이 직접 인터넷 상에서 가상 아이디를 합성사진을 통한 가상인물을 설정한 다음 6~12개월 정도 여성청소년인 것처럼 활동하며 증거수집과 현장에서의 범죄자검거를 하고 있다. 이는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외국의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한 범죄행위의 결과보다 범죄예방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점, 둘째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범죄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점,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오프라인의 성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성범죄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고 합정수사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우리도 사이버잠복 선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도 처벌제도’는 인터넷상의 성매매만 적용되지 오픈마켓인 스마트폰을 통한 즐톡 등 랜덤채팅 앱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성매매청소년의 면담 결과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채팅사이트보다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팅앱관련 국내업체뿐 아니라 구글 등 국외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자율규제 촉구와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순찰·교신행위·현장접촉 및 계도 행위로 구성되는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106) 이수정(2013.05.16). 아동성범죄,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정책포커스(2014. 08. 18 검색)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760710&pkgId=49500556>)

(2)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관련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마련된 운영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중장기 추진체계 등 제도화를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3) 사이버보도제도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교육실시

경찰청에서 10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사이버보도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도 매뉴얼 개발하고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추진절차

- (1) 제 1단계(2015년)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의 도입 사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받아 한국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 마련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예산확보 등을 마련한다.
- (3) 제 3단계(2017년 ~) :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교육실시
경찰청의 시범운영을 통해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관계자 및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표 VII-12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
주요 내용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시범운영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매뉴얼 개발 - 경찰청에서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매뉴얼 교육실시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인행위 처벌규정이 생긴 이후 경찰관이 청소년 성매매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유인행위’에 청소년 선도 및 계도를 위한 수사목적으로 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첨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청소년 성매매가 만남사이트가 아닌 SNS를 통한 1:1 채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 사례에 대한 판례 검토와 국내의 형사법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 검토 과정을 통해 사이버잠복 선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에는 11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790백만원 총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13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년)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조사비 60,000,000원 × 1종	6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중기: 2단계 (2016~2017년)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간담회, 공청회 등 20,000,000원 × 5회	100
장기: 3단계 (2017년~)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시범운영	시범운영비 50,000,000원 × 10개소	500
	•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매뉴얼 개발	매뉴얼개발비 40,000,000원 × 1종	40
	• 경찰청에서 사이버잠복 선도제도 매뉴얼 교육	관계자교육 50,000,000원 × 5회	250
총계			1,000

6) 해외 사례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일본 경찰청의 사이버 보도 추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VII-14 일본경찰청의 사이버 보도 추진 지침

사이버 보도의 추진에 대하여¹⁰⁷⁾

최근 인터넷에 기인한 복지사범 피해가 증가하는 등 대단히 우려할 상황에 있으나, 이른바 원조교제는 권유를 가장하여 조직적인 아동매춘(兒童賣春)의 알선을 행하는 사범을 비롯한 악질성이 높은 복지사범 피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의한 원조교제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종래의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행하는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가두보도(街頭補導)로는 복지사범 피해의 방지를 꾀하기 어려우며 그 대책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13년 10월 21일부터 원조교제의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도(補導)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내의 정세에 따라 효과적인 사이버 보도의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1. 목적

아동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등 인터넷 상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사이버 순찰에 의해 발견하여 투고를 한 아동과 접촉해 직접 주의·지도하는 사이버 보도를 실시하여 원조교제를 방지함으로써 인터넷 상에 기인하는 복지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육성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제

각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따라 사이버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계획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투고를 한 자가 주로 여자 아동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성경찰직원의 활동에 배려한다.

3. 실시요령

(1) 사이버 순찰

각 지방경찰청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검색대상 사이트는 아동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한다.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83호)에 규정하는 금지유인행위(동법 제6조 제5호를 제외한다) 및 매춘방지법 위반 등 이외의 것으로서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자에 의한 부적절한 메시지로 한다.

한편, 메시지는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내용 외에 기타 부적절한 메시지도 각 지방경찰청의 운용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2) 교신작업

사이버 보도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한 경우, 메시지를 보낸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와 현장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메일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교신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교신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성고 등 또는 대가지급을 보여 이성교제를 유인하는 내용의

메일 등을 송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현장접촉 및 보도

메일 등의 교신으로 메시지를 올린 대상자와 현장에서 접촉한다. 대상자와 접촉한 결과 아동이라고 판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연령이 18세 또는 19세인 경우에도 불량행위 소년으로서 보도를 실시하여, 그 소년에게 지도·조언을 행하고 보호자에게 그 소년의 불량행위 사실을 연락하며 필요한 감호나 지도조치를 촉구한다.

현장접촉에 있어서는 복수의 근무자로 대응하기로 하며, 소년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의 도주나 미인국(美人局)¹⁰⁸⁾ 등을 상정한 체제를 확보하는 등 각종 사고방지에 유의한다.

(4) 사이버 보도에 의한 불량소년의 종류

사이버 보도에 의해 보도한 경우의 불량행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올린 것을 사실을 포착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불량행위 소년의 보도에 대하여」(2008년 10월 17일자 경찰청 丙少発 제33호)의 별표 「불량행위의 종별 및 태양」의 「불건전오락」으로 보도하며, 소년이 스스로 매춘의 상대방이 되는 등 소년의 건전육성에 지장이 있는 성적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건전 성적 행위」로 보도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불량행위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도로 접촉한 소년이 지정한 불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로 보도해도 상관없다.

4. 소년육성 담당부서와 복지사범 수사 담당부서의 연계

대상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사범과 매춘의 알선 등 복지사범의 피해아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복지사범을 수사하는 부서가 밀접하게 연계하여 피해아동의 조기구출과 피해의 확대방지에 노력한다.

5.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사단법인 전국소년경찰지원봉사협회에서는 사단법인 전국소년보도원협회에 의한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활동」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2004년 5월 19일자 경찰청 丁少発 제79호 외)와 같이 인터넷에 범람하는 만남사이트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경찰지원봉사자 중에서 선발된 지정원이 유해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 말걸기·보도활동을 행하는 「인터넷 이용에 의한 소년서포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은 소년보도원연락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소년서포트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에 의한 사이버 보도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고, 적절한 지정원의 추천과 지정원에 의한 정보제공의 원활한 수리 등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에 노력한다.

6. 소년의 규범의식 양성

비행방지교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강습 등에서 사이버 보도의 실례를 소개하고, 인터넷의 이용에 기인한 소년의 범죄피해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홍보계몽활동을 추진하여 소년의 규범의식 양성에 노력한다.

7. 업무관리의 철저

지방청 소년담당 부서의 간부는 사이버 보도의 실시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신작업과 현장접촉 등의 실시상황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업무관리를 철저히 한다.

8. 기타

(1) 사이버 보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색 및 기동성이 우수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기자재의 활용이 효과적이므로, 각 지방청에서 기자재의 정비와 통신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노력한다.

(2) 사이버 보도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한다.

7) 기대효과

사이버잠복 선도제도는 사이버 순찰의 존재와 실질적인 주의와 지도를 통해 스마트폰의 채팅앱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조건만남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매수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과제 5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 정책 기본방향

성인인증 절차 등의 법적 제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매체의 선정적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장착의 의무화 실시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영역	생산단계 보호정책 이용자보호

1) 제안배경

애플리케이션마켓에는 이미 수많은 유해매체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쉽게

107) 2013년 10월 10일 경찰청 丁少発 제143호

108) 부부가 공모하여 행하는 공갈 또는 사기행위이다. 妻가 ‘먹잇감’이 될 남자를 유혹하여 간통하고 성행위의 도중이나 끝난 순간에 남편이 나타나 처를 범한 것을 이유로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소녀로부터 유혹을 받아 막상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 공범이 등장해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하나?”며 협박을 하는 것이다. 소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은 아동복지법이나 조례, 혹은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성인물동영상이나 성인용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성인물이나 불법적인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 그 외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성범죄나 성매매 등의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먼저 스마트폰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 등의 법적 제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해정보차단서비스만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구입시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2년 정부는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인 스마트보안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3년 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 가량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다(이창호·김경희, 2013).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의 실질적 관심부족과 부모의 의식부족이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차단서비스를 일종의 원격감시로 보고 청소년을 감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성윤숙, 2014).

2) 주요내용

부모를 위한 건전한 스마트폰사용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한 차단서비스이용법을 숙지하도록 인도해주고 동시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감시가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신사의 경우 차단서비스 내장의무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차단서비스의 개발이나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선 유해물차단서비스에 대해 우회접속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아예 스마트보안관을 삭제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유해매체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스마트보안관의 실질적 효율성도 문제이다. 따라서 부모들의 입장에서 엑스키퍼 같은 유료차단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서비스의 실질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성윤숙, 2014). 또한 부모들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설치 방법 및 설명이 복잡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강화 및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규제법’으로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인터넷 사업자 및 휴대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필터링 서비스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계약의 상대방이나 단말기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다만, 청소년의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휴대전화기를 제외한 인터넷 접속기기 제조사업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한 후에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제19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인터넷 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실정에서, PC 판매자는 물론 스마트폰 판매자에게도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동경의 조레처럼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필터링을 거부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판매점에 비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고자, 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개정하여 휴대전화에 의한 사이트 열람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의 이용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필요성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의 유해정보에 접할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판매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례에 스마트폰의 필터링 의무화와 설명의무를 규정한 곳은 2014년 4월 현재 전국 25개 시도에 달한다.¹⁰⁹⁾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다소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109) 朝日新聞 2014년 5월 10일자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년) : 보호·감독자를 위한 스마트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전한 차단서비스이용법을 숙지 및 청소년을 감시가 아닌 보호적 차원의 스마트안전교육 강화목적과 스마트보안관 등 차단서비스 프로그램의 홍보강화 및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차단서비스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스마트안전교육 실시 및 보급·강화

보호·감독자 대상의 스마트안전교육 프로그램, 우수 차단프로그램 홍보강화 및 매뉴얼을 보급한다.

(3) 제 3단계(2017년 ~) : 청소년 이용 스마트기기 대상 차단시스템 제도 의무화

차단서비스 내장의무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스마트기기 유해환경 근절·차단서비스를 생활화한다.

표 VII-15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
주요 내용	- 스마트안전 보호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 차단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구축	- 부모를 위한 건전한 스마트 사용교육실시 - 기존 프로그램 활용 홍보강화 및 매뉴얼 개발·보급	스마트기기 대상 차단시스템 내 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

4) 관련법 개정사항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규제법」을 참고로 스마트폰 판매업자 및 인터넷 접속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휴대전화 판매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의무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의무
- 인터넷 접속기능을 가진 기기 제조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필터링 서비스이용을 위한 조치 의무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등의 노력의무
- 청소년 유해정보가 발신된 경우의 특정서버 관리자의 노력의무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국민 연락 접수체제의 정비
-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은 청소년 범죄피해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청소년에 의한 이용방지에도 필터링은 효과적이다. 이에 법률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종을 변경할 때에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 권장을 피하여 필터링 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성윤숙, 박병식, 20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및 무선전화를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도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는 ① 휴대전화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장치 설치·운영 의무화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적 근거, ② 휴대전화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장치 설치·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 관련 업체, 보호자, 청소년 등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에는 115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26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340백만원 총 71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16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제도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년)	• 보호감독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비 30,000,000원 × 1종	30
	• 차단프로그램개발지원	개발비 35,000,000원 × 1종	35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5회	50
중기: 2단계 (2016~2017년)	• 순회교육 및 간담회 등	순회교육, 공청회 등 20,000,000원 × 10회	200
	• 매뉴얼 홍보강화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30,000,000원 × 2회	60
장기: 3단계 (2017년~)	• 차단시스템 내장의 의무화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비 30,000,000원 × 4회	120
	• 순회교육 및 간담회 등	순회교육, 공청회 등 20,000,000원 × 10회	200
	• 매뉴얼 홍보강화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0,000,000원 × 2회	20
총계			715

6) 해외 사례

일례로 영국에서 바이런 박사가 영국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후 제시한 권고사항도 우리에

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영국은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시키기 위해 바이런(Tanya Byron) 박사의 권고사항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2007년 9월 영국 수상의 지시에 따라 심리학자인 바이런 박사는 6개월 동안 인터넷 불법 정보와 비디오게임의 위험에 대해 검토한 후, 2008년 ‘바이런리뷰(The Byron Review)’를 제시한 바 있다.

바이런리뷰의 주요 권고사항은 (1)인터넷업체가 자율적인 행동강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더 효과적인 규제, 정부·사법기관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더 효과적인 교육을 담당할 ‘영국어린이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on Children Internet Safety)’의 설립, (2)이용자가 만드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자율적 실행코드(code of practice) 개발, (3)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품질평가마크를 획득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용자들이 인터넷서비스 가입 시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것, (4)‘영국어린이인터넷안전위원회’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업체에 어떤 검색수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검색모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백하게 보여주도록 해야 하며, (5) ‘DirectGov information사이트’(http://www.direct.gov.uk/en/index.htm)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one-stop shop’을 만들 것, (6)인터넷 안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와 교육 실시 등이다(Byron Review, 2007).

바이런리뷰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인 실행계획이 2008년 6월 발표되었다. 이 실행계획에 따라 인터넷에서 성인물, 폭력게임, 괴롭힘, 자살웹사이트 등을 감시하는 ‘영국어린이인터넷안전위원회(UKCISS,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기관, 학부모,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들로 구성되었다(바이런리뷰 홈페이지 참조; BBC News, 2008.3.27).

일본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만남사이트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세세하게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동경도 청소년건강육성조례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 7(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자의 책무) ①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자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으로 청소년의 매춘, 범죄피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개발하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및 편리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인터넷환경정비법 제30조 제1호의 필터링 추진기관 및 동조 제2호 및 제6호의 민간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으로 청소년의 매춘, 범죄피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그 업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성능 향상 및 이용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 상대방에게 청소년의 이용 유무를 확인하여 이용자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지하여 이용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대방에게 청소년의 이용 유무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도서류의 열람 혹은 관람하게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청소년이 그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기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기기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계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청소년의 건전한 판단능력 육성을 위해, 그 이용에 따른 위험성 및 과도한 이용에 의한 피해와 이들의 제거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청소년이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계몽에 노력한다.

제18조의 7의 2(휴대전화 단말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의 열람방지장치) ① 보호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관련 계약(당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청소년을 휴대전화 단말 등의 사용자로 하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관련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때에는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이용상황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이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감독하고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기타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내용 기타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제1항에 규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동항의 서면에 기재된 정당한 이유 기타 사항을 동경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지사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지사는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⑥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권고를 받은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⑦ 지사가 지정한 부서의 직원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에 영업시간 내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 8(인터넷 이용 관련 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 혹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가정, 지역사회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청소년의 건전한 판단능력 육성을 위해 스스로도 인터넷 이용에 따른 위험성 및 과도한 이용의 폐해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제거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노력하고, 리를 감안하여 청소년과 함께 인터넷 이용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등 적절한 이용의 확보에 노력한다.
- ③ 동경도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7) 기대효과

스마트폰의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의무화와 설명의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계몽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청소년 유해물, 특히 성 상품화와 관련한 유해물로부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6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정책 기본방향

아이돌 스타에 대한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의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청소년에 유해한 선정적 뉴스의 생산을 지양하고 환경감시라는 언론고유의 기능을 지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유통단계 보호정책 모니터링

1) 제안배경

아이돌 스타들이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내·외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는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기심, 관심이나 팬쉽(fanship)을 벗어나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아이돌스타를 길러낸 연예기획사, 방송사, 신문사, 일반 기업들이 이들의 인기를 일정 정도 상업적 목적과 연계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제안과제와 연관되는 것이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이다. 언론은 아이돌 스타의 국내외 공연과 방송프로그램 출연내용 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돌스타의 사생활이나 옷차림에 대해 지나친 선정주의적 보도태도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도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돌 스타의 ‘짧은 치마’, ‘룩스르우(look through)’, ‘망사패션’, ‘속옷패션’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에 기반한 보도나 보도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선정적이게 편집, 가공하여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내고 있다. 언론사들은 하나의 기사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비슷한 기사를 100여개 까지 양산하여 시간적 차이를 두고 클릭을 유도하는 ‘뉴스 어뷰징(news abusing)’을 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없는 기사제목을 사용하면서 인간적 흥미, 사생활 엿보기, 관음적 욕구를 자극하는 ‘낚시성 기사제목’을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우 선정적인 사진들은 성인들을 위해 따로 분류해 추가적인 비용지불을 통해 볼 수 있는 유료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언론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감시라는 언론이라는 고유 기능과 품격이 발현되기 보다는 무한 경쟁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말초신경을 경쟁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데스크탑·노트북,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쉽게 선정적 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의 뉴스는 언론의 고유한 방송뉴스시간 또는 신문지면을 통해 소비되기보다는 ‘인터넷포털’, 특히 국내 1위~3위 인터넷포털사(네이버, 다음,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를 통해, SNS를 통해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터넷포털서비스를 통한 뉴스소비는 많은 사람들의 뉴스소비 습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신문언론, 방송언론, 인터넷언론들은 자사 뉴스에 대한 인터넷이용자들의 클릭수를 올려 인터넷포털사로부터 클릭수에 따른 대가를 받고, 또한 클릭수에 따라 자사 뉴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비를 받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잘 알려진 신문·방송 언론이외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3,500~4,5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매우 많은 뉴스, 동일한 뉴스가 시시각각으로 양산되고 있고, 이중에 상당수는 클릭수를 올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선정적 뉴스에 해당된다. 청소년들도 아이돌스타의 소식과 뉴스를 인터넷포털에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원치 않든 아이돌스타의 춤, 노래, 몸짓, 옷차림 등과 관련된 흥미위주의 선정적 뉴스와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흥미·선정적 뉴스와 사진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선정적 광고(예: 성형수술, 성관련 건강식품발기부전 등)도 노출된다.

2) 주요내용

(1)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첫째,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비차별적으로 이용하는 뉴스서비스에서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기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사 자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가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아이돌 스타에 대한 선정적 기사·사진 생산과 유통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언론의 품격과 공신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관련 협회 공동으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취재보도준칙 또는 취재윤리강령의 보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나 보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언론사와 언론인 개인이 내재화하도록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언론사 내부 간부직원 교육, 언론인에 대한 교육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정부광고 지원 자격 부여 또는 차등적 지원일 것이다.

둘째, 인터넷신문에 대한 등록조건 강화이다. 현재 3,500~4,500여개로 추정되는 인터넷신문은 매우 미약한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등록 조건을 강화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해한 정보 또는 불법광고까지 인터넷신문을 통해 누구나 인터넷을 할 줄 알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를 흔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도적 진입장벽을 통해 자정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 기사나 사진을 매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포털서비스와의 협업 체계, 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학부모, 학교, 교사, 청소년에게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현 단계에서 정보의 확산,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기관 또는 주체들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포털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포털사들이 아이돌스타에 대한 선정적 기사나 사진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 사회적 노력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 ~ 2016년) : 언론사별 협업지원 요청 및 신문사 등록기준 강화

언론사별 자율규제의 가이드라인 재정 및 보강 촉구,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규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한다. 인터넷 신문사 등록 기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 제 2단계(2016 ~ 2018년) : 언론사 및 언론인 개인 내재화 교육 강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조하여 언론사 내부 간부·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통제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를 위한 개인별 내재화 교육을 강화한다.

(3) 제 3단계(2019년 ~) : 사회 전반적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보호자, 언론사 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하는 집단외 사회전반적으로 선정적 기사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및 자발적 모니터링 등 공동의 노력을 유도한다.

표 VII-18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 ~ 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 ~ 2018년)	장기: 제 3단계 (2019년 ~)
주요 내용	• 언론사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재정 및 보강 촉진 • 통합적 규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시 • 온라인 신문사 등록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 공동주관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 언론사 및 언론인 개인 내재화 교육 강화	• 사회 전반적 협업체계 구축 및 자발적 모니터링 등 공동의 노력 촉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에는 20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29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350백만원 총 8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국고 80%, 언론사 후원금 15%, 지방세 5%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2016년)	•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비 30,000,000원 × 1종 30
	• 온라인 신문사 등록기준 및 법 적근거 마련	개발비 30,000,000원 × 1종 30
	• 온라인 신문기사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운영비 30,000,000원 × 4회 12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 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2회 20
중기: 2단계 (2016~2018년)	• 순회교육 및 간담회 등	순회교육, 공청회 등 20,000,000원 × 12회 240
	• 언론사 대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5,000,000원 × 2회 3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 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2회 20
	• 온라인 기사에 대한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비 30,000,000원 × 4회 120
장기: 3단계 (2019년~)	•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한 캠페인	순회교육, 공청회 등 20,000,000원 × 10회 200
	• 관련기업 대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5,000,000원 × 2회 30
총계		840

7) 기대효과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조건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포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적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물이 청소년 성의식과 성행동의 왜곡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 7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 정책 기본방향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과 인터넷망을 통한 집중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체와 서비스의 변화에 부합하여 관리 시스템의 융합 내지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효율성을 높임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유통단계 보호정책 모니터링

1) 제안배경

방송, 영화, 신문, 도서, 광고, 게임, 음악, 통신, 공연 등 다양한 매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는 정부부처별, 심의기관별로 나뉘어져 행해지고 있다. 방송은 자율적으로 방송사에서 1차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사후적으로 문제화되는 경우에 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통신의 내용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으며, 이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다. 게임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으며, 이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다. 음반/음악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신문과 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통합적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져 왔지만, 다양한 관련 법 정비의 어려움과 정부부처의 이견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서 언급한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망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매체와 서비스는 융합 또는 통합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되는 매체로 나누어 중복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의 결과는 같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공연을 제외한 대부분 매체의 내용물은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유·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결국,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는 매체 유형에 관계없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인터넷포털사이트나 앱(app)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이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져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심의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법제도 정비, 인력조정, 정부부처간 이견 조율 등 매우 집중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이의 전초적 단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산되어 각 심의기구별로 소규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모아서 기업의 ‘콜센터’처럼 집중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감시시스템은 또한 해결을 위한 조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 불법정보의 발견 ⇒ 정책조직(각 심의기구의 통합적 조율기구) ⇒ 내용에 대한 조율 ⇒ 해당 심의기구로 통보 및 해결 ⇒ 해결내용 공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성적 유인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인터넷상에서 발견하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는 CEOP(Child Exploitation & Online Protection Center)와 같은 센터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CEOP와 같은 센터를 신설해 집중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위치시킴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유인이나 착취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과 같이 신고에 따라 절차를 밟고 관련기관으로 이관하면서 시간적 지체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민원인에 대한 실망감과 국가적 대응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감정/태도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제거해야 것을 포함한다. 최소한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또는 성유인이 지속적으로 감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함정수사’에 가까운 ‘집중적 감독관리 수사’가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랜덤 채팅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app) 시장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 ~ 2016년) : 통합적·집중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인력조정, 정부부처간 이견 조율 등 매우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매체별 및 분야별 집중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강화한다.

(2) 제 2단계(2016 ~ 2017년) : 집중적 모니터링 시범기간

통합된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적으로 약 1년간 실시하며, 주단위로 시스템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한다. 통합관리기관(예시: CEOP)의 신설하여 시범운영한다.

(3) 제 3단계(2017년 ~) : 매체별, 분야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시범기간을 거쳐 확정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회전반에 매체별, 분야별 확대적용하며, 정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표 VII-20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년 ~ 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년 ~ 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 ~)
주요 내용	- 정부부처간 이견통합 및 통합 근거 마련 - 매체별 통합기준 근거마련	- CEOP(예시) 신설 및 시범운영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신설된 CEOP(예시)의 안정화 및 통합 모니터링 활성화

4) 관련법 개정사항

유해심의 분과위원회를 개편 및 확대하려한다면,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고, 각 심의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개정한다.

나아가 법개정을 기초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내에 각 분과별 유해심의위원회를 소속하도록 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매체별, 분야별로 각각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에는 14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는 44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7년~)는 500백만원 총 1,08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21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2016년)	• 통합모니터링 센터 개발 연구	개발비 80,000,000원 × 1종	8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6회	60
중기: 2단계 (2016~2017년)	• 통합 모니터링 기관(예시: CEOP) 운영	모니터링 운영비 35,000,000원 × 12회	42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2회	20
장기: 3단계 (2017년~)	• 통합 모니터링 기관(예시: CEOP) 운영	모니터링 운영비 50,000,000원 × 12회	500
총계			1,080

6) 해외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하여 집중감시기구의 역할 하는 사례로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직속기관으로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을

두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청소년보호넷은 주정부를 도와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활동을 해오다 2003년 4월 1일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이 발효된 이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연결되어 움직이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넷은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MStV)을 위반하는 유해물을 발견할 경우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동시에 공인된 자율규제기관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에 통고하게 된다. 일례로 2004년 청소년보호넷은 발견된 1000건 이상의 청소년유해물 가운데 70%정도를 신속히 넷상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중 통지를 받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116건의 경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 이양하여 처벌과 행정지도를 받도록 했다. 2005년에 확인된 미성년자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1949건의 유해물 가운데는 독일에서 생산된 874건의 2/3를 신속히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183건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에 위임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이 경우 최고 500.000 Euro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¹¹⁰⁾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 착취 행위에 대한 즉시 수사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사기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영국의 CEOP이며, CEOP는 정부와 통신업체 재원으로 가동되며, 경찰과 범죄 관련 종사자들, 인터넷 서비스 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되고 온라인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청소년을 유인하는 채팅사이트를 찾아 범죄자를 색출하고, 청소년의 성 상품화 웹사이트를 추적하며, 함정 수사도 전개한다. CEOP는 인터넷 ‘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청소년 성 상품화 사이트로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CEOP 지능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7) 기대효과

인터넷포털사이트나 앱(app)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사권이 있는 CEOP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유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특히 성적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0) <http://jugendschutz.net/> Jahresbericht 2004–2013.

과제 8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 정책 기본방향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 확산됨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동을 왜곡시키는 청소년 아이돌 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영상물의 규제를 강화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생산단계 보호정책 이용자보호

1) 제안배경

미국 사회에서 아이돌의 인기는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리우드 배우들은 미국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20년대 초 미국 영화관의 주요 고객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영화계의 아이돌들의 말과 행동과 패션을 열심히 흉내 내는 바람에 정부와 부모와 교육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유명한 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영화는 아동 청소년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할리우드 영화산업계로 하여금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만일에 영화산업계가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영화산업계는 오늘날 영화등급제의 뿌리인 자율규제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영화라는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정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헌법이 보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영화산업계의 자율규제는 오늘날 미국 대중문화산업계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81년 미국 뮤직텔레비전(MTV)의 등장과 함께 음악계에서 아이돌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음악계의 아이돌의 노출은 영화배우 못지않게 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이 미국 사회의 전통이다. 비록 성인이기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춤동작은

매우 선정적이지만 그러한 춤동작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의 신체적 노출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수용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그 정도의 노출이 허용되어오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저스틴 비버가 10대일 때의 공연을 보면 노출이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사회가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아이돌을 포함한 연예인들의 노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심지어 10대 아이돌이 공연을 하면서 보여주는 노출이나 선정적 춤동작과 저속한 노래 가사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돌스타의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 동작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유통,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관된 정책이다.

또한 일본의 오사카 청소년문제협의회는 2010년 11월 26일 비키니 차림의 아동이 과격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새롭게 「성적 학대의 기록」으로 정의하여 제조·판매와 소지를 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시모토 오사카 지사에게 제안하였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의 제조·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키니나 속옷류는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문제협의회는 비키니 차림의 과격한 포즈는 “성적 착취·학대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소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오사카 시는 2011년 2월 일본 최초로 비키니나 속옷을 착용한 채 음부나 엉덩이를 강조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 관련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그런 자태를 사진이나 전자기록으로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다. 수영복이나 속옷류를 착용한 채 음란한 포즈를 취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규정한 것은 오사카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최초이다.¹¹¹⁾ 한편,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 조례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한정하면서, 사업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의복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 않은 상태 또는 수영복이나 속옷만을 입은 상태의 선정적인 자태를 도서류나 영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감독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11) 読売新聞 2010년 11월 26일자

2) 주요내용

첫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아이돌의 공연 시 보여주는 선정적인 춤 동작과 노출, 저속한 언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남녀노소가 가정에서 동시에 시청하는 지상파 방송 공연 중계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아이돌의 지상파 방송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의 문화는 신체적 노출과 저속한 언어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돌 그룹의 신체적 노출이나 선정적 춤동작과 저속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규제에 앞서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율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돌과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도 건전한 대중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율규제에 적극적인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아동·청소년 아이돌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정부와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구들이 알맞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돌이나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경우에 외국의 수사기관과 청소년보호단체들과 협력해서 관련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공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 청소년 포르노그래피 제작, 유통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수사공조체제를 청소년 성 상품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년) : 자율적 심의 및 규제 권고·촉진

연예기획사, 방송사, 언론사 등 청소년 아이돌스타 관련 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권고하고, 자발적 심의를 강화하는 등 통제보다 자발적 활동을 권고·촉진시킨다.

(2) 제 2단계(2016년 ~) :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 강화

약 1년간 모니터링을 근거로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규제 기준안을 공고, 규제를 강화한다.

표 VII-22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년)	장기: 제 2단계 (2016년 ~)
주요 내용	연예기획사, 방송사 등 자발적 심의 및 규제 권고	- 청소년 아이돌 스타의 자발적 성 상품화 개념 강화 - 청소년 아이돌 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에 대한 규제 강화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8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75백만원 총 15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23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년)	• 연예기획사 및 방송사 등 관련 워크숍 등	워크숍 등 10,000,000원 × 4회	4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4회	40
장기: 2단계 (2016년~)	•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 기준안 개발 연구	개발비 35,000,000원 × 1종	35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4회	40
총계			155

6) 해외 사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동경도·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는 다음과 같다.

표 VII-24 동경도·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동경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8조의 6의 3(청소년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도서류 등 관련 보호자 등의 책무) 보호자 등은 아동포르노 및 13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의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입지 않은 상태 또는 수영복 혹은 속옷만을 입은 상태(이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상태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의 선정적인 자태를 시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함부로 성욕의 대상으로 묘사한 도서류 또는 영화에서 청소년이 성욕의 대상으로 당해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감독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자가 전항의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사는 보호자 또는 사업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 관련 제1항의 도서류 또는 영화 등에서 뚜렷하게 선정적인 것으로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 혹은 반포하거나 이를 열람 혹은 관람에 제공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호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4. 지사는 전항의 지도 또는 조언을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오사카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39조(아동의 성적 학대 관련 노력의무) 사업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사진,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타인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작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을 말한다) 관련 기록매체 기타 물건(이하 '아동의 성적 학대 기록'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수영복, 속옷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부나 엉덩이를 강조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행위

(7)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는 당해 청소년을 위협하거나 기만 혹은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청소년이 수영복, 속옷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부 또는 엉덩이를 강조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행위

7) 기대효과

아이돌 스타의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됨을 통해 일차적으로 청소년 성 상품화의 도구로 이용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함은 물론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 청소년의 성의식이나 성행동이 왜곡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예방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 9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 정책 기본방향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체계를 일원화함은 물론 상호 유기적 연결망의 구축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정책영역	유통단계 보호정책 모니터링

1) 제안배경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스마트폰, SNS의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만 3만 2330 건으로, 2012년 1만4085건에

비해 129.5% 증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건수 기준으로 보면 도박 정보(3만5899건)보다는 적지만, 증가율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에 따라 신중·변종 성매매 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개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년 99건, 2013년 206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3월 현재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에 4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를 비롯하여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또한 SNS 유통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지난 2013년 무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성매매 음란물 SNS 시정요구는 지난 2012년 250건에서 2013년 4,448건으로 급증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업소형 성매매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했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하고 있어 인터넷, 스마트폰, SNS등에서 성매매 관련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방송행정 기관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자율심의 체제로 이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통신심의국의 유해정보 심의팀에서 음란·선정성 정보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해외 한글제공 불법 사이트의 차단,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등급분류 등에 대해 심의업무,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에서 SNS,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업무를 담당한다. 권익보호국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 불법·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업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불법유해정보인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매매를 예방하는 기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하는 사이트 등의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NS를 통해 음란물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며 행정기관이 행정적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사이버수사대의 네트워킹의 문제로 신고창구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매매 관련 사이트 및 앱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신고방법도 까다로와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통합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이트 폐쇄와 함께 수사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협조 네트워킹이 필요한 점이다.

또한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만 하고 성매매사이트 신고시 패쇄 조치에 그칠 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방통위에서 행정처벌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단속입건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토록 조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규정을 삽입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필요적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방통위 입장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접했을 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증거가 없어져 향후에 삭제하기 전에 일반인들에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길 방안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지난 2013년 59명에서 올해 7명 늘어난 66명으로 확장해 추가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년) : 신고체계 일원화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등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영상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신고체계의 일원화하고,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강화·촉진 시킨다.

(2) 제 2단계(2016년 ~) : 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 법안 강화

법적근거 마련 및 규제 강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킨다.

표 VII-25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추진 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년)	장기: 제 2단계 (2016년 ~)
주요 내용	- 사이버수사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등 신고기관의 일원화 추진 - 신고체계 홍보·강화·촉진	- 규제법안 근거마련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4) 관련법 개정사항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만 하고 성매매사이트 신고시 패쇄 조치에 그칠 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방통위에서 행정처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에 형사처벌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단속입건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토록 조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규정을 삽입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필요적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6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75백만원 총 135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26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 공조 강화 소요 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년)	• 신고체계 일원화 추진회의	회의 등 10,000,000원 × 2회	2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4회	40
장기: 2단계 (2016년~)	• 성 상품화 영상물 규제 기준안 개발 연구	개발비 35,000,000원 × 1종	35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4회	40
총계			135

6) 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수사대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공조 강화를 통해 성적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비효율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제 10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 정책 기본방향

현실적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음란채팅 관련업체의 효율적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	단계와 영역	유통단계 집행영역 감시·단속

1) 제안배경

사업자들이 성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하는 일은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인터넷의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경찰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 성매매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으나, 증거 확보의 곤란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성매매 사이트는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예: a.com, b.com 등)를 사용하여 수시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타인명의(대포 폰, 대포통장)사용 등으로 적발이 어렵다. 형사책임을 피할 의도로 대부분 연합 사이트에 업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광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찰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¹¹²⁾.

최근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즐톡 같은 랜덤채팅의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 등은 개인 카톡아이디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청소년들은 와이파이가 되는 지하철이나 카페 등에서 유심칩을 빼고 즐톡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와는 달리 앱사업자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고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시정명령을 내려도 전화번호가 없고 주소도 없어 해당업체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절실하다.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를 위한 비용이나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신고창구를 마련해도 만남사이트 사업자들의 경우는 경제논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112) 국민권익위원회(2011. 8).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2) 주요내용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가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경고팝업창을 보다 강화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ISP의 관련유해사이트 자정 노력 및 감시의무 등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인터넷이용자의 위법, 일탈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ISP에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성매매 감시인력 설치와 인터넷성매매 관련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불이행시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른바 ‘사이버윤리척도’를 개발하여 포털 등 각 인터넷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준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비준수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ISP가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용어의 다양한 변환에 맞추어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이 강화되어야 한다(성윤숙, 박병식, 2009).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95%정도를 구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우리나라 통신사가 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내용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앱의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도구로 활용되는 랜덤채팅 앱인 즐톡의 경우 최근 성인용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모바일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전적으로 구글의 자율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구글에 대한 자율규제강화 요청 정도이다. 또한 구글이 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글은 각 국가에서 등록하는 모든 앱을 본사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 만 개씩 만들어지는 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국가별로 스마트폰 앱을 사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채팅사이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만남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유인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삭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예컨대 청소년, 성범죄관련 전과자 등)를 둘 필요가 있다.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매수납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성윤숙, 박병식, 2009)

3) 추진절차

(1) 제 1단계(2015 ~ 2016년) : 사이버 윤리척도 개발

정부차원의 사이버 윤리척도 개발 및 인터넷 채팅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개발보급하며, 자율적 규제 및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2) 제 2단계(2017년 ~ 2019년) : 필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인터넷 채팅관련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업체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권고안을 불이행시 제재를 가한다.

(3) 제 3단계(2019년 ~) :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정책화

인터넷 채팅관련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며, 함정단속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한다.

표 VII-27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추진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 ~ 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7 ~ 2019년)	장기: 제 3단계 (2019년 ~)
주요 내용	- 정부차원의 사이버 윤리 척도 개발 - 채팅관련 사업자 대상의 윤리교육 실시	- 필터링 시스템 의무화 시범기간 관리 -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채팅관련 사업자의 필터링 시스템 의무화 시행 - 함정 단속 등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4) 관련법 개정사항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랜덤채팅이 성매매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의 제한은 사실 금년 4월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인인증 강화를 위해 전정희의원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법적으로 본인인증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 통신과금서비스중지는 경제논리와 직결됨으로 실효성이 큰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채팅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28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2019년)에는 230백만원이 소요되고, 3단계(2019년~)는 230백만원 총 6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 예산은 국고 80%, 언론사 후원금 15%, 지방세 5%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I-28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단기: 1단계 (2015 ~2016년)	• 사이버윤리 척도개발 및 매뉴얼 개발	연구·조사비 130,000,000원 × 1종	130
	• 사업자 대상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5,000,000원 × 2회	30
	• 채팅관련 함정단속 등 집중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운영비 10,000,000원 × 4회	40
	•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한 캠페인	캠페인 운영비 30,000,000원 × 2회	6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2회	20
중기: 2단계 (2017 ~2019년)	• 필터링시스템 의무화 홍보 및 모니터링	홍보, 모니터링 추진 10,000,000원 × 12회	120
	• 사업자 대상 인센티브제도 도입	인센티브 축하금 15,000,000원 × 2회	30
	• 자율적 규제 촉진을 위한 캠페인	캠페인 운영비 30,000,000원 × 2회	60
	•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협의회, 전문가 포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 등 10,000,000원 × 2회	20
장기: 3단계 (2019년~)	• 함정수사 및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운영비 30,000,000원 × 4회	120
	• 관련기업 대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5,000,000원 × 2회	30
총계			660

6) 기대효과

음란채팅을 조장하는 채팅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와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이탈을 그 가능성에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11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 정책 기본방향

인터넷과 스마트폰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소위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학대 피해를 방지하고 그러한 유해매체물로부터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체 구축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 확대() 기존정책 개선() 신규정책(V)	단계와 영역	유통단계 집행영역 감시·단속

1) 제안배경

인터넷 사용으로 우리 생활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인터넷은 우리의 학습 방법, 소통 방법, 일상 생활을 모두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업적 이익을 위해 또는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학대하고자 하는 이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들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의 성 상품화문제는 합리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글로벌적인 합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온라인 상 아동 성적 피해는 극악한 범죄이며 세계적 이슈이다. 이 범죄는 온라인의 성격 상 국경도 없고 사법권의 경계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실질적 가치를 향한 세계화가 필요한 것이다.

2) 주요내용

(1)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 정상 회의 개최 및 이행계획 수립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주최하는 이번 세계 정상 회의(온라인 CSE 정상회의)는 2014. 12.10~12.11년 런던 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56개국 대표 및 24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 회의는 “온라인상의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글로벌 동맹 국가”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주최하는 이번 세계 정상 회의에는 정부 인사, 사법부, IT 산업 관련자, 시민 사회가 모여서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글로벌 행동 계획에 합의하고 관계 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온라인상 아동 성적 피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한다.

주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 세계 인터넷 상에서 모든 아동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동영상)를 제거하고자 하는 글로벌 행동 계획, 피해자를 찾아내고 구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법 집행 기관 간의 강화된 공조 방안이다. 이번 정상 회의는 국제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하도록 선언하였다.

아래의 <표 VII-29>의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 정상 회의 선언문이다.

표 VII-29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 정상 회의 선언문

STATEMENT OF ACTION: WEPROTECT SUMMIT 10-11 DECEMBER 2014

We, th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ho are working to end child sexual exploitation online, believe that this crime cannot be stopped unless governments, law enforcement, industry and civil society work together. Recognising the diverse and important initiatives that are already helping to tackle this abuse worldwide, and the individual focus and reach of our organisations, we have today committed to:

Global action to identify and protect victims

- Provide services to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and their families, working with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 Work with countr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evelop, support and promote a child protection strategy that ensures the protection and care of victims is paramount in investigations and which sets out good practice in the treatment of those victims;
- Seek justice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nline,

including by calling for the criminalisation of the possessio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of child sexual abuse imagery and the grooming of children online for the purposes of abuse and exploitation;

- Challenge and assist governments to develop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ing to online child abuse and exploitation that protect children and offer effective recovery and reintegration strategies for child victims and their families.

Global action to remove child abuse material from the internet

- Work with Government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global technology companies to support the verification of child abuse imagery, enable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these images and ensure their removal, and facilitate, where appropriate, the sharing of images between relevant parties.

Strengthened co-operation across the world to track down perpetrators

- Cooperate with and/or support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ir work to identify victims and perpetrators of child sexual abuse, by ensuring effective mechanisms and processes for reporting this abuse, in all its manifestations,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Build global capacity to tackle child sexual exploitation online

-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cluding by providing advice and support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about keeping safe online;
- Provide technical expertise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d-based, effective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line, with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 tracking of progress;
- Conduct action orientated research into the perpetrators of online abuse, the ways in which children are victimised online, the factors that make individuals more vulnerable in order to prevent abuse and enhance professional responses to victims in terms of rescue, recovery and reintegration as well as investigation and disclosure;
- Actively share knowledge, technical expertise and good practice within and beyond the global community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enhance individual and collective capac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ECPAT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INHOP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Internet Watch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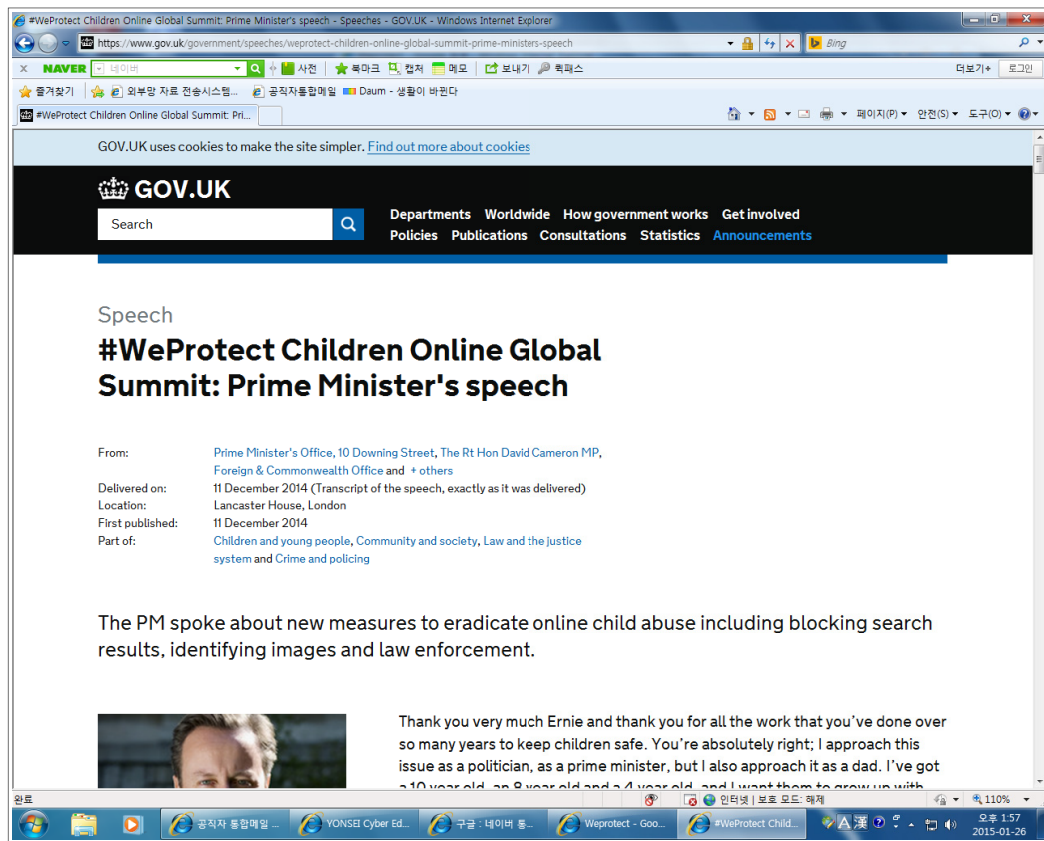
The Lucy Faithfull Foundation

The Marie Collins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Thorn: Digital Defenders of Children



출처: STATEMENT OF ACTION: WEPROTECT SUMMIT 10–11 DECEMBER 2014,
www.gov.uk/government/speeches/weprotect-children-online-global-summit-prime-ministers-speech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가차원의 이행선언문은 ‘인터넷 음란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라는 3개 소주제별 세션발표와 토론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DB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둘째, 각 국가별로 해시(hash)값 목록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음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제도적 신고장치를 마련해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해 나간다. 셋째,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소지, 배포, 제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 등 협력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체계화하여 범죄자 색출을 강화한다. 넷째,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사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향상,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함양 및 교육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역량을 구축한다. 인터넷기업차원의 이행선언문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델(Dell),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제거를 위해 해시값 등 기술체계 구축 & NGO 지원, 성학대 근절 캠페인의 동참을 약속하였다. 또한, 관련 민간단체 차원의 이행선언문에서는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등 10개 기관들이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근절에 대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함은 물론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강화에 나서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법 집행기관과 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주된 의미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근절이 국가나 민간단체, 관련 인터넷기업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하였다는 데 있다¹¹³⁾.

3) 추진절차

- (1) 제 1단계(2015년) :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 적발을 위한 보편적 분류 시스템 개발 및 2015년 여름까지 인터폴의 아동 납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가 공조한다. 또한 인터넷기업과 NGO가 공조하여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인터넷 상의 아동의

11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2. 12).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국가 이행선언에 합의’

성적 학대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발견 시 즉각 통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한다. 나아가 여행 또는 인터넷사용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제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위해 온라인상의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각국이 구성한다.

- (2) 제 2단계(2016년 ~ 2017년) :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DB 또는 국제 DB링크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원 확인 능력을 증대한다. 또한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공동표준에 의해 색출하여 해시값 목록을 만든 후 해시값을 공유하도록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색출, 제거한다. 나아가 각국은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의 소지, 배포,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을 마무리 한다.
- (3) 제 3단계(2017년 ~) : 온라인 CSE 정상의 액션 선언을 통해 구축된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표 VII-30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추진 절차

추진 단계	단기: 제 1단계 (2015~2016년)	중기: 제 2단계 (2016~2017년)	장기: 제 3단계 (2017년~)
주요 내용	•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 적발을 위한 보편적 분류 시스템 개발 • 2015년 여름까지 인터폴의 아동 납치 경보 시스템을 구축, 전 세계가 공조 • 인터넷기업과 NGO가 공조하여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인터넷 상의 아동의 성적 학대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 발견 시 즉각 통보 및 제거수단 구축 • 타 국가의 아동 성적착취범을 조사, 기소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제확립 • 온라인상의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구성	•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DB 또는 국제 DB링크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원 확인 능력 증대 •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공동표준에 의해 색출하여 해시값 목록을 만든 후 해시값을 공유하도록 기술적 인프라 구축하여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색출, 제거 • 각국은 아동의 성적 학대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의 소지, 배포,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을 마무리	• 온라인 CSE 정상의 액션 선언을 통해 구축된 온라인 상 아동의 성적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실현

4) 관련법 개정사항

온라인 CSE 정상의 액션 선언이후 그러한 국제공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내법 개정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각 부처에서 논의 후 추후 예산 반영

6) 기대효과

전 세계 인터넷 상에서 모든 아동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동영상)를 제거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피해자를 찾아내고 구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전 세계 법 집행 기관 간의 강화된 공조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I-3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상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 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예방 정책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								○					○	○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								○		○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								○		○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 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	○			○	○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								○		○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	○										○		○	○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								○			○	○	○	○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		○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 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홍보		이이틀 사이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								○	○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	○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						○				○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									○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성인전용 앱 설치 불가 시스템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설치 의무화		○									○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기술 기능 보강권고 및 지원			○								○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									○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용자 보호 정책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	○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개발	○									○	○	○	교육부

상위 하위 영역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교	지역	시설	중앙	
	방송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청소년 전문가 참여 및 심의기준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 상품화 영상물 심의 기준 정립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시별 내부 심의규제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등급제 기준개선 및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아이돌과 성인 아이돌의 다른 표준계 약서 기준 마련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이용 모바일기기의 이미지 및 영상전송 제한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연령 등 구체적 기준에 의거 아이돌 스타의 활동범위 기준 마련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윤리적 사회적 기업과 개발자 인센티브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심의 · 삭제 기능 강화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PC 및 스마트폰 판매자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									○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터링 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위 하위 영역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유통			소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교	지역사회	시설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							○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강화	○											○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								○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국가별 사업자의 공통의 모니터링 체계 및 기준정립	○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								○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	○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					○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이동유인방지법 제정	○											○		법무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유통		소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 교	지역 사회	시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집행 정책	감독	방송사 웹사이트 내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	○								○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	○								○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		○							○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								○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								○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	○	○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								○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합정수사의 법적 허용		○							○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	○								○	○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교	지역	시설	중앙	지방		
		앱 개발 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 발생시 기업책임 확대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제된 자율규제기구 설립 길거리 데이터를 앞선하는 영업금지법 도입 사이버 보도제도 도입															여성가족부	
							○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							○	○	○				여성가족부
				○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법무부
					○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급자 처벌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경찰청	
							○								○		법무부	
																		여성가족부

상위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생산			유통			소비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학교	지역	시설	중앙	
	정부 정책추진과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태 원천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실태 원천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 출연제한 등 규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211&cid=42140&categoryId=42140>.
- 간행물윤리위원회 (2014). **조직 및 주요업무**. http://www.kpec.or.kr/kpec/introduce/kpec_organ.do.
- 게임물관리위원회. (2014). **등급분류제도**. <http://www.grac.or.kr>.
- 곽병선 (2010). 중국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현황. **법학연구**, 40: 155-176.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 국민권익위원회 (2011).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김규원 (1997). 대중매체와 전자매체에 의한 성 상품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성 윤리: 제8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서울: 정문출판.
- 김민기. (2012). 광고 선정성 자율정화 인터넷신문 사회 책임 강화. **신문과방송**, 39-43.
- 김수아 (2010).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촌 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여성**, 15, 79-281.
- 김신정, 이정은, 김성희, 강경아 (2012). 성교육이 초등학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일개 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3), 389-403.
- 김윤정, 이창식 (2005). 성규범의 세대 차이와 청소년의 성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147.
- 김은경 (1997).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실 (1998). 대중문화와 성적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 **한국여성학**, 14(1), 41-76.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지선, 이근모, 김준 (2011). 여성 스포츠 유니폼 트렌드와 성 상품화 현상의 관계 탐색.

-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5(3), 23-34.
-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대검찰청. (2014). **2014 범죄분석**.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http://www.mcst.go.kr/web/s_policy/game/game01.jsp.
- 박병식 (2011). 음반·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토론회자료.
- 박충선, 정영숙 (2004). 대학생의 광고에 반영된 성상품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소비주의 성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3), 79-9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청소년 방송 모니터링 참여**. http://www.kocsc.or.kr/03_participation/participation_student_info.php.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불법·유해정보신고**. http://www.kocsc.or.kr/receipt/receipt.php?select_status=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인터넷등급서비스 세부등급기준**.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
- 방송통신위원회 (2014.1.2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2014.3.18.). **방통심의위, 민생침해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위험: 2013년 시정요구 10만건 넘어, 역대 최고**.
- 방송통신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2014). 2014년 상반기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UserTrand_View.php?ko_board=info_UserTrand&ba_id=7808&page=1.
-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서울: 청람.
- 백미성 (2014). **스마트폰 이용이 청소년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김은정 (2008).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화순, 백경진, 이채금, 임미영, 전남숙, 정채유 (2004).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시너지 (2014.05.20.). 파워블로거 초청세미나 자료.

- 신건권 (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 신선미, 정태연 (2005). 성 상품화에 대한 인식: 상품화의 유형, 대상자 및 평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03-617.
- 신선인 (2006).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1, 287-319.
- 성운숙 (20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3, 34-59.
- 성운숙 (2014).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실태와 대책. **진정희 의원실 국회토론회**, 7-37.
- 성운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운숙, 유홍식 (2010).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홈페이지. www.okmedia.or.kr/news.php?code=&mode=view&num=12500&page=에서 2014.07.21 인출.
- 심재웅, 조의진 (2009). 다매체다체널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성콘텐츠 이용과 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1), 79-118.
- 양성은, 조주영 (2005). 비행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에 대한 질적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45-57.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3.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
-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여성가족부 (2014).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youth03.html>.
- 여성가족부 (2014). DRAFT- NOT AN OFFICIAL 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4.9.29.). 「성매매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 민·관·학계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국민 93.1%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인식. 서울: 여성가족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2014). 등급분류 및 추천업무. <http://www.kmr.or.kr>.
- 오강탁, 이제은 (2012).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실제와 스마트폰 중독.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4), 21~43.
- 오영희 (2007).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보건복지포럼*, 124, 37-54.
- 위키피디아. 소년의 일탈적인 비행행위에 관한 소년경찰활동요강. (1960년 경찰청 차장 지침) <http://ja.wikipedia.org/wiki/%E8%A3%9C%E5%B0%8E>.
- 유상미 (2009).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사회학습 이론과 둔감화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41-71.
- 윤경우 (2014). 중국 국무원 기구 및 인사 개편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인문사회과학연구*, 42: 47-86.
- 윤해진, 문성철 (2010).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콘텐츠 소비: 지상파 장르선호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325-369.
- 윤형보, 왕보람, 박지윤 (2013).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 이용 특성과 앱 비즈니스 모델에의 시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31(3), 32-42.
- 이경희 (2005). 중국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이론*, 27: 216-242.
- 이선옥 (2003). 대중문화의 성상품화와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 85-379.
- 이수안 (2011). 대중문화에서 기호가치로서 몸 이미지의 소비양식: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11, 193-235.
- 이수정 (2013.5.16.). 아동성범죄,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정책포커스,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760710&pkgId=49500556>에서 2014년 8월 18일 인출.
- 이종성 (2006). *텔파이방법(연구방법21)*.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창호, 김경희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희순, 김태련 (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57-83.
- 조화 (2013).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별 · 연령별 이용현황에 대한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13, 35-51.
- 지성우, 송희숙 (2013).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재구조화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5(2): 245-284.
- 천예빈 (2013).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과 예방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 14(1), 125-139.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2. 19).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홍봉선, 남미애 (2010).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행정안전부(2012. 07. 31). 음란물 본 청소년 5% “성추행 · 성폭행 충동 느껴”.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2010).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http://www.apa.org/pi/women/programs/girls/report-full.pdf>.
- Armstrong, J. S.(2002). Principles of Forecasting: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 1-849.
- Attwood, F. Eds. (2009). *Mainstreaming Sex: The Sexualization of Western Culture*. I.B. Tauris.
- Bailey, R (2011). *Letting Children be Children: Report of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Commercialisation and Sexualisation of Childhood*. Department for Education, UK.
- Barr-Anderson, D. J., van den Berg, P., Neumark-Sztainer, D., & Story, M. (2008).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lder adolescents who have a television in their bedrooms. *Pediatrics*, 121(4), 718-724.

- BBC (2009). Taste, Standards and the BBC: Public attitudes to morality, values and behaviour in UK broadcasting, from http://www.bbc.co.uk/aboutthebbc/insidethebbc/howwework/reports/taste_standards2009.html.
- Beatbullying (2009). Beatbullying reveals extent of 'sexting' amongst British teenagers. http://archive.beatbullying.org/dox/media-centre/news-archive/August%2009/bb_reveals.html.
- Benaire M. (1988). Delphi and Delphi-like Approaches with Special Regard to Environmental Standard Setting.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3(2): 149-158.
- Blumenthal, R. (2014). College sexual assault: Bill of Rights. <http://www.blumenthal.senate.gov/bill-of-rights>.
- Brown, J., Steele, J. R. & Walsh-Childers, K. (2002). *Sexual teens, sexual media: Investigating media's influence on adolescents' moral judgements*. In D. Zillman, J. Brynat & A. C. Huston(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pp. 183~1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yron, T. (2008). *The Byron review: safer children in a digital world*. Consultant Clinical Psychologist.
- CEOP (2013). Threat Assessmen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 CEOP (2013). Annual Review 2012-2013 & Centre Plan 2013-2014.
- Collins, S. (2013). Number of people in UK diagnosed with eating disorders is increasing, King College, London. <http://www.kcl.ac.uk/ioppn/news/records/2013/May/Eating-disorders-increase.aspx>.
- Cyrus, C. J. (2003). Selling an image: girl groups of the 1960s. *Popular Music*, 22, 173-193. http://journals.cambridge.org/abstract_S0261143003003118.
- Denzin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str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2nd Ed.), New York: McGraw-Hi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9). The Impact of the Commercial World on Children's Wellbeing Report of an Independent Assessment

- DCSF-00669-2009, www.teachernet.gov.uk/publication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on parental internet controls.
- Dill, K., Brown, B., & Collins, M. (2008). Effects of exposure to sex-stereotyped video game characters on tolerance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402-1408.
- Durham, M. (1998). Dilemmas of desire: Representations of adolescent sexuality in two teen magazines. *Youth and Society*, 29, 369-389.
- Duschinsky, R. (2013). The emergence of sexualization as a social problem: 1981-2010. *Social Politics*, 20(1): 137-156.
-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In Featherstone, Hepworth, M., & Turner, B.S.(Ed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pp. 35-63).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 Fox Television Stations, Inc., No. 10-1293, U.S. (2012). <http://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osg/briefs/2011/01/01/2010-1293.mer.rep.pdf>.
- Fox, Z. (2014.08.27). The 15 Countries With the Highest Smartphone Penetration in mashable. <http://mashable.com/2013/08/27/global-smartphone-penetration>.
- Foward, W. (2010). *Children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CEOP)*,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ander of Her Majesty.
- Gillespie, A. A. (2011). Restricting access to the internet by sex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3): 165-186.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Heldman, C., & Cahill, M. (2007). The beast of beauty culture: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effects of self-objectification. A paper presented to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Las Vegas, March 8 - 10, 2007.

- HM Government (2010).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Cabinet Office
- Home Office (2009). *Together We Can End Violence Against Women: A Consultation Paper*. Home Office: London.
- Jensen, C. and Anderson, L.(1996). *Delphi In-depth*. Osborne/McGraw-Hill: 1-811.
- Kant, I. (2001). **실천이성비판**. 최전희 역. 서울: 박영사.
- Knauss, C., Paxton, S. J., & Alsaker, F. D. (2008).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of the Media Body Ideal and Perceived Pressure from Media. *Sex Roles*, 59, 633-643.
- Lamb, S., & Brown, L. M. (2007). *Packaging Girlhood: Rescuing Our Daughters from Marketers' Schem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Lamb, S. (2010). Feminist ideals for a healthy female adolescent sexuality: A critique, *Sex Roles*, 62, 294-306.
- Linstone, H. A. (1978). The Delphi technique. In J. Fowlers (Ed.), *Handbook of futures research*, 273-300.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Linstone, H. A. and Turoff, M.(ed),(1975).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621.
- Lowery, S. & De Fleur M. L. (1983) *Milestones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Media effects*, New York: Longman.
- Mathen, C. (2014). Crowdsourcing sexual objectification, *Laws*, 3, 529-552, doi:10.3390/laws3030529.
- McGuire, M. (2013). *Cyber crime: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Report 75 Chapter 3: Cyber-enabled crimes-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Home Office.
- Mooney, J. L. (2014).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risk of harm? A critical review of the law's response(s) to Online Child Sexual Grooming in England and Wales*. S. van der Hof et al. (eds.), *Minding Minors Wandering the Web*:

- Regulating Online Child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Series 24, DOI: 10.1007/978-94-6265-005-3_16, T.M.C. ASSER PRESS, The Hague, The Netherlands.
- Morris, E. (2014). Sexting: Felony or Flirting? <https://www.fosi.org/policy-research/sexting-felony-or-flirting>.
- Murry, J. 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Ofcom Guidance (2011). Protecting the Under-Eighteen: Observing the watershed on television and music videos.
- Ofcom (2013).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2).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Report on risks faced by children online and policies to protect them.
- Parent port (2014). <http://www.parentport.org.uk>.
- Peter, J., & Valkenburg, P. (2007). Adolescents'exposure to a sexualized media environment and their notions of women as sex objects. *Sex Roles*, 56, 381-395.
- Riggs, W.(1983). The Delphi Technique: An Experimental Evalu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3(1): 89-94.
- Ringrose, J. (2010). *Sluts, whores, fatslags and Playboy bunnies: Teen girls' negotiations of 'sexy'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t school*. In C. Jackson, C. Paechter and E. Renold (eds). *Girls and education 3.16: Continuing concerns, new agendas*, Basingstoke: Open University Press.
- Roberts, D., Foehr, U., & Rideout, V. (2005, March). *Generation M: Media in the lives of 8.18 year olds*. Menlo Park, CA: Kaiser Family Foundation.
- Ross A. Thompson, R. A. (2014). Social support and child protection: Lessons learned and learning. *Child Abuse & Neglect*, In press.

- <http://dx.doi.org/10.1016/j.chiabu.2014.06.011>.
- Rowe, G., and Wright, G. and Bolger, F.(1991). Delphi: A re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4): 235-251.
- Stald, G., Green, L., Barbovski, M., Haddon, L., Mascheroni, G., Ságvári, B., Scifo, B. & Tsaliki, L. (2014). Online on the mobile: Internet use on smartphones and associated risks among youth in Europe. www.eukidsonline.net.
- Szymanski, D. M., Moffitt, L. B., & Carr, E. R. (2011).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dvances to theory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1): 6-38.
- 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2014). Ad: Check, from <http://www.asa.org.uk/News-resources/School-parent-resources.aspx>.
- The BCAP. (2014). The UK Code of Broadcast Advertising.
- The British Retail Consortium/BRC (2011). Responsible Retailing: BRC Childrenswear Guidelines.
- 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UKCCIS (2011). Code of Practice of Parental controls.
- Tillmam, T. S. (1989). *A Delphi Study to Identify Fundamental Competency Areas for Certification Testing of Manufacturing Technologists and Entry-Level Manufacturing Engineers*. Purdue University, W. Lafayette, 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210.
- UN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om <http://www.unicef.org.uk/UNICEFs-Work/Our-mission/UN-Convention>.
- UNICEF (2001).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VIDEO RECORDINGS ACT 1984 'EXEMPTED VIDEO WORKS' REGULATIONS 2014.
- Ward, L. M. (2003). Understanding the role of entertainment media in the sexual socialization of American youth: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 Developmental Review, 23, 347–388.
- Webler, T., Levine, D., Rakel, H., & Renn, O. (1991). A Novel Approach to Reducing Uncertainty: The Group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4): 253–263.
- Wikipedia. <http://de.wikipedia.org/wiki/Jugendmedienschutz>.
- Woudenbergh, F.(1991). An Evaluation of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40(2): 131–150.
- Yuxiang, C., Donghua, Z. and chaggeng, L.(1990). Applications of the Delphi Method in Chin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8(4): 293–305.
- Zara, C. (2012). There Goes Honey Boo Boo: Reality TV A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September 20 2012 6:20 PM. <http://www.ibtimes.com/there-goes-honey-boo-boo-reality-tv-and-exploitation-children-794002>.

[독일 참고문헌]

- Carsten, O. K. (2014, February 16). Immer mehr Menschen sind nach Spielen und Internet süchtig. *WAZ*. <http://www.derwesten.de/panorama/immer-mehr-menschen-sind-nach-spielen-und-internet-suechtig-id9000497.html>.
- Jugendschutz. [http://jugendschutz.net/Jahresbericht 2004–2013](http://jugendschutz.net/Jahresbericht%202004-2013).
- Kjm, Kriterien für die Aufsicht im Rundfunk und in den Telemedien. <http://www.kjm-online.de/public/kjm>.
- Thomas Günter und Nadine Köhler (2006). Kinder und Jugendliche als sexual Objekte im Internet. *tv diskurs*, 35.
- ZEIT ONLINE (2011, September 26). 560.000 Menschen in Deutschland gelten als onlinesüchtig. <http://www.zeit.de/digital/internet/2011-09/internetsucht-untersuchung>.

[일본 참고문헌]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4). 平成25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仁藤夢乃 (2014). 女子高生の裏社会, 光文社新書.

日本内閣府 (2010). 少年非行に関する世論調査, 2010.11~12. <http://survey.gov-online.go.jp/h22/h22-shounenhikou/index.html>.

日本内閣府(2013). 児童の安全に関する世論調査, 2013.7. <http://www8.cao.go.jp/survey/h25/h25-kodomo/index.html>,

日本内閣府 (2013). 子供の安全に関する世論調査, 7. <http://www8.cao.go.jp/survey/h25/h25-kodomo/2-3.html>.

週刊プレイボーイ (2007. 11. 12.). 過激水着の「小さすぎた面積」, No.46.

香月真理子 (2009). 欲望のゆくえ 子どもを性の対象とする人たち.

最高裁 平成16年7月12日決定 刑集58巻5号333頁

共同通信(교도통신) 홈페이지. www.kyodo.co.jp.

朝日新聞(아사히신문) 홈페이지. www.asahi.com.

産経新聞(산케이신문) 홈페이지. www.sankei.com.

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www.yomiuri.co.jp.

毎日新聞(매일신문) 홈페이지. www.mainichi.jp.

U.S. Department of State (2014. 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스포니치(スポニチ)(2014. 3. 31.)

일본경찰청 (2013. 10. 10.). 丁少発 제143호.

<https://www.filii.net>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37/volunteer/shonen.html>

[중국 참고문헌]

CCTV (2013.11.18). 生活早参考: 微信色情调查. <http://tv.cntv.cn/video/C22431/ee640e17f4b74e01a596ec239f2c50d9>에서 2014.07.23 인출.

- 法律教育网 (2012). 中华人民共和国预防未成年人犯罪法 (2012年修正本). <http://www.chinalawedu.com/new/201212/wangying2012120516163346620268.shtml>에서 2014.07.21 인출.
- 人民网(2014).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已纳入国务院立法计划. <http://hb.people.com.cn/n/2014/0404/c192237-20926124.html>에서 2014.07.21 인출.
- 中国少先队事业发展中心(2011). 2011中国未成年人互联网及社交网络运用状况调查报告. <http://kid.qq.com/zt2012/weichengnian>에서 2014.07.24 인출.
- 中国青年网, 中国青少年网络协会, 中国传媒大学调查统计研究所联合(2012). 2012 未成年网民网络色情信息接触状况研究报告. http://www.bzcm.net/youxi/2012-06/19/content_840756.htm에서 2014.07.24 인출.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2012-10/26/content_2602276.htm에서 2014.07.21 인출.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2012-10/26/content_2602277.htm에서 2014.07.21 인출.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flfg/2007-12/29/content_847230.htm, http://www.gov.cn/fwxx/bw/gjgbdydszj/content_2263004.htm에서 2014.07.21 인출.

.....

부부

부 록

부록 1.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설문지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청소년의 성의식 실태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성의식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성윤숙 연구위원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①	2	3	4	5

☞ 나는 한 번도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X~~	②	3	4	5

〈보기2〉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10.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10-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1」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0-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또는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10-1.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만 응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1~2번

② 3~4번

③ 5~6번

☞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한 경험이 ‘몇 번인지’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촬영한 적이 3~4번 있으므로 ②번 응답합니다.

스마트시대 청소년의 생활

지금부터 아이돌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 여기서 **아이돌 스타**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가수(걸그룹, 보이그룹), 배우(영화, 드라마)를 말합니다.
☞ 여기서 **야한 영상물**이란? 아이돌 스타가 야한 옷(짧은 치마 등 노출의상)을 입거나 야한 춤동작·노래가사 또는 연기를 하는 방송, 공연, 뮤직비디오를 말합니다.

문 1.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와 콘텐츠를 다음 보기 중에서 많이 보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 매체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 ① TV
- ② 스마트폰
- ③ 인터넷/포털사이트
- ④ 신문
- ⑤ 잡지
- ⑥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등)
- ⑦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 콘텐츠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 ① 음악 쇼
- ② 광고
- ③ 영화
- ④ 드라마
- ⑤ 뮤직비디오
- ⑥ 예능 프로그램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 ②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 ③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 ④ 중1
- ⑤ 중2
- ⑥ 중3
- ⑦ 고1
- ⑧ 고2

⑨ 고3

문 3. 다음은 아이돌 스타를 본 후,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즘 아이돌 스타의 영상물이 야한 옷(짧은 치마 등 노출의상)이나 춤동작을 해서 성적으로 점점 더 자극을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이 재미있다.	1	2	3	4	5
3)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보면 불쾌하다.	1	2	3	4	5
4)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은 노출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7)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1	2	3	4	5
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도 성적으로 자극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성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열려있거나 자유로워졌다.	1	2	3	4	5
1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친구들이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열려있거나 자유롭게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11)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1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로부터 받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될 때가 있다.	1	2	3	4	5
1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15)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모방해서 동영상 만들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16)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1	2	3	4	5
17)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의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	2	3	4	5

문 4. 다음은 아이돌 스타를 본 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께서는(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5. 다음은 성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2)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1	2	3	4	5
3)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1	2	3	4	5
4) 결혼 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1	2	3	4	5
5)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1	2	3	4	5
6) 돈을 받고 성을 팔아서는 안 된다.	1	2	3	4	5
7) 음란채팅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8) 친구들과 성인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1	2	3	4	5
9) 솔직히 돈을 벌고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성인물을 올리고 싶다.	1	2	3	4	5
10)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연애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다음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 6.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 [REDACTED]

② 이용하지 않는다

→ [REDACTED]

문 7.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③ 2시간~3시간 미만
- ④ 3시간~4시간 미만
- ⑤ 4시간~5시간 미만
- ⑥ 5시간~6시간 미만
- ⑦ 6시간~7시간 미만
- ⑧ 7시간~8시간 미만
- ⑨ 8시간 이상

문 8. 다음 중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 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②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등)
- ③ 블로그, 미니홈피
- ④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 ⑤ 이메일
- ⑥ 모바일 인터넷전화(textplus, 보이스톡 등)
- ⑦ 랜덤 채팅(똥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
- ⑧ 화상 채팅(아자르, 스카이프 등)
- ⑨ 모바일 게임
- ⑩ 영상 스트리밍(유튜브 등)
- ⑪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
- ⑫ 모바일 쇼핑
- ⑬ P2P(토렌트 등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 ⑭ 웹하드(파일노리 등)
- ⑮ 포털 사이트
- ⑯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여기서 성인물이란?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성행위 혹은 성적정보가 담긴 매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물이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적 관념에 반하는 유해매체물을 말합니다.

문 9.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를 모두 **○**표시해주시시오(중복응답가능).
접촉한 경험이 없다면, ‘⑰ 이용한 적 없음’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②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등)
- ③ 블로그, 미니홈피
- ④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 ⑤ 이메일
- ⑥ 모바일 인터넷전화(textplus, 보이스톡 등)
- ⑦ 랜덤 채팅(돛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
- ⑧ 화상 채팅(아자르, 스카이프 등)
- ⑨ 모바일 게임
- ⑩ 영상 스트리밍(유튜브 등)
- ⑪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
- ⑫ 모바일 쇼핑
- ⑬ P2P(토렌트 등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 ⑭ 웹하드(파일노리 등)
- ⑮ 포털 사이트
- ⑯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⑰ 이용한 적 없음

문 10.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 

문 10-1.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 ① 1~2번
- ② 3~4번
- ③ 5~6번
- ④ 7~8번
- ⑤ 9~10번
- ⑥ 11번 이상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0-2.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린 경로를 모두 ○표시하십시오(중복응답가능).

- 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②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등)
- ③ 블로그, 미니홈피
- ④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 ⑤ 이메일
- ⑥ 모바일 인터넷전화(textplus, 보이스톡 등)
- ⑦ 랜덤 채팅(돛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
- ⑧ 화상 채팅(아자르, 스카이프 등)
- ⑨ 모바일 게임
- ⑩ 영상 스트리밍(유튜브 등)
- ⑪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
- ⑫ 모바일 쇼핑
- ⑬ P2P(토렌트 등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 ⑭ 웹하드(파일노리 등)
- ⑮ 포털 사이트
- ⑯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1.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REDACTED]
- ② 없다
→ [REDACTED]

문 11-1.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 ① 1~2번
- ② 3~4번
- ③ 5~6번
- ④ 7~8번
- ⑤ 9~10번
- ⑥ 11번 이상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1-2.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를 모두 ○표시하십시오(중복응답가능).

- 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②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등)
- ③ 블로그, 미니홈피
- ④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 ⑤ 이메일
- ⑥ 모바일 인터넷전화(textplus, 보이스톡 등)
- ⑦ 랜덤 채팅(돛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
- ⑧ 화상 채팅(아자르, 스카이프 등)
- ⑨ 모바일 게임
- ⑩ 영상 스트리밍(유튜브 등)
- ⑪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
- ⑫ 모바일 쇼핑
- ⑬ P2P(토렌트 등 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 ⑭ 웹하드(파일노리 등)
- ⑮ 포털 사이트
- ⑯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2.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 채팅)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REDACTED]
- ② 없다
→ [REDACTED]

문 12-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 채팅)를
해본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 ① 1~2번
- ② 3~4번
- ③ 5~6번
- ④ 7~8번
- ⑤ 9~10번
- ⑥ 11번 이상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2-2.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대화방에서 야한 대화(음란 채팅)를 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적 호기심
- ② 상대방이 채팅하자고 먼저 접근
- ③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 ④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 ⑤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을 하기 위해
- ⑥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을 모두 O 표시하십시오(중복응답가능).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⑬ 이용한 적 없음’에 O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① 즐톡
- ② 하이데어
- ③ 심톡
- ④ 빠꾸기
- ⑤ lkm
- ⑥ 랜덤채팅
- ⑦ 뚝단배
- ⑧ 우체통
- ⑨ 낯선 사람과의 대화
- ⑩ 가가라이브 채팅
- ⑪ 편톡
- ⑫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⑬ 이용한 적 없음 → XXXXXXXXXX

문 14. 랜덤 채팅(뚝단배, 즐톡,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XXXXXXXXXX
- ② 없다
→ XXXXXXXXXX

문 14-1. 랜덤채팅(돛단배, 졸푼, 하이데어 등)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 ① 1~2번
- ② 3~4번
- ③ 5~6번
- ④ 7~8번
- ⑤ 9~10번
- ⑥ 11번 이상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4-2. 랜덤채팅(돛단배, 졸푼, 하이데어 등)에서 유인 메시지를 받은 후, **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 ①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 시도함
- ② 메시지에 대한 답을 거부함
- ③ 채팅방을 나감
- ④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알려줌
- ⑤ 오프라인에서 만남
- ⑥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에 대한 대화 시도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5.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해당경험이 없다면, ‘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① 야한 대화(음란채팅)
- ②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
- ③ 몸매 피팅모델
- ④ 포옹을 파는 행위
- ⑤ 키스를 파는 행위
- ⑥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
- ⑦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판매
- ⑧ 자신의 신체 노출동영상을 판매
- ⑨ 자신이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파는 행위
- ⑩ 조건만남(원조교제, 애인대행)
- ⑪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㉔ **해당사항 없음**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시 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배경문항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0	1	2
2. 어머니	0	1	2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 보통 수준 —————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배경문항 6.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 ① 고졸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⑤ 박사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심층면접 설문지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심층면접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빌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성윤숙 연구위원

※ 다음은 아이돌 스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서 **아이돌 스타**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가수(걸그룹, 보이그룹), **배우**(영화, 드라마)를 말합니다.
· 여기서 **야한 영상물**이란? 아이돌 스타가 야한 옷(짧은 치마 등 노출의상)을 입거나 야한 춤동작·노래가사 또는 연기를 하는 방송, 공연, 뮤직비디오를 말합니다.

1.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예: TV, 스마트폰, 뮤직비디오, 인터넷, 광고, 잡지, 신문 등)
2.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3.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3-1.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처음 따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까?
5.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습니까?
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7.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8.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9.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서 **성인물**이란,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성행위** 혹은 **성적정보**가 담긴 매체물을 말합니다.
· 여기서 **음란물**이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적 관념에 반하는 **유해매체물**을 말합니다.

1.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이메일, 모바일 인터넷전화(스카이프, textplus, 보이스트 등), 랜덤채팅(즐룩, 하이데어), 화상채팅(아자르) 등)
3.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예: P2P(개인 간 거래)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인터넷 방송, 랜덤 채팅(즐룩, 하이데어 등), 게임 등)
4.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키스, 스킨십, 성관계 등)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4-1.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 4.2.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유하거나 올렸습니까?
(예: 메시지(SMS) 전송, 포털 사이트, 성인 사이트 접속,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랜덤채팅(즐톡, 하이데어 등), 인터넷 방송 등)
5.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5-1.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공유했습니까?
(예: 메시지(SMS) 전송, 포털 사이트, 성인 사이트 접속,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랜덤채팅(즐톡, 하이데어 등), 인터넷 방송 등)
6.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6-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6-2.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고 난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 음란채팅,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 몸매 피팅모델, 포옹이나 키스를 파는 행위,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판매, 자신의 신체 노출동영상을 판매, 자신이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판매, 조건만남 등)
8.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9.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10.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행위, 키스, 포옹 장면 등)
11.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12. 좋아하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이름 등 구체적으로)
13. 즐겨보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이름 등 구체적으로)
14.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다음은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이용하는 랜덤채팅 어플은 무엇입니까?
(예: 즐톡, 하이데어, 심톡, 빠꾸기, 1km, 랜덤채팅, 돛단배, 우체통, 낯선 사람과의 대화 등)
2.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3.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4.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 4-1.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4-2.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5.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 5-1.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6.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6-1.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 음란채팅, 사이버머니를 받는 음란채팅, 몸매 피팅모델, 포옹이나 키스를 파는 행위, 손이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판매, 자신의 신체 노출동영상을 판매, 자신이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판매, 조건만남 등)
7.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8.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9.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0.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0-1.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11.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는 어떠합니까?
12.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예: 모텔, 자동차, 상대방의 집 등)
13. 조건만남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14.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7. 조건만남을 하게 된 후,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8.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9.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0.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랜덤채팅 이용금지, 성인 및 본인확인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1. 조건만남을 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부정적)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은?
2. 연령은?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5.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7.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부록 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1차 조사 설문지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구과제인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는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정책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을 위해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지를 통하여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폭 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1차 조사: 개방형 질문/ 2차 조사: 선택형 질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4일(화)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소정의 사례비지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성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주 민 번 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은행)				

※ 본 연구에서는 성 상품화는 몸이나 다양한 성적 이미지를 인간의 성적욕망에 부합하는 일종의 제품으로 설계 및 생산하여 TV·케이블TV의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촉발시킴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청소년 성 상품화는 청소년을 이용한 성 상품화이며, 성 상품화 유형으로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물, 신체노출 사진 및 동영상 판매, 사용한 속옷 판매, 키스 알바 등 애인대행, 성매매 등이며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제외함.

☞ 여기서 **아이돌 스타**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가수(걸그룹, 보이그룹), 배우(영화, 드라마)를 말합니다.
☞ 여기서 **야한 영상물**이란? 아이돌 스타가 야한 옷짤은 치마 등 노출의상을 입거나 야한 춤동작·노래가 사 또는 연기를 하는 방송, 공연, 유적비디오를 말합니다.

【질문1】 청소년 성 상품화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청소년 성 상품화를 둘러싼 환경진단(사회·문화적 특성, 변화 등)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회·문화적 환경진단	향후 전망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		

【질문3】 대중매체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와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문제점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질문4】 기존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대책의 문제점과 현재 청소년유해환경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대책의 개선점이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개선점 및 향후 정책방향
청소년 성 상품화 전반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질문5】 앞서 기술하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목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비전	○ ○
목표	1. 2. 3.

【질문6】 향후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TV·케이블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질문7】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유형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청소년 성 상품화 규제정책의 효율화 방안
TV·케이블 TV를 통한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성 상품화		

【질문8】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질문	의견
최근들어 청소년 성 상품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상품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공연과 성 상품화의 경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상품화를 조정하는 주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의견
성 상품화에 스마트폰이 미치는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스타의 야한 영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자(앱관리하는)가 인터넷성매매 방지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페이스북과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 상품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성매매 감시, 인터넷성매매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조사 설문지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
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의 1차,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의견조사에는 1차 조사에서 취합·정리된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하여 중요도를 고려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10월 26일(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귀한 의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응답 기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소정의 사례비지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성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주 민 번 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은행)				

□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동의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번호를 모두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질문 1]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	①	②	③	④	⑤
(2)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 인권 및 성적 결정권 보호	①	②	③	④	⑤
(3) 미디어로부터의 건전한 문화적 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4)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성 상품화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①	②	③	④	⑤
※ 우선순위 번호 : / / / / / /					
※ 기타의견					

[질문 2]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청소년 성 상품화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부모 대상의 올바른 성 윤리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미디어의 청소년 성 상품화 산업에 대한 심의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돌 스타 활동에 관한 연예기획사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성 상품화에 반하는 다양한 대안적 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미디어 선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우선순위 번호 : / / / / / /					
※ 기타의견					

[질문 3]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설정에 대한 ‘가안’ 을 제시하오니 검토하신 후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청소년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영역에 대한 ‘가안’	
상위영역	하위영역
① 예방정책	① 교육
	② 보호
	③ 단속
	④ 홍보
② 집행정책	① 단속
	② 처벌

[질문3-1] 상위 ‘가안’ 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해당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질문 3-2] 위의 정책영역 구분 중 바뀌어야 할 명칭이나 더욱 적절한 명칭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기존 영역 명칭		수정 영역 명칭	
예방	교육	⇒	
	보호		
	단속		
	홍보		
집행	단속	⇒	
	처벌		

[질문 3-3]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정책영역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상위영역	하위영역

[질문 3-4] 정책영역 구분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4]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중요도를 ☒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번호를 모두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영역	정책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교육	(1)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성의식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건전한 성문화와 소비문화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성에 대한 주체성 강화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여관, 모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관련기업 의식강화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5) 영유아시설, 초·중·고교 등 교사에 대한 성 상품화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초·중·고교 성교육 의무화 제도마련	①	②	③	④	⑤
	(7) 연2회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가피해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대상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 교육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돌 스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①	②	③	④	⑤
	(10) 연예 기획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판의식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예방 						

	(3)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요청	①	②	③	④	⑤	
	(4)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신고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6) 매체별, 분야별 집중 모니터링 사업추진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돌스타 선정적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아이돌스타의 성 상품화 지속적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9) 방송사 웹사이트 아이돌스타의 선정적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 규제	①	②	③	④	⑤	
	(10) 이동유인방지법 제정	①	②	③	④	⑤	
	(11) 성 상품화 영상, 이미지 등 등급기준에 맞춘 배포지침 마련	①	②	③	④	⑤	
	(12) 스마트폰 필터링을 통한 불법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13) 사이트와 앱 관리자의 성인인증 절차 강화	①	②	③	④	⑤	
	(14) 성인전용 앱 유통의 규제 및 필터링 강화	①	②	③	④	⑤	
	홍보	(1) 사회적 성 상품화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성 상품화 반대 대국민 캠페인 실시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SMART(Secret, Meet, Accept, Remember, Tell) 캠페인		①	②	③	④	⑤	
(4)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성매매 신고제도 간소화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위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번호를 모두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 / / / / / / / / / / / / /
보호	/ / / / / / / / / / / / / /
단속	/ / / / / / / / / / / / / /
홍보	/ / / / / /

영역		정책과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집행	단속	(1)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 및 규제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조건만남, 속옷유통,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폐쇄 및 단속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멀티미디어 설치 사업자 자율규제협회 설립	①	②	③	④	⑤
		(4)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의 심의기준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①	②	③	④	⑤
		(6) 음란채팅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처벌	(7) 시민감시단체 구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사이버 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으로 구성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9) 앱 개발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화 및 문제발생시 기업책임 확대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 성범죄 전담반 설치	①	②	③	④	⑤
	(1) 위반업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자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 방송위주의 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위반 연예기획사, 아이돌스타출연제한 등 규제	①	②	③	④	⑤
	(5) 유해 앱으로 얻은 수익 몰수 및 형사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행 원칙화(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성매매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불이행시 처벌	①	②	③	④	⑤
	(8) 본인인증 의무의 미이행업체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중지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위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예방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u>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번호를 모두 순서대로</u>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처벌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실태 조사

심층면접 결과

<표 I-1>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질문: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1. 할머니 계세요. 엄마, 여동생이요. 아버지는 이혼하셨는데 따로 만나요. Q. 아빠는 재혼하셨어? 그냥 애인만. Q. 아빠는 왜 만나? 아빠가 만나자고 해서. Q. 용돈도 주고 그래? 네. 같이 밥 먹고. Q. 엄마랑 아빠랑은 안 만나? 네 안 만나요.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연락해요. Q. 엄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없으셔? 애인은 있는데 재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2.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Q.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엄마는 저 5살 때 아빠랑 이혼했어요. Q. 엄마 안 만나? 엄마 가끔 만나요. 1년에 한두 번. Q. 엄마는 결혼하셨어? 엄마 재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Q. 만나는데 확실히 몰라? 엄마 재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Q. 엄마 만나서 뭐해? 밥 먹고 쇼핑하고 그래요. Q. 네가 만나자고해? 제가 만나자고 하면 엄마가(나와요). Q. 엄마가 먼저는 안 해? 네. Q.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키우신 거야? 네. 그래서 이혼한데 정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엄마 만나는 이유도 뭐 사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Q. 엄마는 잘해줘? 네.

3. 아빠요. Q. 왜 다른 사람은 없어?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어요. Q. 너는 왜 아빠랑 살아? 엄마 쪽에 남자가 있으니까. 지금 애기도 가져서. 애기도 3명씩이나 있어요. 아빠가 저 거기서 가족을까봐 데리고 왔고 왔다고. Q. 그 전에 알았어? 엄마가 그런 거? 아빠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참다참다 못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넷째인데 위에 다 죽었다 말이에요. 첫째는 그냥 첫째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였는데 죽었고, 제가 넷째예요. Q. 어떻게? 태어나다가. 낙태하다가. 태어나다가 죽었고, 저 태어났어요. 또 애가 한명 더 있었대요. 엄마 배 속에. 그런데 아빠랑 동의하지도 않고 그 남자랑 가서 낙태를 시킨 거예요. 그 애를 그래서 아빠가 참다못해서 크게 싸우고 이혼해서 그 남자랑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지금 세 명이에요. Q. 너는 엄마 만나? 안 만나죠. Q.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만난 적은 있죠. 아빠랑 이혼하고 근데 저는 엄마 쪽에서 살고 싶은데. Q. 왜? 돈 때문이에요. 아빠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돈은 나라에서 주긴 하는데 여기저기 주면 돈이 없어요. 엄마 쪽은 그래도 아저씨도 돈 잘 벌고 엄마도 일 하니까. 돈 잘 벌어서 엄마 쪽에 살고 싶어요. Q. 아빠가 가지말래? 아빠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미안하죠. Q. 엄마한테 용돈은 못 받아? 이제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Q. 연락처 몰라? 네. 연락처 있었는데 이제 기억했다 싶어서 그 연락처를 찢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Q.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지금은 딱히 보고 싶지 않아요.

12. 엄마랑 동생. Q. 아버지는? 기숙사. Q. 기숙사에는 왜 계셔? 화사가 이전이라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어서. Q.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거야? 네.

13. 엄마랑 새아빠랑. 저희 오빠는 일하러 갔어요. Q.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 거야? 언제? 중1, 중2. Q. 엄마, 아빠 이혼해서 방황한거야? 네. 엄마한테 나 죽는다는 소리도 많았고. Q.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해서? 아니요. 재혼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싫어했어요. 새아빠를. Q. 네가 싫어하는 거야? 제가 새아빠를 진짜 싫어해요. Q. 지금도? 지금도 싫어해요. Q. 원래 아빠는 어디 계셔? 원래 아빠는 전주에 계세요. Q. 지금도 만나? 아니요. 연락도 안 해요. 이제 다 재혼했고, 각자 삶을 사니까. Q. 지금 아빠한테 적응하고 사는 거야? 그냥 무시하죠. Q. (새)아빠는 애 있어? 없어요. Q. 그럼 둘 다 엄마 자식이야? 네.

14. 아빠, 할머니, 동생이랑 저. Q. 엄마는? 안 계세요. Q. 이혼하셨어요? 네. Q. 할머니가 주로 해주셔. 밥 같은 거? 제가 할 때도 있고. Q. 엄마는 본 적 없어? 여섯 살인가, 다섯 살에 이혼하고 못 봤어요. Q. 엄마랑 연락 안 돼? 네.

15. 엄마요. Q.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Q. 형제, 자매도 없어? 네. Q.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어? 저 고1 때요. Q. 엄마는 재혼 안 하신대? 네.

16. 아빠는 서울에 있고, 엄마, 동생. Q.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 네. 이혼하셨어요. Q.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아니요. 엄마는 목포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Q. 아빠도 연락하고, 엄마도 연락해? 네. Q. 용돈은 두 분한테 다 받아? 네.

17.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Q. 엄마, 아빠는? 새엄마랑 아빠랑. Q. 같이 안살아? 같이 살았는데 친구랑 문자로 새엄마 욕하다가 걸려서 쫓겨났어요. Q. 그래서 할머니네서 사는 거야? 원래 할머니네서 살았는데 새엄마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쫓겨나서 다시 할머니랑 살아요. Q. 원래 엄마는? 몰라요. 누군지. Q. 언제부터 없었어? 엄마 얼굴을 사진보고 처음 알았어요. Q. 그게 언제였어? 중학교 때쯤. Q. 그전에는 엄마가 없었어? 네. Q. 누가 키웠어? 작은 엄마가 새엄마 오기 전까지. 새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을 거예요. Q. 새엄마가 얼마나 널 키운 거야? 4년, 5년. Q. 새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네. 받아쓰기 같은 거 안 풀면 때리고 그랬어요. Q. 엄마면 당연한거잖아. 난 그게 싫었어요. 맞는다는 게.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니까. 집청소를 저한테 시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애가 어떻게 청소기를 돌려요.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아무 떨고, 뒤에서는 막말하고.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엄마한테 그 문자를 걸린 거예요. Q.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너희는 따로 사는 거야? 네. Q. 돈은 누가 주는 거야? 할머니요. Q. 할머니는 돈이 어디 있어? 식당 운영하세요. 할아버지랑 같이. Q.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도와드려? 어릴 때는 도와드렸는데. Q. 학교 중도포기 할 때는 누구하고 상담한거야? 할머니랑 아빠. Q. 아빠는 너한테 용돈 안줘? 안줘요. 가끔 옷 사라고 10만원. Q. 할머니가 너희를 키우는 거야? 옷 사는 거는 아빠가 옷 사라고 10만원 주는데 솔직히 10만원으로 뭘 옷을 사요. 알바 한 걸로 산 옷도 몇 개 있어요. 옷 같은 거는 알아서 사요. 제가. Q. 할머니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야? 네. 저희 집 할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단독주택. Q. 경제적으로 어려운건 아니냐? 그런데 식당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30년 동안 멀쩡했는데 요즘은 카페다 외식이 다 이런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단골손님은 줄었고 물가는 오르는데 가게는 그대로니까. 손님은 점점 줄고 그러니까. Q. 할머니 안 도와드릴까? 문신 있는데 어떻게 가서 해요. 할머니한테 걸리면 안 되죠. 문신 있는 거 언니밖에 몰라요. Q. 지금 웃은 이렇게 입었잖아. 할머니 몰라? 집 들어 갈 때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면 눈치 못 채요.

18. 엄마, 새아빠. 새아빠가 친아빠처럼 완전 잘해줘서. 완전 친아빠같이 배고프다고 불러뽕사오고. Q. 너 혼자야? 오빠도 같이 살았는데 오빠랑 아빠랑 너무 많이 싸워서 오빠 나가고. Q. 새아빠가 너만 예뻐해줘? 네. 오빠는 싫어해요. 남자라고. 저만 예뻐해요. Q. 원래 엄마가 이혼하신거야? 네. Q. 언제 아빠가 새로 들어왔어? 5살 때. 엄청 오래돼서 친아빠 같아요. Q. 그런데 왜 집을 나갔어? 그때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Q. 너 조건만남 하는 거 아빠도 알아? 알긴 하는데 서로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집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Q. 엄마는 어때? 엄마는 말 안 해요. 제가 표정을 딱 싫게 하면 말 안 해요. Q. 지금 엄마, 아빠랑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 네. Q. 또 가출 할 거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19.

20 아버지. Q. 엄마는? 이혼하셔가지고. Q. 엄마는 만난 적 있어? 네. 자주 만나요. 한 달에 두 번 꼴. Q. 엄마는 결혼 안 하셨어? 네. 재혼 안 하셨어요. Q. 아버지도 안 하셨고? 네. Q. 부모님이 언제 이혼하셨어? 중학교 2학년 때. Q. 너는 왜 아빠랑 같이 살아? 엄마가 아빠한테 가래요. Q. 엄마가 용돈도 주셔? 네. 줄 때도 있어요. 제가 받지는 않죠. Q. 부모님의 이혼이 영향이 커? 몇 개월 전부터 느꼈어요.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가족끼리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부럽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돈돈돈하면서 싸웠어요. 새벽에 눈 뜨면 밖에서 막 돈돈돈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잠이 안와요. 그럼 계속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Q. 너 혼자야? 누나 둘 있었어요. 누나들은 적응이 됐는지 자요. Q. 지금은 아빠랑 너하고 살고? 네. 누나들은 엄마랑 살아요. 누나들은 이제 성인이나. 큰 누나가 돈 벌어오고. Q.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네. 싸우더라도 다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Q. 그럼 누가 안 하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요.

21. 엄마, 누나 둘이랑 살아요. 아빠랑 이혼했어요. Q. 아빠는 안 만나? 아빠 없어요. Q. 언제 이혼했어? 꽤 됐어요. 고등학교 때. Q.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가족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열 받아요. Q. 돈은 엄마한테 줬어? 네. Q. 엄마는 좋아해? 좋아했죠.

22. 아빠, 엄마, 오빠요.

23. 엄마, 아빠, 오빠요.

24. 엄마, 아빠, 누나.

25. 누나랑 부모님이요.

26. 아빠요. Q. 엄마는? 엄마랑은 이혼했고. Q. 언제? 제가 7살 때요. Q. 엄마랑 연락해? 엄마랑 연락하고 만나기도 해요. Q. 지금도? 네. Q. 엄마는 결혼하셨어? 엄마는 재혼 했는데 아빠는 아직. Q. 아빠가 지금까지 혼자 키우신 거야? 네. 할머니 계셨는데 지금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Q. 밥은 누가해? 제가 해요. 제가. Q. 아빠는 뭐해? 아빠는 반찬. Q. 불편하지 않아? 7살부터 그래 와서 청소나 빨래나 설거지 뭐 그런 것도 다 하고 불편한 거 없는데.

27. 아빠, 오빠요. Q. 엄마는? 안 계세요. Q. 왜? 돌아 가셨어요. Q. 언제 돌아 가셨어? 6학년 때. Q. 밥은 누가해? 아빠가. Q. 아빠는 재혼 안하셨어? 네. Q. 왜 안 하셨어? 여자 친구는 있어요. Q. 너도 여자 친구 만나봤어? 네. Q. 그런데 엄마가 되는 건 싫어? 엄마 닮았어요. 그런데 싫어요. Q. 왜? 막 낯설잖아요. Q. 아빠가 너희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거야? 그런 건 아닐걸요. 그때 아빠가 물어봤어요. 아빠 재혼해도 되냐고 하라고. 아빠 외로우면. 알겠다고. Q. 엄마 많이 생각나겠다. 아니요. Q. 왜? 엄마랑 한 게 없어요. 엄마는 맨날. 엄마 얼굴 자주 못 봤어요. 맨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Q. 엄마가 뭐하셨는데? 사빙. 신도불이에서 일 했어요. Q. 왜 돌아 가신거야? 안 알려줘요. 아빠가. Q. 돌아 가신 건 확실해? 네. Q. 엄마 장례식 때 안 갔어? 갔죠. Q. 지금도 가끔씩 가 엄마한테? 네. 한 달에 한번씩. Q. 왜? 모르겠어요. 아빠가 가재요. Q. 그래서 아빠랑 엄마한테 가? 낯팔당. Q. 엄마가 별로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은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별로.

28. 가족들 다. 누나, 저, 엄마, 아빠. Q. 엄마, 아빠는 재혼 같은 거 하신지 않았어? 재혼이 뭐예요? Q. 다시 결혼하는 거. (재혼) 아니에요.

29.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요. Q. 엄마, 아빠는 같이 안살아? 엄마, 아빠는 다른 동네에 천안이긴 한데 신방동이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일하느라고 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겨놔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엄마아빠한테 안 갈 거라고 여기서 살 거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게 된 거죠. Q. 엄마, 아빠 둘이 사셔? 네. Q. 그리고 너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손녀들을 더 예뻐하고 오나오나 하주니까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바로 잡아 주실 줄도 알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워낙 예뻐하셔서. Q. 넌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 익숙해서? 네. Q. 할머니는 너 밥해주려면 힘들지 않아? 제가 일찍 들어와서 해드릴 때도 있고. Q. 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주름살 하나씩 늘어가는 거 보니까 속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잖아요. 주변에 돌아다니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거나 버스에서 일어나 있는 거 보면 그런 거 절대 못 봐요. 무조건 도와주고 봐야 돼요. 저는. Q. 엄마, 아빠랑 안살거야 계속? 아직 생각해 본적 없어요. Q. 왜? 낯설지는 않는데. 친하긴 친한데. Q. 얘기 때부터 쪽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거야? 네. 얘기를 때부터. Q. 그럼 엄마아빠는 너 키우는 돈만 보내고? 어찌다가 오고? 네. 가끔씩 보러 오고. Q. 왜 그러신대? 일이 바빠서?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긴 있는데 또 일가면 저 혼자 있고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심심하기도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저 반겨줄 사람도 있고 그게 더 그런 것 같아요. Q. 잘해주셔? 네. Q. 어떻게 잘해주셔? 어이구 우리 손자 다녀왔냐고 그러면서 예뻐해 주세요.

30. 지금은 아빠랑 살아요. 엄마, 아빠 싸워서. Q. 이혼하셨어? 네. 한참 됐어요. 중학교 때 인가. Q. 아빠하고 너 밖에 없어? 오빠 두 명, 남동생 한 명. Q. 아빠가 다 키우시는 거야? 네. Q. 밥은 누가 해? 저는 기숙사라 신경을 안 쓰는데, 오빠들이 할 때도 있고, 아빠가 할 때도 있고. Q. 엄마랑 연락해? 네. 가끔씩 연락이 와요. 잘 있냐고.

<표 I-2> 가정형편

질문: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상

28. 괜찮아요 상 괜찮게 살면 '상' 이죠 '중' 은 조금 어렵게 살면 '중' 아닌가? Q. 용돈 얼마 받아? 다 달라요. Q. 대충, 저는 필요할 때나 줄때 받고 그래요. Q. 알바 같은 거 해? 하는데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해요. 이제 Q. 원래 무슨 알바 했어? 저 사방이요. Q. 얼마나 벌었어? 한 달에 7-80. Q. 지금은 왜 안 해? 엄마가 하지말래요. 힘들어하니까. Q. 엄마 가게에서 하면 안 돼? 그거 말고 아빠 회사에서 하라는데 저는 안하게요. Q. 누리 반에 왜왔어? 학교 맨날 지각하고 그래서. Q. 왜? 게임하다가? 아니요 잠을 너무 일찍 자서요. 어제도 10시에 잤는데 오늘도 9시에 일어났어요.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나요. 제가 스스로 깨어나기 전까지. Q. 잠이 그렇게 많아? 네. 엄마도 그냥 났어요. 안 일어나면. Q. 네가 혼자 알아서 온 거야? 네. Q.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중요한 약속 있을 때는 이상하게 일어나요. Q. 선생님이 하도 빠졌더니 누리반으로 가래? 누리반으로 가라는데 제가 4반이거든요. 다 안 간다니까 저도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간다고 했어요. Q. 왜? 다 가길래요. Q. 누리반오니까 어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학교도 일찍 끝나고요, 핸드폰도 안내도 되고 자유롭잖아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Q. 공부에 취미 없구나. 네. Q. 뒤에 취미 있어? 저는 다 없는 것 같아요. Q. 어떻게 해? 막막해요. Q.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요? 운동 잘 하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요. 게으름이 많아서. 귀찮아서 안 해요. 하면 좋아하는데.

□ 중

1. 중간.
2. 보통.
3. 중간. 매우 못살진 않은 것 같아요.
4. 보통.
5. 보통.
6. 보통.
7. 보통.
8. 보통.
9. 보통.
10. 보통.
11. 보통 이상.
14. 보통. Q. 그런데 용돈만 안 주시는 거야? 네. Q. 필요한 건 어떻게 해? 공부하는 건 주는데 용돈은 안 받아요. 아니면 알바하든지 해요.
16. 잘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17. 중.
18. 중.
19. 보통이요.
21. 중.
22. 보통보다 조금 높은.
23. 보통.
24. 중간. Q. 아르바이트 해요? 했었죠. Q. 어떤 거? 식당 서빙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Q. 지금은 안 해요? 네. 학교 다녀야죠. Q.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Q. 장래 희망이 뭐예요? 가수요. 25. 중이요.

27. 보통. Q. 아빠가 돈을 많이 버서? 모르겠어요. 용돈을 제대로 줘요. Q. 용돈은 얼마나 받아? 하루에 만원씩 받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줘요. Q. 오빠는 몇 살이야? 23이요. Q. 뭐해? 놀아요. 집에서. Q. 아무것도 안하고? 왜? 그냥 알바 같은 거. Q. 아빠가 밥도 다 해주고? 근데 저희는 밥 안 먹어요. 집에서. Q. 그럼? 나가서 먹을 때도 있고, 집에서 반찬 있으면. Q. 빨래는? 아빠요. Q. 너는 뭐해? 다 아빠가 해요. 집안일 다 아빠가 하던데. Q. 왜? 모르죠. 맨날 그래 왔으니까. 엄마 있을 때도 아빠가 다 했어요. Q. 넌 왜 아빠 안 도와줘? 도와줄 때도 있어요. 아빠 가끔 일찍 일 나갈 때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29.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보통정도. Q.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하셔? 할아버지는 농사지으시고 할머니는 청소부? 작년까지만 해도 신세계 청소부 하시다가 이제는 병원 청소부 하세요. 제가 알바하면서 작년까지 돈 벌었다가 방세에 보태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부 시작해서 알바 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안하고 있죠. Q. 월세도 내야 돼? 네. Q.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셔? 도와주시죠. 그런데 자기들도 방세 내고 그러기 바쁘다 보니까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보태주죠. Q. 지금도 할머니 일하셔? 네.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맨날 찢쩍쩍거리시면서 발일 나가지 말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안하면 누가하냐고 그러면서 나가요.

30. 중. Q.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빠가 잘 해주셔? 네. 엄마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줄 건 다 해주세요. Q. 같이 안 살지만 엄마도 너희에게 다 해주? 학비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가끔씩 와서 해주세요. Q. 엄마는 결혼 안 하셨어? 네. Q. 아빠도? 네. Q. 합치셨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 아빠의 일이니까.

□ 하

5. 매우 못살.
12. 못 사는 것 같아요.
13. 하. Q. 엄마, 아빠가 사장인데? 빚만 8억인가 그래요. 집도 자기들 빚내서 사고, 그리고 친아빠가 위자료도 안 주고. Q.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100만원씩이나 줘? 제가 다 졸라서 사주는 거죠. Q. 알바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이야? 아니요. 안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Q. 네가 필요할 때만 줘? 네. 수학여행 갈 때나, 애들끼리 바다에 갈 때나, 애들끼리 어디 놀러갈 때, 다른 때는 안 줘요. 제가 달라고 하면 주는 스타일이라서. Q. 네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잘해야 되죠. 엄마 술 마실 때 얘기 하면서 돈 좀 빼들리고, 집청소 하고.
15. 안 좋아요. 못산다.
26. '하' 인 것 같아요. 원래는 중간정도는 됐는데 아빠가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착해가지고,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아빠가 급한 거 돈 막을 데 있어서 돈 돌려 달라 그러면 한 번도 돌려 준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 다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형편이 좀 안 좋아요. Q. 그래서 네가 알바하는거야? 네. 휴대폰 매매 해가지고 그게 잘 될 때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요. Q. 한 달에 얼마정도 벌어? 평균 한 100만원.

□ 기타

20. 하루 벌어 하루 살 만큼. 힘들긴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 사는 거죠. 앞만 보고.

<표 I-3> 부모님 직업

질문: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1. 엄마가 백화점 매니저, 아빠도 직업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 쪽에.
2. 엄마는 화장품 같은 거 파는 것 같고요. 아빠는 중고차 판매.
3. 아버지는 다리 다쳐서 아직 일 안해요. 엄마는 몰라요.
12. 엄마는 반도체, 아빠는 파스 약 만드세요. Q. 그런데 왜 용돈을 많이 안주셔? 엄마가 돈이 없다고 그래요.
13. 네. 둘 다 사장이에요. 식당 Q. 각자 해? 여가 엄마 식당이면 다른 식당, 다른 식당, 아빠 식당. Q. 부자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쓰는 게 많으니까. Q. 뭘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한 달에 돈 달라하고, 옷 사달라고 하면 100만원 넘으니까. Q. 100만원이나 써? 그래서 제가 알바 하고. Q. 어떤 알바 해? 엄마 가게에서 알바 하고, 제가 안 입는 옷이 진짜 많아요. 그거 팔아요, 친구나 카페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0만원 벌어요.
14. 네.
15.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하신다고 들었어요.
16. 아빠 직업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마는 주부예요.
17. 아빠 직업 있는데 무슨 직업인지 몰라요. 새엄마는 주부예요. Q. 엄마, 아빠는 애기 못 낳았어? 새엄마 말로는 아빠 정자가 부족해서 못 낳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엄마가 담배를 피우. 어릴 때부터 퍼서 몸이 말이 아닌가 봐요.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임신 못하는 것 같아요. Q. 둘이 사는데 언니하고 너만 있네. 아빠는 너희들에게 신경 안 써? 신경 쓰긴 써요. 전화해서 사랑한다,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빠 별로 안 좋아해서. Q.

결국 엄마가 너희를 싫어하니까 내쫓은 거야? 네. Q.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싶어? 아니요. 불편해요. 그 집 자체가. Q. 거기는 잘 살아? 아니요. 이번에 이사했다는데. 원래 저희 집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인데 더 좁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더 좁으니까 못 살겠어요. 넓다가 좁은 데로 옮기니까 답답해요.

18. 네.

19.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어요.

20. 네. 아버지는 인테리어 하시다가 뽕소니 당하셔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 다니세요. 일은 하세요. 몇 개월 동안 못 견고 그랬어요. Q. 생활은 어떻게 했어? 제가 했죠.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밥 먹고 다 하죠. Q. 밥은 누가해? 밥은 집에서 해먹지 않아요. 귀찮아서. 라면 사먹고, 좀 굶다가 알바 가서 먹고.

21. 엄마는 옷가게, 아빠는 관심 없어요. 자가 알아서 잘 살겠죠.

23. 네. 두 분 다.

24. 네. 두 분이 가게하세요. 치킨집.

25. 네. 엄마는 뜨개질 그런 거 하시고, 아빠는 중장비 하세요.

26. 네. 운송업체하세요.

27. 연주. 피아노치고 색소폰 불고. Q. 어디서 연주하셔? 감성주점 그런데.

28. 엄마는 식당하시고, 아빠는 회사.

29.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 그거고, 엄마는 가게 슈퍼 그런 거해요.

30. 네. 두 분 다.

<표 I-4> 희망교육수준

질문: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십니까?

□ 고등학교 졸업

1. 고졸이면 돼요. Q. 왜?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갈 텐데 어중간해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고등학교 졸업.
9. 고졸.
10. 고졸.
11. 고졸.
13.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대학등록금까지 하면 빛이 더 더해지니까 싫어요. Q. 대학교 가기 싫어? 가고는 싶는데 가기 싫어요. Q. 왜? 대학등록금도 그렇고, 가도 안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고생해도 똑같은

까. Q. 너는 뭐하고 싶어? 저는 네일아트 하는 사람이나 마용하는 사람, 화장이나 헤어 아니면 파riba게트 하는 거. Q. 그거 하려면 배워야 하잖아. 자격증 해 놓은 거 있어? 제과 제빵 했는데 그만뒀어요. 힘들어요. 하리 통증이 너무 심해요. Q. 지금 다니는 데는 상업계야, 일반계야? 실업계. Q. 거기까지 다니고 안 다니려고?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Q. 실업계면 취직되는 거 아니야? 취직도 되고, 대학도 갈 수 있어요. Q. 너는 뭐하려고 실업계를 갔어? 그쪽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14. 중학교 검정고시를 불고, 그다음은 고등학교 거. 일단은 네일아트부터 따고 그러고 천천히 대학 들어갈래요. Q. 왜 학교를 중학교까지 다니게 됐어? 검정고시를 치는 게 더 빠른 것 같았어요. Q. 그때가 언제야? 중학교 2학년 때. Q. 자퇴한 거야? 네. 그런데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Q. 그동안 뭐했어? 알바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Q. 부모님이 검정고시 한다고 학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셔? 제가 공부하겠다고 안 보내주지는 않죠.

15. 고졸하고 미용 자격증. Q. 지금 코스는 어디까지 했어? 파마요. Q. 얼마나 더 해야 돼? 아직 멀었어요. 검정고시를 따고 미용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실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Q. 대학은 안 가고 싶어? 네. 대학을 가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미용 디자이너는 고등학교까지 따도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Q. 공부 많이 했어?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Q. 여기서도 가르쳐줘? 아니요. 과외 식으로 오긴 하는데 전 과목은 아니예요. 두 과목 선택할 수 있어요. Q. 여기는 여기에 입주를 해야지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어야 돼요. 너무 멀면 안 돼요. Q. 여기 몇 명 정도 있어? 15명. Q. 그 친구들 중에 조건 한 친구를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잘 안 해요. 다 꺼려해요.

17. 고졸. 나중에 생각이 바뀌겠지만 지금은.

19. 고등학교까지요.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Q. 용돈 받아쓰는 거야? 네. 1년 뒤에는 제가 알바 해야 돼요. 엄마가 고2때부터 알아서 먹고 살래요. Q. 왜 그러서?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엄마가 고2때부터 알아서 돈 벌어서 내가 쓸 돈 쓰고 아끼면서 살래요. Q. 꿈이 뭐야? 꿈 없어요. 아직. Q. 하고 싶은 거는 뭐야? 아무 것도 없어요. Q. 여자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알아서 되겠죠. 나중에. Q. 네가 제일 좋았을 때는 언제야? 초등학교 때. 그때는 학교에 나가는 말든 선생님도 뭐라 안하고. Q. 지금은 공부하는 게 싫은 거야? 공부하는 건 그냥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 게 귀찮고 싫어요. Q. 집에서 얼마나 걸려? 통학차 타고 오면 40분, 50분 걸려요.

20. 고등학교 졸업만 하려고요. Q. 뭐 하고 싶어?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죠. Q. 어떻게 하려고?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리는 뭘 해야죠. 일단 돈이 우선이니까 돈 벌어야죠.

21. 고졸. Q. 고졸 끝나고 뭐 할 거야? 몰라요. 일할 거예요. 사업. 차근차근하면서 조용히 살 거예요. Q. 지금 알바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안 해요. 취미로 배달하고 있어요. 치킨.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Q. 배달해서 많이 버는 데 알바는 왜 해? 그냥. 심심해서.

22. 지금도 학교는 다니기 싫은데, 엄마, 아빠는 대학교까지 보낸다고 하셨어요. Q. 학생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네. Q. 졸업해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메이크업이랑 자격증 다 있는데 지금도 피부 관리 자격증 준비 중인데 메이크업도 가고 싶기는 해요. 제가 다른 사람 비위를 잘 못 맞춰서 좀 성격이 다혈질도 있고, 짜증나거나 화가 나면 표정에서 잘 감추지 못해서, 서비스업은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메이크업도 틈새가 심하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23. 꿈이 없어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만 받고 싶어요. Q.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26. 대학교도 가고 싶긴 한데 제가 공부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누리반 요리도 배우고 그러니까 요리에 좀 흥미가 있거든요. 제가 요리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졸업하기 전하고 졸업하고 나서까지 자격증 몇 개 따고, 그런 쪽(요리)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Q. 꿈은 뭐야? 꿈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남들 제대하기 전에 돈 좀 벌다가 군대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돈 계속 벌다가 모이니까 제가 가게 차려서 운영하고 체인점 내주고 그런

거. 음식가게. Q. 아이돌 스타의 아한거 보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애들도 노출이나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네. 뭐 페이스북도 일찍 하면 초등학교들도 하니까 중학생들도 접할 수 있고. Q.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안 볼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보여 지잖아. 공유를 안 하려고 해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태그 같은 거 하면서 성인물들이 퍼지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차라리 없앨거라면 아예 사이트부터 없애고, 19금 본인인증 같은 거 더 강화시키고 휴대폰 자기 명의로 된 거 인증하고. Q. 매일 음란물을 하나씩 본다고 치면 이 영향이 많이 가지 않아? 네. 벌써부터 초등학교부터 뽀뽀하고 그러는데, 중학생들도 벌써 성적으로 그러거 하는 애들도 많고.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Q. 1차적으로 아이돌 스타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이돌 스타가 노출 같은 거 하고 화보집 같은 거 하니까 아이돌 스타 때문에도 있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페이스북이 더 크죠. 랜덤채팅이나 화상채팅 같은 거.

□ 전문대 졸업

2. 전문대요. Q. 너는 꿈이? 모델이요.

7. 전문대 졸업.

8. 전문대 졸업.

□ 4년제 대학교 졸업

3. 4년제. Q. 넌 꿈이 뭐야? 작은 아빠 일. 자동차. 딱히 하고 싶진 않은데 일 할 데가 없으면 갈 거예요. Q. 꼭 거기 말고는? 조금 있으면 저 자격증 따러 다닐 거예요. 메이크업이랑 네일아트.

4. 4년제 대학교.

6. 대학교 졸업.

12. 대학교. 4년제. Q. 꿈이 뭐야? 요리사요. Q. 요리 잘해?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하고 싶어요. Q. 학교 안 다녀? 네. 자퇴해서. Q. 어디까지 다니고 자퇴했어? 고1 들어가서 1주일 다니고 자퇴했어. Q. 그런데 어떻게 대학 갈 거야? 검정고시 볼 거예요. Q.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공부좀하라고. Q. 자퇴는 왜 했어? 왕따 때문에. 어떤 아이 때문에. Q. 여자였어? 네. Q. 때렸어? 헐박 같은 거 했어요. 학교 나오면 앓을 때 외자에 칼 같은 거 앓아 보고 앓으라고 급식 먹을 때 뒤에서 식판 날아오지 않나 조심해서 먹으라고 하고. Q. 개는 거기서 처음 만났어? 아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Q. 개가 그때부터 괴롭혔던 거야? 네. Q. 지금도 괴롭혀? 네. Q. 개는 학교 다녀? 다니는데 자주 가지는 않아요. Q.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 적 있어? (주변 사람들)알아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Q.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다들 제 집을 알고 제 가족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 될까봐. Q. 개가 무서운 애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Q. 개 때문에 밖에 못나가는 거야? 네. Q. 집에서 뭐해? 맨날 자요. 자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Q. 자퇴한지 얼마나 된 거야? 한 달. Q. 다시 학교로 갈 생각은 없고 검정고시 볼 거야? 네. Q. 그 친구를 내버려둘 거야? 내버려두는 게 편해요. 또 풀려고 만나면 개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개가 화 풀릴 때까지 내버려두고 싶어요. 어차피 연락도 안하니까. 내버려두는 게 나아요. Q. 여자에 한 명이 때린 거야. 여러 명이 때린 거야? 때리지는 않아요. 괴롭히기만 해요. Q. 너한테 돈을 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어? 네.

16.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Q. 꿈이 뭐야? 노래요. Q. 가수되고

싫어? 네. 춤추는 거 말고 발라드 가수. Q. 점점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다는 거지? 네.

18. 전 대학교까지 나오고 싶어요. Q. 꿈은 뭐야? 디자인 쪽. Q. 오빠는 어디 살아? 몰라요. Q. 오빠도 가출 했어? 아니요. 오빠는 성인. 독립했어요. Q. 몇 살이야? 나이가 많아요. 제가 늦둥이라. 언니도 있는데 언니는 윗집에 살아서 결혼해서 임신한 상태예요. 조카 생겼어요. Q. 언니, 오빠가 한참 위야? 엄마, 아빠 연령대는? 50대. 엄마가 너무 신세대예요. 카톡도 완전 잘하고, 저보다 더 빨라요.

24. 모르겠어요. 오디션 만약에 있어서 합격하면 고졸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대학교 가야죠. 4년제 가야죠.

25. 대학교요. 4년제. Q. 장래희망은 뭐예요? 정비사요. 자동차.

27. 대학교. Q. 뭐하고 싶은데? 아직 생각 못했어요. 원래 애견미용사)이었는데 근데 힘들 것 같아요. Q. 무슨 과 가고 싶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Q. 꿈도 아직 없어? 네. Q. 아이돌 스타들이 옷을 야하게 입고 춤도 야하게 입고 청소년들이 '아 나도 저렇게 따라 해야 겠다' 생각하면서 노출이라든지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니요. Q. 성인물을 보든 아이돌 스타를 보든 야한 영상을 보든 이런걸 보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랜덤채팅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긴 해요. Q.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란물을 안 보려 해도 올라와서 본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Q. 옛날에 페이스북에 없었으면 너도 사진 찍어서 안 올렸을 거 아냐. 창피하지 않아? 뽀뽀해서 올린 거. 남친이랑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우면 되죠. Q. 지워도 누군가가 공유했으면? 에이. 안 그래요. Q. 아니야.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애들끼리 친추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친추하면 안 받으면 되니까(상관없어요).

28. 대학교까지. Q. 전공은? 기계요. Q. 그럼 공부해야 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막막하다고 했잖아요.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취업 미리 하려고 위탁교육 보내는 거 가려고요. Q. 대학은 안가고? 얼마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학은 가고 싶거든요.

Q. 아이돌 스타의 야한거 보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애들도 노출이나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Q. 그럼 사진들을 보고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유하잖아. 그게 더 쉬워지는 것 같지? 네. Q.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지 않아? 당연하죠. Q. 네. 또래 같은 아이들이 하루에 2~3개씩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보. 공부도 안 되잖아. 성인사이트 다 없애야 돼요. Q. 친구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 네. Q. 규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 아이들 노출을 못하게 해야 돼요. Q.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있긴 있어요. Q. 그것 때문에 성 개방이 빨라지는 것 같지 않아? 약간. Q.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오히려 애들이 노출사진이라든지 성매매가 너무 용이해졌잖아. 네. 성인인증 걸면 못 보잖아요. 핸드폰 업데이트 할 때 잠작시켜서 저절로 되게 해야 돼요.

29. (4년제)대학생활 마치고 싶어요. Q. 전공은?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중이에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Q. 그런데 왜 누리반으로 왔어? 저희 선생님이 이유 없이 시비 걸고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욕하는 마음에 누리반 온다고 했는데 막상 누리반 오니까 공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학기 때부터 본반으로 복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Q. 아이돌 스타의 야한거 보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애들도 노출이나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긴 하죠. Q. 결정적으로 조건만남, 사진 팔고 왜 그런 것 같아? 돈이 급하니까 그런 거 일거고, 자기들이 좋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Q.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 페이스북 보면 랜덤채팅 내용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50대 아저씨들이 학생들이랑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요. 집에 자기 마누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매력이 없으면)그럼 결혼을 왜 했지. 이해가 안가요.

30. 대학교까지. Q. 꿈이 뭐야? 체육 교사요. Q. 체대 가려고해? 네. 충남대 그 쪽으로. 사회체육.

<표 I-5>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

질문: 아이돌 스타를 주로 보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1. TV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잡지. Q.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봐요? 검색어 같은 거 나오면 들어가서 보고, 아이돌 영상이나 라이브 나오면 보고.

2. TV. TV 잘 안 보는데 요즘에는 TV로 접할 때도 있고, 따로 인터넷 검색하진 않고, 페이스북 같은데 연예인 사진 올라오면 그런 거 봐요.

3. TV하고 스마트폰, 광고 봐요.

4. TV. TV에서만 주로 봐요. 핸드폰으로는 안 봐요.

5. TV.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서.

6. 스마트폰, TV.

7. TV 아님 SM 페이스북 같은데.

8. TV요.

9. 휴대폰,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고.

10. TV, 스마트폰

11. TV요. 컴퓨터, 사진.

12. 주로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기사로.

13. 저는 스마트폰으로 봐요. 잘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에 대해서.

14. 음. TV로 보는 거. Q. TV에서 다른 스마트폰 같은 거 안 봐? 저는 휴대폰 잘 안 만져요. Q. 주로 TV로 본다는 거죠? 네.

15. 뮤직 방송? 뮤직비디오. Q. TV는 안 봐? 뮤직뱅크 같은 거. Q. TV를 통해서 본 거네? 네. Q. 스마트폰으로는 안 봤어요? 네.

16. 공연하는 거 TV로, TV로 보고 직접 본 거는 옛날 중학교 때 한 번 밖에 없어요. 콘서트. Q.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갔어? 그 때 누구 전용 콘서트가 아니라 2NE1도 왔었고, 싸이도 왔었고.

17. 스마트폰으로만 봐요. TV를 안 봐가지고. Q. 다른 거 본 적 없어? 뮤직비디오도 핸드폰으로 봐요. Q. 어떤 아이돌 스타를 봤어? 엑소 밖에 없는데. Q. 엑소가 남자 아이돌 스타야? 남자. Q. 여자는? 여자는 다 싫어요.

18. 스마트폰이나 TV. Q. 주로 누구 보는데? 남자요. EXO나

BTOB.

19. 저는 TV, 뮤직뱅크나 쇼음악중심 그런 거. Q. 어떤 아이돌 스타? 남자? 여자? 남자는 필요 없고, 저는 에이핑크나 아니면 걸스데이. 그렇게. Q. 노출 많이 해? 에이핑크는 모르겠는데, 걸스데이는 노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Q. 노출은 어느 정도 해? 아니요. 배랑 바지가 짧고 아님 막 치마나 그 중국에서 입는 그런 거랑 대충 뭐 그렇게 입어요.

20.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죠. Q. 주로 누구 보는데?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은 없어요. 딱히. 뭐 걸스데이 이런 거. 올라오니깐. Q. 아한 거 같아? 당연히 저기하죠. 치마도 짧고 하니깐 요새는 뭐를 해도 그런 게 있어야 된대요. Q. 페이스북에서 보는 거야? 네. Q. TV에서는 안 봐? TV를 잘 안 봐요. 별로 스마트폰이 저기하게 되니깐.

21. 음악,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그런 거 봐요. 주로 보는 애들이 걸스데이, 그리고 AOA. Q. 너 방에 갔다 왔어? 교도소랑 소년원 갔다 왔어요. 3개월 전에 나왔어요. 2012년도에 들어갔다가 강도 상해 휴기. Q. TV를 통해서 본 거야? TV를 통해서 보고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노래감상하고,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좀 보고.

22. TV. Q. 또 다른 거? 그냥 핸드폰 같은 거 하면 페이스북 그런 데도 많이 뜨고. Q. 뮤직비디오나 그런 건 안 봐요? 그냥 TV보다 보면 뮤직비디오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깐 지나가면서 보고. Q.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보지는 않아요? 딱히 관심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굳이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나오면 뮤직비디오보다는 개네가 생방송으로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 부른 거 찾아보고. Q. 주로 어떤 가수 많이 봐요? 빅뱅.

23. TV, 스마트폰, 컴퓨터. Q. 컴퓨터로는 주로 어떤 걸 봐요? 기사 같은 거 뜨거나 막 노래 새로 나오면 막 실시간 검색어 그런 데 뜨는 거요. Q. 스마트폰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네.

24. TV에서 많이 보죠. Q. 다른 건?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서. Q. 스마트폰으로는 안 봐요? 스마트폰으로도 보죠. 유튜브에서.

25. 인터넷이나 뮤직뱅크, TV프로그램. Q. 스마트폰은 사용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는 전 잘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는 카톡,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아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봐요.

26. 핸드폰이요. Q. 핸드폰을 통해서만 봐? 근데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봐요. TV를 잘 안 봐서. Q.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서 봐?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3분정도, 짧막짧막하게 봐요. Q. 누구야 주로? 여러 명이죠. 그냥. Q. 걸그룹? 걸그룹도 있고.

27. 스마트폰. Q. 어디서 봐요? 페이스북. Q. 누구 보는데? 연예인 또는 그냥 동영상. Q. 주로 보는 연예인은? 그런 건 없어요. 배우들.

28. TV요. Q. 누구 보는데? 걸스데이. Q. 현아는 안 좋아해? 왜? 그냥 싫어요. 노출증이 심해서. Q. 그런 거 안 좋아해? 남자들은 노출하는 거 좋아하잖아.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벗고 다녀서 싫어요. 29. TV요.

30. 스마트폰이요. Q.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SNS 거의 그렇게. Q. SNS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트위터 같은 데.

<표 I-6>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 초등학교

2. 초등학교, 원더걸스.
3. 초등학교
8. 기억이 안나요. 6학년?
15. 초등학교 때인가. Q. 몇학년? 한 5학년. Q. 그 때 유명했던 애들이 누구야? 그 때 채연 꺼 봤어요. Q. 그 때 아이돌 스타였어? 그 때는, 네.
16.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6학년.
17. 야한 거는 여자 밖에 없는데. Q. 왜 남자들도 짐승들이라고 웃 다 벗고 나오잖아? 동방신기 주문. 개네도 상의를 거의 안 입고 있었어요. 위에만 걸치고 안에는 안 입고 있고. Q. 그게 언제였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18. 초등학교 5학년. Q. 그 때는 누구였어? 태양. Q. 어떻게 하고 나왔어? 잡지에서 태양이 복근 이거. 그거 밖에 기억 안 나요.
19. 원더걸스요. 초등학교 때. Q. 아하나는 생각 안 들어? 저는 보면 좀 좋은데, 그냥 아하긴 한데 그냥 좋긴 좋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고 안 좋죠. Q. 부모님처럼 같이 본 적 있어? 어쩌다 같이 TV 보다 나올 때 그냥 어쩌다 잠깐. 야한 거 나올 때 돌려요.
20. 초등학교때, 4~5학년 뮤직뱅크 이런데. Q. 그 때 유명했던 애들이 누구였어? 그 때 저기했던 애들이 소녀시대. Q. 그 때 아했어? 네 조금. 전 조금씩 조금씩 봐서.

21. 초등학교 4학년. Q. 누구인지 몰라? 네.

23. 초등학교 6학년이요. Q. 어떤 가수의 영상물을 봤어요? 그냥 가수들. Q. 여자 아이돌 스타였어요? 막 엄청 짧게 입고 나오고 그런 거. Q.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입고 나와요.

24. 초등학교 때 봤죠. 3~4학년. Q. 누구? 아마 지드래곤 백댄서였을 거예요. Q. 여자예요? 네.

30. 초등학교 4학년 정도. Q. 그 때는 누구였어? 티아라.

□ 중학교

1. 중학교 1학년, 2학년? Q. 그 때 당시 누구 봤어요? 지연 봤던 거 같아요. 티아라 지연.
5. 중학교 때.
7. 중학교 때쯤.
9. 중학교 올라와서.
10. 중학교 2학년?
12.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올라갈 때 쯤. Q. 어떤 가수의 영상물을 봤어요? 저는 옛날 가수 많이 좋아해서. 그 때 유행했던 가수는 모르겠어요.
13. 중학교 2학년 때 쯤이요. Q. 그 때는 누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 때 2NE1이요.
25. 저는 그런 걸 잘 안 봤는데. 개네 여자애들을 안 좋아해요.

Q.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언제 봤어요? 저 한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 뮤직뱅크를 본 적이 없어요. Q. 중학교 몇 학년 때? 3학년 때. Q.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현아.

26. 중학생 때? Q. 중학교 언제?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요. Q. 누구 봤어? 현아.

27. 중학교 때. Q. 그때 인기 있는 애가 누구였어? 생각은 안 나는데 중학교 때였어요.

28. 중학교 1학년 때요. Q. 그때는 누구였어? 그때는 미스에이.

29.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그 정도 때요. Q. 그때는 누가 유명했어? 에프터스쿨 유이인가? 꿀벅지라고 해서 짧은 반바지 입고 나왔잖아 요.

□ 고등학교

4. 고1.

□ 기타 (정확히 기억안남)

6. 처음 본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옛날부터 계속 봐서 잘 모르겠어요. 현아 때 쯤. Q. 현아 이후에 그런 게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네.

11. 가인이 피어나 그거 애들이 뮤직비디오가 아하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본 적 있어요. 나오고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나오고 일주일 뒤인가?

14. 그건 브라운아이드걸스? 그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아해요. Q. 지금도 나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니까. Q.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네.

22.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Q. 최근 본거나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아하다고 생각한 건 없어요? 솔직히 남자들 웃통 까는 건 딱히 아하다는 생각 안하는데, 여자들 보면 가슴 다 드러나고 짧은 바지 치마 그런 거 입고 남자랑 여자랑 춤 같이 추는데 붙어서 그러면 솔직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저렇게 해야 인기 같은 거 얻는 게 막 불쌍하기도 하고. Q. 기억나는 야한 영상물 없어요? 트러블메이커 현아랑 장현승 나오는 거.

<표 I-7>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한 경험 및 시기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3. 좀 멋있어 보여서 중학교 때 웃 입는 게 예뻐 보여서. 웃 좀 짧게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쯤.

4. 네. 그 중 2대인가? 그 때 축제 나간다고 따라 해 봤어요. Q.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따라 했나요? 친구들이랑은 안 하고 혼자 했어요. 이게 그 아이들은 아니고요. 솔로. 솔로 가수 지나 춤을 6명이 따라 했었어요.

10. 네. 장난 식으로 따라한 적 있죠. 평소에도 그래요. 밖에 나가고 그럴 때.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12. 웃 같은 거. 치마를 입으면 위에 있는 티를 안에 넣고 입는대거나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요.

15. 아니요. 그냥 그런 춤은 별로 안 좋아해서. Q. 웃 같은 거는? 웃 같은 거는 그렇게 입은 적은 있어요. 막 이렇게 파인 웃이나. 중학교 때요.

16. 웃은 유행 따라서 막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머리부터 신경 많이 써요. Q. 아이돌 스타를 많이 따라 했어? 네. 똑같이 따라 하지는 못하죠. 한도가 있으니까. Q. 주로 어떤 걸 따라했어? 그냥. 화장법 이런 것도 그렇고. 화장법 그냥 아이라인 그리는 법. 머리 색깔도 했었고, 그냥 웃은 내 몸이 따라주는 데까지만. 춤은 관심 없어요. 춤은 장난으로. Q. 어떤 춤 했어? 그냥 막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꿀반 춤추고. 그게 그냥 무늬만 흉내 내는. Q. 현아의 꿀반 춤 같은 거? 네. 초등학교 때요. 5~6학년 때요. Q. 초등학교 때부터 스타일을 따라 하게 됐어? 막 그 때 갑자기 반향이 시작돼서 그 때부터 좀 밖으로 하게 됐어요.

18. 춤을 따라 했어요. Q. 어떤 춤 따라 했어? 레이디스 코드나 포미닛 노래 같은 거. 제가 댄스부라서. Q. 너 댄스부야? 네. Q. 어디 댄스부야? 학교요. 공연.

19. 춤 동작이요. Q.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춤 동작 말고 뭐 더 있어요? 그래요? 그냥 강남스타일 유행할 때 이거 말 좀

있잖아요. 그거 잠깐 따라 해 봤어요. 그거 1년 전 쯤 인가? 중학교 때.

22. 춤이라기보다는 웃 같은 거는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그냥 저렇게 입으면 예쁘거나 그런 거 때문에. 꼭 똑같은 웃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입는 경우는 많죠. 다른 애들이나 저나. Q. 어떤 스타일의 웃을 입어요? 그냥 좀 붙는 웃도 좋아하고, 많이 짧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에 좀 붙는 거. 상아가. 예전부터 웃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오빠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여섯 살 차이라서 오빠가 일단 돈을 버니깐 오빠가 웃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그냥 웃 사면 오빠 웃도 같이 입고. 그냥. Q. 언제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중2.

23. 웃은 없고 춤. Q. 춤은 어떤 걸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축제나 그런 거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여자아이들 그룹 춤. Q. 어떤 여자아이들 그룹을 따라했어요? 걸스데이. 중학교 3학년 때. Q. 그럼 친구들 중에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하는 사람 있어요? 따라서 입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은 많아요.

26. 춤 따라 해 본적 있어요. 중학생 때 춤 동아리인가? 그런 거 해가지고. Q. 그때는 누구 따라 했어? 비스트요. 비스트. 중학교 1학년 때. Q. 그때 몇 살이야? 14살 정도.

30. 패션은 아닌데 춤은 따라 해 본 것 같아요. Q. 어떤 춤이었어? 요즘에 하는 건데. 현아 '빨개요' 같은 거. 올레. Q. 왜 따라했어? 인기도 많아 보이고, 유행하는 것 같아서. Q. 너 혼자 따라했어? 학교 애들이랑.

□ 없음

1. 아니요. 저는 남자인데. Q. 아나~ 아이돌 스타 남자는 보이그룹도 있는데. 짐승돌?. 저는 춤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해요. 아니요. Q. 그럼 웃은 어떤 걸 입었어요? 그냥 노출 제일 많았던 게 메리야스에 청바지. Q. 그건 뭐예요? 보고 따라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입고

싫어서 입었던 거예요.

2. 아니요.

5. 아니요. Q. 주변 친구들이 따라한 적은 있어요? 친구들이 장난으로 따라하고 Q. 축제 때 남학생들 중 따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음. 엑소. Q. 여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을 따라 했나요? 현아. Q.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요.

6. 아니요. 따라한 적 없어요. Q. 주변 친구들은 한 적 없어요? 네. 없어요. Q. 축제 때 그런 거 안 해요? 하긴 해요. 그런 거 춤추는 애들이 해요. 학교에서 따로 있어요. 댄스부? 그리고 또 반에서 애들끼리 막 그런 거 하고.

7. 아니요. 친구들이 옷 같은 거 말고 춤 같은 거. 학교 축제 같은데서.

8. 없어요. Q. 주변 친구들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해요.

9. 아니요. Q. 주변 친구들 중 따라 하는 걸 봤나요? 따라 하는 것 못 봤고 애들 사이에 입소문 나가지고 봐 보라고.

11. 없어요. Q. 친구들도? 없어요.

13. 없어요. 저는 없고, 친구들이 많이 따라 해요. 친구들 중에 댄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댄스 하는 애들끼리 그냥 옷 입고 춤추는 경우도 있고, Q. 학교에서요? 학교에선 안하고 공연 같은 거요. Q. 친구들 중에 공연 같은 거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 하나 입고 한 적도 있고, Q. 한 번도 따라한 적은 없어요? 머리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게 2NE1이랑 권지용인데, 왜냐하면 둘 다 패션이 제 스타일이예요. 제가 튀는 걸 좋아하고 머리도 튀는 걸 좋아하고 웃도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따라 하게 됐어요. 그런 애들 쪽에는. 옛날에도 관심 있었어요. 중 1에서 중3. Q.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그냥 신기하다는 애들도 있고 아나뎀 다는 식의 애들도 있고.

14. 아니요. 가수 춤 못 춰요. Q. 옷 같은 거 따라해 본 적 없어? 아니요. 저 그렇게 안 좋아해요.

17. 아니요. 옛날부터 춤추고 그러는 거 안 좋아해서. Q. 여자 아이돌 스타 웃도 화장도 전혀 안 따라 해? 네. 여자 싫어요. Q.

남자 아이돌 스타는? 남자 아이돌도 그다지.

20. 아니요. 따라 해 본 적은 없어요. Q. 춤도? 네. 노래는 따라 불러봤죠. Q. 어떤 노래? 남자 아이돌 것도 불러봤고, 여자 아이돌도 불러봤고. Q. 그럼 그 때 노래 따라한 적은 언제인 거 같아? 지금 쯤? 지금이요. 한 열일곱 열여덟 때? Q. 누구 거 따라 하는데? 엑소 으르렁도 불러봤고, 또 Q. 엑소 안 멋있어?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Q. 근데 왜 따라 해? 노래만 좋아가지고, Q. 여자 아이돌 스타 안 좋아해? 네. 저는 안 좋아해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좋아해봐야 별로 그런 거 없어요.

21. 출 잘 줘요. Q. 누굴 따라한 거 없는데 따라 한 거 없는데요. 클럽 춤만. Q. 아이돌 스타는 안 해? 왜냐고요. 그냥 보면 되죠. Q. 패션도 따라한 적 없어? 그런 썬다 같은 것 안 해요.

24. 아니요. 몸치라서. Q. 남자 아이돌처럼 노출하거나 그런 거는? 몸이 안돼서. 토마토 맞을까봐. Q. 친구들 중에는? 네. 있죠. Q. 옷 입는 거 아니면 춤? 춤. 춤추는 애들끼리 학교에서 그룹 같은 거 결성해서 공연 다니고, Q. 남자? 여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Q. 머리 스타일 같은 거 따라한 거예요? 그냥 파마한 거예요. Q. 파마는 언제 했어요? 두 달 전.

25.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Q. 친구들 중에 아이돌의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Q. 옷? 아니면 춤? 옷. 옷을 따라한 적 있었어요. Q. 그런 식의 옷을 자주 입어요? 네. 바로 그 TV에서 나온 옷 있으면 어느 날 입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냥 웃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Q.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해요? 옷을 좀 특이한 걸 입어요. 만약에 물방울 옷을 입고 왔어요. TV에서. 그럼 개가 어느 날 물방울 옷을 입고 나와요.

27. 없어요. Q. 왜? 그런 거 싫어해요. 노출 심한 것. Q. 왜 싫어해? 파인 것 입으면 가리게 돼요. 창피해요.

28. 아니요. 없죠.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29. 아니요. Q.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 하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표 I-8>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한 성적인 자극 경험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까?

□ 있음

1. Q. 예를 들면 요즘에 스텔라 티저 광고 같은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Q. 그러면 아이돌 스타 여자 걸그룹 아하지 않아요? 아하죠. 많이 바뀐 거 같아요. Q. 어떻게 바뀐 거 같아요? 많이 노출도 심해지고, 파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Q. 그런 거 보면 성적 자극을 받나요? 네. Q. 어떻게 받아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하고 싶다가나 그 연예인들은 예뻐잖아 요. 그 뭐지. 막 실제로 TV에서만 보다가 막 예쁜 여자애들 나오고 좀 막 색시한 춤추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진짜 그런 거 보고 막 유희업소 간 적도 있고.

2. 발아요. 그냥 성적인 생각 많이 들고, 저런 여자랑 살면 좋겠다. 자위 같은 거 한 적은 있어요.

17. 그냥 멋있다. 갖고 싶다 막 그런 거. 갖고 싶다는 거. Q. 자극 받는 거지? 네. 잘생겼잖아요. Q. 잘생겨서 좋아해?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18. 네. 멋있다. Q. 한 번 뽀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어? 상상만 해도 좋은데.

□ 없음

3.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멋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4. 아니요. 안 받아요. Q. 그럼 남자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예쁘다?

5. 아니요.

6.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7. 아니요.
8. 아니요. Q. 남학생들은 어떨 거 같아요? 남자 애들은 받아요. 받는데, 갑자기 막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남자친구랑 막 그런 거 보거든요. 페이스북 보다보면 야한 거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지 궁금하다 이라고 딱 보면 막 숨소리 거칠어지고 땀 흘리고 그래요.
9. 아니요.
10. 아니요.
11. 아니요.
12. 아니요. 안 받아요. 남자도 안 받아요.
13. 여자들은 예쁘다. 남자들은 아~ 멋지다. 이렇게 느껴요. 자극은 안 받아요.
14.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노래만 들었어요. 노래만 그냥 듣고 별로 저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15. 아니요~ Q. 남자 아이들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자극 안 받아? 근데 개네들이 까도 웃통만 까지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 막 못 받는데.
16. 저는 남자는 본 적 없고요. 생각해본 적 없고요. 여자는 왜 저러냐 싶고 별로 보기 싫어서.
17. 현아 이런 애들 보면 아 그냥 색시하다 이런 거 느끼고 말아요. 저는. Q. 느끼고 그냥 다른 거 하는 애들은 없어?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있었죠. 변태 같은 사람들은 Q. '재가 여자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 안하죠. 전 여자 친구가 야하게 입는 거 싫어해요. Q. 여자 친구 있어? 있어요. 맨날 싸워요. 야하게 입을 때마다. Q. 개는 몇 살? 저랑 나이 똑같아요.
20. 아뇨. 그런 건 없고. 딱 보면 그냥 색시하다. 이정도. Q. 흥분되고 그런 건 아니고?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거 보고 흥분되고 그런 거 없는데.
21. 아니요.
22. 그냥 음 성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제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와 되게 몸매 좋네, 색시하네, 남자들 봐도 몸 괜찮네 이런 정도지 막 그런 쪽으로는.
23. 아니요. Q. 같이 보거나 그려진 않아요? 같이 봐요. Q. 어디서 같이 봐요? 음. 학교에서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보거나 친구네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보거나 그래요. Q.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하는데? 막 옷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거 애들 보면 어떻게 하나.

24.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저는 수위가 높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좀. Q. 어떤 걸 봐요? 성인물? 음란물? 아니요. Q. 야동? 가끔 보죠.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Q. 어디서 주로 봐요? 핸드폰, 사이트, 파일कु기 같은 거. Q. 그럼 다운 받아서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저 포인트로 봐요. 바로보기해서. 제가 적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 일 년 치는 걱정 없어요. 마일리지의 황제라니깐요. 옛날에 좀 많이 쌓았죠. 맨날 들어가서 30포인트씩 받았었나. 옛날에는 야동 그렇게 많이 봤어요. 영화 봤지. Q. 야한 영화요? 아니요. 남자 나오는 신세계나. Q.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본 적 없어요? 야한 거요? 밤에 뜨죠. Q. 낮엔 안 뜨요? 낮엔 안 뜨요. 사이트가 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가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 때가 피크. 밤이니까 낮엔 안 뜨요. Q. 그걸 친구들이 공유해서 뜬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페이지 그걸 해서? 저는 공유해서 뜬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페이지 안 해놔요. 여자 친구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요. Q. 페이지로 사진이나 동영상 다 뜨는 거예요? 네. Q. 그럼 카카오톡으로는 안 받아 봐요? 아니요. 카톡 잘 안 해요. 데이터 떨어져서 안 해요. 동영상도 카카오톡 용량 한도 있거든요. 왜 다운 받아요. 바로보기 하니까요. Q. 카카오톡 토리는요? 카카오톡이 이런 거 언제 적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안했어요.

25. 아니요.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안 봤다니까요. Q. 그럼 그 때 성적인 자극을 안 받았어요? 야동이 아니잖아요. Q. 노출하거나 춤추는 것도 별로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건 노출이 아니요. 별로 못 느꼈는데. 저는 그 쪽 분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민아 한가인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26. 전혀요. Q. 왜? 그냥 TV에 나오는 거 나오면 다 같이 보는 건데.

27. 없어요.

28.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Q.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성적인 자극을 받아? 다 벗어나겠죠.

29. 색시하긴 한데 자극을 받진 않아요. 색시하기만해요.

30. 아니요.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그냥 '멋있다' 정도.

<표 I-9>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한 경험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그렇게 안하고 그냥 딱 보면 놀라잖아요. 재밌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보고 보라고 하구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다 알려주죠. 나오면. Q.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그냥 보고 말던데요.
3. 네. 그 왜 현아 유비. Q. 뮤직비디오를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남자친구한테도 보여줬어요.
6. 받아본 적 있어요. 그냥 막 춤추는데 야하게 춤추는 거 있었어요. 그건 핸드폰.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 하고.
7. 네. 페이스북,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알려줬어요. 그 페이스북에 링크 올려서 애들 태그해놓고 공유했어요. Q. 친구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카톡으로.
9. 네. 한 적 있어요. 보내준 적은 없었고 페이스북으로 언급해서

봐 보라고 한 적 있어요. Q. 다른 친구들도 보내줘요? 네. 다른 친구들도 페이스북으로 봐 보라고 했어요.

10. 당연하죠. Q. 어디를 통해서 알려줘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Q. 주소나 링크, 사진, 동영상. 친구에게 야한 영상물을 공유해줄 때 뭐라고 말해요? 보라고.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하겠죠. 여자애들이랑은 그냥 생각 없이 보라고. 보고 같이 욕하는데.

11. 그냥 애들이 '이거 아해~' 이런 거 보고 와 진짜 아하다~와 이거 아해~' 이렇게 얘기해요. Q. 먼저 보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요? 네.

12. 네. 있어요. 복근 같은 거 멋지다고.

17. 네. 뮤직비디오 보고 '너 이거 봤나' 그러고 보라고. Q. 그냥 말로 하는 거야? 아니면 링크 보내주는 거야? 그냥 말로 해주고 옆에 있으면 보여주고. Q. 스마트폰으로? 네.

18. 네. Q. 누구 알려줬어? 맨 처음에 엑소도 있고, 엑소가 특히 많이 있어요. 소속사 뺨이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춤 잘 추고 Q. 친구들한테도 인기야? 네. 많죠. 완전 많죠. 반에 세 명인가 네 명 좋아하고. Q. 남녀공학이야? 여자.

20. 네. 그건 있죠. 뭐 엑소 으르렁 했을 때도 '멜로디 좋지 않냐'고 '걸스데이 씬싱 애네 섹시하다. 찐다' 이러면서 말로 이렇게. Q. 사이트 이런 건 공유해본 적은 없어?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보죠. Q.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는 거야?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 보다보면 몇 편씩 가끔가다 나와요. 뮤비나 라이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올라와요.

21. 알려주죠. '너 걸스데이 봤냐. AOA 봤냐. 걸그룹 개 미치게 한다고. 엄청 노출한다'고, 지들 좀 떠보려고 벗고 그러잖아요.

22. 네. Q.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재 저렇게 해서 야하다.' 친구들끼리 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 막 그냥 걸레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식. Q. 그럼 어디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냥 카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는 글 이렇게 올라오면 댓글에서 언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언급하면 막 '애 봐' 그런 식? 페이스북에 막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니깐.

23. 네. 있어요. Q. 어떻게 알려줬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노래 좋은데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라고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줘요.

24. 당연하죠. 사이트, 제 아이디 지금 애들이 다 쓰고 있어요. Q.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뭐 다원받았는지 한 번씩 보면 한탄하죠. Q. 그런데 그거 이용하려면 성인인증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머리가 나빠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하나도 못 외웠어요. Q.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분증 주웠어요. Q. 그걸 보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Q. 그럼 아이돌 스타의 아한 영상물은 공유 안 해요? 아이들이 벗은 게 있긴 있어요. 백지영 거 봤었는데. Q. 그냥 본 거예요? 네. 전 그런 거 공유 안 해요. 엄마랑 페이스북 친추 되어있어서 큰일 나요. 잘못 걸렸다가 따귀 맞아요.

25. 예. 있어요. 아 한 번 더 있네. 트러블메이커 아세요? 그 때 나왔을 때 현아가 그 때 그렇게 춤을 섹시하게 찼잖아요. 그걸 애들한테 알려줬었어요. Q. 어떻게요? 인터넷으로. 보라고 핸드폰을 줘서. Q. 그냥 만나서? 네. 보라고.

26. 네.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친구들 태그하고 그랬어요. Q. 누구 했어? 학교 친구요. 현아요. Q. 현아 좋아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자주 봐요. Q. 왜 봐? 동영상이 자주 뜨는데 현아 동영상 제일 많이 띄워요.

27. 네. 영상. 잘 생겼다고 보라고 했어요. Q. 한 달에 몇 번 정도 공유해? 2~3번.

28. 없어요. 그런 거 공유 안 해요. 뭐 하러 공유해요. 가지고 있으면 저만 가지고 있죠. Q. 페이스북 태그는 안 해? 태그는 가끔 해요. Q. 누구한테 공유했어? 친구한테요. 여자아이들 춤추는 거 공유했어요. Q. 왜 했어? 아해서요. Q. 누구였어? 많아요. 많이 올라오잖아요. Q. 올라올 때마다 네가 공유해줘? 봤을 때 아하다

싶으면 공유해요. Q. 그럴 때 친구들 반응은 어때? 웃어요.

29. 한 번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가수가 나와서 춤추는 거 보고 (친구한테) 이거 보라고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고 보라고 한적 있어요.

30. 네. Q. 어디서? 페이스북 같은 데.

□ 없음

2.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저 혼자만 봤어요.

8. 요즘 TV를 안 봐서. Q. 친구한테서 영상물을 받은 적은 없어요? 네.

14. 공유하지는 않고 그냥 얘기는 했어요. 그거 뮤직비디오나 그렇게 요즘은 현아 그런 애들 너무 아하잖아요. 좀 안 좋게 생각하고. Q.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막 공감해요.

□ 친구가 알려줌

4. 아니요. 친구가 알려준 적은 있어요. 친구가 그런 뮤직비디오 나오면 그 거 본 적 있냐고. Q. 그러면 친구가 아한 영상물을 보라고 했어요? 그냥 본 적 있냐고 만 물어봐서 없었니까 한 번 봐보라고. 아하라고. 안 본다고. Q. 친구한테 학생이 아한 영상물을 보내준 적은 없어요? 네. 관심 없어요. 아이돌.

5. 친구들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떤 걸그룹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아한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 찍은걸 보여줬는데. 그거 그랬어요.

13. 요즘. 연예인들이니깐.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아서 저한테 말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Q. 그러면 네가 알려준 적은 없고? 네. 딱히 뭐라 말할…….

14. 아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말해줘서 본 거라서. Q.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봐.' 이라고 '많이 아하더라.' 이러면서. Q. 남자애들이 아니면 여자애들이? 여자 애들이. Q. 그랬더니? 막 봤는데 '아하긴 아하네.' 이라고 말았어요. Q. 너는 보낸 적 없고? 네.

16. 네. 다 제가 찾아 본 게 아니라. 전달 듣고 주고받고 해서. Q. 그래서 많이 알게 됐어? 아니요. 그런 걸 알게 된다 보다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좀. Q. 그걸 말로 했어? 페이스북으로 공유했어? 그냥 보여주고 같이 보고. Q. 주로 어디서 공유했어? 인터넷. 페이스북. Q.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은 없어요. Q. 그래서 알려주고 같이 봤어? 네. Q. 그걸 다른데다 공유한 적은 없어? 네.

19.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야동 그거 본 게 끝이에요. Q. 어디서 봤어? 공유 그거 빼고. 제가 공유 안했어요. 갑자기 막 놀다가 자네 집 가자고 그러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재미있는 거 있다고 해서 봤는데. 에! 재밌다 그러고 봤어요. 애들끼리. Q. 느낌이 어땠어? 짜릿했죠.

<표 I-10>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한 경험

질문: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Q. 그래서 뭐했어요? 자위?
그냥 혼자 그랬죠. Q.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실전이죠.
Q. 실제 영향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런 거 같아요.
2. 네. 그런 적도 있고. 아이들이 야한 행동을 하면 개로 상상을
해봤어요.

17. 네. 해봤어요. 아 누구였지. 개 이름 뭐였지. 아무튼 있어요.
Q. 뭘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 전에 놀러가고 그런 생각하는데.
Q.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상상했어? 네. 그런 데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Q. 남자 아이돌 스타는 누구야? 동방신기 아닌데. 첫 번째가 누구였는
지 생각이 안 나는데.

23. 네. Q. 어떤 거요? 뽀뽀. 남자친구랑. 뭐라 해야 되지. 막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이렇게. Q. 그냥 뽀뽀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네.

24. 당연하죠. Q. 야동을 보고? 아니면? 아이돌 보다는 솔직히
예로배우가 예뻐요. Q. 요즘 아이돌 스타들이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해봤자 얼마나 아해요. 그래봤자 얼마나 아해요. 다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 없음

3. 아니요.
4. 아니요.
5. 아니요.
6. 아니요. 없어요.
7. 아니요.
8. 없어요.
9. 아니요. 저는.
10. 아니요.
11. 아니요.

12. 아니요.

13.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방승이 다 언론이
다 퍼트리는데. 그렇게 야하게 하는 애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14. 아니요. 반도 안 봤어요. 그냥 짧게 보고 말았어요. Q. 상상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15. 아니요.

16.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18.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Q. 그냥 멋있었다만? 네.

19. 그런 건 없어요. Q. 그냥 보고 끝이야? 네. Q. 그런 영상이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런 영상은 별로 안 미쳐요. Q.
왜? 아하지가 많잖아요. Q. 뭐가 그런 거 같아? 막. 그거 뭐지 야동
막 그런 거요. 아하죠. Q. 야동이 그냥 남자 여자 성관계 하는 거?
우리나라? 아니요. 일본. 일본이 많죠. Q. 그럼 주로 일본 거 봤어?
그렇죠. 일본이 주로 많으니까.

20. 아니요. 없어요. 별로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21.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Q. 전혀 흥분이 안 돼? 그런 거
보고 뭐 흥분이 돼요.

22. 그냥 그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제 남자친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도 막 있으면 '아 제가 재량 한 번 손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쪽으로 야하게 생각은 안하죠.

25. 아니요. 그런 걸 못 느꼈다니까요. Q. 그럼 야동을 보면?
당연히 느끼죠. Q.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있었죠. Q. 친구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어요? 욕하면서. 좇 된다고 그랬어요.

26. 아니요.

27. 아니요. 없어요. Q. 왜? 연예인 별로 싫어해요.

28. 아니요. 그걸 보고 왜 상상해요?

29. 아니요. 싫어요. Q. 왜? 만약 그런 사람이 제 여자 친구라면
그런 옷 입고 무대에서 춤추고 그러는데, 별로 좋다고 생각해요.

30. 아니요.

<표 I-11>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질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한다고 생각

2. 그런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면
상관없는데. 뭔가 기획사에서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걸로 유혹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9. 안 좋다고 생각하죠. 보는 눈에도 같은 여자니까. 뭔가 좀
안됐다고 해야 되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0. 불쌍해요. 불쌍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지들은 옷 벗고.

11.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원래 걸그룹 포미닛 현아도 안
그랬는데 이제 막 계속 현아가 뜨니까 점점 회사에서 막 애 야하게
입혀놓고 좀 그래가지고.

12. 몹쓸 짓이라고 생각해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19금 같이

야한 옷을 입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5.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되게 막 다 성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도 볼 텐데 노출하고 이러면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16. 불쌍해요. Q. 왜요? 그냥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20. 아이돌 개네도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한 거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주잖아요. 아이돌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22. 솔직히 불쌍하죠. 개네도 가수 같은 게 되고 싶어서 노력한
거고. 막 보면 얼굴도 다 고치고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성매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애들 보면 불쌍하죠. 개네들도 일단 여자고
하고 그런데 일단 벗고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갈래 같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거 보면 돈 벌려고 참 노력

많이 하는 거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불쌍해요.

26. 자기를 다 돈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별 다른 생각은 안 가져요.

27. 지네가 돈 벌고 싶으면 하는 거죠.

29. 자기를 돈 벌겠다고 이상한 옷 입고 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30. 안 좋다고 생각해요. Q. 왜 안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인격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Q. 개네도 원해서 아이돌 스타가 된 거잖아. 돈 벌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노출시키고) 그런 방법은 좀.

□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1. 그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 걸그룹이 노출을 시작했으니까 되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자기도 인기를 얻고 신인그룹 있잖아요. 되게 노출을 많이 시작하잖아요. 눈에 띄려고 전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Q. 어떻게 생각?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

3. 아니요. 돈은 자기가 벌라고 그걸 시키는 건데. 하기 싫다는데 자기가 돈 벌라고 하는 건데.

4. 불쌍한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겠죠.

5. 근데 솔직히 옷 막 아하게 안 입고 그래도 벌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까지 하니깐 크레용팝 보면 트레이닝 복 입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런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관심 끌려고 춤추려고 하는 걸 봐도 그냥 그렇고.

6. 그거는 그냥. 그. 개네들이 하고 싶으니깐.

7. 별로. 좀 그래요. 네. 좀. 좀 과하다싶을 정도로 별로예요. 그런 애들은 TV에 나오면 안 봐요. Q.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막 친구들이랑 되게 좀 그런 거 같다는 얘기를 해요.

8. 이해 안돼요. 몸 보여줘야 되잖아요.

17. 그건 지네 직업이잖아요. Q. 직업이라서 괜찮은 거 같아? 하기 싫으면 지들이 안하겠죠.

18. 아니 좀 심한 거는 있긴 있는데. 그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거 아예 하기 싫었으면 소속사에서.

19. 저희한테 좋겠죠. 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볼 수 있으니까.

24. 상관은 없는 거 같아요. 세대 차이니까. 저희들 보기에 별로 상관없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Q. 그럼 노출하거나 아한 춤 취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결국은 세대차이죠.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으면 계란 맞았잖아요. Q.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25. 그거는 근데 춤을 추는 사람 마음 아니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8.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로도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 기타

13.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일반 유흥업소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일반 유흥업소랑 비슷하니까 딱히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사회랑. 사회에서랑 똑같은 짓 하는 거 같아요. Q. 나쁘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나쁘다 좋다는 표현은 아닌 거 같아요. 똑같다고 정부에서도 돈 주고 시키는 것도 많고 기획사에서도 돈 주고 시키는 것도 많고. 일반 거리 같은 데서도 시키는 게 많으니깐. 그냥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애한테. 아. 애만 나쁘다. 기획사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14. 자기들만의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이제 뭐 어린애들만 보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수위가 안 높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21. 병신 같아요. Q. 왜? 안 벗어나도 노래로 성공할 수 있는데. 꼭 벗어나고 하잖아요. 좀 벗어나 쓰니까.

23. 막 자기 나이 애들이 보면 그냥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꼬마 애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좀 그래요.

<표 I-12>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이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질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스타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고 생각

3. 네.

7. 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9. 네. 저는 돈만 주고 성매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좀 그런 것도 보면 학대 성폭행도 어떻게 보면 학대잖아요. 정신적 충격 받을 거 같고.

10. 네.

11. 네.

12.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돈을 받거나 그런 거일수도 있잖아요.

15. 네. 그런 거 같아요.

16. 네. 여자는. 남자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여자니깐. 여자는 좀. 근데 그걸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강제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17.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잠깐 못 쉬게 하고 뭐 계속 스케줄 같은 거 딱 차있는 거 보면. Q. 학대라는 생각이 들어? 네.

19. 네. Q. 왜? 그 때 그거 뭐였지. 그거 맞아. 티아라 그거 어떤 애 왕따시켜가지고 논란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기획사 그거 뭐 지들끼리 괴롭히고 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8. 조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끄럽겠죠. 노출 그런 거는. 그런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것으로 돈 버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자기도 좋잖아요. 돈 버니까. Q. 네 여친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아이돌 스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1. 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서로 그 아이들도 자기가 돈 벌고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에 한거일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 괴롭히거나 학대한다는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2. 아니요,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합의 하에 하는 거 같아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

4. 그렇게는 생각 안하는데,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게 불쌍해 보여요.

5. 아니요, 그냥 아닌 거 같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해요.

6.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8. 아니요, 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13. 근데 이젠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근데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애네들이 저희 연예인이라는 게 노예 계약이잖아요. 지네도 알고 계약한 거니깐. 그게 마땅한 거 같아요. 애네는 다 돈 받고 했으니깐 Q. 학대라는 생각은 안 들어? 지나치게 학대하는 건 학대죠.

14. 음. 별로. 자신의, 스타들의 마음의 의사가 중요한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는 거니깐. Q. 예를 들어서 막 좋아서 하긴 했는데, 계약에도 없이 성형수술 시키고 노출시키는 건 어떤 거 같아요? 그건 자기가 안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한 건 자기 실수죠. 그건 자기 본인 실수인 거 같아요.

20.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아이들을 하려고 시작했던 애들이 딱 그 정도의 힘듦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죠. 그 때가서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21. 아니요, 괴롭히지 않죠. 기획사에서 이렇게 하고 개네 의견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학대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들도 쳐 좋으니깐 벗겠죠.

22. 학대까진 아닌 거 같아요. 개네들이 정 그러면 가수를 때려

치겠죠. 자기들도 일단 할 의향이 있으니까 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23. 아니요,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Q. 그럼 아이돌 스타들이 하고 싶어서 노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같아요.

24. 아니요, 아이들도 인격체가 있으니까 싫다면 싫다고 하겠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면 되죠. 그걸 하는 걸 보면 자기도 괜찮으니깐 하는 거겠죠.

25. 아니요,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Q. 왜? 개네가 춤을 추는 분야잖아요. 개네가 춤을 좋아하니깐 그런 작업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개네도 그런 식으로 안 느낄 것 같아서요.

26. 강압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기들도 딱히 크게 거부를 안 하면 학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27. 지네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29.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형하면 자기가 더 예뻐지고 뚱뚱한 것 보다 날씬한 게 낫고, 자기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남들이 보는 시선에선 좀 그렇긴 한데, 자기네 땀에서는 돈 벌고 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 기타

18. 좀 이렇게 완전 안 뜬 신인들이 불쌍하긴 한데. 포미닛이나 이런 애들 보면 완전 땀는데.

30. 어느 편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편에서는 자기들 자유니까(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 I-13>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질문: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부정적인 반응

1. 당연히 안 좋게 보죠. 당연히 뭐라고 하시죠.

2. 같이 본 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 TV에서 춤을 추면은 아빠랑 보면은 보기 민망해서 안 봐요. 민망해서 서로 피해요. 저는 그냥 안 봐요.

7. Q. 친구들이 따라하는 것에 대해 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막 욕하고, 네.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Q. 그런 말 듣고도 그 친구는 계속 했어요? 부모님 몰래.

9. 막 아빠가 욕을 되게 해요. 갈린 적 있거든요. 가끔 TV 보잖아요. 무비 딱 보고 있으면 시스루 같은 거 브라지만 입고 그런 거 보면. 저거 뭐하는 짓이냐고 끄라고, 사람 못돼먹은 년들. 이라고.

10. 욕하죠. 미친년이라고. 그냥 처음에 한 번 심하게 욕먹었어요. 술집에서 같다고. 근데 신경 안 써요.

11. 되도록 안 보려고 해요. 같이 좀 서로 민망하니까. 아빠랑 어쩌다 보니까 TV에서 춤추는 걸 보면 아주 애를 벗겨놓네 이런

아닌 거 같다는 말을 해요.

12. 막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짧다고 그러고.

13. 어. 뭐라 해야 되지. 엄마가 창녀 같대요. 그러니깐 엄마 시대랑 저는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엄마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중딩 때부터 가루하는 게 있었어요. 가루 화장인데 가루상 같은 거 엄청 진한 화장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보다보니깐 익숙하다고 뭐라고 안 해요. 엄마는 이제 뭐라고 안 해요. Q. 학교에서도 화장을 하나요? 학교에서는 화장을 안 해요. 놀러갈 때만 해요.

15. 좀 안 좋게 보고, 짧게 입지 말라고 그러고 좀 가리고 다나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만 했어요. Q.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 엄마가요. 아빠는 그렇게 터치 안 해요.

16. 엄마 아빠나 어른신들은 볼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Q. 왜? 그냥 보기 싫다고, 재네랑 같냐고.

19. 저는 여자 아니어서 Q. 남자 춤 같은 거 취 봤다며? 부모님한테는 안 추죠. Q. 부모님이 노출 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 반응이 어떠셔? 예쁘다 그래? 아니요. 아주 그냥 홀라당 벗고 나오지. Q. 누가?

엄마가요. Q. 비고는 거야? 아버지는? 무덤덤해요. Q. 못마땅해 하시는 거네? 네. 저렇 거면 그냥 발가벗고 나오지 뭐 하러 옷 입고 나오나면서 그러세요.

25. 어린 것들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Q. 친구 중에 아이돌 스타 패션 따라하는 친구한테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안 가르쳐주죠. 뭘 옷 입는 건데. 들은 적 없어요.

30. 낮이 나갔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Q. 부모님 앞에서 한 적 있어? 집에서 축제 때 하려고 한 적 있는데, 이것을 추려고 지금 하는 거냐고. Q.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이런 거 해야겠냐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Q. 그래서 뭐라고 했어? 축제 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알았다고.

□ 긍정적인 반응

18. 저희 엄마는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Q. 부모님은 상관 없나보네? 네. Q. 옷 짧게 입어도 뭐라고 안하셔? 네.

23. 우리 딸 춤 잘 추네. Q. 막 좋게 말해주셨어요? 잘한다고? 네.

24. Q. 그런 친구들이 춤 쳤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잘 춘다 하죠. 개네들은 노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춤만 모방하는 거니깐. Q.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 활발하고 얼마나 좋아요. 개네가 가서 땀춤을 춰요 뭐 이상한 춤을 춰요.

26. 잘 춘다고. Q. 그때 춤은 남자애 따라 한거야? 네. Q. 누가 잘 춘대? 아빠요.

□ 반응 없음

3. 별로 생각 없는 거 같던데. 별로 그렇게 표현 안했어요. Q. 화장 몇 살부터 했어? 화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Q. 부모님이 뭐라고 안 했어?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다고 밖에 말 안 해 줬어요.

4. 네. 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축제 얘기하니깐 별 말 안했어요.

5. Q. 주변 친구들이 따라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요.

6. Q. 아이돌 스타의 춤이나 의상을 따라하는 친구에 대한 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8. 없어요.

14. 그런 적이 없으니깐. Q. 반응은 모르겠어? 네. Q. 주변 친구들은? 아니. 너무 야하게 입고 그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자기 개성이 뚜렷한 옷은 입었지만, 야한 옷들은. Q. 그 친구들이 아이돌 스타를

따라한 건 아니었고? 네.

20. 그냥 별 말 안 해요. 너 그냥 보는 구나. Q.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뮤직뱅크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별로 전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옆에서 보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는 거예요. Q. 부모님들은 뭐라고 안하셔? 아. 엄마는 아 재 왜 저렇게 싸게 입고 나와. 왜 저렇게 하냐고. 돈 벌라고 다 저러는 거야. 요즘엔 다 저래 이러면 뭐 그러냐고. Q. 부모님이랑 같이 봐서 민망하진 않아? 네. 민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저걸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본다고 해서 민망해질 부분이 뭐가 있어요?

22. 다른 부모님은 몰라도 저희 엄마아빠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타치를 잘 안하시는 그 쪽이라 엄마는 일단 그냥 예쁘네 아빠는 일단 남자고 저는 딸이다 보니까 좀 걱정되니까 한 마디 툭툭 던지는 거지 뭐 입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세요.

28.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새 다 그러니까. 별로 안 민망해요. Q.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친구들을 볼 때 어때? 괜찮은데. Q. 여친은? 괜찮은데 다 보는 것은 안돼요. 핫팬츠까지는 괜찮아요.

□ 경험 없음

17. 제가 그런 뮤직비디오를 볼 때, 옆에서 보고 있지는 않죠. Q. 아이돌 스타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한 적은 없어? 네. Q. 문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안 들었어요. 아직. Q. 진짜 한 거야 불인 거야? 진짜 한 거예요. 이젠 옛날에 흥대 가서 한 거고, 이거는 아는 언니가 해준 거고. 라인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망해서 성인돼서 다 지우려고요.

21. 부모님이랑 같이 본 적 있어? 아니요. 왜 그걸 부모님이랑 봐요. 그냥 본다니깐요. 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 들으려고 보는 거지 개네 벗고 그런 걸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7. 따라한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Q. TV를 볼 때 야한 게 나오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같이 본 적 없어요. 부모님이 다 일 가셔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29.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없어요. Q. 춤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친구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남자애들은 안 따라하는데 여자애들이 쪼그만 애들이 장난으로 따라하는 거 보면 귀여울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제가 아는 노래 나오는 춤을 출 때는 그냥 귀엽다 이러는데, 모르는 등보잡 같은 노래에 따라 출 때에는 재 뭐야? 이래요.

<표 I-14>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

질문: 본인이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긍정적인 반응

1. 제가 문신했을 때는 다 예쁘다고 그렇게 하고 보고 솔직히 보고 따라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멋있다고. 지금 저희 학교에도 새 학기 된지 두 달 세 달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번호에 문신한 사람도 5~6명 있는 거 같고.

2. 예전에 한 번 춤 따라한 적 있는데, 그 때는 남자가 여자 춤을 따라하니깐. 제가 중학교 때 걸스데이 따라했는데, 축제 때

따라했는데, 그 때 호응 좋았어요.

3. 친구들도 화장 했을 때 와~ 예쁘다는 얘기하고.

4. 그냥 별 말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귀엽다고 해줬어요. 잘했는데 떨어졌어요.

12. 관찰다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네.

15. 개네들도 그렇게 다녔어요. Q. 그럼 개네도 뭐라고 안하고 그냥 멋있다고 반응해? 네.

16. 친구들이 저 따라하는 거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예쁜데. Q. 네일 아트 누가 한 거야? 이거 같이 사는 언니가 해줬어요. 그냥 스티커 붙인 거예요.

18. 어. 그런 건 있는데. 무대 올라가서 소리 지르거나. Q. 멋있다고? 네. 그냥. 친구니깐.

20. 음. 친구들은 노래 좋다. 이려고.

23. 친구들도 똑같이. 그냥 춤 잘 추네.

24. 친구들 반응도 좋죠. Q. 어떤 식으로? 이제 막 남고 같은데 여자애들 춤추면 발정 나고. 반대죠. 이제 남자가 여자애들 가면 발정 나고 그런 거예요.

26. 축제 같은 거 할 때 나가고 그랬으니까 잘 춘다고. 잘 뺐다고 하죠. Q. 멋있다 그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냥 다요.

30. 친구들은 다 유행하는 거라 자기들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배우려고 하고.

□ 부정적인 반응

7. Q. 다른 친구가 그런 춤이나 패션을 따라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예의상 예쁘다 잘 어울린다. 속마음은 재 좀 그렇다.

9. 헐 애 봐. 헐 재 왜 저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11. 저희도 똑같아요.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13. 보통 친구는 그런 거 보고 걸레 같다. 아니요 대놓고 하진 않고 뒤에서 수근 거리고 싸 보인다고 하고 하는 애들도 많고. Q. 근데 너는 신경 안 써? 자는 신경 안 써요. 제가 입고 싶어서 입으니까.

19. 그냥 다 같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Q. 왜? 아니 그냥. 갑자기 놓고 있다가 이려고 애들끼리 이려고 있다는 게 이상해서요. 웃었어요. 추면서. 제 친구 중에 어떤 미친년이 해가지고 뺑 갔어요. 그 뭉치 조건만남 해서. Q. 어떤 친구인데? 그냥 아는 친구 저만 알고 개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친구는 아닌데 아는 사람인데 저 동갑 중에. Q. 이 학교야? 아니요. 학교 아예 안 다녀요. 돈 벌려고 조건만남 하면서 몸도 대주고 막 성적인 그것도 하고. Q. 성적인 그게 뭐야? 그 성관계. 그걸 하다가 모텔에서 하다가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옆에서 다 들리니까.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했나 봐요. 경찰 왔는데 조건만남 그거랑 성인이랑 청소년이랑 성매매랑 그리고 그 뭉치지 청소년이랑 성인이랑 사귀면 그 원조교제가 그 성매매로 그거 하고 해가지고 철렁철렁했어. 수감. Q. 개는 어디 있어? 개 뺑 갔어요. Q. 몇 살이었는데? 여자요? 저희랑 동갑이에요. Q. 남자는 성인이고? 네. Q. 소년원? 보호관찰소? 아. 보호관찰소 말고 소년원 갔어요. Q. 근데 너는 개를 어떻게 알게 됐어? 저도 몰랐는데. 학교에 있다가 제 여자 친구랑 페이스북 보다가요. 근데 페이스북 보고 있는데 소년원 간 애 페이스북에 애들이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심하게 해요. 이 걸레 같은 년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인지 하고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보니깐 성매매 하고 애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성매매해가지고 뺑 갔다고 얘기하고 욕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는 어차피 소년원 가도 가는 지랑 비슷한 애들 있으니까 그런 애들끼리 재밌게 놀라고

이 걸레 같은 년아 하면서 욕하고 그냥 평생 거기서 썩으라고. Q. 왜 욕을 하는 거야? 더럽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걸 하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청소년이고 그리고 막 성매매 그런 거 한다는 거 자체가 정신머리가 약간 나간 거죠. 막 한 남자도 아니고 여러 남자랑도 하고 17살짜리가 모텔 가서 남자랑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요? 맞잡아요. Q. 개는 소년원 가서도 페이스북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못하죠. Q. 근데 그게 떠있어? 개는 어떻게 한 거야? 아니요. 사이트에서요. 조건만남이란 게 있어요. 아이디 만들고 하면요. Q. 졸푼? 네. 맞아요. 졸푼. 남자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25. 같이 다 따라보죠. Q. 보고 말아요? 얘기 안 해요? 아까 말했는데. 욕 한다고. Q. 그 친구를 볼 때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또라이 같이 보죠. 이상한 새끼라고 막 그러죠. 딱 봐도 이상한 새끼 같잖아요. 그걸 왜 따라하고 있어요. Q. 왜요? 창피해요. 따라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꼭 그 사람 입었던 거를 따라서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 반응 없음

5. 그냥 별 말 안 해요.

6.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봐요.

10. 아무 말도 안 해요. Q. 친구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입어요? 네.

8. 없어요.

21. 친구들 노래 따라하면서 그냥 그러고 말아요.

22. 그냥 친구들도 뭐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입고. 그냥 제가 좀 가슴이 큰 편이라 보면 섹시하다고 그러고 가슴 크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또래고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많이 입고 별로 상관안하고 자기도 그렇게 입으니까. 그냥 유행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Q. 서로 알려주기도 해요? 나 이런 옷 살 건데 '괜찮냐' 그런 것도 보내주고 '샀는데 예쁘냐' 그러기도 하고 같이 사러 가고.

27. 그러려니 해요. Q. 아한 옷이나 춤을 따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지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7. 따라한 적 없는데. Q. 친구들은 어떤지 몰라? 네. Q. 친구들 중에서 따라한 친구는 있었어? 춤 같은 거 따라하는 애 그냥 봤어요. Q. 어떤 춤? 소녀시대 춤? 소녀시대 그냥 무난하잖아요. Q. 따라한 친구들 춤 봤을 때 어때? 그냥 노는구나.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표 I-15>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

질문: 아이돌 스타의 부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기준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노출만 규제

1. Q. 텔레비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등 파이고, 가슴골 살짝 보이는 정도. 그것도 심한 거 같긴 한데. 치마도 디게 짧고 요즘에는. Q. 춤은? 춤은, 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과해서. 표현하는 게. 남자 잡고 추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골반 댄스. 그런 거 추고 그러니깐. 보는 사람 입장에서 흥분되는 거 같아요. Q. 자기가 그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면. 허용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노출은 보이는 정도. 춤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노출 많으면 좋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 볼 땐 좋는데 가족들끼리 있을 때 돌리다가 보면 되게 눈치 보여요. 뭔가 어색하고. 민망하고. Q. 부모님은 같이 보면 부모님의 반응은? 부모님이라 일부터 같이 안 보죠. 만약 같이 보게 되면 부모님은 가만히 있으시죠.

20. 저 나름대로 기준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Q. 막 상관없어? 그건 아니죠. 치마는 허벅지 반 까지 뭐 그 정도나. 배꼽은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거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안 보이고. 엉덩이 이렇게 하체는 중요한 두 부분 큰 면적으로 가리는 거 빼고는. Q. 춤은? 춤은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춤은 보이지만 않으면. Q. 아하잖아? 성행위 연상하는 춤이라던가? 네. 괜찮아요. 근데 개네들도 그걸 하고 있어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Q. 청소년들이 영향 받지 않을 거 같아? 괜찮다고는 안 하고 그렇다고 안 괜찮다고는 안 해요. 그건 영향을 받는 자기들도 잘못된 거니깐. Q. 너는 영향 안 받아? 그걸 보면 쩀다 말고, 그 최고다 이러고. 그냥 찡이다 색시하다. 아 예쁘다 이러면서.

21. 그건 아니죠. 그냥 보일 듯 말듯 그런 게 낫지 않나요. 저희는 봐도 '오 좋네' 이렇게 해도 어른들이 거북할 수도 있잖아요. Q. 짹짹 같은 건 괜찮아? 네. Q. 춤은 아하게 성행위 연상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적당히. 어린 애들이 보기에 적당한 정도?

28. 봤을 때 민망한 거. 어른들이랑 보면 민망한 정도가 있잖아요. 속웃 다 보이는 정도. Q. 엄마 아빠랑 볼 때 어떻게 해?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피해요. Q. 포옹 장면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은 어때? 포옹은 돼요.

□ 춤만 규제

12. 그런 건 상관없는데. 동작이나 등장인물 같은 거. 막 드러눕거나 그런 거 싫고. 등장인물은 여자들끼리 아하게 추는 것도 있고 남자들끼리 아하게 추는 것도 있고. 여자들끼리는 괜찮는데 남자들끼리 추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13. 그냥 무난하게 짧은 핫팬츠나 긴팔 입고 할 수 있는데. 춤 같은 것도 노출는 가나 다리 짹짹하거나 남자랑 특히 트러블메이커라고 있는데. 너무 그래요. 그거 뭐지 인터넷 치면 트러블메이커라고 치면 아한 게 많아요. 그거 유명했으니깐.

14. 그냥 누가 봐도 인상 찌푸릴 만한 그럴 만한 건 보기 안 좋죠. Q. 예를 들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 봤어요. 내 일이 아니니깐. Q. 저런 장면을 보면 좀 그렇다 라고 느끼는 거 있어? 너무 이제 막 서로 붙어가지고. 상체나 하체 쪽으로

너무 만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면 좀 이상하겠죠. Q. 노출보다는 춤 자체가? 노출보다는 춤이. Q. 노출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게 약간 좀 더 과한 거 같아요. Q. 노출은 괜찮는데? 오히려 노출보다도 몸을 보여주는 거니깐.

□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

2. TV 속에서 짧은 치마는 괜찮고. 되게 딱 달라붙는 팬티같이 그런 건 안돼요. 행동 같은 건 여자아이들 다리 벌리고 추는 춤 같은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키스나 포옹 장면은 같이 보기 민망해요.

5. Q. 아이돌 스타가 노출을 하거나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막 아이들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지면서 관심 끌려고 점점 노출하려고 하고 그러고 너무 보기가 싫어요. Q. 그럼 아이돌들이 이런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출하고 그런 거 말고도. 현아 아시죠? 아까 전에도 페이스북 보다가 봤는데 그 현아 노출증 있다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진짜인 거 같아가지고. 그 옷을 올렸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러가지고 그거 때문에 더 싫어졌어요. 키스나 포옹을 공연할 때 하잖아요. Q. 그런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된다는 쪽이요? 그런 것도 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7.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매우 더러워요. 걸레 같아요. 키스나 포옹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전하게 노래 부르고 하면 되는데. 왜 옷을 벗고 노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9. Q. 아이돌 스타가 노출을 하거나 아한 춤을 추게 해도 괜찮은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훨씬 어린. 만약에 드라마도 15세라고 쓰지만 더 어린 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Q. 아이돌 스타들이 키스, 포옹, 노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보죠. 다 그 때 뭐지. 팀이랑 이효리도 콘서트 하다가 뽀뽀했잖아요. 그 때 반응은 좋은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연예인한테 안 좋은 감정. 만약 이효리 하면~ 아 팀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깐 안 좋다고 생각해요. 키스나 노출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11. Q. 아이돌 스타가 아한 춤추고 노출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 같아서 안 될 거 같아요. Q. 아이돌 스타가 어떤 행위는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키스, 포옹, 성행위 연상 장면 중. 포옹만 장난으로 하는 거. 노출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춤춘 적 있거든요. 애들하고. 청소년 그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짧은 거 입자고 그래요. 짧은 반바지를 입어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춤 쳤어요. Q. 어떤 춤 쳤는데요? 저 닥터필이랑 기대. 닥터필 곳 이렇게 할 때 누워서 추는 거 있거든요. 할 때 이게 저희가 파인 옷 입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했어요.

15. 네. 현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현아가 좀 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언니들도 말하는 게 개는 명품을 들어도 그 명품이 싸 보인다고 그런 얘기 듣고. 근데 춤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걸레 같은. Q. 춤은 어때? 춤추는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개 노래 처음 들은 게 그거예요. 체인지? 골반 춤이라고

그게 다 한 때 그 거였어요. 전 남자친구랑 했던 행동? 그게 춤이 애기가 들리는 것도 있고, 춤이 춤. Q. 성행위를 연상하는 춤 같은 거야? 네. 골반이 잘 튕겨진다고 해야 되나. Q. 골반 춤이 이상했어? 골반 춤이 이상하기 보다는 개가 하나만 좀 그랬어요. Q. 다른 거는 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가슴골 같은 건 보여도 되는데 요즘에 개인이 피아니스트 남자랑 베드신 하는 건 그냥 보기가 좀 그랬어요. Q. 짹짹춤은? 네. 그냥 민망하긴 한데.

16. 요새 그 깜짝 놀랐는데. 티아라 지연이 솔로로 컴백했는데. 노래 제목이 1분 1초인데 그게 무슨 방송 정지당했다고 계속 하던데. 골반 춤인데 너무 아해서. Q. 어떻게 아해? 그냥 골반을 다리 벌리고 흐느적흐느적 하는데. 그게 방송에 나와서 봤어요. 그리고 지연이 그 캄 사건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연이 데뷔하기 전에 자기 가슴 보여주고 그런 거 땀있었어요. 지연 얼굴이랑 가슴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막 춤도 이상하게 추니깐. Q. 그리고 또 땀 건 없어? 골반 춤은 아하나 Q. 그거 말고 또? 그냥. Q. 노출은 괜찮아? 노출도 적당히 해야죠. Q. 노출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반바지 정도는 괜찮은데. 등 파이고 그런 건. 그런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려고 하니깐. Q. 남자 여자 이렇게 베드신하는 춤이나 이런 건 어때? 그게 귀엽고 발랄하면 되게 보기 좋은데 아한 그런 거부터 좀 근데 그런 게 SBS 인기가요나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게 좀 보기 그래요. 되게 많이. 그것도 만약 아빠랑 보다가 나오면 되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는데. Q. 노래 가사는 어때? 가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19. 여자는 일단 배꼽티. Q. 가슴은? 가슴은 안 되죠. Q. 바지는? 바지는 일단 무릎에서 위에 5CM 정도. Q. 되게 보수적이다 왜 그래? 여자 친구 때문에 그래요. Q. 왜? 그냥 보통 여자애들 보다 살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좀 커요. 그래서 다른 남자애들이 그런 거 큰 여자 보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도 싫고 아하게 입는 것도 싫고 해가지고. Q. 여친 때문에 마인드가 바뀐 거야? 네. Q. 옛날엔 노출 하는 거 좋았는데? 네.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써요. 노출하는 거. Q. 너 되게 좋아하나요. 네. Q. 얼마나 됐어? 252일 됐어요. Q. 예뻐서 좋아하는 거야? 매력 있어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마성의 매력. Q. 춤 같은 거는? 춤에서 보면 너무 막 짹짹춤이나 누워서 하는 춤 이런 거 있잖아. 괜찮아? 아니요. 짹짹만 안하면 돼요. 누워서 아한 거 그런 것만 안 하면 되죠. Q. 남자여자 혼성으로 춤추는 건 그런 건 어떤 거 같아? 키스나 포옹. 그건 아니죠. 포옹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키스 그런 건 아니죠.

22. 솔직히 옷 같은 거는 패션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춤 같은 거는 성관계 같은 걸 연상하게 하는 춤 같은 건 솔직히 좀 아닌 거 같고, TV 같은 건 애들도 다 보니까. 초등학교생이든, 저도 일단 어리고 저도 봤으니깐 다른 어린 애들도 봤을 거니깐 그런 건 너무 좀 아닌 거 같아요. Q. 노출은 다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 그래도 가릴 건 가리면서. Q. 보기 좀 그런 패션 같은 거 있어요? 전에 티아라 화영이가 어떤 애 젓꼭지 노출되었을 때 생방송에서 그건 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개도 일단 피해자였으니깐 그렇다 치고, 현하는 막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막 짧은 바지에 가슴 다 파이고 그런 아한 거 같아요. TV 같은 데 다 나오고 평생 가는 건데 솔직히 개네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Q. 춤출 때 뽀뽀나 스킨십? 그런 것도 좀. 서로가 좋아하는 거면 제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로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 안 가요. 그런 거.

23. 음. 핫팬츠는 괜찮은 거 같은데. 막 파인 옷이나 짧은 치마는 안 될 거 같아요. 배 보이는 티 같은 거도요. Q. 춤 같은 거는 어떤

거 같아요? 춤은 막 엮드리거나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거요. Q. 남자랑 여자랑 붙어가지고 하는 건요? 그런 것도 안돼요. Q. 노출하는 아이돌 스타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현아.

27. 그냥 파인 것 정도. Q. 다른 데는 다 보여도 돼? 하의실종은? 아니에요. Q. 춤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보기 안 좋아요. 너무 아해요. 남자친구랑 TV 같이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소름 돋아요. Q. 왜? 민망해요. Q. 예를 들면 어떤 춤? 현아하고 다른 남자애하고 트러블메이커. 막 만지고 밀에.

29. 옷은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바지는 안 되고 배꼽티까지는 괜찮은데 더 심한 망사 같은 옷은 별로. 짹짹춤은 이해가 안가요. 집에서 혼자 추지. 그건 남자들 고문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Q. 남자·여자 혼성으로 만지면서 춤추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보는 재미는 있어요. 색사하기는 한데 방송에서 그런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다른 가수들도 여걸그룹들이 다 그런(아한) 춤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한 춤이)퍼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 노출 및 춤에 대한 규제 불필요

3. 좀 파인 거 괜찮고, 짧은 치마도 괜찮고, 아예 다 비치는 시스루? 전 괜찮은데? 다 좋은데? 짧은 치마? 시스루? 다 비치는 거까지? 춤 같은 거도 성행위 연상 장면. 짹짹춤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뭔가 멋있는데, 매력 있는데?

4. Q. 아이돌 스타의 노출이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고. Q. 만약 아이돌 스타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거 같다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Q. 트러블 메이커같이 노출하는 가수들을 또래 청소년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6. Q. 아이돌 스타가 아한 춤이나 노출해도 괜찮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개네가 아이돌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거 보고 좋아하죠. 여자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걸레 같아요. Q. 트러블 메이커나 이런 애들이 노출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별로 나쁘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주변에서 막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상관은 없어요. Q. 상관은 없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럼 남학생들은? 그럼 남자애들은 좋아하죠.

8. 별로 이걸 생각이 없는데. Q. 아이돌 스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고 그냥 그래요? 네. 청소년들한테 영향이 있겠조. 뭘 모르는 애들인데. Q. 아이돌 스타가 키스나 포옹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 인생인데.

10. Q. 아이돌 스타의 노출이나 아한 춤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들이 진짜 싫었으면 안했겠조.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방송하는데 뽀뽀 하는 거 싫어요. 욕 나와요. 노출하는 것. 그 것도 걸레 같조. 보면 욕 나오죠.

17. 심하면 여성부에서 다 막잖아요. 여자애들은 별로 안 막는 거 같아요. Q. 남자애들은 어떤 거 같아? 남자애들은 거의 안 벗어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냥 윗도리 탈의. Q. 근데 그게 불만이라며? 요샌 안 벗어요. 요샌 그런 애들이 없어요. 벗는 시선이 아닌가 봐요. 개들(여자)은 맨날 벗잖아요. Q. 남자가 안 벗어서 불만이야? 네. Q. 춤은? 춤도 아하잖아. 그냥 뭘 춤이 남사스럽거나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Q. 남자애들은 안 아해? 네.

18. 키스. Q. 노출은? 노출은 별 상관없는데. 여자애들 다 벗는 거 말고 가릴 것은 가리고, 비키니를 입어도 아무 감정이 안 들

거 같은데. 전 여자니깐. Q. 남자들은? 웃통까지는 괜찮아? 네. Q. 키스는 괜찮은데, 성행위 들어내는 건 안 좋다? 그 마녀의 연애에서 나오는 거 엄청화랑 박서준이랑 살짝 행위 하는 거 나오는데. 그냥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24. 아니요. 전 그런 거 없어요. Q. 다 벗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릴 건 가려야죠. 꼭지랑 밑에. Q. 그런 부분만 가리면 돼요? 그건 좋죠. Q. 방송에서 청소년들이 봐도 괜찮은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요. 어차피 요즘엔 빨라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다 알잖아요. Q. 아한 춤 같은 건요? 좋죠. Q. 성행위 이런 것도? 네. Q. 키스나 포옹은요? 네.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25.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Q. 아이돌 스타의 심한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 Q. 보기 싫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Q.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죠. 개네를 안 보면 그만인데. TV를 봐야지 나오는 건데. Q. 성행위 연상이 되는 춤을 추는 건 어떤 거 같아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Q. 그럼 키스나 뽀뽀, 포옹 중에 허용 가능한 건 뭐예요? 키스는 안 되고 뽀뽀는 되겠죠. 포옹은 안 되고. Q. 노출 같은 것도 다 괜찮아요? 네. 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26. 바다나 해수욕장 놀러 가면 비키니 입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잖아요. Q. 방송에서도? 너무 아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 만약 너의 여친이 한다면? 그건 안 되죠. Q. 춤은? 춤은 딱히 아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춤은 자기들이 안무를 다 짜는 거니까. 비하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30. 현아랑 현승이 춤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너무 아해서. 차 안에서 그런(성행위하는) 부분이 있어서. Q.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요. '내일은 없어' 였나. Q. 노출은? 노출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팬티같이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내 놓은 것도 별로. Q. 방송에서 남자, 여자가 키스하고 포옹하는 건 어때? 어차피 드라마에서 다 보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요.

<표 I-16>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질문: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모두 말씀해주시시오.

1. 손나는. 에이핑크, 얼굴이 제 이상형이요. 전 손나는 밖에 없어요. 남자는 배우 밖에 안 좋아해요. 차승원, 이병헌, 하정우.

2. 에이핑크(손나는), 포미닛(현아), 수지.

3. 시스타 효린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걸스데이 요변에 멋있었어요. 그리고 블락비. 블락비는 뭔가 진짜 개성 있게 생겨서 좋고, 시스타는 모르겠어요. 원래 좀 괜찮았어요. 노래 잘 불러서. 걸스데이는 요변에 남친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 진짜 싫었거든요. 남자친구랑 같이 보는데 치마 한 쪽은 다 뚫려가지고 왜 진짜 계속 들어놓나 했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TV 봤는데, 제 친구들도 좋아하고 남자친구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재네 보고 예쁘구나 하고.

4. 없어요.

5. 딱히 없어요.

6. 없어요.

7. 김태희랑 원빈이요.

8. 없어요.

9. 이민기.

10. 인피니트.

11. 엑소.

12. 소녀시대, 그리고 김유빈이랑 유재석.

13. 리쌍, 다이아믹듀오, 빈지노, 데프콘, 조용필.

14. 아이돌은 아는데 정인이라고 있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가 좋아서. 저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15.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16. 여자는 포미닛. 현아는 별로. 근데 포미닛 개네가 웃 입는 것도 고급스럽고. Q. 근데 포미닛 개네도 아하게 입잖아? 아한데 좀 웃을 있어보이게 입어요. Q. 그리고 또? 2NE1. 근데 개네도 되게 멋있어요.

17. 주지훈이나 김재욱. 김동욱인가 이종욱인가. 가수는 엑소 밖에 없는데.

18. BTOB 이민형. 엑소 세훈이랑 카이, 모델 안재현.

19. 에이핑크, 걸스데이, 포미닛. 남자그룹은 필요 없어요.

20. 아이돌 스타는 없는 것 같아요. Q. 왜?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가수들을 좋아하죠. 포맨, 개네는 그냥 가수예요. 남자 가수. 김범수, 박효신, 니엘, 이정, 김진우. Q. 여자는 없네? 여자도 있죠. 노래 잘하는 거. 손승연이나 이은미. 윤미래. Q. 아이돌은 없네? 아이돌에 속하는 애들 노래잘하는 소녀시대 태연이나 그런 애들은 개인적으로 노래 잘하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룹 단체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21. 걸스데이.

22. 빅뱅 권지용. 그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잘생겼네 이 정도. 막 다른 애들처럼 팬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요즘 다 잘 생겼는데 되게 잘생겼네 이런 정도지.

23. 전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영화배우 좋아해요. 소지섭이나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24. 저는 남자 좋아해요. 윤민수, 신용재. 노래 잘하는 남자.

25. 지금은 없어요. 지금 개네는 한효주. 한효주가 좋아요.

26. 현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Q. 현아는 뭐가 그렇게 좋아? 춤추는 거. Q. 어떻게 추는데? 색시하다고 해야 되나. Q. 아하게 추나보지? 그런 춤을 많이 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아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그런 춤을 많이 추는 것 같아요.

27. 초등학교 때 사이니 빼고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배우 김유빈하고 공유. 잘생겼어요.

28. 걸스데이 말고 없어요.

29. 2am 개네 노래 잘 불러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은 노래 같지 않은 노래 부르니까 발라드 가수가 좋아요. B1A4랑 엑소도 노래 괜찮아요. 그런데 엑소는 춤출 때는 별로예요. 엑소는 춤을 아하게 추진 않는데 너무 오버해서 춤추는 것 같아요. 여자들 시선에 선 멋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로는 별로예요. 손바이 오그라 든다고 해야 되나.

30. 방탄소년단. 신인인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Q. 몇 명인데? 6명이요. 작년에 나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노래는 좋은데 잘 안 떠요. Q. 너는 어떻게 알아? 노래를 딱 듣고 정말 좋았어요.

<표 I-17> 좋아하는 영상물

질문: 좋아하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1. 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잖아요. 진짜 사나이. 군대 그거 군인들 프로젝트나간 나중에 군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거 같아서.
2. 런닝맨, 무한도전, 뮤직뱅크.
3. 애기들 나오는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귀여워서. 그걸 볼 때마다 애기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4. 한국영화 같은 거 자주보고, CS I 범죄물 많이 봐요. 그런 것보다는 한국 거 많이 보는데, 그게 자주해서 자주 봐요.
5. 거의 노래 쪽을 좋아해서 엠카운트다운.
6. 동물농장, 음악 프로그램 안 봐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엑소 팬들처럼 관심 있는 게 아니어서.
7. 천상여자, 골든크로스.
8. 그런 거 없어요. 잘 안 봐요. TV만 봐요. 핸드폰으로도 잘 안 봐요.
9. 그 저 영화에서 해운대 열다섯 번 봤어요.
10. 런닝맨, 우걸, 끝이에요. 안 봐요.
11. TV 잘 안 봐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을 때 어쩔 때 잠시 보고, 뮤직비디오는 친구가 볼 때 그냥 옆에서 한 번 잠깐씩 보고.
12. 런닝맨.
13. 드라마, 저 거의 TV 딱 켜면 애니메이션만 봐요. 짱구.
14. 지금은 그냥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런닝맨.
15. 뮤직뱅크.
16. 요새 TV를 잘 안 봐서. 드라마 같은 거요? 그런 거 딱히 없어요. 음악프로는 옛날에 봤는데 뮤직비디오는 잘 안 봐요.

17. 마녀사냥.
18. 주간 아이돌은 어쩌다 보고, 엠카운트다운 그런 것들.
19. 뮤직비디오랑 쇼 음악 중심이랑 1박 2일 그런 거요.
20. 퍼펙트싱어, 불후의 명곡.
21. 런닝맨, 너희들은 포위됐다. 닥터이방인.
22. 슈퍼맨이 돌아왔다 디게 좋아하고, 무한도전, 군대 TV를 잘 안 봐서. 랫미인 성형수술 프로그램.
23. 영화 야동 그런 거 말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수위가 낮은 그런 영상. 막 다 벗고 그러는 거 말고, Q. 어떤 영화요? 막 어른들이 보는 19금 영화요. 근데 수위가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따로따로 있어요. Q.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요? 네. Q. 영화 제목이 뭐예요? 간기남 같은 그런 거요. Q. TV 프로그램 이런 거는? TV에선 그런 거 웬만하면 안 나와요. Q. 막 야한 거 말고, 아빠 어디가랑 슈퍼맨이 돌아왔다. Q. 뮤직비디오 이런 건 안 봐요? 뮤직비디오 그런 거는 휴대폰으로만 봐요.
24. 저는 진짜 사나이.
25.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TV를 잘 안 봐요. 저 예능도 안 봐요. 만화밖에 안 봐요. 원피스, 밥 먹을 때 TV도 안 봐요. 핸드폰만 봐요.
26. 뮤직뱅크.
27. 런닝맨.
28. 무한도전, 개그콘서트.
29. 런닝맨, 1박2일.
30. 음악방송 좋아해요. 엠카운트 다운이나, 뮤직뱅크랑, 우리동네 예체능.

<표 I-18> 즐겨보는 영상물

질문: 즐겨보는 영상물(방송, 공연, 뮤직비디오)은 무엇입니까?

1. 그거(진짜 사나이)밖에 안 봐요. TV를 잘 안 봐요.
2. 무한도전, 웃겨 죽겠어요.
3.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만 봐요. 다른 건 잘 안 봐요.
4. 한국영화 많이 봐요.
5. 런닝맨, 무한도전.
6. 동물농장.
7. 슈퍼맨이 돌아왔다.
8. 접촉 경험 없음.
9. 잘 안 봐요. 이민기가 TV 프로그램 안 나와서.
10. 런닝맨, 우걸.
11. 접촉 경험 없음.
12. 런닝맨.
13. 런닝맨이랑 닥터이방인, 너희들은 포위됐다. 안녕하세요.
14. 그거 두 개(무한도전, 런닝맨) 제일 즐겨보고, Q. 왜 즐겨보는 거 같아? 뭔가 약간 부담 없다 그래야 되나.
15. 뮤직뱅크. Q. 왜 좋아해?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거기서 신곡

같은 거 듣고 노래 다운받고 듣는 거 좋아해서.
16. 핸드폰 있어서 TV를 잘 안 봐요. Q. 핸드폰으로는 뭘 봐? 페이스북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Q. 왜? 그게 재밌어? 네. 요새는 흥진영하고 남궁민 나오는데. 그냥 재밌어요.
17. 마녀사냥 즐겨 안 봐요. 시간 날 때 핸드폰으로 재방송. Q. 평소에 관심 없어? 네. Q. 그럼 너는 뭐에 관심 많아? 어제까지 만난 남자친구랑 잘생긴 남자.
18. 유튜브로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남자아이들 춤추는 거. 엑소랑 BTOB. Q. 보통 여자 춤 따라하지 남자 춤 따라해? 남자는 보면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설렌다고 해야 되나?
19. 1박 2일이죠. 요즘 재미없어서요. 볼 거 없어서 봐요.
20. 재미있는 영상인데 무한도전에서 찔로 해서 재밌는 부분 올라오는 그런 거. 자주 보죠.
21. 즐겨보는 영상물도 좋아하는 영상물이랑 같은 거야? 네. 그런 거죠.
22. TV를 일단 잘 안 보는데, 그냥 막 보면 TV 채널 돌리다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없으면 TV 다시 그 다시보기 들어가서 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 보고, TV를 볼 시간이 잘 없어서 안 봐요.

23. 즐겨보는 건 아까 말한 게 다예요.

24. 자주 보는 것도 진짜 사나이. Q. 뮤직비디오나 이런 건? 한 번씩만 보죠. 이제 처음 나온 뮤직비디오랑 노래랑 들으면서 같이 보죠. Q. 유튜브에서 주로 봐요? 네. Q. 어떤 뮤직비디오? 저는 여자가수 안 좋아해요. 남자가수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봐도 불후의 명곡 산용재 거.

25. 접촉 경험 없음.

26. 막돼먹은 영애씨.

27. 무한도전하고 런닝맨. Q. 왜 재미있어? 유재석이 재미있어요. 애기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28. 무한도전.

29. 런닝맨, 1박2일 같은 예능.

30. 드라마요. 왔다 장보리. Q. 그건 뭐야? 복수극 같은 건데, 그거 보면 화가 나요.

<표 I-19>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질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 같아요.
2. 10시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계속 보니까 계속 봐요. 페이스북 같은 거 애들이 올려놓은 게시물. 페이스북으로 친구관계 맺은 개체들이 올리는 거. 심심하니까 봐요.
3. 거의 24시간 정도. 잘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열~. 거의 새벽까지
4.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잠들 때까지 해요.
5.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맨날 갖고 있으니까 할 거 없으면 핸드폰만 쓰게 되니까.
6.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
7.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8. 하루 종일.
9. 하루에 거의 반나절 잘 때만 빼고
10. 잘 때 빼고.
12. 24시간이잖아요. 잠을 8시간 정도 자니까. 15시간 정도. 잘 때 빼고 계속해요.
13. 잠잘 때 빼고 다요. 12시간 넘는 거 같아요.
14. 2시간.
15. 그냥 하루 계속. Q. 그냥 스마트폰을 틀어놔? 네. 이용하는 것도 거의 두 시간씩. 아니 한 열 몇 시간은 하는 거 같아요.
16. 그냥 일어나서 눈 뜨면 핸드폰 확인하고 씻을 때랑 밥 먹을 때랑 잘 때 빼고는. Q. 그러면 한 17시간 이상 되겠네? 네. Q.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 하루에 12시 좀 자서 8시에 일어나요. 학원에 있을 때는 잠깐잠깐 하는 거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하고.
17. 다섯 시간. Q. 어디서 해? 집에서. Q.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야. 다섯 시간 넘는 거 같아요. 켜놓기도 하고 만지작 하기도 하고. 여덟 시간, 여덟 시간 정도 될 거 같은데.
18. 학교에서나 애들이랑 놀 때는 안 하고. 잠자기 전에 4시간.
19. 24시간 중예요? 12시간. 좀 넘을 거 같은데. Q. 잠잘 때 빼고 다하는 거야? 거의요. 잠잘 때는 안 하죠. 자야 되니까.
20. 일할 때 사용하는 거 빼고. Q. 무슨 일 하는데? 배달이요. 치킨. Q. 돈 많이 벌겠네? 아니요. Q. 얼마 벌어? 한 달에 1800이요. Q.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부터 새벽 4시. 그렇게 하면 몇 시간 자고 학교 와서 자고. Q. 왜 그렇게 알바를 해? 돈 모아야죠. Q. 돈 모아서 뭐하게? 돈 모아놓고, 군대를 갔다 왔거나 그 때 할 게 있겠조? Q. 얼마 모아놔서? 저 한 달에 150만원씩. 첫 달 했고, 요번이 두 번째 달 해가지고 300. Q. 하나도 안 썼어? 하나도 안 쓰죠. 쓸 게 뭐 있어요. 밥은 가게에서 먹고 옷 같은 거 살 필요가

뭐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Q. 어떤 거?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바지 터져서 수선해야 되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만 쓰죠. Q. 얼마한테 용돈 안 받아? 안 받죠. 나이가 몇 인데 용돈을 받아요. Q. 왜 이렇게 문신을 했어? 문신 집 가서 한 거죠. Q. 얼마 주고 한 거야? 이거는 10. 이거는 5만원. Q. 그건 네가 알바 한 돈으로 한 거야? 아니요. 그냥 공돈이었어요. 남아도는 돈 잘 모르겠어요. 다 작년에 한 거라서. Q.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친구(남자)하고 같이 한 거고. 이거는 여자 친구 그 쓴 거고. 이거는 교우(남자)한테서 두 개 가져온 거예요. 교우는 친구한테 있고, 저한테 아신 있고. Q. 근데 네가 보기에 멋있어? 저는 남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Q. 그럼 왜 한 거야? 그냥 막 새기고 싶어요. Q. 또 있어? 아니요. 이거 밖에 없어요. Q. 그거 하면 좋아? 이것도 좀 엄연한 중독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데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엔 여기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 Q. 지울 수 있지? 네. 지울 수 있죠. Q. 아프겠냐? 네. 많이 아파요. Q. 애들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 저희 학교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교에 양아치가 많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복도 지날 때 담배냄새 안 났어요? Q.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 1~2시간 반.

21. 열 몇 시간. 대부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잘 때 빼고.

22. 그냥 핸드폰은 하루 종일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Q. 수치로 한다면? 일단 반나절은 넘고 16시간에서 18시간. 일어나서 자는 시간까지니까.

23. 거의 24시간.

24. 자는 시간 빼고. Q. 수치로 나타낸다면 어떤 거 같아요? 최소한 16시간 이상.

25.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런 거 빼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버스 올 때랑. 거의 하루 종일 쓸 걸요? 일할 때도 거의 핸드폰 보니까. Q. 수치로 나타낸다면? 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8시간, 6시간 빼고 18시간. 16시간 정도 만지고 있겠조.

26. 자고, 밥 먹고, 놀고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붙잡고 살아요. Q. 그게 몇 시간인 거 같아? 하루에 5~6시간. Q. 5시간, 6시간밖에 안 돼? 제가 잠이 많아서.

27. 잘 때 빼고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이요.

28. 4시간. 컴퓨터를 많이 해요. Q. 컴퓨터를 통해서 뭐해? 게임이요. Q. 무슨 게임? 온라인 게임이요. 피파. 서든어택, 롤, 스타. Q. 게임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해? 5~6시간.

29. 잠잘 때, 수업할 때 빼고는 거의 붙들고 있어요. 하루에

8~10시간 정도.

30. 수업할 때 빼고는 거의. 4시간 정도.

□ 기타

11. 저 핸드폰 없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줬는데 두 번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폴더 유행했을 때 썼어요.

<표 I-20>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질문: 스마트폰 프로그램 중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메라, 또 아자르도 좀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심심할 때, 네이버 웹툰, 만화 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페이스북. Q. 페이스북 통해서 뭘 해요? 그냥 되게 뭐 많잖아요. 종류가. 친구들 거 보고, 아니면 페이지라고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보고, 웃긴 사진 같은 거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글귀? 삶에 동기 부여를 주는 거 많더라고요.

2.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자르도 했었어요. 랜덤채팅 같은 거 안 하고. Q. 아자르에서 뭐했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놀았는데. 욕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시비 걸고, 남자들 여자들 예쁜 여자 나오면 길게 얘기하고 욕은 안하고, 카카오톡 하자고 한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카카오톡 하자니깐 개가 안했어요. 하기 싫대요. 제 또래 여자였어요. Q. 욕은 왜 했어? 욕은 개네들이 하길래 우리나라 애들인데, 대뜸 보자마자 되게 못생겼다고 욕하던데. 욕할 때도 있고, 귀찮아서 넘길 때도 있고. Q. 얼마나 한 번 씩 해? 혼자 있을 땐 안하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심심할 때 아자르나 하자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두 세 번. Q. 채팅하면 뭐라고 말 해? 외국인 나오면 바로 넘겼는데. 예쁜 여자 나오면 말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제 또래면 '어디 살아요.' 얘기하다가 언제 한 번 와 예쁘다 하면 개가 고맙다고 하죠. '언제 한번 카톡하시겠어요.' 하니깐 개가 하기 싫다고 해서 넘겨버렸어요.

3. 웹툰 보거나 Q. 어떤 웹툰 봐? 웹툰 내용은 그냥 연애. 좀 웃기는 거 코미디. 그리고 그냥. 웹툰은 그 뭐지 프리드로워? 또 예전 거 봤는데, 지금은 안 봐요. Q. 또 다른 거 안 해? 페이스북, 애들 메시지 같은 거 보고. Q. 카카오톡은? 카톡도 하죠. Q. 친구들도 많이 봐? 네. 좀 보는 애들은 봐요. Q. 랜덤채팅은? 그건 안 해요. Q. 아자르 해 봤어? 해 보긴 해봤어요.

4. 페이스북 카톡이요.

5.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런 거.

6.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근데 그거 두 개 말고는 하는 거 없어요.

7. 페이스북, 카카오톡, 노래 듣는 거랑, 메신저.

8. 카톡하고 페이스북.

9. 페이스북이랑 사진 찍는 거

10. 카톡, 페이스북.

11.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걸로 페이스북 해요.

12. 메신저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해요. 페이스북은 좋아요 누르면서. Q. 랜덤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13. 게임하거나 쿠키런, 모바일 게임이나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에선 그냥 애들이 공유한 거 심심할 때 봐요. 페이스북 내용에 웃긴 거 밖에 없어요. 카톡하는데 카톡 좀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싫어요. 카페 같은 거 해요. 랜덤채팅은 이제 안 해요.

Q. 랜덤채팅은 언제 했어? 중딩 때. 낯선 채팅인가? 그랬어요. 심심해서. 그냥은 지금은 재미없어요. 네. 호기심도 있고 그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애들끼리 그렇게 노니깐. 놀리고 하니깐.

14. 스마트폰 게임. 그냥 농장게임 같은 거 테트리스, 그런 거 폰 만지는 시간 두 시간. Q. 전화 오는 거 받고? 네. Q. 페이스북 안 해? 하는데 잘 안 해요. Q. 채팅 같은 거? 잘 안 해요. Q. 카톡 같은 거 안 하고? 폰은 잘 안 만져요.

15.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통화도 하고. Q. 이용하는 채팅은 뭐야? 카카오톡이랑 돈독. Q. 게임은 어떤 걸 해? 테일즈러너 모바일 게임. 애니팡 두 개 하고, 없어요.

16. 페이스북이랑 웹툰 보고, 또 카카오톡. 게임하고. Q. 웹툰은 어떤 내용이야? 웹툰은 처음 보고 있거든요. 그냥 그 대학 다니는 얘기. Q. 게임은 어떤 게임 해? 트레지? 애니팡 2, 3 자주 해요. Q.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걸 봐? 페이스북 친구되어있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Q. 랜덤채팅 해본 적 있어? 네. 옛날에 해봤어요. Q. 근데 지금은 안 해? 네. 여기 들어온 뒤로. Q. 언제 하고 안 해? 겨울, 작년 겨울.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올 1월 2월?

17. SNS, 카톡이랑 그 다운로드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페이스북, 카톡. 그 뭐라고 해야 되지. Q. 랜덤채팅 해본 적 있어? 네. 해본 적 있어요. 한참 유행할 때.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는 다운 사이트. Q. 파일공유사이트나 P2P?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버그 써가지고 돈 안줘요. 버그 쓰는 거 같아요. 이런 아이디 주인이. Q. 남의 걸로 하는 거야? 아는 오빠 꺼. Q. 그걸로 뭐 다운 받아? 영화나 만화랑 그런 거. Q. 아한 것도 있어? 네. 가끔씩 보는 거, 아니면 그 오빠가 다운 받는 거 같이 쓰니깐 그 오빠가 받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거나. Q. 그럼 그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아? 네. 알아요. 그래도 저는 제 거 다 기록 지워요. 다운 받은 거. Q. 돈은 그 오빠가 내고? 이게 알아보니깐 자동으로 정액 충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데. Q. 뭐라고 안 해? 네. 지가 옛날에 알려준 거예요. 사귄 때 쓰라고. Q. 안 사귀는 데도 아이디 사용해도 되는 거야? 자번에 안 사귄 때도 아이디 까먹어가지고 아이디 좀 보내달라니깐 알려줬어요.

18.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그거 밖에 안 해요. Q. 랜덤채팅? 옛날에. Q. 카톡? 네.

19. 페이스북. Q. 페이스북에선 뭐해? 애들이랑 글 올리고 댓글 달고, 네이버 웹툰이랑. Q. 네이버 웹툰에서 주로 어떤 거 봐? 저는 베사만도 봤었는데, 그거 끝나가지고 이제 못보고 지금 강해요랑 가도바이 스쿨이라 보카방이랑 엄청 많아요. Q. 어떤 내용이야? 싸우는 거요. 그리고 평범한 팔방. 미션 임파서블인가. Q. 너는 주로 웹툰 많이 보는 거야? 아니요. 게임 많이 해요. Q. 무슨 게임 해? 케로로 팡팡 같은 거. Q. 하루에 얼마나 해? 게임은 한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전부 다 페이스북이에요. Q. 랜덤채팅

같은 거 안 해봤어? 돛단배.

20. 페이스북이랑,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재밌는 동영상. Q. 야한 거 안 때? 야한 것도 가끔 뜨는데. 보지는 않죠. Q. 넌 성인물 안 봐? 안 본지 몇 년 됐어요. 4년? 막 한심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있는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Q. 언제 본 거야? 중학교 1~2학년 때까지 봤죠. 근데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좀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이런걸 보고 있는 거 자체가 막 말로 이 시간에 영어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있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안 봤어? 네. Q.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보잖아? 근데 별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Q. 왜? 그것도 그래도 개인의 저기일 뿐이지.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거를 보고 현실과 동영상을 착각을 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로 넘어가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그걸 보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Q. 페이스북에서 주로 뭐 봐? 웃긴 동영상? 이런 거나 아닌 글? 사진. 신기한 사진 이상한 사진 이런 거. Q. 게임은 안 해? 게임 해요. 컴퓨터 게임. 피파. 옛날엔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21. 페이스북. 애들이랑 연락하고 애들 거 공유하고 애들 올린 거 막 그런 거 본 거. Q. 어떤 거 공유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노래 부르는 거 소름 돋는 라이브라고 있어요. 사이트 같은 거 따로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도박. 제가 도박을 해요. TOTO, 사다리게임, 바카라 이렇게 해요. Q. 그거 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세 개를 해요. 돈을 벌고 스마트폰을 보고 입금을 시키고 배팅을 해서. Q.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야? 불법으로 하는 거죠. 그냥 돈 벌려고. Q. 얼마 벌었어? 몇 천 만원 벌었죠. 많이 벌었죠. Q. 그 돈 가지고 뭐했어? 그 돈으로 옷 사고 막 그러고 쓸 거 쓰고. Q.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그냥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 스포츠 세계, 도박 세계 그런 게 있어요. 쌤은 모르는데. 전용 사는 짝? 이런 거 말해주면 안되는데. 토트 있어요. 픽 짝 다 갈아줘요. 요번에 애가 애가 이길 거 같고 그러면 조작을 해서 전 돈을 안 주고 해요. VIP 고객이라 그냥 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하면 이길 것 같은 데 믿고 해봐라 해서 배팅하고 이기면 돈 받는 거죠. 돈 존나 빨리 벌어요. Q. 얼마 같은 거 할 필요 없겠네? 네. Q. 날린 건 없어? 날린 것도 있죠. Q. 얼마나 날렸어? 한 500. Q. 그래서 얼마나 댔어? 500달러서 1500. Q. 몇 년 했어? 얼마 안됐어요. 한 6개월 7개월. Q. 어떻게 알게 됐어? 그냥 애들, 친구들 하고 아는 형이 소개해서. Q. 너는 되게 잘 따는 거야? 운 짝이 좋은 거죠. 잘 짝는 거죠. 필이 있어요. 머릿속에 조작을 하고 생각을 해봐요. 애네가 해 온 전적 이런 거 있죠. 승 패 이런 거 다 봐요. 그러면 승 많은 애가 이길 것 같아요. 공격수가 예를 들면 88% 74예요. 수비수 이런 거 다 봐요. 그럼 계산을 해요. 둘이 합쳐요. 그러면 아 애네가 잘하겠구나. 아무리 애네가 높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애네가 잘할 때도 있는 거고. 지금 경기에서 했던 승패를 따졌을 때. 애네 이길 거 같으면 애네한테 가는 거죠. 이번엔 대한민국 할 때도 무승부에 걸었는데. 무승부였잖아요. 60. 그리고 또 브라질 멕시코 이것도 무승부 무승부된 거죠. 알제리 벨기에 내가 보기에 알제리 개발된다 그래서. 셋 다 다 댔어요. 상금 360만원. 내가 계좌를 쓰는 거죠. 입금했다고 거기서 확인 하라고. Q. 그 돈으로 뭐해? 모아놓고, 금 사고 반지 이런 거 사고, 나중에 이득 보려고. Q. 여친은? 커플링 있어요. 근데 놓고 와서 욕먹었어요. Q. 여자 친구한테 뭐 해줬어? 반지 해 주고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지갑. 그리고 같이 놀 거 다 놀죠. Q. 다른 거 뭐 했어? 토트랑 바카. 바카는 원카드 이런 거. Q. 랜덤채팅 해봤어?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날린 게 여자인데. 여자 많아요. 저, 알아요. 이미 다 말했어요.

제가 건넌 게 900명 넘어요. 유명해요. 저 천안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요. 물어봐요. 천안 1번이 누구냐고. 제 별명이 원숭이예요. Q. 몇 살 때부터 했어? 4학년 때부터 첫 경험을 했다고요. Q. 어떻게 한 거야? 합의 하에 해서. Q. 개네는 뭐하는 애들이야? 초등학교 친구들. 화장실에서 먹었어요. 그냥 계속 한 거죠.

22. 일단 페이스북, 카카오톡이랑 음악 같은 것도 자주 듣고. Q. 음악은 어떤? 다운로드요? 그냥 무료로 다운 받는 그런 거? 돈 안내고? Q. 랜덤채팅 이런 건 안 해요?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유행인 거 같아요. 그냥 예전에 하면 재밌어 보이니까 같이 하고 거기서 막 랜덤이니까 서로 만나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하다가 안하고 지금은 안하고. 그냥 재미인 거 같아요. 심심할 때 하는 거? 지금은 안하고? Q. 예전에 했던 랜덤채팅은 없어요? 돛단배랑 그 뭐지? 낯선 사람과의 대화인가 어떤 게 있었는데? 돛단배를 애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Q. 반해서 많이 썼어요? 반이랑기보다는 일단 자랑 어울리던 애들이나 그런 애들.

23.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톡. Q.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네. Q. 랜덤채팅 이런 건 이용했었어요? 네. 해봤어요. Q. 어떤 거요? 랜덤채팅 말고 랜덤 영상인가 아자르라고 어플. Q. 지금도 해요? 아니요. 그거 얼마 전에 애들이 재밌다 길래 잠깐 깔아서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Q. 다른 건 해본 적 없어요? 네.

24. 저는 페이스북하고, 아프리카 TV. Q. 카카오톡은 별로 안 한다고 했죠? 네. 페메가 있으니까. Q. 랜덤채팅은요? 랜덤채팅 이제 안 해요. 신고 먹었어요. Q. 화상채팅 이런 건 해본 적 있어요? 네. 아자르. Q. 아자르는 지금도 해요? 아니요. 친구가 야한 짓 했다가 막 여자방 찾아가지고 지 꼬추 사진 보여주다가. 개가 들어가서 제가 신고 먹어가지고 강등 당했어요. Q. 아예 못 들어가죠? 네. Q. 여자 만나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여자 만나면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신고하고 나간 거죠. 신고가 누적 되니까요. Q. 근데 왜 보여준 거예요? 몰라요. 저 자고 있을 때 일어나니까 막 매니큐어 발라져 있고. 그래서 때렸어요. Q. 아프리카TV 이런 거. 인터넷 방송 봤어요? 네. Q. 자주 봐요? 맨날 보죠. Q. 어떤 거 봐요? 게임. Q. 게임 중계하는 거요? LOL이나 서든이나 피파. 제가 좋아하는 것들. Q. 근데 거기 BJ들이 야한 노출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다른 TV. 워크 TV였나. Q. 그건 본 적 없어요? 비비리 오일 바르는 거 봤어요. 예뻐요. 아 상상했어. Q. 거기는 그런 야한 것만 있는 데예요? 제가 방금 말한대요? 네. 거기는 대부분 노출하죠. Q. 친구들 많이 봐요? 아니요. 그거는 성인인증이 되게 심해요 핸드폰 중복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성인 주민번호만 알면 안돼요. 그제 핸드폰 번호도 알아야하고, 결제를 해야 되요. Q. 아프리카 BJ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노출이 심하면 19금이 걸려요. Q. 그건 성인인증해도 못 봐요? 전 성인인증 안 해봤어요. 제 주민등록번호로 해놔서 성인인증 못해요. 그렇게 야하지도 안해요. 뭐가 나와요. 가슴골 살짝 나온다고 19금 걸려요. Q. 가슴 노출하는 게 많았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 맨날 보는데. 그건 절대 야한 게 아니에요.

25. 카톡, 페이스북, 네이버 웹툰, N드라이브, 네이버, 음악. Q. 웹툰은 어떤 거 봐요? 거의 다 볼 걸요. 월요일엔 강시, 화요일엔 노블레스, 수요일엔 헬퍼, 목요일에는 기, 금요일엔 가도바이스쿨. Q. 요일별로 하나씩 봐요? 네.

26. 페이스북 많이 해요. 페이스북하고 카톡. Q. 거기서는 뭐해?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심심할 때 재밌는 거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보고. Q. 그렇게 보는 게 5시간이 넘어? 게임도 가끔 하고. Q. 무슨 게임? 마블. Q. 온라인 게임은 안 해? 온라인게임은 딱히 흥미가 없어가지고.

27. 페이스북이랑 카톡해요. Q. 거기서 뭐해? 뉴스피드에 올라오

는 거 봐요. Q. 내용이 어떤데? 동영상도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와요. Q. 누가 올린거야? 페이지 관리자요. Q. 재미있어? 네. Q. 왜 재미있어? 다른 거는 할 게 없으니까. Q. 카톡은? 카톡은 친구들이랑. Q. 랜덤채팅 해봤어? 봤어요. 학교에서 애들 하는 거. Q. 너는 직접 해보진 않았고? 네. Q. 화상채팅은 해봤어? 아자르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아자르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Q. 게임은 안 해? 게임은 가끔 해요. 캔디크러쉬.

28. 페이스북, 카톡. Q. 랜덤채팅은? 랜덤채팅은 안 해봤어요. 아자르는 해봤어요. Q. 페이스북에서 뭐해? 애들이 글 올리는 거 보거나 올라오는 동영상 같은 거 봐요. Q. 성인물 같은 거? 볼 때도

있고, 웃긴 거랑 무서운 거. Q. 카톡은? 카톡은 애들이랑 필요한 말만 하고 안 해요.

29. 페이스북이나 게임 같은 거. Q. 페이스북에선 뭐봐? 애들이 웃긴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는 동영상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Q. 게임은? 캔디크러쉬나 쿠키런 등등, 혼자 있을 때, 버스타고 가거나 할 때 해요. Q. 랜덤 채팅은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Q. 아자르는? 아자르는 해봤어요.

30. 애니팡 같은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폐북하거나. 트위터 같은 거 살펴보고. Q. 채팅도 해봤어? 채팅은 안 해보고, (카톡으로) 아는 친구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표 I-21>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

질문: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 SNS

4. 아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 있어요. 어 막 그냥 폐북에요. 아한 사진 막 많이 올라오고 내리다가 막. 나왔어요. 누가 막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그러다보면 내리다 보면 그게 막 떠오.

6.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본 적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Q. 페이스북에서는 본 적 없어요? 페이스북 보다보면 떠오. 누가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달아서 떠오.

7. Q. 음란물이나 성인물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은 아동 페이지가 있어요.

8. 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누가 어떤 페이지에다가 올려요. 야동을, 그냥 페이스북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떠오.

10.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폐북에 그게 떠오. 남자애들이 놀러서, 좋아요 누르고 공유 놀러서 떠오.

12. 문자 받아서 들어가봤어요. 페이스북은 그냥 내리다보면 나와요.

13. 페이스북에 애들이 공유하니까. 애들이 공유하는 거면 애들이 왜 이런 거 공유하나 하고.

16. 그건 그거 밖에 없어요. 페이스북. Q. 네가 원해서 봤어? 페이스북에 페이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페이지들을 누가 만들어요. 그럼 그걸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저한테 뜬단 말이에요. Q. 너도 봤어? 근데 저는 요새 안 봐요. Q. 그럼 언제 봤어? 그러니까 막 사진이나 그런 거는 랜딩인데, 동영상 같은 거는 이제 징그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Q. 어떤 내용이야? 그냥 관계하는 거 있던데, 자세하게 나오니까 징그러워요. 바로 직접 찍은 거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막 징그러워요. 안 뜬으면 좋겠는데. Q. 그게 그렇게 많아? 네. 많아요. 막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또 그게 막 저한테 보여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재미있는 사진이라는 페이지도 있고 아님 아한 사진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떠오. 맨날 맨날 뜨진 않는데 지하철 같은데 있으면 페이스북 내리고 있으면 그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Q. 그럼 SNS 말고는 없어? 페이스북 말고는 초등학교 때는 가수를 뮤직비디오 보면 채연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채연이 막 그랬는데 동영상 뮤직비디

오 그런 거 되게 아했거든요. 그 때는 되게 어렸으니까 짧은 옷 입고 남자들이랑 춤추는 것만 봐도 아했거든요.

17.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딱 떠있고요. Q. 너 지금 다운 받는데 이름이 뭐야? 파일노리. 거기는 성인인증 해야 되는 사이트예요. Q. 처음 들어갈 때만 하는 거잖아. 네. Q. 또? 파일노리밖에 없는데.

20.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접촉해본 적 있어? 네. Q.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뭐야? 그냥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데 가끔씩 올라와요. 흔히 말하는 야동이. Q. 네가 안 보려고 해도? 네.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동영상이 떠서. Q. 누군가 '좋아요' 를 누르면 너한테 뜨는 거지? 네. 그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페이지 관리자들이 뜬금없이 올릴 때도 있고 야동을 밤 12시부터 1시 사이. Q. 근데 원래는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 올리면 안 되죠. 근데 페이스북 하는 애들도 '좋아요' 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번대요. 스폰도 생기고 광고 제의도 들어오면 그거로 돈을 벌 수 있대요. 개네들도 그거를 더 지기하기 위해서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올리는 거죠. 그 사이에 딱 올리면 사람들이 밤에 그런 거 보니까. Q. 너도 봤어?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 그 때 휴대폰으로 본 게 아니라 컴퓨터로. Q. 스마트폰으로는 본 적 없어? 네. 없어요. 아 중학교 때 있어요. 그 때는 휴대폰 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컴퓨터였지만. Q. P2P나 그런 데서는 본 적 있어? 네. 그런 데가 제가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파일노리 이런 데서 회원 가입하면 무료 포인트 막 주잖아요. 포인트로 다운 받아서 보고 그랬었어요. Q. 근데 그 건 성인인증을 해야 되잖아. 그건 어머니 아버지 저기로 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성인인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에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모음집 이런 거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그런 걸로 해서 보면 다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만개가 떠오. 그 중에 아무거나 해서 해요. Q. 지금도 애들이 그렇게 봐? 지금은 아닐걸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볼 거 같은데. 요즘 영화 볼 때도.

21. 네. 그 올라와요. 한 번쯤. Q. 페이스북으로? 네. Q. 다른 사이트는 안 보고? 야동 사이트 그런 거 안 봐요. 실제로 한대니까요. 야동보고 자위 안 해요. 그건 중학교 1학년 때 끊었다니까요. Q. 그럼 여자애들이랑 성관계를 어떻게 해? 술 먹다가 눈 맞아서 딱치고. Q. 여자애들이 너 무서워서 하는 거야? 아니요. 친해지고 그러니까 갈래들을 많이 아니까. 놀다 그러니까 저하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만나서 다 따먹죠. 다 따먹어서 질려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따 먹어요. Q. 여자 친구는 어때? 여자 친구는 안 건드리죠.

왜 건드려요. Q.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야? 죽어야죠. 물어봐요. Q. 네가 그런 거 여자 친구가 뭐라 그래? 사실대로 말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재 사건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3~4개월 동안.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저 사귀면서. Q. 왜? 좋아한다니까요. 여자 친구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요. 진짜. 여자 친구 있으니까 안 해야죠. 안 한지 3~4개월 됐어요. Q. 900명 다 청소년이야? 성인도 있어요. 스물 몇 살. Q. 돈 주고 했어? 아니요. 전 섹스. 떡 돈 주고 안 해요. 널린 게 여자인데. Q. 근데 그냥 너하고 하자고 해?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가 밥 먹고 술 먹고 친해지는 거죠. Q. 돈 엄청 많이 들었겠다. 아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술 먹고 하는 거죠. Q. 모텔 가서 했어? 모텔비 제가 안 내요. 그 년이 신고하면 쫓 돼요. 강간으로. 모텔비 제가 났어요. 근데 그 년이 싸바 신고했어요. 근데 모텔비 누가 냈냐 내가 냈다 그러면 내가 강제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누나가 내라고. Q. 다 누나 들어야? 누나들이 몇 명 있어요. 동갑도 있고. 그래서 누나가 내라고 알았다고 내가 낸다고 CCTV 찍힌 거 확인하고. 그 년이 신고하면 나중 CCTV 찍힌 거 들이밀면 되잖아요. Q. 왜? 강간했다는 증거 없잖아요. ‘싸발년이 나한테 자탈아냐 싸발년아’ 이러면 무서워서. Q. 그렇게 무서운 데도 여자애들이 하고 싶네? 여자애들한테 미리 겁은 안 주고, 신고했을 경우 무섭게 나오는 거죠. Q. 누가 신고한 적 있었어? 아니요. 그런 적 없었어요. 대비를 하는 거죠.

22. Q.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접속해 본 적 있어요? 네. Q. 최근에 본 게 언제예요? 그냥 페이스북 하다보면 오늘도 보고. Q. 자주 보여요? 네. 아동 같은 것도 많고. 야한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뜨고. 제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자한테도 뜨니까 그런 거 페이지 좋아요 누르면 그 관리자가 업로드를 하면 제 페이스북에도 뜨니까 그런 거 보고. Q. 친구들도 많이 봐요? 네.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좋아요 누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좋아하느냐 눌렀는지 자한테도 뜨니까. Q. 웹하드나 이런 건 안 써봤어요? 네. 있어요. 다운받진 않고, 다운 받으면 솔직히 다 돈 내니까 아동사이트 같은 거. Q.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망카넷 이랑 파일쿠키. 근데 파일쿠키 이번에 유료화 되어서.

23.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본 적 있어요? 네. Q. 자주 보는 편이에요?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면 그냥 할 짓 없거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눌러서 봐요. Q. 하루에 얼마나 올라와요?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 한번 올라오면 여러 개씩 올라와요. Q. 하루에 몇 번 올라와요? 하루에 한 두 세 번. Q. 사진이나 동영상 올라오는 거예요? 사진은 엄청 올라오고요. 동영상은 4~5개씩 올라와요. Q. 어떻게 떠요? 다른 페이스북에 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올리면 사람들이 이걸 누르고 막 공유하고 그러면 떠요. Q. 페이지를 등록해서 보는 건가요?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걸 등록한 애들이 공유하면 자한테 페이스북이 올라오거든요. Q. 웹하드 이런 데서는 본 적 있어요? 무료 영화. Q. 성인 웹사이트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성인 인증 해야 해서 안 들어가지고. 그 막 무료영화 같은 거 불법 사이트. 그런 거.

25. 아니. 컴퓨터로 봤어요. 아 스마트폰 페이스북으로 뜨긴 뜨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애매해요. Q. 왜 애매해요? 일할 때 떠요. Q. 일할 때가 언제인데요? 밤 11시부터 1시 사이인데 제가 1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에요. Q. 다 지워져요? 운영자가 안 들어오는 시간대에 개네가 뿌리고 운영자가 들어오면 한 번에 다 지워버려요. Q. 컴퓨터로는 어떤 곳에서 봐요? 파일쿠키. 파일아이. Q. 다운로드받는 그런데서 본다는 거죠?

웹하드? 네. 당연하죠. Q. 인터넷 방송 그런 건 안 봐요? 그런 건 안 봐요. 그런 건 수위가 낮잖아요. Q. 성인 웹사이트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 1때인가. 레드튜브라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성인 게시물이었어요. 거기 아동이 수 백개였어요. 거기. 완전 그걸로 봤죠. 그러다가 거기에 짝 동영상이에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서양 국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요. 그래서 PC방에서 만 볼 수 있는데, PC방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 바이러스 먹일 생각으로 봐요.

26. 있어요. Q. 주로 어디서? 주로 페이스북. Q.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 영화배우 동영상. Q. 성관계 하는 동영상? 그런 것도 있고. Q. 하루에 몇 번 정도 봐? 2~3번. Q. 그때 마다 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Q. 주로 봐? 학교에서 애들끼리 그런 동영상 뜨면 막 태그하고 그래요. 같이 보지요.

27. 페이스북에서요. Q. 어떤 내용이었어? 하는 거. Q. 한국 사람들이야, 외국 사람들이야? 한국도 있었고 외국도 있었고. Q. 하루에 몇 건 정도 올라오는 걸까? 이틀에 한번. Q. 누가 보내는 것 같아? 페이지 관리자가 올려요. Q. 페이지 관리자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페이스북 보면 관리자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Q. 올리면 내가 안 볼 수도 있잖아. 너는 보는 거야? 그냥 뜨면 심심할 때마다 봐요. Q. 페이스북 말고는 본 적 없어? 중학교 때 서랍 뒤져보니까 비디오파일이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Q. 어땠어? 이상했는데. 신세계.

28. 페이스북. Q. 하루에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몇 건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루에 2~3개. Q. 그것들을 다 봐? 넘길 때도 있고 시간 있는 날은 다 봐요. Q. 우리나라 애들이야 외국 애들이야? 우리나라 애들이요. Q. 어떤 느낌이 들어? 아하쥬. 그런데 보다가 꺼요. Q. 왜? 데이터 아끼려고. 동영상 잘 안 봐요.

29.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거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Q. 컴퓨터에서는 다운 받은 거 봤어? 중학교 때까지는 파일구리, 파이란, 케이디스크 같은데서 다운 받아 보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나가서 놀거나 학원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컴퓨터 많이 한다고 컴퓨터를 정지 시켜놨어 안돼요. 휴대폰도 며칠 전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풀렸어요. 학교 복학하고, 제가 돈도 많이 쓰고, 데이터도 다 쓰고 해서. 그리고 게임에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1년 정도 못쓰다가 엄마가 요즘 학교 잘 다닌다고 (정지) 풀어줬어요.

30. 친구가 태그 걸어줬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Q. 어떤 내용이었어? 영화 같은 거 베드신 장면 요즘 나온 거라고. Q. 너는 안 해줬어? 네. 일단 원지 영화라 해서 봤는데 그런(야한) 것 아냐. Q. 친구들이 태그해주지 않으면 혼자 그런 거 본 적은 없어? 그런 건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서.

Q 웹하드

1. 본 적 있어요. 웹하드요. 요즘에는 안 봐서 모르겠고, 예전에는 파일노리. Q. 웹하드 말고는 또 없어요? 웹하드 아니면 사이트. 되게 옛날인데. 레드튜브였나. 지금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2. 네. 파일쿠키라고. 원래는 핸드폰 말고 인터넷으로 하는 웹하드 그런 건데요. 거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가지고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야한 거 성인물. 성관계 맺는 거. Q. 동성애 그런 건 안 봤어? 동성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동성끼리는 외국. 안 봤는데 그런 게 나와요.

5. 음란물이나 성인물 본 적 없어요. Q. 인터넷으로는? 본 적은 있어요. P2P 사이트. 거의 P2P 사이트에서. Q. 페이스북에서 보다가 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친구들이 댓글 달면 누구누구가 댓글 달았습니까 뜨잖아요. 친구들이 이상한데 댓글 달고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 Q. 인터넷 방송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19. 많이 봤죠. Q. 어디에 주로 있었어?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그거 아 뭐 쌤 막 투투디스크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찾다 보면 한 가지가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Q. P2P? P2P요. 그런 거랑 비슷한 사이트 많은데 거기서 무료로 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그냥 성인인증하고 봐요. 그냥. Q. 성인인증 어떻게 해? 저희 아빠 께요. Q. 처음 가입할 때만 아빠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다 무료니까. Q. 아빠 주민 번호로 보는 거야? 제 걸로는 못 보죠. 19금이나. Q. 페이스북은 어느 정도 수위야? 되게 많지? 네. Q. 친구들도 많이 봐? 네. 좋아요. 대빵 많아요. Q. 성 행위 하는 거 까지 다 올라와? 네. Q. 그걸 보고 좋아요 많이 해? 네. 그래서 저도 따로 그래서 저도 좋아요 하고 봐요. Q. 얼마나 많이 떠? 보통 몇 천개 몇 만개. Q. 근데 어떤 내용이야? 그거 그냥 일본 가는 뽀 하니깐 패스구요. 한국 가는 모텔에서 제목이 뭐 모텔에서 여대생 뭐 그렇게 떠요. 모텔에서 평범하게 하는 거. Q. 일반인 남자가? 네. Q. 직접 올리는 거야? 자들이 올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몰라요 어떤 병신 새끼들이 찍은 건지. 몰카 그런 것도 있고, 얼굴 모자이크 해주죠. Q. 거긴 성인 인증 안하잖아? 거기 성인인증 해요. 19금 들어갈 때마다. Q. 그거 누구 걸로 했어? 아빠 께. 네. 아 페이스북은 안 해요. Q.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지? 네. 전부다. Q. 네가 보기엔 댓글 단 애들이 대체로 청소년인 거 같아? 성인인 거 같아? 청소년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충 볼 때. 성인들은 20대 정도. 21, 22 정도 나머지는 다 청소년인 거 같아요. Q. 누군가가 너랑 친구로 맺어있는 애가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 나 댓글을 달면 너랑 친구 맺는 애가 다 뜨는 거야? 왜 그렇게 되지? '좋아요' 가 전 거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거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가 볼 사람은 봐라 그런 거죠. Q. 너도 '좋아요' 나 댓글 달고 그래? 저는 '좋아요' 만. 댓글은 귀찮아요. Q.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친구들한테도 보이겠네. 당연하죠. Q.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쁘긴 한데. Q. 성을 다른 사람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안 좋죠. Q. 음란물이나 성인물이 다 뒤덮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Q. 왜 그렇게 해? 어떤 심리인 거 같아? 그냥. 어쩌다 다시 본다는 그런 심리? 그런 거 같아요.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거. Q. 이걸 봤는데 또 보고 싶단? 그러면 음란물이라고 성인물이라고 해서 다 좋아요 하진 않는 거야? 네가 보기에 괜찮았던 거? 네. Q. 어떤 게 좋았어? 일반인들이 좋아? 그렇지. Q. 그냥 그런 애들은 싫고? 예를 들면 포르노 배우들. 그거는 연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뽀해요. Q. 그냥 일반인들은 달라? 아니요. 그냥 비슷한데, 일본 애들은 일본어로 뭐라고 공사령 대갈래 뭐라 하는 지도 모르겠고, 그러가지고 그냥 막. 한국 거 봐요. Q. 그래서 한국 애들은 막 뭐라고 해? 막 종알종알 대는데 이이폰 키우고 소리 최대한 키우고 뭐라 종알종알 거리는지 궁금해서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Q. 뭐라고 해?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려요. 너무 조그매서.

24. 네. Q. 주로 접촉하는 경로가 파일공유사이트예요? 네. Q.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은 안 봐요. 얼굴은 안 봐도 몸매는 봐요. Q. 성인 웹사이트는요? 그런 거 이제 못 뚫어요. 사이트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Q. 요새는 그게 예전만큼 그런 접근이 쉽지가

않은가요? 옛날에 레드투브 차면 바로바로 나왔죠. 근데 다 막혔어요. 사이트 다섯 개 알고 있었는데 다 막혔죠. 성인웹사이트가 다 있는데. 그런 불법으로 된 가는 파란색으로 뜨잖아요. 사이버 어쩌고 저쩌고. 정식으로 된 가는. Q. 정식으로 된 가는 떠요? 그냥 이게 막 음란물 글씨 쓰면 사이트가 떠요. 그건 원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Q. 어느 사이트에서 뜨는 거예요? 네이버요. Q. 그거 19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당연히 하면 되죠. 옛날엔 주민번호만 차면 되는데 지금은 아이디로.

□ 게임

15. Q. 음란물이나 성인물 접촉해본 적 있어? 네. 어떤 경로로 해봤어? 경로보다는 게임할 때. 고스톱 칠 때. Q.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좀 막 돈을 내면 옷을 벗길 수 있는? Q. 돈 내면 벗겨져? 어느 선까지? 게임에 있는 캐릭터의 옷? 네. 돈을 내고는 안했는데,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위에 옷이랑 아래 옷. Q. 그게 어느 선까지? 그냥 속옷만 차고 있는? 팬티까지? 네. 아하쥬. 그걸 호기심으로 하고 돈을 내게 하는 거니까. 돈을 내면 다 보죠. Q. 캐릭터가 엄청 리얼해? 그냥 컴퓨터상에서도 애니로 아한 게임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 웹사이트

9. 아니요. 저 본 적은 없는데 광고는 본 적 있어요. 막 뉴스 같은데 들어가면 막 좀 이상한 사회 뉴스 보면. 그런데서 우연히 보는 거예요. Q.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는 사람 있어요? 남자친구. 아니 그게 막 인터넷이 있는데. 그게 사이트가 있어요. 절대 안 막히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가끔 폰을 검사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요. 막 보면 엄청 많아요. 진짜.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 한 번 보면. Q. 대표적인 사이트는? 그 구글에 들어가서 망키넷이라고 치면 그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말해가지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18.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Q. 어디서 봤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망키. Q.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모여서 막 볼 때도 있고. Q.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같이 보면 쑥스럽지 않아? 쑥스럽지 않은데 그냥 솔직히 애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 랜덤채팅

3. 아니요. 그 때 그 뭐지. 무슨 톡? 친구가 졸룩 뭐 째야보라 그래서 째야봤는데 어떤 아저씨 3~40대 들이 막 'x' 'x'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씹었어요. Q. 그래서 졸룩 없었어요? 네. 재미없으니까. 계속 올리고 아저씨들한테만 오고. 아저씨들한테 막 용돈 줄게 그러고. Q.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 네. 제 친구도 어떤 애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갑자기 키스알바를 키알바래요. 막 키알키알 거러요. 그게 원데 이러니까 키스알바래요. 키스알바하면 돈 준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고 또 어디 갔다 온대요. 갔다 온다고 했는데 돈 갖고 온 거예요. 진짜 돈 갖고 온대요. 그래서 개 지금도 조건하거든요. Q. 개는 지금도 하고 있어? 학교 다녀? 안다녀요. 개 그냥 일바하고 들어가고 ○○고 들어갔는데 자퇴하고. 또. Q. 그럼 개는 주로 키스알바만 하는 거야? 아니면 성관계까지 하는 거야? 제 주변에 조건하는 애들 많아요. 일하고 있는 애도 많고. 오빠들하고 차리고. Q. 본인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해? 하라고 하는 얘기 없었어요.

□ 경험 없음

11. 아니요(컴퓨터나 인터넷으로). Q. 주변 친구들은 봐요? 네. 많이 봐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공유.

14.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Q. 주변 친구들은 안 해? 있을 거 같은데 말은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표 I-22>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여자 친구랑 뽀뽀한 사진 같은 거. 뭐 뽀뽀하고 그냥 뽀뽀한 거.

4. 뽀뽀하는 거요.

7. 아니요. 뽀뽀는 찍어봤지만.

8. 막 뽀뽀 같은 거.

9. 네. 뽀뽀만.

12. 뽀뽀하는 거 찍어봤어요. 남자친구하고.

17. 네. 해본 적 있어요. 일 년 더 됐나. 그 때 성관계 하는 거? 그런 거 한 때 했어요. Q. 누가 찍었어? 둘이 합의하에. Q. 그 때렸던 애가? 네. Q. 그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삭제했어요. Q. 헤어지고 나서? 네. 개 핸드폰도 바꿔가지고 안 남아있어요. Q. 왜 찍었어? 그냥 얘기하다 합의 하에 장난으로. Q. 왜 장난으로? 그냥. Q. 어떻게 찍었어? 그냥 여기서 고정시켜놓고. Q. 어땠어? 보기 좀 그랬죠. 그래서 바로 삭제했어요. Q. 그 오빠도 삭제 했어? 네. Q. 어디 올리진 않았어? 네.

18.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Q. 뽀뽀 같은 거 찍어본 적 없어? 뽀뽀는 사진 찍어서 봤는데, 다른 건 안 해봤어요.

19. 손잡는 거나 그런 것만 멀리서 막 인터넷 올라오는 커플들 사진 있잖아요. 손잡고 막 어깨동무하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Q. 찍었어? 네. Q. 사진으로 찍었어? 동영상으로 찍었어? 사진이요.

20. 아니요. 없죠. Q. 뽀뽀는? 아. 저는 해봤죠. 찍어보고 그런 건 없죠. Q. 찍어서 올려본 적은 없어? 그런 건 없죠. 여자 친구랑 볼 뽀뽀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건 있는데, 수위 높은 건 없었죠. 여자 친구랑 저랑 좋아서 하는데 그런 걸 찍어서 올려요? 남들 다 보는데.

23. 뽀뽀만.

26. 찍어 본 적 있죠. Q. 뽀뽀 하는 거? 여친이랑? 아니 여친이랑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아 여친이랑도 있긴 있죠. Q. 다른 친구들이랑 뽀뽀도해? 다른 친구들이 지내들끼리 하는 거 제가 찍어줬어요.

27. 뽀뽀 있었어요. 남친이랑. Q. 사진만 찍었어? 동영상은 안 찍었어? 네.

28. 네.

29. 뽀뽀하는 포즈 사진만 찍어봤어요.

□ 없음

2. 한 번도 없어요.

3. 아니요. 남친이랑 찍은 적 없죠.

5. 아니요. 없어요. Q.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올린 걸 본 적 없나요? 네. 못 봤어요.

6. 없어요. 친구들이 그런 적은 없어요? 올린 거 받아 본 적은

있어요. 몰래 비밀로.

10. 아니요. 없어요. 손잡는 거 밖에는.

11. 없어요. Q. 친구들은? 네. 페이스북.

13. 아니요.

14. 아니요. 없어요. Q. 찍은 적도 없고? 네.

15. 아니요. Q. 키스도? 네. Q. 누가 올린 거 본 적 있어? 네.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요. Q. 어떤 내용이었어? 모르는 사람들. 아등으로 올라도 올라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하다가 찍혀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둘이 위해서. 노래방이나 길가 이런 데. Q. 얼굴도 나와? 네. Q. 왜 봤어? 그냥 보아서 봤어? 네. Q. 그게 많이 올라와? 본인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 놓은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등을 좋아요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을 경우 제가 떠요. 제가 볼 수 있게 떠요. 장난 식으로 태그 걸거나 할 때 그 때 댓글 단다고 뜨니까. Q. 그걸 보니까 어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것도 최근에 제가 본 게 대낮에 흥대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게 찍힌 거예요. 여자는 벗은 거 같아요. 아니 여자는 다 벗은 거 같았어요. 왜 요즘. 낮에. 그게 화장실 옥상이었고요. 그리고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막 벗고 돌아다니는 남자도 있고, 막 다른 지역에는 벗고 돌아다니는 여자도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올라왔어요. 여자는 좀 젊어 보이고 남자는 좀 늙어보였는데. Q. 페이스북에 올려놨어? 네. Q. 애들도 많이 봐? 댓글도 몇 천 몇 백 되고 그러니까. Q.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 미친 거 아니냐고. 저기서 뭐하는 거냐고. 애들이 막 장난 식으로 '너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16.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Q. 남이 찍은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페이스북 그런 거 빼고는 없어요.

21. 그런 걸 왜 간직해요. 병신도 아니고. 그런 개 사이코 같은 짓을 왜 해요. Q. 찍은 적도 없어? 네. Q. 여친하고 뽀뽀한 것도 찍은 적 없어? 네.

22. 저는 없고, 받아본 적은 있어요. 랜덤채팅이니까 그 사람이 보내면 저한테 다 오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Q.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몇 살인지는 기억 안나오. 되게 예전이라 어떤 남자가 폰 번호를 올려놓고 자기 사진을 올려놓고 막 연락하라는 식으로 올려놨었어요. 어린 마음에 되게 잘생겼잖아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제 얼굴 사진을 보내 달래요. 그 때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 안했으니깐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막 헛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 그러기에 뭘 그런 걸 보내나 그 사람이랑 연락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또 연락 오더니 관심 간다고 그래서 사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제 가슴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막 싫다고 그랬더니 네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가슴사진 합성해서 너네 학교 페이지에 올릴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걸 올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Q. 그 남자는 연락 안와요? 네. Q. 네이버 카페 어떤 카페였어요? 네이버 카페였어요. Q.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때라 기억은 얼핏 나는데 잘은 안 나요. Q. 친구들이? 제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24.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천연기념물이에요. 진짜 이걸 거짓말 아니에요. Q. 뽀뽀나 키스를 찍어본 적 있어요? 왜 찍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25. 아니요. 촬영해본 적은 없는데, 촬영해보고 싶어요. Q. 어떤 성적행위요? 성관계요. Q. 왜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남자들은? Q. 남자들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간직하고 싶잖아요.

30. 아니요.

<표 I-23>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려본 경험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네. 다들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뽀뽀한 거 올리고.
4. 네.
7. 페이스북 같은데 올려요. 친구들도 다 보이게 해놔요.
9. 네. 페이스북에 올려요. 애들 거의 페이스북에 올려요. Q. 페이스북 이런데 올리는 거죠? 네.
12. 프로필 사진.
18. 사진을 찍는데 뭐 카스에다가 배경화면, 카카오톡 스토리 배경화면. Q. 남자친구 있어?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옛그제? 오래 갔어요. 100일. Q. 같은 학생이야? 네. Q. 몇 살이야? 저보다 한 살 많아요. Q. 그래서 마음이 아파?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은데. Q. 그래서 다 내렸어? 다 지워야죠. 다 지웠어요. Q. 뽀뽀한 것만 올렸어? 올린 게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해냈다가 2일 뒤에 다시 다 내렸나? 그럼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관심 받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19. 네.
22. 그런 거는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올리면 쓰나깐 저도 남자친구랑 뽀뽀한 사진 올린 적도 있고.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안하니깐.
23. 네.
26. 네. Q. 어떤 거? 여자 친구랑 뽀뽀한거 사진 그거 프로필사진. Q.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 Q. 지금도 있어? 아니요. Q. 왜? 헤어졌어? 네. Q. 그럼 다 지웠어? 네. 다 지웠죠. 헤어졌으니깐.
27. 네. 페이스북에. Q. 지금도 올라와있어? 아니요. 싸워서 지웠어요. Q. 올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해? 사귀는 게 예쁘다고. Q.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에 올린거야? (뽀뽀사진 말고)같이 찍은 것만 올려요. Q. 왜 올렸어? 사귀니까 올렸어요. Q. 보통 뽀뽀하는 사진은 잘 안올리잖아. 많이 올려요. Q. 유행이야? 커플들 보면 있잖아요. 다 올려요. Q. 뽀뽀사진 말고 더 야한 것도 있어? 없어요.
28. 네. 올린적은 있어요. 여자 친구랑. Q. 뭐하는 거? 뽀뽀하는 거. 옛날에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29.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애들이 너희끼를 예쁘다고 오래가라고 이런 댓글 달아요. 요즘은 그런 사진 찍어서 안올려요. 대부분 여자 친구가 그런 사진 올리는데 제가 직접 올린 적은 없어요.

□ 없음

2. 한 번도 없어요. Q. 주변 친구들 있어? 없는데 있어도 말은 안하잖죠.
3. 올린 적 없어요.
13. 저는 안올리는데 친구들이 뽀뽀하는 사진이나 페북에 올려요. 카카오톡 스토리 같은 것도. Q. 친구들이 올린 거 보면 어때? 친구들이 올린거 보면 부러워요. 헤어진 지 두 달 됐어요. Q. 남자친구 사귄 때 올린 적 없어? 남친 사귄 때 올린 적 없어요. 사진 찍긴 찍어도 남친이 그런 거 올리는 거 싫어해요. Q. 남친이 몇 살이야? 남친이 동갑이요.
14. 당연히 없죠.
16. 올린 적 없어요.
17. 그런 사진은 올린 적은 없는데. Q. 올린 적은 없는데 찍어봤다는 거지? 네. Q. 서로 합의 하에 삭제하고? 네. Q. 안 창피했어? 창피했는데 그냥 얘기하다 장난으로 해 본 건데.
21.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Q. 찍은 거 올린 거 본 적 없어? 네.
25. 그러지는 않죠. Q. 뽀뽀는? 있죠. 당연히 사진 찍으면서.
30. 없어요. Q. 다른 친구들이 보여준 적 있어?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키스 잘하는 거. 그런 거 가끔씩 친구들이 보내줘요. Q. 어디로? 페이스북.

□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표 I-24>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경로

질문: 스마트폰으로 이성과의 성적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유하거나 올렸습니까?

□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1. 전 페이스북. Q. 여친이 동의했어? 네. Q. 그럼 지금도 만나? 안 만나면 남아있어? 헤어지면 다 지우죠. 사진도. Q. 누군가 퍼가면? 아니요. 퍼가진 않죠. 보기만 하고 그냥 댓글에다 예쁘다고 써주고.

4. 페이스북에 올린 적은 있어요. 카톡에다 뽀뽀한 사진은 한번 했었는데, 그냥 이상해서 바로 내렸어요.

8. 네.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친구들한테 뽀뽀하는 거 보냈어요.

12.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다른 데는 없어요.

13. 거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톡스토리, 그렇게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면 트위터 같은 데.

18. 카카오톡 프로필 볼 뽀뽀. 다른 데는 올린 적 없어요.

19.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 있죠. Q. 지금 사귀는 여친? 네. Q. 어깨동무하고 손잡은 그런 거? 네. Q. 뽀뽀한 거는? 네. Q. 딴 거는 찍은 적 없고? 네. Q.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제 도래 다 그래요. 다. 커플들. 자랑하고 싶으니깐 우리 사이는 이 정도다 이런 거. Q.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해? 자위야죠.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거 지우면 되잖아요. Q. 누군가에게 공유 되잖아? 공유안하고 그냥 좋아요만 해요. Q. 네 사진에 대해서 네가? 아니 애들이. 부럽다 하면서 좋아요. Q. 근데 그런 거 지우면 없어져? 네. 제가 지우면 없어져요. Q. 누군가가 공유를 하면 다 퍼질 거 아냐? 작성한 게시물을 그거 떼면서 없어져요. Q. 일단은 그 사진을 누군가 저장해 가지고 공유하면 어떻게 해? 그건 상관없죠. 어차피 19금 이런 것도 아닌데, 몸 팔리는 것도 아닌데, 손잡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Q. 나중에 부인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 제가 적어도 5년 뒤에 결혼 할 텐데 그 5년 동안 그게 왜 떠돌아다니겠어요. 그렇게 막 좇배야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Q. 좇배이가 뭐야? 저하만의 언어가 있어요. 10대의 언어. 어 엄청나다 그런 뜻이라 해야 되나. Q. 엄청나게 야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공유하겠냐고? 네. Q. 딴 데 올린 적 없어? 카카오톡? 카카오톡? 네. 어떻게 올려요. 카카오톡스토리는 안 해요. 아. 카카오톡 프로필만. 카톡은 올리는 게 없잖아. 뭘 올리나 해서. Q. 사진 올려놓은 적 있어 뽀뽀? 아니요. 스티커 사진 찍었던 같이 있는 그런 거만.

20. 올린 것 보다는 일단 그냥 카톡 프사만 해놓는 거죠. Q.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 없어? 네. 저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잘 안 올려요. 그냥 SNS를 통해서 보는 용 그런 걸로 생각하니깐. 글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만 보고. Q. 볼 키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올린 적 없어? 네. Q. 그럼 카톡이나 그런 데다 안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리진 않아요. 프사만 이렇게 올려놓고 프로필 사진만 해놔요. Q. 카톡 프로필 사진이면 올린 거잖아? 네. 올린 거죠. Q. 지금도 여친 있어? 이제 2년 다되어가요. Q.

왜 이렇게 오래 사귀었어? 그냥 좋으니깐. Q. 같은 학교야? 아니요. 다른 학교. Q. 알바해서 여친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줘? 아니요. 여자 친구한테는 쓰죠. 아깝지 않게 쓰죠. 여자 친구도 저한테 쓰니깐. Q. 개는 알바 안 해? 여자 친구는 집에서 용돈 받는 걸로.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여자들도 친구들이랑 놀겠죠. 그 때 돈 좀 아끼죠. 서로 시간 나서 만날 때 데이트할 때 둘이 돈 쓰고, 저도 개한테 쓰는 거 안 아깝죠.

22. 페이스북. 예전에는 카카오톡이라고 그걸 한참 하다가 지금은 카카오톡스토리를 안 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하죠.

23. 페이스북이요. Q. 그럼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Q. 주로 어디다 올려요? 저는 거의 다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24.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Q. 뽀뽀사진 같은 거요? 네.

25. 페이스북에. Q.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려요? 네. 애도 그래요.

26. 페이스북이요. Q. 카톡에는 안올렸어? 네. 저는 카톡 프로필엔 사진 안 해요.

27. 페이스북.

28. 카톡.

29. 페이스북.

□ 기타

10.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3.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9.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6. 접촉 경험 없음.
17.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25>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험

질문: 스마트폰을 통하여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2. 네. 저도 이거 파일쿠라라는 사이트 반 친구들이 알려준 거예요. 대학교 애들이 아니라 원래 본 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매일 하진 않고, 같이 보진 않고 집에서 혼자 보죠.

7. 그 저 혼자 보려고 페이스북 혼자 공유해놓고 혼자 봐요.

10. 당연하죠.

11. 저희가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면 다 뜨잖아요. 좋아요 눌러도 뜨고 광고도 많이 봤어요.

12. 네.

13.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뭐지 그 드라마 요새 보면 베드신 키스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링크를 보여줘요. '야 너 남친이랑 이런 거 하나' 고 장난 식으로 물어봐요. Q. 어디다 올려? 아니요.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거에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17. 남자가 벗고 있는 거나. 팬티만 입고 있는 거. 페이스북에 배경으로 올리거나 사람들 올리는데요. Q. 어떤 남자? 외국 남자 화보 같은 거요. Q. 네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19. 네. 그렇죠.

22. 그냥 아동 같은 거 보면 댓글에 친구 언급해주고 장난 식으로.

23. 네.

24. 한다니가요. 친구들한테 아이디 알려준다니가요.

26. 다른 애들이 다 태그하고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에서 태그 해 본적 있어요. Q. 사이트? 사이트 말고 페이스북에서요. Q. 페이스북에서 뭘 태그 했어? 동영상이요. Q. 몇 명 정도 태그 해? 2~3명. Q. 주로 어떤 게시물에 태그 했어? 여러 가지요. 야한 동영상도 있었고 사진도 있고. Q. 사진은 뭐야? 그냥 예쁘장하고 얼얼 같은 사진. Q. 성인 웹사이트는 안했어? 웹사이트랑 접촉을 한 적이 아예 없어요. Q. 그런 거는 태그 안 해봤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만 올라오는데 거기서만 태그 해봤어요. Q. 태그를 얼마나 한 달에 몇 번 정도하는 것 같아? 한 달에 몇 번 하는 딱히 없고, 보이는 동영상 있으면 다른 애들이 옆에 있으면 태그 해달라고 하거든요. 막. 그럴 때 태그 해줘요. Q. 태그하면 그 친구도 볼 거 아니야. 왜 태그 해? 걔네가 해달라고 해서요. Q. 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냐? 네. Q. 너도 누구한테 태그 받은 거야? 네. 서로 주고받아요.

27. 있어요. 친구한테. 남자 벗은 거 있잖아요. 멋있다고 올렸어요. Q.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28. 네. 성인 웹사이트 알려줬죠. 친구한테. Q. 어떤 내용이었어? 포인트 있는데 있잖아요.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디스크, 파일구리 이런데. Q. 거기 성인인증 안 되자? 옛날에 했죠. 아빠 것으로 했어요. 지금은 안 봐요. 엄마가 컴퓨터 안심 이런데 걸어놨어요.

□ 없음

1. 아니. 저는. 저는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그런 거 보고 요즘에는 안 보고 이렇게 욕구 있으면 이렇게 뭐야 실천으로 풀어가지고. Q. 업소를 가서 여자들과 만나나요? 아니요. 업소 잘 안가고 아는 여자애들하고.

3. 공유해본 적 없어요. Q. 너 혼자만 봤어? 그냥 페이스북 올려다 보면 계속 보여 가지고 어 그냥 동영상이네 하고 눌러봐서 또렷하게 보지 않고 계속 대중만 봤어요. Q. 너만 보고 다른 애들은 안 알려줬어?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같이 있다가 페이스북 보면 딱 나오면 이거 아까? 본 거 다하고 막 깎어요. Q.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야한 사진을 본 거야? 아니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버디버디.

4. 아니요.

5. 그런 적 없어요. Q. 친구들이 말해주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좀 많았어요. 이거 좀 괜찮다고 알려주고 그래요. 사이트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내주거나 그래요.

6.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누가 이름 올려서 그거 보고.

8. 없어요. Q. 친구한테 받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9. 받은 건 많은데 알려준 건 없어요.

15. 그냥 보고만 말았어요.

16. 아니요. 나 뭐 걸릴까봐 공유는 안 해요.

18. 없어요. Q. 사진도? 네.

20. 제가 공유한 적은 없어요. Q. 그러면 공유된 걸 본 적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낚는 거 해서 몇 번 하다가 바이러스도 먹어가지고 그랬었어요. Q. 뭘 낚아? 그냥 막 사이트가 있으면. Q.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 어떤 사이트인지는 모르죠. 막 걸리다가 링크가 있다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링크가 있어요. 막 이거 무섭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재밌다 그래서 클릭하면. 휴대폰 누르면 막 그런 페이지 뜨고 결제 그런 거 뜨고 그래서 들어가 봤죠. Q. 들어가서 좋아요 눌렀어? 안 눌렀죠. Q. 공유는? 안 했죠. Q. 너만 봤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거 뭐지 이상한 거네' 고고 그러는 거죠. Q. 네가 보기엔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저는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Q. 그 뒤부터는 관심 없었어?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뭐 하다가 썩신 사진 보면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딱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클럽 이런 여자애들이 춤추는 동영상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노출을 심하게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클럽 가면 그래서 여자애들이 클럽 가지말라는 게 막 위에 원피스 벗고 속옷만 입고 춤추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낚 놓고 보고 그런 건 있는데 야동을 제가 보고 그런 건 없어요. Q. 야동은 재미없어? 네. Q. 클럽 그건 재밌어? 재미있다고보다는 우와 쩌다 이런 거죠. 그래도 남자니까. 그런 거 보고 쩌다 그러는 거죠.

25. 아니요. Q. 친구들끼리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그 때 트러블 메이커 그거 땀에 한 번 본 거고 다른 건 공유할 게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그걸 아동 1시간짜리를 저장할 수도 없는 거고. Q.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주위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Q. 그럼 공유 같은 건 안 해요? 공유 안 해요. 그런 건 혼자 봐야 돼요.

29. 야한 동영상은 태그 안하고, 페이스북에 초성 따서 만든 웃긴 사진들만 친구들 태그 해봤지 야한 거에는 태그 안 해봤어요. Q.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 중학교 때는 자주 보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안 보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Q. 중학교 때는 공유 해 본적 있어? 아니요. 저 혼자만 봤어요.

30. 아니요. Q. 왜 안 해줬어? 봐서 좋은 것도 아니고, 퍼지고 퍼져가지고 어차피 볼 텐데. 제가 안 해줘도 다른 애들이 다 해줘서 볼 테니까. Q. 하루에 보통 얼마나 올라오는 것 같아?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런 페이지예요. 페이스북에 이런 페이지를 만들면 '좋아요' 가 있어요. 그게 '좋아요' 한 개 당 100원이었나. 그게 다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올려주면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거라 사람들이 많이 올려줘요. Q. 그 100원은 누가 내는 거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 돈을. Q. 태그 달았을 때는? 그런 거는 없어요. Q. 태그라는 건 어떤 거야?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볼 수 있는 거. Q. 그것만 공유시키는 거야? 자기가 친구로 걸어 놓은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데 볼 수는 있어요. 다 같이 볼 수는 있는데 많이는 못 봐요. 태그 해주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표 I-26>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공유한 경로

질문: 야한 사진, 성 행위 관련된 동영상, 성인 웹사이트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공유했습니까?

□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2. 파일쿠키 말고도 페이스 북 안에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자들이, 성인 페이지들이 야한 동영상을 올리면 몇 시간마다 썰려요. 그런 거 가끔 봤어요. 근데 거의 다 웹하드에서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가입을 해서, 성인으로 가입해서 성인물도 볼 수 있어요. 큰아빠 주민번호로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돈 내고는 한 번도 안 봤어요. Q.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 걸로. 인증은 안 받고 그냥 주민번호만 넣으면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Q.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가입할 때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지? 네. 처음 가입할 때만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5. 카카오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만나서.

7. Q. 페이스북 페이지를 혼자 보기 해서 친구들이 공유하는 건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9. 살짝 카카오톡으로 유행할 때, 거기 19금 치면 아동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여러 개 클릭하면 나오고 그 때는 막 중3, 고1때 여자들 오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보고.

10. 카톡이요.

12. 페이스북에서 나오면 공유해가지고 아는 오빠들 태그해주고,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17. Q. 성인웹사이트도 안 해봤고? 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정도 크기만 하게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다이어리에다가 공유해놓고. Q. 그거 성인들 거였어? 너 다 봤어? 성인 여자 사진 같은 거. 몇 개는 들어가서 봤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Q. 친구들한테 보라고 해봤어? 봐도 볼 애들은 보고 안 볼 애들은 안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싸이월드 다이어리에다가. Q. 요즘은 안 해? 요즘은 귀찮아서 안 하죠. Q. 그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아. 중1때인가? 중 1때 처음 봤으니깐.

18. 카카오톡으로. Q. 카카오톡으로 애들한테 보내줬어? 네. 카카오톡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Q. 애들이 보내주면 좋아해? 안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Q. 아이돌 스타? 남자? 네. 제가 직접 올린 건 아니고, 올려 진 거를 공유. Q. 그거 왜 공유했어? 너무 멋있어서. Q. 남자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너무 많아서. 춤추는 것도 있고, 복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19. Q. 페이스북으로만? 네. 링크는 안하고 그냥 '좋아요' 만. Q. P2P에서 공유 해봤어? 그런 거 공유하는 법도 몰라요. Q. 친구들도 많이 해? 하죠. 많이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죠. 적어도 하루에 다섯 개 이상은 띄우. Q. 어떻게 띄우? 그냥 띄우. Q. 그 다음에는? 봐요. Q. 하루에 다섯 번은 보는 거야? 재미없는 거는 대충 보고,

재미있는 거는 보다가 으음. Q. 거기다가 좋아요 해?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Q. 야한 동영상이나 그런 것을 많이 보겠네? 그렇죠. 페이스북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몇 개씩 보겠죠. Q. 그걸 계속 보니까 언제? 자꾸 하고 싶고? 있죠. 남자는 누구나 다 있죠. Q.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자위행위를 하던지 그럴 때 무조건 참으면 되겠죠. Q. 그렇게 뜨면 좋은 거는 다 같이 보자 그런 거 안 해? 안 해요. 너 혼자만 봐? 아니요. 친구들이랑 남자애들이랑 같이 봐요. Q. 여기 있는 애들이랑은 같이 안 봐? 네. Q. 애들하고 안 친해? 친하죠. 근데 어. 그냥 학교에서는 전 데이터가 없으니깐. Q. 데이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데이터가 없으면 인터넷 같은 걸 못해요. Q.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면 어디서 해? 집에서 와이파이로.

22. 페이스북에서 거기서는 공유할 할 때 댓글에서 친구를 언급할 수 있으니깐 그럼 친구한테 아는 사람이 뜨고 제가 자기를 언급했다고 뜨고 그 사람도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깐. Q. 그냥 아동 주소 한 거예요? 주소 말고 동영상.

23. 그 막 단체 채팅 그런 데로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올리면 그거 그냥 눌러서 그거 보려면 저장이 돼야 해서 저장 눌러서 봐요. Q. 카톡 말고 다른 데서는 안 해요? 네. Q. 어떤 걸 공유해요? 사진이나 동영상. Q. 학생이 직접 공유하진 않았어요? 장난치려고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Q. 장난치려고 사진 같은 거? 네. Q.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 변태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Q. '좋아요' 도 많이 눌렀어요? 네.

24. 직접 만나서도 아이디 쳐주고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해 가지고 보내주고.

28. 페이스북. Q. 페이스북 말고는? 카카오톡으로도 주소 알려줬어요. Q.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 고맙다고 하죠. Q. 왜 공유했어? 애들이 있다고 물어봐요. 그럼 보내줘요.

□ 웹하드

1. 친구들끼리만. 알려주고, 말로 알려주고, 아이디 주고, 볼 거 보라고. Q. 어떤 내용인데? 어디다 올려? 사진 말고 동영상. 음란물. 아니요. 보통 웹하드에 많아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 접촉 경험 없음

3.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 8. 접촉 경험 없음.
- 11. 접촉 경험 없음.
- 13. 접촉 경험 없음.
- 14. 접촉 경험 없음.
- 15. 접촉 경험 없음.
- 16. 접촉 경험 없음.
- 20. 접촉 경험 없음.

- 21. 접촉 경험 없음.
- 25. 접촉 경험 없음.
- 26. 접촉 경험 없음.
- 27. 접촉 경험 없음.
- 29. 접촉 경험 없음.
-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27>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해본 경험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 Q. 아는 사람하고요? 아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 아무나, 없는 거 같아요. 아 옛날에. 이거 되게 어렸을 때. 14살 중학교 1학년? 뭐 랜덤채팅 같은 거 만났었던 말이에요.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만나가지고 실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조건만남 하려다가 안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중학교 1학년이니깐. 어리니깐. 하려다가 용기가 안 생겨서 그 땐 어리니깐.

2. 그냥 아한 말 하는 거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아한 말 주로하고, Q. 카카오톡에서 아는 사람이랑 해? 친구들이랑. 남자들이랑. 그냥 어떤 여자애랑 잤다 그런 얘기 자기들도 그런 적 있으면 얘기하고, 그 여자애한테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했구나' 막 그런 얘기 하고.

3. 아니요. 없는 거 같아요. 아. 한 적 있어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장난으로 저 여자인 친구하고 했어요. 같이 이런 거 하다가 심심해서 한 적 있어요.

6. 아 그런 적 많죠.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게 좀 음란적인 얘기를 해요. Q. 낯선 사람과는 안하나요? 낯선 사람이랑 음란채팅하지는 않아요. Q. 주변 친구들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9.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10. 섹스립이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거. 진지하게 성적인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11. 인터넷 채팅방에서 음란 채팅 해봤어요.

12. 랜덤채팅에서는 해봤어요.

13.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그냥 애들끼리 아하게 노는 거 빼고는 없어요. Q.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해? 반애들도 있고, 원래 친구들도 있고. Q. 무슨 얘기해? 그 뭐였지 애들끼리 아한 사진 올리고 '너 이런 거 해 봤냐' 이라고, 카톡에서

16. 그냥 여자 친구들이랑. Q. 뒤에 대해서 얘기해? 그냥 막 '젓까' 같은 거.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나나 까' 이라고.

17. 아니요. Q. 남친이랑 안 해봤어? 아. 남친이랑요. 해봤죠. 서로 오늘 하러 갈래? 이러면서 그러니깐 알았다고 언제 끝나냐고, 일 언제 끝나냐고, 이런 얘기밖에 안하는데.

18. 일반 남성들하고 어떤 식으로요?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아니데, 친구한테 핸드폰 빌려줘서 한 적은 있어요. Q. 친구가 남자들이랑 했어? 네. 그러니깐 그제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집을 나갔을 때. Q. 왜 그랬어? 친구들한테? 집 나갔을 때 1년 정도 됐을 걸요? 바로 잡혔어요. 1~2주일 있다가 경찰한테. Q. 어떻게 잡혔어? 그것도 막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알아서 잘

찾아오더라고요. 모텔 돌아다니면서 잤는데 경찰한테 걸렸다고 해야 되나. Q. 걸렸어? 네. Q. 너 보호관찰 받았어? 아니요. 무슨 캠프 같은 거 갔다 오고. Q. 캠프는 언제 갔어? 11월 달에. Q. 근데 그 캠프는 친구들이 조건만남으로 가는 거잖아 너는 해봤어? 아니요. 저는 안 해봤어요. 친구가 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돈 쓰고 그래가지고. Q. 그 친구는 조건만남 한 거야? 네. 개는 제가 애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랑 집 나가서 많이 했는데 얘기도 하고 개도 완전 오빠들이랑 있었다가 하루에 7번씩 나갔는데 심하게 많이 했데요. Q. 같은 학교 애였어? 네. Q. 갈 데가 없어서 개네 집에 있었던 거야? 네. 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Q. 조건할 때 그런 거야? 저는 이런 데서 기다렸어요. Q.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안 그랬어? 저는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생리한다고 안 나간다고 하고 그랬어요. Q. 돈은 개 꺼 네가 다 쓰고? 네. 같이 썼죠. 아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엄마 있는 티머니 카드 충전을 했다 돈을 다시 빼고 충전하고 빼고 충전하고 빼고 다시 빼서 40만원 넘었어요. 엄마가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항심 생긴다고 미안하다는 말 하고 한 마디도 안 해요. 솔직히 너무 미안해서.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살아야하니깐. Q. 조건하다 걸린 거야? 헌팅을 당했는데. 개가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하루정도 나간 상태였는데. 남자가 헌팅을 했는데 놀이터 흥대 놀이터 있다가 헌팅 당했는데 남자 잘 모르겠어요. 20살 정도 됐나?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친구 남자랑 모텔 가서 자다가 거기서. 친구랑 헌팅 했던 남자.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 가지고 Q. 잡아갔어? 네. 저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안 부르길래 경찰에서 거의 한 두 번 부르고 편하게 있다가 11월 달부터 막 캠프 간다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얘기 한 다음에 캠프 갔어요. Q.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 중 다닌다고 그러던데. Q. 지금 학교 다녀? 개는 1년 풀었어요. Q. 안 무서웠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데. 그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냥 뭐 나가서 입고 싶은 거 입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Q. 친구랑 노래방 같은 데 가고 그랬어? 네. Q. 너랑 그 친구랑 돈 다 쓴 거야? 네. 보통 그냥 술도 마셨고, 개 만나기 전에는 술 마시는 법을 몰랐거든요? 개랑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것도 알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으니깐 모텔 가서도 돈 쓰고 찜질방에도 그리고 또 밥도 먹고. Q. 나이트는 안 가봤어? 네. 그런 데 안 가봤어요. Q. 애인 대행은 안 해봤어? 네.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Q. 그러면 조건만남은? 딱 한 번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제가 돈을 가지고 튜튼 적은 있는데. Q. 그 남자는 어떻게 만났어? 랜덤채팅으로(줄독). Q. 랜덤채팅으로 만나서 어떻게 했어? 가서 가입한 다음에 개가

뭐 애들이 해보라고 해서 너무 철이 없는 나머지 그냥 한다고 나가서 돈을 받고 저도 처음에 사워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몰래 지갑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조용하길래 저는 이거 돈을 받고 웃도 안 벗고 사워도 안하고 나간 상태에서 지갑 갖고 있는 돈만 빼고 한 15만 원정도 있었나 그 정도 빼고 번거롭 위에 지갑 올려놓고 그 사람 TV 볼 때 살짝 까치발로 나오서 진짜 죽도록 뛰었어요. 나가자마자 택시 타고, 신발 들고 뛰었어요. 그 남자가 TV 보면, 여기 문이예요, 여기 화장실, 침실, TV 보는데. 이렇게 나와서 현관이니깐 TV 보는 거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TV를 본 거죠. 저도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막 뛰었어요. 지금 생각했으면, Q. 너랑 하자고 한 건데 TV를 왜 봐? 그냥, 지금 생각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남자는 봉변당한 거죠. Q. 원래 얼마 받기로 했어? 애들이랑 하는 거라 애들이 구해준 거라 맘대로 하라고 어차피 갖고 튀라고, 하는 김에 다 한다고, 다 하겠다고 하고, 돈을 최대한 받도록 하고, Q. 딱 한 번 해봤어? 갖고 튕 것만. Q. 그 돈으로 뭐했어?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떤 언니한테 3만원 주고 어떤 언니가 기다려줬으니깐 돈을 달래요. Q. 어디서 만난 언니야? 조건 알선해준? 기다렸나 3만원 달라 그러고 그 언니가 3만원 주고, 아는 언니, 기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때 만난 언니, 그걸로 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려고 화장품. Q. 근데 왜 더 안했어? 무서워요. 심장이 쏠려요. Q. 그 남자는 몇 살? 28? Q. 회사원이었어? 아니요. 문신 많이 하고, 그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 상황에 있으면 날 죽일 수도 있을 거 같았어요. 여기에 문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하기 싫고 어떻게든 튀어야겠다는 생각에, Q. 조건을 직접 안 구해봤어? 친구가 그거 나갈 때 친구한테 제가 구해주긴 했는데 모텔에서 제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Q. 그럼 개가 남자들하고 소통을 다한 거야? 네.

20. 최근에도 해요. Q. 누구랑?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좀 친한 애들 몇 명 남자애들이랑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마다 애들이 사진 같은 거 올려요. 야한 사진이라든지, 탁탁 뿌려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와 야 막 그렇냐고 이런 걸 왜 저기 하냐고 막 찼다고 다리 찼다 이랬죠. Q. 그럼 주기적으로 해? 주기적으로 하진 않죠. 그냥 대화하다보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도 있고, 무서운 사진 올라올 때도 있고 Q. 카톡에서 친구들이 방에 초대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깐 저희들끼리 이렇게, 네 명. Q. 네 명에서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라와? 아니요. 야한 동영상은 없었어요. 사진만 이렇게, '이거 찼지 않냐' 이렇게 투척하고, Q. 일반 여자만? 일반 여자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22. 카카오톡으로는, Q. 그럼 다른 데서? 그러니까 똥단배나 그런 데서 만나면 막 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알려준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가 따로 있으니깐 친추를 할 수 있으니깐 폰 번호 없이도, 그런 거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 알려주면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카카오톡 같은 걸 하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하더라도 나중에 프사 사진이 바꾸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안 알려주고 그냥 채팅방에서만 채팅하다가 자꾸 이상한 얘기 하면 채팅방 나가면 그 사람 저한테 대화를 보낼 수가 없으니깐 나가고, Q. 음란채팅을 해본 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장난 식으로 그 사람이 야한 얘기 하면 그 사람 변태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다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화하다가 재미없으면 대화방 나가게 되고.

23. 아니요. 음란채팅은 해본 적 없어요. Q. 야한 대화나 그런 걸 한 적은 없어요? 아 장난치면서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Q. 누구랑 해본 거예요? 같은 여자애들끼리, 카톡으로.

25. 네. 있어요. 아. 카카오톡으로 한 적은 없고 전화로 했어요. Q. 어떤 전화요? 뭘, 신고안할 거지, 우리 합의 보기로 했잖아요. 어떤 여자애한테 그랬어요, 전날 밤 떠먹고 다음 날 전화해서 신고안할 거지? 우리 둘이 합의 하에 한 거 맞지? 그래서 개가 네. Q. 그 친구는? 애가 소개시켜줬어요. 하라고, 셋이 같이 술 먹고, 방을 두 개 잡고 했죠. Q. 전화는 뭐예요? 제가 녹음했어요. 우리가 합의 하에 한 거냐고, 신고 해봐요, 뽕이예요. Q. 무슨 일 생기면 증거로 제출하려고? 증거 제출하려고. Q. 야한 대화는 없어요? 네.

26. 그런 적은 없어요. Q. 남자애들끼리는 안 해봤어? 남자애들끼리는 해봤죠. Q. 뭐 해봤어? 남자애들끼리 나 어제 누구누구랑 같이 술 마셨다 모텔에서 잤다 그런 이야기. Q. 그럼 너는 뭐라 그래? 아 그러냐고 좋겠다고, Q. 모르는 사람이라 해본적은 없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28. 네. Q. 누구랑? 친구랑. Q. 무슨 이야기했어? 야한얘기요. 누구랑 했다 이런 거.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뭐하다가 다 자세히 설명해주죠.

□ 없음

4. 음란 채팅이 뭐예요? (음란 채팅 설명해줌) 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Q. 그럼 만약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음란채팅을 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5. 아니요. Q. 그럼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한두 명?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데 서로 자기는 남자니깐 상대는 여자냐고 물어보고 여자라고 하면 사진 교환하자고 하고, 아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했던 번호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떠요. 그냥 모르는 번호에 전화해봤다가 그냥 놀러보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보고 젊은 사람 같다 하면.

7. 아니요. Q. 주변에서 하는 사람? 그냥, 원조교제 이딴 거는 들어봤어도 채팅은 못 들어봤어요.

14. 아니요. 없어요. Q. 예를 들어 대화방이나 채팅 사이트 이용해 본 적 없어? 네.

15. 음, 아니요. 그런 건 솔직히 친구들끼리만 하는 거라서, 친구들 이랑 그런 대화 하는 건 별로? Q. 모르는 사람들이랑 많이 하잖아? 요새 그런 걸로 안하고 컴퓨터 헤드셋 끼고 하는 거 많아서. Q. 헤드셋 끼고 뭘 해? 음성으로 하는 거죠. Q. 음란채팅 해봤어? 아니요. 저는 봤어요. 피사방에 사람들 많잖아요. 하는 거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고, 칠 때도 있고 말로도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9. 아니요. 없어요. 만나서 해요. 친구들끼리 Q. 뭐라고? 그냥, 남자애들 있죠. 친구들끼리 치마 짧게 입은 여자들 보면 존나 끌리네 그게 끝이예요. Q. 음란 채팅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거요, 좀 변태 같은 새끼들. 그런 거겠죠? Q. 그런 사람 봤어? 많이 봤죠. 똥단배 할 때. Q. 어떻게 봤어? 맨 처음에 남자면, 남자가 제가 17살이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남 하고 숫자 17을 써요. 딱 쳐요, 그리고 막 남자애들이면 여자애들이 채팅에 들어오면 얘기하고 남자애들이 하면 바로 나가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여자만 찾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번 해봤거든요. 여자라고 뽕치고 막 가슴 만져도 되나 이 지랄하고 야한 사진 보내 달라 그러고 몸 사진 보내달라고 그런 애들 많아요.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 그건 모르겠어요. Q. 전부 그런 내용이야? 네.

21.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음란 안 한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끊었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안 본다고요. Q. 그런

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보겠쥬. 그냥 실제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빨지하면서 보냐' 그러쥬. 그걸 안 되면 보겠쥬. 근데 저는 그게 되니까 안보는 거쥬. Q.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그냥 보통 여자들이 가지고 하면 가? 그러니까 술을 먹어요. 처음 보는 여자 아는 형, 나 셋이 있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쥬. 말이 통하면서 친해지고, 가자 이려고 애가 나한테 빠지는 거쥬. Q. 근데 그렇게 해서 900명이나 했다는 거야? 근데 다 그런 방식은 아닌데, 진짜 많은데, 말이 길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Q. 그럼 아무나 900명이랑 하는 거야? 연결이 돼서 돼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보고 야 하자 하면 해요? 이렇게 안하잖아요. Q. 대화방에서 조건만남 하는 거 봤어? 조건만남. 제가 성매매 알선 해봤어요. 돌렸었어요. 여자에. 80명, 조건만남 4억 8천 해먹은 애가 저예요. 경기도 평택에서, 천안에서 안 했어요. 천안은 물가가 낮아서 여자애들이 싸요. 경기도 권이 세요. 경기도권 가서 여자애들 구한 다음에. Q. 어떻게 구했어? 광고, 불법 사이트 있어요. 여자애들. 뭐 있잖아요. 하는 거 성인 이랑 거. 화상채팅해가지고. Q. 네가 화상채팅 했어? 당연히 시켰쥬. 그래서 저는 사무실 알아보고 있었쥬. 17살 때. 알아보려고 그러가지고 알아보고 그러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여자애들이 대가실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잡았어요. 40명, 40명하고 경기도 터미널에서 모임 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월 15만원씩 내고 공유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어디가 좋더라. 이러면서 그런 거 들어와요. 장부에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저희가 거래처가 백 몇 개 있었어요. Q. 거래처는 어디야? 거래처가 노래방이나 아니면 보도도 하고 조건만남 그런 것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40명은 보도, 이 40명은 조건 이렇게 한 거쥬. Q. 그런 애들이 청소년들이야? 청소년도 섞여있고, 스물 몇 살. Q. 모집하면 개네들이 와? 네. 연락와요. 돈 얼마얼마 주냐. 일단 와서 얘기해보자. 만나서 얘기하면서 오케이 한다. Q. 어떤 기준으로 뽑아? 몇 몇 명씩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내가 친구랑 아는 형님들이랑 해서 애 좋고 좋고 그러면 애 좋다 그러고, 아닌 애들은 너네 절로 빠지고 너네 이쪽으로 와 이라고. Q. 얼마씩 줬어? 하루 일당 10일마씩 챙겨주고. Q. 그래서 어떻게 잡혔어? 17살 때 해서 한 일 년 반쯤 하다가 접으려고 했어요. 접자고. 꼬리가 잡힐 거 같다. 그래서 Q. 평택에서만? 평택에서 하다가 경기도 권 다 잡고 있었어요. Q. 대빵 형님들이 있는 거야? 네. 두 명 있었어요. 친한 형이니까. Q. 그 돈을 셋이 나눠가졌어? 아뇨. 큰 형들이 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4억 8천 제가 먹었어요. 3억 3억 씩 가져갔어요. 존나 많이 벌었어요. 진짜. 갑자기 많은 돈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돈 같지도 않아요. 만원 이런 거 있어도 솔직히. Q. 근데 왜 3만원 상품권을 받으려고 해? 그냥 쌤들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말해주자겠다 아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쌤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쌤도 이런 거 하려고 학교에 오고, 도움이 될 거 있나 하고 그래서 말해주려고 온 건데. Q. 누가 제보를 한 거야? 경찰이 들어타셨어요. 다행이도 조건 하는 애들은 저희가 미리 다 빼냈어요. 천안으로. 조건 애들은 제 친구 세 명에서 애네 데리고 천안으로 가라. 제 친구 하는 애들 데리고 차로 가라. 차도 있었어요. 대포 차. Q. 대포차 뭐야? 사왔어요. 명의 없는 거. 사와가지고 카니발 보도 돌린 차 알쥬. 그런 거 돌린 다음에. 조건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Q. 얼마 벌었어? 개네한테 얼마 줬어? 한 번 하는데 13만원씩, 5만원 6만원씩 때 주고. Q. 얼마나 해야 돈을 많이 벌어? 못 쉬었어요. 개네는. Q. 하루에 한 사람당 몇 명씩 하는 거야? 한 사람당 30명. Q. 그게 가능해? 뛰었다 뛰었다가. 하고하고 하다가 건너편 모텔 거기다 인수해놔요. 그래갖고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바통터치 다른 여자에

들이 힘드니까. 쉬게 해줘야쥬. 바통터치해서 또 들어가고 한 거쥬. Q. 한 여자가 30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럼 그건 누가 구해줘? 네. 그 사이트 전용 사이트 이긴 말해주면 안돼요. 까먹었어요. Q. 애인 대행 사이트? 그런 건 아닌데요. 조건만남의 그 영어로 있는데. 외국 사이트예요. Q. 지금도 해? 지금은 안하쥬. 접었쥬. 다 게임장 하고 있어요. 성인 게임장 오락실. Q. 그런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야?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많아요. 다 섞여있어요. Q. 그래서 경찰이 들어 닥쳐서? 일어나니까 애들 다 잡혀있어요. 가자고 우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가서 조사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다 걸린 게 아니라 세 개 밖에 안 걸렸어요. Q. 세 개라니? 몇 만개 중에서 사건 세 개만 걸렸다고. 몇 만개가 다 걸린 게 아니라. Q. 얼마나 받았어? 형량을? 2년 살고 나왔쥬. Q. 소년원에 갔어? 교도소 갔어요. 소년원, 교도소, 폭행도, 폭행 전과도 많아요. 그 전에. 그래서 판사가 원래 1년 줄 걸 2년 줘서 어떻게 해서 소년원 송치가 됐어요. 일단 교도소에서 1년 8개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년원 송치가 돼서 2개월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소년원이라고 10대라고 해서 소년원 송치가 돼서 소년원에서 6개월만 살다 나와라. 그래서 존나 억울해서 6개월 살다 나왔어요. 이번 2014년 3월에 나왔어요. Q. 원래 이 학교 다녔었어? 입학. Q. 왜? 그냥 학교 다니려고. Q. 그래서 그 때부터 그런 거 안 한 거야? 그 때부터 손 댔어요. 진짜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얘기하는 건데 존나 양아치지만. 양아치 쓰레기 뭐고 진짜 다 겪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해요. 제가 인생을 30대만 산 것도 아니고 지금 19살인데. 다른 사람이 못할 거 이미 저는 다 해봤잖아요. Q. 인생이 재미가 없냐? 인생이 재미는 있어요. 그러는 거 포기하는 안 해요. 인생 다 살았다 그런 개 소리 안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반도 안 살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쌤에 비해 인생 반도 안 살았잖아요. 아직 앞길도 창창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애들 비해 제가 힘들어도 다 참았어요. 힘든 내색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Q. 무슨 힘든 내색? 있잖아요. 막 사고치고 그러고 힘들 거 아니에요. 살면서 힘든 그런 일들 많아요. 저는. Q. 후회는 돼? 후회는 되쥬. 내가 왜 그랬을까. 막상. 제가 찢값은 받았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돈은 많잖아요. 내가 평박은 돈이 있으니까. Q. 4억 8천은 어디 있어? 여자애들 줄 거 다 주고 저도 2억 가졌나. 애들 줄 것 주고, 낼 거 내고 다 내고 2억 몇 천 가졌나? 쓰다가 쓰다가 1억 얼마. 부모님 용돈 주고. Q. 그렇게 번 것인 줄 알아? 모르쥬. 차 사고 차 팔고. Q. 지금은? 몇 천밖에 없어요.

24. 아니요. 카카오톡 안 해가지고. Q. 다른데서는? 랜덤채팅! 그걸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맨날 방 들어갈 때마다 자기소개가 떠요. '1살, 저 남자이구요. 꼬추 커져요' 이라고 나가요. Q. 왜 그런 말을 하고 나가요? 랜덤채팅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 거의 다 보다보면 조건만남. 저는 순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27. 없어요. 학교에서 남자애들 이야기 하는 것만 들었어요. Q. 남자친구랑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Q. 친구들이 음란채팅 하는 거 봤어?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요. 어제 여자를 먹었다. 누구 이러면서 몰려들었어요. 지들끼리 여자 먹었다고 얘기 했어요. Q. 카톡 같은 데에서 야한 사진이나 이런 거 받아 본적은 없어? 있어요. 친구한테. Q. 친구가 왜 보냈어? 배경화면에 할 것 없냐고 하니가 보내줬어요. Q. 누구? 연예인. 남자. Q. 옷 벗은 거? 네. 그래서 배경화면으로 했어요. Q. 너의 신체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 본 적 있어? 없어요.

29. 아니요. 제 친구랑 가끔 카톡을 하는데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랑 놀고 술을 먹고 같이 있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꺼내긴

하는데, Q.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짜라고, 그때 제가 여자 친구가 없어서 막 욕했어요.

30. 없어요. Q. 친구들이 하는 거 못 봤어? 있어요. 심심해서 무슨 채팅방하나 갈았다고 말해줬는데, 낯선사람인데,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친구가 '갈까, 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가냐고 하고, Q. 주변에도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사귀는 친구들도 있어요. Q. 같은 나이끼리? 나이 많은 사람. Q. 어떻게 안 친구야? 저희 반인데요, 지금 그 애가 문제가 있어요. Q. 어떻게 만났대? 랜덤채팅 같은 데서 만나서 지내다가, 그 남자가 친안으로 이사 오고, 어느 날 그 애가 저희랑 엄청 친했는데 저희랑 싸우고 나서 가출을 했어요. 한 20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Q. 남자친구는 몇 살이야? 20살이요, 실종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더라고요. Q. 다시 돌아왔어? 네. Q. 학교 다녀? 네. 말로는

위탁 간다고 그러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Q. 너는 한 번도 음란 대화를 본적도, 해본 적도 없어? 네.

□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표 I-28>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친구와의 장난

3. Q. 친구랑 남자랑 장난삼아? 어디에서 했어? 줄독에서.
11. 장난으로. 중 2때요. 한참 그때 많이 유행해서 장난으로 하다가 재미없어서 안했어요.

16. 요새는 말을 장난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기도요. Q. '젓까' 가 뭐야? '쫓까' 라고 하면 쫓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말이 '쫓까' 인데 '쫓을 까라' 그러면 쫓이 없으니깐 쫓이 없대요. 그러면 젓을 까라고 '젓까' . 그러면 '니나 까' 이라고. Q. 계속 그런 얘기해? 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 하는데.

22. 재미로. 제가 뭐 해서 먼저 보낸 적은 없고 그 사람 반응 같은 게 재미있으니깐. Q.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막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올리니깐 재미있어 보이니깐 저도 했던 거지 제가 먼저 찾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Q. 어떤 걸 올렸어요? 그 사람도 대화를 하다가 아는 애들을 만나고 막 그 사람도 재밌는 게 있으면 캡처를 해서 이 사람 웃기다고 그런 식으로 올린 거.

23. 맨 처음에 다른 친구가 막 그러면 막 같이 장난쳤어요.
29. 제가 여자 친구가 없으니깐 놀린 거예요. 나는 여자 친구 있는데 장난 식으로. Q. 너는 자랑 안 해? 저도 여자 친구 없는 애들한테 여자 친구랑 놀러가서 찍은 사진 같은 거 장난으로 보내요.

□ 호기심

1. 되게 호기심. 안 해 봤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 심심해서

12. 애들 다 학교 갔을 때 심심해서 하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했어요. Q. 무슨 대화 했했어? 조건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 이유 없음

2. 이유는 딱히 없고 친구들이랑 지내다보면 친구들이 편해지면서 믿어지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야한 말들. 여자들과랑 예전에 사귀 여자 친구랑. 제가 여자 친구한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친구가 싫다고 해서.

26.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 단체톡 만들어서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Q. 나 오늘 누구랑 잤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도 있고 친한 애들끼리는 술 마신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Q. 재미로 올리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들 얘기해요. Q. 사적인 것을 알게 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 이유 모름

5. Q. 친구들이 왜 하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려고도 하고 막 그래요.

13.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단독인데 제가 초대받았어요. 재미없어서 나가면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Q. 어떤 거 올려? 그냥 야동 본 거 캡처해서 올리고 징그럽지 않냐. 그냥 행위 하는 게 징그럽지 않냐. 여자들이.

17. 음.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Q. 전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거기서 해? 전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Q. 못 듣게 하려고? 이유도 없이 그런 채팅을 해? 그러니깐 어떻게 하다보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 기타

9. 그러니까 제가 택배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안다니고, 택배를 했어요. 유료배송? 하고 친구랑 누워서 저희 집 가서 있는데 심심하다

막 이러면서 컴퓨터가 안됐거든요. 심심해 이려고 놀고 있다가 제 친구들이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조건만남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제 친구가 돈을 돈을 상대로 네이버에서 캡처해서 사진 보내주거나. 만약에 사진 보내줬는데 이번에 캡처해서 보내주면 그 사진 저장해놨다가 이제 다른 여자한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 그냥 그런 사진 올라오다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다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뭐 찐다 섹시하다 그러는 거죠. 애들이. Q. 호기심이 아? 호기심은 다 지났고요. 그냥 그런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개네들이야 그냥 보내는 거고 개네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보다가 찐다고 캡처를 하고. Q. 너는 보기만 하고 찐다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내? 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 친한 애들이 요만큼인데.

24. 짜증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랑 연락하고 싶었는데, 남자가 걸리잖아요. 원래 다 그래요. 근데 가끔 같은 지역 뜨면 물어보죠. 서로 맞춰보기 하던가.

28. 어찌다가 하게 됐어요. 나 오늘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뭐했냐고

물어보면 다 얘기하죠.

□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19.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29>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음란 채팅을 한 후 느낌이나 감정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고 난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 재미있음

1. 전 되게 그런 거 없고, 재미로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재미로.
3. 그 남자의 반응이 재미있었고요. Q. 나이는? 20살? 19살 정도.
12. 재미있었어요. 막 조건 한다고 해놓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음. 나가면 조건을 해야 되니까 안 나갔어요. Q. 어떤 대화방에서 했어요? 즐툰이랑 심툰.

19. 좀 웃기죠. 웃기니까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몸 사진 보여줘 그러면 좋겠어요? Q. 뭐라고 반응 했어? ‘쫓까 이 씨발놈아.’ 하면서 욕하고 싸웠어요. 그러고선 제가 맨 처음에 여자라고 했다가 막 욕하다가 ‘나 원래 남자야 이 씨발놈아’ 하다가 ‘아 쫓갈네’ 하고 나가요. 웃기잖아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자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Q. 왜 그렇게 했어? 놀리고 싶어서. Q. 취미야? 취미는 아닌데 뭔가 재밌어요. Q. 어떤 게 재밌어? 개네가 뭔가 어이없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재밌어요.

22. 그냥 웃겼죠.

23. 아무 느낌 안 들었는데. 그냥 재밌었는데. Q.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네. Q. 어떤 얘기해요? 막 자기가 본 동영상 있으면 이거 엄청 야하다 이러면서 보라고 그래요.

□ 아무 느낌 없음

2. 여자들이랑 하면 여자들이랑 음란채팅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느낌 없었고, 남자들이랑 했으면 하도 편해서 장난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13. 아 저렇구나. 그냥 뭐 나중에 하겠지.

16.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선 안 하죠. 우리들끼리만 하는 거죠.

17. 그런 거 없는데. 아 오늘 그러면 일 끝나기 2시간 전에 화성하냐 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알았다고 그냥 보내는데. Q. 특별한

감정은 없어? 네. Q. 진한 대화는 아니고, 그냥 웅건만 얘기한 거야? 네. 그거 빼고는 지금 뭐해? 밥 먹었어? 그런 얘기 밖에 안 해요.

29. 감정이 없어요. Q.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출 사진도 팔고, 포옹이나 키스알바, 조건만남도 하고 입던 속옷도 파는 거 본적 없니? 페이스북에 페이지 관리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올린 거 봤는데 카카오톡에 엑소 숙소 쳐들어갔는데 엑소가 누구누구가 입던 팬티 판다고 그런 사진 있다고 봤어요. Q. 얼마야? 한 장당 50에서 100정도에 팔아요. Q. 거기 댓글들은 어때? 좋긴 좋은데 이런 거 이해 안 간다는 애들도 있고,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되냐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진짜 엑소 팬티인지는 모르잖아요. Q. 그런 건 공유 안 해? 그런 거 공유해봤자 남자애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여자애들 낫가림이 심해서(말 안 해요).

□ 불쾌함

9. 더러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럽고,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미에 호기심에 해봤는데 이걸 좀 아니다 싶었죠.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말이 막 진짜 좀 그렇잖아요. 야한 말도 엄청 하고, 별 것도 아닌데 야한 말도 엄청 하고 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음란채팅 해 봤나 뭐 그러진 않고 저는 친구들 고민 있으면 만나서 얘기해요. 만약에 쌤이 자한테 폰으로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됐다 하고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요. 막 이상해요.

□ 허무함

24. 허무했죠. 여자애들 걸리려다가 남자 걸려서.

□ 기타

11. Q. 주변에 음란채팅을 했던 친구가 있나요? 친친은 아니고 그냥 만나서 노는 친구인데. 개 성매매해가지고 6개월 들어갔어요. Q. 소년원에? 네. Q. 계속 해요?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Q. 어떻게 하다가? 개 친구 통해서 들었는데, 저만 알고 있으래요. 처음에 채팅을 하다가 만나서 한 시간 정도 밥 같이 먹으면 돈을 준대요. 아 진짜 밥 먹는 건데. 우리도 할래 하다가 우리 채팅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Q. 경찰한테 걸렸어요? 단속?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게 불법이라는 거 이제 들었어요. 몰랐거든요. Q. 음란채팅 했을 때 나이를 알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어요? 괜찮다고. 얘기하자고. 더 좋아하던데요? 방을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친구들 하는 거 봤는데. 청소년 얘기하다가 막 그러면 더 좋다고 막 그래요. 저희가 욕하고 나가요. 정신 차리라고 언녕 서로 인사해요. 너 꺼 보여줘 너 꺼 먼저 보여줘 하니까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26. 저도 뭐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되죠.

28. 맨날 달라요. 괜히 말했다 싶을 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있고. Q. 괜히 말할 때는 왜 그래? 믿음이 안가서. 친구가 이야기 할까봐. Q. 동영상보고 (성관계에 대해) 배우는 거 아니야? 네. Q. 영상이 있지 않니? 있죠. 여자들 보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해요. Q. 모바일 메신저에서 노출사진 같은 거 받은 적 없어? 있죠. 친구들한테. 남자 애들 꺼 몰래 찍은 거. 씻을 때 몰래 찍어서 웃겨서 올린 거요. 친구가 다른 애 씻는 것을 찍어서 보내줘요. Q. 여자애들이 자기 옷이나 속옷 같은 거 팔거나 조건만남 같은 거 하는 거 봤어? 네. 소문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한다고. 보도 뛰는

애들. 밤에 놓고 있으면 누구랑 있는 거 보고 그러죠. Q. 성인들하고? 네. Q. 어디서? 천안이요. Q. 개네 본적 있어? 어떤 사람들이랑 있는 것 같아? 일반 어른들. Q.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보죠. 왜 저러고 다니는지. Q. 보도 하는 것만 본거야? 네. Q.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자기 속옷 파는 여자애들이 있던데, 본적 있어? 한 번도 못 봤어요. Q. 여자들이 노출사진 보여 준적 없었어? 없었어요.

□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0>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한 행동

질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대화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함

1. 저는 뭘 보여주진 않았고 상대 여자 측에서 보여줬어요. 몸을 보여줬어요. 가슴만. Q.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원했어? 아니요. 그냥 자기가 만족하던데요. Q. 네가 보내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그냥 지가 보여주는. 보내던데요. 그때 당시 열여섯인가 열일곱. 저보다 많았어요. Q. 그래서 그 여자 만났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재미로만 했다고. 보여주기만 하고. 안 만났단니까요. 너무 멀고. 그런 거 같아요. Q. 신체 노출만 했어요? 어떠한 반응? 저는 구경만 했어요. Q. 개한테 뭘 보냈을 거 아니야? 안 보냈어요. 보기만 했어요. Q. 보기만 했어? 흥분됐어? 그냥 무덤덤했는데요.

□ 음란 채팅만 함

2. 음란 채팅만 한거예요. 사진은 보낸 적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는 애들이랑 한 거예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랑. 예전에 중학교 때 랜덤채팅 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제가 너무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랜덤채팅이 있었어요. 똥단배라고 중학교 때 한 번 했어요. 야한 말도 해보고 호기심에 그래서 특별한 결과는 없었고 그냥 음란 채팅이 끝이었어요.

19. Q. 음란 채팅을 한 거네? 네. Q. 거기서 신체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판매, 애인대행 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본 적 없죠.

각자 일대일 이런 건데. Q. 너는 그냥 음란 대화만 애긴, 조건 그런 얘기만 한 거야? 네.

22. 노출사진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Q. 그러면 대화 이런 것만 한 거예요? 네.

24. 음란채팅 말고 다른 거 해본 적 없어요? 네. Q. 신체 노출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본 적 없어요?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작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아서.

□ 자신의 사진을 보냄

3. 그런 거 해보려다가 얼굴 사진 그 뭐지 머리 다 여기 반쪽만 다 내고 찍어서 친구랑 같이 보냈어요. Q. 음란 채팅 해보고? 네. 음란 그런 건 안 해 봤어요. Q. 근데 얼굴 사진을 왜 보냈어요? 그냥 개도 보냈길래 잘 생겼다고 해주고 하고 보내줬죠.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러다고 다른 사람이랑 또 하고.

17. Q. 사진 보낸 거 없어? 그냥 옷 다 입은 전신사진 밖에. Q. 그런 건 보낸 적 있어? 네. Q.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 키스알바나 이런 거 많이 하고 동영상도 판매하고 속옷 판매하고 본 적 있어? 페이스북에 막 여자 그 직업 그런 거 별로 있어요. Q. 주변 아는 사람은 한 적 없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얘기로는 옛날에 몇 개 만들어놓은 여자 있었거든요. 개가 키스알바 한다고 그런 애들 있었어요.

□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 요구

11. 막 말하다가 사진 보여 달라고 해요. 애들끼리 다 있어요. 막 되게 웃긴다고 당신이 먼저 보여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나갔어요 Q. 다음에 또 한 적 있어요? 아니요.

□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

12. 조건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3. 조건만남 예전에 가출했을 때 했어요. 중 1때 중 2때 중 3때도. 그때 그냥 뭐지 애들이 가출일행 언니들이나 오빠들이나 알려줘 가지고 조건만남 시키고 그랬어 전 또 가서도 도망가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무너질까봐. 부모님 다 아세요 Q. 그 언니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다 카페에서. 가출 카페에서. 중딩 때 한참 거기 있었는데 폐쇄했어요. Q.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15만원, 10만원. 그 언니들한테 다 가죠. 월세 값. 방 비 다 우리가 해준다. 그 언니들 나이가 17살에서 22살까지. 다 저한테 시켰죠.

□ 상대방이 자신이 입던 스타킹을 판매할 것을 요구

16. Q. 아저씨 해봤어? 아니요. 그런 거 없고 옛날에 졸푼 들어가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입고 있던 스타킹이나 팬티 얼마에 산다고 그런 건 있었어요. Q. 남자들이 얼마에 산대? 3만원인가 5만원? Q. 그러고 어떻게 했어? 그런 거 보고 무시했어요. 사기 같아서. Q. 그럼 그런 거 본 적만 있어? 네. Q. 애인 대행은 안 해봤어? 네. 그런 건.

□ 기타

9. 안 해봤어요. Q. 그럼 채팅하는 애들이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 행동을 하나요? 네. 거기. 낯선 사람과의 채팅은 동영상 안돼서. 동영상 안돼요. 사진만. Q. 사진 보내고 그래서 직접 만나나요? 아니 그러니깐 저는 안 해 봤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060~' 거기서 전화하면 이제 저한테 전화오고 제 번호가 아니라 임시 번호 그런 게 와요. 전화하면 그 사람 받고 해서 만나는 애들도 있고 만나서 안 좋은 일 당할 뻔 한 애도 있어요.

15. Q. 대화방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 있어?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20. 키스 알바나 노출 알바 같은 거 본 적 있어? 네. 있어요. Q. 어떻게? 그 것도 SNS 페이스북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입던 속옷 이런 걸 막 팔더라고요. 막 스타킹 팬티 이런 거. 여자가 우리나라에선 못 봤어요. 우리나라가 올린 건 못 봤고, 일본에서 올린 걸 번역해서 정리를 해서 페이지 관리자가 딱딱 올렸어요. 보니까 팬티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11만원 이리더라고요. 여자 입었던 팬티가. 그런 것도 봤고 스타킹 이런 것도 봤고. 스타킹 이런 것도 7만원, 5만원. Q. 일본 애들이 그런 게 아닌 거네? 개네만의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 걸 거래하는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에 올렸고 페이스북 관리자 한국인이 어떻게 하다 보게 돼서 그걸 보고 놀랐다. 하고 올린 거죠. 저걸 5만원, 10만원이나 올리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Q. 포옹이나

키스 알바는 봤어?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Q. 노출사진 판매나 동영상은? 네. 그거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Q. 어디에 있어? 그건 제가 게임 막 할 때도 서든도 하고 피파도 하고 막 했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서든 같은 걸 하면 대기방 이런 걸 하나 만들어요. 거기 제목에 노출사진 판다고 막 올라와요. 그럼 가서 노출사진 보면 막 총 선물하는 게 있어요. 총 일주일 치 선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Q. 노출사진에 갑자기 총이 나와? 그러니깐 노출 사진은. 서든어택이 총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 총이 좋아야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총을 못 사니까. 돈 있는 애한테 내 노출사진을 팔고 개가 나한테 총을 선물해주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노출사진은 한국 사이트에도 있어요. Q. 그러면 여자애들이 많이 팔아? 네. 여자애들이 훨씬 많이 팔죠. Q. 그럼 청소년이야 성인들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Q. 어느 수위까지 팔아? 그냥 다 나온 거. 그건 얼굴만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하면 내가 어디 어디 해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찍어줘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거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 입금하면 보내주고. Q. 자기 거 안 보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 거 보낼 수도 있는데.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자기 거 보내요. 예를 들어서 다리 좀 벌려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리 벌린 사진 없으면. 다른 사람 다리 벌린 사진 없으면 안 되니깐. Q. 얼마인 거 같아? 얼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건 만남 이런 거는 있어요. Q. 조건만남 얼마? 조건만남은 거의 10만원. Q.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왔어? 뿔단배. 이런 걸 보면 호기심에 한 번 해보게 되어있는 데. 들어갔어요. 뿔단배 모르는 사람이라 뿔단배가 랜덤으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서울은 은평구 몇 살 키 몇 이고 딱 얘기를 하는데. 하루 8만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아 이거 조건만남이구나. Q. 너 뭐라고 반응했어? 저는 별로 그냥 뭐 아무 말 안 했죠. Q. 그 여자가 먼저 그랬어? 그냥 이렇게 채팅방 들어가자마자 개네는 복사를 하나 봐요. 바로 딱. Q. 근데 막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인 안돼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좀 아니잖아요. 26. 그런 사람은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자 같은 건 많이 왔어요. 조건만남인가? 얼마고 뭐 그런 거. Q. 어떤 문자? 카톡에서? 아니요. 문자메시지로 왔어요. Q. 어떻게 했어? 삭제했죠.

□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3.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1>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

질문: 청소년의 불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성인·음란물로 인한 부정적 영향

1. 되게 성관계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잖아요.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조건만남 되게 랜덤채팅하다 생기고 그러니까 욕구 참았던 게 이제 못 참잖아요. 만나서 막 뭐하고 그런 거면, 요새 평균 연령이 13.5세라고 들었나?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막아야 될 거 같아요. 랜덤채팅 같은 거 노출 못하게.

2. 제가 너무 심해요. 음란물 같은 것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너무 자주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흥분되는 편이고, 제 또래가 20살, 누나들, 그러면 한번 하고 싶다. 성폭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Q. 행동으로 해본 적은 없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Q.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할 거야? 허용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6.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요즘 다 그런 거 같아요.

13. 일단 남자들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하죠. 성관계.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저렇까 하고 이런 생각할 거 같아요.

19. 많죠. 막 야한 걸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안 좋고. Q. 가차없게 영향이 있어? 네. 하고 싶어진 거 같기도 하고 야동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해보고 싶기도 하거나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야한 영상이 생각날 거 같은지. Q. 스마트폰 중독되지 않아? 중독 안 좋죠. Q. 계속 페이스북 하게 되지 않아? 조절 안 되지 않아? 조절돼요. Q. 스마트폰 없어도 상관없어? 전 전화만 되면 돼요. 진짜. Q.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네.

20.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야동을 보면요, 여자가 좀 노예 여자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자 표정도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막 이제 초등학교이나 중학생 1,2학년이나 초등학교 4,5,6학년 이런 애들이 보이면 좀 그거 보고 되게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Q.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고 물건을 파는다는지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심하면 성추행하던가 또래 여자애들한테 그런 게 일어날 거 같아요. 좀 수위가 강해가지고. Q. 어느 수위까지요? 되게 수위가 강해요. 진짜 강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막 개 다루듯이 개 목줄 잡잖아요. 개 목줄 채워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기어가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대부분이 외국꺼, 우리나라 까도 이제 우리나라끼는 말을 하는 게 다 들잖아요. 일본은 일본 말하면 모르잖아요. 영상만 보고 집중하는데 한국말은 이제 영상도 나오고 말도 나오잖아요. 말도 좀 가끔가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씨발년 똑바로 해' 남자가 여자한테 막 그런 것도 있고. Q. 개네는 일반인이지? 일반인도 있고. Q. 그런 거 일부러 찍어서 올리는 거야? 캠퍼더 이런 거 놓고 캠퍼더 들고 하고 그런 거. 자기들이 올리는 거죠 영상을 팔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Q.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건 아니고 때리는 식으로 머리채를 잡는다가나. Q. 강제로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 사이도 있는 거 같고 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성매매 이런 것도 있고, 몰카로 찍은 것도 있어요. 자기가 몰카 캠퍼더를 여기에 놓고, 여자는 먼저 나가고 캠퍼더 숨기고 그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상의를 해서 찍겠다. 찍겠다 해서 서로 찍기로 한 건 모자이크 하고 아니면 가면 쓰고 나오거든요. Q. 그럼 몰카는 다 나와? 네. 얼굴도 다 나오죠. 심하죠. Q.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개네는 진짜 허접하죠.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P2P 사이트에 돌아다니잖

아요. 그럼 이렇게 스크린 샷으로 해서 몇 개씩 미리보기로 나와요. 어떻게 하다 내 얼굴이 나와. 내가 옛날에 저 곳에 있었던 거 생각이 나 그러면 미치는 거죠. 진짜 자살충동 느낄 걸요. 그러는 거 보면, 못해도 거기 올라왔다는 거는 적어도 100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못해도 1000명은 봤을 거 같아요. 그럼 1000명의 남자들이 언젠가 개가 자기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Q. 얼굴이 자세히 나와?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자세하게 나온 건 좀 그럴겠죠. 그대로 올라가니까.

23. 안 좋죠. Q. 어떻게? 막 그런 거 자주 혼자만 보면 되게. Q. 혼자만 봐서 안 좋은 거 같아요? 혼자만 보면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친구들한테 같이 보자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대요. Q.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스마트폰 많이 쓰면 안 좋죠. 일단 전자파도 안 좋고요. 손가락 관절도 안 좋고요. 눈도 안 좋아지고요. 스마트폰 중독 돼요.

26. 그거 만약 음란물이 심각한 정도로 올라오면 저도 충동 같은 게 생겨요. Q. 어떤 충동? 생각 정도요.

□ 스마트폰 중독

4. 그냥,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Q.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폐부의 노예가 된 거 같아요. 계속 폐복만 하니까. 글을 그냥 보거나 할 때도 있고, 글 올릴 때도 있고 그래요.

5. Q. 스마트폰 쓰기 전과 쓰기 후 어떻게 달라진 거 같아요? 달라요. 좀.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괜찮은데, 제가 좀 잘못하면 핸드폰을 뺏기거든요. 뺏기면 카카오톡도 못하고 애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짜증내고 전화도 못하고.

8.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냥 핸드폰만 만지잖아요. Q.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변화가 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 애들 만나고, 핸드폰만 만지고.

9.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방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나이 어느 정도 먹다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카톡이 엄청 와요. '너 왜 네가 공부를 안 하던 애인데 네가 왜 공부를 하나' 고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지금 놀 때라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화를 엄청 많이 바꿨어요. 근데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뭐로 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캐요. 그래서 보면 또 뭐라고 해요. 그 때는 전화기 꺼놓고 잠깐잠깐 하다가, 키면 또 오고, 스마트폰 쓰기 전처럼 쓰고 난 후 비교해봤을 때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안 좋아진 거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 같아요.

10. 모르겠어요. Q. 그럼 스마트폰 사용하고 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데, 폰 만지는 시간에 애들하고 놀 수 있는데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같아요? 핸드폰에 미쳤죠. 핸드폰 뺏기면 욕해요. 선생님한테.

14. 습관이 되겠죠. 저는 이제 폰을 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요즘 애들 보면 '폰 아니면 뭐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담배 피는 것처럼 중독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 같아요. Q. 중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거지? 네. Q. 음란물 보는 거는? 그것도

자꾸 손이 가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보게 될 거 같아요. Q. 성인물도? 네.

18. 스마트폰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빠져 가지고, 자려고 하면 스마트폰 다시 키고, 또 자려고 하면 다시 키고,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Q. 성인물 같은 건? 많이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성폭력이나 여자애들 막 그럴까봐.

27. 아무 느낌도 안나요. 흥분 안 되는데. Q. 상상도 안 돼? 네. Q.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향이 없어? 다른 거에 집중이 안돼요. 만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핸드폰 만지고 싶어요.

30. 일단 성적이 떨어져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번에 성적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있으면 '아 조금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막상 시험 날 시험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시험도 망치고, 그리고 잠을 늦게 자요. 할 게 없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Q. 중독성은 어떤 것 같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 두고 오면 조퇴하고 가지러 가거든요. 집이 먼데도 핸드폰 가지러가요. 그 정도로 (없으면 불안해요).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 아무런 영향이 없음

3. 그렇게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그냥 채팅할 때 연락 오거나 모르는 사람 페이스북 연락와가지고 막 결혼하자 야! ○○○ 약혼하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신고한다 해도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신고했었고, 신고하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12.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음란물 많이 봐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17. 저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Q. 성인물이나 음란물 보면 아무 영향을 안 받아? 네. 저는 심심할 때 보고 그냥 다른 거 보고 그러는데. Q. 그런데 그런 걸 본 게 머릿속에 다 남잖아. 영상 같은 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때 보고 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Q. 스마트폰 중독은 어떤 거 같아요? 그냥 만화, 애니 본다고 붙잡고 있는 거지. Q. 어떤 내용이야? 액션 아니면 호러. Q. 그 것도 영향을 안 줘? 애니 같은 거 한 번 보면. 며칠 전에 최근에 오래 봤을 때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계속 봤나? Q. 스마트폰에서 계속 보는 거야? 네.

21. 아니요. 없죠. 왜 있어요. Q. 전혀 영향 없어? 네. Q.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 했는데 성병 안 걸려? 저는 콘돔 끼고 딱. 콘돔 끼고 바로 하고 대충 닦고, 그러고 바로 집 가서 때 밀고 40분 동안 닦아요. Q. 왜? 더러워서. 그냥 뭔가 찝찝해요. 처음 하는 애들도 많이 갠어요. 처녀막 다 뚫고, 진짜 쓰레기였어요. 제가. 저도 생각하면 너무했어요. Q. 후회돼? 후회는 안 돼요. 자랑스럽잖아요. 여자들 따 먹고. Q. 부인한테 안 미안해? 사실대로 다 말할 거예요. 숨기고 있다가 알면 더 열 받죠. Q. 그런 것을 해도 좋아할 여자가 있을까? 모르죠. 지금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Q. 여자 친구가 성매매 알선 한 거 다 알아? 네. 다 알아요. Q. 그럼 여자 친구가 뭐라고 해? 잘한다. 병신아. Q. 여자 친구가 뭐라고 안 해? 네. 제가 잡혀 살아요.

25. 아무 영향도 안 준다고 생각해요. Q. 왜요? 저한테 영향을 줄 건 없죠. 개네가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Q. 청소년들이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Q. 그럼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 좋은 거 같아요. 누나들이 방에 있어서 핸드폰

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누나들이 방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방에 누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야동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대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진 거 같아요. Q.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건요? 네.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밖에서 노는 거 때문에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Q. 스마트폰으로 인해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없어요.

□ 긍정적인 영향

7. 전 그렇게 안 써서 잘 모르겠고 좋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노래 잘 부르면 다운 받아서 듣고 사용하는 게 편리해서. Q.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거 같아요? 전 좋아요. 여차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써가지고.

11. 자기들이 뭐지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성관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보면 제 친구가 야동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보다가 애가 질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안 봐요.

□ 기타

15. Q. 그 때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근데 그 짝은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Q.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걸 꼭 뿌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Q. 그걸 어떻게 뿌렸지? 거기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한 명이 울렸는데 그게 공유가 되고, '좋아요' 를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Q. 개네 돌이 하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야? 네.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옥상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명이 찍은 거죠. Q. 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알고 있었겠죠. 찍는 데 그 쪽을 보고 했으니까. Q. 찍는 데도 계속해? 네. 근데 얼굴이 확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22. 일단 뭐 다른 애들이 그런 거 보고 하는 거는 심심해서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 안하는데 그걸 보고 따라한다든지 일단 그런 걸 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처럼 애기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르잖아요. 일단 그런 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욕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저렇게 까지 안 하고 성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Q. 안 좋은 거 같아요? 보는 걸 이상하게는 생각 안하는데, 꼭 보는 걸 티를 내거나 자기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한테든 흥내를 내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딱히 보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니까. Q.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없는데. 그냥 스마트폰은 핸드폰이고, 저도 일단은 많이 쓰니까. Q. 스마트폰 중독되고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긴 해요. 막 연락 와 있을 거 같고 중요한 거 와 있을 거 같고 없으면 불안해요. 안 하면 심심하고, 할 게 없고.

28. 하고 싶다. Q.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자위해요.

29. 그럼 행동으로 옮겨? 아니요. Q. 자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 접촉 경험 없음

16.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표 I-32> 현재 이용하고 있는 랜덤채팅

질문: 현재 이용하는 랜덤채팅 어플은 무엇입니까?

□ 이용한적 있음

1. 아자르요.
2. 아자르, 아자르 빼고 없어요. 뚫단배는 이제 안 해요.
3. 아자르.
4. 아니요, 없어요. Q.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님 어플 설치해 적은 없어요? 네. 있어요. Q.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네. 뚫단배요. 깔고 한 번, 두 세 번 하고 재미없어서. Q. 그럼 그거 하면 가입하면 바로 연락이 오나요? 말 걸거나 그래요? 그 뒤였지 그 막 배가 떠오. 그거 누르는 거였나. 어 막 그래서 그냥 그러고. Q. 그럼 그걸 누르면 채팅하는건가요? 잘 기억이 안나요. Q. 그럼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랜덤채팅 사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것보다 익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에스크라고 있는데요. 에스크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익명이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요. 대답하고 Q. 그럼 그거 어디 앱이죠? 아 그거 페북에. 그거 주소를 자기가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들어서 주소를 가져다가 쓰면 페북에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Q. 그거는 자주 써요? 네. Q. 다른 친구들도 이거 많이 써요? 네. Q. 그럼 그건 친구 된 사람끼리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제 친구 공개를 해 놓으면 친구끼리 할 수 있고, 친구의 친구까지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Q. 에스크라 사용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말 걸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있어요. 많아요. 익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 원래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말 걸면 거절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다가 욕할 때도 있고.
5. 뚫단배 써봤어요. 한두 번 정도. 그냥 짧게. 재미없어가지고 채팅한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해요.
6. 써본 적은 있죠. 뚫단배, 1km. 한 번씩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미없어가지고. Q. 접속하면 상대방이 바로 말을 걸어와요? 네. 1km는 1km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아요. 뚫단배도 마찬가지고. 직접 만나고 그러지는 않고요. Q.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한 때 유행했어요. 중학교 때.
7. 아니요. Q. 한 번 써본 적은 있어요?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은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중 3때.
8. 없어요. Q. 친구들이 써본 적은 없나요? 네. 랜덤채팅.
9. 네. 저 뚫단배도 하고, 진짜 할 거 없을 때 해요. 근데 천안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요. 거기에서.
10. 빼꾸기, 뚫단배, 낯선 사람과의 대화, 아자르.
12. 줄톡이랑 심톡이요. 빼꾸기는 해봤어요.
13. 지금은 원래부터 깔아있던 거는 줄톡 밖에 없어요. Q. 언제 썼어? 저 중 3인가 중 2때 인가 지금 써? 그걸 사용안하고 있거든요. 또 어쩔 때 필요하니까. 시간 때우기요. 왜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지하실 탈 때 버스 탈 때 아니면 학교 어디 갈 때. 심심할 때 하는 거죠. Q. 거기서 뭐해. 누구랑 얘기해?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재미없으면 나가고 변태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얘기해요. Q. 뭐라고 얘기해? '뭐하냐' , '밥먹었냐' Q. 너한테 만나자고 안 해? 네. 만나자고 해도 어차피 제가 나가면 끝이잖아요. 딱히 신경 안 써요. Q. 만나자고 해도 만난 적 있어? 아니요. 그냥 다 나이 먹고 별로예요. 거의 다 아저씨.

14. 랜덤채팅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아니요. Q.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네. Q. 줄톡이나 뚫단배 해본 적 없어? 네. Q. 컴퓨터에서 선생님은 만났다고 했잖아. 컴퓨터는 어떻게 가게 됐어? 지원했던 거 같아요. 어쩌다보니깐. Q. 성장캠프 간 거죠? 네. Q. 언제 갔다 왔어? 이번 4월, 세월호 그거 일 터졌을 때 가서. Q. 왜 갔어? 네가 지원했어? 저 가지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간다고 그랬어요. Q. 선생님이지? 선생님한테. Q. 성장캠프 왜 가자고 했어?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걸 좀 말하기 싫어요. 이런 걸 말할 줄 몰랐는데. 뭔가 깊숙이 할 줄은 몰랐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어 그 캠프에 간 애들도 똑같이 성에 대해 피해를 입어서 오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Q. 성 피해를 어떻게 입었어? 그러니까 애인대행도 있고, 조건만남, 성폭력도 있을 수 있잖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청소년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안 받아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더 잘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돈도 사급도 작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Q. 청소년이라고 사급을 적게 줬?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편의점 안 되고, 노래연습장 안 되고, 청소년 잘 수 있는 그런데도 안 되고, 원래 PC방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Q.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한거야? 그렇다고 볼 수도. Q. 부모님 안계세요? 부모님 다 있어요. Q. 부모님 돈 안주사서? 그것보다도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Q. 그래서 조건만남을 한 거야? 네. Q. 그러면 조건만남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건 많이 안했는데. 랜덤채팅 같은 거. 줄톡. Q. 줄톡 하나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어? 그냥 듣긴 들었어요.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걸. 그걸 듣고. Q. 친구들한테? 아뇨. 친구들 말고 언니들. Q. 아는 언니들? 네.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걸 할 거라곤 생각 안하고 그냥 흘러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Q. 돈필요할 때? 네. Q. 줄톡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뭐. 만날 거냐고. Q.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조건만남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Q. 그 중에 선택을 했을 거 아냐? 그래서 선택을 해서 만났는데, 걸렸어요. Q. 누구한테? 경찰한테. Q. 어떻게? 그거 누가 신고했어요? 인터넷 상에 있는 거를? 그 사람 만났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청소년이라고 만났다고. Q. 가상의 채팅 내용을 보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만났는데. Q. 누가 포착하고 한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Q.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 번 했는데 걸린 거야? 네. Q. 돈도 못 받았겠네? 그렇죠. Q. 하긴 했어?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는 경찰에 걸린 거예요. Q. 검찰한테 갔어? 네. Q. 수감명령 내린 거야? 네. 아직 이제 캠프는 수감하라고 하고 말 없을 때 갔었거든요. 근데 소환할 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처벌 받는 게 낮아질 수도 있고. Q. 그러면 상대방은 네가 청소년인거 알았어? 아니요. 몰랐죠.
15. 돈톡이요? 그건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거예요. Q. 채팅어를 돈톡을 다운 받은 거죠? 네.
16. 줄톡이랑 컴얼롱. 컴얼롱은 그런 거예요. 사진 올리고 아이디어 같은 건데 그냥 표지만 친구 만나기 어때 이렇고 들어가 보면 지역 어디 이렇게 되어있어요.
17. 옛날에 말 몇 마디하고 뒤통나갔는데,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말 몇 마디 한 게 끝이었어요. Q. 채팅 어플 이름이 뭐였어? 뚫단배.
18. 줄톡, 아자르 2~3개월 하다가 안했고.

19. 뚝뚝배. Q. 네가 썼던 어를 다 얘기해 볼래? 뚝뚝배. 저 그거 밖에 안 해봤어요. Q. 언제 써봤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3학년 때.

20. 뚝뚝배. Q. 졸푼 같은 건 안 해봤어? 네.

22. 뚝뚝배랑 낯선 사람과의 대화인가 채팅인가?

23.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 없는데. Q. 전에 썼던 건? 아자르 밖에 없어요. Q. 주변 친구들은 어떤 거 써요? 뚝뚝배하고 아자르. 또 뭐 있지 낯선 사람과의 대화인가 그런 거요.

24. 뚝뚝배.

27. 아자르는 가입해 봤어요.

29. 그런 게 뭔지 모르겠어요. Q. 친구들 중에 랜덤채팅 하는 애들 있어? 요즘에 별로 없어요. 가끔씩 아자르 하는 애들은 있는데 랜덤채팅 하는 애들은 못 봤어요. 거의 다 페이스북 해요. Q. 아자르 언제 해봤어? 며칠 전까지 해봤어요. 친구들하고. Q. 거기서 뭐 했어? 남자 애들이 자기 성기 내놓고 막 춤을 춰요. Q. 어른들이 애들이? 어른들이 한 것도 보고 애들이 한 것도 봤어요.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몸만 봐도 어른인지 애들인지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어른이고 딱 보면 애들이에요. 거기에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까지라고 하고 욕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 가슴 내놓고 그래요. 못생긴 애들이. Q. 보여 달라고 안했는데? 네. 가슴 내놓고 있어요. 창녀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요. Q. 그래서 어떻게 했어? 까지라고 하면서 바로 넘기고, 옆에 친구들이 못생겼는데 내놓고 있으니깐 씹으면서, 막 쪼물쪼물쪼물쪼물 거려요. 보기 싫게. Q. 어른이야 애야? 청소년인 것 같았어요. 얼굴 봐도 색은 애들도 있고 안 색은 애들도 있는데, 딱 봐도 학생 같았어요. Q. 그 다음에? 커풀도 나오고, 카페 같은데서 커피 마시면서 뭐 시켜 먹으면서 여자남자 지들 사군다고 솔로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허세 부리는 애들 있어요. 학생들이 담배 피면서 담배 피려면 알아서 몰래 파면되는 데, 솔직히 저희들은 담배 피면서 동영상이 찍고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명치 한 대 세계 때리고 심을 만큼 안 좋아해요. 문신한 애들은 문신 내놓고 있고, 다 허세부리는 거죠. 다 까지라고 욕하고 허세부리지 말라고. Q. 그런데 왜 하는 거야? 뭔가 중독이 있어요. 넘기다가 제 친한 친구도 만났어요. 신기해서 그걸로 1시간 통화하면서 얘기하다가 저 게임하는 동영상 비춰서 구경하고 넘겼다가. 뭐가 모를 중독성이 있어요. Q. 왜 요즘은 안 해? 데이터 때문에. Q. 다른 애들도 아자르 많이 해? 예전엔 많이 했었는데 반 정도 준 것 같아요. Q. 요즘 대세는 뭐야? 페이스북.

□ 이용한적 없음

11. 없어요. Q. 주변에서 친구들? 안 봤어요. 몰라요.

21.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하는 거 봤는데 재미없어서.

25. 네. Q. 랜덤채팅 그런 거 안 써요? 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Q. 화상채팅은요? 아 해봤다. 아자르. Q. 지금은 안한다는 거죠? 네. Q. 그걸 자주했어요? 아니요. 하루 하고 잠랐어요. 여자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Q. 많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외국인들 나와요. Q. 그럼 거기서 얘기 같은 거 했어요? 네. Q. 어떤 얘기? 그냥 여자, 저번에 경찰 나왔어요. 그 때 반에서 있잖나. 아자르 할 때 경찰 나올 때? 경찰 나왔었어요. 경찰이 아자르 하고 있는거 그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애 바꿔가지고 취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고 경찰들이 근무안하고 아자르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뚝 끊었어요. Q.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경찰 한 네 명 나왔나. 아 우리나라 참 잘 돌아간다고. 국방의 의무 안하고

아자르 하고 있냐고 참 잘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뚝 끊네. Q. 요즘은 랜덤채팅 이용하는 친구들 없어요? 요즘 시대는 한 물 갔죠. 안하죠.

26. 그것 때문에 제 친구가 뺑에 갔어요. Q. 왜 갔어?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10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졸푼에서 여자랑 랜덤 채팅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Q. 몇 살이었어? 친구는 열일곱이요. 여자에게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차가 3살인가 4살인가 났을 거예요. 만나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고. 그 친구가 핸드폰매매를 했었거든요. Q. 알바로?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 그런 걸로. Q. 청소년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개가 주위에 애들한테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달라하고 막 팔아넘기고. 그래서 개가 성관계한 여자에 핸드폰을 가지고 튕 거예요. 여자에게 화나가지고 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번 신고가 먹혔었는데. 개가 당일 날 다른 여자와랑 채팅을 하고 또 한거예요. 개랑도 한거예요. 그래서 연쇄성폭행으로 신고 되어서 지금은 김천소년원에 있어요. Q. 몇 년 정도? 2년 6개월이요. 16년 3월인가 나와요. Q. 여자애들은 어떻게 됐어? 저도 모르죠. 제가는 애들도 아니고, 친구도 랜덤채팅으로 만난 거니까. 개 이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Q. 애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야? 사건이 나올 거예요. 기자가 아마 썼을 거예요. Q. 이런 사례를? 왜? 성적 관련 된 거니까. 연쇄성폭행으로 들어갔으니까. Q. 성폭행은 아니잖아. 합의하에 한건데 개가 핸드폰을 갖고 날라가지고. 그래서 신고했죠. 성폭행 당했다고. Q. 돈을 받고 한건 아니었어? 돈을 받고 한건 아니죠. 그냥 술 한 잔 사주는 거 정도. Q. 친구 보니까 여때? 처음에는 이런 새끼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개 얘기 다 들어보니까 여자가 핸드폰 가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신고하니까. 불쌍하죠. Q. 너는 랜덤채팅 안 해봤어? 저는 안 해봤어요. 주변에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애들 있긴 있어요. 주위에도 있어요. Q. 남자, 여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여자는 그런 보도 뛰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학교에도 있었는데 아마 저때 그랬을 거예요. Q. 여자 애들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돈 받고? 네. 모르는 사람이랑 돈 받고 하죠. 개네는 돈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Q. 너는 한 번도 랜덤채팅을 안 해보거나? 네. 랜덤채팅 전혀 안 해봤어요. 저는 겁이 나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여자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장기매매 그런 거 털릴까봐. 그런 거 한창 뉴스에 나왔잖아요. Q. 랜덤채팅 하다가? 아니요. 랜덤채팅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페이스북에 많이 뜨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거 땀에 무서워서요. Q. 그래서 채팅 못해? 네. 저도 잘못해서 걸릴까 봐. Q. 어떻게 걸려? 랜덤채팅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도 있잖아요. 만나서 빼도박도 못 하고. Q. 너는 남자잖아. 여자라 하고 남자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화상채팅은 해본 적 있어? 아자르인가. 학교에서 유행할 때. Q. 언제 유행했어? 3~4달 됐을 걸요? Q. 그때 친구들이랑 뭐했어? 친구들이랑 같이 화상채팅 핸드폰 같이 하고 대화하고. Q. 이상한 사람은 못 봤어? 저 성기 보여주고 그런 애들 있어요. Q. 여자는 못보고? 여자는 그런 거 없어요. Q. 한국 사람인 것 같아? 한국 사람이죠. Q. 그럼 어떻게 반응했어? 욕했죠. 뭐하는 짓거리냐고 나이 값 좀 하라고. Q. 그 사람이 뭐래? 나가요.

28. 없어요. Q. 주변에는 있어? 있어요. Q. 어떤 계기로 하는 것 같아? 애들이 많이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Q. 아자르는 언제 해봤어? 고등학교 2학년 때요. Q. 거기서 뭐했어? 얼굴 평가했어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욕하고. Q. 이상한 것은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요. 틀어져 있는 애들은 봤어요. 갑자기 화상대화)하는

데 자기가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처음에는 뭐지 하고 보고 있다가 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실제로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들어준 거라고 했어요. 그냥 웃겼어요. Q. 남자애들 자위행위 하는 것도 많이 올라온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Q. 여자애들이 하는 것도 못 봤어? 네. Q. 너한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런 적도 없고? 얼굴 좀 자세히 보여 달라 해요. Q. 만난 적은 있어? 아니요. Q. 예쁜 애 본 적 있어? 엄청 많죠.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만 물어봤어요.

30. 없어요. Q. 주변에 랜덤채팅 쓰는 애들이 있어? 네 친구들.

'뿔단배' 도 있었어요. '낯선사람과의 대화' 그런 거. 그리고 '라인' 으로 화상채팅 하는 애들도 봤고. Q. 개네들은 그래서 뭐해? 그렇게 해서 사귀는 애도 있고요. Q. 개네들은 어떤 계기로 가입한 것 같아? 일단 심심하다고 해서 재미로. Q. 너는 왜 안 해봤어? 재미있어 보이지 않고. Q. 그 친구들의 랜덤채팅의 이용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 여자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심심해서, 할 것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남자애들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 I-33> 랜덤채팅을 가입하게 된 이유

질문: 랜덤채팅 어플에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 친구들이 랜덤채팅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1.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홍보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하는데 재미있다고 하길래. 호기심에.

2. 페이스북에 랜덤영상채팅 있다고 재미있어 보이길래 다운 받았어요.

3. 이따르는 어떤 오빠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인다고 하고 깔고서 모르는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고, 얼굴 개빠가 갈다면서 욕하고 그러는 게 재밌어요. Q. 그럼 개네는 어떻게 반응해? 개네도 욕해요. 개네가 욕해서 저도 욕하는 거예요. 어 잘생겼다 할 때도 있고.

5. 간 적은 없는데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해보고 싶어서 한 번 해봤어요.

6. 애들이 많이 하니깐 재밌어가지고. Q. 친구들도 많이 해요? 그냥 개네들도 주위에서 많이 하니깐 한 번씩 해보고.

7. 애들이 다 하길래. 남자애들한테 거기 사진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여준다고. 내거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많이 해요.

13.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채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재밌으니깐 그래서 그냥 채팅 치니까 쭉쭉 나오는 거예요. 다 가입해놓고 놀았죠. Q. 몇 개 정도 가입했어요? 대 여섯 개?

19. 친구들이 뭐 하길래 뭐냐니깐 뿔단배라고 하길래 뭐지 하고 해봤어요. Q. 대부분 조건만남 관련된 거야? 그건 아니죠. 제가 할 때 뿔단배 한참 유행했가지고 저는 같은 중학교 애들 많이 만났어요. Q. 모르는 사람이야? 네. 모르는 사람도 만나보고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20. 그냥 이제 뭐 친구가 뿔단배를 하는 거예요. 랜덤채팅 그때는 진짜 호기심이었어요.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해봤죠. 근데 이게 막 남자랑 여자랑도 대화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 중간 조건만남 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아예 채팅방 딱 들어오자마자 남자는 여자들한테 '너 보지냐' 이래요. '보지?' 이렇게 하면 여자면 '보지. 보지다' 남자면 '자지다' 이러면 서로 나가고 남자는 여자랑 대화하려는 게 많고 여자는 남자랑 대화하려는 게 많고. Q. 그럼 'x' 이런 거 있고? 아 뭐 조건만남 그런 걸 수도 있겠다.

22. 그냥 다른 애들이 하니깐 재밌어 보여서.

24. 애들이 한참 해가지고. 친구들.

25. 애들이 보라고 하는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자도

나오냐' 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죠.

27. 애들이 해서.

□ 친구들이 알려줘서

9. 그냥 친구들이 이거 재미있다고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16. 친구가 알려 줬어요.

23.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막 욕하고 도망가면 재미있다고 그런 거 해보라고. Q. 그래서 해 봤어요? 네. Q. 같이 하던 상대방은 뭐라고 해요? 같이 욕해요. Q. 계속 욕만 하고 끝나요? 자기가 욕 더 많이 하고 확 나가버려요.

□ 심심해서

10. 심심해서

12. 그냥 심심해서 마켓에서 친구 또는 토크이라고 쳤는데 그런 게 나와서 한번 해봤어요.

□ 돈을 벌기 위해

14. 돈이 필요해서.

□ 기타

8. 그 건 못 들었어요. 남자애들이 성욕 채우려고. Q. 남자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15. 그게 영화관에서 광고를 하다가 무슨 막 모르고 보냈는데 취소할 수도 있고 폭탄메시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재밌을 거 같아서 깔았거든요. 하고나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거만 토크 돼서. Q. 남자친구가 핸드폰이 없어? 네. 공기계인데 유일하게 그거만 인종필요 없이 되나 봐요. 그걸로 연락 주고받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Q. 남자친구 핸드폰이 원래 없어? 고장 났어요. 둘이 무슨 얘기에? 네. 그냥 뭐 '언제 만날 거냐', '오늘 뭐할 거냐' 이런 거. Q. 남친은 학생이에요? 공익이에요. 22살. 저는 20살이에요.

18. 계속 만나서 알게 됐어요. 그 여자애. Q. 그 여자애는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전에 마약채팅이라고 애들이랑 학교에서 유행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다가 그 밑에 줄톡이 있길래 깔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뉘었는데 이상한 말 뜨길래. Q. 뭐 '만날래' 이렇게?

네. 그래서 삭제 안하고 놔두다가 다음에 친구가 그거 아냐고 막 그런 거 있다고. Q. 그래서 조건만남 하려고 가입했어? 네. 개가 휴대폰이 안 돼가지고. Q. 요즘에 청소년들이 안 걸리려고 유심칩 빼고 한단데? 유심칩 빼는 건 알겠는데 위치추적 때문에 빼는 거 아니에요? Q. 그거 하는 친구 봤어? 아니요. 들어만 봤어요. 위치추적 때문에 제가 해본 적은 있어요. Q. 부모님한테 안 걸리려고? 네. 근데 할 게 없어요. 유심칩 빼면 데이터도 못 키고 아무 것도 못 해요.

□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7.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4>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목적

질문: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 재미있어보여서

1. 재미로요. 재미.
3. 재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6. 재밌어보여서.
10. 그냥 재밌는 사람 많잖아요. 토라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그거 보면 재밌는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까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땐 안하죠.
22.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거 같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던 거예요. 왜 이용하고 그런 건 없었고.

□ 이성친구를 만나기 위해

2. 예쁜 여자들 보려고. 예쁜 여자들 많이 봤어요. 30명 이상 본 거 같아요. 30번 넘게 하면 1명 나올까 말까. 나와서 인형하세요.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Q. 왜 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목적인데. 심심해서 하긴 하는데 예쁜 여자들 나오면 더 좋은 거죠.

□ 친구가 랜덤채팅을 이용해서

5.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좀 이상한 애들도 많고. 그러가지고 안했어요.
7. 친구들이 많이 해서.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냈어요.
18. 저는 그 때 그거 밖에 없어요. 조건만남. 아자르는 애들이 하길래 하는 거고. Q. 이상한 남자 많지? 이상한 남자 별로 없던데. 블락비(가수)도 한단데. Q. 친구들도 많이 해? 요즘엔 많이 안 해요. Q. 요새는 친구들이 많이 안 해? 언제 많이 했어? 옛날은 아니고 3개월 전?
27. 애들이 옆에서 하길래 재미있어 보여서. Q. 친구들은 어떤 것을 본거야? 지들이 여자인척하고 막 보여 달라고. Q. 남자애가 남자애한테 보여 달래? 네. 보면서 놀던데. Q. 여자애들이 랜덤채팅 하는 것은 못 봤어? 네. Q. 아자르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 외국인도 나왔고 여자들도 나왔고 남자들도 나왔고. Q. 이상한 거 안 봤어? 봤어요. 남자들이 자꾸 (성기틀)흔들어요. Q.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욕하고 넘겼어요. Q.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흔들어? 네. Q. 한 번 봤어? 2~3번. Q. 신고 인했어? 네. 익명이라 못 잡잖아요. 어차피. Q. 여자들 거는 못 봤어? 네. Q. 만나자고 한 남자들은

없었어? 네. 맨날 생일로 다녀서 못생겼다고 꺼지라고. Q. 그런데 왜 해? 욕하는 게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 쓴단 말이에요. 경상도 이런데 억양이 세서 재미있어요. 심심하고 애들도 옆에서 하고 하니까 해요. Q. 너는 보여 준적 없어? 네.

□ 심심해서

9. 그게 시간을 좀 잘 때워준다고 해야 되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고 그런 거.
12. 심심해서. 친구나 만들 수 있는. Q.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나이가 좀 많아요. 29살이요. Q.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 네. Q. 사귀고 있어? 네.
17. 심심해서.
19. 저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Q. 재미가 없어? 왜? 맨 처음에는 18살 남자 하면서 그러는데 뭐가 재밌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죠. Q. 친구들이 사용해 가지고 네가 한 거야? 네.
25. 여자 나오고 심심하잖아요. 그러고 여자 딱 보고 놀려고 했죠.

□ 돈을 벌기 위해

13. 옛날에는 조건만남. 지금은 심심해서. Q. 랜덤채팅 어떤 거 사용했어요? 졸톡. 거의 다 요즘에는 졸톡으로 할 걸요. 애들이.
14. 돈. 돈 필요해서. Q. 그것도 아는 언니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는 거지? 네.
16. 그냥 돈이 없어서.

□ 호기심

20.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낯선 사람들과 채팅을 한대요. Q. 여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여자 친구 있으니까 낯선 사람과의 채팅을 한대요. 말 잘 통하는 애들 만나면 재미있대요.
24. 저는 호기심. 처음엔 다 호기심이죠.

□ 기타

8. 그냥 한다고.	4. 접촉 경험 없음.
15. 남친하고 연락하려고. Q. 남친하고 그거 말고는 연락 방법이 없어? 네. 집에 도착하면 저한테 톡을 해요. 그러면 집전화로 연락해요.	11. 접촉 경험 없음.
23. 장난치려고.	21. 접촉 경험 없음.
□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5>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

질문: 랜덤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3. 받은 적은 있죠. 9. 네. 받아본 적 있어요. 보낸 적은 없어요. 10. 그런 거 있었어요. 12. 받은 건 있어요. 보내진 않았어요. 13. 네. 14. 네. 15. 아니요. Q. 성적인 유인메시지를 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근데 스마트폰 보다는 컴퓨터상에서 많이 보이죠. 토크온 같은데 들어가면, 그냥 날라 와요. Q. 토크온이 뭐야? 헤드셋 끼고, Q. 헤드셋 끼고 음성 통화하는 데야? 네. 그냥 거기 들어갔어도 쪽지로 와요. Q. 조건 할래 같은 그런 내용이야? 네. 그런 식. Q. 토크온이라는 게 그러면 컴퓨터에서 하는? 컴퓨터에서 하는 버디버디. Q. 메신저 같은 거네? 네. Q. 그거 많이 이용해? 네. 저는 게임할 때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깐 게임할 때 우리 팀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타자를 치고 있기 힘들거나 귀찮을 때 말로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Q. 무슨 게임? 씨든 아니면 롤. 언제 나온 거야? 삼 년 됐나. 그전 얼마나 했어? 씨든은 남자친구 때문에 최근에 시작했어요. 롤은 한지 이 년 삼 년. 16. 네. Q. 네가 보냈어? 아니요. 메시지 보내는 건 아니고 방을 만들어요. 그냥 막 조건 얼마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대화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하면 나가고 만나기로 하면 만나고. Q. 조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때? 그냥 그 쪽에서 물어봐요. 키는 몇이고 어떻게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17. 받은 적 있어요. 18. 네. 졸톡 할 때 받은 적 있어요. 19. 받은 적은 있어요. Q. 어떤 내용이야? 어떤 동영상 사이트 알려주면서 여기 들어가면 뭐지 폰섹스 그런 거 PS파트너 아세요? 그거랑 비슷한 거 거 거 든데. Q. 보낸 경험은 없어?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Q. 근데 너 아까 뒤편배에서 여자라고 하고 채팅하고 만나자고 한 적은 없었어? 네. Q. 가만히 있었더니 걔네가 조건 얘기한 거야? 네. 그런가. 20. 보낸 경험은 없고 받은 경험은 있죠. 22. 네. 24. 네. 보낸 적 있죠. Q. 받은 적은 있어요? 받은 적은 없는 거 같아요. Q. 친구 중에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사람 있어요? 있긴 있죠. 진짜 성적으로는 말고 진짜 친구 같은 여자애들한테	장난치죠. Q. 성적인 장난치는 거예요? 성적인 장난치는 거죠. Q. 그럼 친구들이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Q. 랜덤채팅으로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네. □ 없음 2.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5. 저는 없었는데, 친구가 랜덤으로 채팅되는 거잖아요. 근데, 랜덤 되는 걸 눌렀는데, 갑자기 뭐라고 왔어요. 어디 뭐라 해야 되지. 사이트 쓰여 있고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그냥 친구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봤나고 하나만 들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들어갔나고 하나만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6. 없어요. 7. 아니요. 그 낯선 사람채팅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주면 바로 연결이 끊겨요. 나가면. 번호 같은 거. Q. 상대방이 성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Q. 랜덤채팅하고 직접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절대. 위험하다고 해서. Q. 주변에서 유인메시지를 받거나 보낸 경험이 있나요? 그거하자 만나자 어디로 갈 테니 주소 불러라 그런 거. Q.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말해요? 거의 19, 30? 8. 못 봤어요. 그런 거 한다고만 들었어요. 21. Q. 받아본 적도 없겠네? 네. Q. 보낸 적도 없고? 네. Q. 성매매 알선 사이트 했을 때 채팅사이트로 한 거 아니야? 네. 그랬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해도 연락이 와요. 대포 폰으로 전화 와서 '예' 하면 그 조건 그. Q. 여자가 남자가? 남자들이 전화가 와요. '예,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Q. 대포폰 번호는 사이트에 올려놨어? 네. 저희 폰으로 받는 게 아니라 대포폰이 10개 있어요. 받으면 '예' 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어디 거고, 5개가 노래방 5개가 조건만남. 핸드폰에 이름 써 있어요. 보도보도 조건조건. Q. 대포폰은 어디서 샀어? 하나에 얼마야? 얼마 알아요. 대포폰 하는 형 알아가지고 하나에 10만원. Q. 안 걸려? 번호도 바뀌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싹 다. 형 번호 좀 다 바꿔줘요. 이러면 통장도 노숙자 이름 알아가지고. Q. 노숙자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애들 보고 시켜서 여기 있는 거지들 다 데리고 오라고 밥 먹이면서 100만원씩 주고. 노숙자나간 통장 한 30개 있었어요. Q. 그럼 걔네들이 남자들이 돈을 넣어줘? 아니 저희가 우리 통장에 넣으면 어디서 조사가 들어와요. 하나하나씩

몇 천 몇 천 이 새끼 노숙자 그 새끼 우리한테 판 새끼 찾아오라고 도장 찾아오라고 비밀번호 좀 더 바꿀라 하는데 개네랑 같이 가서 비밀번호 바꿔와라 이러면 개한테 30만원 주고.

23.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 막 다른 애들 보면 랜덤채팅으로 막 원조교제인가 그런 거 하고 막 그래요. Q.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고 그래요? 네. 만나는 애들도 있어요.

25. 아니요, 그 아저르는 돈 내야지 성적인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Q. 돈을 내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요금을 충전해야지. 그러니깐 막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Q. 주변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렇게 명칭한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Q. 왜 명칭한 거 같아요? 꼭 그렇게 돈을 차라리 여기다 돈을 쓸 바에는 나가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를 꼬시는 게 낫겠조?

30. 아니요, Q. 주변에 있어? 네. 심심하다고 보냈는데 그런 문자가 왔대요. 그런 게 있었어요. 키스알바라고 있대요. 알바 하면 5만원이라고, 그래서 하는 애들도 있고, Q. 아저씨들하고? 네. Q. 그 친구들이 청소년인데, 상대방도 청소년인 것을 알아? 거의 아는 것 같아요. 나이를 다 알려줘야 된대요. Q. 청소년인거 알면서도 만나자고 하고, 키스알바 하자고 하는 거야? 그런가 봐요. Q. 사진 같은 거 팔거나 속옷 같은 거 파는 애나 조건 하는 애 있어? 별로 친하지는 않는데 있긴 있어요. 애는 자기 몸 사진을 찍어서 10만원을 준다 그랬대요. 그걸로 용돈 번다던데. Q. 어디 찍어서 보내는 거야? 몰라요. 몸 전체 사진 찍으면 10만원이라고, 먼저 돈 받고서 찍었대요. Q. 일반인들이야? 아저씨들이었대요. Q. 그리고? 키스 알바 같은

거. 5만원 받았대요. 저희학교에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랑 하는 거. 반 애들끼리,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 사이인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개네가 (성관계)하고 싶다 해서 만나서 그거 하고 다시 헤어져요. Q. 돈은 안 받고? 네. Q. 그런 애들이 많아? 많아요. Q. 애들이 다 알아? 그런 소문이 다 나요.

□ 기타

1. 저는 아자르에서 직접적으로 본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메일로 날라 온 건 있는데, 스팸메일로 많이 날라 오더라고요. Q. 친구들 중에 아자르를 했는데 막 웃을 아자르 한 경험? 여자애들한테 들은 건데, 막 아자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막 그거 하는데 외국인인 자기 성기를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 접촉 경험 없음

- 4. 접촉 경험 없음.
- 11. 접촉 경험 없음.
- 26. 접촉 경험 없음.
- 27. 접촉 경험 없음.
- 28. 접촉 경험 없음.
- 29. 접촉 경험 없음.

<표 I-36> 랜덤채팅에서 받은 유인 메시지 내용

질문: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조건만남 요구

3. 조건 지금 당장 만나자 지금 바로 만날래? 40 어찌고저찌고 40 준다고, Q. 어떻게 하니깐 막 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보내요, 가입만 해도 들어오고, 계속 거절 눌러도 계속 들어오고, 12. 막 조건하자고

13. 그냥 뭐 키스알바 같은 거 할 거냐. 조건만남할 거냐. 스타킹 팔아라. 이런 거 많아요. Q. 남자들이 얘기해? 네.

14. 아니 그냥 만난다던지, 그 쪽에서 돈을 주겠다.

17. 그냥 '조건만남 하실래요' 그런 얘기 밖에 없었어요.

20. 조건만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아동 사이트에서 링크 딱 주고, 아래에다 지가 글을 쓴 거예요. 다 복사를 한 거죠. 글에 복사를 해서 링크 올리면 지금 15,000원 결제하면 10,000포인트가 들어온다.

□ 사진 요구

10. 사진 보내달라고, 막 이런데 띄워가지고 보내달라고, Q. 구체적으로 어때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냐고 먼저 물어봐요. 여 남 여라고 치면 나오서 10대 상반 이렇게 치면 어디냐고 사진 보내달라고 그래요. 돈 벌 생각 없냐고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22. 그냥 사진 보내 달라 그런 얘기도 많고, 만나자, 몇 살이나, 가슴 같은 거 몇 컵이나 막 이런 것도 많았고, 막 변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막 성관계 해봤냐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23. Q. 친구들이 받은 성적인 메시지 내용은 어땠어요? 막 몇 살이냐고 막 물어보고 막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음, 막 사진도 보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Q. 얼굴 사진? 얼굴 사진. 아니면 막 몸 사진. Q. 다 벗은 거? 아니요, 입고 있는 거요.

□ 기타

5. 자세하는 안 알려줬는데, 그냥 거기다 채팅 그거였대요. 여자랑 남자랑 채팅하는 건데 만나서 안 좋은 쪽으로 불건조하게 가는 쪽인데 그런 게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그런거여가지고 그냥 쫓다고 그 친구가 그랬어요.

7. 막 그 여자애들, 그 좀 성적인 거 좋아하는데 번호 주고 자기 주소 주고 원조교제해서 사귀어요. 돈 벌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9. 저는 보면 조금. 물 좋다고 하고.

18. Q. 암호는 뭐였어? 나가서 'ㅈㄱ'이랑 10d에서 20.

19. 폰 색스할거냐? 안 할 거냐? Q. 그런 내용이었어? 네. 그런 거. Q. 무료는 아니지? 모르겠어요. 무료라고 하는데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라고 할 거 같아서.

□ 접촉 경험 없음

-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6.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7> 랜덤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를 받는 정도

질문: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3. 거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떠오. 계속 거절해도 또 오고 또 와요. 진짜 자주 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그거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삭제했어요. 계속 와요. 여기 방이 계속 차서 계속 오면, 싫다고 다른 방 가면 다른 방에서 또 와요. Q. 그럼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안됐구나? 아니요. 거기 나이 제한 되어있는데, 나이를 만약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도 2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그래요. 아저씨들이 청소년들한테도 말 많이 걸고, 18로 하는데도 다 보냈어요. Q. 거기다가 뭐라고 가입해? 아이디라던가 사진 같은 거 안 올렸어요. 닉네임이랑, 연령 표시. 여자 이렇게만 해서. 아무거나 'ㅇ' 이런 거 써 놓고 나이 딱 하구서 들어가도 계속 와요.

9. 네. 접속해있는 동안만. 계속 켜놓고 있으면 많이 와요. 제가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저를 찾았을 때.

10. 접속해있는 동안 그 메시지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Q. 그럼 상대방 나이는 얘기 안 해요? 나이는 얘기 안하고 그런 건 얘기 안하고. Q. 그냥 보내달라고만 해요? 네.

12. 졸졸데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글을 심심한데 정상인 아니라고 올려요. 그러면 한 5분 안돼서 들어가면 100개 넘게 올라와있어요. Q.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 아니요. 너무 많으면 그냥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글 올리고 좀 정상인처럼 보이는 애들. Q. 정상인들을 어떻게 판단해요? 말을 똑바로 하거나 변태적이지 않는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13.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60개 넘게. 한 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14. 몇 십 통. Q. 만나자고 했으니 어떻게 했어? 조건 주고받기는 했어요. Q. 예를 들면? 콘돔 꺼야 되고, 다 안 되고 그냥 삼입만 된다고. 그냥 알겠지. Q. 얼마? 15만원이었나?

15. Q. 토크온에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왔었어요? 10 분이나 15분 한다 치면 두세 개. Q.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해? 그냥 다 받죠. 관심이 없으니깐.

16. 방이 내가 사람이라 대화하고 있잖아요. 일대일대화 방에서 대화중이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쪽지가 다다다다 와요. 쪽지가 한 되게 몇 십 개 왔어요. 그래서 막 지우기 바빴거든요. Q. 그 중 제일 좋은 조건을 만난 거야? 그 중에서 골라서 가깝고.

17.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접속 바로 누르자마자 아무나 다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연결되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연결된 거 두 세 번. Q. 거의 그런 내용이야? 네. 2~3번만. Q. 개네들이 청소년인

거 알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하면 대화방을 나가요.

18.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에 10개 씩 떠오. Q. 청소년으로 가입 안 했어? 몇 살로 했어? 그게 18살부터 40대까지 있거든요. 그러가지고 18살로 선택했어요.

19. 거의 대부분. Q. 구체적으로 몇 건? 오는 게 아니라 방을 개설하면 들어오는 게 끝이에요. Q. 몇 명 들어오는 거야? 일대일 밖에 안 돼요. Q. 그럼 남자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고 그냥 나가요.

20. 10개 중 7개, 3개가 거의 사람 대화처럼 저기고 10개 중 6~7개가 조건이니 뭐니 다 이런 거.

22. 솔직히 그런 거 하면 만약에 제가 채팅을 30번 했다 치면 반 이상은 거의 그런 사람들? 만약 30번을 하루에 했다 치면 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예요. Q. 들어가자마자 그런 게 많이 와요? 네.

23. 친구들이 랜덤 채팅에서 유인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요? 한 번 하면 한 20개? Q.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그만큼.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8>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반응

질문: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3. 그래도 반응 안보였는데? 계속 하자던데.
 9. 그래도 계속 보내주던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10. 영계네. '영계네' 라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욕하고 나가죠.
 12. 그냥 별 반응 안 보였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13. 나이 숙여요. 스무 살이거나 스물두 살이거나. 중학생이어도 화장 진하게 그리니깐 몰라봐요.
 14. Q. 만났을 때 알았을 거 아냐? 모르죠. 경찰한테 걸렸을 때 안 거죠.
 16. Q.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 아니요 몰랐어요.
 Q. 청소년인 거 끝까지 몰라? 네. Q. 몇 살이라고 했어? 20살.
 17. 아니요. 청소년인거 알면 안 만나요. 그래서 나이는 21살이라고 말하고, 될 때 나이를 말하고 나와요. 나올 때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개네가 못 잡아요. Q. 무서워서 못 잡는 거야? 걸릴까봐? 네. 제가 튀면 졸룩이 완전 많이 와요. 지금 뭐하는 거냐고. 미성년자라고 돈 잘 쓸게요. 이러면 똥 한번 밝은 거라고 쳤다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끝내요. 그거 돈 많은 애들이 하는 거여 가지고. Q. 네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 언니 폰으로 연락이 올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 언니가 저 청소년이라고. Q. 아자르 해봤어? 네. 해본 적 있어요. Q. 어땠어? 자기 막 보여주고 그러는 애들이 있긴 한데. 여자. Q.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애들이야? 우리나라. 외국인을 그런 애들 없어요. Q. 왜 했어? 저는 한국인 위주로. 외국인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화장 잘하고 각도 예쁘게 하면 난리 나요. 재밌는데. 그냥. 그러니깐 각도를 딱 맞춰놓고 하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Q. 만나서 사귀는 남자 있어? 아니요. Q. 그럼 거기서 남자를 만나? 네. 그냥 그걸로 하는 거죠. 10시 되면 잘생긴 사람 나와요. Q. 보통 몇 살? 19살. 안 만나요. 뭐하냐고. 몇 살이냐고. 어디 사냐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고 그냥 귀찮으면 꺼버려요.
 18.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복 있냐고 그러고. Q. 그 사람이 교복 가져오래? 집 나가서 교복을 어떻게 가져와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저는 세 번 밖에 안 만나가지고. 한 번 이렇게 약속을 잡아놓고 깨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Q. 근데 걸린 애는 세 명이었어? 그 중에서 한 명 하고 조건 사귀를 한 거야? 아니. 저는 그 전에 개랑 나가기 한 달 두 달 전에. Q. 전에 뭐했어? 전에 이걸 사귀를 개를 만나기 전에 하려고 세 번을 구해 준 거예요. 제가 친구를 구해 준거예요. 아니 개가 집을 나갔으니깐 힘들잖아요. 나갔다 오면 그래서 제가 대신 구해주는 거죠. 개가 네가 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Q. 개는 가서 하고. 그럼 네가 구해주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많이 와도요. 완전 많이 와도요. 백 개 와도 거기서 걸리는 건 세 개 밖에 없어요. Q. 남자애들 장난하는 거야? 네. 그냥 떠보는 거. Q. 근데 어떻게 연락해? 개인 아이디를 주고받잖아. 개인 아이디 아니예요. 카톡 아이디. Q. 그 다음에는? 일단 만나요. Q. 모텔에서? 아니요. 이게 다 달라요. 만나는 장소가.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Q. 세 번을 그 친구한테 구해 준거야? 네. Q. 개는 가서 한 거야? 네. Q. 얼마 받았대? 10만원. Q. 그 돈 가지고 돌아 썼어? 네. Q. 경찰한테 안 걸렸어? 걸렸어요. 제가 되게 운이 나빠요. 나가서 마지막에 걸린 거 있잖아요. 모텔에서

경찰 왔던 거 거기서 그 남자애들 헌팅당한 남자애들 번호를 알아줬대요. 핸드폰을 뺏아가는 거예요. 거기 남자를 조건하는 사람 맞냐고 그래가지고 원래 헌팅만 하고 남자를 불러서 하는 건데 그 남자를 불러서 그 남자애들 찾아가면 되는 건데. Q. 경찰한테 걸렸는데 캠프만 하고 끝났어? 저는 근데 한 번도 안 나가고 개가 하자고 한 거라고. 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개랑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나서. 개는 학교를 안 나와서 연락을 한 번도 안했어. Q. 경찰이 조건 사귀한 거는 알아? 알겠죠. 경찰도 되게 병신 같은 게 친구가 그 다음에 그걸 신고를 안했는데도 잡을 생각을 별로 안하고 우리만 막 조사하고 다섯 시간 받고 여섯 시간 받고 그 남자는 아무 것도 원지 모르겠고 저희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무사하고 사람. 뭐만 하면 아는데 이러면 뭐라고 그러고 욕박지르고 솔직히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누가 막 욕박지르면 누가 제대로 대답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말지. 한 마디로 그냥 띠꺼웠어요. Q. 그 모텔에 있던 남자는 걸린 거야? 네. 그 남자는 걸린대요. Q. 모텔에 있던 남자들은 다 조사 받았네? 네.

19. 그냥 이제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Q.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안 물어봐? 그냥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여자 문제예요.

22. 처음에는 솔직히 바로 막 그런 얘기 안 하고 몇 살이냐고 시작을 해요. 몇 살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 거 솔직히 상관 안 해요. 학생이야 해 봤나 그러고 학생이든 성인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23. 친구들이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는 상대방이 친구가 청소년인 걸 알았을 때 뭐라고 반응했어? 청소년이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Q. 대화를 그만 해야겠다면서 이러진 않아요? 네.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39> 상대방이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만난 경험

질문: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2. 네. 조건으로 얘기해서 만난 건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동네친구로 하자는 걸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사귀었어요. 그냥 그 오빠 좀 귀여워하고 그 오빠도 저 귀여워하고 놀다보니깐 사귀었어요. Q. 실제로 만나서 돈을 받았나요? 돈이나 그런 거 받은 건 없어요. Q. 그 사람이 뭘 해줬어? 편의점 사장이라 제가 종종 놀러 가면 안아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같이 일하고 그래요. Q. 거기 편의점 가서? 알바비 줘? 아니요. 근데 제가 원래 봉사활동을 좋아해요. Q. 무료로 하는 거야? 네.

13. 요즘은 나이 적은 애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Q. 그래서 만난 적 있어? 네.

23. 친구들이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네. 막 만나서 키스하고 막 그러고 돈 받았대요. Q. 그거죠. 애인대행 알바 그런 거 아니에요? 키스 알바?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다는데? 키스하고 막 만져주고 막 그런 거 해서. Q. 그래서 얼마 받았대요? 그것도 한 5만원 3만원? Q. 그 친구는 그런 걸 자주 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 없음

3. 없어요.

9. 아니요. 직접 만난 적 없어요. Q. 상대방 나이는? 스물다섯 살? 아저씨뻘이잖아요. 삼촌 아저씨 그래서.

10. 없죠. Q.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네. Q. 어느 수위까지? 아직 안는 거까지 밖에 안했어요. Q. 더 요구는 안 해? 음. 네. 아직 요구안해요.

17. Q. 만나자고 한 사람 없었어? 네.

19. 아니요. Q. 사진만 보내달라고 했어? 네. Q. 야한 사진? 가슴 사진? 네. Q. 자기 거는 안 보여줬어? 그런 건 있긴 있죠. 많죠. Q. 봤어?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봤어요.

Q. 남자친구랑 어떤 사람이랑 채팅하는데 자위하는 걸 보냈어? 네. Q. 사진으로? 네.

22. 만난 적 없어요. Q. 대화하다 끝난 거예요? 네. 그냥 뭐 처음에 장난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밌어서 받아준 적도 있고, 욕한 적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그 사람 채팅방 나가고.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6.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0>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

질문: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봤음

1. 아니요. 없어요. Q. 여자애들이 노출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 저는 구경만 했어요. 저는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Q. 왜? 그 때 중학생이었으니깐. Q. 지금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이었으면 만났을 거 같아요. 만나서 조건만남이나 그런 거 했을 거 같아요.

10. 위에 벗는 사람도 있죠. 남자애들. Q. 왜 벗는지는 알아요? 그냥 덤데요. 그냥 여자애들 반응 보는 게 재밌잖아요. Q. 그럼 그런 거 남자애들이 많이 해요? 네. Q. 그럼 남자애들이 그런 걸 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네. 그런 애들 있을 걸요? 아 맞아요. 있어요. Q. 남학생들이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나요? 그런 건 아니고 돈 달라고? 저는 제 후배가 여자였는데, 그 여자애가

저랑 같이 있다가 잠깐 만나고 온대요. 만나고 오는데 돈이랑 담배 받아왔어요.

17. 그런 적은 없는데. 반대편 쪽에서 아자르 같으면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었고 남자가 막 자기 비춰주고 자위하는 거. Q. 성행위 하는 거 손으로 보여줘? 네. Q. 그래서 어떻게 했어?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Q. 얼굴 안 보여줘? 캡처하면 끝나는데. 그거 하는 거 캡처하고 얼굴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 되요. 개 얼굴 팔리는 거잖아요. 개는 아자르에서 자위하는 미친놈 되는 거고. Q. 몇 번 봤어? 한 세 네 번. Q. 그걸 왜해?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 보려고 넘기는 거죠. Q. 잘생긴 남자가 어느 시간대에 나와? 아홉시 열시 그 사이.

18. Q. 남자들 자위행위 하는 거 본 적 있어? 아 본 적 있어요. 아자르 딱 넘겼는데,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막 욕하면서 막 심한 욕하면서 존나 짜증난다 왜 까냐 막 그러고 그 상태에서 다 넘기고 Q. 여자들이 신체 노출하거나 스타킹 판매한다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네. 없어요.

□ 화상채팅만 사용했음

5. 아자르라고, 그거 지금 저희 누리반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물어보고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번호도 받고 카톡하고 그랬었어요.

8. Q. 화상채팅 써 본적은 있어요? 네. 주변에 쓰는 사람 많아요. 하면 그냥 욕해요. 직접 만나진 않고 그냥 욕만 해요.

11. Q. 화상채팅 쓰는 친구 있어요? 네. 아자르? Q.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그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 서로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그런 거?

12. 화상채팅(거) 아잘?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13. 아자르 같은 거 해봤어요. 재밌어요. 요즘은 잘 안하고 유행할 때 좀 했어요. Q. 언제 해봤어요? 한 달 전. 저희 반 남자애들이 알려줬어요.

□ 없음

2.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3. 아니요. 본 적도 없어요.

4. 없어요.

6. 없어요.

7. 아니요. 캠퍼드 같은 거 안 써봤어요. Q. 영상 통화 아자르 같은 거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한 때죠. 한 때. 요샌 많이 안 해요.

9. 아니요. Q. 화상채팅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친구들이 있나요? 맞아요. 아자르도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Q. 신체를 노출하거나 그런 게 많나요? 그런 게 많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보여주니까. Q. 직접 만나거나 돈을 받나요? 돈을 받는다는 친구의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14. 그런 건 안 해봤어요.

16. 아니요. 없어요.

19. Q. 화상채팅 아자르 해봤어? 아니요. 들어보기만 하고 안 해봤어요. Q. 화상으로 채팅해본 적 없어? 친구하는 거 같이 해본 적은 있어요. Q. 그땐 뭐였어? 아자르? 네. Q. 아자르에서 뭐했어? 그냥 사람들 보니까 막 잘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던 데. Q. 남자애들끼리? 네. Q. 이상한 사진 못 봤어? 네.

22. 화상채팅은 해 본 적 없어요. Q. 아자르 해본 적 없어요? 네. 안 해 봤어요.

23. 아니요. Q. 친구 중에는? 그런 거 없어요.

25. 아니요. 없어요. Q. 경찰 나온 그거 다예요? 그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같은 반 애가 아자르 컷는데 경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Q.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본 적 있죠. 아프리카 TV 같은 데. Q. 어디서 그런 게 떠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 떠요. Q.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인데, 돈을 받고 옷을 벗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개네가 떠요. 그럼 그걸 보죠. Q. 언제 나와요? 매일 같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뜰 걸요. Q.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있죠.

□ 기타

20. 네.

24. 네. 제 친구가 했었어요. Q. 성기 노출이요? 네.

□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1> 신체노출 혹은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

질문: 신체를 노출하거나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봄

13. 네. 제가 봤어요. 무조건 신고해요. Q. 남자가 했어요? 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 남자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거예요. 글씨에 중국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뭘 소리지 하고 엄마한테 해석을 부탁했더니, 저희 엄마가 중국 식당 하시는 분이어서 중국어를 알아요. 남자가 그제 밑에 성기가 보이는 거예요. 허 이게 뭐지 하고 신고했어요. Q. 어떻게 신고해? 거기 신고하는 거 있어요. Q. 그런 여자 봤어? 네. 많죠. 여자들도 가슴 다 내놓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관심 끌려고 많이 봤죠.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도 많고. 여자면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나가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안 나가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안 나가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나가요. 나가기 전에 신고 했죠. 거기 신고 버튼 누르면 신고하고 엄청 오래 신고 받으면 정지 먹거나 탈퇴 당해요. 원래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하는 애들 보면 웃기죠. Q. 너는 그런 적 없어? 네. 아차피 신고당할 거 왜하는지. Q. 만나면 뭐해? 그냥 얘기하다보면 인사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하고 또 뭐냐 그런 거 하고, 서로 얼굴 보죠. 저희는 얼굴 안 보여주면 무조건 다 나가요. 서로. Q. 친구들은 무슨 얘기해? 똑같아요. 뭐하냐 취미는 뭐냐. Q. 재밌어? 뭐라 할까 그거 같아요. 잘생겼다 안 잘 생겼다 이런 거 보니까 남자들이 얼굴평 가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놀아요. 저희 반에 예쁜 애가 한 명 있어요. 예쁜 애를 보여주고 제가 밑에서 보여주거나 위에서

보여줘서 좀 못생기게 나오게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좋다고 재미있다고, 너만 바뀔달라고 하면 재밌어요. 예쁜 애 필요 없고 네가 재밌게 놀아달라고, 애들끼리 그렇게 놀아요. Q. 친구들끼리 많이 해? 이제는 안하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달 전까지도 일주일 동안 재밌었는데. Q. 청소년 성인 가입할 수 있지 몇 살로 가입했어? 몇 살 이런 거 없고, 나이제한 없어요. Q. 본 애들은? 몇 살? 초딩에서 외국인들까지 30대 초반에서 후반. Q. 몇 명 만났어? 엄청 많죠. 모르겠어요. 아자르 한 번 빠지면 두 시간 하고 세 시간 해요. Q. 돈은 안 나가? 네. 데이터는 나가는데, 집에서 하면 데이터 안 나가죠. 돈은 안 나가죠.

20. 네. 본 적 있대요. 여자가 노출한 건 본 적이 없는데, 남자는 자기가 자기 거. 자위행위를 하더라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보고 웃었대요. '미친놈 토라이 사이코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다 개가 딱 한 거예요. 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화상채팅 하는데 개가 너는 뭘 보고 하냐고 보고하지도 않고 사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끄더라요. 그런 게 되게 많대요. Q. 그냥 보여주면서 그렇게 꺼? 여자들은 남자들 구분을 안 하고, Q. 그냥 자위만 하고 꺼버려? 네. Q. 사정을 한 걸 어떻게 알아? 화면에 다 나오니까. Q. 어떤 거 같아? 토라이라는 말 밖에 안 나와요. 토라이 사이코 정신병자지.

□ 본 적 없음

5. 그런 건 못 봤어요. Q. 주변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11. 없어요.

12. 없는데 그 상대방이 막 보여주려고 해서 바로 켜어요.

19. 별로 안 해봐서 못 봤어요. Q. 다른 친구들은? 본 애들은 많던데. Q. 어떤 거? 자위하는 거? 자위하는 모습이요. 남자가. 그거밖에 못 봤대요. Q. 여자들 옷 벗은 건 못 봤대? 네. 남자거만 봤대요. Q. 여기 있는 학교 애들이? 누리반의 어떤 여자애가 아자르

하고 있는데. 같이 있었는데, 아 근데 전 못 봤어요. 아 이게 뭐야 씨발 막 하다가 지 자위하는 동영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바로 나왔어요.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3.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9.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6. 접촉 경험 없음.
17.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3.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1-42>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

질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3. 네. 중학교 때. 그 애. 개는 진짜 많이 했어요. 돈도 많구나 하는 생각에 이래서 개를 많이 찾았죠. 돈 많다는 거. Q. 그럼 개가 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저한테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Q. 너한테 한 번 하지도 안했어? 네. 한 번 했었는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쿨하게 넘어갔어요.

5. 네.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조건 만남으로 돈 벌었다고 들었어요. Q. 자주 하는 친구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여자애가 기절한 상태였는데 돈 벌려고 그런 거 같아요. Q. 인터넷이나 그런 거 찾아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는 지.

7. 많이 봤어요. 많이 학교에서도 그(조건만남) 하다가 소문나서 자퇴한 애 있어요. 누리반에 ○○○애도 지금 논산에서 보도(보도방) 뛰고 있다고. 얼굴 못 들고 다니죠. 소문나면 다 전학가요. 애들이 다 했냐 했냐 뭐했냐? 어떻게 됐어? 얼마 벌었어?

9. 본 적은 없고 들은 적은 있어요. 애가 이렇게 됐다. 만나서

소문이 난거예요.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났다. 친했던 애인데. 그런 막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10. 제 친구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에 남자들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남자들이 먼저 시작하면 여자를 구해요. 여자가 원래 얼굴 되고 몸매 되고 이런 애들이 제 친구였어요. 처음에 방 들어갔대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모텔방 들어갔는데 돈을 주나 봐요. 그 여자애한테. 만나면 돈을 주나 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돈 주고, 돈 주면 그 오빠들이 나중에 방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 돈 뺏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관계 맺기 전에. 제가 들은 건 그런 거였어요.

11.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말해줬는데, 제 친구이기도 한데, 개가 온양 애거든요. 온양 애인데, 갑자기 '돈 없네. 돈 벌고 올게. 기다려' 이랬대요. 근데 뭔가 하고 딱 봤대요. 근데 어떤 아저씨 만나서 밥 먹고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밥 먹는 것만 해서 돈 갖고 왔대요. Q. 친구의 상대방 직업 나이 모른대요? 네. Q. 어디서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와요. 개네도 핸드폰으로 쓰니까. 신고하겠죠.

12. 네. 친구요. 무슨 친구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생 갓는데.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제 옆에서 그 조건 하고, 졸록 통해서 그리고 나갔어요. Q. 채팅방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나요? 지이라고 쓰면 소개 좀 해줘요. 그러면 그 때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안(질)에다가 싸고 그런 건 안 되고, 그것뿐일 거예요. Q. 그 친구는 몇 살이었어요? 자랑 동갑. 그 때 당시에는 중 3. 16살. Q. 그 친구는 조건남을 많이 했나요. 개는 맨날 하는데, 놀고 돈도 너무 많았어요. Q. 조건남을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받나요? 듣기로는 10만 원정도 받아요. Q.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만나나요? 하루에 두세 명 만나는 거 같아요. Q. 지금 그 친구 연락해요? 아니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개가 먼저 제 뒷담화 까서 저도 화가 나서 뒷담화 했는데요. 개가 친구들이랑 사기를 치고 절 데리고 가서, 절 때려가지고, 막 뒤통수 쳤다고 뒷담화 갔다고 때려가지고 입원을 했거든요. Q. 얼마나 심하게 때렸어? 일곱 명이 한 시간 동안 때렸어요. Q. 그 애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막 신고는 못하고 저희 집에 동생도 있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신고는 못하고 참았어요. Q. 지금 개네들이 안 괴롭혀? 지금은 안 괴롭혀요. Q. 애들은 학교를 안 다녔고, 너만 학교를 다녔었어? 네. Q.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 친구가 기출해서 알게 된 애예요. 그래서 놀다보니깐 알게 됐어요. Q. 채팅을 통해 실제 조건 해본 적 있어요? 애인대행을 조건이라고 본다면 했다고. Q. 실제로 애인대행 알바를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같이 나와서 옆에서 챙겨주고. Q. 그 오빠들 나이는? 25살 26살 정도 돼요.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인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거예요. Q. 그 오빠들 몇 명 정도? 한 명씩 만나요. Q. 채팅아플에서 만난거야? 졸록에서 네. 돈을 쥐요 만약에 한 시간에 5만 원이나까 두 시간 하면 10만원이고 그렇게 돼요. 한 시간에 5만원 씩 대화해주고 음식 챙겨주고 스킨십 해주고. Q. 어느 선 까지? 애무 전 까지요. 카스까지. 인아주고. Q. 어디서 해요? 음식점이나 구석에 앉죠. 펜션 같은 데 놀러가니까. Q. 그러면 그런 거 몇 번 해봤어(애인대행)? 세 번. Q. 얼마 벌었어? 총액이 40만원. 한번 할 때 10에서 15 받았어요. 대화만 해주고 인아주는데. Q.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성관계 하거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Q. 한 사람에 10에서 15만원씩 받았어? 네. Q. 또 만나자고 안 해?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보자고. Q. 연락 왔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Q. 그리고 또 만났어? 안 만났어요. Q. 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 같은데다가 돈 빨리 구하는 법 치면 그런 거 나와요. 조건이나 하는 방법이. Q. 그러면 그 아저씨들하고 너하고 만날 때. 졸록에서 판별하는 기준은? 저는 그렇게 판별은 못하고, 그냥 막 제가 못생기고 몸매가 좀 안 좋으니깐 그런 거 안 따지는 남자애를 만났어요. Q. 그런 거 안 따지는 남자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들이? 알겠다고 안 따진다고. Q. 너는 그 아저씨들이랑 만났을 때 인아주고 키스해주고 어땠어? 싫었는데.

13. 네. 많죠. 그냥 원래 아는 애들도, 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같이 하던 애들도 있고. 원래 알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언니. Q.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해? 학교 다니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학교 자퇴하거나. Q. 지금도 아는 애 있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소식이 끊겼어요. 개네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꿨거나. 또 제가 잃어버리거나.

15. 네. 조건하는 건 봤어요. 버디버디에서. 중학교 때? 중 1? 학교 친구가. Q. 지금도 연락해? 아니요. Q. 어떻게 연락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연락해서 그냥 만나는 거 같은데.

16.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Q. 친구들은 어디서 만났어? 원래

알던. Q. 조건할 때가 언제였어? 올해 1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원래는 노래방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Q. 어떻게 알게 됐어? 친구들이 알려줬어? 네. 그냥 포신 게 아니라. 원래 일하던 데서 일 더 못하게 돼가지고. Q. 노래방 도우미 한 거야? 그 건 얼마 받아? 돈은 다 달라요. 한 노래방만 고정으로 쓰면 3만원 받거든요. 시간당. 근데 뭐야 그 룬 말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 근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똥을 때요. 얼마씩 5천원 7천 원 씩. Q. 보도방도 해봤어? 보도방은 뭐하는 거야? 네. 보도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콜 오는 데서 똑같이 일해요. 그냥 들어가서 초이스되고, 그러니깐 몇 명 아가씨들 돌아가면서 골라서 앉아요. 손님들이 앉으라고 그러면 앉아서. Q. 그럼 선택되어야지 하는 거야? 선택 안 되면 어떻게 해? 네. 좀 큰 노래방들은 그렇게 초이스 해도 되는데, 아닌 데는 손님 세 명 오면 딱 아가씨 세 명만 들어가거든요. 좀 큰 데는 여러 명에서 들어가거든요. Q.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일반 룸이 아니어서 스킨십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고 그런 거거든요. 원래 룸만 다 터치가 되고 일반은 안돼요. 제가 일반에서 일했던 말이에요. 만약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 까지는 괜찮는데 가슴 만지려고 그러려고 하면 그냥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돼요. Q. 시급은 3만원이야? 고정으로 일하면 3만원인데, 저는 보통 그렇게 보도방으로 일했어요. 3만원에서 똥을 때서 7천원 이라고 쳐가지고. Q. 몇 군데 다녔어? 제가 고 1때부터 했거든요. Q. 근데 고1인데 어떻게 했어? 거기서 실장들이 받아줬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고1때는 인천, 의정부, 부천, 수원에서도 했었고. Q. 안 나갔어? 네. 2차 나가요 되고 안 나가요 되는데 안 나갔어요. 무서워서. Q. 근데 알바를 못하게 됐어? 네. 부천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차비가 더 들 것 같아서 들어서 조건 몇 번 하고 그냥 부천에서 일하자 하고.

17. 본 적은 없어요. Q. 들은 적은? 들은 적은 있죠. Q. 그럼 네가 직접 조건남을 해본 적은 없어? 네. 본 받고 해본 적은 없어요. Q. 그리고 요즘에 내가 듣기로는 애들이 안 잡하려고 유심칩을 다 빼고 카페나 이런 데서 채팅을 한다는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Q. 대포폰 있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 이게 2g폰이예요. 2g폰은 거의 대포폰이요. 근데 그 오빠들이 미쳤다고 자기 명의로 대포폰을 하진 않을 거 아니예요. 만약 하는 개네들이. 근데 대포폰을 형식들이 산단 말이에요. 핸드폰 바로 알아볼 텐데. Q. 그럼 누구 걸로 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거 같은데. Q. 그럼 그거 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Q. 다음번에도 할 거야? 그냥 돈이 좋았던 거지. 나중에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이게 계속하다가 돈도 못 받을 게 같고. 쉽게 돈을 벌잖아요. Q. 지금 보호관찰 끝났어? 네. Q. 남친은? 아는 언니 소개로. 아 다시 사겨야 되는데. Q. 왜? 4개월 뒤에 해외 가기로 했는데. 조금 돈 게 있는데, 4개월 뒤에 조금 만기래요. Q. 같이 조금 넣는 거야? 아니요.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아 일본이 좋는데 이리다가 이탈리아 간다고. 얼마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데. Q. 성관계까지 했어? 다 했어요. Q. 그런데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아니. 아직 개가 좋기도 하고. Q. 잘생겼어? 네. Q. 해외여행 같이 갈 거야? 다시 사귀면.

18. 네. Q. 그 친구 한 명? 네.

19. 네.

21. 그럼 너는 조건남만 알선을 한 거네? 팔았었어요. 여자애를. 배 태워서 뭐 이상한 섬인가. 보낸 적은 있어요. Q. 얼마 받았어? 내가 돈 받는 게 아니라고. 아는 형이 팔려간다고 갔다 오라고. Q. 청소년 파는 거야? 어떤 여자. 성인 인가? 그건 몰라요. 그 때 졸려서 배에서 잤는데, 전 잠들었어요. 그냥 팔고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저 500만원 때웠어요. 그냥 같이 가겠다고 500만원. Q. 그런 형들 어디서 만났어? 그냥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22. 네 (조건만남해서 소년원 들어갔어요. Q. 그 친구 몇 살이었어요? 저장 동갑이요. Q.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구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을 나왔는데, 개가 옆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중1때는 ○○중 다니던 친구 소개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개가 ○○중에서 애들이랑 싸웠었나 뭐 어쨌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가 소문이 안 들렸어요. 개가 ○○중 안다니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개가 천안에서 갈레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맞냐고 하니깐, 내가 아는 ○○○이 맞대요. 개는 천안 가서 그렇게 살았구나 해서, 그래서 그냥 갈레소리 듣고 다니길래 그런가보다 그랬죠. 어느 날 개 조건만남 잡아서 소년원 들어갔다고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깐 개가 어떻게 하다 조건만남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잡아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천안에서 남자들이랑 자고 그러다가 조건만남도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Q. 다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애 중에 한 명이 더 있긴 했는데, 원조교제 했다고 들은 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은 하는데 개가 고아원 살았던 애였는데 저장 동갑이었어요. 개는 여자아이였는데, 개보다 한 살이 어린 같은 고아원 사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개는 그게 진짜래요. 분명 잤대요. 아저씨랑. 근데 개는 아니라고 하고 근데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 듣는 애는 있었어요. 조건만남 한다고. Q. 어떻게 해서 조건만남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네.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고.

23. 네.

24. 본 적은 없는데, 하는 애들은 있어요. 참 불쌍한 아이였죠. Q.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처음 사건은 그거였어요. 개가 중학교를 나왔는데, 개네 체육 선생님이 개를 차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애들이 저희 중 애들도 그렇고, 개네 중 애들도 그렇고, 다른 중 애들도 그렇고, 개를 건드렸죠. Q. 성폭행한 거예요? 아니요. 합의 하에 개도 좋아서 한 건대요. Q. 체육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은 성폭행한거구요. 체육 선생님은 잘렸고요. 하여튼 개가 성에 한 번 뚫리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Q.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네. Q. 지금도 하는 거예요? 네. 학교 안 다닐 걸요. 주변에 많죠. 그런 애들 몇 명 있고, 저희 학교에도 몇 명 있죠. Q. 학교에 한다는 애들 들은 적은 있어요? 네. 들은 적은 있죠. Q. 그 친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계속 전해져서 애가 뭐뭐다 갈레다 하는 식으로 계속 전해져서 나중에 들은 거죠. Q. 어떤 친구인데요? 제가 들은 건데요. 남자친구 아버지한테도 몸을 대줬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되게 심해요. 별명이 밤에 피는 꽃인데 뭐. Q. 그 친구는 어디를 통해서 한 거예요? 조건만남이나 소문 안 좋은 애들 보면 지들 좋아서 하는 거지.

25. 있어요. Q.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그러니깐 애가 아는 여자애고, 애가 다른 지역에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가 근데 집을 나왔어요. 그러가지고 애네 둘이서 아는 오빠한테 갔어요. 근데 이 오빠가 돈이 좀 많아요. 그러가지고 이 여자애를 조건만남을 돌린 거예요. 이 남자애가, 포주처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수위 하나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죠. Q. 수위는요? 밥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술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자러 갈 수도 있는 거고. Q.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애는 그러니깐 돈을 벌고 싶은데 모르는 데 올라왔으니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아는 데도 없고, 그거 땀에 아는 언니가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조건만남하자고 그래서 개는 어린 마음에 조건 만남 한 거죠.

26. 네. 주위에 그런 애들 있어요. Q. 많은 것 같아? 많지는 않고 몇 명. Q. 개네들은 어떻게 조건만남한대? 좀 까진 여자 애들은 나이대 생각 없이 막 놀다가 보도 사람 만나서 같이 술 한 잔 하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Q. 주로 랜덤 채팅에서 만나는 거야? 랜덤채팅이 아니라 클럽 같은 데서 만나요. Q. 그러면 보면 어떤 것 같아? 한심하죠. Q. 왜? 그냥 한심하죠. 나이도 아직 성인도 아닌데 클럽 같은데서 술 처먹고 다니고 남자랑 어울리고. Q. 돈도 받는 것 같아? 당연히 지들 몸 파니까 받겠죠.

27. 아니요. 저희학교에 보도 뛰는 애가 있어요.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나와요. 2학년 때, 물어 봤어요. 애들한테, 안 알려줘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보도 뛰러 다닌대요. 천안에서 뻘치 먹고 나서 논산으로 가서 했대요. 한 이주일 전에 왔는데 머리 염색하고 화장 엄청 진하고. Q. 그런 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갈레 같다. Q. 개는 다 소문이 났겠네? 네. 다 소문났죠. Q. 애들이 뭐라 그래? 욕해요. 나이가 몇인데 몸을 파냐고. Q. 개는 거기에 왜 빠진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28. 네. 제 중학교 친구요. 랜덤채팅해서 여자를 만난 거죠. 똥단배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설명해줬어요. 예산 여자애 만났다고, 개가 (예산으로) 갔는데 자주 연락하면서 만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만난대요. Q. 청소년을 만난거야? 동갑. Q. 돈은 서로 주고받았대? 아니요. 예산가는 차비만 낸 거죠. Q. 그 여자애는 왜 그런 거야? 개(친구) 말로는 (여자애)친구가 별로 없대요. Q. 그 친구는 여자애랑 몇 번한거야? 돈 안내고? 네. Q. 너는 해보고 싶지 않았어? (그 여자애가) 못생겼어요. Q. 예쁜 여자애였다면 괜찮고? 했겠죠. Q. 못생긴 여자가 나올까봐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하면 위험하잖아요. 모르는 애랑, 처음 보는 애랑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30. 들은 적 있어요. 몸 사진 찍어서 보내는 애들이랑, 돈 준다고 와 달라고 해서 가는 애들도 있긴 있대요. 30만원 받았나. Q. 채팅을 통해서 한거야? 네. 계속 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 학교 자퇴했어요. Q. 그런 애들 예뻐? 네. 예쁘죠. Q. 아까 그 (가출한)친구는 그 남자 집에 있었다고 하면 돈 받고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가 먹고 자고 다 해줬나 봐요. 돈은 안 받고. Q. 개네들이 조건만남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 돈 때문에. Q. 평균 얼마정도 받아? 제일 많은데 30만원, 적게는 5만원, 10만원. Q.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 것 같아? 모텔. Q. 그 사람들 나이나 직업 알 수 있어? 제가 들은 것은 27살이랑 36살 아저씨랑 했대요. Q. 뭐하는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Q. 그 친구는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 1학년 때 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들은 게 5번 되나. Q. 친구가 아파했어? 네. 안 창피한가 봐요. Q. 소문이 나잖아. 그래서 자퇴했나 봐요. Q. 그 친구는 얼마, 아빠가 안 계셔? 계신데 엄청 엄하세요. 그래서 집 싫다고 자주 나가고, 지금은 사실에 있다고 하던데. Q. 이런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깐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서. Q. 네가 친구를 볼 때 채팅어플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 해 줄래?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벌 방법은 없고, 알바를 해도 많이 받지 못하니까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깐, 일단 채팅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물어보고, 그 중 가장 많이 주는 쪽으로 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카톡으로 '어디서 만나자' 해서 만나서

모텔에서 돈 받고 헤어지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나고, Q.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하고 나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없는데, 친구들이 개 곁을 많이 떠났어요. 더럽다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은 더 좋아해요. 자기랑 자자고, 그 친구는 그건 싫은가 봐요. 학교에 소문도 퍼지고, 여자애들도 싫어하고, 학교 못 다니니까 자퇴하고(왕따 때문에), Q. 그 친구는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거의 집에 있었을 걸요.

□ 없음

1. 아니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Q. 그 포주는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한 사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23~24살인가 아는 형이 있던 말이에요. 그 형이랑 이제 제 또 위의, 한 살 위의 형이랑 해서 여자 있잖아요. 주변에, 주변에 그냥 합의하에 조건만남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자애들 두 명 데리고 지역이 어딘지 까먹었는데 인천이었나. 광주였나 그 쪽 가서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가서 모텔 잡아서 조건만남 해주고 묵고 여자애한테 얼마 빼주고 자기들 얼마 가지고 한 달하고 말았다고 들었어요. 여자애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루에 열 번씩 갔다 오고 그러니까 병 걸리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도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Q. 인터넷 채팅은 아니더라도 주변 친구 중 업소에 가서 성관계 하는 친구? 네. 그냥 돈 내고 가서 하고 오는 거죠. Q. 인터넷 채팅은 아니더라도 주변 친구 중 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해봤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돈 아까워서 다 아줌마들이라 그래서 하기도 싫고, Q. 필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는다면? 저는 제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없을 때는 안 해요. Q. 음란물 보고는 뭐해? 그냥 자위.

4. 아니요.

6. 없어요.

8. 없어요. Q. 학교에도 그런 친구 없어요? 네.

14. 아니요, 못 봤어요. Q.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걸 할 때 수사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유심칩 빼고 와이파이가 채팅 한다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Q. 조건만남을 한 번 해 본거야? 네. Q. 캠프는 일주일 한 거야? 네. 하고 29일인가 30일에 갔다 왔어요. 검찰에, 서울가정법원, Q. 판사를 만난거야? 가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냥 이번 한번만 봐주겠다고, Q. 이제 괜찮은 거야? 사회봉사 그런 거. 40시간인가. 3개월 동안은 밤 10시부터 나가면 안 되고, Q. 걸리면 소년원에 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Q. 성장 캠프 해봤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 같아? 도움이 되는 거 같긴 한데,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서 저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Q. 어떤 사람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만났다가, Q. 몇 명 정도? 5명, 저까지 6명인가. Q. 그 친구들하고 친해졌어? 네. 지금 개네들은 같이 사는데 이제 저만 따로 온 거였더라고요. 개네들은 같이 사는 애들끼리 캠프, Q. 쉼터 이런데? 네.

20. 아니요,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Q. 근데 아까 보도 뭘 왜 있었다며? 그거는 이제 친구끼리 있을 때 야 어떤 애 개 보도 떴데 그런 거지. 그렇지 아닐지 뭐.

29. 아니요, 그런 애들 없어요. 저 요즘 공부시작해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Q. 요즘 공부 시작했어? 네. 저 대학 가려고, 대학 한번 가보려고 공부 시작했어요. 여자 친구가 공부시키기도 하고, 빨리 꿈을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공부시켜요. 어쩔 수없이 공부하다보니까 또 수학도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 들렸어요. 공부가. 뭔가 모를 재미가 있어요. 공부 안 해본 애들은 몰라요. 재미를, 해봐야지, 재미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웠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딱 맞았는데 정답 맞았어요. 기분 진짜 좋아요. Q.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는 공부를 아예 안 했죠. 놀기 바빴으니까. 옛날에는 사고치고 막, Q. 기초가 없는데도 공부가 잘돼? 기초는 공셈·셈셈·나눗셈·덧셈 이런 것만 알면 다른 거 배워도 이해는 가요. Q. 영어는? 영어는 솔직히 기초가 없으면 어렵겠죠. 저는 어렸을 때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서 읽을 줄은 알아요. 읽을 줄은 알다보니까 뜻만 외우면 한번만 외우면 되잖아요. 더 쉬워요. 영어는 그래서 해요.

<표 I-43>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경험

질문: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13. Q. 어떤 용어를 써? 가입을 하고, 아니 남자들이 먼저 조건만나고 알았다고 소개하고 가격 말하고 하면,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 빼고는, 그냥 안에다 싸는 거나 후장 같은 거나 그 성기 먹기 그런 거.

15. 버디버디에서, 중학교 때, 중 1, 학교 친구가, Q. 지금도 연락해? 아니요. Q. 어떻게 연락해?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연락해서 그냥 만나는 거 같던데. Q. 쉼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 여기 (그리나) 쌤 통해서, Q. 어떻게 왔어? 그냥 같이 왔어요. 그 (그리나) 쌤 이랑 같이 일하던 선생님. Q. 언제 왔어? 올 1월. Q. 그럼 집에서 안 살고 여기 사는 거야? 네. Q. 근데 왜 집에서 나왔어? 집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막 지원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거. Q. 실제로 해 줘? 뭐 배우고 있어? 네. 미용이랑 검정고시 반(고등학교)이요. Q. 그리나 쌤은 어떻게 알게 됐어?

친구 따라 갔다가 캠프 갔다가. Q. 성장캠프? 네. Q. 성장캠프 왜 갔어? 직업이랑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그게 성 그런 쪽 했던 애들 오는 거라고 해서 그 때 들었거든요. Q. 근데 넌 어떻게 오게 된 거야? 한 번 해봤어요. 어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친구의 친구. Q. 뭘 통해서 했어? 그것도 무슨 채팅인데. Q. 언제 했어? 그 때 한 고1. Q.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어? 전화로, 채팅사이트를 해서 번호를 알아서 전화하고 만나고, Q. 모텔 갔어? 네. Q. 얼마 정도 받았어? 15만원인가. Q. 그 때가 고1 정도였어? 네. Q. 그 사람 나이나 직업은? 한 30대. Q. 캠프를 왜 가게 됐어? 걸렸어? 걸린 게 아니고 전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성장 거 캠프. Q.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 따라 갔어요. Q. 그거 한 줄을 몰랐을 거 아니야.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네. 그냥. Q. 어떻게 안하게 됐어? 그냥 싫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쪽에 손을 대진 않았는데 친구 통해서 해본 거라서, 좀 원치 않았어요. 당한 건 아닌 거겠죠? 돈을 받았으니깐. 저도 원하는 게 있었으니깐.

Q. 그 때 돈이 갑자기 필요했어? 네. 그 때 가출한 상태이기도 하고 Q. 그 돈으로 뭐했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Q. 돈 떨어지고 나서는?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Q. 집에선 알아? 아니요.

16. Q. 그럼 졸룩이랑 컴얼롱을 통해서 한 거야? 졸룩이랑 컴얼롱. Q. 그런 곳이 많아? 엄청 많아요. Q. 어떻게 가입을 한 거야? 가입이 주민번호 입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이름하고 성별하고 사는 곳만. 그리고 방 만들기 전에 지역 있어요. 서울 이렇게 해놓고, 채팅 방 여러 개 띄우. 그러면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되게 많아요. 채팅방 1, 2, 3 이래서 들어가서 사람들 되게 많은데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막 대발도 있고. Q. 대발이 뭐야? 대신 딸쳐준다고. 그 것도 5만원 받고. 손으로 대신 딸쳐준다고. 그냥 차 안에서 남자가 바지 벗고 앉아있으면 손으로 딸쳐준다고. 그리고 그 거랑 조건이랑. Q. 남자 자위행위를 해주는 거야? 네. Q. 조건은 얼마 받아? 조건은 13? 근데 13에 두 번하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Q. 애인 대행은 안 해 봤어? 애인 대행은 안 해 봤어요. 애인 대행은 그냥 밖에서 제가 사람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좋게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밖에 사람들 있는 데서 애인해주고 그러면.

□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음

3.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나요? 네. 그 버디버디라는 채팅이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했대요. 만남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웬돈 줄게 이레가지고 키스만 하면 돈 준다고 했는데, 키스만 하면 15만원인가. 근데 키스만 안했대요. 막 하고 만지고.

9.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나요? 친구들. 한 적 있죠.

23. Q. 친구가 어떤 어플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요? 아니요. 그건 기억 안 나요. Q.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알아요. 막 랜덤채팅 그런 거 따로 성매매 막 원조교제 막 그런 따로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막 찾아서 가입하면 자기가 여기 있으면 다른 남자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막 띄우. 막 뜨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막 채팅하다가 만나지고, 어디서 만나지고 그리고 만나면 성관계 맺고 그래요. 돈 받고.

□ 없음

1. 아니요. 그런 건 한 적 없어요. Q. 주변에 본 적도 없고? 네. Q. 돈을 주고 처음 만남을 한 적은 있잖아. 주변사람에게 들어서. 어디어디 좋더라. 찾아가서 돈 내고 했죠. 돈 내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자가 들어와요. 랜덤인데. 그런데(침대)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웬만해서 예쁜 애들 들어와요. 나이는 다 성인이에요. 그냥 모텔방처럼 되어있어요. Q. 7만원 줬던 때는 언제야? 1년 전이요. Q. 그러면 그 때 당시 여자들의 나이는? 25정도. 20대 초반. Q. 그 때 왜 갔어? 그냥 욕구 풀려고요. Q. 근데 지금도 가요? 이번 년도에, 14년도에 딱 한번 가고 안 갔어요. Q. 얼마 줬어요? 그 때는 8만원. 천안에 되게 많아요. Q. 몇 시? 12시 새벽. Q. 청소년 확인은 안 해요? 하는데 청소년인지 검사하긴 하는데. 저하고 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생겨서, 심하게 안하는 거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얼추 맞다 싶으면 그냥 넘긴 거 같아요. Q. 주민등록검사는 안 해? 저는 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했어요. 다른 사람 민증 주는 거 받아서 다 들어갔어요. 저는 안 해요. Q. 모르는 사람처럼 하면 찻찻하지 않아? 제가 듣기에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관리 받고, 더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성병 같은 거 걸린 적 없어요. 콘돔 안 끼고 해요. 콘돔 더 낀다고 돈 더 내는 건 없어요.

2. 아니요. 없어요.

5.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6.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17. Q. 그러면 캠프 어떻게 가게 됐어? 청소년 센터 거기요? 말하면 복잡하네. 제가 원래 보호관찰 받고 있었어요. Q. 왜? 애 때려가지고. 중학교 때 그거 때문에 학교 그만둔 건데. 원래는 친구였는데, 짜증나게 하길래 때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보통 모닝카드인 가 그거 수감인가 받았었는데, 그 뭐냐. 2차 재판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있는 거 모르나간 안 받죠. 그래서 보호관찰 떨어져서 보호관찰 받고 있는데 제가 막 침터에서 보호관찰 받는 걸 때린 애가 있어가지고. Q. 그 때린 애가 누구야? 사귀었던 애. 개도 같이 보호관찰 받고 있어가지고. 침터에서 절 때린다고 얘기해가지고 있는데 막 침터였는데 개는 소년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다가 개랑 완전 헤어지고, 남자를 5번을 사귀었어요. 한 반년 안에. 몇 개월 만에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남친 생길 때마다 다 아는 거예요. 누구 사귀었는지 왜 사귀었는지 막 그래요. Q. 침터 선생님이지? 아니. 그 보호관찰 선생님이지. 그래가지고 거기 센터 선생님 한 번 만나보래요. 막 싫다하다가 만나다가 캠프 갈 거냐고 안 간다고 했죠. 어떻게든 나름 다시 얘기해보니까 재밌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원래 거기 센터가 청소년 성매매 그런 거잡아요. 저는 그냥 가서 안했대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토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가지고 온 다음에 이번 달에 3주 전인가 조건 사기를 했던 말이에요. 돈만 받고 튀는 거 했어요. Q. 조건사기 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찾아서 한 거죠. Q. 어떻게? 3년 동안 아는 언니가 있는데, 알바를 하니까 제가 돈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쪽지를 하고 얘기하고 놀다가 카톡을 하고 놀다가 아 언니 나 알바 좀 찾아줘 같이 일 할래 이라는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진짜 막 완전히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청소년인 거 알면 못 건든다고. Q. 그 언니 몇 살이야? 지금도 해? 19살. 근데 그 언니 옛날에 (조건만남) 했대요. Q.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선 갔어요. 30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긴 밤이면? 8시간에 30. 그러니까 사귀자고 하고 돈 받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개가 옷 벗고 들어가면, 저는 그냥 미리 돈을 받아갔으니까. 모텔에서. 저는 돈 받고 나왔죠. Q. 튀었어? 네. 첫 번째는 무서워서 못해가지고 돈만 주고 나오고, 두 번째는 먼저 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럼 개가 씹으라고 해요.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랑 지갑 손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죠. Q. 몇 번 했어? 그거 못 된 날 돈 돌려주고 나온 거 까지 합하면 세 번인데, 돈 들고 튼 건 2번이잖아요. Q. 누가 구해줬어? 그 언니가. 합하면 600이잖아요. 10만원. 10만원. 나머지 10만원은 모아서 주말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 말고 그 언니가 돌린 여자애가 있어요. 두 살 어려요. 15살이거든요. 돈 한 번도 안 줬대요. 애가 이번에 신고를 했는데. 15살이 돈 안주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안 좋은 일이 서로 있었나 봐요. Q. 어떻게 신고했어? 경찰서예요? 알 수는 없는데, 감금 같이 지냈으니까 애는 피해자니까 감금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아무튼 전 그래가지고 전 총 번 것은 600이었는데, 20만원 받았잖아요. 이 언니가 모아둔 돈 20있죠. 그거만 해도 40은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똥 닭은 걸로 치려고 하는데 그냥 뽕뽕이었어요. 지도 어찌피 나중에는 다 들길 텐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틱톡이나 졸룩 안에 싸돌잖아요. 틱톡이 오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럴 때마다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요. 저한테 톡톡이 오면 그럴 때마다 이 언니가 계속 벗고 하고 있는 거죠. Q. 그 언니는 계속 해? 지금도 기본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떠요. Q. 그 언니가 다시 하자고 그러진 않아? 또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못하겠다고, 나 이리다가 알바도 돈 쉽게 벌잖아요. 사기로 돈만 받고 나오는 거니깐. 이거 계속 하다가 알바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 벌고, 나 못하겠다고 알바 하겠다고. Q. 돈은 못 받았어? 달라는 말도 안했어. 이미 먹힌 걸 아니까. Q. 근데 그 언니는 알바 하면서 그 애들을 다 모으는 거야? 그 언니, 그 언니 샵이 있는데, 그냥 지하예요. 거기서 그냥 지내면서, 그냥 한두 명 돌려가면서 사기는 거죠. 이번에 애들 좀 많아진 거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좀 유명한데, 동네에서 그 언니 알던데. Q. 경찰은 몰라? 이번에 개가 신고했는데. 거기 반 지하가 오빠들이 마약 사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마약 사기를 한 건데, 사이트 같은데다가 막 올려요. 막 사이트 같은 거에 올려요. 그럼 대포폰이 있던 말이에요. 대포폰이 연락이 오잖아요. 저희 쿼 거래 한다고, 쿼거래 한다고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줘요. Q. 그럼 얼마 받아? 그 것도 30, 15. Q. 그럼 보내주는 사람이 많아? 그냥 꽤 있던 거 같은데. 그리고 통장 써야 되는데 구하기 힘들잖아요. 통장 명의 빌려줄 애들도 찾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 걸렸거든요. Q. 여러 명이 혼숙하는 거야? 거기서 안짜요. 거기 있는 가는 남자들 같이 못가고, 거기 알선하는 그 언니랑 같이 하는 여자애랑 거기서 사는 거 같은데. Q. 가출하는 애들 모으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그냥 돈 벌 애들. Q. 연락 안 와? 네. 저는 그냥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몇 개 적고. Q. 그 언니는 계속 그거 해? 솔직히 개는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돈 버는 거잖아요. Q. 그 언니는 이제 조건 안 해? 저도 그거 통해서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거 했었다. Q.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깐 거의 다 처음 해본 애들 만나서 처음 해보는 애들 20대 중후반, 그런 애들만 만나가지고 Q. 개네는 회사원? 모르겠어요. 직업 같은 건 안 물어보니까 Q. 나이는 어느 정도 돼? 20대. 처음 한 사람은 아저씨. 아빠뻘이죠. 아빠가 한 마흔.

22.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Q. 주위에 또 없어요? 네. 음. ○○○이라는 개도 자랑 예전엔 일던 사이였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이여서 그냥 들어갔다고 소문이 퍼지고 퍼지니까 그렇게만 큰 주제만 알고 있지 개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고는 아예 모르고 그 원조교제 소문 돌았던 애도 그게 소문인

지 진짜인지 저도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 듣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25. Q. 채팅 어플을 통해? 그런 건 못 봤어요.

Q 기타

19. Q. 대충 조건만남 하는 지 어떻게 알아? 아니요. 개네들이 알려줬어요. Q. 어떻게? 성인이랑 돈 받으면서 사귀면서 몸 대주고 모텔에도 존나 가고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빵 갔다고. 아청법. Q. 그냥 그렇게만 알려줬어? 네. Q. 개가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는 아니었고? 학교 안 다녀요. 개. 중학교 중퇴. Q. 개에 대해 아는 거 없어? 네. 그거밖에 못 들었어요. Q. 페이스북에 있나? 페이스북에서 계속 하나? 못하죠. 핸드폰하고 다 뺏기는데.

Q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2.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8.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4> 채팅 어플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한 횟수

질문: 채팅 어플(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3.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들은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나요? 개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랑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원룸에 같이 살았어요. 아예 그 아저씨랑.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들 엄청 많이 만나고, 그건 저도 모르는 오빠들인데. 갑자기 어떤 오빠들이예요. 오빠들 진짜 많았어요. 오빠들 막 맨날 하루에 막 다섯 번씩 하고 산책하자 산책하자. 막 그랬어요.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뭐 먹으려고 하려고 그런 거죠.

9. Q.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한 친구들은 조건만남을 몇 회 정도 했나요? 개네는. 2~3회 정도 했을 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 번.

10. Q. 그 친구는 조건 만남 자주 해요? 일 년. 한 일 년 했던 거 같아요.

13. 20번은 넘는 거 같아요. Q. 돈 안주는 사람도 있어? 안주면 제가 때려요. 협박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깐 자연스럽게 힘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칼을 가지고 있을 상황도 많아서. 칼을 언제나 늘 갖고 다녀요. 지금은 놀러갈 때는 안 갖고 다녀요. 저희 동네가 중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살인사건도 많고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요. 그거 갖고 만약에 돈 안주면 머리채 잡고 협박하죠. 왜 안주냐고. 또 지갑 보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왔구나 하면 한 번 끌고 가가지고 은행가서 돈 찾으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은 다 받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때 아는 오빠들이랑 사니까.

오빠들이 다 알려주고 싸움하는 것도 알려주고, 남자들은 거기만 차면된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만약에 15면 30~40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협박했으니깐 Q. 뭐라고 협박하나요? 저 마성년자인거 아니까. 저도 문제긴 문제지만, 미성년자랑 하는 게 더 문제니깐 신고한다고 미안하다고 가서 돈 주죠 Q. 졸투으로 한 다음에 연락은 뭘로 해? 카톡이나 틱톡, 그래서 오라고 하면 아이디를 서로 교환해서 가까운 데로 오라고 하고,

16. 한 5번 정도.

18. 1번. Q. 네가 세 번 친구 구해주고? 네.

19. Q. 그럼 개가 몇 명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네? 네.

23. 친구들이 실제 조건만남을 어느 정도 했어요? 엄청 많아요. Q. 언제부터? 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애도 있고 고1 올라가서 그러는 애들도 많아요.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2. 접촉 경험 없음.
14.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17.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5>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

질문: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의 직업과 나이는 어떠합니까?

3.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들의 상대 직업과 나이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10대도 있었고, 40대 미만도 있었고.

9.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들의 상대 직업과 나이는? 직업은 모르겠고.

12. 거의 25살에서 30살.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사장 일하는 사람도 있고. Q. 싫어도 계속 했어? 싫은 날도 이런 거 한번만 참으면 돈이 생기니깐 참고 했어요. 한 시간 당 5만원. Q. 돈을 주고 하니깐 집에 갔어? 네.

13. 어이없는 게 유부남도 있고 경찰사람도 있고, 아 조사 다했죠. 지들이 경찰이라고 뿔뿔하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대학 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일반 직장인, 해병대라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 거 하다보니까 아 이제 진짜 믿을 사람이 없구나. 경찰도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겠어요. 판사도 하는 사람 있는데 제가 아니고 그건 친구가 했어요. 친구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휴대폰을 우연히 봤대요. 그랬더니 판사라는 직업이.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후반.

14. 아니요, 잘 몰라요. Q. 어느 정도인지 몰라? 한 32. Q. 직업 모르고? 네. Q. 그럼 돈도 못 받았겠네? 네. 아무 것도 없었어요. Q.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어? 그 사람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는 잡혔어요. 같이. Q. 모텔에서? 모텔 앞에서, 잡혔어요. 나왔는데 있더라고요. Q. 연락처를 주고받았어? 아니요, 연락처는 안 주고 받았죠. Q. 그럼 뭐로 했어? 그냥 아이디. 카톡 아이디로. 그렇게만 했어요. Q. 그 사람이 카톡 아이디가 뭐냐고 그랬어? 서로 교환하고? 네. Q. 둘이 채팅을 해서 장소를 정한 거야? 네. 그렇지. Q. 개인적으로 한 거네? 네. Q.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줬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돈 생겨서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굳이 그렇게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고. Q. 그래서 아이디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네.

16. 거의 다. 젊은 20대 초반도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17살인 애들도 있어요. Q. 그런 애들하고 해봤어? 해보진 않았어요. 나이 17 되어있어서. 그리고 제가 했던 사람들 중에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Q. 직업은? 모르겠어요. 직업은 그냥 다들 회사원 같은데. Q. 결혼한지는 모르겠고? 네.

17. 나이는 아저씨하고 20대 남자.

18. 그건 잘 몰라요. 되게 개가 많이 했어요. 한 10명 12명.

21. Q. 조건 달린 남자애들 몰라?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 하는 상대방의 직업이랑 나이는? 거의 20살 남자? 막 학교도 안 다니고 양아치. 아저씨들도 가끔 있어요. 30대 40대.

24. 그건 있겠쥬.

25. Q.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하는 상대방의 나이는? 한 40살 되겠쥬. 40살에서 36.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 19. 접촉 경험 없음.
- 20. 접촉 경험 없음.
- 22. 접촉 경험 없음.
- 26. 접촉 경험 없음.

- 27. 접촉 경험 없음.
- 28. 접촉 경험 없음.
- 29. 접촉 경험 없음.
-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6>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질문: 조건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3.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는 주로 어디서 했나요? 모텔, 차 안, 집(남자 집), 차 안에서 만나서 했고, 모텔 갔다고 모텔 가고, 집에서든 했다고 하고.

9. Q.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는 주로 어디서 했나요? 상대방의 집, 그 아저씨의 집.

12. 차도 있었고, 술집 같은 데도 있었고, 모텔 이런 데는 없었어요. Q. 근데도 더 이상은 안 넘어갔어? 막 담치려고 할 때는 그냥 계속 관두고, 안 했어요. Q. 그럼 그 남자들이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대비하려고 제가 가지는 힙색(앞에 다 매는 조그만 가방)이 있어요. 거기다 가위 같은 것 들고 다녀서 그래서 위험할 때 가위를 쏠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없어요. Q. 가위로 어디를 찌르려고? 네. 목? Q. 그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 그 사람 먼저 잘못했으니깐 찌러야죠. Q.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안 해서 찌른 적은 없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한 적이 없어서. Q.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안 가지고 다녀? 가위 없을 때 칼 가지고 다녀요.

13. 주로 모텔 근처나, 변화가 쪽. Q. 성폭행 당해본 적은 있나요? 예전에 강간은 당했었어요. 선배들한테. 모르는 선배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깐 저희 학교 선배인가. 그냥 길가다가 끌려갔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원지도 모르는 상황에. 컴퓨터에서 있던 실재가 저한테 일어나니깐. 그냥 당하고만 살고 중2때 또 당하고 살고 그 때 잘 몰라서 당하고 살고, 이제는 안 당하죠. 창고 같은데. 끌고, 아니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친한 척 하라고, 안하면 죽는다고 막 데리고 가고,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신고도 못했어요. 선배니깐. 그 때는 몰랐으니깐. 아무것도. Q. 언제 당했어요? 중 1이랑 중 2. Q. 부모님한테 말 안했어? 그거조차도 말 안했어요. Q. 임신 안했어? 근데 임신 안했어요. 모르겠어요.

14. 모텔.

16. 모텔 아니면 차 안. Q. 근데 모텔에서 주민등록증 검사는 안 했어? 그러니깐 안하는 데를 알고 거기만 간 거죠. 성복동이었어요.

17. 다 모텔. 건대랑 화양동 일대. Q. 근데 성인하고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 확인 안 했어? 아저씨만 한 번. 처음 간 곳만 그랬지. 나머지는 민중 보여줬는데, 자꾸 안 달았대요. 맞다니까. Q. 그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구했어? 사촌언니 거 훔쳤어요. 근데 안 달았대요. 그러가지고 딱 데 갔죠. 근데 그 때 처음만 그러고, 다른 데는 그냥 한 번에. Q. 민중 검사 안 해? 요새도 안 해요. 옛날에는 좀 했었거든요. 남친이랑 갈 때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 다 들여보내줘요. 그 때는 아저씨가 나이 차이가 딱 나보이니까 검사를 한 거 같고.

18. 별로 없었어요.

19. 개가 모텔에서 했대? 네.

21. 모텔 Q. 업주랑 연결되어 있었네? 네. 전화해서. 지금 남자랑

여자랑 가니깐. Q. 민중 검사 안하겠네? 네. Q. 모텔한테 줘야겠네? 모텔 개네한테 한 달에 만약 백 준다고 하면 팀으로 3천만 원. 모텔비 바가지로 씹워요. 5만원 받을 거 9만원이라고 바가지 존나 씹우고, 우리가 팀을 안취도 돼요. 모텔 개네한테 이렇게 했으니깐 우리한테 돈을 더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텔비를 바가지를 씹워라. 모텔비가 얼마얼마고 이렇게 해주겠다 알았다고 사장이랑 연결해서 그 여자애한테 해서 그 여자애들도 다 대포예요. 야 그 뭐뭐 남자랑 커플 방 가라. 커플룸이 15만원인데, 평일 날에는 많이 있대요. 주말에는 새벽에만 잘 돼요. 그러가지고 개네가 네 오빠. Q. 그러면 모텔비는 그 남자가 15만원 내고, 너네한테 13만원 내고? 밤 12시 지나면 20만원. 10만원 할증 붙어요. 바가지 존나 씹우는 거예요. Q. 술 먹고 하는 거야? 술 먹고 2차까지 가면 20만원 더 줘야 돼요. 1차에서 20, 2차에서도 20, 3차까지 간다 그러면 3차에서 40, 총 80만원 버는 거예요. Q. 80만원 번 거 가지고 때주는 거야? 여자애 20, 나머지 60은 갖죠.

23. 친구들이 조건만남 하는 곳은 어디예요? 막 모텔 가거나 막 자기가 만약에 혼자 원룸 잡고 살면 거기서 하고 친구 사는 원룸에서도 막 그래요.

25. Q.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어디서 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접촉 경험 없음

- 1. 접촉 경험 없음.
- 2. 접촉 경험 없음.
- 4. 접촉 경험 없음.
- 5. 접촉 경험 없음.
- 6. 접촉 경험 없음.
- 7. 접촉 경험 없음.
- 8. 접촉 경험 없음.
- 10. 접촉 경험 없음.
- 11. 접촉 경험 없음.
- 15. 접촉 경험 없음.
- 20. 접촉 경험 없음.
- 22. 접촉 경험 없음.
- 24. 접촉 경험 없음.
- 26. 접촉 경험 없음.
- 27. 접촉 경험 없음.
- 28. 접촉 경험 없음.
- 29. 접촉 경험 없음.
-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7> 조건만남으로 받는 금액

질문: 조건만남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받으니까?

3.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하루에 5번 했거든요. 거의 4~5번. 그러가지고 진짜 40~50 이랬어요. 한번 할 때마다 10이래요. 요번에 제가 또 아는 애가 있는데 임신했어요. 개도 애 낳았는데. Q. 어떻게 알았어? 어떤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개도 조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개가 임신을 했어요. 두 번 씩이나 했어요. 임신. 한 명은 지워서 입양 보냈고, 한 명은 애기 낳고 입양 보냈어요. 한 명은 지금 애 키우고 있는데 두 번 다 낳았는데, 개는 아예 그 일에서 손을 뗐어요. 개도 그 언니들이 시켜서 개보고 하라고 했어요. Q. 그럼 그 언니들이 포주인가? 네. 그 때. 시켰어요. 맨날 당했어요. Q. 그럼 개는 지금 누구랑 살아? 지금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데, 남편은 지금 남편 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개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키운대요. 한 5월 달 쯤에 혼인신고해서. 조건해서 만난 애인지는 몰라요.

9.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8만원 10만원 한번 만나는데.

10.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11. Q. 조건만남 하는 친구는 얼마를 받나요? 5~6만원(친구).

12. 전체가 40만원. 한 번 만나는데 5만원, 10만원.

13. 한 번 할 때 10에서 15. 잘 많이 받은 건 20만원. Q.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 거의 계속 모았다면 500은 넘을 거 같아요.

14. 15만 원정도.

16. 12만원 아님 13만원. Q. 다 돈을 받았어? 네. Q. 이상한 남자는 없었어? 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강제로. 원래 먼저 돈을 받고 하는데 개가 끝나고 주겠대요. 근데 이미 그 때는 모텔 안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강제로 막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근데 열받아가지고 옷 입고 돈 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8만원을 주는 거예요. 어이없어 가지고 다음에 돈 8만원만 받고 나왔어요. Q. 조건이 뭐였어? 저는 조건 그냥 다 안 되고 평범하게. 평범하게 하되 하고 만났는데 (성기를) 빨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빨아주고 그러고 저는 누워만 있고, 하는 거죠. Q. 질 사정

이런 거 안 하고? 네. Q. 하는 남자 없었어? 네.

17. Q. 조건만남으로 30만원 받은 거네? 네. 근데 10만원은 언니가 받고 10만원은 알선한 언니 주고, 그 돈은 이미 썼어요.

18. 개는 7만원.

19. Q. 그 친구가 얼마정도 받았는지 모르고? 네.

21. 평균 13에서 15.

23. 친구들은 얼마 정도 받고 조건만남 해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Q. 한 번 할 때? 네.

24.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백 살 먹은 할아버지가 차 사주겠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25. 그 친구가 조건만남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건당 5만원. 그리고 이제 술만 먹으면 5만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수위가 올라가면 돈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Q. 천만에 있는 거예요? 네. Q. 가출해서 따로 나와 살게 된 그런 거예요? 네.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5.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8>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질문: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돈을 벌기 위해

3.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돈 필요해서

9.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개네는 사회적 생활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요. 막 돈도 없고 용돈도 조금 받아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돈을 써야 되는데.

10.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 돈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게 돈 잘 벌잖아요.

11.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12.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막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Q. 부모님한테는 달라고 하면 안 돼? 막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13.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고 용돈도 적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때 돈도 없고, 사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엄마랑 싸우고 나서 집 나가서 갈 데도 없어서 선배들 집 가서 놓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Q. 그러다 선배언니들이랑 알게 된 거야? 네. Q. 다른 대안이 없었어? 아니요. 그 땐 했었어요. 전단지나 서빙 같은 거 했었는데, 월세 내기 빠듯해서, 그거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먹고 자고 해서 100만원. 월세 내면 10만원이고, 옷이나 식비나

이런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적으면 두 명 이고, 많으면 여섯 명. Q.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거의 다 조건만남. 뽕빠이 한 적도 있고.

14. 돈 필요해서. Q. 돈이 그렇게 왜 필요했어? 갑자기 이제 뭐지. 알바를 하려고 하면 한 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밤에 되게 힘들더라도 돈은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Q. 돈 때문에? 네.

15. 그냥 돈 때문에. Q. 조건만남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친구가 옆에 있었잖아요. 친구 소개로.

16. 돈. Q. 알바 하다가 못하게 돼서? Q. 네. 보도 하다가 돈 없어서.

17. 그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 같아서. 잠깐 일하고 돈 버는 거니까. 제가 뭐 10시간 뽕 빠지게 일해 봤자 버는 게 5만원인데.

18. 집 나와서 돈 벌려고.

19. 돈 벌려고.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20. 남자는 일단 성욕구. 여자는 조건만남이고 돈이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21. 돈 벌려고. 개네 돈 벌려는 목적에서 그랬어요. 진짜 돈 많이 준다고. 네가 일단 하는 데에서 진짜 잘 주겠다고. 그럼 알았다. 그럼 믿고 개네가 잘 따라와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여자애들 관리했으니까 저는 믿고 돈을 줬어요. Q. 떼먹지는 않았어? 안 떼먹었죠. 양아치도 아니고, 지 믿고 서로 일하기로 한 건데 80명 다 줬어요. 봉투 이름 넣어서 주고 Q. 끝날 때? 잡혔을 때? 잡히기 전에. 월급날. Q.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장부에 써놓고, 너 가불해 간다 하고 가불 한도 초과 안하면 500 그 안에 다 해줘요. 금방 찾아요. Q. 도망가면 어떻게 해? 금방 찾아요. 나쁜 애 한 명 있었는데. 이를 만에 찾았어요. 그러가지고 가둬놔요. 존나 찢조. 다시 일 잘하겠다. 알았다 씨바 마지막 기회다. 다음부터 또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그러고 장거랑 그런 거 파는 게 있어요. 눈 하나에 3~400하 는데. 눈을 빼면 애가 눈이 없잖아요. 강아지 눈 뽑아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Q. 파는 사람 있어? 그걸 옆에서 봤는데, 존나 징그러워요. 사람 시체. 막 손가락부터 마디마디 빠가지 다 잘라요. 진짜.

Q.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다 잘라서 막 팔아요. 냉장 숙성시켜서 막 팔아요. 막 개 심창 썩은 내 찢어요. 사람 막 거기서. Q. 어디서 데려와? 그걸 어디서 사 온대요. 방금 죽은 사람을 사 온대요. 사다가 살은 사람. 장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간대요. 몸을 다 갈라가지고 부위별로 콩팥, 신장이고. Q. 산 사람을 사는 건 아니지? 그걸 사요. 그 업자가 죽은 사람을 사서 토막을 다 내요. 그리고 이걸 또 댄 데다 팔아요. 해외에다 넘겨요.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막 다른 알바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다른 고깃집 알바 서빙은 하루에 3만원 그 정도 받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그런 거는 5만원 받고 그래서 하는 거 같아요. Q. 그 친구들은 아직도 해요? 네.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 한 번 하면 다는 뜯대요. Q. 돈 때문에? 아까 개. 체육 선생님 개는 집을 관찰해 살아요. 평범 이상이고. 근데 그러고 다녀요.

25. Q. 왜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Q. 지금도 계속 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49>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

질문: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돈

3.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돈.

9.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돈도 그렇고, 20살 30살 되면 돈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거 같은데요.

12. 쉽게 돈을 버니까. Q. 돈은 벌어서 뭐하는 데 써? 막 놀거나 노래방이나 그런데 가거나 술 먹거나. 어. 담배도 사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떨어지면 화장품 사고 그래요.

13. 이미 돈의 맛을 들였으니까 이걸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Q. 돈 때문에? 네. Q. 어떻게 안 하게 됐어? 그거 하다 보니까 성병도 걸리고, 에이즈? 아니. 모르겠어요. 매독 헤르페스? 그럴 걸요. 그거 걸려서 치료도 하고, 지금 항문에 사마귀 나았어요. 사마귀 난다고 해가지고, 저 낫았어요. 그래서 치료 받았어요. 뭔가

불룩하게 나와 가지고, 여기 선생님이랑 병원 갔었어요. 사마귀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수술했어요. 아팠어요. 성병은 재발한다는데 안해가 되고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냥 성병. 저도 잘 몰라요.

15.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한 이유는? 돈 때문인 거 같아요.

16. 돈. Q. 어떻게 그만 뒀어? 다섯 번 하고, 제가 그 관계 맺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싫어해서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제 보도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 거예요. Q. 지금도 계속 해? 아니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Q. 보도가 도움이 된 거네? 화곡동에서? 네. 부천에서.

17. 못 끊는 거죠. 돈을 계속 버니까. Q. 캠프에 갔다 와서 사고가 바뀐 거야? 캠프 가기 전이나 지금도 왜 하는지 이해는 안 갔어요. 처음 캠프 가서는 이해가 됐는데 캠프 가기 전에는 아예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근데 갔다 와서는 이해가 되고, 내가 하고 나니까 아 돈 벌기 쉽구나. Q. 어디에 썼어? 20만원

금방 쓰잖아요. 돈 있으니까 안 걸어도 되니까 맨날 택시 타고, 배고프니까 맨날 여자애들 만나서 밥 사주고 놓고, Q. 유혹이 없어? 네. Q. 지금은 남친이 다 해줘? 네. Q. 결혼할거야? 아니요. 그러면 결혼은 직장 있고 멀쩡한 사람이라 해야죠. 제일 괜찮은 남자를 잡아야죠. 결혼하기에 멀쩡한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장기간 연애하고 싶은 남자.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달라요. Q. 어떤 게 달라? 먼저 저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욕도 안하고, 그냥 자기 생각보다 제 생각을 해줘요. Q. 청소년인지 알면서 사귀는 거야? 네. 원래 자기 18살이라고 속였어요. 아니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게, 사귀기 전에 17살이라고 말을 했죠. 왜 그랬냐고 그러기에 17살이라고 그러면 오빠가 안 받을까봐 그랬단니까. 오빠도 따지고 보면 21살이라고,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Q. 가족들은 몰라? 언니밖에 몰라요. 친 언니는 뭐라고 안 해요.

18. 중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Q. 너는 그만 돈 이유는 뭐야? 원래 할 마음이 없었고 저는 돈만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20. 한 번 할 때 30분 한 시간 동안 10만원 이렇게 버니까. 하루에 30분 한 시간만 투자해도 월 3000이잖아요. 진짜 큰돈이잖아요. 큰돈이니까 더 벌고 싶고.

21. 돈을 쉽게 버니까. 저들 몸 생각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데리고 가요. 진료 받고 진짜 잘해줬어요. 그 여자애들한테 저 방 가기 전에 연락 많이 왔어요. Q. 왜? 성매매 알선 다시키면 안되냐고. Q. 뭘 잘해줬는데? 성매매 알선하면서 병원 데려다주고 밥 먹었나 밥 안 먹었으면 바로 사주고, 아니면 회식하러 가져. 또 애들 놀라가고 싶으면 놀러 갔다 와라 그러고 존나 잘해줬어요. 그랬어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 Q. 지금은 연락 안 와? 네. 지금은 안 오죠. 폰을 바꿔서. Q. 천안에 아는 사람 좀 있겠네? 많아요.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성인들이랑 일반 애들 다 안다고요. 좀 놀던 애들, 이름 좀 날리던 애들.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걸 계속 하면 막 성욕구가 그렇고, 한 번 그러면 계속 계속 생각나고 하고 싶고 그렇대요. 근데 그렇기도 한데 그거 하면 돈도 받고 그러니까 좋거나 봐요.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없고, 막 성병 걸린 애도 있고요. 그거 하다가 신고당해서 소년원 간 애도 있어요. Q. 지금 소년원? 소년원 가있어요. Q. 어떻게 하다가 신고 당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인가 선배들이 막 신고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Q. 조건 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소문도 막 났었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그래서 잡혀갔어요. Q. 남자애들 중에 업소 가거나 그런 애들은? 그런 데 가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Q.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성관계 한다고 말을 해요? 말을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말을 안 하고 갔다 와서 나 거기 갔다 왔다 하고 말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Q. 여기에 그런 데가 많아요? 천안역에 많아요. Q. 그런 친구들은 얼마 정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5만원인가. 막 다 다르대요. 근데 거의 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10.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잡혀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Q. 어떻게 하다 잡혀있게 된 거예요? 알하러 들어갔는데 그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업소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가 기간 끝나서, 할 거 못 돼 보여요. 솔직히.

□ 기타

11. Q. 친구가 조건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개는 계속하고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 친구 다른 친구가 말해줬어요.

14. 안 걸렸어도 안 하고 싶었을 걸요. 그때만 급했을 뿐이지. 지금은 급하고 너무 차용적이고 아니라서. Q.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아? 알겠죠. 당연히. 전 미성년자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Q.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무 말도 안하시던데, 말을 아끼시던데. Q.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어? 원래 용돈을 잘 안 받았어요. Q. 부모님과 사이가 어때? 크게 친하진 않은 거 같아요. 뭔가 약간 좀 어색한.

19. 좋아해서.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죠. 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24. 못 끊는 건 중독이죠. 이제. 저야 잘 모르지만 중독 같은 게 있겠죠.

25. Q.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적성에 맞나 보죠.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0>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질문: 채팅 어플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건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 Q. 조건만남 한 친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채팅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을 했나요? '입사, 질사, 후장 빼고 다 가능. 한 번하는데, 1회 15' 라고 글을 올려요. 만약 대화가 들어오잖

아요. 그럼 시작해요. 개네가. 하기 말하기 전에 개네 남자애가 조건이라면 그 남자가 보내면 그 여자가 그렇게 입사, 질사, 후장 빼고 다 가능하고 보내요. 지네끼리 다 통해졌으면 다 만나는 거예요.

채팅 어플 줄독에서. 핸드폰으로 만났는데, 2013년이니까 겨울 때였으니까 며칠 안 됐는데 그 때도 핸드폰으로 했었어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얼굴 못 보고 개가 가서 하다가 돈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9. Q. 조건만남 한 친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채팅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을 했나요? 낯선 사람. 페이스북으로는 별로.

11. Q. 조건만남 한 친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채팅 어플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을 했나요? 없대요.

12. 줄독에 들어가요. 그러면 만날 사람하고 줄독에 올려요. 뭐라고 해야 되지.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냐? 올리면 게시판처럼 올라가요. 제가 쓴 글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남자들이 그 말을 보고 쪽지를 보내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나서 하게 되요. Q. 뭐라고? 뭐 시간당 얼마 소개는 나이 뭐 키. 그런 거 물어보죠. Q. 그럼 조건은? 남자는 돈을 준다 그리고 그러면 남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Q. 남자가 원하는 건 대체로 뭐야? 거의 다 몸을 대주는 거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식제를 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애인대행 해주면 노래방 가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돈 준다는 사람도 있고. Q. 조건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틱톡 연락처를 주고받고 틱톡은 아시죠? 카톡 아이디처럼 틱톡도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틱톡 아이디 주고받고 만나요. 만나서 만나서 놀거나. Q. 예를 들면 아이디가 뭐? 자기 가입할 때 만든 아이디. 친구추가에 뜨면 한영박에 안 뜨서 대화 걸면 '누구누구세요' 맞다고 하면 대화를 해서 '어디로 갈까요' 하면 목적지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만나요. Q. 거기 가서 만나면 휴대폰 번호는 안 알려줘? 휴대폰 번호는 안 알려줘요. 휴대폰 번호는 다음에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 협박전화도 올 수 있는 점이라서 안 해요. Q. 아이디는 여러 개? 한 아이디로 계속 써요. 줄독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틱톡에서? 알려주는? 줄독은 얘기하다보면 성적인 단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줄독이 바로 튕겨서 튕겨지니까 대화가 다 삭제돼요. 그래서 틱톡으로 넘어가요. Q.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애인처럼 하고 나면 으면서 얘기하면서 놀거나 해요. Q. 놀고 끝날 때 되면 한 시간 다 채워? 네. Q. 더 있자고 해? 더 있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시간에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Q. 돈을 한 시간 해주고 한 시간 더할 때도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당 5만원이니까 두 시간하면 10만원 받고.

13. 일단 대화 신청이 와요. 그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ㅈ'하냐고 물어봐요. 한다고 하면 스펙이랑 가격을 알려달라고 해요. 키, 나이, 몸무게 그럼 다 말하고 거짓말도 하죠. 나이 속이고 키 속이고 몸무게 속이고 그래서 얘기하다 저는 얼굴 사진 보여주고 몸매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하기 싫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카톡 아이디 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장난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온다고 해서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전혀 안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세 네 번. 그 다음에 돈 받고 돈 안주면 협박하고. Q.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어? 신고하려고 했는데 말았어요. 제가 가솔 신고 당했으니까. Q. 네가 신고하는 거야? 제가 신고 하죠. 임마가 가솔신고를 했으니까. 이 남자를 신고할 수 없잖아요. 신고 당했으니까. 그래서 신고하면 나도 잡히겠구나 해서 짜증나서 무조건 패고 왔었어요. Q. 다시 연락 안 해요? 단골은 연락하는데 한 다섯 번 이상 한 사람들. Q. 상대방은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에서 후반. 직장인. Q.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좀 하다가 청소년이라고 말해요. Q.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나요? 네. 아. 지금은 폰 바꿔서 연락이 다 끊겼어요. Q. 애인대행은?

많이 해봤죠. 차려리. 근데 애인 대행은 한 시간에 오 만원 10만원이니까. 관찰긴 관찰아요. 데이트 하고 싶을 때 하나. Q. 언제? 중 2때 그 때 밥도 같이 먹고, 밥이랑 영화랑 웃도 사주고 그래요. 데이트한다고. 한 시간에 5 만원이면 관찰은 거 같아요. Q. 개네들이 그냥 안아주고 하다보면 단계를 넘지 않나? 스킨십 허용이 있고, 스킨십 범위를 넘으면 돈 받고. 주로 범위 안 넘었어요. 어쩌다 술 먹게 되면 범위 넘어서 돈 받고. 저 매너 없으면 안 만나요.

14. 그냥 만나서 줄독으로 채팅을 하고 거기서 바로 만났고. Q. 주고받는 대화가 뭐지? 만날 사람? 본인이 날린 거야? 네. Q. 그랬더니 그 쪽에서? 얼마 드리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디서 만날 건지 얘기하고 그러고 만나서 바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Q. 모텔에서 하고 나와서 돈은 바로 안 받았어? Q. 아뇨 바로 받았죠. 경찰한테 바로 걸리니까 돈을 다 주라는 거예요. 경찰이 다 압수? 그 사람이 이런 걸 용돈으로 줬다 차비로 줬다 이러는 거예요. 돈 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돈 줬죠. Q. 경찰한테 15만원요? 네. Q. 그 남자도 가서 조사를 받은 거야? 네. Q. 경찰서 처음 가봤어? 네. Q. 어땠어? 싫었어요. 거기 있는 자체가. Q. 경찰들의 태도는? 되게 안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고소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이제 신분 보호를 안 해주는 거 같고. Q.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주소를 말하라 그리고, 아빠 이름이나 집주소를 다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여기 저 사람은 이쪽에 있는데 충분히 다 들리는데 근데 다 말하라고 그리고, 아버지 나이 몇 살이냐고 말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이가 몇 이란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Q.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냥 제 신분 보호를 안 해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그 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지 저는 충분히 그 사람처럼 떨어져서 조사를 받다가 제가 그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 말했는데 또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은 못하잖아요. Q. 왜 다시 말하라고 한 거야?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Q. 기분 나빴겠네? 네.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랑 만나려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꽃병 그런 걸로 보는 거 같아요. 내가 뭘 요구하고 내가 나쁜 쪽으로. 둘 다 잘못된 건데. 자존심이 좀 상했죠. 경찰도 좀 잘못된 게 경찰 한명이 그 남자한테 이런 말은 안 적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여자 판사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Q. 경찰이 그 남자한테? 네.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Q. 그 남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견 적지 말라고? 네. Q. 예를 들어 어떤 내용? 그건 잘 모르고, 경찰이 했던 얘기가. Q. 그럼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그 남자를 보호한 거네? 네. 그 남자가 이런 적이 처음이고, 그 사람이 자기 일하다가 자기 일하는 직원 두 명이랑 같이 했는데 장난삼아 온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다가 자기가 졌고 어쩔 수 없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웃기긴 해요. 직원 두 명도 분명히 저를 봤대요. 진짜 나쁜 상황이었으면 이게 큰일 날수도 있었는데, 경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 같아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한 명이 차 태우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옆에서는 자기들은 난 별로 안 오겠다 그랬는데 가위바위보 저서 왔다고 하나. 그걸 경찰이 믿었죠.

15. Q. 조건만남 상대방을 만난 사이트는? 그건 모르겠어요. 친구가 들어가서 구해준 거라서. Q. 상대 남자도 친구가 다 구해준 거야? 한번 했을 때요. 네. 근데 친구랑 같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가서 개 따로 저 따로. 그러니까 개 따로 구하고 저 따로 구하고. Q.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네. Q. 다시 연락 안 왔어? 핸드폰 비웠어요. 번호. Q. 왜? 무서워서? 네. 연락 올까봐. Q. 그 친구는 언제까지 만나고 헤어졌어? 그 때 그 일 끝나고 나서 개 집 보내고 전 그냥 갔어요.

16. Q. 휴대폰 유심칩 빼고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애인을 구한다는 걸 본 적 있어? 아니요. Q. 그럼 조건만남 할 때, 신분 노출되잖아. 어떻게 해? 처음에 졸푼을 하고, 원래 졸푼을 하면 틱톡을 한대요. 졸푼에서 틱톡으로 옮긴대요. 틱톡 아이디를 주고받고, 틱톡을 깔았죠. 그리고 대화하다가 아 애 만날 거 같다 싶으면 틱톡 아이디를 알려줘요. 그러면 틱톡 친구가 와요. 그러면 틱톡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틱톡에서 만나면 대화를 주고받고 어디서 만나자. 장소 정하고 그러고 하고, 그러고 나와서 바이바이 하고. Q. 다시 연락 온 사람 없었어? 네. 그런 사람 있었어요. 두 번 만난 적 있어요. 똑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여자 친구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인가. 여자 친구 있었어요. 여자 친구랑 부모님이랑 시골 가기로 해놓고 절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하는 데 전화오고 그랬었어요. 빨리 오라고. Q. 그리고 너한테 시귀자는 연락 안 왔어? 네. 그러고 안 왔어요. Q. 근데 조건하는 사람이 거기에 많은 거 같아? 네. 엄청 많아요. Q. 얼마나 많은 거 같아? 그냥 세 명 중에 두 명 꼴로 하는 거 같아요. Q. 그러면 그 어플을 어떻게 해? 어플 깔아서 어플 숨기는 것도 있대요. 어플을 숨긴대요. 만약 졸푼이 있으면 어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플을 숨길 수가 있대요. 숨겨놓을 수가 있대요. 제 친구가 숨겨놓고 그랬대요. Q. 왜 어플을 숨겨? 남자 친구가 볼까봐. 숨겨놓고 40살 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거의 다 아니고. Q. 남자 친구가 있는데도 조건을 하는 거야? 몰래. Q. 그 친구 아직도 조건 해? 지금은 가끔 해요. 옛날에는 거의. Q. 그 친구는 여기 있어? 아니요. 개가 저 때문에 알바 한 건데. 그냥 근데 지금은 고깃집에서 알바 하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해요. 집에 들어갔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하고. Q.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 아니면 혼자 살았어? 그 때는 그냥 나와 살았어요. Q. 언제 기출했어? 기출이라기보다는 연락은 다 했었어요. Q. 나와서 혼자 살았어? 아는 친구랑 살다가. Q. 학교 안 다녔어? 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고 1학년 1학기 때. Q. 왜 자퇴했어? 거기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보도를 알게 됐는데. 보도를 하니깐 학교가 방화동이어서 나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퇴학처리하면 학교를 복학 못하니깐 자퇴해준다고 그래서 자퇴했어요.

17.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졸푼 틱톡 아이디가 떠 있어요. 개네들이 그걸 보고 틱톡을 보내요. 그 언니가 신체 사이즈나 키 같은 거 썩 다 말해요. 몇 시간에 얼마 얼마 그런 거를. 사진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제 사진을 보내요. 지역 어디냐고 얘기하다가 역 앞으로 오라고 해요. 건대역 앞이나. Q. 어떻게 알아 봐? 인상착의 그리고 개는 사진 봐서 제 얼굴 알잖아요. Q. 그래서 둘이 들어가는 거야? 네. Q. 안 무서웠어? 처음엔 무서웠죠. 얼굴 딱 보면. 딱 튀기 전까지는 멀쩡해요. 도망가기 전까지는 멀쩡해요. 돈 딱 받고 지갑 채우고 씻으러 가면 도망을 가야되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지금 가야되는데. 그거 하다가. 튀었어요. Q. 그 남자 안 따라 왔어? 씻고 옷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그러니깐 개네들이 나머지 두 명은 처음 해보는 애들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운 좋게 그런 애들만 만난 거죠. 첫 번째 남자는 아저씨니까 될 수 있었는데 처음이니깐. 변수가 생긴 거 같아요. 난 문을 닫고 씻을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씻어서. 근데 변수에 대한 비상책을 생각해 놓은 거죠. 머릿속에. 그냥 여기가 나가는 문 여기가

신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들어요. 신발을 들어요. 문을 열어요. 나가요. 개가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나는 옷 다 입은 상태고 나가서 신발만 신으면 되는데. 그 사람 바지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못 나와요. 개네 가끔 나왔고 옷 입는 데 시간 있으니까 멀리 가있어요. Q. 첫 번째 아저씨는 무서워서 못 된 거야? 그때는 처음이니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못하겠다고 돈만 주고 나왔어요. Q. 안 때려? 네.

18. 이렇게 그 랜덤채팅에 들어가요. 그러면 졸푼에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떠요. 서울 경기 막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 1,2,3,4,5 이렇게 방이 있어요. 사람이 50명이 꼭 차거든요. 최대 50명이거든요. 42명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요. 제가 보내는 것도 있고 '자'거나 지금 만나서 할 분 막 이라고 거기에 오면 거기서 가격 올리고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카톡 있으면 얘기하다가 만나서 개랑 나간 적도 있고 저가 같이 나갈 때도 있던 말이에요. 그냥 개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서 같이 나간 적도 있고. 저는 그냥 밥 먹고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카톡 기다리라고 사먹으라고 깔아 놓은 거를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답도 안 던지고 그냥 혼자 학교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놀이터에서 혼자 기다리기도 하고. Q. 그 친구는 모텔에서 하고 돈 만 받고 오는 거야? 네. Q. 아프다고 안 해? 개가 원래 힘드네 내색을 안 해요.

21. 연락이 온다고요. 대포폰으로 보내 달라. 기다려라. 대화창으로 대화 초대 했으니깐 들어와라. 내가 사진 다 보여준다. 40명 사진 다 안 보여줘요. 7명 7명씩 딱 세 번 만 보여줘요. 예쁜 애들. 3번 할게요. 어디에서 만나자. 거기 업소 그 앞으로 와라. 거기가 거래처다 우린 거기서 밖에 안한다. 그럼 거기가 알았다 그러고 가라하고 연락주고 거의 끝날 때 좀 시간 맞춰서. Q. 얼마 정도 걸려? 한 30~40분. 거의 나올 때 좀 대기 빨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러 가야죠. Q.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가능해? 가능하죠.

□ 접촉 경험 없음

1.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0. 접촉 경험 없음.
19.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3.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5.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I> 조건만남을 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

질문: 조건만남을 하게 된 후,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신체적 변화만 있음

3.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임신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다 변화 없던데. 애들.
Q. 본인들은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언니들이. 개가 처음에 가출 했대요. 언니들이 시켰는데. 아는 언니가 애는 원래 조건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깐 원래 몰랐는데 어떻게 지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조건 하는 애 인줄 알았으니깐. 애가 돈 벌어오네 그리고 그 돈은 언니들이 쓰고 이러면서 만원 주고, 싫은데도 했어요. 개는 학교 안다니면서 자주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잡혔는데 맞았어요. Q. 도망쳐서 어떻게 빠져나왔대? 애가 아예 빠져나왔으니깐 임신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애 임신해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배가 아파서 하기 싫은데. 하고서 그냥 나 집 갈게 했는데. 언니들 알겠다고 집에는 잘 보내줘요. 근데 자기들 돈 필요할 때만 계속 부르고 그러니깐. 다했으면 가라 이거예요. 집으로 보내주고 연락을 한동안 안하고 그러다가 임신 알게 됐으니깐 언니들이 좀 착해요. 자들이 나이 좀 먹었으니깐. 21살. 그래도 나이 좀 먹었으니깐 이제 하지 말라. 애기 낳고 잘 했으니깐 언니들이 선물 그런 거 애기 신발 사준다고 해가지고. Q. 그 포주(언니)들은 뭐해요? 지금 핸드폰 가게에서 일해요. 진짜 철없었어요. Q. 그 친구는 조건만남 몇 번이나 했어요? 진짜 많이 했죠. 개도 못해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Q. 그걸 벌어서 언니들 다 준거야? 네. 자기가 쫓겨 놓은 돈도 있고 아님 이제 Q. 천안에서? 네. Q. 학교 안다니면서? 네. 중퇴는 아니고 중학교 졸업했죠. 중학교 때부터 한 거죠.

9.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삶이 되게 많이 찼 거 같아요. 애가. 그러가지고 상상임신 해서 학교 자퇴했어요. 여기 학교였는데.

24.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Q. 임신이나 성병 걸린 사람 있어요? 임신한 애 있었어요. 성병 걸린 애도 있었어요. 성병 소문은 돌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 정신적 변화만 있음

17. 아저씨나 삼촌뻘들 보면 좀 다 그럴 거 같다는 생각. Q. 남자에 대해서? 네.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하고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났어요? 막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점점 막 엄마한테 막 버릇없어지고 반항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어요.

□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음

10. Q. 조건만남을 한 친구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해줄래요? 많이 맞았대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빠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근데 개가 엄청 착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성격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솔직히 친구 입장에서 불쌍하죠. 개가 막 안 좋게 보인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친구니깐 어쨌든 그냥 불쌍했어요.

13. 일단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남자라는 인식 자체에서도 있고, 자책을 많이 해요. 심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성격 많이 변하고, 저 원래 옛날에는 착했었어요. 어쩌다보니깐 선배들 만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다보니깐 해서 성격이 돌았죠. 완전 정반대 됐죠. 소심하던 애가 완전 성격이 나쁜 애로 변했어요. 몸 변화는 이게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밥도 규칙적으로 안 먹다보니깐 살도 더 찌고. Q. 임신이나 낙태경험은? 엄마는 모르는데. 임신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애매한 게 임신했다고 해야 되나. 두 번 정도. 낙태도 한 적이. Q. 낙태를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야? 네. Q.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말 했어? 심터 선생님이나 언니. 말하는 언니. 같이 병원 갔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임신했었어요.

16. 자다가 여자 친구랑 자고 있는데 벌떡벌떡 흔자 깬거요. 앞에 검정색 남자가 보이고 딱 얼굴이 보이진 않는데 딱 남자였어요. 옆에 친구 분명 여자 친구데.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봤는데 여자예요. 얼굴 가까이 가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 내 친구 맞구나 하고 다시 자고. Q. 몸에는 이상 없었어? 그냥 질염 걸렸어요. Q. 임신 같은 건? 임신은 안했어요. Q. 콘돔은? 콘돔은 썼었어요. 처음엔 안 썼어요. 모르고. 콘돔 끼는 거 그런 거 모르고. 안 까다가 친구가 왜 안 끼고 했어 그래서 아 맞다 하고 콘돔 끼고. 그 뒤로는. Q. 안 썼을 때 질염이 생긴 거야? 누구 땀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다섯 번 정도 했을 때 연달아서 맨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걸린 거 같아요. Q.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질염이래요. 그냥 치료 받고 지금은 괜찮아요.

□ 없음

1.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진 않죠. 한번 했으니깐 그 맛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하게 되니까. Q. 언제부터 했어? 처음 간 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친구 생일 날 술 마시고 어떻게 말이 나와 가지고 술김에 그냥 가지고 말해서 갔어요.

12. 아니요. 없어요. Q. 남자에 대한 생각 바뀌거나? 남자들은 다 이거 하나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바뀌진 않았어요. Q. 남자들의 이런 생각? 남자들은 다 막 애인대행만 구하하 하는 생각은 들어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14. 그냥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Q. 몸에 이상은 없어? 그런 건 없었어요.

15.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기분은 나빴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원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아무 거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18.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Q. 성병이나 임신은? 없었어요. Q. 피곤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냥 막 나갔다가 오면 '뭐 할래. 뭐 먹을래' 이라고 술 먹을래 이라고 돈 생겼으니깐. Q. 그 때 당시 몇 살이었어? 바로 1년 전이니깐. 14살. 중1.

21.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25. Q. 그 친구가 조건만남을 하고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건 못 들었어요. Q. 업소에 가본 적 있어요? 있죠. Q. 성관계 하러? 네. Q. 천안 근처에 있는? 네. Q. 얼마 주고 해요? 다 다르죠. 천안은 3만원이고, 평택은 10만원이고, 그리고 다 달라요. 안미방 같은 데는 5만원이고. Q. 몇 회 정도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Q. 최근에도 했어요? 최근에는 안 했어요. Q. 언제 그렇게 많이 갔어요? 고 2, 고 1? Q. 상대 업소 여자 나이는 보통? 25, 26. Q. 왜 가게 됐어요? 새롭잖아요. Q. 성적인 욕구 때문이에요?

네. Q. 그럼 업소 그런 방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네. Q. 지금은 왜 안 가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돈이 아까워요. 그렇게 막 업소에 갔다 그랬잖아요. Q. 그걸 그만두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건 아니예요? 그렇게 막 많이 가고 싶은데 그런 건 없는데 가끔 한 번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Q. 그런데 가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9.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2>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경험

질문: 조건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9. Q. 조건만남을 한 친구가 조건만남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랬다. 천안 대표였는데 같이 가달라고 네가 애초부터 그런 일 안했으면 왜 내가 너를 감싸줘야 되냐고 그랬어요.

10. Q. 조건만남을 한 친구가 조건만남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친구들이 개 한 번 찾으러 갔을 거예요. 집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개 붙잡혀있는 데로 갔나 못 빠져서 부모님 불러와서 데려왔대요.

13. 쉼터 선생님. 위기센터 선생님. 그 뭐지 카페 보니까 뭐지. 청소년 보호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연락했더니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 아냐 해서 캠프를 한다고 했더니 경기도 지금 연락하는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도움이 됐어요. 일단 선생님이라 약속했으니까 안 하고 또 긍정적이게 하고. Q. 다른 사람 도움은 받아본 적 없어요? 네. 안 받았어요. 부모님은 그냥 가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Q. 어떻게 하다 잡혔어? 제가 그 때 뭐지 전 남자친구한테 부산에 갔었어요. 전 남자 빛이 2억이래요. 같이 갔어요. 그 남자 22살이요 거기 알고 보니깐 룸메이트 언니가 있는데 조건을 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하라고. Q. 그 남자와 여자는 무슨 사이? 여친 남친. 지금 결혼했어요. 저 이용한거죠. 저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빛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조건 돌리긴 했는데, 안 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번은 튕겨나갔고. 제가 싫다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Q. 안한다니까 뭐라고 안 해? 거짓말로 했죠. 이 사람 도망갔다고. 그러다 또 두 번째는 이 언니가 웃긴 게 뭐라 해야 되지 안한다는 거를 남자한테 한다고 속인 거예요. 히터면 성폭행 당할뻔해가지고. 그러니까 뺏쳐가지고 막 언니한테 언니 장난하시냐고 했더니 언니가 더 뺏친 거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될 것이지 인하게 되면 되냐. 그냥 거기 가서 하고 오면 되지 어어어. 막 집 가서 맛을 뺏혔고 그 사람은 22살. 저희 전 남친이 커버해줘가지고 끝났는데 새벽에 싸웠어요. 계속 싸우고. 그 언니랑. 같이 자고. 또 한 명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Q. 사건 걸로 알고 있어? 그 때 사귀었는지 아셨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 때 전 남친이 그랬어요. 여친이랑 깨졌다고 오라고. 알고 보니깐 안 깨졌고 근데 결국 애까지 낳았어요. 그 여자랑 그 사람이라. Q. 아직도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은 자기들끼리 갖고? 너한테 안주고 거기서 3월이나 4월 있었는데 어디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간다고 하고 경찰서 갔어요. 엄마가 부산까지 찾으러왔어요. 엄마가 다시는 가출하지말래요. 그 때가 중3 초반.

16. 네. 그래서 도움 받고 쉼터 온 거예요. Q. 캠프는 어떻게 가게 됐어? 캠프는 제 친구가 거기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그래서 그 때 제가 중간에 있다가 수원으로 넘어갔을 때였는데. 검정고시는 떨어졌고, 졸업장은 애들보다 뒤처지기 싫은데 일 그만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쉼터 들어 갈 생각은 없었는데. Q. 성장캠프는 갔어? 갔어요. 청소년 쉼터 연계했었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나와서 또 보도하다가 다시 여기. 그래서 그냥 가서 캠프하고 다시 며칠 하다가 계속 좋은 쉼터 들어가면 몸도 힘들고 그래서 맨날 맨날 술 먹기도 몸도 힘들고 해서. Q. 도움이 됐어? 네. Q. 어떻게? 그냥 상담 받고 미술치료 받고. Q. 쉼터 온지 1월 달에? 언제 들어왔어? 아니요. 여기 4월 달인가. Q. 여긴 주로 뭐해줘? 재워주고 먹여주고. Q. 규율이 세진 않아? 네. 성인 쉼터라서 청소년 쉼터는 통금이 9시고, 핸드폰 11시에 걷고 그랬대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널널해요. 제가 생각해도. Q. 여긴 성인들도 많아? 네. 열 몇 명 있는 거 같은데. Q. 대부분 청소년은 없고, 성인이야? 네. 3~40대도 있어요.

□ 없음

1. 아니요.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12. 아니요. 없어요. Q. 근데 위기센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엑시트 받자 같은 데 갔는데요. 거기 가서 놀다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 받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만나다가 보니깐 막 제가 자주 만나면 쌓는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만나고 좀 많이 만났어요. 10번 넘게 만났어요. Q. 선생님들이 잘해줘? 도움이 돼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세요. 잘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데, 병원도 그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라.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Q. 왜 병원에 갔어? 눈도 아프고,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해서. Q. 근데 선생님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음. 같이 가서 돈 내주고 하는 거. Q. 그러면 산부인과 간 거야? 가서 혹은? 아니요. 혹은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치료받고 하기로 했어요. Q. 그러면 조건만남 한 친구들 중에 주변에

얘기해줄만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14. 아니요. 이제 이거 걸리고 나서 이제 도움 청할 일도 없었고
Q. 그 때가 언제였어요? 3월 달에. 그게 터지고 그러고 캠프를
간 거죠. Q. 캠프를 언제 갔어요? 캠프가 4월 며칠. Q. 봉사활동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보호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종이를 주더라고요. 등록 사회봉사 명령서? Q.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야? 정해진 데로 가야되는 거야?
보호관찰소인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선생
님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Q. 선생님하고
상담 받았어? 캠프 가기 전에 선생님 만나서 얘기 했었어요.

15. 아니요. Q. 캠프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아? 5일 일주일?
Q. 도움이 됐어? 네. 거기서 막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 주고 아라잡아
요. 재미있고 색다르고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런 거. Q.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여기로 온 거야? 네. Q. 부모님도 여기 온 거 알아?
네. Q. 왜 여기 왔어? 엄마가 허락했어요. Q. 여기 있는 게 낫겠대?
네.

17. 아니요. 조건사기 이미 그거 싱그러나 쌤한테 말했어요. 그거
도움 할 필요 없었는데. Q.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18. 벗어나려고 저 그냥 마음먹었는데.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나간다 이려고. Q. 그리고 안 나갔어? 네. Q. 너 캠프 가봤다고
그랬잖아. 도움이 좀 됐어? 경찰이 가라고 한 것도 있고 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집에 있기 싫고 재미없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학교만 가고 진짜 재미있긴 재미있었어요. 완전 뭐 캠프에서 나가서
언니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도 잘
맞고 교육하면 성매매하지 말아야한다고 그리고 솔직히 좋았는데.
Q. 갔다 오고 나서 몇 번 상담했어? 두 번. 연락 많이 했을 걸요.

나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에서 벗어나려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요. Q.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속 해요.

25. 없어요.

□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3.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9.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4.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3>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질문: 조건만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단속 강화

1. 단속인데, 듣기로는 단속을 다 막아놨다고. 어차피 요즘에는
경찰도 많이 한다고. 업소에서 들었던 거 같아요. 자기들도 할 말
없으니까 안 하는데도 안 잡는 거예요.

2. 잘 모르겠어요. 법두면 안 될 거 같아요. 막으려면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9세 미만. 성인인증을 강화해야할 거 같아요.
Q. 웹하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증. 지금 웹 하드 사이트가
인증 안 해도 되거든요. 거의 웬만한 건 그래서 보통 부모님 주민번호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 같아요. 인증을 강화해야할
거 같아요. Q. 랜덤채팅 금지하는 방법?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는데.
네. 좀 위험한 거 같아요. 남자들의 목적이 거의 여자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만나게 돼서 강제로
성관계하게 되다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3. 채팅을 일단 없애고, 모델 같은데서 신분증 검사하는 게 좋을
텐데 남자여자 같이 들어가면. 좀 어리게 생겼으면 검사하는데 좀
그래도 막 하면 감사를 아예 안 해요. 요즘 애들끼리 가는데도 안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21. 그냥 애초에 조건만남 이런 거 없었으면. 조건만남 사이트나
그런 거 사이트나 동호회라고 있어요. 불법 동호회라고. 경찰들도

모르는 뒤에서 하는 그런 거 있는 데. 그런 거 없었으면 애초에
안 생겼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30. 채팅어플을 없애도 불법으로 만들 것 같아요. 성인인증을
강화하면 되는데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이 다 알려줘요. '이거 성인인증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괜찮다고. 어차피 엄마, 아빠 주민번호 다 안다고. 그것으로
하면 된다고. 사이트를 엄청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가입조건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청소년들이 가입 못하게. Q. 그 친구를 봤을
때. 조건을 한 후에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 많이 소심해진 것 같아요.
저랑 엄청 친했어요. 그런데 저랑 멀어졌어요. 그리고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해요. 핸드폰만 하고 사람을 잘 못 쳐다봐요. 원래는 엄청
밝았는데.

□ 랜덤채팅 제거

16. 그냥 못하게 없애버려야죠. Q. 그런 어플 같은 거를? 네.
하나하나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18. 랜덤채팅 없애버리고요. 일단. 근데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든 구해서.

19. 그걸 없애야죠. 채팅 어플을.
23. 스마트폰 랜덤채팅 그런 거 개발자들이 그런 걸 만들면 안돼요.
26. 일단 인터넷 사이트같은거부터 다 폐쇄시켜야겠죠. 그리고 전단지, 찌라시 같은 거 차에 꽂아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야겠죠.
28. 어플을 다 없애야 돼요. 본인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29. 랜덤채팅을 없애요. Q. 그럼 성인들은 어떻게 해?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결혼해서 하든가. 성인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서 하면 되죠.

□ 없음

4. 없는 거 같아요.
6. 없어요. 개네들은 없어요. 답 없어요.
10. 솔직히 친구 입장에서는 없는 거 같아요. 해줄 게 말 밖에 없잖아요. 학생이라 돈을 대신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없어서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지 돈 없다는데 안하겠어요?
13. 캠프 도움 됐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인식 자체가 틀리면 해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성격이 아예 되게 못돼먹은 애들은 해봤자 소용없는 거 같아요. Q. 어떻게 바뀔까? 솔직히 지금으로선 없는 거 같아요. 내버려두는 것 까지는 아니고 채팅하는 애들은 자네들이 뭐해줄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쌤타기도 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쌤타기도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규칙도 되게 심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는 게 좋다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단기간도 많고 장기간도 있으니까 안 맞는 거 같아요. 자유분방한 애들이 갑자기 심터 들어가면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15. 음. 대책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왜? 그게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안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끊지 않는 이상은. Q. 청소년 알바 하게 해주면 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돈을 벌잖아요. 한 번 하면 그 당시에 돈이 생기는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하니까. 그건 또 다를 거 같아요. Q.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간 아니고 며칠 딱딱하고 돈 주면 괜찮겠지? 네. 그거는.
17. 방법 같은 게 없는 거 같아요. Q. 그냥 냅뒀야 해?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수업을 하고 해도 계속 할 애들은 돈 필요해서 계속 하게 되어있으니까.
20. 대책은 없는 거 같아요. Q. 그럼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뭐 막고는 있으니까 막는 대로 막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Q.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NS도 많고 새로 생겨나는 어플도 많은데, 그걸 경찰이 다 알고 어떻게 다 막아요.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 많잖아요. 6~7천만 명인가 그렇대요. 거기서 경찰이 천만 명 되려나 안 되려나 그 사람들이 나머지를 감시해야 되고 그러는데 힘들잖아요. Q.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많잖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이대로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애버릴 수도 없고.

22. 솔직히 그런 거는 할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24. 없을 거 같아요. 뽕촌도 결국엔 합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은 진짜 다 잡았죠. 몇 십 년 전부터 있었을 거 같아요. 어떤 쌤도 그랬는데, 남자들은 다 어쩔 수 없다고. 저희 학교 옛날 쌤이 저 학교 처음 일주일 다니고 수업 듣는데, 소나무 뒤에서 섹스하다 걸리면 죽는다고.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대요. 스릴이 넘친대요. Q. 아동 많이 보죠? 아동 많이 안 봐요. 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25.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안됐죠. 원래 쉽게 돈을 버는 애들은 어렵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됐죠. Q. 대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자기 의지 아니면 없죠.

27. 없는 것 같아요.

□ 기타

5. 글썄요.
7.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8. 생각해본 적 없어요.
9. 채팅 그런 걸 나이순에 맞게. 막 10대 누르면 10대만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1.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안할 거 같아요.
12. 청소년도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부모님이 용돈만 잘 준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겠죠. Q. 너도 알바 할 수 있잖아? 알바 못하는데, 여자가 나이가 안 돼서 못하대요. Q. 부모님 동의? 그냥 부모님 동의라는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안 된대요. Q. 알바하려고 어디 가봤는데? 당구장도 가보고 서빙도 가보고 편의점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속 애인대행이나 했어요. Q. 그럼 지금 만나는 그 아저씨는 돈 안 받아? 네. 안 받아요. 제가 좋아해서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Q. 일주일에 몇 번? 별로 안 만나요. 사장이자 보니까 많이 바빠서. Q. 네가 만나자고 해 아님 누가 만나자고 해? 그냥 둘 다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고 오빠 사장이라서 자리를 못 비우니까 제가 가요. Q. 이 근처야 멀어? 안산이에요.
14. 학생들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일자리는 뭐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불법인 거 밖에 없죠.

<표 I-54>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

질문: 자발적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랜덤채팅 이용금지, 성인 및 본인확인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방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1.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쉬운 거 같아요. 성인 인증이. 그냥 주민등록번호 치면 다 들어가버리니까.

부모님이나 아는 번호로. Q. 랜덤채팅 이용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어차피 잘 안하거든요.

3. 채팅 없애고 단속 심하게 하고, 성인인증 강화하고, 네. 아니 학생 아니라고 계속 우겼는데 개는 동의하에 했는데, 근데 만약

경찰한테 걸려봐요. 그 남자 쪽에서만 불리하잖아요. 학생인지 아닌지 꾸미면 모르잖아요.

8. 괜찮은 거 같아요. Q. 조근조근 하는 애들이 줄어들 거 같아요? 네.

9.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성인 인증하잖아요. 그러면 언니나 아빠 꺼 오빠 거 그런 거로 하면 좀 그럴 거 같은데. 나이도 먹고 하나만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16. Q. 필요한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17. 그렇게 하면 안하는 애들까지 짜증나죠. 강화하면 귀찮잖아요. 지네 이름으로 하면 신고를 하면 걸리잖아요.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Q. 랜덤채팅 금지하면 또 만 데로 하겠지? 옛날에 버디버디가 없어졌잖아요.

19. 좋죠. Q. 다 해야 돼? 네. Q. 성인인증 아빠 걸로 해서 왔다고 그랬잖아.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성인 인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성인인증도 해야 되는데 휴대폰 인증을 해야죠. 아버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죠. Q. 그러면 난 이제 못 보잖아? 안 보면 되죠. Q. 페이스북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뭘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Q.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저요. 아이디 하나 만들고 아한 동영상 올리고 그 아한 동영상을 올리면 거기서 아이디를 완전히 영구정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가지고 동영상 올린 다음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공유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이디 정지 먹으면 아이디 또 새로 만들어서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어쩔 거예요. Q.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 처벌해 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몇 백 몇 천 내고 그거 밖에 안 하죠. Q. 주변에 그러는 사람 있어? 아니요. 제 주변에는 없죠. Q. 봤어? 아니요. 동영상 보면 되죠.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Q.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면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Q. 청소년이야 아니면 성인이야? 청소년인 거 같아요. Q. 왜? 직감이에요. Q. 이용자도 청소년이 많은 거 같고? 네.

20. 네.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본인인증강화. 지금도 충분히 강화되었긴 한데 그건 그냥 옆에 엄마 아빠 휴대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인증강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 발급일 이런 걸로 인증한다거나 완전 본인 아니면 자하게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Q. 그럼 채팅이나 그런 거 못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못 보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보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일단 청소년들이 보는 건 안 되잖아요. 19세 이상만 보는 거고.

23. Q.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Q. 왜요? 막 성인인증 로그인 하고 그런 거 하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Q. 성인인증강화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Q.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어플 있잖아요. 그걸 청소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Q. 그냥 성인 확인만 받는 거예요? 그니까 성인 앱 그런 거 보는 거 딱 보려고 눌렀는데, 성인 인증하고 막 해야 되면 막 부모님 것 써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막 자기 언니나 오빠나 그런 걸로 주민번호 쓰고 하거나. Q. 그거 한 번만 인증 확인 하는 거죠? 네.

26. 올바른 거면 상관없죠. 성 범죄 예방하고 Q. 페이스북 아한데도 성인인증이 안되잖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딱히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페이지를 성인 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증 없이 다 들어가져요. 그니까 할 거면 페이스북도 그런 거 인증하게 하고. 나이 안 맞으면 아예 안보이게 해야 돼요.

27. 맞다고 생각해요.

29.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Q. 페이스북에 아한 것들이 하루 평균 몇 개 올라와? 많으면 6~7개 올라와요. 이런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틀었는데 19금이면 거기에 성인인증 같이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Q. 뜨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이미지는 뜨지만 동영상 뜨기 전에 비밀번호만 걸어놔도 애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볼 것 같아요.

□ 예방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6. 그거 말고도 요즘 여자애들은 보도방 가서 보도 뛰어요. 요즘 여자애들은 그래요. 또라이들. 저희 학교에도 그런 여자애들 몇 명 있어요. 그러가지고 학교 안 나오는 애들. 돈에 미쳐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해도.

7. 솔직히 옛날이라도 왜 지금 막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저는 그다지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하는지 굳이 그런 거 왜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지 크게 막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 소용없어 보여요. 절대. 부모님 민증 가져가면 되는데.

11. 아니요. 어떻게든 하죠. 요새 아동에도 그거 인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 다 알아서 뚫어요. 신기하게.

12. 부모님이 돈만 잘 주면 된단니까요. 알바도 막 차별 없이 나이 그런 거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 하면 되지. 랜덤채팅도 조근조근 이 아니라 진짜 정상인인 동네 친구도 구할 수 있고, 막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깐 랜덤채팅 같은 거 솔직히 그냥 넘렸으면 좋겠어요. Q. 출옥 같은 데서 청소년들끼리만 하고 성인은 성인끼리만 하는 거 아냐? 그건 그냥 솔직히 그런 건 차별 없어요.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Q. 몇 살로 설정해놔서? 저 19살. 원래 17살. Q. 왜 그랬어?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놀아주니까. 쪽지도 안 오고 하니까. 그래서 나이를 좀 속였어요. Q. 그랬더니 쪽지가 자주 와? 네. Q. 17살로 했던 적도 있었어? 네. Q. 그랬더니 안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에 100개 넘게 왔다고 근데 이걸 5분에 3개. 쪽지 오는 게. 17살 하면. 19살 하면 5분에 100개. Q. 성인인증 하는 건 본인확인 하는 거 전혀 없나요? 네. Q. 그냥 아이디만 만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네.

13. 해봤자 부모님 아이디로 하는 애들도 많고 나이 속여서 가입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실효성이 없죠. 애초에 부모님 주민번호 있으니까. 소용없는 거 같아요. 내버려두면 더 날뛰고 뭘 하자 해도 방법은 없고. Q. 그럼 랜덤채팅을 없애면 어떨까? 없애도 할 데는 진짜 많아요. 카페 같은데. Q. 폐쇄 했다면? 아니요. 친목카페. 친구만들기 카페 같은데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많이 있어요. Q. 개네만 들어올 수 있어? 모든 사람들 다. 거기 경찰로 위장한 사람도 많아요. Q. 카페 이름이 뭐야? 카페 이름이 친구만들기라고. 치면 나와요. 카페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할 데가 없을 걸요? 아니면 유흥업소 가가지고 룸살롱 가는 거. Q. 연령이 안 되잖아? 요즘 다 받아주죠. 얼굴 예쁘거나 몸매 좋으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요즘 남자애들이 어린 애들 좋아하잖아요. 아저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집에서 노준 자식인데 정부가 뭘 해줄 게 있냐. 이렇게 따질 거 같아요. 오히려. 솔직히 정부에서 돈 줄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설 때도 주는 것도 아니고. Q. 예를 들어 알바를 시켜주면서 집 같은 걸 해준다면? 그런 거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고.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알바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심지어 학교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기출하면서 알게 됐어요. Q. 벗어나기 위한 결정적 역할? 캠프 가서 막 선생님 조건만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걸로 막 퀴즈 같은 거 하더니깐. 막 성에 대한 OX하고 그런 거 하더니깐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위험한 것도 있고 요즘 어떤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하다가 인신매매되면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 많으니깐. Q. 캠프는 도움 안 돼? 캠프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일부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좀 질 나쁜 애들 다 모여서 몇 달만 숙소를 하든지 일주든 이주든 생각을 고치든지. Q. 캠프 주위에서 많이 안 가? 해도 별로. 효과가 있다 없는데 따라서 다 사람들 안 해요. 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해도 안 들을 거고.

14.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진짜 돈이 급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할 사람은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막아도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Q. 롯데리아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 할 생각은 안 해봤어? 생각은 해봤는데 시급이 그렇다고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깐. Q.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봤어? 돈 필요하다고? 네. 안 해봤어요. 안 될 거 같아서. 용돈을 거의 안 받아요. Q.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원래 용돈을 잘 안 주는 거 같아요.

15.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서든 할 거예요. Q. 그러면 방법 없이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래도 그런 아는데. 본인 인증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 채 자기 핸드폰 아니면 인증 안 되고 어려잖아요. 부모님 그거면 부모님 핸드폰 그리고 그 주민번호 다 알아야 되니깐 식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Q. 그럼 본인 인증이 도움될 거 같아? 네.

21. 강화해도 본인 확인도 뚫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거 못 뚫는 게 이상한 거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22. 어차피 성인인증 강화해봤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쓰면 그만 이고. 랜덤채팅 같은 것도 솔직히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딱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Q. 그럼 대책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네. Q. 그럼 청소년 보호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분명 어떤 애들은

그런 걸 이기고 분명 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쓸모없어질 것 같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달라질 것도 없고.

24. 그거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걸 만든다고 메신저가 끊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Q.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Q. 성인인증강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닐 거 같아요. 모든 사이트는 성인인증 하긴 해도 언젠가 다 뚫려요.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안이. 진짜 다 뚫리잖아요. 지금 아동 다 막아놓으면 뭐해요 어차피 다 뚫리는데.

25. 근데 그게 해결 안한다고 해도 요새 세상에 어를 만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다시 다른 걸 만들겠죠. Q. 성인인증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누나가 20살인 애들도 많잖아요. 누나 자한테 핸드폰 누나 것 가져와서 인증하면 되죠. Q. 이런 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 기타

4. 없어요.

5. 모르겠어요.

18. 근데 그게 나라가 좀 그런 게 청소년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집안 사정이 그렇다보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지도 못하고 그러면 막는다고 해서 안할 애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는 것도 없고. 했다고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지원을 해주던가. Q. 알바 해봤어? 알바가 미용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로 일을 한번 했었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Q. 알바를 받아줘? 네. 저 2일 밖에 안했어요. 근데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요.

□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5> 조건만남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질문: 조건만남을 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부정적)

1. 자주 가니깐 돈을 많이 쓰니깐. 돈 많이 벌어서 유혹업소 가는 거고. 계속 가게 되고 중독성이 있고. 좋은 건 없어요. 해결하려면 돈이 없으면 저절로 안 가게 되겠죠.

3. Q. 학생 친구가 조건만남 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삶이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애들이 좀 덜하긴 한데. 안 하긴 하는데. 하는 애들은 계속 하고 하다가 안하는 애들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9. Q. 학생 친구가 조건만남 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피해. 살도 많이 찌지만 상상임신도 해서 남자가 무섭대요. 남자랑 그러니깐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애들 만나고 그러다보니깐 나아진 거 같은데.

10. Q. 학생 친구가 조건만남 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해

요? 네. 친구. 나쁜 쪽. 후회는 당연히 했는데. 착해진 것도 있는데. 성격이 파탄 났어요.

12. 몸이 아파진 것도 있을 거고. 억지로 당한 적도 있으니까. Q. 억지로 당한 적 있어? 성폭행 당한 거야? 성폭행이라고 해야 할 지 강간이라고 해야 될 지. 아무튼 당했어요. Q. 어떻게 당했어요? 애인대행 하러갔다가? 네. 차에서 덩치 큰 새끼가 막 뭐라 해야 되지 조수석 거기 제가 앉았잖아요. 그냥 차를 대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제 위로 올라와요. 덩치 큰 새끼가 올라오는데. Q. 운전석에 개가 앉고. 네가 옆에 앉았어? 네. Q. 개가 막 건넌왔어? 네. 근데 막 건너서 왔어요. 덩치 존나 큰 사람이 오니깐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당했죠. 이렇게 해서. Q. 신고했어? 아니요. 번호도 모르고 하니깐. Q. 그럼 당하고 돈은 썼어? 네. 돈은 썼어요. 똑같이. Q. 그러니까 원래는 애인 대행만 하기로 했는데

나는 당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 가는 차에다 돌맹이 던졌어요. 맞았어요. Q. 그럼 그 뒤로 가위로 바꾼 거야? 네. Q. 근데 왜 신고 안 했어? 저도 그걸 얘기를 한 사람이니깐 저도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Q.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때려야죠. 못하게.

13. 긍정적인 가는 옛날보다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했는데. 중 1 중 2때 학교 애들한테 심하게 폭행당하고 그랬었어요. 그 땐 되게 소심했었으니깐.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성격 확 바뀌니깐 애들이 재미있다고 하고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깐 재미있고.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예전에 그런 일 했으니깐 남친 사귀거나 친구들 사귀는 때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 만약에 친구나 남친이 알게 되면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좁은데. 자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 같아요. 재는 몰라요.

14.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거죠. 다시는 안하고 싶죠. 부정적인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이 일을 다시는 하면 안되는 게 긍정적이고. 경찰이랑 남자를 못 믿겠다는 게 가장 부정적인 거 같아요.

15.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Q. 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깐. Q.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거는. 그냥 뭐 딱히 없는 거 같아요.

16. 긍정적인 건 돈 생긴 거 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거는 아. 그냥 후회돼요. 잠깐의 순간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Q. 그 돈은 갖고 있어? 다 썼죠. 진작.

17. 아저씨나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럴 거라는 생각. 긍정적인 건 없죠. 위험한 걸 하긴 했죠. 다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Q. 돈 필요하면?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용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18.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들이 다 믿음만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Q.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네. Q. 그거 캠프가 영향을 준 거야? 아니면 그 상황이 무서워서? 그 상황이 무섭고. 캠프 가서 교육을 받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가서 납치해가지고 인신매

매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노래방 같은 데 끌고 가서 '평생 일 시킨다' 그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고 성병 같은 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23. Q.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한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진 거 같아요? 완전 망가졌어요. 보는 눈도 안 좋고 막 소문도 엄청 나고 그러니깐 학교도 안 가고. 집도 늦게 들어가서 맨날 집에서 혼자니깐 집 나오는 그런 애들 많아요.

24.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서. Q. 학생이 생각하기에 어떤 거 같아요? 타락했죠. Q. 긍정적인 건 전혀 없고? 잘하죠. 노하루가 생겼죠.

25. Q. 업소에 갔다 온 뒤로 어떤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돈을 썼으니깐 부정적인 영향을 줬죠. 긍정적인 변화는 새로운 걸 느꼈죠.

□ 접촉 경험 없음

2. 접촉 경험 없음.
4. 접촉 경험 없음.
5. 접촉 경험 없음.
6. 접촉 경험 없음.
7. 접촉 경험 없음.
8. 접촉 경험 없음.
11. 접촉 경험 없음.
19. 접촉 경험 없음.
20. 접촉 경험 없음.
21. 접촉 경험 없음.
22. 접촉 경험 없음.
26. 접촉 경험 없음.
27. 접촉 경험 없음.
28. 접촉 경험 없음.
29. 접촉 경험 없음.
30. 접촉 경험 없음.

<표 I-56>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른 생각

질문: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1. 왜 그러고 사나. 2. 아 돈 주고,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한다는 느낌? 네. 사랑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커플들이 그걸 돈 주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되게 아닌 거 같아요. 3. 진짜 싫어요. 아니 청소년을 왜 돈을 주고 사요? 청소년도 솔직히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왜 다른 아저씨들이랑. 개네들도 이해 안 가요. 지금 뭐 걸레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4. 더러워요. Q.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거나 책에서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 Q. TV 어디에서 봤어요? 몰라요. 그냥 채널 돌리다가 5. 음.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6. 성 상품화가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7. 좀 그래요. 미성년자인데 성에 대한 그런 게 좀 그래요. 8. 이상해요. 몸 파는 거. 노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안 좋은 거 같아요.	9. 상품화? 판다는 거예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10. 짜증나죠. 11. 상품이요? 어떤 거예요? 뭐예요? (설명해준 뒤) 얼마나 부모님들이 용돈 안줬으면 애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 13. 성매매나 뭐지 아한 거 짝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연예계에 스폰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요. 14. 문제가 있죠. 안 좋은 거고. 당연히 안 좋은 거란 생각은 들죠. Q. 다른 건 안 들어보고,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네. 있으면 안 될 일이다. 15. 그냥 안 좋은 거. 16.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냥. 너무 사정이 있으니까. 17. 성을 파는 거라는. Q. 성매매라는 생각이 들어? 네. 18. 안타깝죠.

19. 미쳤잖아요. Q. 누가 청소년이? 네. 성인도 미쳤죠. 청소년이랑 한다는 게. 다 미쳤어요.
 20. 근데 그 청소년도 진짜 잘못했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하려는 상대 남자들이 진짜 왜 그럴까 싫어요.
 21. 그냥 개네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22. 그 단어에 대해서요? 하는 애들에 대해서요? 성을 돈 주고 사고팔거나 그런 거?
 23. 그런 말 들으면 어떠냐고요? 음. 미친 거 같아요. Q. 누가 미친 거 같아요? 그 몸을 파는 그 청소년들.
 24. 여자에게 심각한 걸레구나.
 25. 아. 괜찮다 생각해요. Q. 왜요? 저희가 즐길 수 있잖아요.

돈 내면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대한민국에 성폭행 사건이 엄청 많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역제를 하니깐 그나마. 전 그렇게 생각해요.
 26. 성을 상품화 한다. 뭐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Q. 성매매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27. 불쌍해요. Q. 왜? 돈이 없으니까. 몸 파는 거잖아요.
 28. 이상해요. 청소년인데 그러니까.
 29. 저희 말로 걸레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30. 완전 안 좋다는 생각. 일단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아랑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하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장래도 안 좋아 질 것 같아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표 I-57>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

질문: 청소년의 성 상품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 조건만남

1. 조건만남 하는 학생들.
 13. 그냥 조건만남.
 14. 성매매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 네.
 19. 성매매. 그리고 모텔. 그리고 남자랑 여자.
 20. 그냥 바로 원조교제나 아니면 진짜 좀 그런 게 떠올라요. 아무 막 생각하기 싫은 좀 이상해요. 근데 좀 어떤 면에서 그 여자애들은 왜 그걸 할까 궁금해요. 그냥 진짜 궁금해요. 그런 것 좀 조사해서 갖다 주세요. Q. 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왜 몸을 그렇게 하지? 그 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청소년인데. 저희 또래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Q. 주변에 있었으며? 있어요. 제가 보고 그런 건 아닌데. 듣는 거죠. 이제. 아 애 보도 된데. 여기 있어요. 재 보도 된데 막 그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애들끼리 얘기하고 소문이 퍼지죠. 그 여자애도 그 소문이 났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 소문을 자기도 들었을 텐데. Q. 그런 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잘못된 거죠. 이차저차 뒤편 몸을 팔아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도 자기만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저기라면 잘못된 건데, 돈을 벌어서 좋은데 쓸데가 필요하거나 부모님 연관돼서 그런 걸 한다면 나쁘긴 나쁘지만 그래도 좀 저기죠.
 24. 뽕촌 같은 데서 성관계 하는구나.
 25. 성을 팔고 그런 거.
 28. 조건만남. 아무한테나 다 (성관계)하는 거.

□ 성적 이미지

2. 그냥 아저씨들이 중학생 애들 데리고 강제로 하는.
 6. 성에 대한 거가 들어요.
 7. 남자랑 여자랑 하는 그런 게 떠올라요.
 17. 성이 상품에 포장되어있는. 말 그대로.
 26. 그냥 뭐 성적행위. Q. 성적행위가 뭐야? 성관계요.

□ 돈

11. 돈 없어서.
 15. 여자가 팔릴 거 같은.
 16. 그냥 돈 때문에 여자들도 하는 거겠지만 그냥 당하는 그런 장면.
 18. 솔직히 생각하는 건데 17살이나 15살은 알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 나이 때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그럴까. Q.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어? 너무 졸려요. 그 사람이 그냥 하루를 안자고 있으면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졸린 생각 밖에 안 들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콜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가지고. Q. 그래서 조건을 하게 된 거야? 개가. 처음에는 개가 랜덤채팅을 잘 모르고 개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처음엔 그냥 나갔었는데. 그냥 나갔었는데 두 번째에 제가 개가 불쌍하니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밖에서 돈도 없이 이라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개가 나갈 때 가서 하고. Q. 그래서 엄마 티머니 돈 쓰고? 갑자기 티머니 충전이 되는데. 그걸 뺄 수도 있다고 하길래 빼고. Q. 집에 갈 생각은 안 했어? 솔직히 평생 밖에서 살 생각은 안했는데. 웬만큼 즐기다가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려고. 개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었나 봐요. 저는 좀 더 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완전 미친 생각이 아니라.

□ 걸레

3. 걸레. 뭐하는 거지 이런 생각.
 10. 걸레 같은데.
 12. 걸레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21. 걸레. 씨바 걸레네. Q. 네가 시켰잖아? 근데 왜 걸레야? 걸레니깐 시킨 거죠. 애들 그냥 평범한 애들이 하지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걸레들만 모아서 하면 존나 잘하죠. Q. 뭐가 잘 돼? 지들이 알아서 잘하죠. 이런 일 몇 번 해봤으니깐. 굉장히 잘 해요. 병신들이니깐. Q. 그런 애들은 뭐가 달라? 웃 입는 거부터 다르고. 막 보여주려고 해요. 안에까지 미친년들이 그런 건 티가 나요.

□ 더러움

4. 그냥 더럽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8. 더러워요.
22. 그냥 더럽죠.
30. 더럽다.

☐ 없음

5. 그런 거 없어요.

☐ 기타

9.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들이 계단에 서 몇 번 구르면 낙태가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애들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막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미지? 그런 거.

23. 막 발랑 까지고, Q. 청소년들이? 네.

27. 안 좋은 것. 몸 대주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들한테.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29. 제가 봤던 아동에 있는 여자들.

<표 I-58>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질문: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1. 요새는 고등학생 되면 거의 다 유경험자라서.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애정이 없는 거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사귀어서 그렇게 한거예요. 안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좋으니깐. Q. 그냥 아는 사람하고 아무나? 아뇨, 그렇게 안하죠. 사귀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2. 아니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믿음도 없고 잘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명 만나고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애정이 없는 사람과 해본 적 없어요.

3. 아니요.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이지요. 전 아니예요. 전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싫어요. 마음이 안가니깐.

4. 애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요? 아니요! Q. 그럼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가보다. 남한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깐.

5. 아니요. Q. 그럼 안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동생이 여자애거든요. 그런 거 성매매 때문에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여자애들이 그러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여자 친구 좋아해도 건드리고 막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Q. 그럼 어떻게 하다 아는 동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세히는 안 알려줬는데, 그 남자랑 동생이랑 모텔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Q. 그 남자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해요? 30대? Q.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돈 벌려고 하다가. Q. 지금 계속 소년원에 있는 거예요? 네. 6개월인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6.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되죠. 안 괜찮죠. Q. 만약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걸레죠. 주위에 많아요. 그런 애들 요즘 애들 다. 남자애들 다 발정 나가지고 누구 한명이라도 쫘 걸레라고 소문난 애들 깨들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발악을 해요. Q. 성관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남자애들 다 그래요. 저기 있던 남자애들 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7. 아니요. 절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귀지도 않는데 하면 걸레 소리 듣고 소문나요. 솔직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줬는데,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8. 아니요. Q.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9.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 아니요. 자는 건 상관없는데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12. 사랑하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4.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하는 거.

15. 아니요.

16. 아니요. 저 원래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18. 그런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제가 바로 했겠죠.

19. 막 성매매 같은 거 해가지고요. 그건 아니죠.

22.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Q. 왜요?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고,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 있었고, 저도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떻게 됐든 너무 어린 건 좀 그렇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까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건 별로 없었고, 그냥 애들끼리 걸레걸레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애들끼리 걸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남자랑 그렇게 자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막 안 좋아하는 남자랑 많이 자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안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 아닌 그런 애들이랑 자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26.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죠.

27. 안돼요.

29. 아니요. 자기가 책임 질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가 임신하기라도 하면 애 인생 망치는 거고, 그냥 한번 그러고 말건데 이해가 안가요.

30.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야지. 그런 정말 아니라고 봐요.

☐ 애정이 없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

10.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17. 네. Q. 왜?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분위기 타다가 술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깐. Q. 언제? 한 번만 전? 까먹었는데. 아 아니야. 삼년 전에 그 강남에서. 당했어요. Q. 어떻게? 그러니깐 제가 원래 그 오빠랑 친했어요. 그 오빠 집에 있다가 아는 언니 만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오빠 지금은 21살이요. 그런 적 있어가지고 갔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밀어냈는데 남자를 제가 어떻게 밀어내
요. Q. 그럼 그 때가 처음이었어? 그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때는
그냥 좋아하는 오빠랑. Q. 당한 거 아니고? 네. Q. 신고 안 했죠?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다 알게 되고. 이제 신경 안 써요. 그 일에
대해서. Q. 그 오빠랑 계속 만나? 안 만나죠. 저번에 어제 헤어진
게가 저 그거 강간한 애랑 개랑 얼굴 한두 번 얼굴 본 사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뭐라 하니깐 제가 그 오빠랑 사귀면서
개한테 연락이나 그런 게 안 와요. 그 전에는 카톡와가지고 술 한
잔 하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한 번 만난 적 있는데 남자 없어서
담배 좀 사달라고 했다고 나 돈 많다고. Q. 그 오빠는 무슨 일 해?
알바생.

20. 음.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둘이 동의하에 하면 그건 자기들끼리
자기 한다고 하면 된다고. Q. 돈 받고 하는 것도? 돈 받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서로 합의 하에 원나잇 같은 거 클럽에서
놀다가 서로 이사람 괜찮다 해서 바로 가서. Q.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네. 원나잇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둘이 좋으니깐
원나잇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돈 받고 하는 건 좀
안 좋죠. 여자는 남자를 돈으로 보는 거고 남자는 저 여자를 성으로만
보는 거니깐 좀 안 좋죠.

21. 네. Q. 지금도? 네. 한 번 하고 안 만날 건데요. Q. 지금은
안할 거 아니냐? 지금은 안하죠. 안하니깐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Q. 그 때는 왜 안 참았어? 그냥.
Q. 지금은 참는 이유가 뭐야? 그냥 한번 참아볼까 해서 참으니깐
되더라고요. Q. 여친은? 여자 친구 건든 적 없어요. 그냥 건들 마음도
없어요.

23.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요? 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Q. 왜요?. 그 막 사람의 본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막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남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24.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Q. 왜요?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25. 네. Q. 이유는요? 이 사람이라 평생 살지, 그 사람이라 평생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28.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Q. 아무 여자랑 해도 돼? 네.
원 상관이에요. Q.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할 수 있지? 꼭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Q.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해본 적 있어? 없어요. Q. 그런데 왜 된다고 생각해?
기회가 된다면 할 거예요.

Q 기타

13. 솔직히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남친이라 하는 거 싫어해요.
Q. 왜? 남친은 보잖아요. 하고 나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이 떨어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모르는 사람은 하고 나서
안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저는 남친 사귀면 20대를 사귀면 난
그런 거 싫어하니깐 난 날 마음껏 풀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여자랑 하라고 해요. 미리 말해줘요. 모르겠어요. 뭔가
하기 싫어요. Q. 그럼 남친 나이는? 제가 20대를 좋아해요. 일단
10대는 돈이 없으니깐 더치페이하기 어렵고 20대는 돈이 있으면
더치페이하기 쉽고, 기념일 챙기기 쉽고. 차 있으니깐 먼저 데려다
주고,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Q. 남친은 뭐하는 사람이었어?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군 갔다온 애들도
있고. Q. 언제부터 사귀었어? 지금도 사귀본 적 많고. 중 2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또래도 다 괜찮고요.

<표 I-59>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질문: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Q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1. 그것도 이기적으로 전 아닌데. 제 와이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처음이 아니면 기분은 나쁘잖아요. Q.
만약 여자 친구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뭐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저도 그랬으니깐 할 말은 없죠.

5. 잠자리는 가져도 되는데. 성관계까지는 안 되고. 진짜 잠자는
거만.

9. 절대. 혼전순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안해야겠다.

17. 지금 생각하면 지킬 걸 생각하죠. Q. 그런데 이제는? 이미
없는 걸 어떡해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그러지 말걸
이라는 생각은 하죠.

20. 여자라면? 서로 좋으면. 남자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깐 언젠가 저기할건데 그래도 여자는
좀 순결을 지켜야한다. Q. 그럼 남자는 표가 안 나니깐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죠. 남자도 지켜야한다 그것보다도 여자가 표가 좀
더 나니깐. 처녀막이나 이런 거. Q. 그럼 부인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저한테 말을 했다면 그래도 좀 화는 나겠죠. 좀 실망스럽겠죠.
나 말고 다른 남자랑 했다는 게. 그래도 어떡해요. 결혼해가지고
살아야지.

21. 순결 지켜요. Q. 왜? 티 안내야죠. Q. 넌 다했잖아? 그래도
티 안내야죠. 티 안내고 사는 게 낫죠. 남자나 여자나. Q. 그럼 거짓말해
야 되잖아? 남 사실대로 몇 명이다. 그냥 몇 번 해봤다. 한 4~5번
해봤다. 그리고 할 때는 티를 내야죠. 이미 넣었는데 뽐 순 없잖아요.
Q. 그러니깐 너는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킬
거라고요. 이제부터 지켜야죠. Q. 결혼할 때까지? 네. Q.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 그냥요. 이유는 없어요. 진짜 그냥요. 그냥 한
번 지켜보려고.

26.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도 그렇고 그렇다보니
까 어쩌다가 술 먹고 실수 할 수도 있는 거고. Q.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거지? 네.

28. 여자는 지켜야 돼요. (남자는)지켰다고 하면 되죠. 여자는
티 나니까 안 돼요. Q. 나중에 결혼해서 여친이 지켰다고 얘기했다가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할 거야? 화내고 정 떨어질 것 같아요. Q.
너는 다 해놓고? 생각을 좀 바꿀게요.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돼요.
30. 네. 사랑하지만 결혼은 한 게 아니니까.

Q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말고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2.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몇 살 때건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다면 하고 싶을 거 같아요. Q. 넌 몇 살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자 친구랑. 그냥 아는 친구였는데, 저도 그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다지 서로 믿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제 욕심을 못 이기고 한 거 같아요.

3.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고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랑하는 데 살 수 있으니까 순결을 지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4. 아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해서 엄청 오래 사귀었어요.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냥 그렇고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6. 네,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오래 연애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저는 괜찮을 거 같아요.

7.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도 되는데 안 사귀는 사람이랑은 안돼요.

8. 좋아하면 해도 되고.

10. 아니요.

12. 그건 아니예요. Q. 사랑하면 할 수 있다? 네.

13. 아니요 굳이 왜.

14.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뭔가 자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아무하고나 하는 건 문제가 있죠.

15. 아니요, 그건 아니예요.

16. 아니요, 근데 뭐 사랑하면 하는 건데, 안 좋아하면 원나잇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가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랑 헌팅을 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하룻밤 자고 빠이빠이 해요. 원나잇, 그런 건 별로.

18. 아니요, 결혼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되면, 꼭 결혼하는 사람과 사랑했다고 해야 되나.

19. 아니요, 그건 아니죠. Q. 기준은 뭐야? 사랑하고 그러면 하면 되죠. Q.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면 안 된다? 돈을 안 받아도? 네. 그건 아니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Q.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아도 하잖아. 그럴겠죠. 하고 싶은 애들은, 그럴 때도 몇 번 있지만 그렇게 끌리지 않는데.

23. 아니요. Q. 왜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고, 막 옛날에는 그래야지 됐는데, 요즘에는 막 결혼 전에 막 먼저 해보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된대요.

24. 처음엔 그랬는데, 처음에는 남자는 상관없고 여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Q. 왜요? 살만큼 살 건데, 결혼 전에 해도 나쁠 건 없잖아요.

25.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Q.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살잖아요. 근데 꼭 한 여자한테만 쓰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7. 아니요, 엄청 사랑하고 오래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여자가 원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면 해도 되고, 솔직히 남자들은 언제나 다 환영이죠. 일단 여자가 허락을 해야죠.

□ 기타

11. 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한 적이 없어서.

22. 음, 그건 자기가 좋아하면.

Abstract

Research on the Ways to Respond to Commercialization of Sex among Youth through Mass Media in the Smart Era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through mass media and smart phones has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youth by examining idol stars' suggestive video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that occur when sex is commercialized and targeted at youth through mass media and smart phones by analyzing detailed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the negative impact on youth. By doing so, this research intends to make mass media contribute to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youth with broadcasting that is based on responsibility and trust and to increase the ability of youth to use their smart phones in sound and productive ways. Methodologically, surveys, including surveys on experts' opinions and on policy cases, were used in addition to in-depth interviews. The surveys found that idol stars' suggestive videos that are delivered through mass media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youth. It was also found that smart phones spread and promote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youth and is distorted by the sexual commercialization through mass media; it also induces rep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distorted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appropriate policies to respond to sexual commercialization through mass media and confirmed the need for reasonable and productive responses to secure the integrity of a smart phon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direc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using mass media and smart phones to commercialize sex among youth. Basically, there are two directions. The first direction is by stage (production, logistics, and

consumption), and the second is by policy area (prevention, protection, and execution). The directions are intended to respond actively to the problems of mass media and smart phones. The representative policie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as follows. (i) the Blessing-Family Project is an education and promotion project to make a happy family free from sexual commercialization and harmful media. (ii) Integrate a youth harmful-event review body. (iii) Establish a dedicated sexual protection group for youth, i.e., a “ruled self-regulation”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organization. (iv) Adopt a system for cyber stakeouts and guidance. (v) Adopt a mandatory system to explain and install PC and smart phone seller filtering software. (vi) Establish guidelines on suggestive articles about idol stars and strengthen their monitoring. (vii) Strengthen media and area-specific monitoring. (viii)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idol stars’ videos that commercialize sex. (ix) Unify the reporting system an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cyber investigation group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x) Strengthen crackdowns on filthy chatting compani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the online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youth.

Key words: commercialization of sex among youth,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suggestive videos of idol stars, sex trade using smart phones, policies to prevent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4-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운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운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습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과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과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21-2 93330